

2025. 2. 13. 현재

법규집



대한변호사협회
KOREAN BAR ASSOCIATION

변호사 윤리강령

- 01 변호사는 기본적 인권의 옹호와 사회정의의 실현을 사명으로 한다.
- 02 변호사는 성실·공정하게 직무를 수행하며 명예와 품위를 보전한다.
- 03 변호사는 법의 생활화운동에 헌신함으로써 국가와 사회에 봉사한다.
- 04 변호사는 용기와 예지와 창의를 바탕으로 법률문화 향상에 공헌한다.
- 05 변호사는 민주적 기본질서의 확립에 힘쓰며 부정과 불의를 배격한다.
- 06 변호사는 우애와 신의를 존중하며, 상부상조·협동 정신을 발휘한다.
- 07 변호사는 국제 법조간의 친선을 도모함으로써 세계 평화에 기여한다.

일러 두기

1. 수록범위

법규집에는 2025년 2월 13일까지 공포된 현행 변호사법, 동법 시행령, 변호사시험법, 동법 시행령, 동법 시행규칙, 외국법자문사법, 동법 시행령, 동법 시행규칙, 대한변호사협회 회칙, 변호사윤리장전, 외국법 자문사 윤리장전을 비롯하여 대한변호사협회 회무에 관한 각종 규칙 및 규정 등을 수록하였다.

2. 목차

각종 규칙 및 규정을 찾기 쉽도록 “ㄱ, ㄴ, ㄷ순 찾기”와 “편목차”를 설치하였다. “편목차”는 크게 “법령, 회칙, 회규”로 나누었으며, “회규”는 다시 “사업계획 등, 회의 등, 변호사등록, 변호사징계, 법제·인권, 변호사 연수 등, 변호사 업무·홍보, 공익활동 등, 외국법자문사, 회계 등, 사무국 등”으로 나누었다.

3. 찾아보기

- ◆ 규칙 및 규정 등의 이름을 모를 때에는 목차 중 “편목차”를 본다.
- ◆ 규칙 및 규정 등의 이름을 알 때에는 목차 중 “ㄱ, ㄴ, ㄷ순 찾기”를 본다.

4. 개정 연월일 표시

개정된 조·항·호에는 개정 연월일을 표시하되 2회 이상의 개정 조항에는 최종 개정 연월일만 표시하였다.



CONTENTS

법 령



● 변호사법	19
● 변호사법 시행령	64
● 변호사시험법	88
● 변호사시험법 시행령	95
● 변호사시험법 시행규칙	103
● 외국법자문사법	107
● 외국법자문사법 시행령	135
● 외국법자문사법 시행규칙	146

회 칙



● 대한변호사협회 회칙	153
● 변호사윤리장전	174
● 외국법자문사윤리장전	183

회 규



1. 사업계획 등

● 사업계획규칙	189
● 회규관리규칙	191
● 협회장 및 대의원 선거규칙	193
● 협회장 및 대의원 선거규칙 시행규정	205
● 선거관리위원회규정	238
● 임원인사규칙	240
● 임원선거규칙	250
● 전국지방변호사회장협의회규칙	258
● 전임지방변호사회장협의회규정	260
● 대한변호사협회 감사규정	262
● 감사위원회규칙	265



CONTENTS

2. 회의 등

● 총회운영규칙	267
● 총회 사무국 규칙	275
● 총회 운영위원회 규칙	277
● 총회 예산결산심사위원회 규칙	278
● 이사회운영규칙	279
● 상임이사회운영규칙	281
● 위원회운영규칙	282

3. 변호사 등록

● 변호사 등록 등에 관한 규칙	289
● 변호사 등록 등에 관한 규정	304
● 공증합동법률사무소의설립등에관한규칙	327
● 법무법인및법무법인(유한)의설립등에관한규칙	332
● 법무조합의설립등에관한규칙	340
● 지방변호사회설립과감독에관한규칙	342
● 변호사신분증규칙	358
● 모바일 변호사 신분증 규정	361
● 모바일 외국법자문사 신분증 규정	364
● 대한변호사협회기및변호사배지등에관한규칙	367
● 합작법무법인 설립 등에 관한 규칙	370

4. 변호사 징계

● 변호사징계규칙	377
● 변호사징계처분집행규정	392
● 윤리위원회규정	395
● 회규 위반 법률플랫폼 가입 회원 조사를 위한 특별조사위원회 규정	399
● 변호사징계양정규정	401

5. 법제·인권

● 사법평가위원회규정	403
● 사법제도개선특별위원회규정	406
● 통일문제연구위원회규정	408
● 환경과에너지연구위원회규정	410
● 헌법개정특별위원회규정	412

☎ 변호사 광고에 관한 규칙	496
☎ 변호사 광고에 관한 규정	498
☎ 변호사 전문분야 등록에 관한 규정	506
☎ 변호사수임장부에 관한 규정	522
☎ 변호사 사무직원 규칙	524
☎ 변호사 공동 사무직원 규정	528



CONTENTS

● 변호사 권익위원회 규정	530
● 대한변호사협회 변호인조력권침해 신고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533
● 변호사 및 법률사무 종사자 안전의 날 제정에 관한 규정	537
● 회기간행 및 학술사업 규칙	539
● 인권과정의위원회 규정	544
● 인권과정의원고작성요령및투고방법에관한규정	547
● 회지게재논문 심사규정	550
● 신문 등 간행규칙	553
● 대한변호사협회공고에관한규칙	558
● 변호사신상정보의수집및활용에관한규정	559
● 대변인규정	563
● 청년변호사특별위원회규정	564
● 법조원로특별위원회규정	569
● 사내변호사특별위원회규정	572
● 여성변호사특별위원회규정	574
● 명예변호사위촉에관한규정	577
● 일과가정양립을위한위원회규정	578
● 대한변협 양성평등센터 규정	580
● 확장된단일사무소심사규정	583
● 변호사 수급 정상화 특별위원회 규정	585
● 우수변호사선정특별위원회규정	587
● 입법특별위원회규정	590
● 입법평가 특별위원회 규정	592
● IT·블록체인특별위원회 규정	594
● 벤처·스타트업법률지원특별위원회 규정	596
● 대한변호사협회 변호사정보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598
● 변호사 에이전트 제도화 특별위원회 규정	601

8. 공익활동 등

● 공익활동등에관한규정	603
● 공익활동심사위원회규정	606
● 변호사공익대상규정	608

9. 외국법자문사

● 외국법자문사등록규정	610

목 차



● 외국법자문사회비납부규칙	619
● 외국법자문사신분증규칙	620
● 외국법자문사징계규정	624
● 외국법자문사업무광고규정	633
● 외국법자문법률사무소공동사건처리등을위한규정	638

10. 회계 등

● 예산회계규칙	642
● 회계처리규정	650
● 분담금납부규칙	660
● 위임전결규정	663
● 여비규정	665
● 임원등해외여비규정	669
● 변호사 포상규칙	670
● 경조규정	674
● 세제위원회규정	676
● 지방변호사회의 회비에 관한 규정	678

11. 사무국 등

● 사무국직제규칙	680
● 사무국운영규정	686
● 사무총장및사무차장복무등기준에관한특례규칙	692
● 특별보좌관 규정	693
● 직원인사규칙	695
● 직원인사규정	705
● 급여규정	737
● 사무처리규정	743

12. 규칙·규정 번호	775

13. 폐지된 회규	783





CONTENTS

지 침



제수당지급에관한지침	789
변호사 권익위원회 시행세칙	796
변호사윤리교육지침	801
회지윤리지침	802
심의수수료 지침	807
외국법자문사등록시행세칙	809
대한변협 사무국 직원 맞춤형 복지제도 운영지침	851
법관 및 검사 임용지원자 평가지침	855
외국법자문법률사무소 공동사건처리등을 위한 시행세칙	859
협회 회의실 이용에 관한 지침	874
법관평가의 방법 및 평가결과 공개 등에 관한 지침	878
검사평가의 방법 및 평가결과 공개 등에 관한 지침	885
대한변호사협회 개인정보 처리지침	897
법제연구원 운영세칙	932
Task Force(TF) 지침	942
대한변호사협회 직무관련 범죄 고소(고발) 지침	945
전관비리신고센터운영에관한지침	948
보고서 등 원고료 산정기준에 관한 지침	951
회의비, 수당등에관한지침	954
대한변호사협회 노사협의회 지침	960
변호사신분증지침	965
SNS 등을 통한 업무에 관한 지침	968
지원금 지급 지침	969
대한변호사협회 변호사정보센터 개인정보처리방침	972
전국지방변호사회장협의회 정책 및 연구과제 등 지원 지침	976
인권보고서 원고료 등 작성 수당 산정기준에 관한 지침	978
우수변호사 심사 및 선정 등에 관한 지침	981
합작법무법인 내 선임변호사 및 선임외국법자문사의 겸직허가 신고 등 지침	986
대한변협 임직원 성희롱·성폭력 예방 및 2차 피해 방지 지침	988
보도자료등에 관한 지침	996
변호사시험 합격자 연수 학사관리지침	1001
대한변협 전문변호사회 지원센터 운영에 관한 시행지침	1016

목 차



ㄱ, ㄴ, ㄷ 순 찾기

【ㄱ부】

● 감사위원회규칙	265
● 개별연수방법등에관한규정	481
● 검사평가특별위원회규정	440
● 경조규정	674
● 공익활동등에관한규정	603
● 공익활동심사위원회규정	606
● 공증합동법률사무소의설립등에관한규칙	327
● 국제인권특별위원회규정	418
● 급여규정	737

【ㄴ부】

● 난민이주외국인특별위원회 규정	431

【ㄷ부】

● 대변인규정	563
● 대한변협 양성평등센터 규정	580
● 대한변협 전문변호사회 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456
● 대한변협 프로보노지원센터 규정	433
● 대한변호사협회 감사규정	262
● 대한변호사협회공고에관한규칙	578
● 대한변호사협회기및변호사배지등에관한규칙	367
● 대한변호사협회 법학전문대학원 평가 및 발전 특별위원회 규정	414
● 대한변호사협회 변호사정보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598
● 대한변호사협회 변호인조력권침해 신고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553
● 대한변호사협회 회칙	153

【ㄹ부】

● 모바일 변호사 신분증 규정	361
● 모바일 외국법자문사 신분증 규정	364
● 명예변호사위촉에관한규정	577





CONTENTS

【부부】

● 법관평가특별위원회규정	437
● 법무법인및법무법인(유한)의설립등에관한규칙	332
● 법무조합의설립등에관한규칙	340
● 법의지배를위한변호사대회규정	485
● 법제연구원규칙	446
● 법조원로특별위원회규정	569
● 법질서위반 감독센터 규정	451
● 벤처·스타트업법률지원특별위원회 규정	596
● 변협포럼운영규정	416
● 변호사 공동 사무직원 규정	528
● 변호사공익대상규정	608
● 변호사 광고에 관한 규칙	496
● 변호사 광고에 관한 규정	498
● 변호사 권익위원회 규정	530
● 변호사 등록 등에 관한 규칙	289
● 변호사 등록 등에 관한 규정	304
● 변호사 및 법률사무 종사자 안전의 날 제정에 관한 규정	537
● 변호사법	19
● 변호사법 시행령	64
● 변호사 사무직원 규칙	524
● 변호사 수급 정상화 특별위원회 규정	585
● 변호사수임장부에관한규정	524
● 변호사시험법	88
● 변호사시험법 시행규칙	103
● 변호사시험법 시행령	95
● 변호사시험 합격자 연수규칙	469
● 변호사신분증규칙	358
● 변호사신상정보의수집및활용에관한규정	561
● 변호사 연수규칙	459
● 변호사윤리장전	174
● 변호사 전문분야 등록에 관한 규정	506
● 변호사징계규칙	377
● 변호사징계양정규정	401
● 변호사징계처분집행규정	392

목 차



● 변호사 포상규칙	670
● 북한이탈주민법률지원위원회규정	429
● 북한인권특별위원회규정	427
● 분담금납부규칙	660

【사부】

● 사내변호사특별위원회규정	572
● 사무국운영규정	686
● 사무국직제규칙	680
● 사무처리규정	743
● 사무총장및사무차장복무등기준에관한특례규칙	692
● 사법경찰평가특별위원회 규정	443
● 사법제도개선특별위원회규정	406
● 사법평가위원회규정	403
● 사업계획규칙	189
● 상임이사회운영규칙	281
● 생명존중재난안전특별위원회규정	424
● 선거관리위원회규정	238
● 성년후견법률지원특별위원회규정	422
● 변호사 세무대리 실무교육 등에 관한 규정	491
● 세제위원회규정	676
● 신문 등 간행규칙	553

【오부】

● 여비규정	665
● 여성변호사특별위원회규정	574
● 예산회계규칙	642
● 외국법자문법률사무소공동사건처리등을위한규정	638
● 외국법자문사등록규정	610
● 외국법자문사법	107
● 외국법자문사법 시행규칙	146
● 외국법자문사법 시행령	135
● 외국법자문사신분증규칙	620
● 외국법자문사업무광고규정	635
● 외국법자문사윤리장전	183





CONTENTS

● 외국법자문사징계규정	624
● 외국법자문사회비납부규칙	619
● 우수 국회의원 선정 특별위원회 규정	449
● 우수변호사선정특별위원회규정	587
● 위원회운영규칙	282
● 위임전결규정	663
● 윤리위원회규정	395
● 이사회운영규칙	279
● 인권과정의원고작성요령및투고방법에관한규정	547
● 인권과정의위원회 규정	544
● 일과가정양립을위한위원회규정	578
● 일제피해자인권특별위원회규정	420
● 임원등해외여비규정	669
● 임원선거규칙	250
● 임원인사규칙	240
● 입법특별위원회규정	590
● 입법평가 특별위원회 규정	59

【조부】

● 전국지방변호사회장협의회규칙	258
● 전임지방변호사회장협의회규정	260
● 지방변호사회설립과감독에관한규칙	342
● 지방변호사회의 회비에 관한 규정	678
● 지식재산연수원규정	489
● 직원인사규칙	695
● 직원인사규정	705

【대부】

● 청년변호사특별위원회규정	564
● 총회 사무국 규칙	275
● 총회 예산결산심사위원회 규칙	278
● 총회운영규칙	267

목 차



【트 부】

● 통일문제연구위원회규정	408
● 특별보좌관 규정	693

【ㅎ 부】

● 한국법률문화상규칙	486
● 합작법무법인 설립 등에 관한 규칙	370
● 헌법개정특별위원회규정	412
● 협회장 및 대의원 선거규칙	193
● 협회장 및 대의원 선거규칙 시행규정	205
● 확장된단일사무소심사규정	583
● 환경과에너지연구위원회규정	410
● 회계처리규정	650
● 회규관리규칙	191
● 회규 위반 법률플랫폼 가입 회원 조사를 위한 특별조사위원회 규정	399
● 회지간행 및 학술사업 규칙	539
● 회지게재논문 심사규정	550

【기타】

● ESG 특별위원회 규정	454
● IT·블록체인특별위원회 규정	594





법령





변호사법

1949. 11. 7.

법률 제63호

개정	1962. 4. 2. 법률 제 1047 호	1962. 9. 24. 법률 제 1154 호
	1971. 12. 28. 법률 제 2329 호	1973. 1. 25. 법률 제 2453 호
	1973. 12. 30. 법률 제 2654 호	1982. 12. 31. 법률 제 3594 호
	1985. 9. 14. 법률 제 3790 호	1987. 12. 04. 법률 제 3992 호
	1993. 3. 10. 법률 제 4544 호	1995. 12. 29. 법률 제 5055 호
	1996. 12. 12. 법률 제 5177 호	1997. 12. 31. 법률 제 5453 호
	1999. 2. 5. 법률 제 5815 호	2000. 1. 28. 법률 제 6207 호
	2004. 1. 20. 법률 제 7082 호	2005. 1. 27. 법률 제 7357 호
	2005. 3. 31. 법률 제 7428 호	2007. 1. 26. 법률 제 8271 호
	2007. 3. 29. 법률 제 8321 호	2008. 3. 28. 법률 제 8991 호
	2009. 2. 6. 법률 제 9416 호	2011. 4. 5. 법률 제10540호
	2011. 5. 17. 법률 제10627호	2011. 7. 25. 법률 제10922호
	2012. 1. 17. 법률 제11160호	2013. 5. 28. 법률 제11825호
	2014. 5. 20. 법률 제12589호	2014. 12. 30. 법률 제12887호
	2016. 3. 2. 법률 제14056호	2017. 3. 14. 법률 제14584호
	2017. 10. 31. 법률 제15022호	2017. 12. 19. 법률 제15251호
	2017. 12. 12. 법률 제15153호	2018. 12. 18. 법률 제15974호
	2020. 6. 9. 법률 제17366호	2021. 1. 5. 법률 제17828호

제 1 장 변호사의 사명과 직무 <개정 2008. 3. 28.>

제1조 [변호사의 사명] ① 변호사는 기본적 인권을 옹호하고 사회정의를 실현함을 사명으로 한다.

② 변호사는 그 사명에 따라 성실히 직무를 수행하고 사회질서 유지와 법률제도 개선에 노력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8. 3. 28.)

제2조 [변호사의 지위] 변호사는 공공성을 지닌 법률 전문직으로서 독립하여 자유롭게 그 직무를 수행한다.

(전문개정 2008. 3. 28.)

제3조 [변호사의 직무] 변호사는 당사자와 그 밖의 관계인의 위임이나 국가·지방자치단체와 그 밖의 공공기관(이하 “공공기관”이라 한다)의 위촉 등에 의하여 소송에 관한 행위 및 행정처분의 청구에 관한 대리행위와 일반 법률 사무를 하는 것을 그 직무로 한다.

(전문개정 2008. 3. 28.)



제 2 장 변호사의 자격 <개정 2008. 3. 28.>

제4조 [변호사의 자격]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변호사의 자격이 있다. (개정 2011. 5. 17.)

1. 사법시험에 합격하여 사법연수원의 과정을 마친 자
2. 판사나 검사의 자격이 있는 자
3. 변호사시험에 합격한 자

(전문개정 2008. 3. 28.)

제5조 [변호사의 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변호사가 될 수 없다. (개정 2017. 12. 19.)

1. 금고 이상의 형(刑)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그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2.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이 지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4. 탄핵이나 징계처분에 의하여 파면되거나 이 법에 따라 제명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5. 징계처분에 의하여 해임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6. 징계처분에 의하여 면직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7. 공무원 재직 중 징계처분에 의하여 정직되고 그 정직기간 중에 있는 자(이 경우 정직기간 중에 퇴직하더라도 해당 징계처분에 의한 정직기간이 끝날 때까지 정직기간 중에 있는 것으로 본다)
8.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9.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10. 이 법에 따라 영구제명된 자

(전문개정 2008. 3. 28.)

제6조 <삭제> (2008. 3. 28.)

제 3 장 변호사의 등록과 개업 <개정 2008. 3. 28.>

제7조 [자격등록] ① 변호사로서 개업을 하려면 대한변호사협회에 등록을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등록을 하려는 자는 가입하려는 지방변호사회를 거쳐 등록신청을 하여야 한다.

③ 지방변호사회는 제2항에 따른 등록신청을 받으면 해당 변호사의 자격 유무에 관한 의견서를 첨부할 수 있다.

④ 대한변호사협회는 제2항에 따른 등록신청을 받으면 지체 없이 변호사 명부에 등록하고 그 사실을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8. 3. 28.)



제8조 [등록거부] ① 대한변호사협회는 제7조제2항에 따라 등록을 신청한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제9조에 따른 등록심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등록을 거부할 수 있다. 이 경우 제4호에 해당하여 등록을 거부할 때에는 제9조에 따른 등록심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1년 이상 2년 이하의 등록금지기간을 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7. 12. 19.)

1. 제4조에 따른 변호사의 자격이 없는 자
2. 제5조에 따른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자
3. 심신장애로 인하여 변호사의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현저히 곤란한 자
4. 공무원 재직 중의 위법행위로 인하여 형사소추(과실범으로 공소제기 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또는 징계처분[파면, 해임, 면직 및 정직(해당 징계처분에 의한 정직기간이 끝나기 전인 경우에 한정한다)]을 받거나 그 위법행위와 관련하여 퇴직한 자로서 변호사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현저히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자
5. 제4호에 해당하여 등록이 거부되거나 제4호에 해당하여 제18조제2항에 따라 등록이 취소된 후 등록금지기간이 지나지 아니한 자
6. <삭제> (2014. 5. 20.)

② 대한변호사협회는 제1항에 따라 등록을 거부한 경우 지체 없이 그 사유를 명시하여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신설 2014. 5. 20.)

③ 대한변호사협회가 제7조제2항에 따른 등록신청을 받은 날부터 3개월이 지날 때까지 등록을 하지 아니하거나 등록을 거부하지 아니할 때에는 등록이 된 것으로 본다. (개정 2014. 5. 20.)

④ 제1항에 따라 등록이 거부된 자는 제1항에 따른 통지를 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등록거부에 관하여 부당한 이유를 소명하여 법무부장관에게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개정 2014. 5. 20.)

⑤ 법무부장관은 제4항의 이의신청이 이유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대한변호사협회에 그 변호사의 등록을 명하여야 한다. (개정 2014. 5. 20.)

(전문개정 2008. 3. 28.)

제9조 [등록심사위원회의 설치] 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사하기 위하여 대한변호사협회에 등록심사위원회를 둔다.

1. 제8조제1항에 따른 등록거부에 관한 사항
2. 제18조제1항·제2항에 따른 등록취소에 관한 사항

② 대한변호사협회의 장은 제8조제1항, 제18조제1항제2호 또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등록거부나 등록취소를 하려면 미리 그 안건을 등록심사위원회에 회부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8. 3. 28.)

제10조 [등록심사위원회의 구성] ① 등록심사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1. 법원행정처장이 추천하는 판사 1명
2. 법무부장관이 추천하는 검사 1명
3. 대한변호사협회 총회에서 선출하는 변호사 4명
4. 대한변호사협회의 장이 추천하는, 법학 교수 1명 및 경험과 덕망이 있는 자로서 변호사가 아닌



자 2명

- ② 등록심사위원회에 위원장 1명과 간사 1명을 두며, 위원장과 간사는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 ③ 제1항의 위원을 추천하거나 선출할 때에는 위원의 수와 같은 수의 예비위원을 함께 추천하거나 선출하여야 한다.
- ④ 위원 중에 사고나 결원이 생기면 위원장이 명하는 예비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⑤ 위원과 예비위원의 임기는 각각 2년으로 한다.

(전문개정 2008. 3. 28.)

제11조 [심사] ① 등록심사위원회는 심사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당사자, 관계인 및 관계 기관·단체 등에 대하여 사실을 조회하거나 자료 제출 또는 위원회에 출석하여 진술하거나 설명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 ② 제1항에 따라 사실 조회, 자료 제출 등을 요구받은 관계 기관·단체 등은 그 요구에 협조하여야 한다.
- ③ 등록심사위원회는 당사자에게 위원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고 자료를 제출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전문개정 2008. 3. 28.)

제12조 [의결] ① 등록심사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② 대한변호사협회는 제1항에 따른 등록심사위원회의 의결이 있으면 이에 따라 등록이나 등록거부 또는 등록취소를 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8. 3. 28.)

제13조 [운영규칙] 등록심사위원회의 심사 절차와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한변호사협회가 정한다.

(전문개정 2008. 3. 28.)

제14조 [소속 변경등록] ① 변호사는 지방변호사회의 소속을 변경하려면 새로 가입하려는 지방변호사회를 거쳐 대한변호사협회에 소속 변경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 ② 제1항에 따라 소속이 변경된 변호사는 지체 없이 종전 소속 지방변호사회에 신고하여야 한다.
- ③ 제1항의 경우에는 제7조제4항과 제8조를 준용한다.

(전문개정 2008. 3. 28.)

제15조 [개업신고 등] 변호사가 개업하거나 법률사무소를 이전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소속 지방변호사회와 대한변호사협회에 신고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8. 3. 28.)

제16조 [휴업] 변호사는 일시 휴업하려면 소속 지방변호사회와 대한변호사협회에 신고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8. 3. 28.)

제17조 [폐업] 변호사는 폐업하려면 소속 지방변호사회를 거쳐 대한변호사협회에 등록취소를 신청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8. 3. 28.)



제18조 [등록취소] ① 대한변호사협회는 변호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변호사의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지체 없이 등록취소 사유를 명시하여 등록이 취소되는 자(제1호의 경우는 제외한다)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제2호에 해당하여 변호사의 등록을 취소하려면 미리 등록심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1. 사망한 경우

2. 제4조에 따른 변호사의 자격이 없거나 제5조에 따른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3. 제17조에 따른 등록취소의 신청이 있는 경우

4. 제19조에 따른 등록취소의 명령이 있는 경우

② 대한변호사협회는 변호사가 제8조제1항제3호·제4호에 해당하면 등록심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변호사의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이 경우 제8조제1항제4호에 해당하여 등록을 취소할 때에는 등록심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1년 이상 2년 이하의 등록금지기간을 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4. 5. 20.)

③ 대한변호사협회는 제2항에 따라 등록을 취소하는 경우 지체 없이 그 사유를 명시하여 등록이 취소되는 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신설 2014. 5. 20.)

④ 제1항과 제2항의 경우에는 제8조제4항 및 제5항을 준용한다. (개정 2014. 5. 20.)

⑤ 지방변호사회는 소속 변호사에게 제1항의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면 지체 없이 대한변호사협회에 이를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4. 5. 20.)

(전문개정 2008. 3. 28.)

제19조 [등록취소명령] 법무부장관은 변호사 명부에 등록된 자가 제4조에 따른 변호사의 자격이 없거나 제5조에 따른 결격사유에 해당한다고 인정하는 경우 대한변호사협회에 그 변호사의 등록취소를 명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8. 3. 28.)

제20조 [보고 등] 대한변호사협회는 변호사의 등록 및 등록거부, 소속 변경등록 및 그 거부, 개업, 사무소 이전, 휴업 및 등록취소에 관한 사항을 지체 없이 소속 지방변호사회에 통지하고 법무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8. 3. 28.)

제 4 장 변호사의 권리와 의무 <개정 2008. 3. 28.>

제21조 [법률사무소] ① 변호사는 법률사무소를 개설할 수 있다.

② 변호사의 법률사무소는 소속 지방변호사회의 지역에 두어야 한다.

③ 변호사는 어떠한 명목으로도 둘 이상의 법률사무소를 둘 수 없다. 다만, 사무공간의 부족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대한변호사협회가 정하는 바에 따라 인접한 장소에 별도의 사무실을 두고 변호사가 주재(駐在)하는 경우에는 본래의 법률사무소와 함께 하나의 사무소로 본다.

(전문개정 2008. 3. 28.)



제21조의2 [법률사무소 개설 요건 등] ① 제4조제3호에 따른 변호사는 통산(通算)하여 6개월 이상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등(이하 “법률사무소종사기관”이라 한다)에서 법률사무에 종사하거나 연수(제6호에 한정한다)를 마치지 아니하면 단독으로 법률사무소를 개설하거나 법무법인, 법무법인(유한) 및 법무조합의 구성원이 될 수 없다. 다만, 제3호 및 제4호는 통산하여 5년 이상 「법원조직법」 제4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직에 있었던 자 1명 이상이 재직하는 기관 중 법무부장관이 법률사무에 종사가 가능하다고 지정한 곳에 한정한다. (개정 2016. 3. 2.)

1. 국회, 법원, 헌법재판소, 검찰청
2. 「법률구조법」에 따른 대한법률구조공단, 「정부법무공단법」에 따른 정부법무공단
3. 법무법인, 법무법인(유한), 법무조합, 법률사무소, 「외국법자문사법」 제2조제9호에 따른 합작법무법인
4.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와 그 밖의 법인, 기관 또는 단체
5. 국제기구, 국제법인, 국제기관 또는 국제단체 중에서 법무부장관이 법률사무에 종사가 가능하다고 지정한 곳
6. 대한변호사협회

② 대한변호사협회는 제1항제3호에 따라 지정된 법률사무소종사기관에 대하여 대한변호사협회 회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연수를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

③ 제4조제3호에 따른 변호사가 제1항에 따라 단독으로 법률사무소를 최초로 개설하거나 법무법인, 법무법인(유한) 또는 법무조합의 구성원이 되려면 법률사무소종사기관에서 제1항의 요건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증명하는 확인서(제1항제6호의 연수는 제외한다)를 받아 지방변호사회를 거쳐 대한변호사협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④ 법률사무소종사기관은 제1항에 따른 종사 또는 연수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종사하거나 연수를 받는 변호사의 숫자를 적정하게 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⑤ 법무부장관은 제1항 단서에 따라 지정된 법률사무소종사기관에 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종사 현황 등에 대한 서면조사 또는 현장조사를 실시할 수 있고, 조사 결과 원활한 법률사무 종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개선 또는 시정을 명령할 수 있다.

⑥ 법무부장관은 제5항에 따른 서면조사 또는 현장조사를 대한변호사협회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고, 대한변호사협회의 장은 그 조사 결과를 법무부장관에게 보고하고 같은 항에 따른 개선 또는 시정을 건의할 수 있다. 이 경우 수탁 사무의 처리에 관한 사항은 대한변호사협회의 회칙으로 정하고 법무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⑦ 법무부장관은 제1항 단서에 따라 지정된 법률사무소종사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받은 경우
2. 제1항 단서의 지정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로서 3개월 이내에 보충하지 아니한 경우. 이 경우 제4조제3호에 따른 변호사가 법률사무에 계속하여 종사한 경우 보충될 때까지의 기간은 법률사무소종사기관에서 법률사무에 종사한 기간으로 본다.
3. 거짓으로 제3항의 확인서를 발급한 경우



4. 제5항의 개선 또는 시정 명령을 통산하여 3회 이상 받고 이에 따르지 아니한 경우
- ⑧ 법무부장관은 제7항에 따라 지정을 취소하려면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 ⑨ 제1항제6호에 따른 연수의 방법, 절차, 비용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한변호사협회의 회칙으로 정하고 법무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 ⑩ 법무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제6호에 따라 대한변호사협회가 실시하는 연수과정에 대한 지원을 할 수 있다.
- ⑪ 제1항 단서에 따라 지정된 같은 항 제3호의 법률사무종사기관은 같은 항 제6호에 따른 대한변호사협회의 연수에 필요한 요구에 협조하여야 한다.
- ⑫ 제1항부터 제11항까지의 규정 외에 법률사무종사기관의 지정 및 취소의 절차와 방법, 지도·감독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1. 5. 17.)

제22조 [사무직원] ① 변호사는 법률사무소에 사무직원을 둘 수 있다.

② 변호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제1항에 따른 사무직원으로 채용할 수 없다. (개정 2020. 6. 9.)

1. 이 법 또는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또는 제3조,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률에 따라 유죄 판결을 받은 자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 가. 징역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그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나.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이 지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다. 징역형의 선고유예를 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2. 공무원으로서 징계처분에 의하여 파면되거나 해임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3. 피성년후견인
- ③ 사무직원의 신고, 연수(研修),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한변호사협회가 정한다.
- ④ 지방변호사회의 장은 관할 지방검찰청 검사장에게 소속 변호사의 사무직원 채용과 관련하여 제2항에 따른 전과(前科) 사실의 유무에 대한 조회를 요청할 수 있다.
- ⑤ 제4항에 따른 요청을 받은 지방검찰청 검사장은 전과 사실의 유무를 조회하여 그 결과를 회신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8. 3. 28.)

제23조 [광고] ① 변호사·법무법인·법무법인(유한) 또는 법무조합(이하 이 조에서 “변호사등”이라 한다)은 자기 또는 그 구성원의 학력, 경력, 주요 취급 업무, 업무 실적, 그 밖에 그 업무의 홍보에 필요한 사항을 신문·잡지·방송·컴퓨터통신 등의 매체를 이용하여 광고할 수 있다.

② 변호사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광고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변호사의 업무에 관하여 거짓된 내용을 표시하는 광고
2. 국제변호사를 표방하거나 그 밖에 법적 근거가 없는 자격이나 명칭을 표방하는 내용의 광고



3. 객관적 사실을 과장하거나 사실의 일부를 누락하는 등 소비자를 오도(誤導)하거나 소비자에게 오해를 불러일으킬 우려가 있는 내용의 광고
 4. 소비자에게 업무수행 결과에 대하여 부당한 기대를 가지도록 하는 내용의 광고
 5. 다른 변호사등을 비방하거나 자신의 입장에서 비교하는 내용의 광고
 6. 부정한 방법을 제시하는 등 변호사의 품위를 훼손할 우려가 있는 광고
 7. 그 밖에 광고의 방법 또는 내용이 변호사의 공공성이나 공정한 수임(受任) 질서를 해치거나 소비자에게 피해를 줄 우려가 있는 것으로서 대한변호사협회가 정하는 광고
- ③ 변호사등의 광고에 관한 심사를 위하여 대한변호사협회와 각 지방변호사회에 광고심사위원회를 둔다.
- ④ 광고심사위원회의 운영과 그 밖에 광고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한변호사협회가 정한다.
- (전문개정 2008. 3. 28.)

제24조 [품위유지의무 등] ① 변호사는 그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 ② 변호사는 그 직무를 수행할 때에 진실을 은폐하거나 거짓 진술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 (전문개정 2008. 3. 28.)

제25조 [회칙준수의무] 변호사는 소속 지방변호사회와 대한변호사협회의 회칙을 지켜야 한다.

(전문개정 2008. 3. 28.)

제26조 [비밀유지의무 등] 변호사 또는 변호사이었던 자는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전문개정 2008. 3. 28.)

제27조 [공익활동 등 지정업무 처리의무] ① 변호사는 연간 일정 시간 이상 공익활동에 종사하여야 한다.

- ② 변호사는 법령에 따라 공공기관, 대한변호사협회 또는 소속 지방변호사회가 지정한 업무를 처리하여야 한다.
- ③ 공익활동의 범위와 그 시행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한변호사협회가 정한다.
- (전문개정 2008. 3. 28.)

제28조 [장부의 작성·보관] ① 변호사는 수임에 관한 장부를 작성하고 보관하여야 한다.

- ② 제1항의 장부에는 수임받은 순서에 따라 수임일, 수임액, 위임인 등의 인적사항, 수임한 법률사건이나 법률사무의 내용,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 ③ 제1항에 따른 장부의 보관 방법, 보존 기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전문개정 2008. 3. 28.)

제28조의2 [수임사건의 건수 및 수임액의 보고] 변호사는 매년 1월 말까지 전년도에 처리한 수임사건의 건수와 수임액을 소속 지방변호사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8. 3. 28.)

제29조 [변호인선임서 등의 지방변호사회 경유] 변호사는 법률사건이나 법률사무에 관한 변호인선임서 또는 위임장 등을 공공기관에 제출할 때에는 사전에 소속 지방변호사회를 경유하여야 한다. 다만,



사전에 경유할 수 없는 급박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변호인선임서나 위임장 등을 제출한 후 지체 없이 공공기관에 소속 지방변호사회의 경유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8. 3. 28.)

제29조의2 [변호인선임서 등의 미제출 변호 금지] 변호사는 법원이나 수사기관에 변호인선임서나 위임장 등을 제출하지 아니하고는 다음 각 호의 사건에 대하여 변호하거나 대리할 수 없다.

1. 재판에 계속(係屬) 중인 사건
2. 수사 중인 형사사건(내사(內査) 중인 사건을 포함한다)

(전문개정 2008. 3. 28.)

제30조 [연고 관계 등의 선전금지] 변호사나 그 사무직원은 법률사건이나 법률사무의 수임을 위하여 재판이나 수사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원과의 연고(緣故) 등 사적인 관계를 드러내며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것으로 선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전문개정 2008. 3. 28.)

제31조 [수임제한] ① 변호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건에 관하여는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다. 다만, 제2호 사건의 경우 수임하고 있는 사건의 위임인이 동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당사자 한쪽으로부터 상의(相議)를 받아 그 수임을 승낙한 사건의 상대방이 위임하는 사건
2. 수임하고 있는 사건의 상대방이 위임하는 다른 사건
3. 공무원·조정위원 또는 중재인으로서 직무상 취급하거나 취급하게 된 사건

② 제1항제1호 및 제2호를 적용할 때 법무법인·법무법인(유한)·법무조합이 아니면서도 변호사 2명 이상이 사건의 수임·처리나 그 밖의 변호사 업무 수행 시 통일된 형태를 갖추고 수익을 분배하거나 비용을 분담하는 형태로 운영되는 법률사무소는 하나의 변호사로 본다.

③ 법관, 검사, 장기복무 군법무관, 그 밖의 공무원 직에 있다가 퇴직(재판연구원, 사법연수생과 병역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군인·공익법무관 등으로 근무한 자는 제외한다)하여 변호사 개업을 한 자(이하 “공직 퇴임변호사”라 한다)는 퇴직 전 1년부터 퇴직한 때까지 근무한 법원, 검찰청, 군사법원, 금융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 경찰관서 등 국가기관(대법원, 고등법원, 지방법원 및 지방법원 지원과 그에 대응하여 설치된 「검찰청법」 제3조제1항 및 제2항의 대검찰청, 고등검찰청, 지방검찰청, 지방검찰청 지청은 각각 동일한 국가기관으로 본다)이 처리하는 사건을 퇴직한 날부터 1년 동안 수임할 수 없다. 다만, 국선변호 등 공익목적의 수임과 사건당사자가 「민법」 제767조에 따른 친족인 경우의 수임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3. 5. 28.)

④ 제3항의 수임할 수 없는 경우는 다음 각 호를 포함한다. (개정 2016. 3. 2.)

1. 공직퇴임변호사가 법무법인, 법무법인(유한), 법무조합 또는 「외국법자문사법」 제2조제9호에 따른 합작법무법인(이하 이 조에서 “법무법인등”이라 한다)의 담당변호사로 지정되는 경우
2. 공직퇴임변호사가 다른 변호사, 법무법인등으로부터 명의를 빌려 사건을 실질적으로 처리하는 등 사실상 수임하는 경우
3. 법무법인등의 경우 사건수임계약서, 소송서류 및 변호사의견서 등에는 공직퇴임변호사가 담당변



호사로 표시되지 않았으나 실질적으로는 사건의 수임이나 수행에 관여하여 수임료를 받는 경우
⑤ 제3항의 법원 또는 검찰청 등 국가기관의 범위, 공익목적 수임의 범위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1. 5. 17.)

(전문개정 2008. 3. 28.)

제31조의2 [변호사시험합격자의 수임제한] ① 제4조제3호에 따른 변호사는 법률사무종사기관에서 통산하여 6개월 이상 법률사무에 종사하거나 연수를 마치지 아니하면 사건을 단독 또는 공동으로 수임(제50조제1항, 제58조의16 또는 제58조의30에 따라 법무법인·법무법인(유한) 또는 법무조합의 담당변호사로 지정하는 경우나 「외국법자문사법」 제35조의20에 따라 합작법무법인의 담당변호사로 지정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할 수 없다. (개정 2016. 3. 2.)

② 제4조제3호에 따른 변호사가 최초로 단독 또는 공동으로 수임하는 경우에 관하여는 제21조의2 제3항을 준용한다.

(본조신설 2011. 5. 17.)

제32조 [계쟁권리의 양수 금지] 변호사는 계쟁권리(係爭權利)를 양수하여서는 아니 된다.

(전문개정 2008. 3. 28.)

제33조 [독직행위의 금지] 변호사는 수임하고 있는 사건에 관하여 상대방으로부터 이익을 받거나 이를 요구 또는 약속하여서는 아니 된다.

(전문개정 2008. 3. 28.)

제34조 [변호사가 아닌 자와의 동업 금지 등] ① 누구든지 법률사건이나 법률사무의 수임에 관하여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사전에 금품·향응 또는 그 밖의 이익을 받거나 받기로 약속하고 당사자 또는 그 밖의 관계인을 특정한 변호사나 그 사무직원에게 소개·알선 또는 유인하는 행위
2. 당사자 또는 그 밖의 관계인을 특정한 변호사나 그 사무직원에게 소개·알선 또는 유인한 후 그 대가로 금품·향응 또는 그 밖의 이익을 받거나 요구하는 행위

② 변호사나 그 사무직원은 법률사건이나 법률사무의 수임에 관하여 소개·알선 또는 유인의 대가로 금품·향응 또는 그 밖의 이익을 제공하거나 제공하기로 약속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변호사나 그 사무직원은 제109조제1호, 제111조 또는 제112조제1호에 규정된 자로부터 법률사건이나 법률사무의 수임을 알선받거나 이러한 자에게 자기의 명의를 이용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변호사가 아닌 자는 변호사를 고용하여 법률사무소를 개설·운영하여서는 아니 된다.

⑤ 변호사가 아닌 자는 변호사가 아니면 할 수 없는 업무를 통하여 보수나 그 밖의 이익을 분배받아서는 아니 된다.

(전문개정 2008. 3. 28.)

제35조 [사건 유치 목적의 출입금지 등] 변호사나 그 사무직원은 법률사건이나 법률사무를 유상으로 유치할 목적으로 법원·수사기관·교정기관 및 병원에 출입하거나 다른 사람을 파견하거나 출입 또는 주재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전문개정 2008. 3. 28.)



제36조 [재판·수사기관 공무원의 사건 소개 금지] 재판기관이나 수사기관의 소속 공무원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기가 근무하는 기관에서 취급 중인 법률사건이나 법률사무의 수임에 관하여 당사자 또는 그 밖의 관계인을 특정한 변호사나 그 사무직원에게 소개·알선 또는 유인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사건 당사자나 사무 당사자가 「민법」 제767조에 따른 친족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전문개정 2008. 3. 28.)

제37조 [직무취급자 등의 사건 소개 금지] ① 재판이나 수사 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은 직무상 관련이 있는 법률사건 또는 법률사무의 수임에 관하여 당사자 또는 그 밖의 관계인을 특정한 변호사나 그 사무직원에게 소개·알선 또는 유인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제1항에서 “직무상 관련”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재판이나 수사 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이 직무상 취급하고 있거나 취급한 경우
 2. 제1호의 공무원이 취급하고 있거나 취급한 사건에 관하여 그 공무원을 지휘·감독하는 경우
- (전문개정 2008. 3. 28.)

제38조 [겸직 제한] ① 변호사는 보수를 받는 공무원을 겸할 수 없다. 다만, 국회의원이거나 지방의회 의원 또는 상시 근무가 필요 없는 공무원이 되거나 공공기관에서 위촉한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변호사는 소속 지방변호사회의 허가 없이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할 수 없다. 다만, 법무법인·법무법인(유한) 또는 법무조합의 구성원이 되거나 소속 변호사가 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상업이나 그 밖에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를 경영하거나 이를 경영하는 자의 사용인이 되는 것
2.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법인의 업무집행사원·이사 또는 사용인이 되는 것

③ 변호사가 휴업한 경우에는 제1항과 제2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전문개정 2008. 3. 28.)

제39조 [감독] 변호사는 소속 지방변호사회, 대한변호사협회 및 법무부장관의 감독을 받는다.

(전문개정 2008. 3. 28.)

제 5 장 법무법인 <개정 2008. 3. 28.>

제40조 [법무법인의 설립] 변호사는 그 직무를 조직적·전문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법무법인을 설립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8. 3. 28.)

제41조 [설립 절차] 법무법인을 설립하려면 구성원이 될 변호사가 정관을 작성하여 주사무소(主事務所) 소재지의 지방변호사회와 대한변호사협회를 거쳐 법무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정관을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전문개정 2008. 3. 28.)



제42조 [정관의 기재사항] 법무법인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목적, 명칭, 주사무소 및 분사무소(分事務所)의 소재지
2. 구성원의 성명·주민등록번호 및 법무법인을 대표할 구성원의 주소
3. 출자(出資)의 종류와 그 가액(價額) 또는 평가의 기준
4. 구성원의 가입·탈퇴와 그 밖의 변경에 관한 사항
5. 구성원 회의에 관한 사항
6. 법무법인의 대표에 관한 사항
7. 자산과 회계에 관한 사항
8. 존립 시기나 해산 사유를 정한 경우에는 그 시기 또는 사유

(전문개정 2008. 3. 28.)

제43조 [등기] ① 법무법인은 설립인가를 받으면 2주일 이내에 설립등기를 하여야 한다. 등기사항이 변경되었을 때에도 또한 같다.

② 제1항의 등기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목적, 명칭, 주사무소 및 분사무소의 소재지
2. 구성원의 성명·주민등록번호 및 법무법인을 대표할 구성원의 주소
3. 출자의 종류·가액 및 이행 부분
4. 법무법인의 대표에 관한 사항
5. 둘 이상의 구성원이 공동으로 법무법인을 대표할 것을 정한 경우에는 그 규정
6. 존립 시기나 해산 사유를 정한 경우에는 그 시기 또는 사유
7. 설립인가 연월일

③ 법무법인은 그 주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전문개정 2008. 3. 28.)

제44조 [명칭] ① 법무법인은 그 명칭 중에 법무법인이라는 문자를 사용하여야 한다.

② 법무법인이 아닌 자는 법무법인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전문개정 2008. 3. 28.)

제45조 [구성원] ① 법무법인은 3명 이상의 변호사로 구성하며, 그중 1명 이상이 통산하여 5년 이상 「법원조직법」 제4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직에 있었던 자이어야 한다. (개정 2011. 5. 17.)

② 법무법인은 제1항에 따른 구성원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게 된 경우에는 3개월 이내에 보충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8. 3. 28.)

제46조 [구성원의 탈퇴] ① 구성원은 임의로 탈퇴할 수 있다.

② 구성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으면 당연히 탈퇴한다.

1. 사망한 경우
2. 제18조에 따라 등록이 취소된 경우
3. 제102조제2항에 따라 업무정지명령을 받은 경우



4. 이 법이나 「공증인법」에 따라 정직(停職) 이상의 징계처분을 받은 경우

5. 정관에 정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전문개정 2008. 3. 28.)

제47조 [구성원 아닌 소속 변호사] 법무법인은 구성원 아닌 소속 변호사를 둘 수 있다. (개정 2009. 2. 6.)

(전문개정 2008. 3. 28.)

제48조 [사무소] ① 법무법인은 분사무소를 둘 수 있다. 분사무소의 설치기준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② 법무법인이 사무소를 개업 또는 이전하거나 분사무소를 둔 경우에는 지체 없이 주사무소 소재지의 지방변호사회와 대한변호사협회를 거쳐 법무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③ 법무법인의 구성원과 구성원 아닌 소속 변호사는 법무법인 외에 따로 법률사무소를 둘 수 없다.

(전문개정 2008. 3. 28.)

제49조 [업무] ① 법무법인은 이 법과 다른 법률에 따른 변호사의 직무에 속하는 업무를 수행한다. (개정 2009. 2. 6.)

② 법무법인은 다른 법률에서 변호사에게 그 법률에 정한 자격을 인정하는 경우 그 구성원이나 구성원 아닌 소속 변호사가 그 자격에 의한 직무를 수행할 수 있을 때에는 그 직무를 법인의 업무로 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8. 3. 28.)

제50조 [업무 집행 방법] ① 법무법인은 법인 명의로 업무를 수행하며 그 업무를 담당할 변호사를 지정하여야 한다. 다만, 구성원 아닌 소속 변호사에 대하여는 구성원과 공동으로 지정하여야 한다.

② 법무법인이 제49조제2항에 따른 업무를 할 때에는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있는 변호사 중에서 업무를 담당할 자를 지정하여야 한다.

③ 법무법인이 제1항에 따라 업무를 담당할 변호사(이하 “담당변호사”라 한다)를 지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구성원 모두를 담당변호사로 지정한 것으로 본다.

④ 법무법인은 담당변호사가 업무를 담당하지 못하게 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제1항에 따라 다시 담당변호사를 지정하여야 한다. 다시 담당변호사를 지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구성원 모두를 담당변호사로 지정한 것으로 본다.

⑤ 법무법인은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담당변호사를 지정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이를 수임사건의 위임인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담당변호사를 변경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⑥ 담당변호사는 지정된 업무를 수행할 때에 각자가 그 법무법인을 대표한다.

⑦ 법무법인이 그 업무에 관하여 작성하는 문서에는 법인명의를 표시하고 담당변호사가 기명날인하거나 서명하여야 한다. (개정 2009. 2. 6.)

(전문개정 2008. 3. 28.)

제51조 [업무 제한] 법무법인은 그 법인이 인가공증인으로서 공증한 사건에 관하여는 변호사 업무를 수행할 수 없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9. 2. 6.)

(전문개정 2008. 3. 28.)



제52조 [구성원 등의 업무 제한] ① 법무법인의 구성원 및 구성원 아닌 소속 변호사는 자기나 제3자의 계산으로 변호사의 업무를 수행할 수 없다.

② 법무법인의 구성원이었거나 구성원 아닌 소속 변호사이었던 자는 법무법인의 소속 기간 중 그 법인이 상의를 받아 수임을 승낙한 사건에 관하여는 변호사의 업무를 수행할 수 없다.

(전문개정 2008. 3. 28.)

제53조 [인가취소] ① 법무부장관은 법무법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설립인가를 취소할 수 있다.

1. 제45조제2항을 위반하여 3개월 이내에 구성원을 보충하지 아니한 경우
2. 업무 집행에 관하여 법령을 위반한 경우

② 법무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법무법인의 설립인가를 취소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8. 3. 28.)

제54조 [해산] ① 법무법인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해산한다.

1. 정관에 정한 해산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
2. 구성원 전원의 동의가 있을 때
3. 합병하였을 때
4. 파산하였을 때
5. 설립인가가 취소되었을 때

② 법무법인이 해산한 경우에는 청산인은 지체 없이 주사무소 소재지의 지방변호사회와 대한변호사 협회를 거쳐 법무부장관에게 그 사실을 신고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8. 3. 28.)

제55조 [합병] ① 법무법인은 구성원 전원이 동의하면 다른 법무법인과 합병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경우에는 제41조부터 제43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전문개정 2008. 3. 28.)

제55조의2 [조직변경] ① 법무법인(유한) 또는 법무조합의 설립요건을 갖춘 법무법인은 구성원 전원의 동의가 있으면 법무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법무법인(유한) 또는 법무조합으로 조직변경을 할 수 있다.

② 법무법인이 제1항에 따라 법무부장관으로부터 법무법인(유한)의 인가를 받은 때에는 2주일 이내에 주사무소 소재지에서 법무법인의 해산등기 및 법무법인(유한)의 설립등기를 하여야 하고, 법무조합의 인가를 받은 때에는 2주일 이내에 주사무소 소재지에서 법무법인의 해산등기를 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조직변경의 경우 법무법인에 현존하는 순재산액이 새로 설립되는 법무법인(유한)의 자본총액보다 적은 때에는 제1항에 따른 동의가 있을 당시의 구성원들이 연대하여 그 차액을 보충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라 설립된 법무법인(유한) 또는 법무조합의 구성원 중 종전의 법무법인의 구성원이었던 자는 제2항에 따른 등기를 하기 전에 발생한 법무법인의 채무에 대하여 법무법인(유한)의 경우에는 등기 후 2년이 될 때까지, 법무조합의 경우에는 등기 후 5년이 될 때까지 법무법인의 구성원으로서 책임을 진다.

(본조신설 2008. 3. 28.)



제56조 [통지] 법무부장관은 법무법인의 인가 및 그 취소, 해산 및 합병이 있으면 지체 없이 주사무소 소재지의 지방변호사회와 대한변호사협회에 통지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8. 3. 28.)

제57조 [준용규정] 법무법인에 관하여는 제22조, 제27조, 제28조, 제28조의2, 제29조, 제29조의2, 제30조, 제31조제1항, 제32조부터 제37조까지, 제39조 및 제10장을 준용한다.

(전문개정 2008. 3. 28.)

제58조 [다른 법률의 준용] ① 법무법인에 관하여 이 법에 정한 것 외에는 「상법」 중 합명회사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② <삭제> (2009. 2. 6.)

(전문개정 2008. 3. 28.)

제 5 장의2 법무법인(유한) <신설 2005. 1. 27.>

제58조의2 [설립] 변호사는 그 직무를 조직적·전문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법무법인(유한)을 설립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8. 3. 28.)

제58조의3 [설립 절차] 법무법인(유한)을 설립하려면 구성원이 될 변호사가 정관을 작성하여 주사무소 소재지의 지방변호사회와 대한변호사협회를 거쳐 법무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정관을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전문개정 2008. 3. 28.)

제58조의4 [정관의 기재 사항] 법무법인(유한)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목적, 명칭, 주사무소 및 분사무소의 소재지
2. 구성원의 성명·주민등록번호 및 법무법인(유한)을 대표할 구성원의 주소
3. 자본의 총액과 각 구성원의 출자좌수
4. 구성원의 가입·탈퇴와 그 밖의 변경에 관한 사항
5. 구성원 회의에 관한 사항
6. 법무법인(유한)의 대표에 관한 사항
7. 자산과 회계에 관한 사항
8. 존립 기간이나 해산 사유를 정한 경우에는 그 기간 또는 사유

(전문개정 2008. 3. 28.)

제58조의5 [등기] ① 법무법인(유한)은 설립인가를 받으면 2주일 이내에 설립등기를 하여야 한다. 등기 사항이 변경되었을 때에도 또한 같다.

② 제1항의 등기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목적, 명칭, 주사무소 및 분사무소의 소재지



2. 출좌 1좌의 금액, 자본 총액 및 이행 부분
3. 이사의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
4. 법무법인(유한)을 대표할 이사의 성명 및 주소
5. 둘 이상의 이사가 공동으로 법무법인(유한)을 대표할 것을 정한 경우에는 그 규정
6. 존립 기간이나 해산 사유를 정한 경우에는 그 기간 또는 사유
7. 감사가 있을 때에는 그 성명·주민등록번호 및 주소
8. 설립인가 연월일

③ 법무법인(유한)은 그 주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전문개정 2008. 3. 28.)

제58조의6 [구성원 등] ① 법무법인(유한)은 7명 이상의 변호사로 구성하며, 그중 2명 이상이 통산하여 10년 이상 「법원조직법」 제4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직에 있었던 자이어야 한다.

② 법무법인(유한)은 구성원 아닌 소속 변호사를 둘 수 있다.

③ 법무법인(유한)이 제1항에 따른 구성원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게 된 경우에는 3개월 이내에 보충하여야 한다.

④ 법무법인(유한)은 3명 이상의 이사를 두어야 한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이사가 될 수 없다.

1. 구성원이 아닌 자

2. 설립인가가 취소된 법무법인(유한)의 이사이었던 자(취소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의 이사이었던 자로 한정한다)로서 그 취소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3. 제102조에 따른 업무정지 기간 중에 있는 자

⑤ 법무법인(유한)에는 한 명 이상의 감사를 둘 수 있다. 이 경우 감사는 변호사이어야 한다.

(전문개정 2008. 3. 28.)

제58조의7 [자본 총액 등] ① 법무법인(유한)의 자본 총액은 5억원 이상이어야 한다.

② 출자 1좌의 금액은 1만원으로 한다.

③ 각 구성원의 출자좌수는 3천좌 이상이어야 한다.

④ 법무법인(유한)은 직전 사업연도 말 대차대조표의 자산 총액에서 부채 총액을 뺀 금액이 5억원에 미달하면 부족한 금액을 매 사업연도가 끝난 후 6개월 이내에 증자를 하거나 구성원의 증여로 보전(補填)하여야 한다.

⑤ 제4항에 따른 증여는 이를 특별이익으로 계상한다.

⑥ 법무부장관은 법무법인(유한)이 제4항에 따른 증자나 보전을 하지 아니하면 기간을 정하여 증자나 보전을 명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8. 3. 28.)

제58조의8 [다른 법인에의 출자 제한 등] ① 법무법인(유한)은 자기자본에 100분의 50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을 곱한 금액을 초과하여 다른 법인에 출자하거나 타인을 위한 채무보증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제1항에 규정된 자기자본은 직전 사업연도 말 대차대조표의 자산 총액에서 부채 총액을 뺀 금액을 말한다. 새로 설립된 법무법인(유한)으로서 직전 사업연도의 대차대조표가 없는 경우에는 설립 당시의 납입자본금을 말한다.

(전문개정 2008. 3. 28.)

제58조의9 [회계처리 등] ① 법무법인(유한)은 이 법에 정한 것 외에는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회계처리기준에 따라 회계처리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7. 10. 31.)

② 법무법인(유한)은 제1항의 회계처리기준에 따른 대차대조표를 작성하여 매 사업연도가 끝난 후 3개월 이내에 법무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법무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제2항에 따른 대차대조표가 적정하게 작성되었는지를 검사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8. 3. 28.)

제58조의10 [구성원의 책임] 법무법인(유한)의 구성원의 책임은 이 법에 규정된 것 외에는 그 출자금 액을 한도로 한다.

(전문개정 2008. 3. 28.)

제58조의11 [수임사건과 관련된 손해배상책임] ① 담당변호사(담당변호사가 지정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법무법인(유한)의 구성원 모두를 말한다)는 수임사건에 관하여 고의나 과실로 그 수임사건의 위임인에게 손해를 발생시킨 경우에는 법무법인(유한)과 연대하여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② 담당변호사가 제1항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지는 경우 그 담당변호사를 직접 지휘·감독한 구성원도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다만, 지휘·감독을 할 때에 주의를 게을리하지 아니하였음을 증명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법무법인(유한)은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에 관한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건수임계약서와 광고물에 명시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8. 3. 28.)

제58조의12 [손해배상 준비금 등] ① 법무법인(유한)은 수임사건과 관련한 제58조의11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보장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연도마다 손해배상 준비금을 적립하거나 보험 또는 대한변호사협회가 운영하는 공제기금에 가입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손해배상 준비금, 손해배상보험 또는 공제기금은 법무부장관의 승인 없이는 손해배상 외의 다른 용도로 사용하거나 그 보험계약 또는 공제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여서는 아니 된다.

(전문개정 2008. 3. 28.)

제58조의13 [인가취소] 법무부장관은 법무법인(유한)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설립인가를 취소할 수 있다.

1. 제58조의6제3항을 위반하여 3개월 이내에 구성원을 보충하지 아니한 경우
2. 이사 중에 제58조의6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있는 경우. 다만, 해당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그 이사를 개임(改任)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제58조의8제1항을 위반하여 다른 법인에 출자하거나 타인의 채무를 보증한 경우



4. 제58조의9제1항을 위반하여 회계처리를 한 경우
5. 제58조의12제1항을 위반하여 손해배상 준비금을 적립하지 아니하거나 보험 또는 공제기금에 가입하지 아니한 경우
6. 업무 집행에 관하여 법령을 위반한 경우

(전문개정 2008. 3. 28.)

제58조의14 [해산] ① 법무법인(유한)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해산한다.

1. 정관에 정한 해산사유가 발생하였을 때
 2. 구성원 과반수와 총 구성원의 의결권의 4분의 3 이상을 가진 자가 동의하였을 때
 3. 합병하였을 때
 4. 파산하였을 때
 5. 설립인가가 취소되었을 때
 6. 존립 기간을 정한 경우에는 그 기간이 지났을 때
- ② 법무법인(유한)이 해산한 경우에는 청산인은 지체 없이 주사무소 소재지의 지방변호사회와 대한변호사협회를 거쳐 법무부장관에게 그 사실을 신고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8. 3. 28.)

제58조의15 [통지] 법무부장관은 법무법인(유한)의 인가 및 그 취소, 해산 및 합병이 있으면 지체 없이 주사무소 및 분사무소 소재지의 지방변호사회와 대한변호사협회에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8. 3. 28.)

제58조의16 [준용규정] 법무법인(유한)에 관하여는 제22조, 제27조, 제28조, 제28조의2, 제29조, 제29조의2, 제30조, 제31조제1항, 제32조부터 제37조까지, 제39조, 제44조, 제46조부터 제52조까지, 제53조제2항 및 제10장을 준용한다.

(전문개정 2008. 3. 28.)

제58조의17 [다른 법률의 준용] ① 법무법인(유한)에 관하여 이 법에 정한 것 외에는 「상법」 중 유한회사에 관한 규정(「상법」 제545조는 제외한다)을 준용한다.

② <삭제> (2009. 2. 6.)

(전문개정 2008. 3. 28.)

제 5 장의3 법무조합 <신설 2005. 1. 27.>

제58조의18 [설립] 변호사는 그 직무를 조직적·전문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법무조합을 설립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8. 3. 28.)

제58조의19 [설립 절차] ① 법무조합을 설립하려면 구성원이 될 변호사가 규약을 작성하여 주사무소



소재지의 지방변호사회와 대한변호사협회를 거쳐 법무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규약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법무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법무조합의 설립을 인가한 경우에는 관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③ 법무조합은 제2항에 따른 고시가 있을 때에 성립한다.

(전문개정 2008. 3. 28.)

제58조의20 [규약의 기재 사항] 법무조합의 규약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목적, 명칭, 주사무소 및 분사무소의 소재지
2. 구성원의 성명·주민등록번호 및 법무조합을 대표할 구성원의 주소
3. 구성원의 가입·탈퇴와 그 밖의 변경에 관한 사항
4. 출자의 종류 및 그 가액과 평가기준에 관한 사항
5. 손익분배에 관한 사항
6. 법무조합의 대표에 관한 사항
7. 자산과 회계에 관한 사항
8. 존립 기간이나 해산 사유를 정한 경우에는 그 기간 또는 사유

(전문개정 2008. 3. 28.)

제58조의21 [규약의 제출 등] ① 법무조합은 설립인가를 받으면 2주일 이내에 주사무소 및 분사무소 소재지의 지방변호사회에 규약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서면을 제출하여야 한다. 규약이나 기재 사항을 변경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

1. 목적, 명칭, 주사무소 및 분사무소의 소재지
2. 구성원의 성명·주민등록번호 및 법무조합을 대표할 구성원의 주소
3. 출자금액의 총액
4. 법무조합의 대표에 관한 사항
5. 존립 기간이나 해산 사유를 정한 경우에는 그 기간 또는 사유
6. 설립인가 연월일

② 법무조합의 주사무소 및 분사무소 소재지의 지방변호사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서면을 비치하여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1. 제1항 각 호의 사항이 적힌 서면
2. 제58조의29에 따른 설립인가 및 그 취소와 해산에 관한 서면
3. 제58조의30에 따라 준용되는 제58조의12에 따른 손해배상 준비금을 적립하였거나 보험 또는 공제기금에 가입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면

(전문개정 2008. 3. 28.)

제58조의22 [구성원 등] ① 법무조합은 7명 이상의 변호사로 구성하며, 그중 2명 이상이 통산하여 10년 이상 「법원조직법」 제4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직에 있었던 자이어야 한다.

② 법무조합은 구성원 아닌 소속 변호사를 둘 수 있다.

③ 법무조합이 제1항에 따른 구성원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게 된 경우에는 3개월 이내에 보충하여



야 한다.

(전문개정 2008. 3. 28.)

제58조의23 [업무 집행] ① 법무조합의 업무 집행은 구성원 과반수의 결의에 의한다. 다만, 둘 이상의 업무집행구성원을 두는 경우에는 그 과반수의 결의에 의한다.

② 법무조합은 규약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업무집행구성원 전원으로 구성된 운영위원회를 둘 수 있다.

(전문개정 2008. 3. 28.)

제58조의24 [구성원의 책임] 구성원은 법무조합의 채무(제58조의25에 따른 손해배상책임과 관련한 채무는 제외한다)에 대하여 그 채무 발생 당시의 손실분담 비율에 따라 책임을 진다.

(전문개정 2008. 3. 28.)

제58조의25 [수임사건과 관련된 손해배상책임] ① 담당변호사(담당변호사가 지정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법무조합의 구성원 모두를 말한다)가 수임사건에 관하여 고의나 과실로 그 수임사건의 위임인에게 손해를 발생시킨 경우 담당변호사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② 담당변호사가 제1항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지는 경우 그 담당변호사를 직접 지휘·감독한 구성원도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다만, 지휘·감독을 할 때에 주의를 게을리하지 아니하였음을 증명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책임을 지지 아니하는 구성원은 제1항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에 대하여는 조합재산의 범위 내에서 그 책임을 진다.

④ 법무조합은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에 관한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건수임계약서와 광고물에 명시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8. 3. 28.)

제58조의26 [소송당사자능력] 법무조합은 소송의 당사자가 될 수 있다.

(전문개정 2008. 3. 28.)

제58조의27 [인가취소] 법무부장관은 법무조합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설립인가를 취소할 수 있다.

1. 제58조의22제3항을 위반하여 3개월 이내에 구성원을 보충하지 아니한 경우
2. 제58조의30에 따라 준용되는 제58조의12제1항을 위반하여 손해배상 준비금을 적립하지 아니하거나 보험 또는 공제기금에 가입하지 아니한 경우
3. 업무 집행에 관하여 법령을 위반한 경우

(전문개정 2008. 3. 28.)

제58조의28 [해산] ① 법무조합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해산한다.

1. 규약에 정한 해산사유가 발생하였을 때
2. 구성원 과반수의 동의가 있을 때. 다만, 규약으로 그 비율을 높게 할 수 있다.
3. 설립인가가 취소되었을 때
4. 존립 기간을 정한 경우에는 그 기간이 지났을 때

② 법무조합이 해산한 경우 청산인은 지체 없이 주사무소 소재지의 지방변호사회와 대한변호사협회



를 거쳐 법무부장관에게 그 사실을 신고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8. 3. 28.)

제58조의29 [통지] 법무부장관은 법무조합의 설립인가 및 그 취소나 해산이 있으면 지체 없이 주사무소 및 분사무소 소재지의 지방변호사회와 대한변호사협회에 통지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8. 3. 28.)

제58조의30 [준용규정] 법무조합에 관하여는 제22조, 제27조, 제28조, 제28조의2, 제29조, 제29조의2, 제30조, 제31조제1항, 제32조부터 제37조까지, 제39조, 제44조, 제46조부터 제52조까지, 제53조제2항, 제58조의9제1항, 제58조의12 및 제10장을 준용한다.

(전문개정 2008. 3. 28.)

제58조의31 [다른 법률의 준용] ① 법무조합에 관하여 이 법에 정한 것 외에는 「민법」 중 조합에 관한 규정(「민법」 제713조는 제외한다)을 준용한다.

② <삭제> (2009. 2. 6.)

(전문개정 2008. 3. 28.)

제 6 장 <삭제> <2005. 1. 27.>

제59조 <삭제> (2005. 1. 27.)

제60조 <삭제> (2005. 1. 27.)

제61조 <삭제> (2005. 1. 27.)

제62조 <삭제> (2005. 1. 27.)

제63조 <삭제> (2005. 1. 27.)

제 7 장 지방변호사회 <개정 2008. 3. 28.>

제64조 [목적 및 설립] ① 변호사의 품위를 보전하고, 변호사 사무의 개선과 발전을 도모하며, 변호사의 지도와 감독에 관한 사무를 하도록 하기 위하여 지방법원 관할 구역마다 1개의 지방변호사회를 둔다. 다만, 서울특별시는 1개의 지방변호사회를 둔다.

② 지방변호사회는 법인으로 한다.

(전문개정 2008. 3. 28.)

제65조 [설립 절차] 지방변호사회를 설립할 때에는 회원이 될 변호사가 회칙을 정하여 대한변호사협회를 거쳐 법무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회칙을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전문개정 2008. 3. 28.)



제66조 [회칙의 기재 사항] 지방변호사회의 회칙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1. 4. 5.)

1. 명칭과 사무소의 소재지
2. 회원의 가입 및 탈퇴에 관한 사항
3. 총회, 이사회, 그 밖의 기관의 구성·권한 및 회의에 관한 사항
4. 임원의 구성·수·선임·임기 및 직무에 관한 사항
5. 회원의 권리 및 의무에 관한 사항
6. 회원의 지도 및 감독에 관한 사항
7. 자산과 회계에 관한 사항

(전문개정 2008. 3. 28.)

제67조 [고시] 법무부장관은 지방변호사회의 설립을 인가하였을 때에는 그 명칭, 사무소의 소재지 및 설립 연월일을 고시하여야 한다. 명칭이나 사무소 소재지가 변경되었을 때에도 또한 같다.

(전문개정 2008. 3. 28.)

제68조 [가입 및 탈퇴] ① 제7조에 따른 등록을 한 변호사는 가입하려는 지방변호사회의 회원이 된다.

② 제14조에 따른 소속 변경등록을 한 변호사는 새로 가입하려는 지방변호사회의 회원이 되고, 종전 소속 지방변호사회를 당연히 탈퇴한다.

③ 제18조에 따라 등록이 취소된 변호사는 소속 지방변호사회를 당연히 탈퇴한다.

(전문개정 2008. 3. 28.)

제69조 [임원] ① 지방변호사회에는 다음 각 호의 임원을 둔다. (개정 2011. 4. 5.)

1. 회장
2. 부회장
3. 상임이사
4. 이사
5. 감사

② 제1항 각 호의 임원의 구성·수·선임·임기 및 직무에 관한 사항은 지방변호사회 회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4. 12. 30.)

(전문개정 2008. 3. 28.)

제69조의2 [회장] 지방변호사회의 장은 지방변호사회를 대표하고, 지방변호사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본조신설 2011. 4. 5.)

제70조 [총회] ① 지방변호사회에 총회를 둔다.

② 총회는 개업신고를 한 변호사로 구성한다. 다만, 회원수가 200명 이상인 경우에는 회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회원이 선출하는 대의원으로 구성할 수 있다.

③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총회의 결의를 거쳐야 한다.

1. 회칙의 변경
2. 예산 및 결산

(전문개정 2008. 3. 28.)



제71조 [이사회] ① 지방변호사회에 이사회를 둔다.

② 이사회는 지방변호사회 업무에 관한 중요 사항을 결의한다.

(전문개정 2008. 3. 28.)

제72조 [국선변호 협력의무 등] ① 지방변호사회는 법원에 국선변호인 예정자 명단을 제출하고 국선변호인의 변호 활동을 지원하는 등 국선변호인제도의 효율적인 운영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② 지방변호사회는 재정결정(裁定決定)에 따라 법원의 심판에 부쳐진 사건에 대한 공소유지 변호사의 추천, 「민사조정법」에 따른 조정위원의 추천 등 사법제도의 건전한 운영에 성실히 협력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8. 3. 28.)

제73조 [사법연수생의 지도] 지방변호사회는 사법연수원장의 위촉에 따라 사법연수생의 변호사 실무 수습을 담당한다.

(전문개정 2008. 3. 28.)

제74조 [분쟁의 조정] 지방변호사회는 그 회원인 변호사 상호간 또는 그 회원인 변호사와 위임인 사이에 직무상 분쟁이 있으면 당사자의 청구에 의하여 이를 조정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8. 3. 28.)

제75조 [자문과 건의] 지방변호사회는 공공기관에서 자문받은 사항에 관하여 회답하여야 하며, 법률사무나 그 밖에 이와 관련된 사항에 대하여 공공기관에 건의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8. 3. 28.)

제75조의2 [사실조회 등] 지방변호사회는 회원인 변호사가 수임사건과 관련하여 공공기관에 조회하여 필요한 사항의 회신이나 보관 중인 문서의 등본 또는 사본의 송부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그 신청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할 만한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가 아니면 그 신청에 따라 공공기관에 이를 촉탁하고 회신 또는 송부 받은 결과물을 신청인에게 제시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08. 3. 28.)

제76조 [회원들에 관한 정보제공의무] ① 지방변호사회는 의뢰인의 변호사 선임의 편의를 도모하고 법률사건이나 법률사무 수임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회원들의 학력, 경력, 주요 취급 업무, 업무 실적 등 사건 수임을 위한 정보를 의뢰인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정보의 제공 범위, 제공 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각 지방변호사회가 정한다.

(전문개정 2008. 3. 28.)

제77조 [감독] ① 지방변호사회는 대한변호사협회와 법무부장관의 감독을 받는다.

② 지방변호사회는 총회의 결의 내용을 지체 없이 대한변호사협회와 법무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 법무부장관은 제2항의 결의가 법령이나 회칙에 위반된다고 인정하면 대한변호사협회의 장의 의견을 들어 취소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8. 3. 28.)

제77조의2 [비밀 준수] 지방변호사회의 임직원이거나 임직원이었던 자는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가 아니면 제28조의2, 제89조의4제1항 및 제89조의5제1항에 관한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본조신설 2008. 3. 28.)

제 8 장 대한변호사협회 <개정 2008. 3. 28.>

제78조 [목적 및 설립] ① 변호사의 품위를 보전하고, 법률사무의 개선과 발전, 그 밖의 법률문화의 창달을 도모하며, 변호사 및 지방변호사회의 지도 및 감독에 관한 사무를 하도록 하기 위하여 대한변호사협회를 둔다.

② 대한변호사협회는 법인으로 한다.

(전문개정 2008. 3. 28.)

제79조 [설립 절차] 지방변호사회는 연합하여 회칙을 정하고 법무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대한변호사협회를 설립하여야 한다. 회칙을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전문개정 2008. 3. 28.)

제80조 [회칙의 기재 사항] 대한변호사협회의 회칙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제66조 각 호의 사항
2. 법률구조사업에 관한 사항
3. 변호사의 연수에 관한 사항
4. 변호사의 징계에 관한 사항
5. 변호사와 지방변호사회의 지도 및 감독에 관한 사항

(전문개정 2008. 3. 28.)

제80조의2 [협회장] 대한변호사협회의 장은 대한변호사협회를 대표하고, 대한변호사협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본조신설 2011. 4. 5.)

제81조 [임원] ① 대한변호사협회에는 다음 각 호의 임원을 둔다. (개정 2011. 4. 5.)

1. 협회장
2. 부협회장
3. 상임이사
4. 이사
5. 감사

② 제1항 각 호의 임원의 구성·수·선임·임기 및 직무에 관한 사항은 대한변호사협회 회칙으로 정한다. (신설 2011. 4. 5.)

(전문개정 2008. 3. 28.)

제82조 [총회] ① 대한변호사협회에 총회를 둔다.



② 총회의 구성에 관한 사항은 회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1. 4. 5.)

(전문개정 2008. 3. 28.)

제83조 [분담금] 지방변호사회는 대한변호사협회가 정하는 바에 따라 대한변호사협회의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내야 한다.

(전문개정 2008. 3. 28.)

제84조 [법률구조기구] 대한변호사협회에 법률구조사업을 하도록 하기 위하여 법률구조기구를 두며, 지방변호사회에는 그 지부를 둘 수 있다.

(전문개정 2008. 3. 28.)

제85조 [변호사의 연수] ① 변호사는 변호사의 전문성과 윤리의식을 높이기 위하여 대한변호사협회가 실시하는 연수교육(이하 “연수교육”이라 한다)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간 이상 받아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질병 등으로 정상적인 변호사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2. 휴업 등으로 연수교육을 받을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3. 고령으로 연수교육을 받기에 적당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대한변호사협회가 정하는 경우

② 대한변호사협회는 연수교육을 지방변호사회에 위임하거나 기관 또는 단체를 지정하여 위탁할 수 있다.

③ 대한변호사협회는 변호사가 법학 관련 학술대회 등에 참여한 경우에는 대한변호사협회가 정하는 바에 따라 연수교육을 받은 것으로 인정할 수 있다.

④ 연수교육에는 법조윤리 과목이 포함되어야 한다.

⑤ 연수교육의 방법·절차, 연수교육을 위탁받을 수 있는 기관·단체의 지정 절차 및 지정 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한변호사협회가 정한다.

(전문개정 2008. 3. 28.)

제86조 [감독] ① 대한변호사협회는 법무부장관의 감독을 받는다.

② 대한변호사협회는 총회의 결의 내용을 지체 없이 법무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 법무부장관은 제2항의 결의가 법령이나 회칙에 위반된다고 인정하면 이를 취소할 수 있다.

제87조 [준용규정] 대한변호사협회에 관하여는 제70조제3항, 제71조 및 제75조를 준용한다. (개정 2011. 4. 5.)

(전문개정 2008. 3. 28.)

제 9 장 법조윤리협의회 및 수임자료 제출 <개정 2008. 3. 28.>

제88조 [법조윤리협의회] 법조윤리를 확립하고 건전한 법조풍토를 조성하기 위하여 법조윤리협의회(이하 “윤리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전문개정 2007. 1. 26.)



제89조 [윤리협회의 기능 및 권한] ① 윤리협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법조윤리의 확립을 위한 법령·제도 및 정책에 관한 협의
2. 법조윤리 실태의 분석과 법조윤리 위반행위에 대한 대책
3. 법조윤리와 관련된 법령을 위반한 자에 대한 징계개시(懲戒開始)의 신청 또는 수사 의뢰
4. 그 밖에 법조윤리의 확립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에 대한 협의

② 윤리협회는 제1항제3호에 따른 징계개시의 신청 또는 수사 의뢰 등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관계인 및 관계 기관·단체 등에 대하여 관련 사실을 조회하거나 자료 제출 또는 윤리협회에 출석하여 진술하거나 설명할 것을 요구할 수 있으며, 관계인 및 관계 기관·단체 등이 정당한 이유 없이 이를 거부할 때에는 소속 직원으로 하여금 법무법인, 법무법인(유한), 법무조합, 법률사무소, 「외국법자문사법」 제2조제9호에 따른 합작법무법인에 출입하여 현장조사를 실시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요구를 받은 자 및 기관·단체 등은 이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13. 5. 28., 2017. 3. 14.)

③ 제2항에 따라 출입·현장조사를 하는 사람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신설 2017. 3. 14.)

④ 제2항에 따른 사실조회·자료제출·출석요구 및 현장조사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7. 3. 14.)

(전문개정 2008. 3. 28.)

제89조의2 [윤리협회의 구성] ① 윤리협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법원 행정처장, 법무부장관 및 대한변호사협회의 장이 각 3명씩 지명하거나 위촉하는 9명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이 경우 법원행정처장, 법무부장관 및 대한변호사협회의 장은 제4호나 제5호에 해당하는 자를 1명 이상 위원으로 위촉하여야 한다.

1. 경력 10년 이상의 판사
2. 경력 10년 이상의 검사
3. 경력 10년 이상의 변호사
4. 법학 교수 또는 부교수
5. 경험과 덕망이 있는 자

② 위원장은 대한변호사협회의 장이 지명하거나 위촉하는 위원 중에서 재적위원 과반수의 동의로 선출한다.

③ 위원장과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④ 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요건에 따라 지명되거나 위촉된 위원이 임기 중 지명 또는 위촉의 요건을 상실하면 위원의 신분을 상실한다.

(전문개정 2008. 3. 28.)

제89조의3 [윤리협회의 조직·운영 및 예산] ① 윤리협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윤리협회에 간사 3명과 사무기구를 둔다.

② 간사는 법원행정처장이 지명하는 판사 1명, 법무부장관이 지명하는 검사 1명, 대한변호사협회의



장이 지명하는 변호사 1명으로 한다.

③ 위원장은 효율적으로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중에서 주무간사를 임명할 수 있다.

④ 정부는 윤리협회의 업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윤리협회에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⑤ 윤리협회의 조직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08. 3. 28.)

제89조의4 [공직퇴임변호사의 수임 자료 등 제출] ① 공직퇴임변호사는 퇴직일부터 2년 동안 수임한 사건에 관한 수임 자료와 처리 결과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마다 소속 지방변호사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 5. 28.)

② 공직퇴임변호사가 제50조·제58조의16 또는 제58조의30에 따라 법무법인·법무법인(유한) 또는 법무조합의 담당변호사로 지정된 경우나 「외국법자문사법」 제35조의20에 따라 합작법무법인의 담당변호사로 지정된 경우에도 제1항과 같다. (개정 2016. 3. 2.)

③ 지방변호사회는 제1항에 따라 제출받은 자료를 윤리협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④ 윤리협회의 위원장은 공직퇴임변호사에게 제91조에 따른 징계사유나 위법의 혐의가 있는 것을 발견하였을 때에는 대한변호사협회의 장이나 관할 수사기관의 장에게 그 변호사에 대한 징계개시를 신청하거나 수사를 의뢰할 수 있다. (개정 2021. 1. 5.)

⑤ 공직퇴임변호사가 제출하여야 하는 수임 자료와 처리 결과의 기재사항, 제출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08. 3. 28.)

제89조의5 [특정변호사의 수임 자료 등 제출] ① 지방변호사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 이상의 사건을 수임한 변호사(제50조, 제58조의16 및 제58조의30에 따른 법무법인·법무법인(유한) 또는 법무조합의 담당변호사나 「외국법자문사법」 제35조의20에 따른 합작법무법인의 담당변호사를 포함하며, 이하 “특정변호사”라 한다)의 성명과 사건 목록을 윤리협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6. 3. 2.)

② 윤리협회는 제30조, 제31조, 제34조제2항·제3항 및 제35조 등 사건수임에 관한 규정의 위반 여부를 판단하기 위하여 수임 경위 등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면 특정변호사에게 제1항의 사건 목록에 기재된 사건에 관한 수임 자료와 처리 결과를 제출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특정변호사는 제출을 요구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 특정변호사에 대하여는 제89조의4제4항 및 제5항을 준용한다.

(전문개정 2008. 3. 28.)

제89조의6 [법무법인 등에서의 퇴직공직자 활동내역 등 제출] ① 「공직자윤리법」 제3조에 따른 재산등록의무자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직급 이상의 직위에 재직했던 변호사 아닌 퇴직공직자(이하 이 조에서 “퇴직공직자”라 한다)가 법무법인·법무법인(유한)·법무조합 또는 「외국법자문사법」 제2조제9호에 따른 합작법무법인(이하 이 조에서 “법무법인등”이라 한다)에 취업한 때에는, 법무법인등은 지체 없이 취업한 퇴직공직자의 명단을 법무법인등의 주사무소를 관할하는 지방변호사회에 제출하여야 하고, 매년 1월 말까지 업무활동내역 등이 포함된 전년도 업무내역서를 작성하여 법무법인등의 주사무



소를 관할하는 지방변호사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6. 3. 2.)

② 제1항에 따른 취업이란 퇴직공직자가 근로 또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그 대가로 임금·봉급, 그 밖에 어떠한 명칭으로든지 금품 또는 경제적 이익을 받는 일체의 행위를 말한다.

③ 제1항은 법무법인등이 아니면서도 변호사 2명 이상이 사건의 수임·처리나 그 밖의 변호사 업무 수행 시 통일된 형태를 갖추고 수익을 분배하거나 비용을 분담하는 형태로 운영되는 법률사무소에 도 적용한다.

④ 지방변호사회는 제1항에 따라 제출받은 자료를 윤리협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⑤ 윤리협의회는 위원장은 제4항에 따라 제출받은 자료를 검토하여 관련자들에 대한 징계사유나 위법의 혐의가 있는 것을 발견하였을 때에는 대한변호사협회의 장에게 징계개시를 신청하거나 관할 수사기관의 장에게 수사를 의뢰할 수 있다. (개정 2021. 1. 5.)

⑥ 제1항에 따른 업무내역서에는 퇴직공직자가 관여한 사건·사무 등 업무활동내역 및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1. 5. 17.)

(중전 제89조의6은 제89조의7로 이동 <2011. 5. 17.>)

제89조의7 [수임사건 처리 결과 등의 통지] ① 윤리협의회는 제89조의4제3항과 제89조의5제2항에 따라 자료를 제출받으면 지체 없이 그 사건 목록을 관할 법원·검찰청 등 사건을 관할하는 기관의 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규정된 각 기관의 장은 제1항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통지받은 사건에 대한 처리 현황이나 처리 결과를 윤리협의회에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사건이 종결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사건이 종결된 때부터 1개월 이내에 통지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8. 3. 28.)

(제89조의6에서 이동, 중전 제89조의7은 제89조의8로 이동 <2011. 5. 17.>)

제89조의8 [비밀 누설의 금지] 윤리협의회는 위원·간사·사무직원 또는 그 직에 있었던 자는 업무처리 중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전문개정 2008. 3. 28.)

(제89조의7에서 이동 <2011. 5. 17.>)

제89조의9 [국회에 대한 보고] ① 윤리협의회는 매년 제89조제1항의 업무수행과 관련한 운영상황을 국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② 윤리협의회는 제89조의8에도 불구하고 「인사청문회법」에 따른 인사청문회 또는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정조사를 위하여 국회의 요구가 있을 경우에는 제89조의4제3항 및 제89조의5제2항에 따라 제출받은 자료 중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자료를 국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1. 제89조의4제3항에 따라 제출받은 자료 : 공직퇴임변호사의 성명, 공직퇴임일, 퇴직 당시의 소속 기관 및 직위, 수임일자, 사건명, 수임사건의 관할 기관, 처리 결과
2. 제89조의5제2항에 따라 제출받은 자료 : 변호사의 성명, 사건목록(수임일자 및 사건명에 한한다)

(본조신설 2013. 5. 28.)



제89조의10 [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윤리협회의 위원·간사·사무직원으로서 공무원이 아닌 사람은 그 직무상 행위와 관련하여 「형법」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른 벌칙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본조신설 2017. 3. 14.)

제 10 장 징계 및 업무정지 <개정 2008. 3. 28.>

제90조 [징계의 종류] 변호사에 대한 징계는 다음 다섯 종류로 한다.

1. 영구제명
2. 제명
3. 3년 이하의 정직
4.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5. 견책

(전문개정 2008. 3. 28.)

제91조 [징계 사유] ① 제90조제1호에 해당하는 징계 사유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변호사의 직무와 관련하여 2회 이상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아(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경우를 포함한다) 그 형이 확정된 경우(과실범의 경우는 제외한다)
2. 이 법에 따라 2회 이상 정직 이상의 징계처분을 받은 후 다시 제2항에 따른 징계 사유가 있는 자로서 변호사의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현저히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제90조제2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징계사유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이 법을 위반한 경우
2. 소속 지방변호사회나 대한변호사협회의 회칙을 위반한 경우
3. 직무의 내외를 막론하고 변호사로서의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한 경우

(전문개정 2008. 3. 28.)

제92조 [변호사징계위원회의 설치] ① 변호사의 징계는 변호사징계위원회가 한다.

② 대한변호사협회와 법무부에 각각 변호사징계위원회를 둔다.

(전문개정 2008. 3. 28.)

제92조의2 [조사위원회의 설치] ① 변호사의 징계혐의사실에 대한 조사를 위하여 대한변호사협회에 조사위원회를 둔다.

② 조사위원회는 필요하면 관계 기관·단체 등에 자료 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당사자나 관계인을 면담하여 사실에 관한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③ 조사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한변호사협회가 정한다.

(전문개정 2008. 3. 28.)



제93조 [대한변호사협회 변호사징계위원회의 구성] ① 대한변호사협회 변호사징계위원회(이하 “변협징계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7. 12. 19.)

1. 법원행정처장이 추천하는, 판사 1명과 변호사가 아닌 경험과 덕망이 있는 자 1명
 2. 법무부장관이 추천하는, 검사 1명과 변호사가 아닌 경험과 덕망이 있는 자 1명
 3. 대한변호사협회 총회에서 선출하는 변호사 3명
 4. 대한변호사협회의 장이 추천하는, 변호사가 아닌 법학 교수 및 경험과 덕망이 있는 자 각 1명
- ② 변협징계위원회에 위원장 1명과 간사 1명을 두며, 위원장과 간사는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 ③ 제1항의 위원을 추천하거나 선출할 때에는 위원의 수와 같은 수의 예비위원을 함께 추천하거나 선출하여야 한다.
- ④ 변호사의 자격을 취득한 날부터 10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위원장이나 판사·검사·변호사인 위원 또는 예비위원이 될 수 없다.
- ⑤ 위원과 예비위원의 임기는 각각 2년으로 한다.
- ⑥ 변협징계위원회의 위원 및 예비위원은 제94조에 따른 법무부징계위원회의 위원 및 예비위원을 겸할 수 없다.

(전문개정 2008. 3. 28.)

제94조 [법무부 변호사징계위원회의 구성 등] ① 법무부 변호사징계위원회(이하 “법무부징계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과 위원 8명으로 구성하며, 예비위원 8명을 둔다.

② 위원장은 법무부장관이 되고, 위원과 예비위원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법무부장관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개정 2018. 12. 18.)

1. 법원행정처장이 추천하는 판사 중에서 각 2명
2. 법무부차관, 검사 및 법무부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중에서 각 2명
3. 대한변호사협회의 장이 추천하는 변호사 중에서 각 1명
4. 변호사가 아닌 자로서 법학 교수 또는 경험과 덕망이 있는 자 각 3명

③ 위원과 예비위원의 임기는 각각 2년으로 한다.

④ 위원장은 법무부징계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고 법무부징계위원회를 대표하며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⑤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하는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⑥ 법무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위원 또는 예비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 또는 예비위원을 해임(解任)하거나 해촉(解囑)할 수 있다. (신설 2018. 12. 18.)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 태만, 품위 손상,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 또는 예비위원의 직을 유지하는 것이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⑦ 법무부징계위원회의 위원 또는 예비위원으로서 공무원이 아닌 사람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신설 2018. 12. 18.)



(전문개정 2008. 3. 28.)

(제목개정 2018. 12. 18.)

제95조 [변협징계위원회의 심의권] ① 변협징계위원회는 제91조에 따른 징계 사유에 해당하는 징계 사건을 심의한다.

② 변협징계위원회는 제1항의 심의를 위하여 필요하면 조사위원회에 징계혐의사실에 대한 조사를 요청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8. 3. 28.)

제96조 [법무부장계위원회의 심의권] 법무부장계위원회는 변협징계위원회의 징계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 사건을 심의한다.

(전문개정 2008. 3. 28.)

제97조 [징계개시의 청구] 대한변호사협회의 장은 변호사가 제91조에 따른 징계 사유에 해당하면 변협징계위원회에 징계개시를 청구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8. 3. 28.)

제97조의2 [징계개시의 신청] ① 지방검찰청검사장 또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은 범죄수사 등 업무의 수행 중 변호사에게 제91조에 따른 징계 사유가 있는 것을 발견하였을 때에는 대한변호사협회의 장에게 그 변호사에 대한 징계개시를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21. 1. 5.)

② 지방변호사회의 장이 소속 변호사에게 제91조에 따른 징계 사유가 있는 것을 발견한 경우에도 제1항과 같다.

(전문개정 2008. 3. 28.)

제97조의3 [징계개시의 청원 및 재청원] ① 의뢰인이나 의뢰인의 법정대리인·배우자·직계친족 또는 형제자매는 수임변호사나 법무법인(제58조의2에 따른 법무법인(유한)과 제58조의18에 따른 법무조합을 포함한다)의 담당변호사에게 제91조에 따른 징계 사유가 있으면 소속 지방변호사회의 장에게 그 변호사에 대한 징계개시의 신청을 청원할 수 있다.

② 지방변호사회의 장은 제1항의 청원을 받으면 지체 없이 징계개시의 신청 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와 이유의 요지를 청원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청원인은 지방변호사회의 장이 제1항의 청원을 기각하거나 청원이 접수된 날부터 3개월이 지나도 징계개시의 신청 여부를 결정하지 아니하면 대한변호사협회의 장에게 재청원할 수 있다. 이 경우 재청원은 제2항에 따른 통지를 받은 날 또는 청원이 접수되어 3개월이 지난 날부터 14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8. 3. 28.)

제97조의4 [대한변호사협회의 장의 결정] ① 대한변호사협회의 장은 제89조의4제4항(제89조의5제3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제97조의2에 따른 징계개시의 신청이 있거나 제97조의3제3항에 따른 재청원이 있으면 지체 없이 징계개시의 청구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② 대한변호사협회의 장은 징계개시의 청구 여부를 결정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조사위원회로 하여금 징계혐의사실에 대하여 조사하도록 할 수 있다.



③ 대한변호사협회의 장은 제1항의 결정을 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사유를 징계개시 신청인(징계개시를 신청한 윤리협의회 위원장이나 지방검찰청검사장 또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나 재청원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21. 1. 5.)

(전문개정 2008. 3. 28.)

제97조의5 [이의신청] ① 징계개시 신청인은 대한변호사협회의 장이 징계개시의 신청을 기각하거나 징계개시의 신청이 접수된 날부터 3개월이 지나도 징계개시의 청구 여부를 결정하지 아니하면 변협징계위원회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이의신청은 제97조의4제3항에 따른 통지를 받은 날 또는 징계개시의 신청이 접수되어 3개월이 지난 날부터 14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② 변협징계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이 이유 있다고 인정하면 징계절차를 개시하여야 하며, 이유 없다고 인정하면 이의신청을 기각하여야 한다.

③ 변협징계위원회는 제2항의 결정을 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결과와 이유를 이의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8. 3. 28.)

제98조 [징계 결정 기간 등] ① 변협징계위원회는 징계개시의 청구를 받거나 제97조의5제2항에 따라 징계 절차를 개시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징계에 관한 결정을 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그 의결로 6개월의 범위에서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② 법무부장계위원회는 변협징계위원회의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을 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징계에 관한 결정을 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그 의결로 3개월의 범위에서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③ 징계개시의 청구를 받거나 징계 절차가 개시되면 위원장은 지체 없이 징계심의 기일을 정하여 징계혐의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8. 3. 28.)

제98조의2 [징계혐의자의 출석·진술권 등] ① 변협징계위원회의 위원장은 징계심의의 기일을 정하고 징계혐의자에게 출석을 명할 수 있다.

② 징계혐의자는 징계심의기일에 출석하여 구술 또는 서면으로 자기에게 유리한 사실을 진술하거나 필요한 증거를 제출할 수 있다.

③ 변협징계위원회는 징계심의기일에 심의를 개시하고 징계혐의자에 대하여 징계 청구에 대한 사실과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을 심문할 수 있다.

④ 징계혐의자는 변호사 또는 학식과 경험이 있는 자를 특별변호인으로 선임하여 사건에 대한 보충진술과 증거 제출을 하게 할 수 있다.

⑤ 변협징계위원회는 징계혐의자가 위원장의 출석명령을 받고 징계심의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하면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다.

⑥ 변협징계위원회의 위원장은 출석한 징계혐의자나 선임된 특별변호인에게 최종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⑦ 징계개시 신청인은 징계사건에 관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8. 3. 28.)

제98조의3 [제척 사유] 위원장과 위원은 자기 또는 자기의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자에 대한 징계 사건의 심의에 관여하지 못한다.

(전문개정 2008. 3. 28.)

제98조의4 [징계 의결 등] ① 변협징계위원회는 사건 심의를 마치면 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써 의결한다.

② 변협징계위원회는 징계의 의결 결과를 징계혐의자와 징계청구자 또는 징계개시 신청인에게 각각 통지하여야 한다.

③ 징계혐의자가 징계 결정의 통지를 받은 후 제100조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을 하지 아니하면 이의신청 기간이 끝난 날부터 변협징계위원회의 징계의 효력이 발생한다.

(전문개정 2008. 3. 28.)

제98조의5 [징계의 집행] ① 징계는 대한변호사협회의 장이 집행한다.

② 제90조제4호의 과태료 결정은 「민사집행법」에 따른 집행력 있는 집행권원과 같은 효력이 있으며, 검사의 지휘로 집행한다.

③ 대한변호사협회의 장은 징계처분을 하면 이를 지체 없이 대한변호사협회가 운영하는 인터넷 홈페이지에 3개월 이상 게재하는 등 공개하여야 한다. (개정 2011. 7. 25.)

④ 대한변호사협회의 장은 변호사를 선임하려는 자가 해당 변호사의 징계처분 사실을 알기 위하여 징계정보의 열람·등사를 신청하는 경우 이를 제공하여야 한다. (신설 2011. 7. 25.)

⑤ 징계처분의 공개 범위와 시행 방법, 제4항에 따른 변호사를 선임하려는 자의 해당 여부, 열람·등사의 방법 및 절차, 이에 소요되는 비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1. 7. 25.)

(전문개정 2008. 3. 28.)

제98조의6 [징계 청구의 시효] 징계의 청구는 징계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년이 지나면 하지 못한다.

(전문개정 2008. 3. 28.)

제99조 [보고] 대한변호사협회의 장은 변협징계위원회에서 징계에 관한 결정을 하면 지체 없이 그 사실을 법무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8. 3. 28.)

제100조 [징계 결정에 대한 불복] ① 변협징계위원회의 결정에 불복하는 징계혐의자 및 징계개시 신청인은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법무부장계위원회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② 법무부장계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이 이유 있다고 인정하면 변협징계위원회의 징계 결정을 취소하고 스스로 징계 결정을 하여야 하며, 이의신청이 이유 없다고 인정하면 기각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징계심의를 절차에 관하여는 제98조의2를 준용한다.

③ 제2항의 결정은 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법무부장계위원회의 결정에 불복하는 징계혐의자는 「행정소송법」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행정법원에 소(訴)를 제기할 수 있다.

⑤ 제4항의 경우 징계 결정이 있었던 날부터 1년이 지나면 소를 제기할 수 없다. 다만, 정당한 사



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⑥ 제4항에 따른 기간은 불변기간으로 한다.

(전문개정 2008. 3. 28.)

제101조 [위임] ① 법무부징계위원회의 운영이나 그 밖에 징계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② 변협징계위원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한변호사협회가 정한다.

(전문개정 2008. 3. 28.)

제101조의2 [「형사소송법」 등의 준용] 서류의 송달, 기일의 지정이나 변경 및 증인·감정인의 선서와 급여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는 「형사소송법」과 「형사소송비용 등에 관한 법률」의 규정을 준용한다.

(본조신설 2007. 1. 26.)

제102조 [업무정지명령] ① 법무부장관은 변호사가 공소제기되거나 제97조에 따라 징계 절차가 개시되어 그 재판이나 징계 결정의 결과 등록취소, 영구제명 또는 제명에 이르게 될 가능성이 매우 크고, 그대로 두면 장차 의뢰인이나 공공의 이익을 해칠 구체적인 위험성이 있는 경우에는 법무부징계위원회에 그 변호사의 업무정지에 관한 결정을 청구할 수 있다. 다만, 약식명령이 청구된 경우와 과실범으로 공소제기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법무부장관은 법무부징계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해당 변호사에 대하여 업무정지를 명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8. 3. 28.)

제103조 [업무정지 결정기간 등] ① 법무부징계위원회는 제102조제1항에 따라 청구를 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업무정지에 관한 결정을 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그 의결로 1개월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② 업무정지에 관하여는 제98조제3항 및 제98조의2제2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전문개정 2008. 3. 28.)

제104조 [업무정지 기간과 갱신] ① 업무정지 기간은 6개월로 한다. 다만, 법무부장관은 해당 변호사에 대한 공판 절차 또는 징계 절차가 끝나지 아니하고 업무정지 사유가 없어지지 아니한 경우에는 법무부징계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업무정지 기간을 갱신할 수 있다.

② 제1항 단서에 따라 갱신할 수 있는 기간은 3개월로 한다.

③ 업무정지 기간은 갱신 기간을 합하여 2년을 넘을 수 없다.

(전문개정 2008. 3. 28.)

제105조 [업무정지명령의 해제] ① 법무부장관은 업무정지 기간 중인 변호사에 대한 공판 절차나 징계 절차의 진행 상황에 비추어 등록취소·영구제명 또는 제명에 이르게 될 가능성이 크지 아니하고, 의뢰인이나 공공의 이익을 침해할 구체적인 위험이 없어졌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으면 직권으로 그 명령을 해제할 수 있다.

② 대한변호사협회의 장, 검찰총장 또는 업무정지명령을 받은 변호사는 법무부장관에게 업무정지명령의 해제를 신청할 수 있다.

③ 법무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신청을 받으면 직권으로 업무정지명령을 해제하거나 법무부징계위원



회에 이를 심의하도록 요청하여야 하며, 법무부장계위원회에서 해제를 결정하면 지체 없이 해제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8. 3. 28.)

제106조 [업무정지명령의 실효] 업무정지명령은 그 업무정지명령을 받은 변호사에 대한 해당 형사 판결이나 징계 결정이 확정되면 그 효력을 잃는다.

(전문개정 2008. 3. 28.)

제107조 [업무정지 기간의 통산] 업무정지명령을 받은 변호사가 공소제기된 해당 형사사건과 같은 행위로 징계개시가 청구되어 정직 결정을 받으면 업무정지 기간은 그 전부 또는 일부를 정직 기간에 산입한다.

(전문개정 2008. 3. 28.)

제108조 [업무정지명령에 대한 불복] 업무정지명령, 업무정지 기간의 갱신에 관하여는 제100조제4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전문개정 2008. 3. 28.)

제 11 장 벌칙 <개정 2008. 3. 28.>

제109조 [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 경우 벌금과 징역은 병과(併科)할 수 있다.

1. 변호사가 아니면서 금품·향응 또는 그 밖의 이익을 받거나 받을 것을 약속하고 또는 제3자에게 이를 공여하게 하거나 공여하게 할 것을 약속하고 다음 각 목의 사건에 관하여 감정·대리·중재·화해·청탁·법률상담 또는 법률 관계 문서 작성, 그 밖의 법률사무를 취급하거나 이러한 행위를 알선한 자

가. 소송 사건, 비송 사건, 가사 조정 또는 심판 사건

나. 행정심판 또는 심사의 청구나 이의신청, 그 밖에 행정기관에 대한 불복신청 사건

다. 수사기관에서 취급 중인 수사 사건

라. 법령에 따라 설치된 조사기관에서 취급 중인 조사 사건

마. 그 밖에 일반의 법률사건

2. 제33조 또는 제34조(제57조, 제58조의16 또는 제58조의30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한 자

(전문개정 2008. 3. 28.)

제110조 [벌칙] 변호사나 그 사무직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 경우 벌금과 징역은 병과할 수 있다.

1. 판사·검사, 그 밖에 재판·수사기관의 공무원에게 제공하거나 그 공무원과 교제한다는 명목으로



금품이나 그 밖의 이익을 받거나 받기로 한 행위

2. 제1호에 규정된 공무원에게 제공하거나 그 공무원과 교제한다는 명목의 비용을 변호사 선임료·성공사례금에 명시적으로 포함시키는 행위

(전문개정 2008. 3. 28.)

제111조 [벌칙] ①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건 또는 사무에 관하여 청탁 또는 알선을 한다는 명목으로 금품·향응, 그 밖의 이익을 받거나 받을 것을 약속한 자 또는 제3자에게 이를 공여하게 하거나 공여하게 할 것을 약속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 경우 벌금과 징역은 병과할 수 있다.

- ② 다른 법률에 따라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벌칙을 적용할 때에 공무원으로 보는 자는 제1항의 공무원으로 본다.

(전문개정 2008. 3. 28.)

제112조 [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 경우 벌금과 징역은 병과할 수 있다. (개정 2011. 5. 17.)

1. 타인의 권리를 양수하거나 양수를 가장하여 소송·조정 또는 화해, 그 밖의 방법으로 그 권리를 실행함을 업(業)으로 한 자
2. 변호사의 자격이 없이 대한변호사협회에 그 자격에 관하여 거짓으로 신청하여 등록을 한 자
3. 변호사가 아니면서 변호사나 법률사무소를 표시 또는 기재하거나 이익을 얻을 목적으로 법률 상담이나 그 밖의 법률사무를 취급하는 뜻을 표시 또는 기재한 자
4. 대한변호사협회에 등록을 하지 아니하거나 제90조제3호에 따른 정직 결정 또는 제102조제2항에 따른 업무정지명령을 위반하여 변호사의 직무를 수행한 변호사
5. 제32조(제57조, 제58조의16 또는 제58조의30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계쟁권리를 양수한 자
6. 제44조제2항(제58조의16이나 제58조의30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유사 명칭을 사용한 자
7. 제77조의2 또는 제89조의8을 위반하여 비밀을 누설한 자

(전문개정 2008. 3. 28.)

제113조 [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7. 3. 14.)

1. 제21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 법률사무소를 개설하거나 법무법인·법무법인(유한) 또는 법무조합의 구성원이 된 자
2. 제21조의2제3항(제31조의2제2항에 따라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확인서를 거짓으로 작성하거나 거짓으로 작성된 확인서를 제출한 자
3. 제23조제2항제1호 및 제2호를 위반하여 광고를 한 자
4. 조세를 포탈하거나 수입제한 등 관계 법령에 따른 제한을 회피하기 위하여 제29조의2(제57조, 제58조의16 또는 제58조의30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변호하거나 대리한 자



5. 제31조제1항제3호(제57조, 제58조의16 또는 제58조의30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사건을 수임한 변호사

6. 제31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 사건을 단독 또는 공동으로 수임한 자

7. 제37조제1항(제57조, 제58조의16 또는 제58조의30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한 자
(전문개정 2008. 3. 28.)

제114조 [상습범] 상습적으로 제109조제1호, 제110조 또는 제111조의 죄를 지은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전문개정 2008. 3. 28.)

제115조 [법무법인 등의 처벌] ① 법무법인·법무법인(유한) 또는 법무조합의 구성원이나 구성원 아닌 소속 변호사가 제51조를 위반하면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법무법인, 법무법인(유한) 또는 법무조합의 구성원이나 구성원이 아닌 소속 변호사가 그 법무법인, 법무법인(유한) 또는 법무조합의 업무에 관하여 제1항의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무법인, 법무법인(유한) 또는 법무조합에게도 같은 항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법무법인, 법무법인(유한) 또는 법무조합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2. 1. 17.)

(전문개정 2008. 3. 28.)

제116조 [몰수·추징] 제34조(제57조, 제58조의16 또는 제58조의30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거나 제109조제1호, 제110조, 제111조 또는 제114조의 죄를 지은 자 또는 그 사정을 아는 제3자가 받은 금품이나 그 밖의 이익은 몰수한다. 이를 몰수할 수 없을 때에는 그 가액을 추징한다.

(전문개정 2008. 3. 28.)

제117조 [과태료] ① 제89조의4제1항·제2항 및 제89조의5제2항을 위반하여 수임 자료와 처리 결과에 대한 거짓 자료를 제출한 자에게는 2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신설 2013. 5. 28.)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13. 5. 28.)

1. 제21조의2제5항(제21조의2제6항에 따라 위탁하여 사무를 처리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개선 또는 시정 명령을 받고 이에 따르지 아니한 자

1의2. 제22조제2항제1호, 제28조의2, 제29조, 제35조 또는 제36조(제57조, 제58조의16 또는 제58조의30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한 자

2. 제28조에 따른 장부를 작성하지 아니하거나 보관하지 아니한 자

3. <삭제> (2017. 3. 14.)

4. 제54조제2항, 제58조의14제2항 또는 제58조의28제2항을 위반하여 해산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5. 제58조의9제2항을 위반하여 대차대조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

6. 제58조의21제1항을 위반하여 규약 등을 제출하지 아니한 자

7. 제58조의21제2항에 따른 서면을 비치하지 아니한 자

8. 제89조의4제1항·제2항 및 제89조의5제2항을 위반하여 수임 자료와 처리 결과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17. 3. 14.)

1. 제85조제1항을 위반하여 연수교육을 받지 아니한 자
2. 제89조제2항에 따른 윤리협회의 요구에 정당한 이유 없이 따르지 아니하거나 같은 항에 따른 현장조사를 정당한 이유 없이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자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검찰청검사장이 부과·징수한다. (개정 2013. 5. 28.)

⑤ <삭제> (2017. 12. 12.)

⑥ <삭제> (2017. 12. 12.)

⑦ <삭제> (2017. 12. 12.)

(전문개정 2008. 3. 28.)

부 칙 <법률 제6207호, 2000. 1. 28.>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변호사의 결격사유 등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전에 형을 선고받은 자에 대한 변호사 결격사유의 적용은 종전의 규정에 의하고, 제8조제1항의 개정규정 중 제4호의 사유에 의한 경우 및 제18조제2항의 개정규정중 제8조제1항제4호의 사유에 의한 경우는 이 법 시행 후 그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 이를 적용한다.

② 이 법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한 징계사유 및 징계의 종류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3조 [법무부징계위원회 위원의 임기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법무부징계위원회 위원 중 임기가 만료되지 아니한 위원은 이 법 시행과 동시에 그 임기가 만료된 것으로 본다.

제4조 [벌칙적용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한 벌칙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5조 [다른 법률의 개정 등] ① 공증인법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8조제1항 중 “변호사법 제30조의 규정에 의하여”를 “변호사법 제40조의 규정에 의하여”로 한다.

② 이 법 시행 당시 제1항의 법률 외의 법령에서 종전의 변호사법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한 경우에는 이 법 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갈음하여 이 법 또는 이 법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 칙 <법률 제7082호, 2004. 1. 20.> (각급법원의설치와관할구역에관한법률)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4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률의 개정] 변호사법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4조제1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서울특별시에는 1개의 지방변호사회를 둔다.

부 칙 <법률 제7357호, 2005. 1. 27.>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00조제1항 및 제4항 내지 제6항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정관기재사항에 관한 규정의 적용례] 제42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설립인가 또는 변경인가를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 [설립등기사항에 관한 규정의 적용례] 제43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등기 또는 변경등기를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4조 [법무법인의 조직변경에 관한 특례] ① 이 법 시행 당시의 법무법인으로서 법무법인(유한) 또는 법무조합의 설립요건을 갖춘 법무법인은 구성원 전원의 동의가 있는 때에는 이 법 시행일부터 2년 이내에 법무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법무법인(유한) 또는 법무조합으로 조직변경을 할 수 있다.

② 법무법인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무부장관으로부터 법무법인(유한)의 인가를 받은 때에는 2주 이내에 주사무소 소재지에서 법무법인 해산등기 및 법무법인(유한)의 설립등기를, 법무조합의 인가를 받은 때에는 같은 기간 이내에 주사무소 소재지에서 법무법인 해산등기를 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직변경의 경우 새로 설립되는 법무법인(유한)의 자본총액은 법무법인에 현존하는 순재산액을 초과할 수 없으며 법무법인에 현존하는 순재산액이 자본총액에 미달하는 때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동의가 있는 당시의 구성원들이 연대하여 그 부족액을 보충하여야 한다.

④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법무법인(유한) 또는 법무조합의 구성원 중 종전의 법무법인의 구성원이었던 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등기를 하기 전에 발생한 법무법인의 채무에 대하여 법무법인(유한)의 경우에는 등기 후 2년이 경과할 때까지, 법무조합의 경우에는 등기 후 5년이 경과할 때까지 법무법인의 구성원으로서 책임을 진다.

제5조 [법무법인에서 공증인의 직무를 행하는 변호사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법무법인에서 공증인의 직무를 행하는 변호사로서 공증인법 제2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한 자에 대하여는 제49조제1항 단서의 개정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6조 [공증인가합동법률사무소의 폐지에 따른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제6장(제59조 내지 제63조)의 규정에 의하여 인가를 받은 공증인가합동법률사무소는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공증인의 직무에 속하는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제7조 [이의신청기간의 연장에 따른 경과조치] 제100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일 전에 징계처분을 받은 자 중 이 법 시행일 현재 종전규정에 의한 이의신청기간이 도과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8조 [즉시항고제도의 폐지에 따른 경과조치] 제100조제4항 내지 제6항의 개정규정은 2002년 2월 28일 이전에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즉시항고를 하여 법원에 계류중인 자와 2002년 2월 28일 현재 종전의 규정에 의한 즉시항고기간이 도과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도 적용한다. 이 경우 이 법 시행일에 징계결정을 통지받은 것으로 본다.

제9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동산등기법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8조 단서 중 “법무법인”을 “법무법인·법무법인(유한)·법무조합”으로 한다.

② 비송사건절차법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8조제1항 단서 중 “법무법인”을 “법무법인·법무법인(유한)·법무조합”으로 한다.

부 칙 <법률 제7428호, 2005. 3. 31.>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제5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내지 <44>생략

<45>변호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6호 및 제22조제2항제4호 중 “파산자”를 각각 “파산선고를 받은 자”로 한다.

<46> 내지 <145>생략

제6조 생략

부 칙 <법률 제7894호, 2006. 3. 24.>

①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다른 법률의 개정] 법률 제7428호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부칙 제5조제45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45>변호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6호 중 “파산자”를 “파산선고를 받은 자”로 한다.



부 칙 <법률 제8271호, 2007. 1. 26.>

- ①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 ② [징계에 관한 적용례] 제58조의17 및 제58조의31의 개정규정 중 징계에 관한 부분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발생하는 위반행위부터 적용한다.
- ③ [공직퇴임변호사의 수임자료 등 제출에 관한 적용례] 제89조의4제1항 및 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공직퇴임변호사가 된 자부터 적용한다.
- ④ [징계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한 징계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 칙 <법률 제8321호, 2007. 3. 29.>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법률 제8991호, 2008. 3. 28.>

- ①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 ② [국가공로 외국변호사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외국변호사로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변호사의 인가를 받은 자에 대하여는 제6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
- ③ [변호사 등록거부에 관한 적용례] 제8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에 등록신청을 하는 자부터 적용한다.

부 칙 <법률 제9416호, 2009. 2. 6.> (공증인법)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7조까지 생략

제8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변호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7조 단서를 삭제한다.

제49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 법무법인은 이 법과 다른 법률에 따른 변호사의 직무에 속하는 업무를 수행한다.

제50조제7항 단서를 삭제한다.

제51조 중 “그 법인이”를 “그 법인이 인가공증인으로서”로 한다.

제58조제2항, 제58조의17제2항 및 제58조의31제2항을 각각 삭제한다.

② 생략

부 칙 <법률 제10540호, 2011. 4. 5.>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법률 제10627호, 2011. 5. 17.>

①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수입제한에 관한 적용례] 제31조제3항 및 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퇴직하는 공직퇴임 변호사부터 적용한다.

부 칙 <법률 제10922호, 2011. 7. 25.>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법률 제11160호, 2012. 1. 17.>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법률 제11825호, 2013. 5. 28.>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법률 제12589호, 2014. 5. 20.>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변호사의 결격사유에 관한 적용례] 제5조제6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면직되는 자부터 적용한다.



제3조 [변호사의 등록거부 사유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형사소추 또는 징계처분을 받거나 퇴직한 자에 대한 변호사의 등록거부에 대해서는 제8조제1항제4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 칙 <법률 제12887호, 2014. 12. 30.>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임원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재임 중에 있는 지방변호사회 임원은 이 법에 따른 임원으로 보며, 그 임기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3조 [금치산자 등에 대한 경과조치] 제5조제7호 및 제22조제2항제3호의 개정규정에 따른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에는 법률 제10429호 민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2조에 따라 금치산 또는 한정치산 선고의 효력이 유지되는 사람을 포함하는 것으로 본다.

부 칙 <법률 제14056호, 2016. 3. 2.> (외국법자문사법)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1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률의 개정] 변호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의2제1항제3호 중 “법률사무소”를 “법률사무소, 「외국법자문사법」 제2조제9호에 따른 합작법무법인”으로 한다.

제31조제4항제1호 중 “법무법인, 법무법인(유한), 법무조합(이하 이 조에서 “법무법인등”이라 한다)”을 “법무법인, 법무법인(유한), 법무조합 또는 「외국법자문사법」 제2조제9호에 따른 합작법무법인(이하 이 조에서 “법무법인등”이라 한다)”으로 한다.

제31조의2제1항 중 “법무법인·법무법인(유한) 또는 법무조합의 담당변호사로 지정하는 경우”를 “법무법인·법무법인(유한) 또는 법무조합의 담당변호사로 지정하는 경우나 「외국법자문사법」 제35조의20에 따라 합작법무법인의 담당변호사로 지정하는 경우”로 한다.

제89조의4제2항 중 “법무법인·법무법인(유한) 또는 법무조합의 담당변호사로 지정된 경우”를 “법무법인·법무법인(유한) 또는 법무조합의 담당변호사로 지정된 경우나 「외국법자문사법」 제35조의20에 따라 합작법무법인의 담당변호사로 지정된 경우”로 한다.

제89조의5제1항 중 “법무법인·법무법인(유한)·법무조합의 담당변호사”를 “법무법인·법무법인(유한) 또는 법무조합의 담당변호사나 「외국법자문사법」 제35조의20에 따른 합작법무법인의 담당변호사”로 한다.

제89조의6제1항 중 “법무법인·법무법인(유한) 또는 법무조합(이하 이 조에서 “법무법인등”이라 한다)”을 “법무법인·법무법인(유한)·법무조합 또는 「외국법자문사법」 제2조제9호에 따른 합작법무법인(이하 이 조에서 “법무법인등”이라 한다)”으로 한다.



부 칙 <법률 제14584호, 2017. 3. 14.>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13조 및 제117조제2항제3호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벌칙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벌칙이나 과태료를 적용할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 칙 <제15022호, 2017. 10. 31.>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13조까지 생략

제14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⑫까지 생략

⑬ 변호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8조의9제1항 중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13조”를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5조”로 한다.

⑭부터 ⑳까지 생략

제15조 생략

부 칙 <법률 제15153호, 2017. 12. 12.>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률의 개정] 외국법자문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3조제3항 중 “과태료의 부과, 징수, 이에 대한 불복 등”을 “과태료의 부과, 징수 등”으로, “「변호사법」 제117조제4항부터 제7항까지의 규정”을 “「변호사법」 제117조제4항”으로 한다.

부 칙 <제15251호, 2017. 12. 19.>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변협징계위원회의 구성에 관한 적용례] 제93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위원을 추천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 [변호사의 결격사유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종전의 규정에 따라 대한변호사협회에 등록을 한 자는 제5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 칙 <제15974호, 2018. 12. 18.>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7366호, 2020. 6. 9.>

(피한정후견인 결격조항 정비를 위한 법무사법 등 5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7828호, 2021. 1. 5.>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변호사법 시행령

1970. 4. 15.

대통령령 제4918호

개정	1964. 7. 7. 대통령령 제 7172 호	
전부개정	1983. 2. 23. 대통령령 제11061호	
개정	1993. 12. 31. 대통령령 제14053호	2000. 7. 27. 대통령령 제16914호
	2005. 7. 27. 대통령령 제18971호	2007. 7. 27. 대통령령 제20196호
	2008. 9. 3. 대통령령 제20983호	2010. 2. 4. 대통령령 제22006호
	2010. 5. 4. 대통령령 제22151호	2010. 11. 2. 대통령령 제22467호
	2011. 10. 26. 대통령령 제23265호	2012. 1. 25. 대통령령 제23528호
	2012. 6. 7. 대통령령 제23845호	2013. 3. 23. 대통령령 제24415호
	2013. 12. 12. 대통령령 제24852호	2014. 1. 1. 대통령령 제25050호
	2014. 11. 19. 대통령령 제25751호	2016. 6. 28. 대통령령 제27261호
	2017. 7. 26. 대통령령 제28211호	2017. 9. 15. 대통령령 제28290호
	2020. 7. 14. 대통령령 제30833호	2020. 12. 31. 대통령령 제31349호
	2021. 1. 5. 대통령령 제31380호	2022. 12. 20. 대통령령 제33081호

제1조 [목적] 이 영은 「변호사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08. 9. 3)

제2조 [법무법인 등의 법률사무종사기관 지정] ① 「변호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1조의2제1항 단서에 따라 같은 조에 따른 법률사무종사기관(이하 “법률사무종사기관”이라 한다)으로 지정받으려는 기관 등(이하 이 조에서 “지정신청기관”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법률사무종사기관 지정신청서에 필요한 증명서류를 붙여 법무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지정신청기관의 명칭, 주소 및 대표자 인적사항
2. 제2항 각 호의 지정요건을 갖추었다는 취지
3. 법 제21조의2제1항에 따라 법률사무에 종사하는 변호사(이하 “법률사무종사 변호사”라 한다)를 위한 별도의 수련과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취지 및 개요

② 법무부장관은 지정신청기관이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는 해당 지정신청기관을 법 제21조의2제1항 단서에 따른 법률사무종사기관으로 지정하여야 한다.

1. 통산하여 5년 이상 「법원조직법」 제4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직에 있었던 사람 1명 이상이 재직할 것. 이 경우 「법원조직법」 제42조제1항 각 호에 규정된 직 중에서 둘 이상의 직에 재직한 사람의 재직기간은 합산한다.
2. 법률사무종사 변호사를 제외한 변호사의 수가 법률사무종사 변호사의 수 이상일 것



3. 소송에 관한 행위, 행정처분의 청구에 관한 대리행위 또는 일반 법률 사무를 주로 취급하는 부서 또는 담당자가 있을 것
4. 법률사무종사 변호사에 대한 관리를 담당할 변호사가 1명 이상 지정되어 있을 것
5. 사무실 공간 등 시설 여건이 법률사무 종사에 적합할 것
- ③ 법무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지정 여부를 결정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지정신청기관에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지정신청기관 또는 대한변호사협회의 장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 ④ 법무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법률사무종사기관을 지정하였을 때에는 지정신청기관에 법률사무종사기관 지정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 ⑤ 법무부장관은 필요하면 제1항에 따른 지정신청이 없는 경우에도 법 제21조의2제1항제3호 또는 제4호의 기관·법인·조합·단체나 사무소 중에서 제2항의 요건을 갖추었다고 인정되는 곳을 법 제21조의2제1항 단서에 따른 법률사무종사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이 경우 법무부장관은 사전에 해당 기관 등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 ⑥ 제5항에 따른 법률사무종사기관의 지정 요건 및 절차 등에 관하여는 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본조신설 2011. 10. 26.)

제3조 [국제기구등의 법률사무종사기관 지정] ① 법무부장관은 직권으로 또는 다음 각 호의 자의 신청에 의하여 국제기구, 국제법인, 국제기관 또는 국제단체(이하 “국제기구등”이라 한다)를 법 제21조의2제1항제5호에 따른 법률사무종사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1. 법 제4조제3호의 변호사
2. 국제기구등

② 제1항 각 호에 규정된 자가 제1항에 따른 지정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해당 국제기구의 구성원, 취급업무, 사무실 시설 등이 법률사무 종사에 적합하다는 것을 증명하는 서류를 법무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1. 10. 26.)

제4조 [법률사무종사기관의 취소] ① 법무부장관은 법 제21조의2제7항에 따라 법률사무종사기관의 지정을 취소하려는 경우 필요하면 대한변호사협회의 장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② 법 제21조의2제7항에 따라 법률사무종사기관의 지정이 취소된 경우 해당 법률사무종사기관은 지체 없이 제2조제4항에 따라 발급받은 지정서를 법무부장관에게 반납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1. 10. 26.)

제5조 [대한변호사협회 연수에 대한 지원] 법무부장관은 대한변호사협회가 법 제21조의2제1항에 따른 연수과정을 설치하고 그 운영에 필요한 지원을 요청한 경우 법 제21조의2제10항에 따라 그에 필요한 비용, 시설 및 인력 등에 대하여 지원을 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1. 10. 26.)

제5조의2 [법률사무종사 또는 연수 기간의 합산] 법 제21조의2제1항에 따른 법률사무 종사 또는 연수 기간을 계산할 때 둘 이상의 법률사무종사기관에서 종사 또는 연수한 자에 대하여는 법률사무 종사



또는 연수 기간이 중첩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그 기간을 합산하여 계산한다.

(본조신설 2011. 10. 26.)

제6조 [사무직원의 채용제한] 법 제22조제2항제1호 각 목 외의 부분에서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률”이란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항, 「형법」 제347조, 제347조의2, 제348조, 제348조의2, 제349조부터 제352조까지, 제355조부터 제357조까지 및 제359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4조, 제5조 및 제6조(같은 법 제2조, 제3조의 경우는 제외한다),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부터 제64조까지의 규정을 말한다. (개정 2012. 6. 7.)

(전문개정 2008. 9. 3.)

제7조 [장부의 작성·보관] ① 법 제28조에 따라 변호사는 법률사건 또는 법률사무에 관한 수임계약을 체결한 때부터 1개월 이내에 수임에 관한 장부를 작성하고, 그 작성일부터 3년간 법률사무소에 보관하여야 한다.

② 법 제28조제2항에 따라 장부에 적어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수임일
2. 수임액
3. 위임인·당사자·상대방의 성명과 주소
4. 수임한 법률사건 또는 법률사무의 내용
5. 수임사건의 관할기관·사건번호 및 사건명
6. 처리 결과

③ 제2항에 따른 장부의 작성 방법, 작성 범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한변호사협회가 정한다.

(전문개정 2008. 9. 3.)

제7조의2 [수임제한 대상 국가기관의 범위] ① 법 제31조제3항에 따라 공직퇴임변호사의 수임이 제한되는 국가기관은 해당 변호사가 퇴직 전 1년부터 퇴직할 때까지 「국가공무원법」에 따른 국가공무원으로 근무한 모든 국가기관으로 한다.

② 다음 각 호의 각 국가기관은 이를 별도의 국가기관으로 보아 법 제31조제3항을 적용한다. 다만, 법 제31조제3항 본문에 따라 동일한 국가기관으로 보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2. 12. 20.)

1. 「법원조직법」 제3조에 따른 대법원, 고등법원, 특허법원, 지방법원, 가정법원, 행정법원, 회생법원, 지방법원 지원, 가정법원 지원, 가정지원, 시·군법원 및 「법원조직법」 제27조제4항에 따라 관할구역의 지방법원 소재지에서 사무를 처리하는 고등법원의 부. 다만, 「법원조직법」 제3조제2항 단서에 따라 지방법원 및 가정법원의 지원 2개를 합하여 1개의 지원으로 하는 경우에 그 지방법원 및 가정법원의 지원은 이를 동일한 국가기관으로 보아 법 제31조제3항을 적용한다.
2. 「검찰청법」 제3조에 따른 대검찰청, 고등검찰청, 지방검찰청, 지방검찰청 지청 및 「검찰청법」 제19조제2항에 따라 관할구역의 지방검찰청 소재지에서 사무를 처리하는 고등검찰청의 지부
3. 「군사법원법」 제6조에 따른 각 지역군사법원
4. 「군사법원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국방부검찰단 및 각 군 검찰단



5.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2조 및 제13조에 따른 경찰청, 시·도경찰청 및 경찰서
6. 「정부조직법」 및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른 각 중앙행정기관
7. 제6호에 따른 중앙행정기관에 그 소속의 행정기관이 있는 경우에는 각각의 행정기관
- ③ 파견, 직무대리, 교육훈련, 휴직, 출산휴가 또는 징계 등으로 인하여 실제로 근무하지 아니한 국가기관은 법 제31조제3항을 적용할 때 수임제한 대상 국가기관으로 보지 아니한다.
- ④ 겸임발령 등으로 인하여 둘 이상의 기관에 소속된 경우에 실제로 근무하지 아니한 국가기관은 법 제31조제3항을 적용할 때 수임제한 대상 국가기관으로 보지 아니한다.
- ⑤ 퇴직 전 1년부터 퇴직한 때까지 일시적 직무대리, 겸임발령 등으로 인하여 소속된 국가기관에서의 근무기간이 1개월 이하인 국가기관은 법 제31조제3항을 적용할 때 수임제한 대상 국가기관으로 보지 아니한다.

(본조신설 2011. 10. 26.)

제7조의3 [공익목적 수임의 범위] 법 제31조제3항 단서 및 같은 조 제5항에서 “공익목적 수임”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나 활동에 관련된 수임을 말한다.

1. 국선번호 또는 국선대리
2. 대한변호사협회 또는 지방변호사회가 지정하는 무상 공익활동
3. 공익법인 또는 비영리법인에 대하여 무료로 제공하는 법률서비스
4. 제1호부터 제3호에 준하는 것으로 법무부장관이 지정하는 활동

(본조신설 2011. 10. 26.)

제8조 [자기가 근무하는 기관의 범위] 법 제36조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기가 근무하는 기관”이란 해당 공무원이 실제 근무하는 다음 각 호의 기관 또는 시설을 말한다. (개정 2022. 12. 20.)

1. 재판기관
 - 가. 헌법재판소
 - 나. 「법원조직법」 제3조제1항에 따른 대법원, 고등법원, 특허법원, 지방법원, 가정법원, 행정법원과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지방법원 및 가정법원의 지원, 가정지원, 시·군법원
 - 다. 「군사법원법」 제6조에 따른 각 지역군사법원
2. 수사기관
 - 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항에 따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 나. 「검찰청법」 제3조제1항에 따른 대검찰청, 고등검찰청, 지방검찰청과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지방검찰청 지청
 - 다.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2조 및 제13조에 따른 경찰청, 시·도경찰청 및 경찰서
 - 라. 「정부조직법」 제43조제2항 및 「해양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에 따른 해양경찰청, 지방해양경찰관서



마.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제3조부터 제5조까지, 제6조의2, 제7조, 제7조의2 및 제8조에 따른 해당 소속기관 또는 시설

바. 「군사법원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국방부검찰단 및 각 군 검찰단

(전문개정 2008. 9. 3.)

제9조 [법무법인의 설립인가신청] ① 법 제41조 전단에 따라 법무법인의 설립인가를 받으려면 법무법인 설립인가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주사무소 소재지의 지방변호사회 및 대한변호사협회를 거쳐 법무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정관

2. 구성원회의 회의록

② 법무부장관은 제1항의 법무법인 설립인가 신청서류의 기재사항에 흠결이 있거나 첨부서류가 미비되어 있으면 신청인에게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③ 법무부장관은 법 제41조 전단에 따라 법무법인 설립인가 신청서류를 심사할 때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사실 및 증거 조사를 하거나 신청인에게 관련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④ 법무부장관은 법 제41조 전단에 따라 법무법인 설립인가를 할 때에는 법무법인 인가대장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고, 법무법인 설립인가증을 신청인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1. 인가번호 및 인가연월일

2. 법무법인의 명칭

3. 주사무소 및 분사무소의 소재지

4. 구성원의 성명 및 주소

5. 그 밖에 필요한 사항

⑤ 법무부장관은 제4항에 따라 신청인에게 법무법인 설립인가증을 발급하면 대한변호사협회에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공증인법」 제15조의2에 따라 공증인가를 받은 법무법인에 대하여는 소속 지방검찰청 검사장에게도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0. 2. 4.)

(전문개정 2008. 9. 3.)

제10조 [법무법인의 정관변경 인가신청] ① 법 제41조 후단에 따라 정관변경의 인가를 받으려면 정관변경 인가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주사무소 소재지의 지방변호사회 및 대한변호사협회를 거쳐 법무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정관변경 이유서

2. 정관변경안

3. 정관변경에 관한 구성원회의 회의록

② 법무부장관은 법 제41조 후단에 따라 법무법인의 정관변경을 인가하면 법무법인 인가대장에 그 뜻을 적고, 대한변호사협회에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공증인법」 제15조의2에 따라 공증인가를 받은 법무법인에 대하여는 소속 지방검찰청 검사장에게도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0. 2. 4.)

③ 제1항에 따른 법무법인 정관변경 인가신청 절차에 관하여는 제9조제2항 및 제3항을 준용한다.

(전문개정 2008. 9. 3.)



제11조 [법무법인의 등기] ① 법무법인의 등기는 그 주사무소 및 분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등기소에서 한다.

② 등기소에는 법무법인 등기부를 비치하여야 한다.

③ 법무법인의 설립등기는 구성원 전원이 공동으로 신청하여야 하며, 그 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정관

2. 법무법인 설립인가증

④ 법무법인의 등기에 관하여 법 및 이 영에 정한 것 외에는 「상업등기법」을 준용한다.

⑤ 법무법인은 설립등기를 한 경우에는 7일 이내에 법무법인 설립등기 보고서(전자문서로 된 보고서를 포함한다)를 법무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법무부장관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를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10. 11. 2.)
(전문개정 2008. 9. 3.)

제12조 [법무법인의 주사무소와 분사무소] ① 법 제48조제1항에 따라 법무법인이 분사무소를 둔 경우 법무법인의 주사무소에는 통산하여 5년 이상 「법원조직법」 제4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직에 있던 사람 1명을 포함하여 구성원의 3분의 1 이상이 주재(駐在)하여야 하고, 분사무소에는 1명 이상의 구성원이 주재하여야 한다. (개정 2011. 10. 26.)

② 법 제48조제2항에 따라 분사무소의 설치를 신고할 때에는 그 분사무소에서 직무를 수행할 구성원을 명시하여야 한다.

③ 분사무소는 시·군·구(자치구를 말한다) 관할구역마다 1개를 둘 수 있다.

④ 분사무소에는 법무법인의 분사무소임을 표시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8. 9. 3.)

제13조 [법무법인의 업무범위] 법 제51조 단서에 따라 법무법인이 수행할 수 있는 변호사의 업무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건에 대한 소송에 관한 행위를 제외한 것으로 한다. (개정 2021. 1. 5.)

1. 법률행위나 그 밖의 사법(私法)상 권리에 관한 사실에 대한 공정증서를 작성한 사건
2. 어음, 수표 또는 이에 부착된 보충지(補充紙)에 강제집행할 것을 적은 증서를 작성한 사건
3. 법인의 등기 절차에 첨부되는 의사록을 인증한 사건
4. 「상법」 제292조 및 그 준용규정에 따라 정관을 인증한 사건

(전문개정 2008. 9. 3.)

제13조의2 [다른 법인에 대한 출자제한 등] 법 제58조의8제1항에 따라 법무법인(유한)이 다른 법인에 출자하거나 타인을 위하여 채무를 보증한 경우 그 합계액은 법 제58조의8제2항에 따른 자기자본(이하 “자기자본”이라 한다)의 규모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보다 많으면 아니 된다. 이 중 타인을 위하여 채무를 보증한 금액의 합계액은 자기자본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보다 많으면 아니 된다.

1. 자기자본이 5억원인 경우에는 자기자본의 100분의 25에 해당하는 금액



2. 자기자본이 5억원을 넘는 경우에는 5억원의 100분의 25에 해당하는 금액과 5억원을 넘는 금액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을 합산한 금액

(전문개정 2008. 9. 3.)

제13조의3 [손해배상책임에 관한 명시] ① 법 제58조의11제3항에 따라 법무법인(유한)은 사건수임계약서와 광고물(구성원 또는 소속변호사의 변동을 내용으로 하는 광고물은 제외한다)에 법 제58조의11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광고물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광고매체를 통하여 법무법인(유한)의 변호사 및 그 업무에 관하여 정보와 자료를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1. 「출판문화산업 진흥법」 제2조에 따른 간행물
2. 「방송법」 제2조에 따른 방송

(전문개정 2008. 9. 3.)

제13조의4 [손해배상 준비금의 적립 등] ① 법무법인(유한)은 법 제58조의12제1항에 따라 사업연도마다 해당 사업연도 총매출액의 100분의 2에 해당하는 금액을 손해배상 준비금으로 적립하거나, 설립 등기를 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보험 또는 대한변호사협회가 운영하는 공제기금에 가입하여야 한다.

② 법무법인(유한)은 제1항에 따른 손해배상 준비금을 직전 2개 사업연도 및 해당 사업연도의 총매출액 평균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에 이를 때까지 적립하여야 한다.

③ 법무법인(유한)은 손해배상 준비금을 사용하여 구성원 또는 소속 변호사를 포함한 직원으로부터 취득한 구상권(求償權)을 행사한 경우 그 구상한 금액을 손해배상준비금에 계상(計上)하여야 한다.

④ 제1항의 보험 또는 공제기금의 보상한도액은 보상 청구 건당 1억원 이상으로 하여야 하며, 연간 보상한도액은 구성원 및 구성원 아닌 소속 변호사의 수에 1억원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 또는 20억원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⑤ 법무법인(유한)은 제4항에 따른 보상한도와 관련하여 남은 보상한도액을 3억원 이상으로 유지하여야 하며, 남은 보상한도액이 3억원 미만인 경우에는 그 사유발생일부터 1개월 이내에 3억원 이상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⑥ 법무법인(유한)은 제1항에 따라 가입한 보험 또는 공제기금이 기간만료 등의 사유로 종료될 때에는 종료일 전까지 다시 보험 또는 공제기금에 가입하여야 한다.

⑦ 제1항에 따라 보험 또는 공제기금에 가입하는 경우 보상 청구 건당 1천만원 이하의 범위에서 자기부담금을 설정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8. 9. 3.)

제13조의5 [준용규정] 법무법인(유한)에 관하여는 제9조부터 제13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전문개정 2008. 9. 3.)

제13조의6 [법무조합 관련 서면의 비치·열람] ① 법무조합의 주사무소 및 분사무소 소재지의 지방변호사회는 법 제58조의21제2항 각 호에서 정한 서면을 제출받은 후 1주일 이내에 제목, 제출자 및 제출일자를 적은 후 제출 서면의 사본을 첨부하여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비치하여야 한다.

② 지방변호사회는 제1항에 따라 비치하는 서면의 내용 중 구성원의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및 주소



등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할 우려가 있는 부분을 삭제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8. 9. 3.)

제13조의7 [준용규정] 법무조합에 관하여는 제9조, 제10조, 제12조, 제13조, 제13조의3 및 제13조의4를 준용한다.

(전문개정 2008. 9. 3.)

제14조 <삭제> (2005. 7. 27.)

제15조 <삭제> (2005. 7. 27.)

제16조 [지방변호사회 및 대한변호사협회의 설립인가 신청] 지방변호사회 또는 대한변호사협회는 법 제65조 또는 법 제79조에 따라 설립인가 또는 회칙변경인가 신청을 하려면 인가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회칙
2. 회칙 작성에 관한 회의록

(전문개정 2008. 9. 3.)

제17조 [총회결의 내용의 보고] ① 법 제77조제2항 또는 법 제86조제2항에 따른 지방변호사회 또는 대한변호사협회의 총회 결의내용 보고는 그 총회가 종료된 날부터 7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보고에는 그 총회의 의사록 사본을 첨부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8. 9. 3.)

제17조의2 [변호사의 연수교육시간] 법 제85조제1항에 따른 변호사의 연수교육 시간은 1년에 법조윤리과목 1시간 이상을 포함하여 8시간 이상으로 하되, 연수교육 이수시간의 계산방법 및 연수교육 이수의 주기 등에 관한 사항은 대한변호사협회가 정한다.

(본조신설 2007. 7. 27.)

제18조 [법조윤리협회의 사무소] 법 제88조에 따라 설치되는 법조윤리협의회(이하 “윤리협의회”라 한다)의 사무소는 서울특별시에 두고, 필요한 경우 지역사무소 또는 출장소를 둘 수 있다.

(전문개정 2007. 7. 27.)

제18조의2 [사실조회] ① 윤리협의회는 법 제89조제2항에 따라 관련 사실을 조회하는 때에는 관계인 및 관계 기관·단체 등에 사실조회서(「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회신기한 7일 전까지 통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사실조회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사실조회의 사유
2. 조회 대상
3. 회신기한
4. 윤리협의회에 요구에 정당한 이유 없이 따르지 아니하는 경우의 제재(근거 법령 및 조항 포함)
5. 그 밖에 사실조회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

(본조신설 2017. 9. 15.)



제18조의3 [자료제출 요구] ① 윤리협의회는 법 제89조제2항에 따라 자료제출을 요구하는 때에는 관계인 및 관계 기관·단체 등에 자료제출요구서(「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제출기한 7일 전까지 통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자료제출요구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자료제출 요구의 사유
2. 제출할 자료
3. 제출기한
4. 제출자료의 반환 여부
5. 윤리협의회에 요구에 정당한 이유 없이 따르지 아니하는 경우의 제재(근거 법령 및 조항 포함)
6. 그 밖에 자료제출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

(본조신설 2017. 9. 15.)

제18조의4 [출석요구] ① 윤리협의회는 법 제89조제2항에 따라 윤리협의회에 출석하여 진술하거나 설명할 것을 요구하는 때에는 관계인에게 출석요구서(「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출석요구일 7일 전까지 통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출석요구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출석요구의 취지
2. 출석일시와 장소
3. 출석하여 진술하거나 설명하여야 하는 내용
4. 윤리협의회에 요구에 정당한 이유 없이 따르지 아니하는 경우의 제재(근거 법령 및 조항 포함)
5. 그 밖에 해당 출석요구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

③ 제1항에 따라 출석을 요구받은 사람은 지정된 출석일시에 출석하는 경우 업무 또는 생활에 지장이 있는 때에는 윤리협의회에 출석일시를 변경하여 줄 것을 신청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7. 9. 15.)

제18조의5 [현장조사] ① 윤리협의회는 법 제89조제2항에 따라 현장조사를 실시할 때에는 법무법인, 법무법인(유한), 법무조합, 법률사무소, 「외국법자문사법」 제2조제9호에 따른 합작법무법인(이하 “현장조사대상기관”이라 한다)에 현장조사계획서(「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현장조사 개시일 7일 전까지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미리 통지하면 증거인멸 등으로 인하여 그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현장에서 현장조사계획서를 제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현장조사계획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현장조사의 목적
2. 현장조사 기간과 장소
3. 현장조사를 실시하는 윤리협회 소속 직원의 성명과 직위
4. 현장조사 범위와 내용
5. 현장조사를 정당한 이유 없이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경우의 제재(근거 법령 및 조항 포함)



6. 그 밖에 당해 현장조사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

③ 현장조사는 해가 뜨기 전이나 해가 진 뒤에는 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현장조사대상기관(대리인 및 관리책임이 있는 자를 포함한다)이 동의한 경우
2. 현장조사대상기관의 업무시간에 현장조사를 실시하는 경우
3. 해가 뜬 후부터 해가 지기 전까지 현장조사를 실시하는 경우에는 현장조사의 목적 달성이 불가능하거나 증거인멸로 인하여 법령 등의 위반 여부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

(본조신설 2017. 9. 15.)

제18조의6 [사실조회 등의 범위] 윤리협의회는 사실조회·자료제출요구·출석요구 및 현장조사를 징계개시의 신청 또는 수사 의뢰 업무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 안에서 실시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7. 9. 15.)

제19조 [윤리협의회 위원] ① 위원은 윤리협의회 회의에 의안을 제출할 수 있다.

② 위원은 수시로 윤리협의회 직무에 관하여 간사 또는 사무직원으로부터 보고를 받을 수 있으며, 사무기구가 보관하는 기록, 그 밖에 필요한 자료를 열람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8. 9. 3.)

제20조 [후임 위원의 지명 등] ① 위원의 임기가 만료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지명 또는 위촉한 법원행정처장, 법무부장관, 대한변호사협회의 장은 임기만료일 30일 전까지 후임 위원을 지명 또는 위촉하고 이를 윤리협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② 위원이 법 제89조의2제4항에 따라 위원신분을 상실하거나 사임한 때 또는 그 밖의 사유로 궐위된 때에는 해당 위원을 지명 또는 위촉한 법원행정처장, 법무부장관, 대한변호사협회의 장은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후임 위원을 지명 또는 위촉하고 이를 윤리협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8. 9. 3.)

제20조의2 [윤리협회의 위원장] ① 위원장은 윤리협회를 대표하고 윤리협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대한변호사협회의 장이 지명 또는 위촉한 위원 중에서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사람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장의 임기가 만료되거나 그 직을 사임한 때 또는 그 밖의 사유로 궐위된 때에는 대한변호사협회의 장이 지명 또는 위촉한 위원 중 연장자가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하며, 궐위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후임 위원장을 선출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8. 9. 3.)

제20조의3 [윤리협회의 의결사항] ① 윤리협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개정 2021. 1. 5.)

1. 법 제89조제1항에 따른 윤리협회의 업무에 관한 사항
2. 법 제89조제2항에 따른 사실조회 등의 요청에 관한 사항



3. 사업계획 및 예산과 결산에 관한 사항
4. 지역 사무소 또는 출장소의 설치 및 폐지에 관한 사항
5. 윤리협의회 규칙의 제정·개정 또는 폐지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법령에 규정되거나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② 윤리협의회는 제1항제2호부터 제6호까지의 사항 중 일부를 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처리하게 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8. 9. 3.)

제20조의4 [윤리협회의의 회의] ① 위원장은 윤리협회의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며, 정기회의는 분기 1회,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에 소집한다.

③ 위원장은 회의 개최 3일 전까지 회의 일시·장소 및 의안을 구체적으로 밝혀 위원에게 통보하여 회의를 소집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회의의 공개 여부, 회의록 작성,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윤리협의회가 정한다.

(전문개정 2008. 9. 3.)

제20조의5 [윤리협회의의 의사] 윤리협회의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본조신설 2007. 7. 27.)

제20조의6 [윤리협회의의 소위원회] ① 윤리협회의는 심의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심의사항에 따라 분야별 소위원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② 소위원회는 윤리협회의의 위원 3명 이상 6명 이내로 구성하며, 소위원회의 위원장은 소위원회 위원 중에서 윤리협회의의 위원장이 지명한다.

③ 소위원회는 윤리협의회가 의결로 정하는 사항에 대하여 심의한다.

④ 소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는 제20조의4제3항 및 제20조의5를 준용한다.

(전문개정 2008. 9. 3.)

제20조의7 [윤리협회의의 사무기구] ① 윤리협회의에는 법 제89조의3제1항에 따라 사무기구를 두되, 사무기구에 사무국장 1명과 필요한 직원을 둘 수 있다.

② 윤리협회의는 법원행정처, 법무부 및 대한변호사협회로부터 필요한 직원을 파견받을 수 있다.

③ 사무기구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하여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윤리협의회가 정한다.

(전문개정 2008. 9. 3.)

제20조의8 [윤리협회의의 사업연도] 윤리협회의의 사업연도는 정부의 회계연도에 따른다.

(본조신설 2007. 7. 27.)

제20조의9 [윤리협회의의 재원] 윤리협회의는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운영한다.

1. 대한변호사협회 등 정부 외의 자가 기부하는 현금, 그 밖의 재산
2. 정부의 보조금



3. 그 밖의 수입금

(전문개정 2008. 9. 3.)

제20조의10 [윤리협회의의 규칙] 윤리협회의는 윤리협회의의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07. 7. 27.)

제20조의11 [공직퇴임변호사의 수입자료 등 제출] ① 법 제89조의4제1항에 따라 법관, 검사, 장기복무 군법무관, 그 밖의 공무원의 직에 있다가 퇴직(재판연구원, 사법연수생과 병역의무의 이행을 위하여 군인, 공익법무관 등으로 근무한 자는 제외한다)하여 변호사 개업을 한 사람(이하 “공직퇴임변호사”라 한다)이 수입자료 및 처리결과를 제출하여야 하는 시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7. 9. 15.)

1. 매년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의 수입사건에 대하여는 7월 31일까지

2. 매년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수입사건에 대하여는 다음 해 1월 31일까지

② 법 제89조의4제5항에 따라 공직퇴임변호사가 제출하는 수입자료 및 처리결과의 기재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공직퇴임일

2. 퇴직 당시의 소속기관 및 직위

3. 수입일자

4. 위임인

5. 위임인의 연락처

6. 상대방

7. 사건번호

8. 사건명

9. 수입사건의 관할기관

10. 수입사무의 요지

11. 진행상황 및 처리결과

③ 수입사건이 형사사건(형사신청사건 및 내사사건을 포함한다)인 경우에는 제2항제11호의 사항을 적을 때에는 인신구속 여부 및 그 변경사항도 포함하여 적어야 한다.

④ 지방변호사회는 소속 회원 중 법 제89조의4제1항에 따라 수입자료와 처리결과를 제출하여야 할 공직퇴임변호사의 명단 및 공직퇴임변호사로부터 제출받은 수입자료와 처리결과를 제1항 각 호에 규정된 제출시한으로부터 1개월 내에 윤리협회의에 제출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8. 9. 3.)

제20조의12 [특정변호사의 수입자료 등 제출] ① 법 제89조의5제1항에 따라 지방변호사회가 제2항에서 정하는 수 이상의 사건을 수입한 변호사(법 제50조·제58조의16 및 제58조의30에 따른 법무법인·법무법인(유한)·법무조합의 담당변호사나 「외국법자문사법」 제35조의20제1항에 따른 합작법무법인의 담당변호사를 포함하며, 이하 “특정변호사”라 한다)의 성명과 사건목록을 제출하여야 하는 시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6. 6. 28.)



1. 매년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의 수임사건에 대하여는 7월 31일까지
2. 매년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수임사건에 대하여는 다음 해 1월 31일까지
- ② 지방변호사회는 해당 기간마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특정변호사로 선정하고, 그 선정의 근거를 제1항의 성명 및 사건목록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1. 형사사건(형사신청사건 및 내사사건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의 수임건수가 30건 이상이고 소속 회원의 형사사건 평균 수임건수의 2.5배 이상인 변호사
 2. 형사사건 외의 본안사건의 수임건수가 60건 이상이고 소속 회원의 형사사건 외의 본안사건 평균 수임건수의 2.5배 이상인 변호사
 3. 형사사건 외의 신청사건의 수임건수가 120건 이상이고 소속 회원의 형사사건 외의 신청사건 평균 수임건수의 2.5배 이상인 변호사
- ③ 하나의 사건을 둘 이상의 변호사(법무법인·법무법인(유한)·법무조합 또는 「외국법자문사법」 제2조제9호에 따른 합작법무법인을 포함한다)가 공동으로 수임한 경우에는 각 변호사의 수임사건 수는 1건으로 한다. (개정 2016. 6. 28.)
- ④ 법무법인·법무법인(유한)·법무조합 또는 「외국법자문사법」 제2조제9호에 따른 합작법무법인이 수임한 사건에 관하여는 1을 담당변호사의 수로 나눈 값을 각 담당변호사의 수임사건 수로 계산한다. 다만, 담당변호사가 4명 이상인 경우에는 각 담당변호사의 수임사건 수는 4분의 1건으로 본다. (개정 2016. 6. 28.)
- ⑤ 인력과 물적 설비를 공동으로 이용하는 법률사무소로서 대한변호사협회가 정하는 바에 따라 대한변호사협회에 신고한 합동사무소의 구성원 둘 이상의 이름으로 수임한 사건의 수임사건 수 계산에 관하여는 제4항을 준용한다.
- ⑥ 지방변호사회는 특정변호사의 사건목록에 수임일자, 위임인, 사건번호 및 사건명을 적어야 한다. (전문개정 2008. 9. 3.)

제20조의13 [활동내역 등 제출대상 퇴직공직자 범위] 법 제89조의6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직급 이상의 직위에 재직했던 변호사 아닌 퇴직공직자”란 다음 각 호의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17. 7. 26.)

1. 5급 일반직공무원 및 지방공무원과 이에 상당하는 보수를 받는 별정직 공무원
 2. 5등급 외무공무원과 5급 국가정보원 직원 및 대통령경호처 경호공무원
 3. 헌법재판소 헌법연구관보
 4. 중령 및 3급 군무원
 5.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 중 5급 일반직공무원에 상당하는 연구관 및 지도관
 6. 5급 일반직공무원에 상당하는 직위에 임명된 장학관·교육연구관
 7.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공무원으로 임명할 수 있는 직위 또는 이에 상당하는 직위에 채용된 임기제공무원
 8. 금융감독원의 3급 및 4급 직원
- (본조신설 2011. 10. 26.)



제20조의14 [퇴직공직자의 명단 제출] 법 제89조의6제1항에 따라 제출하는 명단자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퇴직공직자의 성명
2. 퇴직공직자의 주민등록번호
3. 퇴직공직자의 퇴직 시 소속 기관과 직급
4. 퇴직공직자의 법무법인 등 취업일
5. 명단제출 책임변호사

(본조신설 2011. 10. 26.)

제20조의15 [퇴직공직자 업무내역서의 기재사항] ① 법 제89조의6제6항에서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퇴직공직자가 법무법인 등의 의뢰인 및 변호사 등 소속원에게 제공한 자문·고문 내역(서면의 형태로 제공되었을 경우에는 그 개요를 말한다)
2. 퇴직공직자의 보수
3. 업무내역서의 작성 책임변호사

② 제1항에 따른 자문·고문 내역은 퇴직공직자가 퇴직 전 5년 이내에 소속하였던 부처의 업무와 관련된 사항에 한정한다. 이 경우 「정부조직법」 등의 개정에 따른 조직의 통합·분리, 명칭변경 등으로 인하여 부처명이 바뀐 경우 변경 전후 부처는 동일한 부처로 본다.

(본조신설 2011. 10. 26.)

제21조 [법무부 변호사징계위원회의 자격] 법 제94조제1항에 따른 법무부 변호사징계위원회(이하 “법무부 징계위원회”라 한다)의 위원 및 예비위원의 임명 또는 위촉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판사, 검사인 위원 및 예비위원 : 「법원조직법」 제4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직에 10년 이상 재직한 사람
2. 변호사인 위원 및 예비위원 : 「법원조직법」 제4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직에 10년 이상 재직한 사람으로서 변호사로 5년 이상 개업한 경력이 있는 사람
3. 법학 교수인 위원 및 예비위원 : 법률학 조교수 이상으로 5년 이상 재직한 경력이 있는 사람
4. 경험과 덕망이 있는 자인 위원 및 예비위원 : 일정한 직업을 가지고 10년 이상 사회활동을 한 경력이 있는 사람 또는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에서 추천하는 사람

(전문개정 2008. 9. 3.)

제22조 [법무부징계위원회의 직원] ① 법무부징계위원회에는 징계에 관한 기록, 그 밖의 서류의 작성과 보관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게 하기 위하여 간사 1명과 서기 약간 명을 둔다.

② 간사와 서기는 법무부 소속 공무원 중에서 위원장이 임명한다.

(전문개정 2008. 9. 3.)

제23조 [수당] 법무부징계위원회에 출석한 위원과 예비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법무부 소속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 관련되어 출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전문개정 2008. 9. 3.)

제23조의2 [징계처분의 공개 범위와 시행 방법] ① 대한변호사협회의 장은 법 제98조의5제3항에 따라 변호사 징계처분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정보(이하 “징계처분정보”라 한다)를 징계처분의 확정일부터 2주일 이내에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하고, 해당 징계처분의 확정일 이후 최초로 발간하는 대한변호사협회 발행 정기간행물에 게재하여야 한다.

1. 징계처분을 받은 변호사의 성명·생년월일·소속지방법변호사회 및 사무실의 주소·명칭(해당 변호사가 법무법인, 법무법인(유한), 법무조합(이하 “법무법인등”이라 한다)에 소속되어 있거나 그 구성원인 경우에는 그 법무법인등의 주소·명칭을 말한다)
 2. 징계처분의 내용 및 징계사유의 요지(위반행위의 태양 등 그 사유를 구체적으로 알 수 있는 사실관계의 개요를 포함한다)
 3. 징계처분의 효력발생일. 다만, 징계의 종류가 정직인 경우에는 정직개시일 및 정직기간으로 한다.
- ② 제1항에 따라 징계처분정보를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하는 기간은 최초 게재일부터 기산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으로 한다.

1. 영구제명·제명 : 3년
2. 정직 : 1년. 다만, 정직기간이 1년보다 장기인 경우에는 그 정직기간으로 한다.
3. 과태료 : 6개월
4. 견책 : 3개월

③ 대한변호사협회의 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징계처분정보를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할 경우 홈페이지 최상단 메뉴에 변호사 정보란을, 그 하위 메뉴로 변호사 징계 내역을 두고, 변호사 징계 내역 메뉴에 징계처분정보를 기재하는 방법으로 게재하여야 한다.

④ 대한변호사협회의 장은 제3항에 따라 설치되는 변호사 징계 내역 메뉴에서 변호사의 성명 및 사무실의 명칭(해당 변호사가 법무법인등에 소속되어 있거나 그 구성원인 경우에는 그 법무법인등의 명칭을 말한다)으로 징계처분정보가 검색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2. 1. 25.)

제23조의3 [징계정보 열람·등사 신청을 할 수 있는 자 및 정보제공 범위] ① 법 제98조의5제4항에 따라 징계정보의 열람·등사를 신청할 수 있는 자(이하 이 조 및 제23조의4에서 “신청권자”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1. 해당 변호사와 면담하였거나 사건수임 계약을 체결하는 등 변호사를 선임하였거나 선임하려는 자
2. 제1호에 규정된 자의 직계존비속, 동거친족 또는 대리인

② 신청권자가 징계정보의 열람·등사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해당 변호사의 인적사항, 변호사 선임 대상 사건의 개요 및 징계정보의 열람·등사를 신청하는 취지를 적은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대한변호사협회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주민등록증 사본 등 신청권자의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2. 변호사 선임 대상 사건과 관련하여 해당 변호사의 징계정보가 필요한 사유 등을 적은 선임의사 확인서. 다만, 계약서, 선임계 또는 해당 변호사의 동의서 등 위임계약 등을 체결하였거나 징계



정보의 열람·등사에 대한 해당 변호사의 동의가 있었음을 증명하는 서류가 있으면 선임의사확인서를 갈음하여 그 서류를 제출할 수 있다.

3. 제1항제2호의 신청권자가 신청하는 경우에는 가족관계증명서, 위임장 등 가족관계나 대리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③ 법 제98조의5제4항에 따라 열람·등사를 신청할 수 있는 징계정보의 범위는 신청일부터 기산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 이내에 확정된 징계처분정보로 한다.

1. 영구제명·제명 : 10년
2. 정직 : 7년
3. 과태료 : 5년
4. 견책 : 3년

④ 대한변호사협회의 장은 제1항의 신청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신청에 따른 징계정보를 제공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신청서에 필수적 기재사항을 누락하였거나 제1항에 따른 신청권이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2. 정당한 이유 없이 수회에 걸쳐 반복적으로 열람·등사를 신청하거나, 징계정보의 제공신청대상 변호사가 사건에 비추어 과도하게 다수인 경우 등 열람·등사 신청의 목적이 변호사를 선임하기 위한 것이 아님이 명백한 경우

⑤ 대한변호사협회의 장은 제4항에 따라 징계정보를 제공하지 아니하기로 결정한 때에는 지체 없이 신청인에게 그 취지 및 사유를 통지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2. 1. 25.)

제23조의4 [열람·등사 신청 방법, 절차 및 비용 등] ① 신청권자는 신청서 및 그 첨부서류를 대한변호사협회의 장에게 직접 제출하거나 우편, 모사전송 또는 이메일 등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징계정보의 열람·등사를 신청할 수 있다.

② 대한변호사협회의 장은 제1항의 신청을 받으면 신청일부터 1주일 이내에 직접 수령, 우편, 모사전송 또는 이메일 등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방법 중 신청인이 선택한 방법으로 해당 변호사에 관한 징계정보 확인서를 제공하여야 한다.

③ 대한변호사협회의 장은 제2항에 따라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정보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위조방지를 위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정보의 열람·등사 및 우송 등에 드는 비용은 대한변호사협회의 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실비의 범위에서 신청인이 부담하여야 한다.

⑤ 제2항에 따라 징계정보를 제공받은 자는 해당 정보를 변호사 선임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본조신설 2012. 1. 25.)

제24조 [이의신청의 방식] ① 법 제100조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을 하려는 자는 법무부징계위원회에 이의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이의신청서에는 이의신청의 취지와 이유를 적어야 하고, 그 밖에 필요한 자료를 첨부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8. 9. 3.)

제24조의2 [참고인진술 등] 법무부장계위원회는 직권 또는 징계혐의자나 특별변호인의 청구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실시할 수 있다.

1. 참고인에 대한 진술 또는 감정의 요청
2. 필요한 물건이나 장소에 대한 검증
3. 서류 또는 그 밖에 심의에 필요한 물건의 소지인에 대한 제출 요청
4. 행정기관, 그 밖의 기관에 대한 사실의 조회

(전문개정 2008. 9. 3.)

제24조의3 [대한변호사협회의 장의 의견제시] 대한변호사협회의 장은 법 제100조제2항에 따른 법무부장계위원회의 결정에 앞서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07. 7. 27.)

제24조의4 [예비위원의 직무수행] 법무부장계위원회 위원이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하는 예비위원이 그 직무를 수행한다.

(본조신설 2007. 7. 27.)

제24조의5 [결정서의 작성 등] ① 법무부장계위원회가 징계에 관한 의결을 하였을 때에는 결정서를 작성하여야 하며, 결정서에는 주문과 이유를 적고 위원장과 심의에 참여한 위원이 서명하고 날인하여야 한다.

② 간사는 심사기록을 작성하고 위원장과 함께 서명하고 날인하여야 한다.

③ 징계에 관한 의결 결과는 징계혐의자에게 송달하고, 대한변호사협회의 장 및 징계개시를 신청한 자에게 각각 통지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8. 9. 3.)

제25조 [업무정지결정의 청구] 법무부장관은 법 제102조제1항 본문에 따라 변호사의 업무정지에 관한 결정을 청구하려면 피청구인의 인적사항, 공소사실 또는 징계혐의사실, 의뢰인이나 공공의 이익을 침해할 구체적 위험성 등을 업무정지결정 청구서에 적어 법무부장계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8. 9. 3.)

제26조 [업무정지의 효력발생] 법 제102조제2항에 따른 법무부장관의 업무정지명령은 해당 변호사에게 송달된 때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전문개정 2008. 9. 3.)

제27조 [통보] ① 법무부장관은 법 제102조제2항에 따라 변호사에게 업무정지를 명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대법원장,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검찰총장 및 대한변호사협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20. 7. 14.)

② 법무부장관이 법 제105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업무정지명령을 해제한 경우에도 제1항과 같다.



(전문개정 2008. 9. 3.)

제28조 [규제의 재검토] 법무부장관은 제13조의2에 따른 다른 법인에 대한 출자 및 채무보증 제한에 대하여 2014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5년마다(매 5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3. 12. 30.)

부 칙 <대통령령 제16914호, 2000. 7. 27.>

이 영은 2000년 7월 29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대통령령 제18312호, 2004. 3. 17.> (전자적민원처리를위한가석방자관리규정등중개정령)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대통령령 제18971호, 2005. 7. 27.>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5년 7월 2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법무법인의 조직변경에 따른 분사무소에 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일부터 2년 이내에 주사무소가 같은 시·군·구에 있는 법무법인이 합병하여 법무법인(유한) 또는 법무조합으로 조직변경하는 경우에는 법무부장관의 설립인가를 받은 날부터 5년간은 제13조의5 및 제13조의7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준용되는 제12조제3항 단서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그 분사무소를 폐쇄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3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3항제11호중 “법무법인”을 “법무법인·법무법인(유한)·법무조합”으로 한다.

② 도시 및주거환경정비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4 제2호 가목중 단서중 “법무법인”을 “법무법인·법무법인(유한)·법무조합”으로 한다.

③ 세무사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5조제2항중 “법무법인”을 각각 “법무법인·법무법인(유한)·법무조합”으로 한다.

④ 지방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제3중제162호중 “법무법인”을 “법무법인·법무법인(유한)·법무조합”으로 한다.



부 칙 <대통령령 제20196호, 2007. 7. 27.>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변호사 연수교육에 관한 특례] 제17조의2의 개정규정에 따른 변호사의 연수교육시간은 2007년의 경우에는 2008년과 합산하여 법조윤리과목 1시간 이상을 포함하여 8시간 이상으로 한다.

부 칙 <대통령령 제20983호, 2008. 9. 3.>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8년 9월 29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국가공로 외국변호사에 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변호사의 인가를 받은 외국변호사의 개업허가, 등록신청, 자격인가 및 개업허가의 취소 등에 관하여는 제3조부터 제5조까지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

부 칙 <대통령령 제22006호, 2010. 2. 4.> (공증인법 시행령)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10년 2월 7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령의 개정] 변호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5항 단서 중 “공증사무소 설치인가를 받은”을 “「공증인법」 제15조의2에 따라 공증인가를 받은”으로 한다.

제10조제2항 단서 중 “공증사무소 설치인가를 받은”을 “「공증인법」 제15조의2에 따라 공증인가를 받은”으로 한다.

제4조 및 제5조 생략

부 칙 <대통령령 제22151호, 2010. 5. 4.> (전자정부법 시행령)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10년 5월 5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78>까지 생략

<79> 변호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5항 단서 중 “「전자정부법」 제21조제1항”을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으로 한다.

<80>부터 <192>까지 생략

부 칙 <대통령령 제22467호, 2010. 11. 2.>
(행정정보의 공동이용 및 문서감축을 위한 경제교육지원법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대통령령 제23265호, 2011. 10. 26.>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종전에 취업한 퇴직공직자의 명단제출] 법 제89조의6제1항에 따라 퇴직공직자의 명단을 지방변호사회에 제출하는 경우에 이 영 시행 전에 이미 취업 중인 퇴직공직자는 이 영 시행일에 취업한 것으로 본다.

부 칙 <대통령령 제23528호, 2012. 1. 25.>

이 영은 2012년 1월 26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대통령령 제23845호, 2012. 6. 7.>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12년 6월 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④까지 생략

⑤ 변호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 중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을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⑥부터 ⑨까지 생략



부 칙 <대통령령 제24415호, 2013. 3. 23.>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⑦까지 생략

⑧ 변호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조의13제2호 중 “대통령실”을 “대통령경호실”로 한다.

⑨부터 <16>까지 생략

부 칙 <대통령령 제24852호, 2013. 11. 20.>
(공무원임용령)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13년 12월 1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7조까지 생략

제3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25>까지 생략

<26> 변호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조의13제7호 중 “계약직공무원”을 “임기제공무원”으로 한다.

<27>부터 <50>까지 생략

제9조 생략

부 칙 <대통령령 제25050호, 2013. 12. 30.>
(행정규제기본법 개정에 따른 규제 재검토기한 설정을
위한 주택법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이 영은 201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부 칙 <대통령령 제25751호, 2014. 11. 19.>
(행정자치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5조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대통령령을 개정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78>까지 생략

<79> 변호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2호다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다. 「정부조직법」 제22조의2제1항 및 「국민안전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장·제8장에 따른 국민안전처, 지방해양경비안전관서

<80>부터 <418>까지 생략

부 칙 <대통령령 제27261호, 2016. 6. 28.>
(외국법자문사법 시행령)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1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변호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조의1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무법인·법무법인(유한)·법무조합의 담당변호사”를 “법무법인·법무법인(유한)·법무조합의 담당변호사나 「외국법자문사법」 제35조의20제1항에 따른 합작법무법인의 담당변호사”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및 같은 조 제4항 본문 중 “법무법인·법무법인(유한)·법무조합”을 각각 “법무법인·법무법인(유한)·법무조합 또는 「외국법자문사법」 제2조제9호에 따른 합작법무법인”으로 한다.

② 생략

부 칙 <대통령령 제28211호, 2017. 7. 26.>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8조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대통령령을 개정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7조까지 생략

제8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67>까지 생략

<68> 변호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2호다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다. 「정부조직법」 제43조제2항 및 「해양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에 따른 해양경찰청, 지방해양경찰관서

제20조의13제2호 중 “대통령경호실”을 “대통령경호처”로 한다.

<69>부터 <388>까지 생략

부 칙 <대통령령 제28290호, 2017. 9. 15.>

이 영은 2017년 9월 15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대통령령 제30833호, 2020. 7. 14.>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에 따른 15개 대통령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이 영은 2020년 7월 15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대통령령 제31349호, 2020. 12. 31.>
(자치경찰사무와 시·도자치경찰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⑰까지 생략

⑱ 변호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의2제2항제5호 중 “「경찰법」 제2조에 따른 경찰청, 지방경찰청”을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2조 및 제13조에 따른 경찰청, 시·도경찰청”으로 한다.

제8조제2호다목 중 “「경찰법」 제2조제1항에 따른 경찰청과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지방경찰청,”을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2조 및 제13조에 따른 경찰청, 시·도경찰청 및”으로 한다.

⑲부터 ④9까지 생략

부 칙 <대통령령 제31380호, 2021. 1. 5.>
(어려운 법령용어 정비를 위한 473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부 칙 <대통령령 제33081호, 2022. 12. 20.>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이 영 시행 전에 수임한 사건에 관한 특례] ① 제7조의2제2항제3호 및 제4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법률 제18465호 군사법원법 일부개정법률(이하 이 조에서 “개정법률”이라 한다)이 시행되기 전에 종전의 「군사법원법」(개정법률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제5조에 따른 고등군사법원 및 보통군사법원과 같은 법 제36조제2항에 따른 고등검찰부 및 보통검찰부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공직퇴임변호사가 개정법률 시행 이후 이 영 시행 전의 기간에 수임한 사건에 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각 국가기관을 별도의 국가기관으로 보아 법 제31조제3항을 적용한다.

1. 「군사법원법」 제6조에 따른 각 지역군사법원, 종전의 「군사법원법」 제5조 각 호에 따른 고등군사법원 및 보통군사법원
2. 「군사법원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국방부검찰단, 각 군 검찰단, 종전의 「군사법원법」 제36조제2항에 따른 고등검찰부 및 보통검찰부

② 개정법률 시행 이후 이 영 시행 전의 기간에 「군사법원법」 제6조에 따른 지역군사법원과 같은 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국방부검찰단 및 각 군 검찰단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공직퇴임변호사가 같은 기간에 수임한 사건에 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각 국가기관을 별도의 국가기관으로 보아 법 제31조제3항을 적용한다.

1. 「군사법원법」 제6조에 따른 각 지역군사법원
2. 「군사법원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국방부검찰단 및 각 군 검찰단



변호사시험법

2009. 5. 28.

법률 제9747호

개정

2011. 7. 25. 법률 제10923호 2017. 12. 12. 법률 제15154호
 2018. 12. 18. 법률 제15975호 2020. 6. 9. 법률 제17366호
 2020. 12. 8. 법률 제17569호 2022. 12. 27. 법률 제19100호

제1조 [목적] 이 법은 변호사에게 필요한 직업윤리와 법률지식 등 법률사무를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을 검증하기 위한 변호사시험에 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변호사시험 시행의 기본원칙] 변호사시험(이하 “시험”이라 한다)은 「법학전문대학원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법학전문대학원(이하 “법학전문대학원”이라 한다)의 교육과정과 유기적으로 연계하여 시행되어야 한다.

제3조 [시험실시기관] 시험은 법무부장관이 관장·실시한다.

제4조 [시험의 실시 및 공고] ① 법무부장관은 매년 1회 이상 시험을 실시하되, 그 실시계획을 미리 공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공고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5조 [응시자격] ① 시험에 응시하려는 사람은 「법학전문대학원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제18조제1항에 따른 법학전문대학원의 석사학위를 취득하여야 한다. 다만, 제8조제1항의 법조윤리시험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법학전문대학원의 석사학위를 취득하기 전이라도 응시할 수 있다.
 ② 3개월 이내에 「법학전문대학원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제18조제1항에 따른 법학전문대학원의 석사학위를 취득할 것으로 예정된 사람은 제1항 본문의 응시자격을 가진 것으로 본다. 다만, 그 예정시기에 석사학위를 취득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불합격으로 하거나 합격 결정을 취소한다.

(신설 2011. 7. 25.)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응시자격의 소명방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1. 7. 25.)

④ 법학전문대학원의 장은 시험 응시자의 자격에 관하여 법무부장관 또는 그 응시자가 확인을 요청하면 그 자격을 확인하여 주어야 한다. (개정 2011. 7. 25.)

제6조 [응시 결격사유] 제4조에 따라 공고된 시험기간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그 시험에 응시할 수 없다. (개정 2020. 6. 9.)

1. 피성년후견인

2. 금고 이상의 실형(實刑)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그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이 지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5. 탄핵이나 징계처분을 받아 파면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6. 「변호사법」에 따라 제명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7. 징계처분으로 해임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8. 「변호사법」에 따라 영구 제명된 사람

제7조 [응시기간 및 응시횟수의 제한] ① 시험(제8조제1항의 법조윤리시험은 제외한다)은 「법학전문대학원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제18조제1항에 따른 법학전문대학원의 석사학위를 취득한 달의 말일부터 5년 내에 5회만 응시할 수 있다. 다만, 제5조제2항에 따라 시험에 응시한 석사학위취득 예정자의 경우 그 예정기간 내 시행된 시험일부터 5년 내에 5회만 응시할 수 있다. (개정 2011. 7. 25.)

② 「법학전문대학원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제18조제1항에 따른 법학전문대학원의 석사학위를 취득한 후 또는 이 법 제5조제2항에 따라 석사학위 취득 예정자로서 시험에 응시한 후 「병역법」 또는 「군인사법」에 따른 병역의무를 이행하는 경우 그 이행기간은 제1항의 기간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8. 12. 18.)

제8조 [시험의 방법] ① 시험은 선택형(기입형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및 논술형(실무능력 평가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필기시험과 별도의 법조윤리시험으로 실시한다.

② 선택형 필기시험과 논술형 필기시험은 혼합하여 출제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제9조제1항제4호의 전문적 법률분야에 관한 과목에 대하여는 논술형 필기시험만 실시한다.

④ 법무부장관은 법조윤리시험의 시행에 필요한 조직과 인력을 갖춘 외부기관을 지정하여 법조윤리시험을 시행하게 할 수 있다.

⑤ 제4항에 따른 외부기관의 지정기준, 지정절차 및 지정취소, 외부기관에 대한 감독, 그 밖에 법조윤리시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9조 [시험과목] ① 시험과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공법(헌법 및 행정법 분야의 과목을 말한다)
2. 민사법(「민법」, 「상법」 및 「민사소송법」 분야의 과목을 말한다)
3. 형사법(「형법」 및 「형사소송법」 분야의 과목을 말한다)
4. 전문적 법률분야에 관한 과목으로 응시자가 선택하는 1개 과목

② 제1항제4호에 따른 전문적 법률분야에 관한 과목의 종류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시험의 각 과목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출제 범위를 정하여 시험을 실시할 수 있다.

④ 제2항에 따른 시험과목을 신설·폐지하거나, 제3항에 따라 시험과목의 출제 범위를 변경할 경우에는 해당 과목의 시험 예정일부터 역산(逆算)하여 2년 이상의 유예기간을 두어야 한다.

제10조 [시험의 합격 결정] ① 법무부장관은 법학전문대학원의 도입 취지를 고려하여 시험의 합격자를 결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14조에 따른 변호사시험 관리위원회의 심의 의견과 대법원,



「변호사법」 제78조에 따른 대한변호사협회 및 법학전문대학원 등을 구성원으로 하여 「민법」 제32조와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설립된 법인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개정 2017. 12. 12.)

② 시험의 합격은 선택형 필기시험과 논술형 필기시험의 점수를 일정한 비율로 환산하여 합산한 총득점으로 결정한다. 다만, 각 과목 중 어느 하나라도 합격최저점수 이상을 취득하지 못한 경우에는 불합격으로 한다.

③ 법조윤리시험은 합격 여부만을 결정하고, 그 성적은 제2항의 총득점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④ 선택형 필기시험과 논술형 필기시험 간의 환산비율, 선택형 및 논술형 필기시험 내에서의 각 과목별 배점비율, 각 과목별 필기시험의 합격최저점수, 법조윤리시험의 합격에 필요한 점수, 성적의 세부산출방법, 그 밖에 시험의 합격 결정방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1조 [합격자 공고 및 합격증서 발급] 법무부장관은 합격자가 결정되면 즉시 명단을 공고하고, 합격자에게 합격증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7. 12. 12.)

제12조 [시험의 일부면제] 법조윤리시험에 합격한 사람은 제7조의 기간 중 그 시험을 면제한다.

제13조 [시험위원] ① 시험의 출제 및 채점을 담당하기 위하여 시험위원을 둔다.

② 시험위원은 시험에 관한 경험과 지식이 풍부한 자 중에서 시험 때마다 법무부장관이 위촉하며, 그 수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다만, 제14조에 따른 변호사시험 관리위원회의 위원은 시험위원이 될 수 없다.

③ 시험위원은 그 업무를 수행할 때 법학전문대학원의 교육과정을 충실히 마친 사람을 기준으로 학식과 그 응용능력을 종합적으로 판단할 수 있도록 유의하여야 한다.

제14조 [변호사시험 관리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① 시험을 실시하기 위하여 법무부에 변호사시험 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법무부장관이 지명하는 사람으로 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한다.

1. 법무부차관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법무부장관이 위촉하는 사람

가. 법학교수(부교수 이상의 직위에 있는 사람을 말한다. 이하 같다) 5명

나. 법원행정처장이 추천하는 10년 이상의 경력을 가진 판사 2명

다. 10년 이상의 경력을 가진 검사 또는 변호사시험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법무부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중 2명(이 중 1명 이상은 검사로 한다) (개정 2018. 12. 18.)

라. 대한변호사협회장이 추천하는 10년 이상의 경력을 가진 변호사 3명

마. 그 밖에 학식과 덕망이 있는 사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 2명(법학을 가르치는 전임강사 이상의 직위에 있는 사람 및 변호사 자격을 가진 사람은 제외한다)

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법학교수, 판사, 검사 또는 법무부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의 직위에 있는 사람임을 자격요건으로 하여 위원으로 위촉된 사람은 그 직위를 사임



하는 경우에는 임기가 만료되기 전이라도 해촉된 것으로 본다.

⑤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⑥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제15조 [위원회의 소관 사무]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시험문제의 출제 방향 및 기준에 관한 사항
2. 채점기준에 관한 사항
3. 시험합격자의 결정에 관한 사항
4. 시험방법 및 시험시행방법 등의 개선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시험에 관하여 법무부장관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16조 [위원회의 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법무부장관의 요구가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7조 [부정행위자에 대한 조치] ① 법무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해당 시험을 정지시키거나 합격 결정을 취소하고, 그 정황에 따라 처분을 한 날부터 5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이 법에 따른 시험의 응시자격을 정지할 수 있다. (개정 2011. 7. 25.)

1. 시험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정한 행위를 한 사람
2. 제5조제3항에 따른 응시자격에 관한 소명서류에 거짓으로 기록한 사람

② 법무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처분을 한 경우에는 그 처분을 받은 사람에게 지체 없이 통지하여야 한다.

제17조의2 [응시자준수사항 위반자에 대한 조치] 시험의 공정한 관리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응시자준수사항을 위반한 사람에 대하여는 그 시험시간 또는 나머지 시험시간의 시험에 응시할 수 없게 하거나 그 답안을 영점 처리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1. 7. 25.)

제18조 [시험정보의 공개] ① 법무부장관은 시험에 응시한 사람이 그 시험의 합격자 공고일부터 5년 이내에 본인의 성적 및 석차(제10조제2항 본문에 따른 총득점의 순위로 한정한다) 공개를 청구할 경우 이를 공개하여야 한다. (개정 2022. 12. 27.)

② 법무부장관은 채점표, 답안지, 그 밖에 공개하면 시험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줄 수 있는 정보는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목개정 2017. 12. 12.)

제19조 [다른 기관 등에 대한 협조요청] ① 법무부장관은 시험관리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면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관계 기관 또는 국공립학교의 장 등에게 시험장소의 제공, 시험관리 인력의 파견, 문제 출제 또는 시험장소의 질서 유지, 그 밖에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협조요청을 받은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관계 기관 또는 국공립학교의 장 등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법무부장관의 요청에 따라야 한다.



제20조 [응시 수수료] ① 시험에 응시하려는 사람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응시 수수료를 내야 한다.

② 법무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응시 수수료를 낸 사람이 실제로 시험에 응시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응시 수수료를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응시 수수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여야 한다. (개정 2022. 12. 27.)

1. 제1항에 따라 응시 수수료를 낸 사람이 시험일 전에 응시 의사를 철회한 경우
2. 제1항에 따라 응시 수수료를 낸 사람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불가피한 사유로 시험에 응시하지 못하였거나 시험을 끝까지 마치지 못한 경우. 다만, 본인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해당 사유를 초래한 경우는 제외한다.

제21조 [벌칙 적용 시의 공무원 의제] 위원회의 위원 또는 시험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 제8조제4항에 따라 법조윤리시험 실시기관으로 지정된 외부기관의 임직원 중 공무원이 아닌 사람은 그 업무에 관하여 「형법」 제127조 및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부 칙 <법률 제9747호, 2009. 5. 28.>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4조 및 부칙 제6조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며, 부칙 제2조는 2017년 12월 3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률의 폐지] 사법시험법은 폐지한다.

제3조 [변호사시험의 실시에 관한 특례] 이 법에 따른 최초의 변호사시험은 제4조 및 부칙 제1조에도 불구하고 2012년에 실시한다.

제4조 [사법시험과의 병행실시] ① 이 법에 따른 시험과 별도로 「사법시험법」에 따른 사법시험을 2017년까지 실시한다. 다만, 2017년에는 2016년에 실시한 제1차시험에 합격한 사람 중 2016년에 제3차시험까지 합격하지 못한 사람을 대상으로 제2차시험 또는 제3차시험을 실시한다.

② 「사법시험법」 제5조에도 불구하고 법학전문대학원의 석사학위과정에 재학 또는 휴학 중인 사람과 법학전문대학원에서 석사학위를 취득한 사람은 사법시험에 응시할 수 없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법학전문대학원의 석사학위과정에 재학 또는 휴학 중인 사람은 이 법 시행일이 속하는 연도에 실시하는 사법시험의 제1차시험에 합격하거나 시행일 이전의 연도에 실시한 사법시험의 제1차시험 또는 제2차시험에 합격한 경우에 한하여 「사법시험법」 제7조제2항 및 제10조에 따라 일부 시험이 면제되는 회까지 사법시험(그 면제되는 차수의 다음 단계의 시험에 응시하는 경우에만 한한다)에 응시할 수 있다. 이 경우 제7조제1항을 적용할 때에는 그 입학일 이후에 응시한 사법시험을 이 법에 따른 시험에 응시한 것으로 보아 응시횟수에 포함한다.

제5조 [부정응시자에 대한 조치] 제17조제1항에 따라 응시자격이 정지된 사람은 그 정지기간 중 「사법시험법」에 따른 사법시험에 응시할 수 없고, 「사법시험법」 제17조제1항에 따라 응시자격이 정지된



사람은 그 정지기간 중 이 법에 따른 시험에 응시할 수 없다.

제6조 [사법시험관리위원회에 대한 경과조치] 「사법시험법」 제14조에 따른 사법시험관리위원회는 이 법에 따른 시험의 준비를 위하여 사전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이 경우 사법시험관리위원회가 한 사전 조치는 이 법에 따른 변호사시험 관리위원회의 구성과 동시에 변호사시험 관리위원회가 한 것으로 본다.

부 칙 <법률 제10923호, 2011. 7. 25.>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법률 제15154호, 2017. 12. 12.>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삭제 <2020. 12. 8.>

[2020. 12. 8. 법률 제17569호에 의하여 2019. 7. 25 헌법재판소에서 위헌 결정된 이 조를 삭제함.]

제3조 [금치산자 등에 대한 경과조치] 제6조의 개정규정에 따른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에는 법률 제10429호 민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2조에 따라 금치산 또는 한정치산 선고의 효력이 유지되는 사람을 포함하는 것으로 본다.

부 칙 <법률 제15975호, 2018. 12. 18.>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응시기간 및 응시횟수에 관한 적용례] 제7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전에 제5조제2항에 따라 석사학위 취득 예정자로서 시험에 응시한 사람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부 칙 <법률 제17366호, 2020. 6. 9.>

(피한정후견인 결격조항 정비를 위한 법무사법 등 5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법률 제17569호, 2020. 12. 8.>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시험정보 공개에 관한 특례] 법률 제15154호 변호사시험법 일부개정법률의 시행일인 2017년 12월 12일 전에 시험에 합격한 사람은 제18조제1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법 시행일부터 1년 내에 법무부장관에게 본인의 성적 공개를 청구할 수 있다.

부 칙 <법률 제19100호, 2022. 12. 27.>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석차 공개에 관한 적용례 등] ① 제18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전에 시험에 응시한 사람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이 법 시행 당시 제18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청구기간이 지났거나 남은 청구기간이 1년 미만인 사람은 이 법 시행일부터 1년 이내에 법무부장관에게 본인의 석차 공개를 청구할 수 있다.

제3조 [응시 수수료 반환에 관한 적용례] 제20조제2항제2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실시하는 시험에 응시하기 위하여 납부한 응시 수수료부터 적용한다.



변호사시험법 시행령

2009. 8. 28.

대통령령 제21706호

개정

2010. 6. 28. 대통령령 제22224호
 2011. 9. 29. 대통령령 제23159호
 2014. 6. 30. 대통령령 제25414호
 2018. 1. 16. 대통령령 제28583호
 2023. 12. 12. 대통령령 제33917호

제1조 [목적] 이 영은 「변호사시험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시험의 공고] ① 법무부장관은 「변호사시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에 따라 변호사시험(이하 “시험”이라 한다)을 실시하려는 경우에는 그 시험의 일시·장소·방법·과목, 응시자격, 응시원서 접수절차, 합격자 공고의 일시 및 방법 등을 시험 실시 3개월 전까지 관보와 인터넷 홈페이지 또는 일간지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1. 9. 29, 2023. 12. 12.)

② 법무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공고 후 법 제8조제1항에 따라 시험을 실시하려는 경우에는 그 일시, 장소 및 시험응시자에게 필요한 준비사항 등을 시험일 10일 전까지 관보와 인터넷 홈페이지 또는 일간지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사유로 공고내용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시험일 5일 전까지 그 변경사항을 관보와 인터넷 홈페이지 또는 일간지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③ 법무부장관이 법 제8조제4항에 따라 법조윤리시험을 시행하는 외부기관을 지정하는 경우 그 기관은 매년 시험 실시 직전 연도의 12월 31일까지 제1항과 같은 방법으로 법조윤리시험 실시계획을 공고하여야 한다.

제3조 [응시자격] ① 법 제5조제1항 단서에 따라 「법학전문대학원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법학전문대학원(이하 “법학전문대학원”이라 한다)의 석사학위를 취득하기 전에 법 제8조제1항의 법조윤리시험에 응시하려는 사람은 「법학전문대학원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제1항제1호의 법조윤리과목을 이수하여야 한다.

② 법 제5조제3항에 따른 응시자격의 소명방법은 법학전문대학원의 장이 발급한 학위취득 또는 학위취득예정 사실을 증명하는 서면에 의한다. 다만, 법조윤리시험 응시자격의 소명방법은 법학전문대학원의 장이 발급한 법조윤리과목 학점취득증명서에 의한다. (개정 2011. 9. 29.)

③ 시험에 응시하려는 사람은 응시원서 접수기간 내에 제2항의 응시자격 소명서류 1부를 법무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법무부장관이 법 제8조제4항에 따라 법조윤리시험을 시행하는 외부기관을 지정하는 경우 법조윤리시험의 응시자격 소명서류는 그 기관이 정하는 방법



에 따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3. 12. 12.)

④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응시자격 소명서류의 제출은 법학전문대학원의 장이 석사학위 취득자 명단, 석사학위 취득예정자 명단 또는 법조윤리과목 학점취득자 명단을 제출하는 것으로 갈음할 수 있다. (신설 2011. 9. 29.)

제4조 [법조윤리시험 시행기관의 지정] ① 법무부장관은 법 제8조제4항에 따라 법조윤리시험을 시행하는 외부기관을 지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중 법조윤리시험의 시행에 필요한 조직과 인력을 갖춘 기관을 지정한다.

1. 「변호사법」 제78조제1항에 따라 설립된 대한변호사협회
 2.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라 설립된 정부출연연구기관
 3. 법학전문대학원 또는 법학전문대학원이 소속된 대학의 장을 구성원으로 하여 「민법」 제32조 및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설립된 법인
 4. 법조윤리시험을 시행할 목적으로 「민법」 제32조 및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설립된 법인
- ② 법무부장관은 법 제8조제4항에 따라 법조윤리시험을 시행하는 외부기관을 지정하는 경우 지정대상 기관으로 하여금 그 조직 및 인력 현황, 법조윤리시험 실시계획서 등을 제출하게 할 수 있다.
- ③ 법무부장관은 법 제8조제4항에 따라 법조윤리시험을 시행하는 외부기관을 지정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공고하여야 한다.

제5조 [법조윤리시험의 시행] ① 법 제8조제4항에 따라 법조윤리시험을 시행하는 외부기관으로 지정된 기관(이하 “지정기관”이라 한다)은 매년 1회 이상 법조윤리시험을 시행하여야 한다.

② 법조윤리시험에 응시하려는 사람은 법무부장관이 정하는 응시 수수료를 지정기관이 정하는 방법에 따라 납부하여야 한다.

제6조 [법조윤리시험 시행기관의 지정취소] ① 법무부장관은 지정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2. 정당한 사유 없이 법조윤리시험의 시행업무를 수행하지 아니한 경우
 3. 법조윤리시험의 시행에 필요한 조직과 인력을 갖추지 아니한 경우
- ② 법무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지정취소 사유가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지정기관에 대하여 그 업무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자료의 제출이나 그 밖의 필요한 명령을 할 수 있으며,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지정기관에 출입하여 장부, 서류 등을 조사 또는 검사하게 할 수 있다.
- ③ 법무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지정기관의 지정을 취소한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공고하여야 한다.
- ④ 제1항에 따라 지정이 취소된 지정기관은 지정이 취소된 날부터 1개월 내에 보관 중인 법조윤리시험과 관련된 모든 자료를 법무부장관에게 제출하거나 법무부장관이 지정하는 기관에 인계하



여야 한다.

제7조 [논술형 필기시험 선택과목] ① 법 제9조제2항에 따른 전문적 법률분야에 관한 과목의 종류는 별표 1과 같다.

② 법 제9조제3항에 따라 출제 범위를 정하여 실시하는 시험과목과 그 출제 범위는 별표 2와 같다.

제8조 [시험의 합격 결정] ① 시험의 합격은 필기시험의 시험기간과 동시에 또는 그 이전에 실시된 법조윤리시험에 합격한 사람만을 대상으로 결정한다.

② 법 제10조제4항에 따른 선택형 필기시험과 논술형 필기시험 간의 환산비율은 별표 3과 같다.

③ 법 제10조제4항에 따른 선택형 및 논술형 필기시험 내에서의 각 과목별 배점비율, 각 과목별 필기시험의 합격최저점수, 법조윤리시험의 합격에 필요한 점수는 별표 4와 같다.

④ 논술형 필기시험과 전문적 법률분야에 관한 점수 조정방법 및 점수 조정에 따른 합격최저점수의 결정방법 등 성적의 세부산출방법이나 그 밖에 합격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법무부령으로 정한다.

제9조 [합격증명서의 발급] ① 법무부장관은 시험에 합격한 사람의 신청에 따라 합격증명서를 발급한다.

② 합격증명서를 발급받으려는 사람은 수수료로서 법무부령으로 정하는 금액에 상당하는 수입인지를 신청서에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전자문서로 합격증명서를 발급받으려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0조 [시험위원] 법 제13조제2항에 따른 시험위원의 수는 과목당 3명 이상으로 한다. 다만, 법 제8조제4항에 따라 지정기관이 법조윤리시험을 시행하는 경우 시험의 출제 및 채점을 담당하기 위한 시험위원의 위촉과 그 수는 지정기관이 정하도록 할 수 있다.

제11조 [변호사시험 관리위원회의 구성] 법 제14조제3항제2호마목에 따른 변호사시험 관리위원회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법무부장관이 각각 1명씩 위촉한다.

1. 3급 이상 공무원으로서 법학전문대학원과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
2. 그 밖에 국가공인 자격시험이나 변호사시험에 관한 경험과 덕망이 있는 사람

제12조 [부정행위] 법 제17조제1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정한 행위”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대리시험을 의뢰하거나 대리로 시험에 응시하는 행위
2. 다른 수험생의 답안지를 보거나 본인의 답안지를 보여 주는 행위
3. 통신기기나 그 밖의 신호 등을 이용하여 해당 시험내용에 관하여 다른 사람과 의사소통하는 행위
4. 부정한 자료를 가지고 있거나 이용하는 행위
5. 그 밖의 부정한 수단으로 본인 또는 다른 사람의 시험 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
6. <삭제> (2011. 9. 29.)

제12조의2 [응시자준수사항] 법 제17조의2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응시자준수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지정된 시간까지 지정된 시험실에 입실할 것
2. 시험의 시행에 관하여 시험관리관의 지시에 따라야 하며, 시험관리관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시험시간 중에 시험실에서 퇴실하지 아니할 것



3. 지정된 필기구를 사용하여 답안을 작성하여야 하며, 답안지에 답안내용 외의 사항을 기재하지 아니할 것
4. 시험 시작 전에 시험문제를 열람하지 아니할 것
5. 시험 시작 전 또는 시험 종료 후에 답안을 작성하지 아니할 것
6. 그 밖에 시험의 공정한 관리를 위하여 법무부장관이 정하여 제2조에 따라 공고한 사항을 준수할 것
(본조신설 2011. 9. 29.)

제13조 [응시 수수료] ① 시험에 응시하려는 사람은 법무부령으로 정하는 금액의 응시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② 응시 수수료는 응시원서에 수입인지를 붙이거나,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전자화폐, 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납부하도록 할 수 있다.

③ 법무부장관은 법 제20조제2항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응시 수수료의 전부를 반환하여야 한다 (개정 2023. 12. 12.)

④ 법무부장관은 법 제20조제2항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이 시험 종료일로부터 30일 내에 법무부령으로 정하는 반환 신청서에 반환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응시 수수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여야 한다. (신설 2023. 12. 12.)

1. 시험에 응시하지 못한 경우: 응시 수수료의 전부

2. 시험을 끝까지 마치지 못한 경우: 응시 수수료의 100분의 50

⑤ 법 제20조제2항제2호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불가피한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를 말한다. (신설 2023. 12. 12.)

1. 본인의 사고 또는 질병으로 입원한 경우

2. 본인이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진찰·치료·입원 또는 격리 처분을 받은 경우

3. 본인의 배우자나 본인 또는 배우자의 부모·조부모·외조부모·형제자매·자녀가 시험일 7일 전부터 시험일까지의 기간에 사망한 경우

4.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재난이 발생한 경우

5. 그 밖에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불가피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법무부장관이 인정하는 경우

제14조 [변호사시험 관리위원회의 위원 등에 대한 수당 지급] 변호사시험 관리위원회의 위원, 시험위원 및 시험관리관 등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한다.

제15조 [응시에 관한 특별조치] 법무부장관은 장애인(「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장애인을 말한다)과 사고 등으로 통상의 시험시간, 시험방법에 의한 응시가 현저히 곤란한 사람에 대하여 시험시간, 시험방법 등에 관한 특별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16조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법무부장관은 법 및 이 영에 따른 변호사시험의 출제·시험, 응시자격 유무 및 응시 결격사유 해당 여부의 확인, 합격 결정, 시험위원의 관리 및 변호사시험 관



리위원회의 운영 등 시험관리 사무의 수행을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8조제2호에 따른 범죄경력자료에 해당하는 정보, 같은 영 제19조제1호 및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및 외국인등록번호를 처리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4. 6. 30.)

부 칙 <대통령령 제21706호, 2009. 8. 28.>

이 영은 2009년 8월 29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대통령령 제22224호, 2010. 6. 28.>
(소음·진동관리법 시행령)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10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⑤까지 생략

⑥ 변호사시험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2의 환경법의 출제범위란 중 “「소음·진동규제법」”을 “「소음·진동관리법」”으로 한다.

⑦부터 <17>까지 생략

제5조 생략

부 칙 <대통령령 제23159호, 2011. 9. 29.>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대통령령 제25414호, 2014. 6. 30.>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대통령령 제28583호, 2014. 1. 16.>
(물환경보전법 시행령)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18년 1월 1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⑮까지 생략

⑯ 변호사시험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2의 환경법의 출제범위란 중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을 “「물환경보전법」”으로 한다.

⑰부터 ④⑥까지 생략

부 칙 <제33917호, 2023. 12. 12.>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응시 수수료에 관한 적용례 등] ① 제13조제4항 및 제5항의 개정규정은 2022년 12월 27일부터 이 영 시행일까지 실시된 시험에 응시하기 위하여 납부한 응시 수수료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② 제1항을 적용하는 경우 제13조제4항 각 호 외의 부분의 개정규정에 따른 기간은 이 영 시행일부터 기산한다.



별표 1

전문적 법률분야에 관한 과목의 종류
(제7조제1항 관련)

선택과목	국제법, 국제거래법, 노동법, 조세법, 지적재산권법, 경제법, 환경법

별표 2 (개정 2018. 1. 16.)

출제 범위를 정하여 실시하는 시험과목과 그 출제 범위
(제7조제2항 관련)

과목	출제범위
국제법	국제경제법을 포함한다.
국제거래법	「국제사법」과 「국제물품매매계약에 관한 유엔협약」으로 한다.
노동법	사회보장법 중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을 포함한다.
조세법	「국세기본법」, 「소득세법」, 「법인세법」 및 「부가가치세법」으로 한다.
지적재산권법	「특허법」, 「실용신안법」, 「디자인보호법」, 「상표법」 및 「저작권법」으로 한다.
경제법	「소비자기본법」,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및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로 한다.
환경법	「환경정책기본법」, 「환경영향평가법」, 「대기환경보전법」, 「물환경보전법」, 「폐기물관리법」, 「토양환경보전법」, 「자연환경보전법」, 「소음·진동관리법」 및 「환경분쟁조정법」으로 한다.



별표 3

선택형 필기시험과 논술형 필기시험 간의 환산비율 (제8조제2항 관련)

논술형 필기시험 만점을 선택형 필기시험 만점의 300퍼센트로 환산하여, 선택형 필기시험의 점수와 논술형 필기시험의 점수를 합산한 점수를 시험의 총득점으로 한다.

별표 4

시험의 합격 결정에 관한 기준 (제8조제3항 관련)

1. 각 과목별 배점비율

민사법 과목의 만점은 공법, 형사법 과목 만점의 175퍼센트로 하고, 선택과목의 만점은 공법, 형사법 과목 만점의 40퍼센트로 한다.

2. 각 과목별 필기시험의 합격최저점수

각 과목별 필기시험의 합격최저점수는 각 과목 만점의 40퍼센트로 한다.

3. 법조윤리시험 합격에 필요한 점수

법조윤리시험 합격에 필요한 점수는 만점의 70퍼센트로 한다.



변호사시험법 시행규칙

2010. 2. 23.

법무부령 제695호

개정 2011. 9. 21. 법무부령 제749호
 2011. 12. 28. 법무부령 제759호
 2023. 12. 12. 법무부령 제1066호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변호사시험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응시원서의 제출] 변호사시험(이하 “시험”이라 한다)에 응시하려는 사람은 법무부장관이 정하는 응시원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3조 [응시원서의 접수] 시험에 응시하려는 사람이 제2조에 따라 응시원서를 접수한 경우 법무부장관은 응시자에게 응시표를 교부하여야 한다.

제4조 [응시원서 기재사항의 변경] 응시원서 접수기간이 만료된 후에는 「변호사시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제1항제4호에 따른 전문적 법률분야에 관한 과목 등 응시원서의 기재사항을 변경할 수 없다.

제4조의2 [응시의 기준시점] 응시원서를 제출한 사람이 시험기간 중 가장 먼저 보게 되는 과목의 첫 시험시간에 지정된 시험실에 입실한 상태에서 문제지가 시험실 안으로 반입되면 그 때부터 시험에 응시한 것으로 본다.

(본조신설 2011. 12. 28.)

제5조 [논술형 필기시험 성적의 세부 산출방법] ① 공법, 민사법, 형사법 과목 논술형 필기시험의 경우에는 각 시험위원이 채점한 점수에 대하여 해당 시험위원이 채점한 전(全) 답안지(이하 “시험위원별 답안지”라 한다) 점수의 표준편차와 평균점을 산출하여 제1호의 산식에 따라 조정한 후 각 과목의 문항별 배점에 따라 환산한 점수를 각 응시자의 득점으로 한다. 이 경우 시험위원별 답안지 점수의 표준편차는 제2호의 산식에 따라 산출한다. (개정 2011. 9. 21., 2011. 12. 28.)

1. $\{(\text{시험위원이 채점한 점수} - \text{시험위원별 답안지 점수의 평균점}) / \text{시험위원별 답안지 점수의 표준편차} \times 10\} + 50$

2. $\{(\text{시험위원별 답안지 점수} - \text{시험위원별 답안지 점수의 평균점})^2 \text{의 총합계} / (\text{시험위원별 답안지 수} - 1)\}$ 의 거듭제곱근

② 제1항에 따라 환산하기 전의 점수가 0점이거나 환산한 후의 점수가 0점 미만인 경우에는 환산한 점수를 0점으로 하고, 환산한 점수가 만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만점으로 한다. (신설 2011. 12. 28.)



제6조 [전문적 법률분야에 관한 과목 성적의 세부 산출방법] ① 전문적 법률분야에 관한 과목의 경우에는 각 시험위원이 채점한 점수에 대하여 시험위원별 답안지 점수의 표준편차와 평균점을 산출하여 제1호의 산식에 따라 조정한 후 전문적 법률분야에 관한 과목의 배점에 따라 환산한 점수를 각 응시자의 득점으로 한다. 이 경우 시험위원별 답안지 점수의 표준편차는 제2호의 산식에 따라 산출한다. (개정 2011. 9. 21., 2011. 12. 28.)

1. $\{(\text{시험위원이 채점한 점수} - \text{시험위원별 답안지 점수의 평균점}) / \text{시험위원별 답안지 점수의 표준편차} \times 10\} + 50$
2. $\{(\text{시험위원별 답안지 점수} - \text{시험위원별 답안지 점수의 평균점})^2 \text{의 총합계} / (\text{시험위원별 답안지 수} - 1)\}$ 의 거듭제곱근

② 제1항에 따라 환산하기 전의 점수가 0점이거나 환산한 후의 점수가 0점 미만인 경우에는 환산한 후의 점수를 0점으로 하고, 환산한 후의 점수가 만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만점으로 한다. (신설 2011. 12. 28.)

제7조 [점수 조정에 따른 합격최저점수의 결정방법] ① 「변호사시험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별표 4 제2호에 따른 필기시험의 합격최저점수 중 공법, 민사법, 형사법 과목 필기시험의 합격최저점수를 각 과목 만점의 40퍼센트로 한다는 것은 각 과목 선택형 필기시험의 과목 점수에 시험위원이 채점한 점수로 산출한 논술형 필기시험의 과목 점수를 더한 점수와 선택형 필기시험의 과목 점수에 제5조의 방법에 따라 산출한 논술형 필기시험의 과목 점수를 더한 점수 중 어느 하나가 각 과목 만점의 40퍼센트 이상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② 영 별표 4 제2호에 따른 필기시험의 합격최저점수 중 전문적 법률분야에 관한 과목 필기시험의 합격최저점수를 만점의 40퍼센트로 한다는 것은 시험위원이 채점한 점수로 산출한 필기시험의 과목 점수와 제6조의 방법에 따라 산출한 필기시험의 과목 점수 중 어느 하나가 만점의 40퍼센트 이상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제7조의2 [채점 없이 불합격 결정을 할 수 있는 경우] 법무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시험의 불합격이 명백한 사람에 대해서는 그 답안을 채점하지 아니하고 불합격 결정을 할 수 있다.

1. 법 제6조에 따른 응시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사람
2. 법 제7조에 따른 응시기간 및 응시횟수를 초과하여 시험에 응시한 사람
3. 법 제17조 각 호에 규정된 부정행위를 한 사람
4. 영 제3조에 따라 응시자격 소명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한 사람
5. 영 제8조제1항에 따른 법조윤리시험에 합격하지 아니하여 시험의 합격결정 대상이 되지 못하는 사람
6. 지정된 시간까지 지정된 시험실에 입실하지 아니한 사람
7. 시험관리관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시험시간 중에 시험실에서 퇴실한 사람
8. 답안지를 제출하지 않은 사람
9. 답안지를 훼손하여 제출한 사람



10. 그 밖에 제1호부터 제9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중대한 사유가 있는 사람

(본조신설 2011. 12. 28.)

제8조 [합격증명서 발급 및 응시 수수료] ① 영 제5조제2항의 법무부장관이 정하는 응시 수수료는 5만원으로 한다.

② 영 제9조제2항에서 “법무부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합격증명서 1통에 200원을 말한다.

③ 영 제13조제1항에서 “법무부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20만원을 말한다.

④ 영 제13조 제4항각 호 외의 부분에서 “법무부령으로 정하는 반환 신청서”란 별지 서식의 응시 수수료 반환 신청서를 말한다. (신설 2023. 12. 12.)

제9조 [성적 및 석차 공개] ① 법 제18조 제1항에 따라 성적 및 석차 공개를 청구하려는 사람은 응시자 본인임을 소명(疎明)하여야 하며, 다른 사람이 본인을 대리하여 청구하는 경우에는 본인의 위임장 등 대리권을 소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1. 9. 21., 2023. 12. 12.)

② 제1항에 따른 성적 및 석차 공개는 정보통신망 등을 이용하여 할 수 있다. (개정 2023. 12. 12.)

[제목개정 2023. 12. 12.]

부 칙 <법무부령 제695호, 2010. 2. 23.>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법무부령 제749호, 2011. 9. 2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법무부령 제759호, 2011. 12. 28.>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법무부령 제1066호, 2023. 12. 12.>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응시 수수료에 관한 적용례] 제8조제4항 및 별지 서식의 개정규정은 2022년 12월 27일부터 이 규칙 시행일까지 실시된 시험에 응시하기 위하여 납부한 응시 수수료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외국법자문사법

2009. 3. 25.

법률 제9524호

개정 2011. 4. 5. 법률 제10542호
 2011. 5. 19. 법률 제10629호
 2013. 7. 30. 법률 제11962호
 2016. 1. 6. 법률 제13715호
 2016. 2. 3. 법률 제13953호
 2016. 3. 2. 법률 제14056호
 2017. 12. 12. 법률 제15153호

제 1 장 총 칙

제1조 [목적] 이 법은 대한민국에서 외국법사무를 취급하는 외국법자문사(外國法諮問士)의 자격승인, 등록, 업무수행 및 합작법무법인의 설립인가, 업무수행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 3. 2.)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6. 3. 2.)

1. “변호사”란 「변호사법」에 따른 변호사를 말한다.
2. “외국변호사”란 외국에서 변호사에 해당하는 법률 전문직의 자격을 취득하여 보유한 사람을 말한다.
3. “외국법자문사”란 외국변호사의 자격을 취득한 후 제6조에 따라 법무부장관으로부터 자격승인을 받고 제10조제1항에 따라 대한변호사협회에 등록한 사람을 말한다.
4. “외국법자문법률사무소”란 외국법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이 법에 따라 개설하는 사무소를 말한다.
5. “원자격국(原資格國)”이란이란 외국변호사가 그 자격을 취득한 후 법률사무 수행에 필요한 절차를 마친 국가로서 대한민국에서 그 국가의 법령 등에 관한 자문 업무 등을 수행할 수 있도록 법무부장관이 지정한 국가를 말한다. 다만, 어느 국가 내에 지역적으로 한정된 자격이 부여되는 여러 개의 도(道)·주(州)·성(省)·자치구 등이 있는 경우에는 그 국가의 법령 등에 따라 그 자격이 통용되는 지역의 전부를 원자격국으로 본다.
6. “외국법사무”란 원자격국의 법령(원자격국에서 효력을 가지거나 가졌던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 관한 자문 등 제24조에 따라 외국법자문사가 수행하도록 허용된 업무를 말한다.
7. “국제중재사건”이란 대한민국을 중재지로 하고, 대한민국 외 국가의 법령, 대한민국과 외국 간 체결된 조약, 대한민국 외 국가 간 조약 또는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관습법이 적용되거나 또는 적용될 수 있는 민사·상사의 중재사건을 말한다.
8. “자유무역협정등”이란 명칭 여하를 불문하고 대한민국이 외국(국가연합, 경제공동체 등 국가의 연합체



- 를 포함한다) 또는 국제기구와 외국법사무 분야를 포함한 포괄적인 교역의 자유화를 내용으로 하여 체결하고 그 효력이 발생한 모든 합의를 말한다.
9. “합작법무법인”이란 외국법사무와 이 법에서 규정하는 국내법사무 등을 수행하기 위하여 이 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을 말한다.
 10. “국내 합작참여자”란 합작법무법인 설립에 참여하는 「변호사법」에 따른 법무법인, 법무법인(유한) 또는 법무조합을 말한다.
 11. “외국 합작참여자”란 합작법무법인 설립에 참여하는 자로서 제35조의2제1항에 따라 법무부장관이 고시하는 자유무역협정등 당사국에서 그 법적 형태를 불문하고 법률사무의 수행을 주된 목적으로 설립된 자를 말한다.
 12. “합작참여자”란 국내 합작참여자 및 외국 합작참여자를 말한다.

제 2 장 외국법자문사의 자격승인

제3조 [자격승인의 신청] ① 외국법자문사가 되려는 외국변호사는 법무부장관에게 외국법자문사의 자격승인을 신청하여야 한다.

② 외국변호사의 자격을 갖춘 변호사가 제1항의 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변호사업을 휴업하거나 폐업하여야 한다.

③ 신청인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청서와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증빙서류는 원본(原本)이거나 인증된 사본(寫本)이어야 하고, 한글로 작성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공증된 한글 번역본을 첨부하여야 한다.

④ 신청인은 법무부령으로 정하는 수수료를 내야 한다. (신설 2011. 4. 5.)

제4조 [직무 경력] ① 신청인이 외국법자문사의 자격승인을 받기 위하여는 외국변호사의 자격을 취득한 후 원자격국에서 3년 이상 법률 사무를 수행한 경력이 있어야 한다.

② 신청인이 원자격국 외의 외국에서 원자격국의 법령에 관한 법률 사무를 수행한 기간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의 기간에 산입할 수 있다.

③ 신청인이 대한민국에서 고용계약에 따라 사용자에게 대하여 원자격국의 법령에 관한 조사·연구·보고 등의 사무를 근로자인 자기의 주된 업무로 수행한 경우에는 그 업무수행 기간을 2년 이내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의 기간에 산입할 수 있다.

제5조 [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외국법자문사가 될 수 없다. (개정 2016. 1. 6.)

1. 국가를 불문하고 금고 이상의 형벌에 해당하는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그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2. 국가를 불문하고 금고 이상의 형벌에 해당하는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이거나 그 기간이 지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3. 국가를 불문하고 금고 이상의 형벌에 해당하는 형의 선고를 유예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4. 국가를 불문하고 공직에서 탄핵으로 파면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하거나, 징계로 해임 이상의 처분을 받은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 국가를 불문하고 「변호사법」 제90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 또는 같은 법 제102조제2항에 따른 처분에 상당하는 처분을 받은 후 그 처분이 실효되지 아니한 사람
6. 피성년후견인, 피한정후견인,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復權)되지 아니한 사람 및 원자격국의 법령에 따라 이와 같이 취급되는 사람

제6조 [자격승인 등] ① 법무부장관은 신청인이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 외국법자문사의 자격승인을 할 수 있다.

1. 원자격국이 자유무역협정등의 당사국일 것
2. 원자격국 내에서 외국변호사의 자격이 유효할 것
3. 제4조에 따른 직무 경력이 있을 것
4. 제5조에 따른 결격사유가 없을 것
5. 대한민국 내에 서류 등을 송달받을 장소를 가지고 있을 것
6. 제3조제2항의 경우 변호사업을 휴업하거나 폐업하였을 것

② 법무부장관은 제1항의 자격승인을 하면서 신청인이 외국법사무를 수행할 수 있는 원자격국을 지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둘 이상의 국가에서 제1항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 그 전부를 원자격국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③ 법무부장관은 자격승인 여부를 결정할 때에 대한변호사협회의 장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④ 법무부장관은 신청인이 제1항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자격승인을 거절하는 경우 지체 없이 그 취지와 사유를 신청인에게 알려야 한다.

제7조 [자격승인 취소] ① 법무부장관은 외국법자문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자격승인을 취소하여야 한다.

1. 외국변호사의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경우
2. 제5조의 결격사유가 발견되거나 새로 발생한 경우

② 법무부장관은 외국법자문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자격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

1. 자격승인신청서 또는 그 증빙서류의 중요 부분이 누락되었거나 그 내용이 거짓으로 보이는 상당한 사정이 있는 경우
2. 업무능력이나 재산상황이 현저히 악화되어 의뢰인이나 제3자에게 손해를 입힐 우려가 있고, 그 손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부득이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3. 제9조제1항에 따른 보고 또는 자료 제출을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의 보고 또는 자료 제출을 한 경우
4. 자격승인을 받고 정당한 사유 없이 1년 이내에 대한변호사협회에 제10조에 따른 등록신청을 하지 아니한 경우



5. 제11조제2항에 따른 등록의 유효기간이 지난 후 3년 이내에 제10조에 따른 등록을 하지 아니한 경우

③ 법무부장관은 제2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라 외국법자문사의 자격승인을 취소하려는 경우에는 청문을 하여야 한다.

제8조 [고시 등] ① 법무부장관은 자격승인 또는 자격승인의 취소를 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이를 그 대상자와 대한변호사협회에 서면으로 알리고, 관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② 자격승인 및 그 취소는 고시된 날부터 효력이 있다.

제9조 [보고 등] ① 법무부장관은 신청인이나 외국법자문사에게 자격승인 및 그 취소에 관한 사항의 보고 또는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② 법무부장관은 행정기관이나 그 밖의 공사단체(公私團體)에 자격승인 또는 그 취소에 관하여 필요한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16. 3. 2.)

제 3 장 외국법자문사의 등록

제10조 [등록의 신청] ① 외국법자문사로서 업무 수행을 개시하려는 사람은 제6조의 자격승인을 받은 후 대한변호사협회에 외국법자문사로 등록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등록을 하려는 사람은 서면으로 대한변호사협회에 등록신청을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신청인은 제6조제2항에 따라 지정된 원자격국을 대한변호사협회에 신고하여야 한다.

제11조 [등록증명서 등] ① 대한변호사협회는 제10조제2항의 신청에 대하여 제12조제1항에 따른 등록 거부 사유가 없으면 지체 없이 이를 외국법자문사 명부에 등록하고 신청인에게 등록증명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대한변호사협회는 제10조제2항의 원자격국을 외국법자문사 명부와 등록증명서에 함께 적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등록의 유효기간은 제1항의 명부에 등록된 날부터 5년으로 한다.

③ 등록의 갱신신청은 제2항의 유효기간이 끝나는 날의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 할 수 있다.

④ 대한변호사협회는 등록 또는 등록 갱신을 한 경우에는 그 취지를 법무부장관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⑤ 대한변호사협회는 등록신청 및 등록의 갱신신청의 처리에 관하여 신청인으로부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수료를 받을 수 있다.

⑥ 외국법자문사의 등록 절차 등에 관하여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한변호사협회가 정한다.

제12조 [등록거부 등] ① 대한변호사협회는 제10조제1항에 따른 등록신청이나 제11조제3항에 따른 등록의 갱신신청을 한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4조에 따른 외국법자문사등록심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등록 또는 등록의 갱신을 거부할 수 있다. 이 경우 지체 없이 그 사유를 밝혀 신청인에게 알려야 한다.



1. 심신장애(心神障礙)로 인하여 외국법자문사의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현저히 곤란한 경우
2. 국가를 불문하고 공무원 재직 중의 직무에 관한 위법행위로 인하여 형사소추 또는 징계처분[과면 및 해임은 제외한다]을 받거나 퇴직한 자로서 외국법자문사의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현저히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제7조에 따라 자격승인이 취소된 경우
4. 등록 또는 등록 갱신이 거부되거나 제13조 또는 제36조에 따라 등록이 취소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경우
- ② 등록 또는 등록 갱신이 거부된 신청인은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소명자료를 첨부하여 법무부장관에게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 ③ 법무부장관은 제2항의 이의신청이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면 대한변호사협회에 그 외국법자문사의 등록 또는 등록 갱신을 명하여야 한다.

제13조 [등록취소] ① 대한변호사협회는 외국법자문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1. 사망한 경우
2. 외국법자문사의 자격이 없거나 자격승인이 취소된 경우
3. 등록취소를 신청한 경우. 다만, 징계를 회피할 목적으로 등록취소를 신청하였다고 볼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
4. 변호사의 자격을 갖춘 외국법자문사가 대한변호사협회에 변호사로 등록하는 경우
- ② 대한변호사협회는 외국법자문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제14조에 따른 외국법자문사등록심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그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개정 2016. 3. 2.)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외국법자문사의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현저히 곤란한 경우
2. 국가를 불문하고 공무원 재직 중의 직무에 관한 위법행위로 인하여 형사소추 또는 징계처분[과면 및 해임은 제외한다]을 받거나 퇴직한 자로서 외국법자문사의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현저히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제24조, 제25조 및 제34조를 위반하거나, 제35조에 따라 준용되는 「변호사법」 제33조 및 제34조를 위반한 경우
- ③ 대한변호사협회는 제1항(제1항제1호는 제외한다) 및 제2항에 따라 외국법자문사 등록을 취소하는 경우 그 취지와 이유를 해당 외국법자문사[제2항제1호의 경우에는 법정대리인을 포함하며, 이하 제4항에서 같다]에게 지체 없이 서면으로 통지하고, 법무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④ 제3항의 통지를 받은 외국법자문사는 지체 없이 등록증명서를 대한변호사협회에 반납하여야 한다.
- ⑤ 등록취소에 관하여는 등록거부 시의 이의신청 등에 관한 제12조제2항 및 제3항을 준용한다.

제14조 [외국법자문사등록심사위원회] 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사하기 위하여 대한변호사협회에 외국법자문사등록심사위원회를 둔다.

1. 제12조에 따른 등록거부 또는 등록의 갱신거부에 관한 사항
2. 제13조제1항제3호 단서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등록취소에 관한 사항



② 외국법자문사등록심사위원회의 구성, 심사절차 및 운영에 관하여는 「변호사법」 제9조제2항 및 제10조부터 제13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 4 장 외국법자문법률사무소

제15조 [설립신청 등] ① 원자격국에서 법률사무의 수행을 주된 목적으로 설립된 사무소나 법인[이하 “본점사무소”라 한다]에 소속된 제16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외국법자문사는 법무부장관의 설립인가를 받아 외국법자문법률사무소를 설립할 수 있다.

② 외국법자문법률사무소의 설립인가를 받으려면 그 대표자가 될 외국법자문사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서면으로 신청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의 외국법자문사는 2개 이상의 외국법자문법률사무소를 설립할 수 없다.

④ 신청인은 법무부령으로 정하는 수수료를 내야 한다. (신설 2011. 4. 5.)

제16조 [설립인가] ① 법무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 외국법자문법률사무소의 설립을 인가할 수 있다. (개정 2016. 3. 2.)

1. 본점사무소가 자유무역협정등의 당사국에서 그 나라의 법률에 따라 적법하게 설립되어 5년 이상 정상적으로 운영되었을 것
2. 본점사무소가 대한민국 내에서 외국법사무를 수행하기 위한 대표사무소로 그 외국법자문법률사무소를 설립하기로 의결 또는 결정하였을 것
3. 외국법자문법률사무소의 대표자가 될 외국법자문사가 외국변호사의 자격을 취득한 후 원자격국에서 3년 이상의 기간을 포함하여 총 5년 이상 법률사무를 수행한 경력이 있을 것
4. 본점사무소가 외국법자문법률사무소의 업무와 관련한 민사·상사상 책임에 대하여 그 이행을 보증할 것

② 여러 나라에 걸쳐 사무소, 현지 사무소, 현지 법인, 지사, 분사무소 등 법률사무의 수행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사무소를 두고 있는 경우에는 최고 의사결정이 이루어지는 사무소를 본점사무소로 본다.

③ 외국법자문법률사무소의 대표자가 결원된 때에는 3개월 이내에 이를 보충하여야 한다.

제17조 [고시 등] ① 법무부장관은 외국법자문법률사무소의 설립인가를 한 경우 지체 없이 이를 제15조제2항의 신청인과 대한변호사협회에 각각 서면으로 통지하고, 관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② 외국법자문법률사무소의 설립인가는 제1항의 고시가 있는 날부터 그 효력이 있다.

③ 외국법자문법률사무소의 설립인가에 관한 그 밖의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8조 [외국법자문법률사무소의 등록] ① 설립인가를 받은 외국법자문법률사무소의 대표자는 그 고시가 있었던 날부터 3개월 이내에 대한변호사협회에 외국법자문법률사무소의 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등록하여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목적, 명칭 및 사무소의 소재지



2. 구성원의 성명 및 주소와 외국법자문법률사무소를 대표할 구성원의 주소

3. 외국법자문법률사무소의 대표에 관한 사항

4. 설립인가 연월일

5. 본점사무소의 명칭 및 소재지

③ 대한변호사협회는 제1항의 신청이 있는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지체 없이 외국법자문법률사무소 명부에 등록하고 신청인에게 외국법자문법률사무소 등록증명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④ 외국법자문법률사무소의 대표자는 등록된 사항이 변경된 경우 그 변경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그 내용을 대한변호사협회에 서면으로 신고하여야 한다.

⑤ 대한변호사협회는 다음 각 호의 서면을 비치하여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1. 4. 5.)

1. 제2항 각 호의 사항이 적힌 서면

2. 제16조에 따른 설립인가 및 그 취소에 관한 서면

3. 제21조에 따른 보험 또는 공제기금에 가입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면

4. 제34조의3에 따른 등록 및 제34조의4에 따른 취소에 관한 서면

⑥ 대한변호사협회는 제3항에 따른 등록을 한 경우 그 취지를 법무부장관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신설 2011. 4. 5.)

⑦ 외국법자문법률사무소의 등록에 필요한 그 밖의 사항은 대한변호사협회가 정한다. (개정 2011. 4. 5.)

제19조 [설립인가의 취소] ① 법무부장관은 외국법자문법률사무소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설립인가를 취소할 수 있다. (개정 2011. 4. 5.)

1. 설립인가신청서 또는 그 증빙서류의 중요 부분이 누락되었거나 그 내용이 거짓으로 보이는 상당한 사정이 있는 경우

2. 제16조제1항 각 호의 요건을 구비하지 못한 경우

3. 제16조제3항을 위반하여 3개월 이내에 대표자를 보충하지 아니한 경우

4. 외국법자문법률사무소의 구성원 또는 구성원이 아닌 소속 외국법자문사가 외국법자문법률사무소의 업무수행과 관련하여 제24조를 위반한 경우

5. 법무부장관이 제32조제1항에 따라 실시하는 감독에 정당한 사유 없이 따르지 아니하여 공익을 침해하였거나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6. 외국법자문법률사무소가 제33조 또는 제34조를 위반한 경우

7. 제34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 등록 없이 법률사무소, 법무법인, 법무법인(유한) 또는 법무조합과 국내법사무와 외국법사무가 혼재된 법률사건을 공동으로 처리하고 그로부터 얻게 되는 수익을 분배하는 경우

8. 설립인가를 받은 외국법자문법률사무소의 대표자가 제18조제1항을 위반하여 3개월 이내에 대한변호사협회에 등록을 신청하지 아니한 경우

② 법무부장관은 본점사무소가 제35조의2에 따라 합작법무법인을 설립한 경우에는 해당 본점사무소가 제15조에 따라 설립한 외국법자문법률사무소의 설립인가를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16. 3. 2.)

③ 제1항제1호부터 제7호까지 또는 제2항에 따라 외국법자문법률사무소의 설립인가가 취소된 경우



에는 대한변호사협회의 등록이 취소된 것으로 본다. (개정 2016. 3. 2.)

④ 법무부장관은 제1항의 사유로 외국법자문법률사무소의 설립인가를 취소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신설 2016. 3. 2.)

⑤ 설립인가의 취소에 관하여는 제17조를 준용한다. (개정 2016. 3. 2.)

제20조 [사무직원] ① 외국법자문법률사무소는 사무소에 사무직원을 둘 수 있다.

② 외국법자문법률사무소의 사무직원에 관하여는 「변호사법」 제22조제2항·제4항·제5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변호사”는 “외국법자문법률사무소의 대표자”로, “지방변호사회의의 장”은 “대한변호사협회의 장”으로 본다.

제21조 [수입사건과 관련된 손해배상책임] ① 외국법자문법률사무소의 구성원은 외국법사무의 수행 및 외국법자문법률사무소의 운영 등과 관련된 손해배상책임을 보장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험 또는 공제기금에 가입하여야 한다.

② 외국법자문법률사무소의 대표자는 제1항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에 관한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입 계약서와 광고물에 밝혀야 한다.

제22조 [장부의 작성 등] 외국법자문법률사무소는 수입에 관한 장부를 작성하고, 이를 보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수입장부의 기재 등에 관하여는 「변호사법」 제28조제2항 및 제3항을 준용한다.

제23조 [외국법자문법률사무소의 운영 등] ① 외국법자문법률사무소는 국내에 분사무소를 둘 수 없다.

② 외국법자문법률사무소의 업무집행 방법 및 그 구성원 등의 업무제한에 관하여는 「변호사법」 제50조제1항, 제3항부터 제6항까지, 제7항 본문 및 제52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준용되는 「변호사법」 해당 조항 중 “법무법인”은 “외국법자문법률사무소”로, “변호사”는 “외국법자문사”로 본다.

③ 외국법자문법률사무소(구성원이 2명 이상인 경우에 한한다)에 관하여 이 법에 정한 것 외에는 「민법」 중 조합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 5 장 외국법자문사 등의 권리와 의무

제24조 [업무 범위] 외국법자문사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16. 3. 2.)

1. 원자격국의 법령에 관한 자문
2. 원자격국이 당사국인 조약 및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관습법에 관한 자문
3. 국제중재사건의 대리. 다만, 대한민국 법령에 관한 사무는 제외한다.

제24조의2 [외국법자문사 아닌 외국변호사의 국제중재사건 대리] ① 외국법자문사 아닌 외국변호사(제5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는 제24조제3호의 사무를 수행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외국변호사는 제24조제3호의 사무 처리와 관련하여 1년에 90일 이상 대한민국에 체류할 수 없다. 다만, 본인의 부상이나 질병, 친족의 부상이나 질병으로 인한 간호·문병, 그 밖의 부득



이한 사정으로 대한민국에 체류한 기간은 체류 기간을 산정할 때 산입하지 아니한다.

(본조신설 2016. 3. 2.)

제25조 [업무수행의 방식] ① 외국법자문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위에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개정 2016. 3. 2.)

1. 외국법자문법률사무소의 구성원
 2. 외국법자문법률사무소의 구성원이 아닌 소속 외국법자문사
 3. 법률사무소, 법무법인, 법무법인(유한) 또는 법무조합 소속 외국법자문사
 4. 합작법무법인의 선임외국법자문사(제35조의11제1항의 요건을 갖춘 외국법자문사를 말한다. 이하 같다)
 5. 합작법무법인의 선임외국법자문사 아닌 소속외국법자문사
- ② 외국법자문사는 동시에 2개 이상의 외국법자문법률사무소, 법률사무소, 법무법인, 법무법인(유한), 법무조합 또는 합작법무법인에 소속 또는 고용되거나 그 직책을 겸임할 수 없다. (개정 2016. 3. 2.)

제26조 [신고 등] ① 외국법자문사가 업무를 개시한 경우, 일시 휴업한 경우 또는 근무지를 변경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대한변호사협회에 신고하여야 한다.

② 대한변호사협회는 제1항의 신고를 받은 때에는 지체 없이 법무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27조 [자격의 표시 등] ① 외국법자문사는 직무를 수행하면서 본인을 표시할 때는 대한민국에서 통용되는 원자격국의 명칭(원자격국이 도·주·성·자치구 등 한 국가 내의 일부 지역인 경우 그 국가의 명칭을 위 원자격국의 명칭으로 사용할 수 있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이어 “법자문사”를 덧붙인 직명을 사용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직명과 함께 괄호 안에 원자격국언어로 된 원자격국의 명칭을 포함한 해당 외국 변호사의 명칭을 부기할 수 있고, 이어 국어로 된 대한민국에서 통용되는 원자격국의 명칭에 “변호사”를 덧붙인 명칭을 병기할 수 있다. (개정 2016. 3. 2.)

② 외국법자문법률사무소는 본점사무소의 명칭 다음에 “외국법자문법률사무소”를 덧붙인 명칭을 사용하여야 한다. 이 경우 외국법자문법률사무소가 위치한 지역명을 병기할 수 있다. (개정 2011. 4. 5.)

③ 외국법자문사나 외국법자문법률사무소는 직무를 수행하면서 제1항 및 제2항에 규정된 방식 외의 명칭이나 표시를 사용할 수 없다.

④ 외국법자문법률사무소는 일반인이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사무소 안팎의 적절한 장소에 구성원, 소속 외국법자문사 및 그 원자격국을 모두 표시하여야 한다.

⑤ 합작법무법인은 일반인이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사무소 안팎의 적절한 장소에 전체 합작참여자, 선임변호사, 소속변호사, 선임외국법자문사 및 소속외국법자문사(외국법자문사의 경우에는 제6조제2항에 따라 법무부장관이 지정한 원자격국을 포함한다)를 모두 표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6. 3. 2.)

⑥ 외국법자문사 또는 합작법무법인은 의뢰인과 외국법사무 등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의뢰인에게 그 원자격국(합작법무법인의 경우에는 담당외국법자문사의 원자격국을 말한다)과 업무 범위를 명시하여야 한다. (신설 2016. 3. 2.)

⑦ 외국법자문사가 아닌 사람은 외국법자문사 또는 외국법자문사로 오인을 일으킬 수 있는 어떠한 명칭이나 표시도 사용할 수 없다. (개정 2016. 3. 2.)

제28조 [윤리기준 등] ① 외국법자문사는 그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외국법자문사는 그 직무를 수행하면서 진실을 은폐하거나 거짓의 진술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외국법자문사는 대한변호사협회가 정하는 윤리장전(倫理章典)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29조 [체류 의무] ① 외국법자문사는 최초의 업무개시일부터 1년에 180일 이상 대한민국에 체류하여야 한다.

② 외국법자문사가 본인의 부상이나 질병, 친족의 부상이나 질병으로 인한 간호·문병, 그 밖의 부득이한 사정으로 외국에 체류한 경우 그 기간은 대한민국에 체류한 것으로 본다.

제30조 [비밀유지 의무] 외국법자문사 또는 외국법자문사이었던 사람은 그 직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31조 [광고] ① 외국법자문사, 외국법자문법률사무소 및 합작법무법인은 자기 또는 그 구성원(합작법무법인의 경우에는 합작참여자, 선임변호사 및 선임외국법자문사를 말한다)의 원자격국, 학력, 경력, 전문분야, 업무 실적, 그 밖에 그 업무의 홍보에 필요한 사항을 방송·신문·잡지·컴퓨터통신 등의 매체를 이용하여 광고할 수 있다. (개정 2016. 3. 2.)

② 제1항의 광고에 관한 사항을 심사하기 위하여 대한변호사협회에 외국법자문사광고심사위원회를 둔다.

③ 외국법자문사의 광고에 관하여는 「변호사법」 제23조제2항 및 제4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변호사” 또는 “변호사등”은 “외국법자문사”, “외국법자문법률사무소” 또는 “합작법무법인”으로 본다. (개정 2016. 3. 2.)

제32조 [법무부장관의 감독 등] ① 외국법자문사, 외국법자문법률사무소 및 합작법무법인은 그 활동에 관하여 법무부장관과 대한변호사협회의 감독을 받는다. (개정 2016. 3. 2.)

② 대한변호사협회는 외국법자문사, 외국법자문법률사무소 또는 합작법무법인이 이 법에서 규정하는 의무를 위반하였음을 알게 된 경우 이를 법무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6. 3. 2.)

제33조 [자료 제출의 의무] 외국법자문사, 외국법자문법률사무소 또는 합작법무법인은 법무부장관 또는 대한변호사협회가 제32조제1항의 감독을 수행하기 위하여 이유를 명시하여 그 업무·재산의 현황, 수입·회계 내역의 명세, 그 밖에 감독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경우 이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16. 3. 2.)

제34조 [고용, 동업, 겸임 등의 금지] ① 외국법자문사나 외국법자문법률사무소는 변호사·법무사·변리사·공인회계사·세무사 및 관세사를 고용할 수 없다.

② 외국법자문사나 외국법자문법률사무소는 변호사·법무사·변리사·공인회계사·세무사 및 관세사와 동업, 업무제휴, 포괄적 협력관계의 설정, 사건의 공동 수임, 그 밖의 어떠한 방식으로든 사건을 공동으로 처리하고 그로 인한 보수나 수익을 분배할 수 없다.

③ 외국법자문사나 외국법자문법률사무소는 변호사·법무법인·법무법인(유한)·법무조합·법무사·법무사법인·법무사법인(유한)·변리사·특허법인·특허법인(유한)·공인회계사·회계법인·세무사·세무법인·관세사 및 관세사법인과 조합계약, 법인설립, 지분참여, 경영권 위임을 할 수 없으며, 그 밖의 어떠한 방식으로든 법률사무소·법무법인·법무법인(유한)·법무조합·법무사사무소·법무사법인·법무



사법인(유한)·변리사사무소·특허법인·특허법인(유한)·공인회계사사무소·회계법인·세무사사무소·세무법인·관세사사무소 및 관세사법인을 공동으로 설립·운영하거나 동업할 수 없다. (개정 2016. 2. 3.)

제34조의2 [외국법자문법률사무소의 공동 사건 처리 등] ① 자유무역협정등에 따라 법무부장관이 고시하는 자유무역협정등의 당사국에 본점사무소가 설립·운영되고 있는 외국법자문법률사무소는 사전에 대한변호사협회에 제34조의3에 따른 공동 사건 처리 등을 위한 등록(이하 “공동사건처리등을 위한 등록”이라 한다)을 한 경우 제34조제2항에도 불구하고 법률사무소, 법무법인, 법무법인(유한) 또는 법무조합과 국내법사무와 외국법사무가 혼재된 법률사건을 사안별 개별 계약에 따라 공동으로 처리하고 그로부터 얻게 되는 수익을 분배할 수 있다.

② 외국법자문법률사무소의 구성원 또는 구성원이 아닌 소속 외국법자문사는 제1항에 따른 업무를 처리하는 경우 법률사무소, 법무법인, 법무법인(유한) 또는 법무조합 소속 변호사가 처리하는 법률사무에 대하여 제24조 각 호에 규정된 업무 범위를 넘어 부당하게 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본조신설 2011. 4. 5.)

제34조의3 [공동사건처리등을 위한 등록] ① 공동사건처리등을 위한 등록은 공동 사건 처리 등의 업무를 수행하려는 외국법자문법률사무소의 대표자가 서면으로 신청하여야 한다.

② 대한변호사협회는 제1항에 따른 신청이 있는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지체 없이 외국법자문법률사무소 명부에 등록한 후 신청인에게 등록증명서를 발급하고 그 취지를 신청인 및 법무부장관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외국법자문법률사무소의 공동사건처리등을 위한 등록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한변호사협회가 정한다.

(본조신설 2011. 4. 5.)

제34조의4 [공동사건처리등을 위한 등록의 취소] ① 법무부장관은 공동사건처리등을 위한 등록을 마친 외국법자문법률사무소의 본점사무소가 법무부장관이 고시하는 자유무역협정등의 당사국에서 설립·운영되고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대한변호사협회에 그 등록의 취소를 명할 수 있다.

② 대한변호사협회는 제1항에 따른 등록취소명령이 있거나 등록취소명령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공동사건처리등을 위한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③ 대한변호사협회는 제2항에 따라 공동사건처리등을 위한 등록을 취소하는 경우 그 취지와 이유를 해당 외국법자문법률사무소에 지체 없이 서면으로 통지하고, 법무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④ 제2항에 따른 등록취소에 대한 이의신청에 관하여는 제12조제2항 및 제3항을 준용한다.

(본조신설 2011. 4. 5.)

제34조의5 [공동 사건 처리 등의 신고] ① 공동사건처리등을 위한 등록을 마친 외국법자문법률사무소의 대표자는 매년 1월 31일까지 전년도에 그 외국법자문법률사무소가 제34조의2제1항에 따라 체결한 계약과 관련하여 그 상대방인 법률사무소, 법무법인, 법무법인(유한) 또는 법무조합의 명칭 및 그 사무소의 소재지, 계약체결일, 그 밖에 대한변호사협회가 정하는 사항을 대한변호사협회에 신고하여야 한다.



② 대한변호사협회는 제1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경우에는 그 취지를 법무부장관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외국법자문법률사무소의 공동 사건 처리 등의 신고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한변호사협회가 정한다.

(본조신설 2011. 4. 5.)

제35조 [「변호사법」의 준용] 외국법자문사의 직무 등에 관하여는 「변호사법」 제28조의2, 제30조부터 제34조까지 및 제38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준용되는 「변호사법」 해당 조항 중 “변호사”는 “외국법자문사”로, “법률사무소”는 “외국법자문법률사무소”로, “소속 지방변호사회”는 “대한변호사협회”로 본다. (개정 2016. 3. 2.)

제5장의2 합작법무법인 <신설 2016. 3. 2.>

제35조의2 [설립] ① 법무법인, 법무법인(유한) 또는 법무조합은 법무부장관이 고시하는 자유무역협정 등 당사국에서 그 법적 형태를 불문하고 법률사무의 수행을 주된 목적으로 설립된 자와 합작하여 법무법인을 설립할 수 있다.

② 외국 합작참여자가 여러 나라에 걸쳐 사무소, 현지 사무소, 현지 법인, 지사, 분사무소 등 법률사무의 수행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사무소를 두고 있는 경우에는 최고 의사결정이 이루어지는 사무소 소재지 국가를 기준으로 제1항의 자유무역협정 등 당사국을 정한다.

(본조신설 2016. 3. 2.)

제35조의3 [설립 신청 등] ① 합작법무법인을 설립하려면 합작참여자가 정관을 작성하여 주사무소 소재지의 지방변호사회와 대한변호사협회를 거쳐 법무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정관을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② 합작법무법인의 설립인가 또는 정관변경의 인가를 받으려면 합작참여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증명서류를 첨부하여 서면으로 신청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인가의 유효기간은 법무부장관의 설립인가일부터 5년으로 한다.

④ 설립인가의 갱신 신청은 제3항의 유효기간이 끝나는 날의 10개월 전부터 5개월 전까지 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6. 3. 2.)

제35조의4 [정관 기재 사항] 합작법무법인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목적, 명칭, 주사무소 및 분사무소의 소재지
2. 전체 합작참여자의 명칭, 등록번호(등록번호가 없는 경우에는 등록번호에 준하는 번호), 주사무소 주소
3. 출자의 종류와 그 가액 또는 평가 기준 및 지분 비율
4. 합작참여자의 가입·탈퇴와 그 밖의 변경에 관한 사항
5. 합작참여자 회의에 관한 사항
6. 합작법무법인 내 선임변호사(제35조의11제1항의 요건을 갖춘 변호사를 말한다. 이하 같다)와 선임외국



법자문사의 성명·주민등록번호(외국인인 경우에는 생년월일) 및 대표자의 주소

7. 합작법무법인 내 선임변호사 및 선임외국법자문사의 권한과 의무에 관한 사항
8. 합작법무법인의 대표에 관한 사항
9. 자산과 회계에 관한 사항
10. 존립 시기나 해산 사유를 정한 경우에는 그 시기 또는 사유

(본조신설 2016. 3. 2.)

제35조의5 [등기] ① 합작법무법인은 설립인가를 받으면 2주일 이내에 설립등기를 하여야 한다. 등기 사항이 변경되었을 때에도 또한 같다.

② 제1항의 등기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목적, 명칭, 주사무소 및 분사무소의 소재지
2. 전체 합작참여자의 명칭, 등록번호(등록번호가 없는 경우에는 등록번호에 준하는 번호), 주사무소 주소
3. 출자의 종류·가액 및 이행 부분
4. 합작법무법인 내 선임변호사와 선임외국법자문사의 성명·주민등록번호(외국인인 경우에는 생년월일) 및 대표자의 주소
5. 합작법무법인의 대표에 관한 사항
6. 둘 이상의 자가 공동으로 합작법무법인을 대표할 것을 정한 경우에는 그 규정
7. 존립 시기나 해산 사유를 정한 경우에는 그 시기 또는 사유
8. 설립인가 연월일

③ 합작법무법인은 주사무소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본조신설 2016. 3. 2.)

제35조의6 [명칭] ① 합작법무법인은 전체 합작참여자의 명칭(통용되는 약칭을 포함한다)을 병기하고, 그 명칭 중에 합작법무법인이라는 문자를 사용하여야 한다.

② 합작법무법인이 아닌 자는 합작법무법인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본조신설 2016. 3. 2.)

제35조의7 [합작법무법인의 구성] ① 합작법무법인은 1개 이상의 국내 합작참여자와 1개 이상의 외국 합작참여자로 구성한다.

② 합작참여자는 2개 이상의 합작법무법인을 설립할 수 없다.

③ 합작법무법인이 제1항에 따른 합작참여자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게 된 경우에는 3개월 이내에 보충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6. 3. 2.)

제35조의8 [합작참여자] ① 합작법무법인을 설립하는 국내 합작참여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1. 「변호사법」에 따라 적법하게 설립되어 3년 이상 정상적으로 운영되었을 것
2. 통산하여 5년 이상 「법원조직법」 제4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직에 있었던 5명 이상의 변호사를 보유하고, 이들 중 최소 3명은 해당 국내 합작참여자의 구성원일 것



3. 주사무소의 최고 의사결정 기구가 합작법무법인을 설립하기로 의결 또는 결정하였을 것
 4. 다음 각 목의 요건을 충족하여 운영되었을 것
 - 가. 최근 5년간 「변호사법」에 따른 징계 또는 형사처벌을 받은 사실이 없을 것. 다만, 징계 또는 벌금 300만원 이하의 형사처벌을 받은 경우로서 징계 또는 형사처벌의 원인이 된 행위의 내용 및 동기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 나. 최근 5년간 그 대표가 국내 합작참여자의 업무집행과 관련하여 「변호사법」에 따른 징계 또는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사실이 없을 것. 다만, 징계를 받은 경우로서 징계의 원인이 된 행위의 내용 및 동기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5. 국내 합작참여자의 인적 구성, 업무사례, 업무능력 등에 비추어 합작법무법인 사무 취급에 적합한 전문성을 갖추고 있을 것
- ② 합작법무법인을 설립하는 외국 합작참여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1. 자유무역협정등 당사국에서 그 나라의 법률에 따라 적법하게 설립되어 3년 이상 정상적으로 운영되었을 것
 2. 외국변호사 자격을 취득한 후 5년 이상 법률사무를 수행한 경력이 있는 5명 이상의 외국변호사를 보유하고, 이들 중 최소 3명은 해당 외국 합작참여자의 구성원일 것
 3. 제35조의2제2항의 최고 의사결정이 이루어지는 사무소의 최고 의사결정 기구가 합작법무법인을 설립하기로 의결 또는 결정하였을 것
 4. 다음 각 목의 요건을 충족하여 운영되었을 것
 - 가. 최근 5년간 국가를 불문하고 「변호사법」(이 법 또는 「변호사법」에 상당하는 외국의 법률을 포함한다)에 따른 징계 또는 형사처벌에 상당하는 처분을 받은 사실이 없을 것. 다만, 징계 또는 형사처벌의 원인이 된 행위의 내용 및 동기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 나. 최근 5년간 그 대표가 외국 합작참여자의 업무집행과 관련하여 국가를 불문하고 「변호사법」(이 법 또는 「변호사법」에 상당하는 외국의 법률을 포함한다)에 따른 징계 또는 금고 이상의 형에 상당하는 처분을 받은 사실이 없을 것. 다만, 징계 또는 형사처벌의 원인이 된 행위의 내용 및 동기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5. 외국 합작참여자의 인적 구성, 업무사례, 업무능력 등에 비추어 합작법무법인 사무 취급에 적합한 전문성을 갖추고 있을 것

(본조신설 2016. 3. 2.)

제35조의9 [합작참여자의 가입] ① 합작 참여를 원하는 자는 합작참여자 전원의 동의를 받은 후 법무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합작법무법인에 가입할 수 있다.

② 새로 합작법무법인에 가입하게 되는 합작참여자는 제35조의8의 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6. 3. 2.)

제35조의10 [합작참여자의 탈퇴] ① 합작참여자는 임의로 탈퇴할 수 있다. 다만, 6개월 전에 이를 예



고하여야 한다.

② 국내 합작참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으면 당연히 탈퇴한다.

1. 「변호사법」에 따라 해산한 경우
2. 「변호사법」에 따라 업무정지명령을 받은 경우
3. 합작법무법인의 정관에서 정한 탈퇴 사유가 발생한 경우

③ 외국 합작참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으면 당연히 탈퇴한다.

1. 자유무역협정등 당사국법에 따라 해산 또는 그에 준하는 상황이 발생한 경우
2. 자유무역협정등 당사국법에 따라 업무정지명령을 받거나 그에 준하는 상황이 발생한 경우
3. 합작법무법인의 정관에서 정한 탈퇴 사유가 발생한 경우

(본조신설 2016. 3. 2.)

제35조의11 [선임변호사 및 선임외국법자문사] ① 「변호사법」 제34조제4항에도 불구하고 합작법무법인에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각 2명 이상의 선임변호사 및 선임외국법자문사를 둔다.

1. 합작참여자의 구성원일 것
2. 통산하여 5년 이상 「법원조직법」 제4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직에 있었거나, 외국변호사 자격을 취득한 후 원자격국에서 2년 이상의 기간을 포함하여 총 5년 이상 법률사무를 수행한 경력이 있을 것
3. 외국법자문사의 경우 원자격국이 제35조의2제1항에 따라 법무부장관이 고시하는 자유무역협정등 당사국일 것

② 합작법무법인 내 선임외국법자문사 수는 선임변호사 수를 넘을 수 없다.

③ 제35조의15제3항, 「변호사법」 제21조제3항 및 제48조제3항(같은 법 제58조의16 및 제58조의30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도 불구하고 합작법무법인 내 선임변호사 및 선임외국법자문사는 법무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합작참여자 구성원 직을 겸할 수 있다.

④ 합작법무법인이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선임변호사 또는 선임외국법자문사 인원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게 된 경우에는 3개월 이내에 이를 보완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6. 3. 2.)

제35조의12 [소속변호사 및 소속외국법자문사] ① 「변호사법」 제34조제4항에도 불구하고 합작법무법인은 선임변호사 아닌 소속변호사 및 선임외국법자문사 아닌 소속외국법자문사를 둘 수 있다.

② 제1항의 외국법자문사의 경우 원자격국이 제35조의2제1항에 따라 법무부장관이 고시하는 자유무역협정등 당사국이어야 한다.

③ 합작법무법인 내 소속외국법자문사 수는 소속변호사 수를 넘을 수 없다.

④ 합작법무법인이 제3항에 따른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게 된 경우에는 3개월 이내에 이를 보완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6. 3. 2.)

제35조의13 [대표] 합작법무법인의 대표는 합작참여자 회의(합작참여자를 대표하는 자들로 구성된 회의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사람 중에서 선임한다.



1. 선임변호사 또는 선임외국법자문사일 것
2. 외국법자문사의 경우에는 원자격국이 제35조의2제2항에 따른 외국 합작참여자의 소재지국일 것
(본조신설 2016. 3. 2.)

제35조의14 [사무직원] ① 합작법무법인은 사무소에 사무직원을 둘 수 있다.

- ② 합작법무법인의 사무직원에 관하여는 「변호사법」 제22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변호사”는 “합작법무법인”으로, “지방변호사회의의 장”은 “대한변호사협회의의 장”으로 본다.
(본조신설 2016. 3. 2.)

제35조의15 [사무소] ① 합작법무법인은 분사무소를 둘 수 있다.

- ② 합작법무법인이 사무소를 개업 또는 이전하거나 분사무소를 둔 경우에는 지체 없이 주사무소 소재지의 지방변호사회와 대한변호사협회를 거쳐 법무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 ③ 합작법무법인 내 변호사 및 외국법자문사는 그 법적 형태를 불문하고 합작법무법인 외에 따로 법률사무의 수행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사무소를 둘 수 없다.
- ④ 제1항에 따른 분사무소의 설치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6. 3. 2.)

제35조의16 [지분] ① 외국 합작참여자는 100분의 49를 초과하여 합작법무법인의 지분을 보유할 수 없다.

- ② 합작법무법인 내에 복수의 외국 합작참여자가 있을 경우 제1항을 적용할 때 각 외국 합작참여자의 지분을 합산한 것을 기준으로 한다.
- ③ 합작참여자는 다른 모든 합작참여자의 동의를 얻지 아니하면 그 지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양도하지 못한다.
(본조신설 2016. 3. 2.)

제35조의17 [의결권 행사] ① 합작참여자는 합작참여자 회의에서 지분 비율에 따라 의결권을 행사한다.

- ② 합작참여자의 회의는 총의결권의 과반수로 의결한다.
(본조신설 2016. 3. 2.)

제35조의18 [수익 분배] 「변호사법」 제34조제5항에도 불구하고 전체 합작참여자는 정관에 달리 정한 바가 없으면 지분 비율에 따라 수익을 수취한다.

(본조신설 2016. 3. 2.)

제35조의19 [업무 범위] 합작법무법인은 이 법 및 다른 법률에 저촉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제외한 사무를 수행할 수 있다.

1. 국가·지방자치단체와 그 밖의 공공기관에서의 사법절차 또는 법적 절차를 위한 대리 및 그러한 절차를 위한 법률 문서의 작성
2. 「공증인법」 제2조 각 호에 따른 증서 작성의 촉탁 대리
3. 노동 분야 자문
4. 대한민국에 있는 부동산에 관한 권리, 지식재산권, 광업권, 그 밖에 행정기관에登記 또는 등록함



을 성립요건이나 대항요건으로 하는 권리의 득실변경(得失變更)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사무의 대리 및 이를 목적으로 한 문서의 작성

5. 대한민국 국민이 당사자이거나, 관련된 재산이 대한민국에 소재하고 있는 경우의 친족·상속 관계 사무의 대리 및 이를 목적으로 한 문서의 작성

(본조신설 2016. 3. 2.)

제35조의20 [업무 집행 방법] ① 합작법무법인은 법인 명의로 업무를 수행하며 그 업무를 담당할 변호사(이하 “담당변호사”라 한다) 또는 그 업무를 담당할 외국법자문사(이하 “담당외국법자문사”라 한다)를 지정하여야 한다. 소속변호사 또는 소속외국법자문사에 대해서는 선임변호사 또는 선임외국법자문사와 공동으로 지정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정을 할 때 외국법자문사는 제24조 각 호에 규정된 업무 외의 업무에 대해서는 담당외국법자문사로 지정될 수 없다.

③ 합작법무법인이 「변호사법」 제49조제2항에 따른 업무를 할 때에는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있는 변호사 중에서 업무를 담당할 자를 지정하여야 한다.

④ 합작법무법인이 제1항에 따라 담당변호사 또는 담당외국법자문사를 지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선임변호사 및 선임외국법자문사 모두를 담당변호사 및 담당외국법자문사로 지정한 것으로 본다. 다만, 제24조 각 호에 규정된 업무 외의 업무에 대해서는 선임변호사 모두를 담당변호사로 지정한 것으로 본다.

⑤ 합작법무법인은 담당변호사 또는 담당외국법자문사가 업무를 담당하지 못하게 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제1항에 따라 다시 담당변호사 또는 담당외국법자문사를 지정하여야 한다.

⑥ 합작법무법인이 제5항에 따라 다시 담당변호사 또는 담당외국법자문사를 지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제4항을 준용한다.

⑦ 합작법무법인은 제1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담당변호사 또는 담당외국법자문사를 지정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이를 수임사건의 위임인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담당변호사 또는 담당외국법자문사를 변경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⑧ 담당변호사 및 담당외국법자문사는 지정된 업무를 수행할 때에 각자가 그 합작법무법인을 대표한다.

⑨ 합작법무법인이 그 업무에 관하여 작성하는 문서에는 법인명의를 표시하고 담당변호사 및 담당외국법자문사가 기명날인하거나 서명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6. 3. 2.)

제35조의21 [부당 관여 금지] 합작법무법인 내 외국법자문사는 제24조 각 호에 규정된 업무 외의 법률사무를 취급할 때 합작법무법인 내 변호사에게 업무상 명령을 내리거나 부당한 관여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본조신설 2016. 3. 2.)

제35조의22 [변호사, 외국법자문사의 업무 제한] ① 합작법무법인의 변호사 및 외국법자문사는 자기나 제3자의 계산으로 변호사, 외국법자문사 업무를 수행할 수 없다. 다만, 선임변호사 또는 선임외국법



자문사가 제35조의11제3항에 따라 합작참여자 구성원 직을 겸하는 경우에 해당 합작참여자의 계산으로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② 합작법무법인의 변호사 또는 외국법자문사였던 자는 합작법무법인의 소속 기간 중 그 법인이 상의(相議)를 받아 수임을 승낙한 사건에 관하여는 변호사나 외국법자문사의 업무를 수행할 수 없다.
(본조신설 2016. 3. 2.)

제35조의23 [국내 합작참여자의 별도 직무 수행] 국내 합작참여자는 합작법무법인과 별도로 「변호사법」 제3조의 직무를 수행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6. 3. 2.)

제35조의24 [장부의 작성·보관] 합작법무법인은 수임에 관한 장부를 작성하고, 이를 보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수임장부의 기재 등에 관하여는 「변호사법」 제28조제2항 및 제3항을 준용한다.

(본조신설 2016. 3. 2.)

제35조의25 [수임 제한] 합작법무법인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건에 관하여는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다. 다만, 제2호 사건의 경우 수임하고 있는 사건의 위임인이 동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당사자 한쪽으로부터 상의를 받아 그 수임을 승낙한 사건(합작참여자가 수임을 승낙한 사건을 포함한다)의 상대방이 위임하는 사건
2. 수임하고 있는 사건(합작참여자가 수임하고 있는 사건을 포함한다)의 상대방이 위임하는 다른 사건
3. 합작법무법인의 선임변호사, 선임외국법자문사, 소속변호사, 소속외국법자문사 또는 소속 외국변호사[국내 합작참여자의 구성원 또는 소속 변호사, 외국 합작참여자의 구성원, 소속 외국법자문사 또는 소속 변호사를 포함한다]가 공무원·조정위원 또는 중재인으로서 직무상 취급하거나 취급하게 된 사건

(본조신설 2016. 3. 2.)

제35조의26 [고용, 동업, 겸임 등의 금지] ① 합작법무법인은 법무사·변리사·공인회계사·세무사 및 관세사를 고용할 수 없다.

② 합작법무법인은 법무사·변리사·공인회계사·세무사 및 관세사와 동업, 업무제휴, 포괄적 협력관계의 설정, 사건의 공동 수임, 그 밖의 어떠한 방식으로든 사건을 공동으로 처리하고 그로 인한 보수나 수익을 분배할 수 없다.

③ 합작법무법인은 변호사·법무법인·법무법인(유한)·법무조합·법무사·법무사합동법인·변리사·특허법인·특허법인(유한)·공인회계사·회계법인·세무사·세무법인·관세사 및 관세사법인과 조합계약, 법인설립, 지분참여, 경영권 위임을 할 수 없으며, 그 밖의 어떠한 방식으로든 법무사사무소·법무사합동법인·변리사사무소·특허법인·특허법인(유한)·공인회계사사무소·회계법인·세무사사무소·세무법인·관세사사무소 및 관세사법인을 공동으로 설립·운영하거나 동업할 수 없다.

(본조신설 2016. 3. 2.)

제35조의27 [보고 등] ① 합작법무법인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변동이 있는 경우, 법무부장관에게 이를 보고하여야 한다.

1. 제35조의8에 관한 사항



2. 제35조의11부터 제35조의13까지의 규정에 관한 사항

3. 제35조의16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합작법무법인 설립인가에 관한 사항

② 법무부장관은 합작법무법인에 제1항의 사실을 확인할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③ 법무부장관은 행정기관이나 그 밖의 공사단체에 설립인가 또는 그 취소에 관하여 필요한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6. 3. 2.)

제35조의28 [손해배상책임] ① 합작법무법인을 대표하는 자[담당변호사 및 담당외국법자문사를 포함한다]가 그 업무집행으로 인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에는 합작법무법인은 그 대표와 연대하여 배상할 책임이 있다.

② 합작법무법인은 합작법무법인의 업무 처리 및 운영 등과 관련된 손해배상책임을 보장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험 또는 공제기금에 가입하여야 한다.

③ 합작법무법인은 제2항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에 관한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입 계약서와 광고물에 밝히야 한다.

(본조신설 2016. 3. 2.)

제35조의29 [인가 취소] ① 법무부장관은 합작법무법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설립인가를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설립인가를 취소하여야 한다.

1. 설립인가신청서 또는 그 증명서류의 중요 부분이 누락되었거나 그 내용이 거짓으로 보이는 상당한 사정이 있는 경우

2. 합작참여자가 제35조의7제2항을 위반하여 2개 이상 합작법무법인을 설립한 경우

3. 제35조의7제3항을 위반하여 3개월 이내에 합작참여자를 보충하지 아니한 경우

4. 합작참여자가 제35조의8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5. 업무 집행에 관하여 법령을 위반한 경우

② 법무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합작법무법인의 설립인가를 취소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6. 3. 2.)

제35조의30 [해산] ① 합작법무법인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해산한다.

1. 정관에서 정한 해산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

2. 합작참여자 전원의 동의가 있을 때

3. 파산하였을 때

4. 설립인가가 취소되었을 때

5. 인가 유효기간 만료 후 인가 갱신을 받지 못한 때

② 합작법무법인이 해산한 경우에는 청산인은 지체 없이 주사무소 소재지의 지방변호사회와 대한변호사협회를 거쳐 법무부장관에게 그 사실을 신고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6. 3. 2.)



제35조의31 [인가 등 통지] 법무부장관은 합작법무법인의 인가, 인가 취소 및 해산이 있으면 지체 없이 주사무소 소재지의 지방변호사회와 대한변호사협회에 통지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6. 3. 2.)

제35조의32 [준용 규정] 합작법무법인에 대한 징계에 관하여는 제6장을 준용한다.

(본조신설 2016. 3. 2.)

제35조의33 [다른 법률의 준용] ① 합작법무법인에 관하여는 「변호사법」 제27조, 제28조의2, 제30조 및 제32조부터 제37조까지의 규정(같은 법 제34조제4항 및 제5항은 제외한다)을 준용한다. 이 경우 “변호사”는 “합작법무법인”으로, “소속 지방변호사회”는 “대한변호사협회”로 본다.

② 합작법무법인에 관하여 이 법에서 정한 것 외에는 「상법」 중 합명회사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다만, 「상법」 제173조, 제230조, 제232조부터 제240조까지 및 제242조부터 제244조까지의 규정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본조신설 2016. 3. 2.)

제 6 장 징 계

제36조 [징계의 종류] 외국법자문사에 대한 징계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1. 자격승인취소
2. 등록취소
3. 3년 이하의 정직(停職)
4.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5. 견책

제37조 [징계 사유] ① 제36조제1호에 해당하는 징계 사유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제13조제2항제2호 또는 제36조제2호에 따른 등록취소 처분을 받은 사람으로서 외국법자문사의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현저히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2. 제36조제3호에 따른 정직 처분을 2회 이상 받은 후 다시 제2항에서 정하는 징계 사유가 있는 사람으로서 외국법자문사의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현저히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제36조제2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징계 사유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1. 이 법을 위반한 경우
2. 대한변호사협회가 정하는 윤리장전을 위반한 경우
3. 직무의 내외를 막론하고 외국법자문사로서의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한 경우

제38조 [외국법자문사징계위원회의 설치] ① 외국법자문사의 징계는 외국법자문사징계위원회가 행한다.

② 법무부와 대한변호사협회에 각각 외국법자문사징계위원회를 둔다.

제39조 [대한변호사협회 외국법자문사징계위원회의 구성] ① 대한변호사협회 외국법자문사징계위원회



(이하 “변협징계위원회”라고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이 경우 법무부장관은 외국법자문사인 위원을 추천하기 곤란한 사정이 있으면 이를 갈음하여 외국변호사의 자격을 가진 자를 추천할 수 있다.

1. 법원행정처장이 추천하는 판사 2명
2. 법무부장관이 추천하는 검사 2명 및 외국법자문사 2명
3. 대한변호사협회의 장이 추천하는 변호사 2명 및 변호사가 아닌 법과대학 교수 1명
- ② 변협징계위원회에 위원장 1명과 간사 1명을 두되, 위원장과 간사는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 ③ 제1항의 위원을 추천할 때에는 위원과 같은 수의 예비위원을 함께 추천하여야 한다.
- ④ 변호사의 자격을 취득한 날부터 10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은 판사·검사·변호사인 위원 또는 예비위원이 될 수 없다.
- ⑤ 위원과 예비위원의 임기는 각각 2년으로 한다.
- ⑥ 변협징계위원회의 결정은 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⑦ 변협징계위원회의 구성·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한변호사협회가 정한다.

제40조 [법무부 외국법자문사징계위원회의 구성] ① 법무부 외국법자문사징계위원회(이하 “법무부징계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아닌 위원 7명으로 구성하며, 예비위원 7명을 둔다.

② 법무부징계위원회의 위원장은 법무부장관이 되고, 부위원장은 법무부차관이 되며, 위원과 예비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을 법무부장관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이 경우 법무부장관은 외국법자문사인 위원을 위촉하기 곤란한 사정이 있으면 외국변호사의 자격을 가진 사람을 위촉할 수 있다.

1. 법원행정처장이 추천하는 판사 중에서 각 2명
2. 검사 중에서 각 2명
3. 외국법자문사 중에서 각 1명
4. 대한변호사협회의 장이 추천하는 변호사 중에서 각 1명
5. 변호사가 아닌 사람으로서 법과대학 교수 또는 경험과 덕망이 있는 사람 각 1명
- ③ 변협징계위원회의 위원 및 예비위원은 법무부징계위원회의 위원 및 예비위원을 겸할 수 없다.
- ④ 위원과 예비위원의 임기는 각각 2년으로 한다.
- ⑤ 위원장은 법무부징계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고 법무부징계위원회를 대표하며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 ⑥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고, 부위원장도 그 직무를 대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하는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⑦ 법무부징계위원회의 결정은 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⑧ 법무부징계위원회의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사람은 「형법」 제127조 및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신설 2016. 1. 6.)
- ⑨ 제1항부터 제8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법무부징계위원회의 운영이나 징계 절차에 필요한 사항은 법무부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6. 3. 2.)



제41조 [징계위원회의 권한] ① 변협징계위원회는 제37조제2항에 따른 징계 사유에 해당하는 징계 사건을 심의한다.

② 법무부징계위원회는 제37조제1항에 따른 징계 사유에 해당하는 징계사건과 변협징계위원회의 징계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 사건을 심의한다.

제42조 [징계개시의 청구 등] ① 대한변호사협회의 장은 외국법자문사가 제37조제1항에 따른 징계 사유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면 법무부징계위원회에 징계개시를 청구하여야 하고, 제37조제2항에 따른 징계 사유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면 변협징계위원회에 징계개시를 청구하여야 한다. 다만, 징계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년이 지난 때에는 이를 청구하지 못한다.

② 의뢰인이나 의뢰인의 법정대리인·배우자·직계친족·형제자매는 외국법자문사에게 제37조에 따른 징계 사유가 있다고 판단되면 그 사유를 첨부하여 대한변호사협회의 장에게 그 외국법자문사에 대한 징계개시의 청구를 신청할 수 있다.

③ 지방검찰청검사장은 범죄수사 등 검찰 업무의 수행 중 외국법자문사에게 징계 사유가 있는 것을 발견한 때에는 대한변호사협회의 장에게 그 외국법자문사에 대한 징계개시의 청구를 신청하여야 한다.

④ 대한변호사협회의 장은 제2항 및 제3항의 신청에 대하여 징계개시의 청구를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이유를 신청인에게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⑤ 징계개시 신청인의 이의신청에 관하여는 「변호사법」 제97조의5를 준용한다.

제43조 [징계의 결정 기간 등] ① 변협징계위원회는 징계개시의 청구를 받거나 제42조제5항에서 준용하는 「변호사법」 제97조의5제2항에 따라 징계 절차를 개시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징계에 관한 결정을 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그 의결로 6개월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② 법무부징계위원회가 제37조제1항에 따른 징계 사유에 관한 징계개시의 청구를 받거나 변협징계위원회의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을 받은 때에도 제1항과 같다.

제44조 [징계의 집행·절차 등] ① 제36조제1호에 따른 징계는 법무부장관이 집행하고, 제36조제2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징계는 대한변호사협회의 장이 집행한다.

② 제36조제4호에 따른 과태료 결정은 「민사집행법」에 따른 집행력 있는 집행권원과 같은 효력이 있고, 검사의 지휘로 집행한다.

③ 외국법자문사의 징계에 관하여는 「변호사법」 제98조제3항, 제98조의2, 제98조의3, 제98조의4제2항·제3항, 제98조의5제3항·제4항, 제99조, 제100조 및 제101조의2를 준용한다.

제45조 [업무정지명령] ① 법무부장관은 외국법자문사에 대하여 공소(公訴)가 제기되거나 제42조제1항에 따른 징계 절차가 개시되어 그 재판이나 징계 결정의 결과 자격승인취소 또는 등록취소에 이르게 될 가능성이 매우 크고, 그대로 두면 장차 의뢰인이나 공공의 이익을 해칠 구체적인 위험성이 있는 경우에는 법무부징계위원회에 그 외국법자문사의 업무정지에 관한 결정을 청구할 수 있다. 다만, 약식명령이 청구된 경우와 과실범으로 공소제기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법무부장관은 법무부징계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해당 외국법자문사에 대하여 업무정지를 명할 수 있다.

③ 외국법자문사의 업무정지에 관하여는 「변호사법」 제103조부터 제108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준용되는 「변호사법」 해당 조항 중 “변호사”는 “외국법자문사”로 본다.

제 7 장 별 칙

제46조 [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 경우 벌금과 징역은 병과(併科)할 수 있다. (개정 2016. 3. 2.)

1. 외국법자문사 또는 변호사가 아니면서 금품·향응 또는 그 밖의 이익을 받거나 받을 것을 약속하고 또는 제3자에게 금품·향응 또는 그 밖의 이익을 공여(供與)하게 하거나 공여하게 할 것을 약속하고 외국법사무를 취급하거나 알선한 사람. 다만, 제24조의2제1항에 따라 사무를 수행하는 외국법자문사 아닌 외국변호사는 제외한다.

2. 제35조 및 제35조의33에 따라 준용되는 「변호사법」 제33조 또는 제34조를 위반한 사람

3. 금품·향응 또는 그 밖의 이익을 받거나 받을 것을 약속하고 또는 제3자에게 금품·향응 또는 그 밖의 이익을 공여하게 하거나 공여하게 할 것을 약속하고 다음 각 목의 사건에 관하여 감정·대리·중재·화해·청탁·법률상담 또는 법률관계 문서작성, 그 밖의 법률사무를 취급하거나 이러한 행위를 알선한 외국법자문사. 다만, 외국법자문사가 제24조 각 호의 사무를 처리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가. 소송 사건, 비송 사건, 가사 조정 또는 심판 사건

나. 행정심판 또는 심사의 청구나 이의신청, 그 밖에 행정기관에 대한 불복신청 사건

다. 수사기관에서 취급 중인 수사 사건

라. 법령에 따라 설치된 조사기관에서 취급 중인 조사사건

마. 그 밖의 일반 법률사건

제47조 [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 경우 벌금과 징역은 병과할 수 있다. (개정 2016. 3. 2.)

1. 제25조제1항을 위반하여 업무 범위 외의 업무를 수행한 외국법자문사

2. 제30조를 위반하여 비밀을 누설한 사람 및 그 위반 사실을 알고도 이를 이용하여 부정한 이익을 얻은 목적으로 취득·사용한 사람

3. 제34조제1항을 위반하여 변호사를 고용한 사람

4. 제34조제2항 또는 제3항을 위반한 외국법자문사 및 변호사

5.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외국법자문사

가. 외국의 법원 또는 행정기관을 위하여 행하는 문서의 송달과 증거조사를 행한 사람

나. 대한민국에 있는 부동산에 관한 권리, 지식재산권, 광업권, 그 밖에 행정기관에 등기 또는 등록함을 성립요건이나 대항요건으로 하는 권리의 득실변경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사무를 대리하거나 이를 목적으로 하는 문서의 작성을 행한 사람

6. 제35조의26제2항 또는 제3항을 위반한 외국법자문사 및 변호사



제48조 [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 경우 벌금과 징역은 병과할 수 있다. (개정 2016. 3. 2.)

1. 법무부장관이나 대한변호사협회에 외국법자문사의 자격승인 또는 등록에 관하여 거짓의 신청을 하여 자격승인을 받거나 등록을 한 사람
2. 제34조제1항을 위반하여 고용된 변호사
3. 제34조제1항을 위반하여 법무사·변리사·공인회계사·세무사 및 관세사를 고용한 사람
4. 제34조제2항 또는 제3항을 위반한 법무사·변리사·공인회계사·세무사 및 관세사
5. 제35조 및 제35조의33제1항에서 준용되는 「변호사법」 제32조를 위반하여 계쟁권리(係爭權利)를 양수한 사람
6. 외국법자문사가 아니면서 외국법자문사나 외국법자문법률사무소를 표시 또는 기재하거나, 이익을 얻는 목적으로 외국법사무를 취급하는 뜻을 표시 또는 기재한 사람
7. 제35조의3제1항에 따른 합작법무법인의 설립인가에 관하여 법무부장관에게 허위의 확인서를 제출하거나 서류를 조작하는 등의 방법으로 거짓의 신청을 하여 설립인가를 받은 사람
8. 제35조의6제2항을 위반하여 유사 명칭을 사용한 사람
9. 제35조의26제1항을 위반하여 법무사·변리사·공인회계사·세무사 및 관세사를 고용한 사람
10. 제35조의26제2항 또는 제3항을 위반한 법무사·변리사·공인회계사·세무사 및 관세사

제49조 [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 경우 벌금과 징역은 병과할 수 있다. (개정 2016. 3. 2.)

1. 제31조제3항에서 준용되는 「변호사법」 제23조제2항제1호를 위반하여 광고를 한 사람
2. 제34조제1항을 위반하여 고용된 법무사·변리사·공인회계사·세무사 및 관세사
3. 제35조에서 준용되는 「변호사법」 제31조제1항제3호를 위반하거나, 제35조의25제3호를 위반한 사람
4. 제35조의26제1항을 위반하여 고용된 법무사·변리사·공인회계사·세무사 및 관세사
5. 제35조의33제1항에서 준용되는 「변호사법」 제37조제1항을 위반하여 당사자 또는 그 밖의 관계인을 특정한 변호사나 그 사무직원에게 소개·알선 또는 유인한 사람

제50조 [상습범] 상습적으로 제46조의 죄를 지은 사람은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제51조 [외국인의 국외범] 제47조제2호는 대한민국 외에서 죄를 지은 외국인에게도 적용한다. 다만, 행위지(行爲地)의 법률에 따라 범죄를 구성하지 아니하거나 소추(訴追) 또는 형의 집행을 면제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52조 [몰수 또는 추징] 제46조의 죄를 지은 사람이나 그 사정을 아는 제3자가 받은 금품 또는 그 밖의 이익은 몰수한다. 이를 몰수할 수 없을 때에는 그 가액(價額)을 추징한다.

제53조 [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16. 3. 2.)

1. 제15조제3항을 위반한 사람
2. 제21조 또는 제23조제1항을 위반한 외국법자문법률사무소의 대표자



3. 제25조제2항을 위반한 외국법자문사와 그 사용자
4. 제27조제3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을 위반한 외국법자문사, 외국법자문법률사무소의 대표자 또는 합작법무법인
5. 제29조를 위반한 외국법자문사
6. 제35조의28제2항 또는 제3항을 위반한 합작법무법인
-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16. 3. 2.)
1. 제22조를 위반하거나, 제20조제2항에 따라 준용되는 「변호사법」 제22조제2항을 위반한 외국법자문법률사무소의 대표자
- 1의2. 제24조의2제2항을 위반하여 체류한 사람
2. 제33조를 위반하여 법무부장관의 자료 제출 요구에 따르지 아니하거나 거짓 자료를 제출한 외국법자문사, 외국법자문법률사무소의 대표자 또는 합작법무법인
3. 제34조의5제1항을 위반하여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외국법자문법률사무소의 대표자
4. 「공증인법」 제2조 각 호에 따른 증서 작성의 촉탁을 대리한 외국법자문사
5. 제35조에 따라 준용되는 「변호사법」 제28조의2를 위반하여 수임사건의 건수 또는 수임액을 보고하지 아니한 사람
6. 제35조의14제2항에 따라 준용되는 「변호사법」 제22조제2항제1호를 위반하거나, 제35조의24를 위반한 합작법무법인
7. 제35조의30제2항을 위반하여 해산신고를 하지 아니한 사람
8. 제35조의33제1항에서 준용하는 「변호사법」 제28조의2를 위반하여 수임사건의 건수 또는 수임액을 보고하지 아니하거나 같은 법 제35조를 위반하여 사건 유치 목적으로 출입·주재하거나 또는 같은 법 제36조를 위반하여 사건을 소개·알선·유인한 사람 또는 합작법무법인
-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 징수, 이에 대한 불복 등에 관하여는 「변호사법」 제117조제4항을 준용한다. (개정 2017. 12. 12.)

부 칙 <제9524호, 2009. 3. 25.>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법률 제10542호, 2011. 4. 5.>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11년 4월 3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자격승인 신청 수수료에 관한 적용례] 제3조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자격승인을 신청한 자부터 적용한다.



제3조 [설립신청 수수료에 관한 적용례] 제15조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설립신청을 한 자부터 적용한다.

제4조 [등록 취지 통지에 관한 적용례] 제18조제6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등록을 한 자부터 적용한다.

부 칙 <법률 제10629호, 2011. 5. 19.>
(지식재산 기본법)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2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⑮까지 생략

<16> 외국법자문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7조제5호나목 중 “지적재산권”을 “지식재산권”으로 한다.

<17>부터 <22>까지 생략

부 칙 <법률 제11962호, 2013. 7. 30.>
(변리사법)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9조까지 생략

제10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⑤까지 생략

⑥ 외국법자문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4조제3항 중 “특허법인”을 각각 “특허법인·특허법인(유한)”으로 한다.

부 칙 <제13715호, 2016. 1. 6.>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금치산자 등의 결격사유에 관한 경과조치] 제5조제6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같은 개정규정 시행 당시 법률 제10429호 민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2조에 따라 금치산 또는 한정치산 선고의 효력이 유지되는 사람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 칙 <제13953호, 2016. 2. 3.>
(법무사법)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③까지 생략

④ 외국법자문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4조제3항 중 “법무사합동법인”을 각각 “법무사법인·법무사법인(유한)”으로 한다.

제8조 생략

부 칙 <제14056호, 2016. 3. 2.>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1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률의 개정] 변호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의2제1항제3호 중 “법률사무소”를 “법률사무소, 「외국법자문사법」 제2조제9호에 따른 합작법무법인”으로 한다.

제31조제4항제1호 중 “법무법인, 법무법인(유한), 법무조합(이하 이 조에서 “법무법인등”이라 한다)”을 “법무법인, 법무법인(유한), 법무조합 또는 「외국법자문사법」 제2조제9호에 따른 합작법무법인(이하 이 조에서 “법무법인등”이라 한다)”으로 한다.

제31조의2제1항 중 “법무법인·법무법인(유한) 또는 법무조합의 담당변호사로 지정하는 경우”를 “법무법인·법무법인(유한) 또는 법무조합의 담당변호사로 지정하는 경우나 「외국법자문사법」 제35조의20에 따라 합작법무법인의 담당변호사로 지정하는 경우”로 한다.

제89조의4제2항 중 “법무법인·법무법인(유한) 또는 법무조합의 담당변호사로 지정된 경우”를 “법무법인·법무법인(유한) 또는 법무조합의 담당변호사로 지정된 경우나 「외국법자문사법」 제35조의20에 따라 합작법무법인의 담당변호사로 지정된 경우”로 한다.

제89조의5제1항 중 “법무법인·법무법인(유한)·법무조합의 담당변호사”를 “법무법인·법무법인(유한) 또는 법무조합의 담당변호사나 「외국법자문사법」 제35조의20에 따른 합작법무법인의 담당변호사”로 한다.

제89조의6제1항 중 “법무법인·법무법인(유한) 또는 법무조합(이하 이 조에서 “법무법인등”이라 한다)”을 “법무법인·법무법인(유한)·법무조합 또는 「외국법자문사법」 제2조제9호에 따른 합작법무법인(이하 이 조에서 “법무법인등”이라 한다)”로 한다.



부 칙 <제15153호, 2017. 12. 12.>
(변호사법)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률의 개정] 외국법자문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3조제3항 중 “과태료의 부과, 징수, 이에 대한 불복 등”을 “과태료의 부과, 징수 등”으로, “「변호사법」 제117조제4항부터 제7항까지의 규정”을 “「변호사법」 제117조제4항”으로 한다.



외국법자문사법 시행령

2009. 8. 5.

대통령령 제21661호

개정 2016. 6. 28. 대통령령 제27261호

제1조 [목적] 이 영은 「외국법자문사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자격승인의 신청] 「외국법자문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에 따라 외국법자문사의 자격승인(이하 “자격승인”이라 한다)을 신청하는 외국변호사는 법무부장관에게 별지 제1호 서식의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직접 제출하여야 한다.

1. 여권, 외국인등록증명서 또는 그 밖에 신분을 증명하는 서류의 사본
2. 이력서
3. 법 제6조제1항제2호·제3호·제5호 및 제6호의 요건을 증명하는 서류
4. 업무수행과 관련된 손해를 배상할 능력을 증명하는 서류
5. 별지 제2호 서식의 서약서
6. 제3호 및 제4호의 사항 등을 적은 법무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서식에 따른 진술서
7. 그 밖의 참고 서류

제3조 [서약 내용의 확인] 자격승인을 신청하는 외국변호사는 제2조의 신청서와 증빙서류를 제출할 때 법무부장관이 지명한 직원 앞에서 별지 제2호 서식의 서약서를 읽고 이에 서명하여야 한다.

제4조 [직무 경력에의 산입] 외국법자문사의 자격승인을 받기 위하여 법 제4조제1항의 직무 경력에 산입할 수 있는 원자격국의 법령에 관한 법률사무 등의 수행 기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 제4조제2항에 따른 외국에서의 법률사무 수행 기간: 3년까지
2. 법 제4조제3항에 따른 대한민국에서의 업무수행 기간: 2년까지

제5조 [예비심사] 자격승인을 신청하려는 외국변호사는 신청 전에 자격승인 신청서와 그 증빙서류 또는 그에 준하는 서류를 법무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예비심사를 요청할 수 있다.

제6조 [수수료] 법 제11조제5항에 따라 외국법자문사의 등록 및 등록의 갱신을 신청할 때 신청인이 내야 하는 수수료는 대한변호사협회의 장이 법무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정한다.

제7조 [외국법자문법률사무소의 설립인가신청] ① 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외국법자문법률사무소의 설립인가를 받으려면 별지 제3호 서식의 인가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법무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증빙서류는 원본(原本)이거나 인증된 사본(寫本)이어야 하고, 한글로



작성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공증된 한글 번역본을 첨부하여야 한다.

1. 신청인이 외국법자문사임을 증명하는 서류
2. 법 제16조제1항 각 호의 요건을 증명하는 서류
3. 그 밖의 참고 서류

② 법무부장관은 제1항의 설립인가 신청서류의 기재사항에 흠결이 있거나 증빙서류가 미비되어 있으면 신청인에게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③ 법무부장관은 법 제16조에 따라 외국법자문법률사무소 설립인가 심사를 할 때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관련 사실 및 증거 조사를 하거나 신청인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제8조 [보험 또는 공제기금 가입] ① 외국법자문법률사무소의 구성원은 법 제17조제1항의 설립인가 고시가 있었던 날부터 1개월 이내에 법 제21조에 따라 보험 또는 대한변호사협회가 운영하는 공제기금에 가입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보험 또는 공제기금의 보상한도액은 보상 청구 건당 1억원 이상으로 한다.

③ 외국법자문법률사무소의 대표자는 그 구성원이 제1항에 따라 가입한 보험 또는 공제기금의 연간 보상한도액의 합계액을 구성원 및 구성원이 아닌 소속 외국법자문사의 총수에 1억원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구성원 및 구성원이 아닌 소속 외국법자문사의 총수가 3명 미만인 경우에는 3억원으로 한다) 또는 20억원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④ 외국법자문법률사무소의 대표자는 제3항에 따른 보상한도와 관련하여 남은 보상한도액을 3억원 이상으로 유지하여야 하며, 남은 보상한도액이 3억원 미만이 된 경우에는 그 사유 발생일부터 1개월 이내에 3억원 이상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⑤ 외국법자문법률사무소의 구성원은 제1항에 따라 가입한 보험 또는 공제기금이 기간 만료 등의 사유로 종료될 때에는 종료일 전까지 다시 보험 또는 공제기금에 가입하여야 한다.

⑥ 외국법자문법률사무소의 구성원은 제1항에 따라 보험 또는 공제기금에 가입하는 경우 보상 청구 건당 1천만원 이하의 범위에서 자기부담금을 설정할 수 있다.

제9조 [손해배상책임에 관한 명시] ① 법 제21조제2항에 따라 외국법자문법률사무소의 대표자는 수입계약서와 광고물(구성원이나 소속 외국법자문사의 변동을 내용으로 하는 광고물은 제외한다)에 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광고물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광고매체를 통하여 외국법자문법률사무소의 외국법자문사 및 그 업무에 관한 정보와 자료를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1. 「출판문화산업 진흥법」 제2조에 따른 간행물
2. 「방송법」 제2조에 따른 방송

제10조 [합작법무법인의 설립인가신청 등] ① 법 제35조의3제1항 전단에 따라 합작법무법인의 설립인가를 받으려는 합작참여자는 합작법무법인 설립인가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증명서류를 첨부하여 주사무소 소재지의 지방변호사회와 대한변호사협회를 거쳐 법무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증명서류는 원본이거나 인증된 사본이어야 하고, 한글로 작성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공증된 한글 번역본을 첨부하여야 한다.



1. 정관
 2. 합작법무법인 설립에 관한 합작참여자들의 합의 또는 결의를 증명하는 서류
 3. 법 제35조의8제1항 각 호 및 같은 조 제2항 각 호의 요건을 증명하는 서류
 4. 그 밖의 참고 서류
- ② 법무부장관은 제1항의 합작법무법인 설립인가신청서의 기재사항에 흠결이 있거나 증명서류가 미비하면 신청인에게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 ③ 법무부장관은 법 제35조의3제1항 전단에 따라 합작법무법인의 설립인가를 심사할 때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사실 및 증거 조사를 하거나 신청인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 ④ 법무부장관은 법 제35조의3제1항 전단에 따라 합작법무법인의 설립을 인가하였을 때에는 합작법무법인 인가대장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고, 합작법무법인 설립인가증을 신청인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1. 인가번호 및 인가연월일
 2. 합작법무법인의 명칭
 3. 주사무소 및 분사무소의 소재지
 4. 선임변호사(법 제35조의11제1항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변호사를 말한다. 이하 같다)와 선임외국법자문사(법 제35조의11제1항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외국법자문사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성명 및 주소
 5. 합작참여자에 관한 사항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
- ⑤ 법무부장관은 제4항에 따라 신청인에게 합작법무법인 설립인가증을 발급한 경우에는 법 제35조의31에 따라 주사무소 소재지의 지방변호사회와 대한변호사협회에 통지하여야 한다.
- ⑥ 합작법무법인의 설립인가를 신청하려는 합작참여자는 신청 전에 합작법무법인 설립인가신청서와 그 증명서류 또는 그에 상당하는 서류를 법무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예비심사를 요청할 수 있다.
- (본조신설 2016. 6. 28.)

제11조 [합작법무법인의 정관변경 인가신청] ① 법 제35조의3제1항 후단에 따라 합작법무법인 정관변경의 인가를 받으려는 합작참여자는 정관변경 인가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증명서류를 첨부하여 주사무소 소재지의 지방변호사회와 대한변호사협회를 거쳐 법무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정관변경 이유서
 2. 정관변경안
 3. 정관변경에 관한 합작참여자들의 합의 또는 결의를 증명하는 서류
- ② 법무부장관은 법 제35조의3제1항 후단에 따라 합작법무법인의 정관변경을 인가하였을 때에는 합작법무법인 인가대장에 그 사실을 적고, 대한변호사협회에 통지하여야 한다.
- ③ 제1항에 따른 합작법무법인의 정관변경 절차에 관하여는 제10조제2항 및 제3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설립인가신청서”는 “정관변경 인가신청서”로, “설립인가”는 “정관변경 인가”로 본다.
- (본조신설 2016. 6. 28.)

제12조 [합작법무법인의 설립인가 갱신신청] ① 법 제35조의3제4항에 따라 설립인가의 갱신을 받으려는 합작법무법인은 설립인가 갱신신청서에 제10조제1항제3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주사무소 소재지의 지방변호사회와 대한변호사협회를 거쳐 법무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법무부장관은 제1항의 신청에 따라 합작법무법인의 설립인가를 갱신하였을 때에는 합작법무법인 인가대장에 그 사실을 적고, 주사무소 소재지의 지방변호사회와 대한변호사협회에 통지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6. 6. 28.)

제13조 [합작법무법인의 등기] ① 합작법무법인의 등기는 주사무소 및 분사무소 소재지를 관할하는 등기소에서 한다.

② 합작법무법인의 설립등기는 합작참여자 모두가 공동으로 신청하여야 하며, 그 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정관

2. 합작법무법인 설립인가증

③ 합작법무법인의 등기에 관하여 법 및 이 영에서 정한 사항 외에는 「상업등기법」을 준용한다.

④ 합작법무법인은 설립등기일부터 7일 이내에 합작법무법인 설립등기 보고서(전자문서로 된 보고서를 포함한다)를 법무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법무부장관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를 확인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6. 6. 28.)

제14조 [경미한 사유] ① 법 제35조의8제1항제4호가목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를 말한다.

1. 국내 합작참여자가 「변호사법」에 따른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징계나 벌금 300만원 이하의 형사처벌을 받았을 것

가. 1년 이하의 정직에 상당하는 징계

나. 과태료

다. 견책

2. 제1호에 따른 징계 또는 형사처벌의 원인이 된 행위의 내용 및 동기, 수단과 결과, 행위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합작법무법인에 참여하여도 문제가 없다고 법무부장관이 인정하였을 것

② 법 제35조의8제1항제4호나목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를 말한다.

1. 국내 합작참여자의 대표가 「변호사법」에 따른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징계를 받았을 것

가. 1년 이하의 정직

나. 과태료

다. 견책

2. 제1호에 따른 징계의 원인이 된 행위의 내용 및 동기, 수단과 결과, 행위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합작법무법인에 참여하여도 문제가 없다고 법무부장관이 인정하였을 것

③ 법 제35조의8제2항제4호가목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외국 합작참여자가 「변호사법」(법 또는 「변호사법」에 상당하는 외국의 법률을 포함한다)에 따른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상당하는 징계나 형사처벌에 상당하는 처분을 받았을 것

가. 1년 이하의 징역

나. 과태료

다. 견책

2. 제1호에 따른 징계 또는 처분의 원인이 된 행위의 내용 및 동기, 수단과 결과, 행위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합작법무법인에 참여하여도 문제가 없다고 법무부장관이 인정하였을 것

④ 법 제35조의8제2항제4호나목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외국 합작참여자의 대표가 「변호사법」(법 또는 「변호사법」에 상당하는 외국의 법률을 포함한다)에 따른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상당하는 징계나 금고 이상의 형에 상당하는 처분을 받았을 것

가. 1년 이하의 징역

나. 과태료

다. 견책

2. 제1호에 따른 징계 또는 처분의 원인이 된 행위의 내용 및 동기, 수단과 결과, 행위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합작법무법인에 참여하여도 문제가 없다고 법무부장관이 인정하였을 것

(본조신설 2016. 6. 28.)

제15조 [주사무소와 분사무소] ① 법 제35조의15제1항에 따라 합작법무법인이 분사무소를 두는 경우 주사무소에는 선임변호사 및 선임외국법자문사가 각각 그 총 인원의 3분의 1 이상 주재(駐在)하여야 하고, 분사무소에는 선임변호사 및 선임외국법자문사가 각각 1명 이상 주재하여야 한다.

② 법 제35조의15제2항에 따라 분사무소의 설치를 신고할 때에는 그 분사무소에서 직무를 수행할 선임변호사 및 선임외국법자문사를 명시하여야 한다.

③ 분사무소는 특별자치시·시(제주특별자치도의 경우에는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행정시를 말한다)·군·구(자치구를 말한다) 관할구역마다 1개를 둘 수 있다.

④ 분사무소에는 합작법무법인의 분사무소임을 표시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6. 6. 28.)

제16조 [합작법무법인의 보험 또는 공제기금 가입] ① 합작법무법인은 법 제35조의28제2항에 따라 법 제35조의5제1항의 설립등기일부터 1개월 이내에 보험 또는 대한변호사협회가 운영하는 공제기금에 가입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보험 또는 공제기금의 보상한도액은 보상 청구 건당 1억원 이상으로 한다.

③ 합작법무법인은 제1항에 따라 가입한 보험 또는 공제기금의 연간 보상한도액의 합계액을 선임변호사, 선임외국법자문사, 법 제35조의12제1항에 따른 소속변호사(이하 “소속변호사”라 한다) 및 같은 항에 따른 소속외국법자문사(이하 “소속외국법자문사”라 한다)의 총수에 1억원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 또는 20억원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④ 합작법무법인은 제3항에 따른 보상한도와 관련하여 남은 보상한도액을 3억원 이상으로 유지하여



야 하며, 남은 보상한도액이 3억원 미만이 된 경우에는 그 사유 발생일부터 1개월 이내에 3억원 이상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⑤ 합작법무법인은 제1항에 따라 가입한 보험 또는 공제기금이 기간 만료 등의 사유로 종료될 때에는 종료일 전까지 다시 보험 또는 공제기금에 가입하여야 한다.

⑥ 합작법무법인은 제1항에 따라 보험 또는 공제기금에 가입하는 경우 보상 청구 건당 1천만원 이하의 범위에서 자기부담금을 설정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6. 6. 28.)

제17조 [손해배상책임에 관한 명시] ① 합작법무법인은 법 제35조의2제3항에 따라 수입 계약서와 광고물(선임변호사, 선임외국법자문사, 소속변호사 및 소속외국법자문사의 변동을 내용으로 하는 광고물은 제외한다)에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광고물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광고매체를 통하여 합작법무법인의 변호사, 외국법자문사 및 그 업무에 관한 정보와 자료를 제공하는 것으로 한다.

1. 「출판문화산업 진흥법」 제2조에 따른 간행물

2. 「방송법」 제2조에 따른 방송

(본조신설 2016. 6. 28.)

부 칙 <제21661호, 2009. 8. 5.>

이 영은 2009년 9월 26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27261호, 2016. 6. 28.>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1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변호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무법인·법무법인(유한)·법무조합의 담당변호사”를 “법무법인·법무법인(유한)·법무조합의 담당변호사나 「외국법자문사법」 제35조의2제1항에 따른 합작법무법인의 담당변호사”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및 같은 조 제4항 본문 중 “법무법인·법무법인(유한)·법무조합”을 각각 “법무법인·법무법인(유한)·법무조합 또는 「외국법자문사법」 제2조제9호에 따른 합작법무법인”으로 한다.

② 상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4조제5항제2호 각 목 외의 부분 및 같은 호 사목 중 “법률사무소”를 각각 “법률사무소, 합작법무법인”으로 한다.

외국법자문사 자격승인 신청서					사 진 (3cm×4cm)
성 명	(원 어) (한 글) (영 어)			성별	☐ 남 ☐ 여
국 적		생년월일		출생지	
주 소	(원 어) (한 글) (영 어)				
외국 변호사 자격	자격취득국가			외국변호사 명칭	
	자격 취득연월일 년 월 일			(원 어) (한 글) (영 어)	
본인은 위 외국변호사자격에 기초하여 「외국법자문사법」제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따라 외국법자문사 자격승인을 신청하오니 승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법무부장관 귀하 담당자:					

141



서 약 서

Sworn Statement

1. 본인은 「외국법자문사법」 제5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아님을 서약합니다.

I hereby swear that I do not come under any Item of the Article 5 of the Foreign Legal Consultant Act.

2. 본인은 「외국법자문사법」 제6조에 따른 외국법자문사의 자격승인을 받고 같은 법 제10조에 따라 대한변호사협회에 등록한 후 성실히 외국법자문사의 직무를 수행할 것을 서약합니다.

I hereby swear that I will sincerely perform my duty as a Foreign Legal Consultant after registering with the Korean Bar Association as provided in the Article 10 of the Foreign Legal Consultant Act, upon being approved by the Minister of Justice as provided in the Article 6 of the same Act.

년 월 일

이 름
서 명

법 무 부 장 관 귀하

담당자:



뒷면

[참고]

「외국법자문사법」

제5조 (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외국법자문사가 될 수 없다.

1. 국가를 불문하고 금고 이상의 형벌에 해당하는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그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2. 국가를 불문하고 금고 이상의 형벌에 해당하는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이거나 그 기간이 지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3. 국가를 불문하고 금고 이상의 형벌에 해당하는 형의 선고를 유예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4. 국가를 불문하고 공직에서 탄핵으로 파면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하거나, 징계로 해임 이상의 처분을 받은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 국가를 불문하고 「변호사법」 제90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 또는 같은 법 제102조제2항에 따른 처분에 상당하는 처분을 받은 후 그 처분이 실효되지 아니한 사람
6. 금치산자, 한정치산자,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復權)되지 아니한 사람 및 원자격국의 법령에 따라 이와 같이 취급되는 사람

Foreign Legal Consultant Act Article 5 (Grounds for Disqualification) A person falling under any of the following subparagraphs shall be disqualified as a Foreign Legal Consultant:

1. A person, regardless of nationality, who has been sentenced to imprisonment without prison labor or a heavier punishment and for whom five years have yet to elapse after the execution of such sentence was terminated or the exemption from the execution of such sentence was made definite;
2. A person, regardless of nationality, who is in the period of a stay of execution after he/she has been sentenced to the stay of the execution of the imprisonment without prison labor or a heavier punishment or for whom two years have yet to elapse after the lapse of the stay period;
3. A person, regardless of nationality, who is in the period of a stay of sentence after he/she has been sentenced to a stay of imprisonment without prison labor or a heavier punishment;
4. A person, regardless of nationality, for whom five years have yet to elapse after he/she was fired from a public service through an impeachment or three years have yet to elapse after he/she was dismissed or put to a heavier punishment through a disciplinary action;
5. A person, regardless of nationality, who was put to an action equivalent to actions in accordance with Article 90 subparagraph 1 through 3 or Article 102 paragraph ② of the Attorney-at-Law Act and for whom such an action has not been invalidated yet; and
6. A person who is incompetent, quasi-incompetent, or has been declared bankrupt and is not yet rehabilitated, and a person who is treated likewise in accordance with the Acts and subordinate statutes of an original license country



외국법자문법률사무소 설립인가신청서

1. 명칭

2. 사무실

주소:

전화:

FAX:

3. 구성원 인적사항

가. 성명 원어:

한글:

영어:

주거지:

외국변호사 자격취득국가 및 취득년월일:

나. 성명 원어:

한글:

영어:

주거지:

외국변호사 자격취득국가 및 취득년월일:

4. 본점사무소

명칭 원어:

한글:

영어:

소재지:

전화:

FAX:

홈페이지 주소:

설립 시기:

최초 사무소 소재지(본점사무소 소재지와 다른 경우에만 적습니다):

210mm×297mm

[일반용지 60 g/m²(재활용품)]



뒷면

5. 대표자

본인은 (언제, 어느 국가에서) 변호사 자격을 취득한 후 원자격국에서 3년 이상의 기간을 포함하여 총 7년 이상 법률사무를 수행하였으므로 외국법자문법률사무소 대표자가 될 수 있는 자격을 갖추고 있습니다. 이에 「외국법자문사법」 제15조에 따라 위와 같이 본점사무소의 대표사무소로 외국법자문법률사무소를 설립하기 위하여 신청하오니 인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첨 부 서 류

- 1.
- 2.
- 3.

년 월 일

이 름
서 명

법 무 부 장 관 귀하



외국법자문사법 시행규칙

2011. 5. 6.

법무부령 제739호

개정 2016. 6. 28. 법무부령 제869호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외국법자문사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자격승인 및 설립인가 신청 수수료] ① 「외국법자문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4항에 따라 외국법자문사의 자격승인을 신청하는 사람이 내야 하는 수수료는 25만원으로 한다.

② 법 제15조제4항에 따라 외국법자문법률사무소의 설립인가를 신청하는 사람이 내야 하는 수수료는 20만원으로 한다.

제3조 [법무부 외국법자문사징계위원의 자격 기준] 법 제40조제2항에 따라 법무부장관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같은 항 제2호·제3호 및 제5호의 법무부 외국법자문사징계위원회(이하 “법무부징계위원회”라 한다) 위원 및 예비위원으로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법 제40조제2항제2호의 위원 및 예비위원: 「법원조직법」 제42조제1항 각 호의 직(職)에 10년 이상 재직한 검사
2. 법 제40조제2항제3호의 위원 및 예비위원: 외국변호사 자격을 취득하고 원자격국에서 법률사무수행에 필요한 절차를 마친 후, 10년 이상 해당 외국법 관련 사무를 수행한 경력이 있는 외국법자문사 또는 외국변호사 자격을 가진 사람
3. 법 제40조제2항제5호의 위원 및 예비위원: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 가. 법률적 식견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서 법과대학 또는 법학전문대학원 조교수 이상으로 5년 이상 재직한 경력이 있는 사람
 - 나. 일정한 직업을 가지고 10년 이상 사회활동을 한 경력이 있는 사람 또는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에서 추천하는 사람

제3조의2 [직무윤리 사전진단서 작성 등] ① 법 제40조제2항제1호 및 제3호부터 제5호까지에 따른 법무부징계위원회 위원 후보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직무윤리 사전진단서를 작성하여야 하며, 법무부장관은 사전진단 결과에 따라 후보자별로 위원으로서의 직무 적합성 여부를 확인한 후에 위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법무부징계위원회 위원 후보자가 위촉된 경우 해당 위원(이하 “법무부징계위원회 외부 위원”이라 한다)은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직무윤리 확인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6. 6. 28.)



- 제4조 [기피·회피] ① 법 제42조에 따라 법무부징계위원회에 징계개시가 청구된 사람은 법무부징계위원회 위원(예비위원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10조, 제13조 및 제14조에서 같다)에게 공정한 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유가 있으면 그 사유를 서면으로 소명(疎明)하고 기피를 신청할 수 있다.
- ② 제1항에 따른 기피 신청이 있을 때에는 법무부징계위원회의 의결로 해당 위원의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신청을 받은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 ③ 법무부징계위원회 위원은 제1항에 해당하거나 법 제44조제3항에서 준용하는 「변호사법」 제98조의3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안건의 심의를 회피할 수 있다.

제4조의2 [법무부징계위원회 외부 위원의 해촉] 법무부장관은 법무부징계위원회 외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解囑)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본조신설 2016. 6. 28.)

제5조 [예비위원의 직무수행] 법무부징계위원회의 위원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하는 예비위원이 그 직무를 수행한다.

제6조 [법무부징계위원회의 직원] ① 법무부징계위원회에는 징계에 관한 기록, 그 밖에 서류의 작성과 보관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게 하기 위하여 간사 1명과 서기 약간 명을 둔다.

② 간사와 서기는 법무부 소속 공무원 중에서 법무부장관이 임명한다.

제7조 [이의신청의 방식] ① 법 제44조제3항에서 준용하는 「변호사법」 제100조제1항에 따라 이의신청을 하려는 사람은 법무부징계위원회에 이의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이의신청서에는 이의신청의 취지와 이유를 적어야 하고, 그 밖에 필요한 자료를 첨부할 수 있다.

제8조 [의견의 진술 등] 법무부징계위원회는 직권으로 또는 징계개시가 청구된 사람이나 특별변호인의 청구에 따라 당사자, 관계인 또는 관계 기관에 대하여 의견의 진술 또는 심사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제9조 [대한변호사협회의 장의 의견제시] 대한변호사협회의 장은 법무부징계위원회가 법 제44조제3항에서 준용하는 「변호사법」 제100조제2항에 따라 대한변호사협회 외국법자문사징계위원회의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사건을 심의·결정하는 경우 그 결정에 앞서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제10조 [결정서 작성 등] ① 법무부징계위원회가 징계에 관한 의결을 하였을 때에는 결정서를 작성하여야 하며, 결정서에는 주문과 이유를 적고 위원장과 심의에 관여한 위원이 서명 또는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② 간사는 심사 기록을 작성하고 위원장과 함께 서명 또는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③ 징계에 관한 의결 결과는 징계개시가 청구된 사람에게 송달하고, 대한변호사협회의 장 및 징계개



시를 신청한 사람에게 각각 통지하여야 한다.

제11조 [업무정지결정의 청구] 법무부장관은 법 제45조제1항 본문에 따라 외국법자문사의 업무정지에 관한 결정을 청구하려면 피청구인의 인적 사항, 공소 사실 또는 징계혐의 사실, 의뢰인이나 공공의 이익을 침해할 구체적 위험성 등을 업무정지결정 청구서에 적어 법무부징계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2조 [통보] 법무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지체 없이 대법원장, 검찰총장 및 대한변호사협회의 장에게 각각 통보하여야 한다.

1. 법 제45조제2항에 따라 외국법자문사에게 업무정지를 명한 경우
2. 법 제45조제3항에서 준용하는 「변호사법」 제105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업무정지명령을 해제한 경우

제13조 [비밀준수 의무 등] 법무부징계위원회의 위원 또는 위원이었던 사람은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아니 된다.

제14조 [수당] 법무부징계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법무부 소속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 관련되어 출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부 칙 <법무부령 제739호, 2011. 5. 6.>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법무부령 제869호, 2016. 6. 28.>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직무윤리 확인서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에 법무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법무부징계위원회 외부 위원이 작성한 직무윤리 확인서는 제3조의2제2항에 따른 직무윤리 확인서로 본다.



별지 제1호 서식 (신설 2016. 6. 28.)

직무윤리 사전진단서

연번	진 단 내 용	체크사항	
1	법무부 외국법자문사징계위원회 직무와 관련된 사안으로 수사를 받고 있거나 재판·소송 등을 진행 중이다.	예 ()	아니오 ()
2	법무부 외국법자문사징계위원회 직무의 공정한 수행에 지장을 줄 우려가 있는 다른 위원회에서 현재 활동 중이다.	예 ()	아니오 ()
3	법무부 외국법자문사징계위원회 기능 관련 정보나 심의·의결 결과가 본인의 권리·의무 관계의 변동 또는 재산상의 이익 등을 발생시킬 가능성이 크다.	예 ()	아니오 ()

※ ‘예’라고 답변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위원회 직무를 공정하게 수행할 수 있는 타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사유를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 ○ ○ (서명)



별지 제2호 서식 (신설 2016. 6. 28.)

직무윤리 확인서

직위 : 외국법자문사정계위원회 위원

성명 : ○ ○ ○

위 본인은 법무부 외국법자문사정계위원회 위원으로서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위반하지 않겠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 위원에서 해촉될 뿐 아니라 그 밖에 관련 법령에 따른 책임을 질 것을 서약합니다.

1. 법무부 외국법자문사정계위원회의 비밀에 해당하는 정보·문서·자료 또는 물건을 다른 사람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거나 법무부 외국법자문사정계위원회의 업무 수행 외의 목적을 위하여 이용하지 않을 것
2. 법무부 외국법자문사정계위원회의 직무와 관련하여 부동산·주식 등 재산상 이득을 취하는 행위를 하지 않을 것
3. 법무부 외국법자문사정계위원회의 직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취득한 정보를 허가되지 않은 방법으로 사적인 연구 등에 활용하는 행위를 하지 않을 것
4. 법무부 외국법자문사정계위원회의 직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본인이나 가족, 본인이 속한 단체 및 기관 등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안건을 심의하는 경우에는 「외국법자문사법 시행규칙」 제4조제3항에 따라 회피할 것
5. 법무부 외국법자문사정계위원회의 직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업무와 관련하여 부당하게 편의·향응·금품 등을 수수(收受)하는 행위 또는 청탁·알선 등을 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을 것
6. 그 밖에 법무부 외국법자문사정계위원회의 직무와 관련하여 부당한 이득을 취하거나 공공의 이익에 반하는 행위를 하지 않을 것

년 월 일

○ ○ ○ (서명)



회 칙





회 칙

대한변호사협회 회칙

1952. 8. 29. 제정인가	1963. 9. 16. 개정인가
1970. 10. 7. 개정인가	1974. 2. 12. 개정인가
1983. 2. 8. 전문개정인가	
1990. 2. 24. 개정인가	1993. 6. 5. 개정인가
1995. 10. 10. 개정인가	1996. 6. 28. 개정인가
1998. 6. 23. 개정인가	2000. 7. 19. 개정인가
2006. 2. 20. 개정인가	2007. 8. 6. 개정인가
2009. 3. 31. 개정인가	2009. 11. 30. 개정인가
2010. 3. 3. 개정인가	2011. 1. 7. 개정인가
2012. 1. 27. 개정인가	2012. 11. 5. 개정인가
2014. 3. 12. 개정인가	2014. 10. 29. 개정인가
2016. 3. 14. 개정인가	2017. 4. 12. 개정인가
2018. 12. 28. 개정인가	2019. 5. 28. 개정인가
2021. 7. 21. 개정인가	2022. 9. 28. 개정인가
2023. 4. 28. 개정인가	2023. 6. 19. 개정인가
2024. 7. 10. 개정인가	2025. 2. 13. 개정인가

제 1 장 총 칙

제1조 [명칭] 이회는 변호사법(이하 “법”이라 한다)에 의하여 설립되는 법인으로서 대한변호사협회라 한다.

제2조 [목적] 이회는 다음 사항을 그 설립목적으로 한다.

1. 기본적 인권의 옹호와 민주적 기본질서의 확립
2. 준법정신의 양양과 법률지식의 보급
3. 법률문화의 창달과 국제적 교류
4. 법제도의 개선과 법률사무의 쇄신
5. 법률구조사업의 수행과 사법복지의 증진
6. 변호사의 품위보전과 자질향상
7. 변호사·법무법인·법무법인(유한)·법무조합·공증인가합동법률사무소 및 지방변호사회의 지도와 감독 (개정 2006. 2. 20.)
8. 외국법자문사의 품위보전, 자질향상 및 외국법자문사·외국법자문사법률사무소의 지도와 감독 (신설 2010. 3. 3.)

제3조 [구성] ① 이회는 법에 의하여 설립되는 지방변호사회로 구성한다.

② 지방변호사회의 회원은 당연히 이회의 회원이 된다.

제4조 [소재지] 이회는 서울특별시에 둔다.



제5조 [의견발표와 건의] ① 이회는 법령의 제정과 폐폐, 법제도의 운영과 개선 기타 모든 분야에 걸쳐 제2조에 정한 설립목적에 비추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의견을 발표하거나 건의할 수 있다.

② 지방변호사회는 그 지역에 국한되는 문제에 관하여 제1항의 의견발표와 건의를 할 수 있다.

제6조 [회지의 간행] ① 이회는 설립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정기적으로 회지를 간행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사항은 회지에 게재하여야 한다.

1. <삭제> (2016. 3. 14.)
2. <삭제> (2016. 3. 14.)
3. 이회 및 지방변호사회의 중요 회무에 관한 사항

제6조의2 [신문의 간행] ① 이회는 설립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정기적으로 신문을 간행한다.

② 신문에는 법조회고, 논단, 판례 평석, 이회 및 회원의 동정 및 기타 법조와 관련된 내용 등을 게재한다.

③ 신문의 발간과 관련한 세부적인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00. 7. 19.)

제 2 장 회 원

제7조 [회원의 종류] ① 이회 회원의 종류는 단체회원, 법인회원, 개인회원 및 외국회원으로 한다.

② 단체회원은 지방변호사회로 한다.

③ 법인회원은 법무법인·법무법인(유한)·법무조합 및 공증인가합동법률사무소·합작법무법인으로 한다. (개정 2023. 4. 28.)

④ 개인회원은 개업신고를 한 변호사로 한다.

⑤ 외국회원은 외국법자문사로 한다. (개정 2014. 3. 12.)

제8조 [회원의 권리] ① 개인회원은 이회칙 또는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임원 및 대의원 선거의 선거권 및 피선거권을 가진다. (개정 2016. 3. 14.)

② 모든 회원은 이회의 운영에 관하여 협회장에게 의견을 진술하고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을 건의할 수 있다.

③ 모든 회원은 규칙 또는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회의 시설을 이용할 수 있다.

제8조의2 [피선거권의 제한] ① 제8조 제1항에 따라 선거권이 있는 회원으로서 선거일을 기준으로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협회장, 감사, 대의원, 대한변호사협회 징계위원회 징계위원 등 선출직의 피선거권이 없다. (개정 2019. 5. 28.)

1. 등록취소 후 재등록한 회원의 경우는 재등록을 한 날부터 2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개정 2019. 5. 28.)



2. 변호사법에 의한 업무정지명령을 받고 그 기간 중에 있는 자

3. 이 회 선거관리위원회 위원 (개정 2025. 2. 13.)

② 정당의 당적을 가진 자는 협회장이 될 수 없다.

③ 협회장, 감사, 대의원, 대한변호사협회 징계위원회 징계위원 등 선출직에 대한 피선거권의 제한은 오직 회칙을 통해서만 가능하다. (개정 2019. 5. 28.)

④ <삭제> (2019. 5. 28.)

(본조신설 2016. 3. 14.)

제9조 [회원의 의무] ① 모든 회원은 이 회의 회칙, 규칙, 규정 및 결의를 준수하여야 하며, 이 회로부터 지정 또는 위촉받은 사항을 신속·정확하게 처리하여야 한다.

② 모든 회원은 회칙, 규칙 또는 총회의 의결에 의하여 부과한 분담금, 특별회비 및 등록료 등을 납부하여야 한다.

③ 모든 회원은 이 회가 지정한 업무를 성실하게 처리하고, 이 회의 운영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④ 개인회원, 법인회원은 법률사건 또는 법률사무에 관한 수임장부를 작성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개정 2010. 3. 3.)

⑤ 개인회원이나 법인회원은 재판계속 중인 사건 및 수사 중인 형사사건(내사 중인 사건을 포함한다)에 관하여 변호 또는 대리하고자 하는 경우 법원 또는 수사기관에 변호인선임서 또는 위임장 등을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07. 8. 6.)

⑥ 개인회원이나 법인회원은 법률사건 또는 법률사무에 관한 변호인선임서나 위임장을 제출할 때에는 소속 지방변호사회를 경유하여야 한다. (신설 2000. 7. 19.)

⑦ 외국회원은 이 회의 회원임을 표시할 경우 이 회의 “외국회원(foreign member)”임을 부기하여야 하고, 달리 변호사 또는 개인회원으로 오인을 일으킬 수 있는 어떠한 표시도 사용할 수 없다. (신설 2010. 3. 3.)

제9조의2 [공익활동 참가 등] ① 개인회원은 연간 일정 시간 이상 공익활동에 종사하여야 한다.

② 개인회원은 법령에 의하여 공공기관, 이 회 또는 소속 지방변호사회가 지정한 업무를 처리하여야 한다.

③ 공익활동의 범위와 시행방법 등은 규정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00. 7. 19.)

제10조 [준회원] ① 개업신고를 하지 않았거나 휴업신고를 한 변호사는 이 회의 준회원이 된다.

② 준회원에 대하여는 회원의 권리·의무와 변호사의 지도·감독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 3 장 총 회

제11조 [설치 및 구성] ① 이 회의 최고결기기관으로서 총회를 둔다.

② 총회는 지방변호사회 회장, 지방변호사회 회장이 지명하는 소속 지방변호사회 부회장 중 1인 및 회원들의 직접 무기명 투표로 선출되는 선출직 대의원으로 구성하며, 대의원 총수는 400인 이상 500인 이내로 한다. 그 중 선출직 대의원은 이사회 결의로 일정 회원 수 당 1인의 비율로 정하되, 선출직 대의원 중 8할은 각 지방변호사회 소속 회원 수 비율로 비례 배정하고, 나머지 2할은 각 지방변호사회에 균등하게 할당 배정한다. 다만, 선출직 대의원의 비례 및 균등 배정을 위한 계산 과정에서 발생하는 단수로 인하여 위 대의원 총수와 비례 및 균등 배정 대의원의 비율에 관한 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결과에 이르더라도 그 오차범위가 3% 이하일 경우에는 위 기준에 적합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8. 12. 28.)

③ 대의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그 시기와 종기는 정기총회일을 기준으로 한다. 이 회의는 대의원의 임기가 만료되기 20일 전까지 후임대의원을 선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3. 4. 28.)

④ 제2항에 따라 배정된 수의 대의원이 선출되지 못한 경우 미선출 지역을 관할하는 지방변호사회 회장이 대의원 선출 기한 경과 후 10일 이내에 대의원을 지명하여 이 회의에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서울지방변호사회의 미선출 대의원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지명한다. (개정 2018. 12. 28.)

1. 협회장 당선자 및 서울지방변호사회 회장이 동일한 비율로 대의원을 지명한다.
2. 제1호에 따라 대의원을 지명한 후 남는 미선출 대의원은 서울지방변호사회 회장이 지명한다.
3. 미선출 대의원 수가 1인인 경우에는 서울지방변호사회 회장이 지명한다.

⑤ 대의원 선출 및 구성에 관한 구체적인 내용은 이 회의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2. 1. 27.)

제11조의2 [총회 사무국] ① 총회의 일반사무 처리 및 독립적인 총회 예산운용을 위하여 의장 산하에 총회 사무국을 둔다.

② 총회 사무국에 사무총장과 필요한 직원을 두고, 사무총장은 총회 간사가 겸직한다.

③ 협회는 총회 운영을 위한 총회 사무국의 업무협조요청에 성실히 응해야 한다.

④ 총회 사무국의 직제와 정원은 규칙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9. 5. 28.)

제11조의3 [예산결산심사위원회] ① 이 회의 예산 및 결산 승인에 대한 총회업무를 보좌하기 위하여 예산결산심사위원회를 둔다.

② 예산결산심사위원은 총회에서 대의원 중 선임하고, 위원장은 예산결산심사위원 중 호선한다.

③ 재무이사는 예산 및 결산 승인을 위한 총회 소집 1주전 까지 예산결산심사위원회에 예산 및 결산 승인에 대한 내용을 보고하여야 한다.

④ 예산 및 결산 승인을 위한 총회 시 예산결산심사위원장은 심사내용을 공표하고, 적격 및 부적격 의견을 표명한다.

⑤ 예산결산심사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해 기타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9. 5. 28.)

제11조의4 [특별위원회] ① 총회 업무를 보좌하고, 이 회의 업무에 대한 자문을 위하여 총회 의장은



대의원으로 구성된 특별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다.

② 특별위원회는 의장이 지명한 대의원으로 구성된다.

③ 특별위원회 결의 사항에 따라 의장은 이 회 업무에 대한 권고 의견을 표명할 수 있다.

④ 기타 특별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해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9. 5. 28.)

제12조 [종류 및 소집] ① 총회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한다.

② 정기회는 매년 2월 중에 의장이 소집한다.

③ 임시회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의장이 소집한다.

1. 총회 구성원의 3분의 1 이상이 회의의 목적사항과 소집의 이유를 기재한 서면을 의장에게 제출하고 총회의 소집을 요구한 때

2. 협회장이 이사회 의결을 거쳐 회의의 목적사항을 정하여 총회의 소집을 요구한 때

3. 전국지방변호사회장협의회 구성원의 3분의 2 이상이 회의의 목적사항과 소집의 이유를 기재한 서면을 의장에게 제출하고 총회의 소집을 요구한 때(신설 2018. 12. 28.)

④ 제3항의 경우 의장은 그 요구가 있는 날로부터 2주일 내에 총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다만, 의장이 그때까지 총회를 소집하지 아니할 때에는 그 소집을 요구한 자가 소집할 수 있다.

⑤ 총회를 소집할 때에는 총회의 일시, 장소, 회의의 목적사항을 명시하여 개회 1주일 전에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

제13조 [의결사항] 총회는 다음 사항을 의결한다.

1. 회칙 및 규칙의 제정 또는 개정에 관한 사항

2. 예산 및 결산의 승인에 관한 사항

3. 협회장을 제외한 임원의 선임에 관한 사항 (개정 2012. 1. 27.)

4. 법령, 회칙 또는 규칙에 의하여 총회의 의결을 받아야 할 사항

4의2. 변호사징계위원회 위원 및 예비위원의 선임에 관한 사항

4의3. 등록심사위원회의 위원 및 예비위원의 선임에 관한 사항

4의4. 외국법자문사등록심사위원회의 위원 및 예비위원의 선임에 관한 사항 (신설 2010. 3. 3.)

5. 기타 협회장이 이사회 의결을 거쳐 부의한 사항

제14조 [정족수] ① 총회는 재적구성원의 과반수 출석으로 성립한다.

② 총회는 이 회칙에서 달리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적구성원의 과반수 출석과 출석구성원의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가부동수인 때에는 의장이 결정권을 가진다.

제15조 [의장 및 부의장] ① 대의원선출 후 최초로 소집되는 총회에서는 의장 및 부의장 각 1인을 구성원 중에서 선출하여야 한다.

② 의장은 총회를 소집하고, 총회의 질서를 유지하며 의사를 진행한다.

③ 의장이 사고가 있거나 위임한 때에는 부의장이 의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다만, 의장 및 부의장이 선출되기까지의 의장의 직무는 협회장이 대행한다.

④ 의장 및 부의장의 임기는 대의원의 임기와 같다. 다만, 총회 구성원의 자격을 상실한 때에



는 그 임기에 불구하고 퇴임한 것으로 본다.

제16조 [회의의 공개와 발언] ① 총회의 회의는 공개한다. 다만, 총회가 달리 의결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② 협회장, 부협회장, 상임이사 및 감사는 총회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개정 1990. 2. 24.)

③ 총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임원으로 하여금 총회에 출석하여 발언하게 할 수 있다.

④ 외국회원은 예산 또는 결산 의안 중 직접 외국회원에 관한 사항 및 외국법자문사에 관한 회칙, 회규의 제정 또는 개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는 이 회가 정하는 바에 따라 총회에 서면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신설 2010. 3. 3.)

제17조 [의사록] ① 총회의 의사에 관하여는 의사록을 작성하고, 의장 및 총회가 지명한 2인 이상의 구성원이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의사록은 다음 총회에 보고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 4 장 이 사 회

제18조 [설치 및 구성] ① 이 회의 회무에 관한 중요 사항을 의결하기 위하여 이사회를 둔다.

② 이사회는 협회장, 부협회장, 상임이사 및 이사로 구성한다.

제19조 [종류 및 소집] ① 이사회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한다.

② 정기회는 매 3개월마다 협회장이 소집한다.

③ 임시회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협회장이 소집한다.

1. 이사회 구성원 3분의 1 이상이 회의의 목적사항과 소집의 이유를 기재한 서면을 협회장에게 제출하고 이사회의 소집을 요구한 때

2. 협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

④ 제3항제1호의 경우 협회장은 그 요구가 있는 날로부터 1주일 이내에 이사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제20조 [의결사항] 이사회는 다음 사항을 의결한다.

1. 규정의 제정 및 개정에 관한 사항

2. 사업계획의 승인에 관한 사항

3. <삭제> (1996. 6. 28.)

4. 제5조에 의한 의견발표 또는 건의에 관한 중요 사항

5. 법무부변호사징계위원회의 위원과 예비위원의 추천 승인에 관한 사항

5의2. 조사위원회의 위원선임에 관한 사항

5의3. 법무부외국법자문사징계위원회의 위원과 예비위원의 추천 승인에 관한 사항 (신설 2010. 3. 3.)

6. 법령, 회칙, 규칙 또는 규정에 의하여 이사회의 의결을 받아야 할 사항

7. 총회가 위임한 사항



8. 총회의 소집과 총회에 부의할 의안에 관한 사항
9. 기타 협회장이 부의한 회 운영에 관한 중요 사항

제21조 [의장 및 부의장] 이사회의 의장은 협회장이 되고 부의장은 부협회장이 된다.

제22조 [준용규정] 제12조제5항, 제14조, 제15조제2항, 제3항, 제16조제2항 및 제17조의 규정은 이사회에 준용한다.

제 5 장 임 원

제23조 [종류] 이 회에는 다음의 임원을 둔다.

1. 협 회 장 1인
2. 부협회장 5인 이상 15인 이내 (개정 2023. 6. 19.)
3. 상임이사 25인 이내 (개정 2023. 6. 19.)
4. 이 사 50인 이내
5. 감 사 3인 이내 (개정 2012. 1. 27.)

제24조 [선임] ① 협회장은 회원의 직접 무기명 비밀투표로 선출하며, 유효 득표의 다수 득표자를 당선자로 한다. (개정 2022. 9. 28.)

② <삭제> (2022. 9. 28.)

③ 부협회장 및 상임이사는 협회장이 추천한 자 중에서 총회가 선임한다.

④ 이사는 협회장이 추천하는 자중에서 총회가 선임하되, 정원의 2분의 1은 협회장 임기가 시작 되는 정기총회에서, 2분의 1은 임기 두 번째 정기총회에서 선임한다. 단, 협회장은 전체 이사들 중에서 각 지방변호사회 소속 회원이 각 최소 1인 이상이 될 수 있도록 추천하여야 한다.

(개정 2023. 4. 28.)

⑤ 감사는 총회에서 대의원의 직접 무기명투표로 선출한다. (개정 2012. 1. 27.)

⑥ 임원선임을 위한 투표권은 이를 대리인에 의하여 행사하지 못한다. (개정 2012. 1. 27.)

제24조의2 [협회장선거 방법] 협회장 선거는 선거관리위원회가 정하는 바에 따라 투표용지를 이용한 현장투표 또는 정보·통신기술을 이용한 기기 및 운용체제를 사용한 전자투표 방법으로 실시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9. 5. 28.)

제25조 [보선] ① 임원 중 결원이 생긴 때에는 지체 없이 그 후임자를 선임하여야 한다. 다만, 부협회장 2인, 감사 1인, 상임이사 및 이사 정원의 4분의 1 이내에서 결원이 생긴 때에는 그 후임자를 선임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협회장 이외의 임원 중 결원이 생긴 때에는 그 후임자를 이사회에서 선임할 수 있다. (신설 2000. 7. 19.)



제26조 [임기] ① 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그 시기와 종기는 정기총회일을 기준으로 한다.

(개정 2023. 4. 28.)

② 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 보선된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③ 임기가 만료된 임원은 후임자가 취임할 때까지 계속하여 그 직무를 행한다.

제27조 [직무] ① 협회장은 이 회를 대표하고, 회무를 통할한다. 협회장은 지방변호사회 회장을 겸하지 못하며, 재임기간 중 정당의 당적을 가지지 못한다.

② 부협회장은 협회장을 보좌하고, 협회장이 사고가 있거나 탄핵을 당한 때에는 미리 정한 순서에 따라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19. 5. 28.)

③ 상임이사는 협회장을 보좌하여 회무를 처리한다. 다만, 상임이사는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담별로 회무를 분담 처리할 수 있다.

④ 이사는 이사회 구성원으로서 회무에 관한 중요 사항을 심의·의결하고 이사회 또는 협회장으로부터 위임받은 회무를 처리한다.

⑤ 감사는 독립하여 이 회의 재정 및 업무집행상황을 감사하고 그 결과를 총회에 보고한다. (개정 2014. 10. 29.)

제27조의2 [선거관리위원회 등] ① 협회장 및 기타 임원, 대의원의 선거 및 선출에 관한 사무를 담당하기 위하여 이 회에 선거관리위원회를 둔다.

② 선거관리위원회 및 임원 선거에 관한 절차, 선거운동 등 기타 필요한 사항은 규칙 또는 규정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2. 1. 27.)

제27조의3 [감사위원회] ① 이회는 감사의 업무를 보좌하기 위하여 감사위원회를 둔다.

② 감사위원회는 감사 및 감사가 각 1인씩 추천한 감사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감사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8. 12. 28.)

제27조의4 [탄핵] ① 협회장이 직무집행을 함에 있어 법령이나 회칙을 위반한때 총회는 협회장의 탄핵을 의결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탄핵은 대의원 재적 과반의 발의가 있어야 하며, 그 의결은 대의원 재적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③ 탄핵 의결을 받은 자는 즉시 협회장에서 파면되고, 60일 이내에 협회장 보궐선거를 실시하여야 한다.

④ 탄핵으로 인한 협회장 보궐선거로 당선된 자는 협회장으로서 새로이 3년의 임기를 수행한다. (개정 2023. 4. 28.)

⑤ 탄핵으로 인한 협회장 보궐선거로 당선된 자는 감사를 제외한 탄핵 의결시점의 임원을 해임하고 제24조의 절차에 따라 새로운 임원을 선임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9. 5. 28.)



제 6 장 상임이사회, 위원회 및 법제연구원 (2016. 3. 14. 장 제목 개정)

제28조 [상임이사회] ① 이 회에 회무집행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상임이사회를 둔다.

② 상임이사회는 협회장, 부협회장 및 상임이사로 구성한다.

③ 상임이사회는 매주 1회 정기적으로 소집한다. 다만, 협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언제든지 소집할 수 있다.

제29조 [상임이사회의 기능] 상임이사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한다.

1. 총회 및 이사회의 의결을 집행하기 위한 사항
2. 사업계획의 집행을 위한 세부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3. 예산의 실행을 위한 실행예산의 편성에 관한 사항
- 3의2. 징계개시청구 및 조사위원회에 대한 징계혐의사건의 조사회부에 관한 사항
- 3의3. 변호사징계위원회 위원 및 예비위원 위촉이나 조사위원회 위원추천에 관한 사항
- 3의4. 등록심사위원회의 등록거부 및 등록취소의 안건 회부에 관한 사항
- 3의5. 등록심사위원회의 위원 및 예비위원 위촉에 관한 사항
- 3의6. 외국법자문사에 대한 징계개시청구에 관한 사항 (신설 2010. 3. 3.)
- 3의7. 외국법자문사징계위원회 위원 및 예비위원 위촉에 관한 사항 (신설 2010. 3. 3.)
- 3의8. 외국법자문사등록심사위원회의 등록거부 및 등록취소의 안건 회부에 관한 사항 (신설 2010. 3. 3.)
- 3의9. 외국법자문사등록심사위원회의 위원 및 예비위원 위촉에 관한 사항 (신설 2010. 3. 3.)
4. 회칙, 규칙 또는 규정에 의하여 상임이사회의 심의를 거쳐야 할 사항
5. 총회 또는 이사회가 위임한 사항
6. 기타 협회장이 부의한 회무집행에 관한 사항

제30조 [상임이사회 의사] 상임이사회의 의사에 관하여는 이사회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31조 [위원회] ① 이 회는 그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자문기관으로서 각종 위원회를 둔다.

② 위원회는 상설위원회와 특별위원회로 한다.

③ 상설위원회의 종류, 설치, 조직, 권한 및 회의에 관하여는 규칙으로 정한다.

④ 특별위원회는 이사회가 그 조직, 권한, 존속기간 기타 필요한 사항을 규정으로 정하는 경우에 한하여 둘 수 있다.

제32조 [위원회의 조직] ① 위원회에 위원장, 부위원장 및 간사 각 1인을 둔다. 다만, 특별위원회의 경우에는 달리 정할 수 있다. (개정 2014. 10. 29.)

② 상설위원회의 위원장은 협회장이 추천한 위원 중에서 위원회가 선임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간사는 위원, 사무차장 및 촉탁변호사 중에서 위원장이 선임한다.



(개정 2014. 10. 29.)

③ 특별위원회의 위원장은 협회장이 추천한 위원 중에서 선임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간사는 위원, 사무차장 및 촉탁변호사 중에서 위원장이 선임한다. (개정 1998. 6. 23.)

④ 위원회의 위원은 협회장이 상임이사회의 심의를 거쳐 개인회원 중에서 지명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 상임이사회의 심의를 거쳐 학식과 덕망이 있는 인사를 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

(개정 2014. 10. 29.)

제32조의2 [법제연구원] ① 이회는 변호사제도 등 사법제도 전반의 법제를 조사·연구하기 위하여 법제연구원을 둔다.

② 법제연구원에 원장 및 간사 각 1인, 운영위원 및 필요한 연구위원을 둔다.

③ 원장은 상임이사회의 심의를 거쳐 협회장이 임명한다.

④ 운영위원 및 연구위원은 원장의 제청으로 협회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⑤ 법제연구원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6. 3. 14.)

제32조의3 [전국지방변호사회장협의회] ① 이회는 그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자문기구로서 전국지방변호사회장협의회를 둔다.

② 전국지방변호사회장협의회는 각 지방변호사회 회장으로 구성한다.

③ 전국지방변호사회장협의회에 협의회장 및 간사 각 1인을 둔다. 협의회장 및 간사는 각 지방변호사회장 중에서 호선한다.

④ 전국지방변호사회장협의회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8. 12. 28.)

제7장 사무국

제33조 [설치와 조직] ① 이회의 일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사무국을 둔다.

② 사무국에 사무총장과 필요한 직원을 둔다.

제34조 [사무총장] ① 사무총장은 협회장의 명을 받아 이회의 일반 사무를 관장하고 사무국의 직원을 지휘·감독한다.

② 사무총장은 협회장이 이사회의 승인을 얻어 임명한다. (개정 2011. 1. 7.)

③ 사무총장에게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급여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1. 1. 7.)

④ 사무총장은 총회 또는 위원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제35조 [직제와 정원] 사무국의 직제와 정원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8장 등록과 신고



제36조 [변호사의 등록] ① 변호사의 자격이 있는 자로서 개업하고자 할 때에는 이 회에 등록하여야 한다.

② 이 회는 등록을 신청한 자가 법 제8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등록심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등록을 거부할 수 있다. (개정 2016. 3. 14.)

③ 이 회는 변호사명부를 비치하고 다음 사항을 기재한다.

1.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 (개정 2016. 3. 14.)
2. 등록기준지·주소 또는 국내거소지 (개정 2016. 3. 14.)
3. 사무소의 명칭 및 소재지
4. 소속 지방변호사회 및 입회연월일
5. 자격을 취득한 연월일 및 사유
6. 자격등록의 번호 및 연월일
7. 개업 및 휴업에 관한 사항
8. 등록취소의 연월일 및 사유
9. 업무정지 및 징계에 관한 사항
10. 기타 이 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신설 2016. 3. 14.)

④ 변호사의 자격등록 또는 소속변경등록을 청구하는 때에는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등록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제37조 [변호사의 신고] ① 변호사는 다음 사항을 지체 없이 이 회에 신고하여야 한다.

1. 개업한 때
2. 사무소를 이전하거나 사무소의 명칭 또는 개업의 형태를 변경한 때
3. 휴업한 때
4. 변호사명부에 기재한 사항에 변동이 생기거나 새로 기재할 사항이 생긴 때

② 변호사는 소속변경등록을 한 때에는 지체 없이 종전에 소속하였던 지방변호사회에 그 뜻을 신고하여야 한다.

제38조 [외국법자문사의 등록과 신고] 제36조 및 제37조 제1항의 규정은 외국법자문사법 제10조 제1항에 의하여 이 회에 등록하는 외국법자문사에게 준용한다. (개정 2010. 3. 3.)

제39조 [합동사무소의 신고] 공증인가합동법률사무소와 공동법률사무소(사업자등록을 2인 이상이 같이 하는 경우와 2인 이상이 개인명의 이외의 명칭을 사용하는 경우)는 다음 사항을 지체 없이 이 회에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합동사무소의 명칭은 합동사무소 상호 간 또는 제40조, 제40조의2의 사무소와 동일 또는 유사한 명칭을 사용할 수 없다. (개정 2017. 4. 12.) (개정 2024. 7. 10.)

1. 설립 및 설치
2. 규약의 변경 및 사무소의 이전
3. 구성원의 가입 및 탈퇴
4. 업무집행정지사유의 발생



5. 설립인가의 취소

제40조 [법무법인·법무법인(유한)의 신고] 법무법인·법무법인(유한)은 다음 사항을 지체 없이 이 회에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법무법인·법무법인(유한)의 명칭은 법무법인·법무법인(유한) 상호 간 또는 제39조, 제40조의2의 사무소와 동일 또는 유사한 명칭을 사용할 수 없다. (개정 2017. 4. 12.) (개정 2024. 7. 10.)

1. 설립 및 변경의 등기
2. 정관의 제정 또는 변경인가
3. 개업, 사무소의 이전 및 분사무소의 설치
4. 구성원의 가입 및 탈퇴
5. 구성원 아닌 소속변호사의 채용 및 변경
6. 징계 및 설립인가의 취소
7. 해산 및 합병

제40조의2 [법무조합의 신고] 법무조합은 다음 사항을 지체 없이 이 회에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법무조합의 명칭은 법무조합 상호 간 또는 제39조, 제40조의 사무소와 동일 또는 유사한 명칭을 사용할 수 없다. (개정 2017. 4. 12.) (개정 2024. 7. 10.)

1. 설립
2. 규약의 제정 또는 변경인가
3. 개업, 사무소의 이전 및 분사무소의 설치
4. 구성원의 가입 및 탈퇴
5. 구성원 아닌 소속변호사의 채용 및 변경
6. 징계 및 설립인가의 취소
7. 해산

(본조신설 2006. 2. 20.)

제40조의3 [합작법무법인의 신고 등] 합작법무법인은 다음 사항을 지체 없이 이 회에 신고하여야 한다.

1. 설립 및 변경의 등기
2. 정관의 제정 또는 변경, 갱신 인가
3. 개업, 사무소의 이전 및 분사무소의 설치
4. 선임변호사 및 선임외국법자문사의 가입 및 탈퇴
5. 소속변호사 및 소속외국법자문사 채용 및 변경
6. 징계 및 설립인가의 취소
7. 해산

(본조신설 2023. 4. 28.)

제40조의4 [등록심사위원회의 설치] 이 회에 등록의 거부 또는 취소에 관한 심의를 위하여 등록심사위원회를 둔다. (제40조의 3에서 이동 2023. 4. 28.)



제40조의5 [위임규정] ① 이 회는 제36조 내지 제40조의3의 등록 및 신고가 있는 경우에는 규칙으로 정한 바에 따라 심사한다. (개정 2023. 4. 28.)

② 등록의 거부 및 취소에 관한 사항과 등록심사위원회의 심사절차 및 운영 등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40조의 4에서 이동 2023. 4. 28.)

제41조 [변호사사무직원의 신고] ① 변호사·법무법인·법무법인(유한)·법무조합·합작법무법인이 사무직원을 채용한 때에는 이를 지체 없이 소속 지방변호사회에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3. 4. 28.)

② 사무직원의 종류, 연수, 신고 그밖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09. 3. 31.)

제41조의2 [외국법자문사등록심사위원회 설치 등] ① 이 회에 등록의 거부 또는 취소에 관한 심의를 위하여 외국법자문사등록심사위원회를 둔다.

② 등록의 거부 및 취소에 관한 사항과 외국법자문사등록심사위원회의 심사절차 및 운영 등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정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0. 3. 3.)

제41조의3 [외국법자문법률사무소의 등록] 외국법자문법률사무소의 등록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정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0. 3. 3.)

제 9 장 지도와 감독

제42조 [변호사의 윤리] 변호사는 그 사명에 따라 성실하게 그 직무를 수행하고 직업윤리를 준수하여 품위를 보전하여야 한다.

제42조의2 [외국법자문사의 윤리] 외국법자문사는 그 사명에 따라 성실하게 그 직무를 수행하고 직업윤리를 준수하여 품위를 보전하여야 한다. 외국법자문사는 이 회가 정하는 윤리장전을 준수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0. 3. 3.)

제43조 [변호사의 연수] ① 변호사는 이 회 및 소속 지방변호사회가 정하는 바에 따라 연수교육을 받는다.

② 변호사의 연수교육을 실시하기 위하여 이 회에 변호사연수원을 둔다.

③ 변호사연수원의 조직과 운영에 관하여는 따로 규칙으로 정한다.

제43조의2 [변호사시험 합격자의 연수] ① 법 제21조의2제1항제6호에 따른 이 회의 변호사시험 합격자 연수는 집합연수와 위탁연수 및 협회 규칙으로 정하는 방법에 의한다.

② 이 회는 법 제21조의2제10항이 정한 법무부장관의 지원에 따라 변호사시험 합격자의 집합연수를 실시할 수 있다.

③ 이 회는 법 제21조의2제2항이 정한 바에 따라 같은 조 제1항제3호의 법률사무종사기관에



변호사시험 합격자의 위탁연수를 실시할 수 있다.

④ 변호사시험 합격자의 연수에 관한 구체적인 방법, 절차, 비용에 관하여는 따로 규칙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2. 1. 27.)

제43조의3 [법률사무종사기관에 대한 수탁사무 처리] ① 이회는 변호사법 제21조2 제6항에 의거 법무부장관의 위탁 요청이 있는 경우 법률사무종사기관 종사현황 등에 대한 서면조사 또는 현장조사를 실시할 수 있고, 필요한 경우 법무부장관에게 개선 또는 시정을 건의할 수 있다.

② 이회는 제1항에 따른 조사 전에 조사의 일시, 이유 및 내용을 포함한 조사계획을 대상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히 조사하여야 하거나 사전 통보 시 조사 목적을 달성하기 어려운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법률사무종사기관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제1항에 따른 감독 및 조사에 응하여야 한다.

④ 법률사무종사기관에 관한 조사의 방법, 절차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정으로 정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1. 7. 21.)

제44조 [변호사·법무법인·법무법인(유한)·법무조합 등의 보수 및 광고] ① 변호사·법무법인·법무법인(유한)·법무조합은 그 직무에 관하여 사무보수, 사건보수 및 실비변상을 받을 수 있다. (개정 2006. 2. 20.)

② 사무보수는 상담료, 감정료, 문서작성료 및 고문료로, 사건보수는 그 사건의 종류에 따라 착수금과 성공보수로, 실비변상은 수입사무 및 사건의 처리비용과 여비 등으로 나눌 수 있다.

③ 변호사·법무법인·법무법인(유한)·법무조합의 보수는 위임인과의 계약으로 정한다. 다만, 보수는 사회통념에 비추어 현저하게 부당한 것이어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06. 2. 20.)

④ <삭제> (2000. 7. 19.)

⑤ 모든 회원 및 외국법자문사는 광고·선전을 하거나 사무소표지를 설치할 때에는 이 회 또는 소속 지방변호사회가 규칙이나 규정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10. 3. 3.)

제45조 [변호사 및 법무법인의 징계] <삭제>

제46조 [지방변호사회의 이해조정] 이회는 지방법원의 신설, 폐합 또는 그 관할구역의 변경으로 인하여 지방변호사회 사이에 이해가 상반하게 되었을 때에는 이를 조정할 수 있다.

제47조 [지방변호사회의 보고] 지방변호사회는 다음 사항을 지체 없이 이 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1. 설립의 인가
2. 회칙의 제정 또는 개정인가
3. 총회의 개최 및 결의내용
4. 임원의 선임 및 퇴임
5. 공무소에 대한 자문회답 및 건의
6. 기타 회무에 관한 중요 사항

제48조 [지방변호사회에 대한 감독] ① 지방변호사회는 이 회의 감독을 받는다.



② 이회는 지방변호사회가 담당하는 사법연수생의 변호사실무수습에 관하여 필요한 지도와 감독을 할 수 있다.

③ 이회는 지방변호사회가 행하는 변호사와 변호사 사이 또는 변호사와 위임인 사이의 분쟁 조정에 관하여 필요한 지도와 감독을 할 수 있다.

제 9 장의2 징 계

제48조의2 [대한변호사협회변호사징계위원회의 설치] 이회에 등록된 변호사, 법인회원에 대한 징계 사건을 심의하기 위하여 대한변호사협회변호사징계위원회를 둔다. (개정 2014. 3. 12.)

제48조의3 [조사위원회의 설치] ① 이회는 징계혐의사실에 대한 조사를 담당하게 하기 위하여 조사위원회를 둔다. 다만, 협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특별조사위원회를 둘 수 있다. (단서신설 1998. 6. 23.)

② 조사위원회 및 특별조사위원회는 규칙으로 정한 바에 따라 징계혐의사실을 조사하여 그 결과를 협회장에게 보고한다. (개정 1998. 6. 23.)

제48조의4 [위임규정] 대한변호사협회변호사징계위원회, 조사위원회 및 특별조사위원회의 설치와 운영, 집행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1998. 6. 23.)

제48조의5 [외국법자문사징계위원회의 설치] ① 이회에 외국법자문사에 대한 징계사건을 심의하기 위하여 외국법자문사징계위원회를 둔다.

② 외국법자문사징계위원회의 설치와 운영, 집행 등에 관하여 기타 필요한 사항은 규정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0. 3. 3.)

제 10 장 법률구조사업

제49조 [사업의 시행] 이회는 빈곤 기타 사유로 권리구제를 받기 어려운 자에 대하여 법률구조사업을 실시한다.

제50조 [법률구조재단의 설치] ① 법률구조사업을 실시하기 위하여 이회에 법률구조재단을 둔다.

② 지방변호사회에 법률구조재단의 지부를 둘 수 있다.

(전문개정 2009. 11. 30.)

제51조 [사업의 기금] ① 법률구조사업을 실시하기 위하여 필요한 기금은 이회 및 지방변호사회

의 출연금, 변호사·법무법인·법무법인(유한)·법무조합 또는 독지가의 찬조금 및 사업수익금으로 충당한다. (개정 2006. 2. 20.)

② 법률구조사업기금의 운용으로 인한 수익금은 타에 전용하지 못한다.

제 10 장의2 변호사공제사업 <신설 2022. 9. 28.>

제51조의2 [변호사공제재단의 설치] ① 이 회는 변호사법 제58조의12 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공제기금 운영 등을 위해 변호사공제사업을 실시한다.

② 변호사공제사업을 실시하기 위하여 이 회에 ‘대한변호사협회 변호사공제재단’을 둔다.

제51조의3 [사업의 기금] ① 변호사공제사업을 실시하기 위하여 필요한 기금은 이 회 및 지방변호사회의 출연금, 정부, 국내외 법인, 단체, 개인 등으로부터 기부받은 재산 및 사업수익금으로 충당한다.

② 변호사공제사업의 운용으로 인한 수익금은 타에 전용하지 못한다.

제 11 장 재 정

제52조 [재원] 이 회의 경비는 다음의 수익금으로 충당한다.

1. 분담금 및 특별분담금 (개정 1990. 2. 24.)
2. 특별회비
3. 등록료
4. 찬조금
5. 기타 수입금

제53조 [회계연도] 이 회의 회계연도는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제54조 [예산 및 결산] ① 이 회의 매 년도 세입·세출예산은 총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새로운 회계연도가 개시된 뒤 예산이 성립될 때까지의 필요한 경비는 전년도 예산에 준하여 집행할 수 있다. 이 경우 집행된 예산은 당해 연도 예산에 의하여 집행된 것으로 본다.

③ 이 회의 매년도 세입·세출은 회계연도 종료 후 감사의 감사를 거쳐 다음 연도 정기총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55조 [특별회계] 이 회의 법률구조, 변호사연수, 기타 사업을 실시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총회의 승인을 얻어 특별회계를 둘 수 있다.



제 12 장 보 칙

제56조 [회칙개정] 이 회칙을 개정하고자 할 때에는 총회의 의결을 거쳐 법무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제57조 [규칙 및 규정] ① 이회는 법령에 의하여 위임 또는 위탁된 사무를 처리하고, 회칙에서 위임한 사항과 회칙을 시행하기 위한 사항을 정하기 위하여 규칙을 제정할 수 있다.

② 이회는 회무를 처리하고, 규칙에서 위임한 사항과 규칙을 시행하기 위한 사항을 정하기 위하여 규정을 제정할 수 있다.

③ 규칙은 총회의, 규정은 이사회회의 의결을 거쳐 정한다.

제58조 [겸직금지] ① 등록심사위원회·대한변호사협회변호사징계위원회·조사위원회의 위원 및 예비위원은 상호 겸직할 수 없다.

② 외국법자문사등록심사위원회 및 외국법자문사징계위원회 위원 및 예비위원은 상호 겸직할 수 없다. (신설 2010. 3. 3.)

부 칙

제1조 [시행일] 이 회칙은 법 제62조 및 부칙 제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법무부장관의 인가를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 [경과조치] ① 이 회칙 시행 당시의 대한변호사협회는 이 회칙에 의한 대한변호사협회로 본다.

② 이 회칙시행 당시 이 회의 회원은 이 회칙에 의한 회원으로 본다.

③ 이 회칙에 의한 최초의 총회 및 이사회가 구성될 때까지 총회의 기능은 종전의 총회가, 이사회회의 기능은 종전의 회장, 부회장, 총무 및 재무가 행한다.

④ 이 회칙시행 당시의 임원은 이 회칙에 의하여 선임된 것으로 보며, 그 임기는 이 회칙에 의한 최초의 임원이 선임될 때까지로 한다. 다만, 종전의 총무와 재무는 이 회칙에 의한 상임이사로 본다.

제3조 [경과조치] ① 이회는 이 회칙시행일로부터 3월 이내에 이 회칙이 위임한 각종 규칙을 제정하여야 한다.

② 이회는 법 부칙 제2조제4항에 정한 기간 내에 법 및 이 회칙에 의한 기관을 구성하고 임원을 선임하여야 한다.

③ 이 회칙시행 후 최초로 선임되는 임원 및 대의원의 임기는 1985년도 정기총회일까지로 한다.

④ 이 회칙시행 후 최초로 선임되는 이사 중 2분의 1은 회칙 제26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임기를 1984년도 정기총회일로 하여 선임한다.



- ⑤ 이 회는 이 회칙시행일부터 6월 이내에 이 회칙 제36조에 의한 변호사명부를 새로 작성하여 법 부칙 제2조제1항에 의한 변호사명부와 대체하여야 한다.
- ⑥ 변호사는 제5항에 의한 변호사명부를 작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이 회에 신고하여야 한다.

부 칙 (1990. 2. 24.)

이 회칙은 법무부장관의 인가가 있는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93. 6. 5.)

- ① 이 회칙은 법무부장관의 인가가 있는 날로부터 시행한다.
- ② 이 회칙에 의하여 최초로 선임되는 증원된 부협회장 및 감사의 임기는 1995년도 정기총회일까지로 한다.
- ③ 이 회칙에 의하여 최초로 선임되는 증원된 이사 20인 중 10인의 임기는 1994년도 정기총회일, 나머지 10인의 임기는 1995년도 정기총회일까지로 한다.
- ④ 이 회칙에 의하여 최초로 선임되는 징계위원회의 위원장·위원 및 예비위원의 임기는 1995년도 정기총회일까지로 한다.

부 칙 (1995. 10. 10.)

이 회칙은 법무부장관의 인가가 있는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96. 6. 28.)

이 회칙은 법무부장관의 인가가 있는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98. 6. 23.)

이 회칙은 법무부장관의 인가가 있는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0. 7. 19.)

이 회칙은 2000. 7. 29.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6. 2. 20.)

이 회칙은 법무부장관의 인가가 있는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7. 8. 6.)

이 회칙은 법무부장관의 인가가 있는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9. 3. 31.)

- ① [시행일] 이 회칙은 법무부장관의 인가가 있는 날로부터 시행한다.
- ② [경과조치] 종전의 본적은 등록기준지로 본다.

부 칙 (2009. 11. 30.)

이 회칙은 법무부장관의 인가가 있는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0. 3. 3.)

이 회칙은 법무부장관의 인가가 있는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2. 1. 7.)

이 회칙은 법무부장관의 인가가 있는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1. 1. 27.)

이 회칙은 법무부장관의 인가가 있는 날로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1조 및 제24조에 관한 사항은 2013년 실시되는 협회장 선거 및 2013년 2월 정기총회부터 적용한다.

부 칙 (2012. 11. 5.)

이 회칙은 법무부장관의 인가가 있는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4. 3. 12.)

이 회칙은 법무부장관의 인가가 있는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4. 10. 29.)

이 회칙은 법무부장관의 인가가 있는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6. 3. 14.)

이 회칙은 법무부장관의 인가가 있는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7. 4. 12.)

이 회칙은 법무부장관의 인가가 있는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8. 12. 28.)

제1조 [시행일] 이 회칙은 법무부장관의 인가가 있는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경과규정] ① 제11조제2항·제4항의 개정규정은 2019년 2월 정기총회 구성 시부터 적용한다.



② 제12조제3항제3호, 제27조의3 및 제32조의3의 개정규정은 2019년 2월 정기총회부터 적용한다.

부 칙 (2019. 5. 28.)

제1조 [시행일] 이 회칙은 법무부장관의 인가가 있는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경과규정] 제11조의2 제4항, 제11조의3 제5항, 제11조의4 제4항의 규칙은 법무부장관의 인가가 있는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제정하며, 동 규칙의 제정과 별개로 제11조의2, 제11조의3, 제11조의4의 효력은 법무부장관의 인가가 있는 날부터 발생한다.

부 칙 (2021. 7. 21.)

이 회칙은 법무부장관의 인가가 있는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22. 9. 28.)

이 회칙은 법무부장관의 인가가 있는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23. 4. 28.)

제1조 [시행일] 이 회칙은 법무부장관의 인가가 있는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경과규정] 협회장의 임기에 관한 규정은 2025년 1월 1일 이후 선출되는 협회장부터 적용한다. 부협회장, 상임이사, 이사, 감사, 대의원의 임기에 관한 규정은 2025년도 정기총회일부터 적용한다.

부 칙 (2023. 6. 19.)

이 회칙은 법무부장관의 인가가 있는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24. 7. 10.)

이 회칙은 법무부장관의 인가가 있는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25. 2. 13.)

이 회칙은 법무부장관의 인가가 있는 날부터 시행한다.



변호사윤리장전

1962.	6. 30.	선	포
1973.	5. 26.	개	정
1993.	5. 24.	개	정
1995.	2. 25.	개	정
2000.	7. 3.	전부개정	
2014.	2. 24.	전부개정	
2016.	2. 29.	개	정
2017.	2. 27.	개	정
2021.	5. 31.	개	정

윤 리 강 령

1. 변호사는 기본적 인권의 옹호와 사회정의의 실현을 사명으로 한다.
2. 변호사는 성실·공정하게 직무를 수행하며 명예와 품위를 보전한다.
3. 변호사는 법의 생활화 운동에 헌신함으로써 국가와 사회에 봉사한다.
4. 변호사는 용기와 예지와 창의를 바탕으로 법률문화향상에 공헌한다.
5. 변호사는 민주적 기본질서의 확립에 힘쓰며 부정과 불의를 배격한다.
6. 변호사는 우애와 신의를 존중하며, 상호부조·협동정신을 발휘한다.
7. 변호사는 국제 법조 간의 친선을 도모함으로써 세계 평화에 기여한다.

윤 리 규 약

제 1 장 일반적 윤리

제1조 [사명] ① 변호사는 인간의 자유와 권리를 보호하고 향상시키며, 법을 통한 정의의 실현을 위하여 노력한다.

② 변호사는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봉사하며, 법령과 제도의 민주적 개선에 노력한다.

제2조 [기본 윤리] ① 변호사는 공정하고 성실하게 독립하여 직무를 수행한다.

② 변호사는 그 직무를 행함에 있어서 진실을 왜곡하거나 허위진술을 하지 아니한다.

③ 변호사는 서로 존중하고 예의를 갖춘다.

④ 변호사는 법률전문직으로서 필요한 지식을 탐구하고 윤리와 교양을 높이기 위하여 노력한다.



제 2 장 직무에 관한 윤리

제3조 [회칙 준수 등] 변호사는 법령과 대한변호사협회 및 소속 지방변호사회의 회칙·규칙·규정 등을 준수하고, 그 구성과 활동에 적극 참여한다.

제4조 [공익 활동 등] ① 변호사는 공익을 위한 활동을 실천하며 그에 참여한다.

② 변호사는 국선변호 등 공익에 관한 직무를 위촉받았을 때에는 공정하고 성실하게 직무를 수행하며, 이해관계인 등으로부터 부당한 보수를 받지 아니한다.

제5조 [품위유지의무] 변호사는 품위를 유지하고, 명예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지 아니한다.

제6조 [겸직 제한] ① 변호사는 보수를 받는 공무원을 겸하지 아니한다. 다만, 법령이 허용하는 경우와 공공기관에서 위촉한 업무를 행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변호사는 소속 지방변호사회의 허가 없이 상업 기타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를 경영하거나, 이를 경영하는 자의 사용인이 되거나, 또는 영리법인의 업무집행사원·이사 또는 사용인이 될 수 없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은 변호사가 휴업한 때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7조 [이중 사무소 금지] 변호사는 어떠한 명목으로도 둘 이상의 법률사무소를 둘 수 없다. 다만, 사무공간 부족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대한변호사협회가 정하는 바에 따라 인접한 장소에 별도의 사무실을 두고 변호사가 주재하는 경우에는, 본래의 법률사무소와 함께 하나의 사무소로 본다.

제8조 [사무직원] ① 변호사는 사건의 유치를 주된 임무로 하는 사무직원을 채용하지 아니한다.

② 변호사는 사무직원에게 사건유치에 대한 대가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③ 변호사는 사무직원을 채용함에 있어서 다른 변호사와 부당하게 경쟁하거나 신의에 어긋나는 행위를 하지 아니한다.

④ 변호사는 사무직원이 법령과 대한변호사협회 및 소속 지방변호사회의 회칙, 규칙 등을 준수하여 성실히 사무에 종사하도록 지휘·감독한다.

제9조 [부당한 사건유치 금지 등] ① 변호사는 사건의 알선을 업으로 하는 자로부터 사건의 소개를 받거나, 이러한 자를 이용하거나, 이러한 자에게 자기의 명의를 이용하게 하는 일체의 행위를 하지 아니한다.

② 변호사는 어떠한 경우를 막론하고 사건의 소개·알선 또는 유인과 관련하여 소개비, 기타 이와 유사한 금품이나 이익을 제공하지 아니한다.

제10조 [상대방 비방 금지 등] ① 변호사는 상대방 또는 상대방 변호사를 유혹하거나 비방하지 아니한다.

② 변호사는 수임하지 않은 사건에 개입하지 아니하고, 그에 대한 경솔한 비판을 삼간다.

제11조 [위법행위 협조 금지 등] ① 변호사는 의뢰인의 범죄행위, 기타 위법행위에 협조하지 아니한다. 직무수행 중 의뢰인의 행위가 범죄행위, 기타 위법행위에 해당된다고 판단된 때에는 즉시 그에 대한 협조를 중단한다.



② 변호사는 범죄혐의가 희박한 사건의 고소, 고발 또는 진정 등을 중용하지 아니한다.

③ 변호사는 위증을 교사하거나 허위의 증거를 제출하게 하거나 이러한 의심을 받을 행위를 하지 아니한다.

제12조 [개인정보의 보호] 변호사는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개인정보의 보호에 유의한다.

제 3 장 의뢰인에 대한 윤리

제 1 절 일반규정

제13조 [성실의무] ① 변호사는 의뢰인에게 항상 친절하고 성실하여야 한다.

② 변호사는 업무처리에 있어서 직업윤리의 범위 안에서 가능한 한 신속하게 의뢰인의 위임목적을 최대한 달성할 수 있도록 노력한다.

제14조 [금전거래의 금지] 변호사는 그 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하여 의뢰인과 금전대여, 보증, 담보제공 등의 금전거래를 하지 아니한다.

제15조 [동의 없는 소 취하 등 금지] 변호사는 의뢰인의 구체적인 수권 없이 소 취하, 화해, 조정 등 사건을 종결시키는 소송행위를 하지 아니한다.

제16조 [수임 거절 등] ① 변호사는 의뢰인이나 사건의 내용이 사회 일반으로부터 비난을 받는다는 이유만으로 수임을 거절하지 아니한다.

② 변호사는 노약자, 장애인, 빈곤한 자, 무의탁자, 외국인, 소수자, 기타 사회적 약자라는 이유만으로 수임을 거절하지 아니한다.

③ 변호사는 법원을 비롯한 국가기관 또는 대한변호사협회나 소속 지방변호사회로부터 국선변호인, 국선대리인, 당직변호사 등의 지정을 받거나 기타 임무의 위촉을 받은 때에는, 신속하고 성실하게 이를 처리하고 다른 일반 사건과 차별하지 아니한다. 그 선임된 사건 또는 위촉받은 임무가 이미 수임하고 있는 사건과 이해관계가 상반되는 등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취지를 알리고 이를 거절한다.

제17조 [국선변호인 등] ① 국선변호인 등 관련 법령에 따라 국가기관에 의하여 선임된 변호사는 그 사건을 사선으로 전환하기 위하여 부당하게 교섭하지 아니한다.

② 의뢰인의 요청에 의해 국선변호인 등이 사선으로 전환한 경우에는 별도로 소송위임장, 변호사선임신고서 등을 제출한다.

제18조 [비밀유지 및 의뢰인의 권익보호] ① 변호사는 직무상 알게 된 의뢰인의 비밀을 누설하거나 부당하게 이용하지 아니한다.

② 변호사는 직무와 관련하여 의뢰인과 의사교환을 한 내용이나 의뢰인으로부터 제출받은 문서 또는 물건을 외부에 공개하지 아니한다.



- ③ 변호사는 직무를 수행하면서 작성한 서류, 메모, 기타 유사한 자료를 외부에 공개하지 아니한다.
- ④ 제1항 내지 제3항의 경우에 중대한 공익상의 이유가 있거나, 의뢰인의 동의가 있는 경우 또는 변호사 자신의 권리를 방어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최소한의 범위에서 이를 공개 또는 이용할 수 있다.

제 2 절 사건의 수임 및 처리

제19조 [예상 의뢰인에 대한 관계] ① 변호사는 변호사로서의 명예와 품위에 어긋나는 방법으로 예상 의뢰인과 접촉하거나 부당하게 소송을 부추기지 아니한다.

② 변호사는 사무직원이나 제3자가 사건유치를 목적으로 제1항의 행위를 하지 않도록 주의한다.

제20조 [수임 시의 설명 등] ① 변호사는 의뢰인이 사건 위임 여부를 결정할 수 있도록 의뢰인으로부터 제공받은 정보를 기초로 사건의 전체적인 예상 진행과정, 수임료와 비용, 기타 필요한 사항을 설명한다.

② 변호사는 의뢰인이 기대하는 결과를 얻을 가능성이 없거나 회박한 사건을 그 가능성이 높은 것처럼 설명하거나 장담하지 아니한다.

③ 변호사는 상대방 또는 상대방 대리인과 친족관계 등 특수한 관계가 있을 때에는, 이를 미리 의뢰인에게 알린다.

④ 변호사는 사건의 수임을 위하여 재판이나 수사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원과의 연고 등 사적인 관계를 드러내며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것처럼 선전하지 아니한다.

제21조 [부당한 사건의 수임금지] 변호사는 위임의 목적 또는 사건처리의 방법이 현저하게 부당한 경우에는 당해 사건을 수임하지 아니한다.

제22조 [수임 제한] ① 변호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건을 수임하지 아니한다. 다만, 제3호의 경우 수임하고 있는 사건의 의뢰인이 동의하거나, 제4호의 경우 의뢰인이 동의하거나, 제5호 및 제6호의 경우 관계되는 의뢰인들이 모두 동의하고 의뢰인의 이익이 침해되지 않는다는 합리적인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7. 2. 27.)

1. 과거 공무원·중재인·조정위원 등으로 직무를 수행하면서 취급 또는 취급하게 된 사건이거나, 공정증서 작성사무에 관여한 사건
 2. 동일한 사건에 관하여 상대방을 대리하고 있는 경우
 3. 수임하고 있는 사건의 상대방이 위임하는 다른 사건
 4. 상대방 또는 상대방 대리인과 친족관계에 있는 경우
 5. 동일 사건에서 둘 이상의 의뢰인의 이익이 서로 충돌하는 경우
 6. 현재 수임하고 있는 사건과 이해가 충돌하는 사건
- ② 변호사는 위임사무가 종료된 경우에도 종전 사건과 기초가 된 분쟁의 실체가 동일한 사건에서 대립되는 당사자로부터 사건을 수임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6. 2. 29.)
- ③ 변호사는 의뢰인과 대립되는 상대방으로부터 사건의 수임을 위해 상담하였으나 수임에 이르지



아니하였거나 기타 그에 준하는 경우로서, 상대방의 이익이 침해되지 않는다고 합리적으로 여겨지는 경우에는, 상담 등의 이유로 수임이 제한되지 아니한다.

제23조 [위임장 등의 제출 및 경우] ① 변호사는 사건을 수임하였을 때에는 소송위임장이나 변호인 선임신고서 등을 해당 기관에 제출한다. 이를 제출하지 아니하고는 전화, 문서, 방문, 기타 어떠한 방법으로도 변론활동을 하지 아니한다.

② 변호사는 법률사건 또는 법률사무에 관한 소송위임장이나 변호인선임신고서 등을 공공기관에 제출할 때에는, 사전에 소속 지방변호사회를 경유한다. 다만, 사전에 경유할 수 없는 급박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사후에 지체 없이 경유 절차를 보완한다.

제24조 [금전 등의 수수] 변호사는 예납금, 보증금 등의 금전 및 증거서류 등의 수수를 명백히 하고, 이로 인한 분쟁이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주의한다.

제25조 [다른 변호사의 참여] ① 변호사는 의뢰인이 다른 변호사에게 해당 사건을 의뢰하는 것을 방해하지 아니한다.

② 변호사는 의뢰인이 변호사를 바꾸고자 할 경우에는 업무의 인수인계가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협조한다.

제26조 [공동 직무수행] ① 변호사는 동일한 의뢰인을 위하여 공동으로 직무를 수행하는 경우에는, 의뢰인의 이익을 위해 서로 협력한다.

② 변호사는 공동으로 직무를 수행하는 다른 변호사와 의견이 맞지 아니하여 의뢰인에게 불이익을 미칠 수 있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의뢰인에게 이를 알린다.

제27조 [의뢰인 간의 이해 대립] 수임 이후에 변호사가 대리하는 둘 이상의 의뢰인 사이에 이해의 대립이 발생한 경우에는, 변호사는 의뢰인들에게 이를 알리고 적절한 방법을 강구한다.

제28조 [사건처리 협의 등] ① 변호사는 의뢰인에게 사건의 주요 경과를 알리고, 필요한 경우에는 의뢰인과 협의하여 처리한다.

② 변호사는 의뢰인의 요청이나 요구가 변호사의 품위를 손상시키거나 의뢰인의 이익에 배치된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이유를 설명하고 이에 따르지 않을 수 있다.

제29조 [사건처리의 종료] 변호사는 수임한 사건의 처리가 종료되면, 의뢰인에게 그 결과를 신속히 설명한다.

제30조 [분쟁 조정] 변호사는 의뢰인과 직무와 관련한 분쟁이 발생한 경우에는, 소속 지방변호사회의 조정에 의하여 분쟁을 해결하도록 노력한다.

제 3 절 보 수

제31조 [원칙] ① 변호사는 직무의 공공성과 전문성에 비추어 부당하게 과다한 보수를 약정하지 아니한다.

② 변호사의 보수는 사건의 난이도와 소요되는 노력의 정도와 시간, 변호사의 경험과 능력, 의뢰인



이 얻게 되는 이익의 정도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결정한다.

③ 변호사는 건전한 수임질서를 교란하는 과당 염가 경쟁을 지양함으로써 법률사무의 신뢰와 법률 시장의 건강을 유지한다. (신설 2021. 5. 31.)

④ 변호사는 변호사 또는 법률사무 소개를 내용으로 하는 애플리케이션등 전자적 매체 기반의 영업에 대하여 이에 참여하거나 회원으로 가입하는 등의 방법으로 협조하지 않는다. (신설 2021. 5. 31.)

제32조[서면계약] 변호사는 사건을 수임할 경우에는 수임할 사건의 범위, 보수, 보수 지급방법, 보수에 포함되지 않는 비용 등을 명확히 정하여 약정하고, 가급적 서면으로 수임계약을 체결한다. 다만, 단순한 법률자문이나 서류의 준비, 기타 합리적인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33조 [추가 보수 등] ① 변호사는 정당한 사유 없이 추가보수를 요구하지 아니한다.

② 변호사는 명백한 서면 약정 없이 공탁금, 보증금, 기타 보관금 등을 보수로 전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의뢰인에게 반환할 공탁금 등을 미수령 채권과 상계할 수 있다.

③ 변호사는 담당 공무원에 대한 접대 등의 명목으로 보수를 정해서는 아니 되며, 그와 연관된 명목의 금품을 요구하지 아니한다.

제34조 [보수 분배 금지 등] ① 변호사는 변호사 아닌 자와 공동의 사업으로 사건을 수임하거나 보수를 분배하지 아니한다. 다만, 외국법자문사법에서 달리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변호사는 소송의 목적을 양수하거나, 정당한 보수 이외의 이익분배를 약정하지 아니한다.

제 4 장 법원, 수사기관, 정부기관, 제3자 등에 대한 윤리

제 1 절 법원, 수사기관 등에 대한 윤리

제35조 [사법권의 존중 및 적법 절차 실현] 변호사는 사법권을 존중하며, 공정한 재판과 적법 절차의 실현을 위하여 노력한다.

제36조 [재판절차에서의 진실의무] ① 변호사는 재판절차에서 의도적으로 허위 사실에 관한 주장을 하거나 허위증거를 제출하지 아니한다.

② 변호사는 증인에게 허위의 진술을 교사하거나 유도하지 아니한다.

제37조 [소송 촉진] 변호사는 소송과 관련된 기일, 기한 등을 준수하고, 부당한 소송지연을 목적으로 하는 행위를 하지 아니한다.

제38조 [영향력 행사 금지] 변호사는 개인적 친분 또는 전관관계를 이용하여 직접 또는 간접으로 법원이나 수사기관 등의 공정한 업무 수행에 영향을 미칠 행위를 하지 아니한다.

제39조 [사건 유치 목적의 출입 금지] 변호사는 사건을 유치할 목적으로 법원, 수사기관, 교정기관 및 병원 등에 직접 출입하거나 사무원 등으로 하여금 출입하게 하지 아니한다.

제40조 [공무원으로부터의 사건 소개 금지] 변호사는 법원, 수사기관 등의 공무원으로부터 해당기관의



사건을 소개받지 아니한다.

제 2 절 정부기관에 대한 윤리

제41조 [비밀 이용 금지] 변호사는 공무를 수행하면서 알게 된 정부기관의 비밀을 업무처리에 이용하지 아니한다.

제42조 [검직 시 수임 제한] 변호사는 공정을 해할 우려가 있을 때에는, 검직하고 있는 당해 정부기관의 사건을 수임하지 아니한다.

제 3 절 제3자에 대한 윤리

제43조 [부당한 이익 수령 금지] 변호사는 사건의 상대방 또는 상대방이었던 자로부터 사건과 관련하여 이익을 받거나 이를 요구 또는 약속받지 아니한다.

제44조 [부당한 이익 제공 금지] 변호사는 사건의 상대방 또는 상대방이었던 자에게 사건과 관련하여 이익을 제공하거나 약속하지 아니한다.

제45조 [대리인 있는 상대방 당사자와의 직접교섭 금지] 변호사는 수임하고 있는 사건의 상대방 당사자에게 변호사 또는 법정대리인이 있는 경우에는, 그 변호사 또는 법정대리인의 동의나 기타 다른 합리적인 이유가 없는 한 상대방 당사자와 직접 접촉하거나 교섭하지 아니한다.

제 5 장 업무 형태

제 1 절 법무법인 등

제46조 [법무법인 등의 구성원, 소속 변호사의 규정 준수 의무] ① 변호사법에 의한 법무법인, 법무법인(유한), 법무조합 및 대한변호사협회 회칙에서 정한 공증인가합동법률사무소 및 공동법률사무소(이하 “법무법인 등”이라고 한다)의 구성원, 소속 변호사는 이 절의 규정을 준수한다.

② 구성원 변호사는 소속 변호사가 변호사 업무의 수행에 관련하여 이 절의 규정을 준수하도록 노력한다.

③ 변호사는 다른 변호사의 지시에 따라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에도 이 절의 규정을 준수한다.

④ 소속 변호사는 그 업무수행이 이 절의 규정에 위반되는 것인지 여부에 관하여 이견이 있는 경우, 그 업무에 관하여 구성원 변호사의 합리적인 결론에 따른 때에는 이 절의 규정을 준수한 것으로 본다.

제47조 [비밀유지의무] 법무법인 등의 구성원 변호사 및 소속 변호사는 정당한 이유가 없는 한 다른



변호사가 의뢰인과 관련하여 직무상 비밀유지의무를 부담하는 사항을 알게 된 경우에는, 이를 누설하거나 이용하지 아니한다. 이는 변호사가 해당 법무법인 등으로부터 퇴직한 경우에도 같다.

제48조 [수임 제한] ① 제22조 및 제42조의 규정은 법무법인 등이 사건을 수임하는 경우에 준용한다. 다만, 제2항에서 달리 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② 법무법인 등의 특정 변호사에게만 제22조 제1항 제4호 또는 제42조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당해 변호사가 사건의 수임 및 업무수행에 관여하지 않고 그러한 사유가 법무법인 등의 사건처리에 영향을 주지 아니할 것이라고 볼 수 있는 합리적 사유가 있는 때에는 사건의 수임이 제한되지 아니한다.

③ 법무법인 등은 제2항의 경우에 당해 사건을 처리하는 변호사와 수임이 제한되는 변호사들 사이에 당해 사건과 관련하여 비밀을 공유하는 일이 없도록 합리적인 조치를 취한다.

제49조 [수임 관련 정보의 관리] 법무법인 등은 전조의 규정에 의해 수임이 제한되는 사건을 수임하지 않도록 의뢰인, 상대방 당사자, 사건명 등 사건 수임에 관한 정보를 관리하고, 필요한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사건 수임에 관한 정보를 구성원 변호사들이 공유할 수 있도록 적절한 조치를 취한다.

제50조 [동일 또는 유사 명칭의 사용 금지] 변호사법에서 정한 바에 따라서 설립된 법무법인, 법무법인(유한), 법무조합이 아닌 변호사의 사무소는 그와 동일 또는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아니한다.

제 2 절 기 타

제51조 [사내변호사의 독립성] 정부, 공공기관, 비영리단체, 기업, 기타 각종의 조직 또는 단체 등(단, 법무법인 등은 제외한다. 이하 “단체 등”이라 한다)에서 임원 또는 직원으로서 법률사무 등에 종사하는 변호사(이하 “사내변호사”라 한다)는 그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독립성의 유지가 변호사로서 준수해야 하는 기본 윤리임을 명심하고, 자신의 직업적 양심과 전문적 판단에 따라 업무를 성실히 수행한다.

제52조 [사내변호사의 충실의무] 사내변호사는 변호사윤리의 범위 안에서 그가 속한 단체 등의 이익을 위하여 성실히 업무를 수행한다.

제53조 [중립자로서의 변호사] ① 변호사는 자신의 의뢰인이 아닌 당사자들 사이의 분쟁 등의 해결에 관여하는 경우에 중립자로서의 역할을 수행한다. 중립자로서 변호사가 행하는 사무에는 중재자, 조정자로서 행하는 사무 등을 포함한다.

② 중립자로서 역할을 수행하는 변호사는 당사자들에게 자신이 그들을 대리하는 것이 아님을 적절히 설명한다.

제54조 [증인으로서의 변호사] ① 변호사는 스스로 증인이 되어야 할 사건을 수임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명백한 사항들과 관련된 증언을 하는 경우
2. 사건과 관련하여 본인이 제공한 법률사무의 내용에 관한 증언을 하는 경우
3. 사건을 수임하지 아니함으로써 오히려 의뢰인에게 불리한 영향을 미치는 경우



② 변호사는 그가 속한 법무법인 등의 다른 변호사가 증언함으로써 의뢰인의 이익이 침해되거나 침해될 우려가 있을 경우에는 당해 사건에서 변호사로서의 직무를 수행하지 아니한다.

부 칙

제1조 [시행일] 이 윤리장전은 2000. 7. 29.부터 시행한다.

제2조 [경과조치] 이 윤리장전 시행 당시 이 윤리장전 위반으로 징계위원회에 계속 중인 징계사건은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 칙 (2014. 2. 24.)

제1조 [시행일] 이 윤리장전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경과조치] 이 윤리장전은 종전의 윤리장전 위반을 이유로 하여 이 윤리장전 시행 당시 계속 중이거나 이 윤리장전 시행 후에 개시되는 징계사건에도 적용한다. 다만 종전의 규정이 징계혐의자에게 유리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부 칙 (2016. 2. 29.)

이 규약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7. 2. 27.)

이 윤리장전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21. 5. 31.)

이 윤리장전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외국법자문사윤리장전

2010. 2. 8. 선 포

제 1 장 일반적 윤리

제1조 [목적] 외국법자문사윤리장전은 외국법자문사법 제28조 제3항에 의하여 외국법자문사의 윤리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기본윤리] ① 외국법자문사는 직무의 내외를 불문하고 품위를 해하거나 공공복리에 반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외국법자문사는 그 직무를 수행하면서 진실을 은폐하거나 거짓의 진술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3조 [외국윤리의 준수] 외국법자문사는 섭외사건이나 국제적 사무를 처리함에 있어서는 관계 외국의 변호사 윤리도 존중하여야 한다.

제 2 장 직무에 관한 윤리

제4조 [회칙준수 등] 외국법자문사는 법령과 대한변호사협회가 정한 외국법자문사와 관련된 회칙, 규칙, 규정, 결의사항 등을 준수하고 그 활동에 적극 동참하여야 한다.

제5조 [공익상의 직무] 외국법자문사는 공익상의 직무를 위촉받아 수행할 때에는 공정하고 정확하게 직무를 집행하여야 하며 이해관계인 등으로부터 별도의 보수를 받아서는 아니 된다.

제6조 [과대선전 금지] ① 외국법자문사는 자기의 전력, 전공 또는 실적에 관하여 과대하게 선전하거나 광고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외국법자문사는 선전 또는 업무광고를 함에 있어서는 대한변호사협회가 정하는 외국법자문사업무광고규정에 따라야 한다.

제7조 [2중사무소 금지] 외국법자문사는 명목의 여하를 불문하고 국내에 둘 이상의 사무소를 개설하거나 연락사무소, 연락전화 등을 설치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8조 [사무직원] ① 외국법자문사는 사건의 유치를 주된 임무로 하는 사무직원을 채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사무직원의 보수를 사건유치에 대한 성과급으로 정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외국법자문사는 사무직원을 채용함에 있어서 다른 외국법자문사와 경쟁하거나 신의에 반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9조 [사건의 유치금지] 외국법자문사는 사건의 유치를 목적으로, 예상되는 의뢰인과 접촉하거나 사무직원 또는 제3자로 하여금 선임을 권유하는 행위를 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0조 [주선업자 이용금지] ① 외국법자문사는 사건의 주선을 업으로 하는 자로부터 사건의 소개를 받거나 이러한 자를 이용하거나 이러한 자에게 자기의 명의를 이용하게 하는 일체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외국법자문사는 어떠한 경우를 막론하고 사건의 소개 또는 주선에 관하여 소개비 기타 이와 유사한 금품이나 이익을 공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1조 [정당 보수 이외의 이익분배 등 금지] 외국법자문사는 정당한 보수 이외의 이익분배를 약정하거나, 공동의 사업으로 사건을 수입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2조 [상대방 비방금지] 외국법자문사는 상대방 또는 상대방 변호사나 외국법자문사를 비방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3조 [개입금지] 외국법자문사는 수입하지 않은 사건에 개입하여서는 아니 되며, 그에 대한 경솔한 비판도 삼가야 한다.

제14조 [위법행위 협조금지 등] 외국법자문사는 의뢰인의 범죄행위 기타 위법행위에 협조하여서는 아니 된다. 직무수행 중 의뢰인의 행위가 범죄행위 기타 위법행위에 해당된다고 판단된 때에는 즉시 그 협조를 중단하여야 한다.

제15조 [위증교사 등 금지] 외국법자문사는 위증을 교사하거나 허위의 증거를 제출하게 하거나 이러한 의심을 받을 언동도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 3 장 의뢰인에 대한 윤리

제16조 [성실의무] ① 외국법자문사는 의뢰인에게 항상 친절하고 성실하여야 한다.

② 외국법자문사는 사건의 상담 또는 감정을 함에 있어서는 공정한 입장에서 가능한 한 조속히 의뢰인이 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필요한 설명을 하여야 한다.

③ 외국법자문사는 직무수행상의 고의 또는 과실로 타인에게 손해를 입혔을 때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음을 명심하고 업무처리에 있어서 성실·공정한 자세로 의뢰인의 권익을 최대한 옹호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④ 외국법자문사는 의뢰인이 기대하는 결과를 얻을 가망이 없는 사건을, 그 가망이 있는 것처럼 가정하거나 장담하여서는 아니 된다.

⑤ 외국법자문사는 상대방과 특수한 관계가 있을 때에는 이를 미리 의뢰인에게 알려야 한다.

⑥ 외국법자문사는 업무에 관하여 담당 공무원과의 연고를 선전하거나 이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7조 [수입금지] ① 외국법자문사는 자신이 공무원 또는 중재인이나 공정증서작성 사무에 관여한 사건, 친척이 담당 공무원으로서 처리하는 사건, 현재 수입하고 있는 사건과 이해가 저촉되는 사건, 목



적이나 수단에 있어서 부당한 사건, 단순히 보복이나 상대방을 괴롭히는 방법으로 하는 사건은 이를 수임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외국법자문사는 동일 사건에 관하여 당사자 쌍방을 대리할 수 없다. 다만, 법률상 금지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외국법자문사는 동일 사건이 아니라도 의뢰인의 양해 없이는 그 상대방으로부터 사건을 수임할 수 없다.

제18조 [수임제한] ① 외국법자문사는 자신과 친족 관계가 있는 다른 외국법자문사가 수임하고 있는 사건에서 대립되는 당사자로부터 사건을 수임할 수 없다. 다만, 의뢰인이 양해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외국법자문사는 위임사무가 종료된 후에도 종전 사건과 동일하거나 본질적으로 관련된 사건에서 대립되는 당사자로부터 사건을 수임할 수 없다. 다만, 종전 의뢰인이 양해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수인의 외국법자문사가 공동으로 사무소를 개설하고 있는 경우에 그 사무소 구성원들은 당사자 쌍방의 양해 없이는 쌍방 당사자의 사건을 수임할 수 없다. 사건을 수임한 후에 이에 위반된 것이 발견된 때에는 뒤에 수임한 사건을 사임하고 그 취지를 의뢰인에게 알려야 한다.

④ 외국법자문사는 동일 사건에서 이익이 서로 충돌되는 2인 이상의 당사자를 동시에 대리하거나 변론할 수 없다.

제19조 [수임거절 등] 외국법자문사는 의뢰인이나 사건의 내용이 사회 일반으로부터 비난을 받는다는 이유만으로 수임을 거절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20조 [비밀준수] 외국법자문사는 업무상 알게 된 의뢰인의 비밀을 공개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공익상의 이유가 있거나 외국법자문사 자신의 권리를 옹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최소한의 범위에서 이를 공개할 수 있다.

제21조 [물건의 수수] 외국법자문사는 예납금, 보증금 등의 금전 및 증거서류 등의 문서의 수수를 명백히 하고 이로 인한 분쟁이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제 4 장 보수에 관한 윤리

제22조 [적정보수] 외국법자문사의 보수는 경제적 이익, 사안의 난이, 소요되는 노력의 정도와 시간, 당사자의 이해관계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적정하게 결정되어야 한다.

제23조 [서면계약] 외국법자문사는 사건 또는 사무를 수임할 때에는 보수에 관한 명백한 약정을 하고 가급적 이를 서면으로 체결하여야 한다.

제24조 [추가보수 금지] 외국법자문사는 약정한 보수 이외의 금품을 요구하거나 정당한 사유없이 추가 보수를 요구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25조 [조건부 보수 금지] 외국법자문사는 성공보수를 조건부로 미리 받아서는 아니 된다.

제26조 [보수전환 금지] 외국법자문사는 서면에 의한 명백한 약정이 있는 경우가 아니면 공탁금, 보증금 기타의 보관금 등을 보수로 전환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27조 [교제용 보수 금지] 외국법자문사는 담당 공무원과의 교제 등의 명목으로 보수를 결정하여서는 아니 되며, 교제비 등 명목의 금품을 받아서는 아니 된다.

제28조 [증거조작 금지] 외국법자문사는 조세포탈 기타 어떠한 명목으로도 의뢰인 또는 관계인과 수수한 보수의 액을 숨기기로 밀약하거나 영수증 등 증거를 조작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29조 [보수의 부당경쟁 규제] 외국법자문사는 사건의 유치를 위하여 상담료, 고문료, 감정료 기타 보수 등에 관하여 변호사 또는 다른 외국법자문사와 부당하게 경쟁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30조 [보수분배 금지] 외국법자문사는 외국법자문사 아닌 자와 보수를 분배하여서는 아니 된다.

부 칙

이 윤리장전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회 규





회 규

사업계획규칙

1983. 5. 21.

규칙 제9호

개정 2000. 7. 3.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이 회의 운영을 합리화하고 업무집행을 체계화하기 위하여 사업집행에 관한 기준과 절차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사업의 범위] ① 이 규칙에서 사업이라 함은 회칙 제2조에 정한 이 회의 설립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이 회의 집행하는 모든 사업을 말한다.

② 이 회의 사업은 일반사업과 특별사업으로 구분한다.

③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특별사업으로 하고, 그 나머지 사업을 일반사업으로 한다.

1. <삭제> (2000. 7. 3.)
2. 법률구조사업
3. 변호사의 연수

제3조 [적용범위] 이 회의 사업집행에 관하여 회칙에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다만, 특별사업에 관하여는 따로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제4조 [사업집행의 원칙] ① 이 회의 집행하는 모든 사업은 원칙적으로 사업연도 초에 확정하는 사업계획에 따라 집행하여야 한다.

② 임원은 사업연도 초에 이사회의 승인을 얻어 사업계획을 확정하고, 사업연도 중 수시로 그 사업집행실적을 점검하여 사업연도 말에 그 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제5조 [사업연도] 사업연도는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제6조 [예산과의 관계] 사업을 계획하고 집행함에 있어서는 항상 예산과 관련하여 양자가 일치되도록 하여야 한다.

제7조 [사업계획의 구분] ① 사업계획은 일반사업과 특별사업으로 나누어 책정하여야 한다.

② 모든 사업계획은 그 중요성과 계속성을 고려하여 장기계획과 단기계획으로 나누어 책정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의하여 책정된 장기계획이 확정되면 사업연도의 갱신에 불구하고 매년도 수립하는 단기계획에서 이를 엄격히 반영하여야 한다.

제8조 [사업계획의 확정] ① 총무이사는 매사업연도 개시 2주일 전까지 각 사업 담당 상임이사와 협의하여 다음 연도 사업계획안을 책정하여야 한다.



② 총무이사가 제1항에 의하여 사업계획을 책정할 때에는 예산회계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집행에 소요되는 경비를 예산에 반영하도록 재무이사와 협의하여야 한다.

③ 협회장은 매사업연도 초에 예산안과 함께 상임이사회의 심의를 거쳐 이사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9조 [사업계획의 집행] ① 각 사업 담당 상임이사는 사업계획에 맞추어 소관 사업을 엄밀히 집행하고, 그 집행실적을 수시로 파악하여 매 분기마다 총무이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총무이사는 매 분기마다 사업계획의 집행실적을 종합하여 협회장에게 보고하여야 하고, 협회장은 사업계획 집행 전반에 관하여 필요한 조정과 지시를 할 수 있다.

제10조 [실행계획의 작성] 각 사업 담당 상임이사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실행계획을 작성하고 이를 협회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1조 [사업계획의 변경] 사업계획을 추가 또는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이사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12조 [사업보고] ① 협회장은 매 분기마다 사업계획에 따른 집행실적을 평가분석하여 그 결과를 이사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② 협회장은 매사업연도 종료 후 결산안과 함께 상임이사회의 심의를 거쳐 사업보고를 확정하고, 이를 이사회에 제출하여 승인을 얻어야 한다. 다만, 이사회의 승인에 앞서 감사의 요구가 있는 때에는 감사의 감사를 받고 그 의견을 이사회에 반영하여야 한다.

③ 매사업연도 종료 후 작성하는 사업보고서에는 반드시 사업계획서와 대비한 집행실적을 기재하여야 한다.

제13조 [사업감사] ① 감사는 회칙 제27조제5항에 정한 바에 따라 사업 집행상황을 감사하여야 한다.

② 사업감사는 정기감사와 수시감사로 하고, 정기감사는 매 분기마다 실시하며, 수시감사는 감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언제든지 실시한다.

③ 감사는 사업감사 결과 사업 집행상황이 사업계획에 비추어 지연되거나 부적당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④ 감사는 매사업연도 종료 후 총회에 사업감사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제14조 [시행세칙] 이 규칙을 시행하는 데 필요한 세부사항은 규정으로 정한다.

부 칙 (1983. 5. 21.)

① [시행일] 이 규칙은 1983. 6. 1.부터 시행한다.

②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에 집행된 사업은 이 규칙에 의하여 집행된 것으로 본다.

부 칙

이 규칙은 2000. 7. 29.부터 시행한다.



회규관리규칙

1983. 5. 21.

규칙 제1호

개정 2000. 7. 3.
2001. 10. 29.
2010. 2. 8.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이 회의 모든 회규의 제정, 개폐 및 공포에 관한 기준과 절차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규칙에서 회규라 함은 회칙, 규칙 및 규정을 말한다.

제3조 [규정사항] ① 회칙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규정한다.

1. 변호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80조 및 제66조의 각 호에 열거한 사항 (개정 2000. 7. 3.)
2. 법 또는 다른 법령에서 개별적으로 위임한 사항
3. 그 밖의 이 회의 조직, 사업 및 재정에 관한 기본적 사항

② 규칙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규정한다.

1. 법 또는 다른 법령에서 정한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2. 회칙에서 개별적으로 위임한 사항
3. 회칙을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규정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규정한다.

1. 이 회의 업무를 처리함에 있어서 준칙이 될 사항
2. 규칙에서 개별적으로 위임한 사항
3. 규칙을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4조 [효력] ① 모든 회규는 법, 회칙 또는 이 규칙에 정한 기준 및 절차에 따라 제정 또는 개정하여 공포한 것이 아니면 효력이 없다.

② 회칙에 위반되는 규칙과 규칙에 위반되는 규정은 그 위반되는 부분에 한하여 효력이 없다.

③ 회규는 법령 또는 회규에서 달리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회의 모든 회원, 임원 및 직원을 구속한다.

④ 회규는 그 시행일로부터 효력을 발생하고 폐지일에 소멸한다.

제5조 [제정 및 개폐] ① 회칙의 제정 및 개정은 총회의 의결을 거쳐 법무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② 규칙의 제정 및 개폐는 이사회 의결을 거쳐 총회에 부의하고, 총회가 이를 의결하여 정한다.

③ 규정의 제정 및 개폐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정한다.

제6조 [공포] ① 협회장은 회규가 다음 구분에 따라 확정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이를 공포하여야 한다.



1. 회칙은 법무부장관의 인가가 있을 때

2. 규칙은 총회의 의결이 있을 때

3. 규정은 이사회의 의결이 있을 때

② 회규의 공포는 협회장 명의로 된 공포문서와 그 회규를 지방변호사회에 배부하는 것으로 한다.

③ 제2항의 공포문서에는 제1항에 정한 총회 또는 이사회의 의결이나 법무부장관의 인가를 얻어 회규가 확정된 뜻을 기재하고, 협회장이 기명날인한 후 협회인을 압날하고, 그 일자를 명기하여야 한다.

④ 회규의 공포일은 제2항의 공포문서가 발송된 날로 한다.

제7조 [회규번호] ① 규칙 및 규정은 각각 그 번호를 붙여서 공포한다.

② 제1항의 번호는 각 회규별 일련번호로 표시한다.

제8조 [공고] 공포한 회규는 빠짐없이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0. 2. 8.)

제9조 [시행일] 회규는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공포한 날로부터 20일을 경과함으로써 그 효력이 발생한다.

부 칙

① [시행일] 이 규칙은 1983. 6. 1.부터 시행한다.

②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에 공포 또는 시행된 회규는 다른 회규에서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모두 폐지한다. 다만, 1983. 1. 1.부터 시행한 변호사등록사무처리규정은 새 규정으로 대체될 때까지 그 효력을 갖는다.

③ [경과조치] 제7조에 의한 회규번호는 이 규칙시행일 이후부터 기산하여 일련번호를 붙인다.

부 칙

이 규칙은 2000. 7. 29.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칙은 2001. 10. 29.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0. 2. 8.)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협회장 및 대의원 선거규칙

2012. 2. 20.

규칙 제34호

개정

2012. 5. 7. 2012. 10. 15.
2012. 12. 5. 2016. 2. 29.
2018. 2. 26. 2018. 12. 3.
2019. 2. 25. 2022. 4. 25.
2023. 4. 3. 2024. 10. 21.

제 1 장 총 칙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회칙 제11조제2항, 제5항, 제24조제1항, 제2항, 제27조의2제2항에 따라 협회장 및 대의원 선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선거관리위원회] ① 협회장 및 대의원 선거를 관리하고 선거 사무를 담당하기 위하여 선거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를 둔다.

② 위원회의 위원은 30인 이내에서 협회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되, 각 지방변호사회, 법원, 검찰,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언론계, 학계, 기타 분야에서 학식과 덕망이 있는 자 중에서 추천을 받아 임명 또는 위촉할 수 있고 위원장은 위원들의 호선으로 정한다. (개정 2016. 2. 29.)

③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④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이 회의 임원, 각 지방변호사회장, 조사위원회 및 징계위원회의 각 위원은 선거관리위원을 겸직할 수 없다.

⑥ 위원은 이 회의 대의원이 될 수 없고 협회장, 대의원 및 감사 선거의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

제3조 [선거권과 피선거권] ① 협회장 및 대의원 선거의 각 선거공고일 전 15일을 기준으로 이 회의에 등록 및 개업 신고를 한 회원은 각 선거에 관하여 선거권이 있다. 다만, 투표일(사전투표일을 포함한다)을 기준으로 휴업신고를 하거나 등록이 취소된 회원은 선거권이 없다. (단서신설 2018. 2. 26.)

② 전항의 선거권이 있는 회원은 그 선거의 피선거권을 가진다. 다만, 선거일을 기준으로 다음 각 호의 경우에 해당하거나 다른 규정에서 특별히 정한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등록취소 후 재등록한 회원의 경우는 재등록을 한 날부터 2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개정 2023. 4. 3.)

2. 변호사법에 의한 업무정지명령을 받고 그 기간 중에 있는 자
- ③ 정당의 당적을 가진 자는 협회장이 될 수 없다.
- ④ <삭제> (2023. 4. 3.)
- ⑤ <삭제> (2023. 4. 3.)

제 2 장 협회장 선거

제4조 [선거 방법] ① 협회장은 회원의 직접 무기명 비밀투표로 선출하며, 유효 득표의 다수 득표자를 당선자로 한다. 단, 선거권은 대리인에 의하여 행사하지 못한다. (개정 2022. 4. 25.)

② <삭제> (2022. 4. 25.)

③ 후보자가 1인인 경우에는 선거권자 총수의 3분의 1 이상의 찬성표를 득하여야 한다.

④ 제1항의 경우 최다득표자의 수가 2인 이상인 때에는 연장자를 당선인으로 결정한다. (개정 2022. 4. 25.)

제4조의2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온라인투표 서비스 이용 등] ① 위원회는 정보·통신기술을 이용한 기기 및 운용체제를 사용한 전자투표 방법으로 협회장 선거를 실시할 경우 공신력 있는 기관의 전자투표 서비스를 이용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전자투표를 실시할 경우 위원회는 전자투표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의 투표 절차를 따라야 한다.

③ 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전자투표 실시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할 수 있다.

제5조 [선거인 명부] ① 위원회는 선거공고일 4일 전까지 선거권이 있는 선거인을 확정하여 선거인 명부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선거인 명부는 선거공고일에 공고하여야 하고 이 회 홈페이지에서 각 선거인이 선거인 명부를 열람하여 자신의 선거인 명부 정보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③ 위원회는 선거인 명부를 공고한 사실 및 열람 방법, 열람 기간 등에 관한 사항을 전자우편, 기타 위원회가 정한 방법으로 회원에게 1회 이상 공지하여야 한다.

④ 선거권자는 누구든지 선거인 명부의 기재 사항에 이의가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열람 기간 내에 구술 또는 서면으로 위원회에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⑤ 전항의 신청이 있는 때에는 위원회는 지체없이 이를 심사·결정하여 결정 내용을 이의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하고, 이의신청이 이유 있다고 결정한 때에는 즉시 선거인 명부를 정정하여야 한다.

제6조 [선거공고] ① 위원회는 협회장 선거일 34일 전까지 다음 각 호 사항을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4. 10. 21.)

1. 협회장 선거일
2. 협회장 선거인 명부



3. 선거운동기간

4. 후보자 등록 기간 및 절차

5. 선거관련 금지행위 등 기타 위원회가 공고할 필요가 있다고 결정한 사항

② 선거공고는 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다음 각 호의 매체를 1개 이상 이용하여 공고하여야 하고, 선거권자에게 전자우편 등의 방식으로 개별 통지할 수 있다.

1. 법조신문 (개정 2022. 4. 25.)

2. 협회 홈페이지 (www.koreanbar.or.kr)

제7조 [선거일 및 선거운동기간] ① 협회장 선거일은 그 임기가 만료되는 날이 속한 해의 1월 중의 날 중에서 위원회가 정한다.

② 협회장 선거운동기간은 30일로 하고 후보 등록 기간 종료일 다음 날부터 선거일 전날까지로 한다. (개정 2018. 2. 26.) (개정 2024. 10. 21.)

제8조 [후보자등록 및 비용납부] ① 협회장 후보가 되고자 하는 자는 선거공고일로부터 5일 이내에 선거공고 시 후보자 등록일로 지정한 날 및 지정시간까지 위원회에 서면 등록하여야 한다.

② 협회장 후보가 되고자 하는 자는 전항의 후보자 등록 시 1억원의 범위 내에서 위원회가 정한 선거비용을 이 회에 납부하여야 하고, 위원회는 비용납부 증명이 없는 경우 후보자 등록을 수리하지 아니한다.

③ 전항의 납부금은 다음 각 호에 따라 반환한다.

1. 선거 종료 후 선거비용 정산 결과 이 회가 사용한 선거비용 중 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정해진 각 후보별 선거비용 부담액이 납부금보다 적은 경우 그 차액 전액

2. 후보자 등록 후 사망하거나, 천재지변 기타 후보의 귀책사유 없이 후보자 등록 유지가 불가능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이 회가 사용한 선거비용을 공제한 나머지 납부금 전액

3. 전 호의 사유 외에 후보자 사퇴, 후보자 등록 무효의 경우에는 납부금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은 몰취하고, 나머지 금액 범위 내에서 납부금 반환의 사유, 반환 시점, 이 회가 사용한 선거비용 등 구체적인 사정을 고려하여 위원회가 결정한 금액

제9조 [후보자 등록 무효 및 후보 사퇴] ① 후보자 등록 후에 후보자가 피선거권이 없거나 등록 절차 규정에 위반하여 등록한 것이 발견된 때에는 그 등록은 무효로 한다.

② 후보자가 후보 사퇴를 하고자 하는 때에는 위원회에 후보 사퇴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10조 [후보별 선거사무책임자 및 선거회계책임자] ① 후보자는 후보자 등록 후 3일 이내에 이 회 선거의 선거권이 있는 회원 중에서 선거사무책임자 및 선거회계책임자를 정하여 위원회에 신고하여야 한다.

② 선거사무책임자 및 선거회계책임자는 이 회의 회규를 준수하고 위원회의 결정과 지시에 따라 해당 후보의 선거운동, 선거비용 사용 등 선거에 필요한 사무를 수행한다.

제11조 [협회장 선거운동] ① 후보 및 이 회의 선거의 선거권이 있는 자는 누구나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단, 후보자는 다음 각 호의 제한에 따라야 한다.



1. 선거사무소 개설은 1개소에 한한다.
2. 후보자의 학력, 경력, 소신 등을 기재한 문서·도화, 인쇄물을 개별적으로 발송 기타 배포할 수 없다. 단, 본 조 제3항 제5호에 따라 위원회가 발송하는 것과 동일한 문서 또는 그 문서의 내용과 동일한 내용을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인터넷 홈페이지 또는 그 게시판·대화방 등에 글이나 동영상 등으로 게시하거나 전자우편, 문자메시지로 전송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8. 2. 26.)
3. 위원회가 지정한 정기간행물 중 어느 한 곳에 1회에 한해 선거운동을 위한 광고를 할 수 있다. (개정 2012. 10. 15.)
4. 선거운동을 위하여 선거권자의 개별 자택을 방문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8. 2. 26.)
5. 사무국 직원에게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거나 자료 등을 요구하여서는 아니 된다. (신설 2016. 2. 29.)
6. 선거권이 없는 자로 하여금 선거운동을 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신설 2016. 2. 29.)
7. 간판, 현수막, 기구류, 그 밖의 광고물이나 광고시설을 설치·진열·게시하여서는 아니 된다. (신설 2016. 2. 29.)
8. 공청회 또는 합동연설회장에서 연설·토론용으로 사용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확성장치를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신설 2016. 2. 29.)
9. 후보자의 학력, 경력, 소신 등을 기재한 문서·도화, 인쇄물 및 선거벽보 등을 자동차에 부착하여서는 아니 된다. (신설 2016. 2. 29.)
10. 본 조 제3항 각 호에 기재된 선거운동은 할 수 없다. (개정 2016. 2. 29.)
- ② 후보자가 아닌 자는 다음 각 호의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
 1. 선거사무소 개설
 2. 특정 후보의 당선, 낙선 등 기타 선거에 관한 문서·도화, 인쇄물의 발송 다만, 이 조 제3항 제5호에 따라 위원회가 발송하는 것과 동일한 문서 또는 그 문서의 내용과 동일한 내용을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인터넷 홈페이지 또는 그 게시판·대화방 등에 글이나 동영상 등으로 게시하거나 전자우편, 문자메시지로 전송하는 것은 허용된다. (개정 2018. 2. 26.)
 3. 선거권자의 개별 자택 방문
 4. 후보자 이름과 기호가 적힌 어깨띠·표찰 그 밖의 표시물 착용 (개정 2018. 2. 26.)
 5. 사무국 직원에 대한 부당한 영향력 행사 또는 자료 등의 요구 (신설 2016. 2. 29.)
 6. 휴대용 확성장치 및 자동차에 부착된 확성장치 등 사용 (신설 2016. 2. 29.)
 7. 본 조 제3항 각 호에 기재된 선거운동 (개정 2016. 2. 29.)
- ③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선거운동을 주관하여 시행할 수 있다.
 1. 공청회 개최
 2. 합동연설회 개최
 3. 공청회, 합동연설회 등의 중계방송 및 이에 관한 동영상 배포, 홈페이지 게재
 4. 선거공보 제작 및 발송
 5. 후보자가 제작한 후보자의 학력, 경력, 소신 등을 기재한 문서의 3회 발송 (개정 2012. 10.



15.)

6. 선거벽보 제작 및 게시 (개정 2012. 10. 15.)

7. 선거 및 당선에 관한 설문조사, 여론조사 및 공표

8. 기타 위원회가 이 회의 선거 예산의 범위 내에서 위원회가 직접 시행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한 사항

④ 후보자는 제1항 제1호의 선거사무소 개설의 경우 미리 위원회에 그 내용을 신고하여야 한다. 위원회는 위 각 신고의 내용이 제12조의 금지사항에 해당하거나 기타 수정 및 보완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보완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12. 10. 15.)

⑤ 본조의 선거운동과 관련하여 기타 필요한 세부사항은 이 회 규정으로 정한다.

제12조 [금지사항] 누구든지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선거운동기간이 아닌 기간에 사실상 선거운동을 목적으로 하는 행위

2. 제11조 제1항 및 제2항에 위반하는 행위

3. 당선 또는 낙선을 목적으로 금품, 향응, 기부, 기타 이익을 제공하거나 약속하는 행위

4. 후보의 학력, 경력 등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을 위원회에 신고하거나 선거권자, 기타 불특정 다수인에게 알리는 등 선거에 이용하는 행위

5. 당선 또는 낙선을 목적으로 선거권자에게 식사, 주류 등을 접대하는 행위. 다만, 선거사무소의 개소식에 참석한 선거권자에게 위원회가 정하는 통상적인 범위의 다과류와 음식(주류를 제외한다) 등을 해당 식당에서 제공하는 행위는 제외한다. (개정 2016. 2. 29.)

6. 누구든지 선거운동을 위하여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포함한다)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을 공표하는 행위 및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생활을 비방하는 행위. 다만, 진실한 사실로서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8. 2. 26.)

7. 기타 대외적으로 변호사 및 변호사단체의 명예와 품위를 손상시키는 행위

제13조 [조기 투표] ① 선거권자가 부득이한 용무 또는 사고로 인해 투표일에 투표할 수 없는 경우에는 조기 투표를 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조기 투표일 및 투표기간, 전국 투표소 및 개표소 설치, 각 투표소 및 개표소의 선거 사무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공고한다.

③ 조기 투표가 종료되면 위원회는 지체 없이 투표함의 투입구와 자물쇠, 잔여투표용지를 각 봉쇄·봉인하고 미리 정한 장소로 송부하여 선거일 개표 시까지 보관하여야 한다.

④ 조기 투표함은 선거일에 투표가 종료한 후 개함 및 개표한다.

제14조 [투표 및 개표] ① 투표 및 개표에 관한 사항은 위원회가 관리 및 감독한다. 단, 필요한 경우 지방변호사회, 선거관리자, 후보별 선거사무책임자, 기타 회원 등에게 일부를 위탁하거나 수행하게 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각 투표소 및 개표소마다 각 후보가 투표 및 개표참관인으로 지정하여 신청한 자 1인 이상을 투표 및 개표참관인으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18. 2. 26.)



③ 투표가 종료되면 당해 투표소 담당 위원의 개표 지시에 따라 조기 투표함, 선거당일 투표함 순으로 개표를 실시한다.

④ 지방변호사회는 지방변호사회별로 개표 및 집계를 실시하되, 1개의 지방변호사회에 관할 투표소가 수개인 경우에는 위원회가 미리 지정한 개표장소로 모든 투표함을 이송한 후 일괄하여 개표 및 집계를 실시한다. 다만, 천재지변 또는 이에 준하는 사유가 발생하여 투표함의 이송이 늦어지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먼저 도착한 투표함부터 순차적으로 개표 및 집계를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16. 2. 29.)

⑤ 위원회는 지방변호사회별로 투표 및 개표절차를 주관할 위원 및 위원의 지시에 따라 투표 및 개표 사무를 수행할 자를 각 1인 이상을 배치하고 제2항에 따라 지정한 투표 및 개표참관인 각 1인 이상을 배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8. 2. 26.)

제15조 [투표 무효]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투표는 무효로 한다.

1. 이 회가 정한 투표용지를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
2. 어느 난에도 기표하지 않거나 둘 이상의 난에 기표한 경우
3. 어느 난에 기표한 것인지 식별할 수 없는 경우
4. 위원회가 정한 이외의 문자 또는 표시로 기표하거나 서로 다른 두 개의 표시를 동시에 한 경우
5. 기타 위원회가 투표가 무효인 경우로 사전 공고하거나 사후에 결정한 경우

제16조 [투표결과 공고] ① 위원장은 개표 결과를 집계하여 당선자가 결정되면 지체 없이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2. 4. 25.)

② 천재지변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개표를 모두 마치지 못하였다 하더라도 개표를 마치지 못한 지역의 투표가 선거의 결과에 영향을 미칠 염려가 없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위원회가 당선자를 결정할 수 있다. (개정 2022. 4. 25.)

제17조 <삭제> (2022. 4. 25.)

제18조 [재선거] ①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재선거를 실시한다.

1. 당선자가 없거나 임기 개시 전에 사퇴, 사망하거나 피선거권이 없게 된 때
2. 제31조 규정에 의하여 선거 또는 당선이 무효로 된 때
- ② 제1항의 선거는 그 사유가 확정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실시하여야 한다.
- ③ 위원회는 재선거일, 후보자 등록 등 재선거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제19조 [보궐선거] ① 협회장이 궐위된 때에는 보궐선거를 실시한다.

- ② 협회장 권한 대행자는 협회장이 궐위된 때에는 지체 없이 총회 의장과 위원회 위원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③ 보궐선거는 임기 만료에 의한 선거와 같은 방법으로 실시하되, 선거일은 협회장이 궐위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위원회가 정하는 날로 한다.

제20조 [선거사무 위탁 및 선거관리자] ① 위원회는 이 규칙에서 정한 선거사무의 이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지방변호사회에 사무의 일부를 위탁하거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② 전항의 사무 위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위원회는 지방변호사회로부터 소속 회원을 추천받아 당해 지방변호사회의 선거관리자로 1인 이상을 위촉할 수 있다.

③ 위원회로부터 사무 위탁 및 협조 요청을 받은 지방변호사회와 선거관리자는 위원회의 선거사무 이행에 적극 협조하고 이를 공정하게 수행하여야 한다.

제 3 장 대의원 선거

제21조 [대의원 선출] ① 선출직 대의원은 회원들의 직접 무기명 투표로 선출하며 최다득표자 순으로 선출한다. 단, 최다득표자의 수가 2인 이상인 때에는 연장자를 당선인으로 결정한다.

② 선거권은 대리인에 의하여 행사하지 못한다.

③ <삭제> (2012. 12. 5.)

제21조의2 [대의원선거 시 전자투표 실시 등] ① 대의원은 정보·통신기술을 이용한 기기 및 운용체제를 사용한 전자투표 방법으로 선출할 수 있다. 단, 전자투표의 실시 여부는 이사회의 의결로 정한다.

② 전자투표를 실시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원칙이 준수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1. 누구든지 쉽고 편리하게 투표할 수 있어야 한다.
2. 투표의 비밀과 본인인증 절차 등을 통한 직접선거의 원칙이 보장되어야 한다.
3. 투표 및 개표 결과를 검증할 수 있어야 한다.

③ 위원회는 전자투표 실시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할 수 있다.

④ 위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시행된 전자투·개표는 이 규칙에 따라 시행한 투·개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진다.

제22조 [대의원의 수] 이사회는 회칙 제11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정하여야 한다.

1. 400인 이상 500인 이하의 범위에서 대의원의 총수
2. 지방변호사회별로 비례 배정할 대의원의 수 및 균등 할당 배정할 대의원의 수
3. 대의원 1인을 배정할 일정 회원의 수
4. 대의원 1인을 배정할 일정 회원의 수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의 대의원 배정 기준 및 그 수에 관한 사항
5. 기타 대의원의 수에 관하여 이사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제23조 [대의원 선거일 및 선거운동기간] ① 대의원선거는 대의원의 임기 만료일 20일 전까지 위원회가 정한 날에 실시한다. (개정 2012. 10. 15.)

② 대의원 선거운동기간은 14일로 하고 후보자 등록 기간 종료일 다음 날부터 선거일 전날까지로 한다. (개정 2018. 2. 26.)



제23조의2 [후보자등록] 대의원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는 선거공고일로부터 5일 이내에 위원회에 서면 등록하여야 한다. (신설 2012. 10. 15.)

제24조 [대의원 선거구 확정 및 선거인 명부] ① 대의원 선거는 전국 단위로 실시하되, 지방변호사회 및 선거권자의 사무소 소재지별로 구분하여 확정한다.

② 위원회는 대의원 선거공고일 10일 전까지 선거권자인 소속 회원의 사무소 소재지를 기준으로 선거구를 구분하여 확정하고 선거구 확정표를 작성하여야 한다. 이 경우 1개의 선거구당 3인 이상 7인 이하의 대의원이 선출될 수 있도록 확정하여야 하고, 3인 미만의 단수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3인 미만의 대의원을 선출하는 선거구로 확정할 수 있다.

③ 1개의 법무법인 등의 소속 선거권자 수가 대의원 3인 이상 7인 이하 기준의 선거구 선거권자의 수 이상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법무법인 등 별로 선거구를 확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전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8인 이상의 대의원을 선출하는 선거구를 확정할 수 있다.

④ 위원회는 대의원 선거공고일 10일 전까지 제3조 규정에 따라 대의원 선거권이 있는 선거인 명부 및 대의원 선거구별 선거인 명부를 각 작성하여야 한다.

⑤, ⑥, ⑦ <삭제> (2012. 10. 15.)

제25조 [대의원 선거공고] 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2. 10. 15.)

1. 대의원 선거일
 2. 대의원 선거구 확정표 및 선거인 명부
 3. 선거운동기간
 4. 후보자 등록 기간 및 절차
 5. 선거관련 금지행위 등 위원회가 공고할 필요가 있다고 결정한 사항
- ② 선거공고는 이 회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여야 하고 선거권자에게 전자우편 등의 방식으로 개별 통지할 수 있다.

제26조 [대의원 선거운동 및 금지행위] ① 대의원 후보 및 대의원 선거권이 있는 자는 누구나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단, 후보자는 다음 각 호의 제한에 따라야 한다.

1. 후보자의 학력, 경력, 소신 등을 기재한 문서·도화, 인쇄물을 개별적으로 발송 기타 배포할 수 없다. 단, 본 조 제4항에 따라 후보자가 위원회에 제출한 자기소개서와 동일한 문서를 전자우편, 문자메시지 등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발송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2. 10. 15.)

2. 선거권자의 개별 자택을 방문하여서는 아니 된다.
3. 제11조제3항 각 호에 기재된 선거운동은 할 수 없다.

② 후보자가 아닌 자는 다음 각 호의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

1. 선거사무소 개설
2. 특정 후보의 당선 및 낙선 등 기타 선거에 관한 문서·도화 인쇄물의 발송
3. 선거권자의 개별 자택 방문
4. 제11조제3항 각 호에 기재된 선거운동



- ③ 선거공보는 이 회 홈페이지 등에 게재하여야 하고 선거권자에게 전자우편 등의 방식으로 개별 통지할 수 있다. (개정 2012. 10. 15.)
- ④ 위원회는 후보자가 작성하여 제출한 자기 소개서 등을 이 회 홈페이지에 게재하는 방식으로 선거권자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개정 2012. 10. 15.)
- ⑤ 제12조의 규정은 대의원 선거에 준용한다. (신설 2012. 10. 15.)
- ⑥ 위원회는 대의원 선거 후보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 그에게 선거권자의 성명, 자격시험, 생년월일에 관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 (신설 2018. 2. 26.)

제27조 [선거 사무] 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8. 2. 26.)

- 1. 선거구 확정, 선거인 명부 작성 및 이에 관한 열람, 이의신청 등에 관한 사항
- 2. 후보자 등록에 관한 사항
- 3. 선거공고에 관한 사항
- 4. <삭제> (2012. 10. 15.)
- 5. 선거운동의 제한 및 금지사항 위반여부에 관한 신고 및 감독에 관한 사항
- 6. 투표소 및 개표소 지정과 설치, 투표용지 배부, 개표, 집계 또는 전자투표 실시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등 선거 당일 투표 및 개표에 필요한 일체의 사항 (개정 2012. 12. 5.)
- 7. 대의원 재선거 및 보궐선거에 관한 사항
- 8. 기타 이 회 또는 이 회의 회규에서 특별히 정하지 아니한 사항 중 대의원 선거 실시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 ② 위원회는 전항의 각 사무와 관련하여 위원 1인 이상을 지방변호사회에 파견하여 참여하게 할 수 있다.

제28조 [무투표당선] 선거구별 대의원 후보자 수가 당해 선거구에서 선출하여야 할 대의원의 수보다 적거나 같은 경우에는 투표를 실시하지 아니하고, 선거일에 그 후보자를 당선인으로 결정한다.

제29조 [보고] ① 위원회는 대의원 선거 종료 후 지체 없이 투표, 개표 및 집계의 결과, 당선인 명단 및 기타 이 회가 요청하는 사항을 협회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2. 10. 15.)

② 회칙 제11조 제2항에 따라 배정된 수의 대의원이 선출되지 못한 경우 미선출 지역을 관할하는 지방변호사회 회장이 대의원 선출 및 보고 기한 경과 후 10일 이내에 대의원을 지명하여 이 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서울지방변호사회의 미선출 대의원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지명한다. (개정 2018. 12. 3.)

- 1. 협회장 당선자 및 서울지방변호사회 회장이 동일한 비율로 대의원을 지명한다.
- 2. 제1호에 따라 대의원을 지명한 후 남는 미선출 대의원은 서울지방변호사회 회장이 지명한다.
- 3. 미선출 대의원 수가 1인인 경우에는 서울지방변호사회 회장이 지명한다.

제30조 [대의원 결원] ① 위원회는 대의원이 임기 개시 전 또는 임기 중 사퇴·사망하거나, 피선거권이 없게 되는 등의 사유로 전체 대의원 수의 10분의 1 또는 지방변호사회별 대의원 수의 3



분의 1 이상의 결원이 발생한 경우에는 그 사유발생일로부터 60일 이내에 보궐선거를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2. 10. 15.)

② 전항의 기간 내에 실시한 보궐선거에서 대의원이 선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미선출 지역을 관할하는 지방변호사회 회장이 후임대의원을 지명한다. 다만, 서울지방변호사회의 미선출 후임대의원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지명한다.

(개정 2018. 12. 3.)

1. 협회장 당선자 및 서울지방변호사회 회장이 동일한 비율로 대의원을 지명한다.
2. 제1호에 따라 대의원을 지명한 후 남는 미선출 대의원은 서울지방변호사회 회장이 지명한다.
3. 미선출 대의원 수가 1인인 경우에는 서울지방변호사회 회장이 지명한다.

제30조의2 [준용규정] 대의원 선거에 관하여 제5조 제2항 내지 제5항, 제9조, 제14조 내지 제16조 및 제20조를 준용한다.

제 4 장 보 칙

제31조 [이의신청] ① 선거 또는 당선의 효력에 관하여 이의가 있는 후보자는 선거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위원회에 서면으로 이의신청할 수 있다. (단서삭제 2012. 10. 15.)

② 위원회는 전항의 이의신청에 대하여는 후보자 등록, 선거운동, 선거절차 등이 회칙 및 이규칙에 위반된 사실이 있고, 당해 위반사실이 선거 및 당선의 결과에 중대한 영향을 미쳤다고 인정될 때 위원회 재적위원 3분의 2의 찬성으로 선거 또는 당선이 무효라는 의견을 정할 수 있다.

③ 위원회는 이의신청을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심사 의견을 첨부하여 협회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④ 협회장은 위원회의 선거 또는 당선 무효의 의견이 있고 이의신청이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지체 없이 임시총회에 부의하여 그 가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⑤ 총회가 선거 또는 당선 무효의 결정을 함에 있어서는 재적 대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 대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제32조 [위반행위에 대한 제재] ① 위원회는 이 규칙에 위반한 자에 대하여 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제재할 수 있다.

1. 구두 또는 서면에 의한 중지 요청 또는 경고
2. 선거권자에게 위반사실 및 제재내용 공지
3. 선거일 각 투표소에 위반사실 및 제재내용 게시
4. 징계개시청구권자에게 징계 개시 요청 (개정 2016. 2. 29.)

② 전항 각 호의 제재는 병과할 수 있다.



제33조 [선거비용] ① 협회장 선거에 소요되는 선거 비용은 후보자 부담을 원칙으로 한다. 단, 이 회의 예산 범위 내에서 이사회가 이 회의 부담 부분을 정할 수 있다.

② 대의원 선거 관리에 소요되는 선거 비용은 이 회가 부담한다. (신설 2012. 10. 15.)

제34조 [시행규정] 이 규칙을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정으로 정한다.

부 칙

① [시행일] 이 규칙은 2012. 3. 1.부터 시행한다.

② [경과조치] 현재의 협회장 및 대의원은 이 규칙에 의하여 당선된 것으로 본다. 그 임기는 종전 규칙에 의한 선출로 정하여진 임기만료일까지로 한다.

부 칙 (2012. 10. 15.)

① [시행일] 이 규칙은 회칙이 법무부장관의 인가를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② [경과조치] 현재의 대의원은 이 규칙에 의하여 당선된 것으로 본다. 그 임기는 임원을 선출하는 정기총회 전일까지로 한다.

부 칙 (2012. 12. 5.)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6. 2. 29.)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8. 2. 26.)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8. 12. 3.)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경과규정] ① 제29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2019년 2월 정기총회 구성 시부터 적용한다.

② 제30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2019년 2월 정기총회부터 적용한다.

부 칙 (2019. 5. 28.)

이 규칙은 회칙이 법무부장관의 인가를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22. 9. 28.)

이 규칙은 회칙이 법무부장관의 인가를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23. 4. 3.)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24. 10. 2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협회장 및 대의원 선거규칙 시행규정

2012. 9. 24.

규정 제115호

개정

2016. 2. 15. 2016. 11. 18.
2018. 2. 5. 2018. 10. 22.
2018. 11. 19. 2018. 12. 28.
2020. 12. 28. 2021. 10. 5.
2022. 2. 14. 2024. 9. 9.

제 1 장 총 칙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협회장 및 대의원 선거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 장 협회장 선거

제 1 절 총 칙

제2조 [위임] ① 선거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협회장 선거에 있어서 투표 및 개표의 관리를 지방변호사회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 다만, 이 규정에서 위원회에서 실시하기로 정한 사항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위원회는 지방변호사회로부터 소속 회원을 추천받아 당해 지방변호사회의 선거관리자로 1인 이상을 위촉한다.

제 2 절 선거인명부

제3조 [명부작성] ① 위원회는 선거공고일 전 15일 현재 등록 및 개업신고를 한 개인회원을 조사하여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하여 지방변호사회별로 회원성씨의 가, 나, 다 순에 의한 선거인명부 정본 1부를 선거공고일 4일 전까지 작성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는 제15조제2항의 투표소에 제1항의 선거인명부를 사본하여 해당 지방변호사회의 선거인명부 각 1부를 비치하여야 한다.

③ 위원회는 제1항 및 제2항의 선거인명부에 정본, 사본임을 표시하여 위원회의 직인을 각 날인하여야 한다.



제4조 [명부 열람] ① 선거인명부의 열람 기간은 위원회가 정한다.

② 선거권자는 누구든지 선거인명부에 누락 또는 오기가 있거나, 선거인의 자격에 관하여 이의가 있는 때에는 제1항의 열람 기간 내에 구술 또는 서면으로 위원회에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③ 선거인명부를 공고한 사실, 열람 방법 및 열람 기간 등에 관한 사항의 공지는 규칙 제6조 제2항의 방법에 의한다.

제 3 절 후보자

제5조 [등록신청] ① 협회장 후보가 되고자 하는 자는 후보자등록신청 시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1. 이력서 1부
2. 최종학력 및 최고 학위 증명서
3. <삭제> (2018. 2. 5.)
4. 과태료 이상의 징계전력에 관한 증명서
5. 명함판 사진 5장 및 사진 파일
6. 선거비용 납부증명서 1부
7. 후보자의 의견 및 공약 등을 기술한 소개서 원고 1부 및 그 파일
8. 범죄경력조회자료 (신설 2021. 10. 5.)

② 협회장 후보자 등록신청서는 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한다.

③ 제1항제7호의 후보자 소개서 원고의 분량은 200자 원고지 40장 이내로 한다.

④ 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사항을 협회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하며, 공고 양식 및 방법은 위원회가 정한다.

제6조 [등록신청의 수리 거부] 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후보등록신청은 이를 수리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신청기한이 지난 후의 등록신청
2. 선거비용납부 증명이 없는 등록신청
3. 피선거권이 없는 자의 등록신청

② 위원회는 제5조제1항 및 제2항에 의한 후보자등록신청서 및 그 첨부 서류에 흠결이 있는 경우 기간을 정하여 보정할 것을 명하여야 하고, 위 보정기간 내 보정을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후보자등록신청을 수리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7조 [후보자 사퇴] 규칙 제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후보 사퇴 신청서는 별지 제3호 서식에 의한다.

제8조 [등록 등 공고] ① 위원회는 후보자가 등록·사퇴·사망하거나 등록이 무효로 된 때에는 즉시 이를 규칙 제6조 제2항의 방법에 의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공고는 별지 제4호의 가, 나, 다의 각 서식에 의한다.

제9조 [후보자의 게재 순위] ① 후보자의 게재 순위는 후보자 등록 마감 후 후보자 또는 그 대리인



의 추천으로 정한다. 다만, 후보자의 대리인은 추천 전에 후보자의 위임장을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추천을 함에 있어 후보자 또는 그 대리인이 불참하였을 때에는 참석자의 추천 이후 잔여 순위번호 중 해당 후보자의 연장자순으로 순위번호를 부여한다.

제 4 절 선거운동

제10조 [광고] 규칙 제11조제1항제3호에 의한 정기간행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조신문 (개정 2022. 2. 14.)
2. <삭 제> (개정 2024. 9. 9.)
3. 인권과정의 (개정 2024. 9. 9.)

제11조 [선거공보] 규칙 제11조제3항제4호에 의한 선거공보는 선거절차에 대한 제반 사항을 회원이 알 수 있도록 작성하여야 한다. 그 규격 및 내용은 위원회가 정한다.

제12조 [후보자의 선거 인쇄물] ① 규칙 제11조제3항제5호에 의한 인쇄물의 규격은 길이 297mm, 너비 210mm 이내로 작성하여야 하며, 그 면수는 12면 이내로 한다.

② 인쇄물의 게재내용은 후보자 자신의 사진·성명·전화번호·학력·경력, 그 밖에 홍보에 필요한 사항을 게재하여야 하며, 다른 후보자에 관한 사항은 게재할 수 없다.

제13조 [선거벽보] ① 규칙 제11조제3항제6호에 의한 선거벽보는 후보자마다 1종으로 하고, 그 규격은 길이 530mm, 너비 380mm 이내로 작성하여야 한다. 이 경우 선거벽보를 인쇄하는 종이는 100g/m² 이내로 한다.

② 선거벽보는 회원이 많이 볼 수 있는 곳에 부착하여야 한다.

제 5 절 선거절차

제14조 [선거공고] 규칙 제6조에 의한 공고는 별지 제5호 서식에 의한다.

제15조 [투표구] ① 1개의 지방번호사회를 1개의 투표구로 한다. 다만, 선거권자는 다른 투표구의 투표소에서도 투표할 수 있다. (개정 2016. 2. 15.)

② 지방번호사회의 지회별로 투표소를 둘 수 있다.

제16조 [투표소의 설비] 선거관리자는 투표개시 전까지 투표소에 기표소, 위원회 위원 또는 선거관리자의 좌석, 선거인명부, 투표용지, 투표함, 투표참관인의 참관 등에 필요한 좌석을 각각 설비하여야 한다.

제17조 [투표용지 등] ① 위원회는 투표용지와 투표함을 조제하여 각 투표소에 선거일(부재자 선거일을 포함한다) 전에 송부하여야 한다.

② 투표용지는 별지 제6호 서식에 의한다. 다만, 협회장 선거 후보자가 1인인 경우 투표용지는 별지 제6-1호 서식에 의한다.

③ 투표용지에는 위원회의 직인을 날인하여야 한다.



④ 투표용지는 정해진 후보자 게재순위에 의하여 후보자의 성명을 한글과 한자로 병기하여 인쇄하여야 한다.

⑤ 후보자 등록기간이 지난 후에 후보자가 사퇴·사망하거나 등록이 무효로 된 때라도 투표용지에서 그 후보자의 성명을 말소하지 아니한다.

제18조 [투표용지의 교부] ① 선거관리자는 공직선거법상 인정되는 신분증명서 또는 변호사신분증(모바일 신분증 포함)에 의하여 선거인명부에 등재된 선거권자임을 확인한 후에 투표용지를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2024. 9. 9.)

② 투표용지는 멸실, 훼손 기타 어떠한 이유로든 재교부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9조 [투표함의 규격] 투표함의 규격은 별지 제1호 그림과 같이 하고, 투표소마다 투표함을 1개씩 설치한다. 다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또는 각급 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투표함을 빌려서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0조 [투표방법] ① 투표권자는 자신이 투표소에 가서 투표참관인의 참여 아래 선거인명부에 서명한 후, 투표용지 1매를 교부받아 기표소에서 투표용지에 후보자가 기재된 난 중 하나의 기표란을 선택하여 기표도구를 이용하여 기표한 후 그 자리에서 보이지 아니하게 접어 선거관리자와 투표참관인의 면전에서 투표함에 넣어야 한다.

② 투표용지에는 선거인의 성명, 기타 선거인을 추정할 수 있는 표시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21조 [기표소설치] ① 투표소의 기표소는 타인이 엿볼 수 없도록 설비하여야 하며 기표 도구를 비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기표 도구의 모양 및 규격 등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위원회에서 정한다.

제22조 [투표시간] ① 투표시간은 선거일 08:00~20:00로 한다. 다만, 마감시간 전에 투표를 하기 위해 대기하고 있는 선거권자에게는 순번표를 부여하여 투표하게 한 후 종료하여야 한다. (개정 2016. 11. 18.)

② 규칙 제21조의2에 따라 전자투표를 실시하는 경우 제1항에도 불구하고 위원회는 투표시간을 달리 정할 수 있다.

제23조 [투·개표참관인의 신고] ① 각 후보자 측은 투·개표참관인을 각 선정하여 투표소 설치일 5일 전까지 별지 제7호 서식에 의하여 위원회에 신고하여야 한다.

② 각 후보의 투·개표소별 투·개표참관인의 수는 각 2인 이하로 한다.

제24조 [투·개표참관] ① 투·개표참관인이 투표 및 개표 참관 도중에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선거관리자를 통하여서만 그 시정을 요구하여야 한다.

② 선거관리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정요구에 대하여 즉시 그 가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제25조 [사무종사원] 투·개표사무를 보조하기 위하여 각 지방변호사회의 사무국직원 중에서 투·개표 사무종사원을 둘 수 있다.

제26조 [투·개표참관인 등의 기장] 투·개표소에 출입하는 위원회 위원 또는 선거관리자, 투·개표사무원 및 투·개표참관인의 가슴에 부착하는 기장은 왼쪽 가슴에 잘 보이도록 부착하여야 하며



그 규격은 별지 제2호 그림에 의한다.

제27조 [투표록] 투표록의 서식은 별지 제8호 서식에 의한다. 단, 전자투표를 실시할 경우 제8-1호 서식에 의한다. (단서신설 2020. 12. 28.)

제28조 [투표함 등의 송부] ① 투표를 마감한 때에는 즉시 투표함과 잔여투표용지를 위원회가 지정한 장소에 송부하여야 한다.

② 투표함을 송부함에 있어서는 투표함의 투입구를 봉쇄한 후 그 투입구와 자물쇠에 선거관리자가 봉인을 하여야 하며, 잔여투표용지는 봉투에 넣고 같은 방법으로 봉인을 하여야 한다.

제29조 [투표함 등의 보관] 투표함과 잔여투표용지는 개표 시까지 선거관리자의 책임하에 선거관리자가 지정한 장소에 보관하여야 한다.

제30조 [개표소의 설치] 선거관리자는 적당한 장소에 개표소를 설치하고, 설치된 개표소에 투표함의 개함, 점검, 검산, 개표참관인의 개표참관 등에 필요한 장비를 각각 설비하여야 한다.

제31조 [개표절차] ① 선거관리자는 투표가 종료된 후 지정한 개표장소로 투표함을 이동한 후 즉시 개표한다.

② 투표함의 개함 및 점검은 선거관리자가 행한다.

제32조 [개표결과의 보고] ① 선거관리자는 득표수를 검열하고, 개표록에 서명·날인 한 후에 즉시 개표결과를 위원회가 정하는 팩시밀리 또는 전자메일 전송방법으로 위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8. 2. 5.)

② 제1항의 서면은 별지 제9호 서식에 의한다.

제33조 [투표지의 봉인] 개표가 끝난 때에는 개표한 투표용지를 봉인하고, 선거관리자가 서명·날인 하여야 한다.

제34조 [당선자의 확정 및 공고] ① 위원회는 당선자가 확정된 때에는 즉시 이를 공표 및 공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공고는 규칙 제6조제2항의 방법에 의한다.

제35조 [선거록의 작성 및 보관] ① 제32조의 개표록을 송부 받은 위원회는 지체 없이 후보자별 득표수를 계산·공표하고 선거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2018. 2. 5.)

② 제1항의 서면은 별지 제9-1호 서식에 의한다. (신설 2018. 2. 5.)

제35조의2 [선거록 등의 보관] 위원회는 투표록, 개표록 및 선거록을 개표일로부터 2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신설 2018. 2. 5.)

제 6 절 조기투표

제36조 [조기투표 기간 등] ① 조기투표는 1일간 실시하여야 하며, 그 투표일은 선거일 전 날로 한다. 다만, 투표일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인 경우는 직전 업무일로 한다.

② 조기투표소는 위원회가 회원들이 투표하기 편리한 장소에 설치하고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③ 조기투표시간은 선거일 08:00~20:00로 한다. 다만, 마감시간 전에 투표를 하기 위해 대기하고 있는 선거권자에게는 순번호를 부여하여 투표하게 한 후 종료하여야 한다. (개정 2016. 11. 18.)

제37조 [조기투표함의 봉쇄·봉인] ① 조기투표가 종료되면 선거관리자는 투표참관인의 참관하에 투표함의 투입구와 자물쇠를 봉쇄·봉인하여야 한다.

② 투표함의 열쇠와 잔여투표용지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해 각각 봉인하여야 한다.

제38조 [투표함 등의 운반] 선거관리자는 조기투표가 종료되면 즉시 투표함과 그 열쇠, 투표록, 잔여투표용지, 선거인명부 등 선거에 관한 서류를 위원회가 정한 장소로 운반하여야 한다.

제 7 절 <> <2022. 2. 14.>

제39조 <> (2022. 2. 14.)

제8절 전자투표 <신설 2020. 12. 28.>

제40조 [정의] 전자투표를 실시할 경우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온라인투표: 온라인투표는 선거권자가 전자투표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으로부터 전송받은 문자메시지 또는 전자우편 정보를 통해 온라인투표시스템에 접속하여 투표하는 방법
2. 현장투표: 현장투표는 선거권자가 선거관리위원회가 지정한 투표소에 출석하여 해당 투표소에 마련된 PC나 기타 전자기기를 이용하여 투표하는 방법

제41조 [전자투표 원칙] 전자투표는 온라인투표와 현장투표를 함께 실시하며, 선거권자는 개인의사에 따라 이 중 한 가지 방법을 선택하여 투표한다. 단, 투표장소, 방법, 효과, 비용, 기타 사회적인 상황 등을 고려하여 선거관리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현장투표는 실시하지 않을 수 있다.

제42조 [개인정보 수집 등에 관한 동의] 전자투표를 실시할 경우 선거권자에게 전자투표 관련 업무처리를 목적으로 하는 개인정보의 수집 및 제3자 개인정보 제공에 대하여 사전 동의를 받아야 한다, 단, 다른 절차를 통하여 이미 동의를 한 경우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 3 장 대의원 선거

제 1 절 선거인명부

제43조 [명부작성] ① 위원회는 선거공고일 10일 전까지 규칙 제3조에 따라 등록 및 개업신고를



한 개인회원을 조사하여 지방변호사회별로 회원성씨의 가, 나, 다 순에 의한 선거인명부 및 대의원 선거구별 선거인명부 정본 각 1부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는 각 투표소에 제1항의 선거인명부를 사본하여 1부를 비치하여야 한다.

③ 위원회는 제1항 및 제2항의 선거인명부에 정본, 사본임을 표시하여 위원회의 직인을 각 날인하여야 한다.

④ 규칙 제21조의2에 의한 전자투표 방법으로 투표를 실시하는 경우 제2항 및 제3항의 선거인명부의 비치는 이 회 홈페이지 등에 게재하는 방법으로 갈음할 수 있다.

(제40조에서 이동 2020. 12. 28.)

제44조 [명부 열람] ① 선거인명부의 열람 기간은 위원회가 정한다.

② 선거권자는 누구든지 선거인명부에 누락 또는 오기가 있거나, 선거인의 자격에 관하여 이의가 있는 때에는 제1항의 열람 기간 내에 구술 또는 서면으로 위원회에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③ 선거인명부를 공고한 사실, 열람 방법 및 열람 기간 등에 관한 사항의 공지는 규칙 제25조 제2항의 방법에 의한다.

(제41조에서 이동 2020. 12. 28.)

제 2 절 후보자

제45조 [등록신청] ① 대의원 후보가 되고자 하는 자는 후보자등록신청 시 사진을 첨부한 이력서와 자기 소개서 및 그 파일, 과태료 이상의 징계전력에 관한 증명서를 별지 제2-1호 서식의 후보자등록신청서와 함께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8. 11. 19.)

② 전항의 자기 소개서 원고의 분량은 200자 원고지 10장 이내로 한다.

③ 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사항을 협회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하며, 공고 양식 및 방법은 위원회가 정한다.

(제42조에서 이동 2020. 12. 28.)

제46조 [등록신청의 수리 거부] 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후보등록신청은 이를 수리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신청기한이 지난 후의 등록신청

2. 피선거권이 없는 자의 등록신청

② 위원회는 제42조제1항에 의한 후보자등록신청서 및 그 첨부 서류에 흠결이 있는 경우 기간을 정하여 보정할 것을 명하여야 하고, 위 보정기간 내 보정을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후보자등록신청을 수리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43조에서 이동 2020. 12. 28.)

제47조 [후보자 사퇴] 규칙 제30조의2에 따라 후보 사퇴 신청서는 별지 제3호 서식에 의한다.

(제44조에서 이동 2020. 12. 28.)

제48조 [등록 등 공고] ① 위원회는 후보자가 등록·사퇴·사망하거나 등록이 무효로 된 때에는 즉시

이를 규칙 제25조 제2항의 방법에 의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공고는 별지 제4-1호의 가, 나, 다의 각 서식에 의한다.

(제45조에서 이동 2020. 12. 28.)

제49조 [후보자의 게재 순위] 후보자의 게재 순위는 후보자 등록 접수 순서에 따른다.

(제46조에서 이동 2020. 12. 28.)

제 3 절 선거절차

제50조 [선거공고] 규칙 제25조제2항에 의한 공고는 별지 제5-1호 서식에 의한다.

(제47조에서 이동 2020. 12. 28.)

제51조 [준용규정] ① 대의원 선거에 관하여 제16조 내지 제35조를 준용한다.

② 전자투표를 실시하는 경우 제32조, 제34조 및 제35조를 준용한다.

(제48조에서 이동 2020. 12. 28.)

제 4 장 보 칙

제52조 [당선자공고 등] ① 위원장은 선거에 의하여 당선된 당선자 명단을 별지 제10호 및 제10-1호 서식에 의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공고에는 규칙 제6조제2항을 준용한다.

(제49조에서 이동 2020. 12. 28.)

제53조 [재선거·보궐선거] 제2장제1절 내지 제7절의 규정은 규칙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재선거와 규칙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보궐선거에 준용하며, 재선거 또는 보궐선거임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50조에서 이동 2020. 12. 28.)

제54조 [이의신청] ① 규칙 제3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선거 및 당선의 효력에 관한 이의신청서에는 취지와 이유 및 증거를 명시하여야 한다.

② 규칙 제31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위원회의 의견서는 주문과 이유 및 증거를 제시하고 관여위원회 위원 전원이 서명·날인하여야 한다.

(제51조에서 이동 2020. 12. 28.)

부 칙

이 규정은 회칙이 법무부장관의 인가를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6. 2. 15.)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6. 11. 18.)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8. 2. 5.)

이 규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8. 10. 22.)

이 규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8. 11. 19.)

이 규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8. 12. 28.)

이 규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20. 12. 28.)

이 규정은 2021. 1. 1.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21. 10. 5.)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22. 9. 28. 회칙인가)

이 규정은 회칙이 법무부장관의 인가를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24. 9. 9.)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1호 서식

선 거 인 명 부 (정본, 사본)

○○지방변호사회, 선거관리위원회 직인

[illegible]



별지 제2호 서식 (개정 2018. 11. 19.)

협회장 후보자 등록 신청서

년 월 일에 시행하는 협회장 선거에 있어 다음과 같이
협회장 후보자로 등록을 신청합니다.

후 보 자 구 분	협 회 장
성 명	(한자)
변 호 사 등 록 연 월 일	년 월 일
생 년 월 일	년 월 일
소 속 지 방 변 호 사 회	
사 무 소	

년 월 일

협회장 후보자

⑨

- 첨 ☐ 이력서 ☐ 명함판 사진 5장 및 사진 파일
 부 ☐ 최종학력 및 최고 학위 증명서 ☐ 선거비용 납부증명서
 서 ☐ 과태료 이상의 징계전력에 관한 증명서 ☐ 후보자의 의견 및 공약 등을 기술한
 류 소개서 원고 및 그 파일

대한변호사협회 선거관리위원회 귀중



별지 제2-1호 서식 (개정 2018. 11. 19.)

대의원 후보자 등록 신청서

년 월 일에 시행하는 대의원 선거에 있어 다음과 같이
대의원 후보자로 등록을 신청합니다.

후 보 자 구 분	대 의 원
성 명	(한자)
변 호 사 등 록 연 월 일	년 월 일
생 년 월 일	년 월 일
소 속 지 방 변 호 사 회	
사 무 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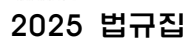
년 월 일

대의원 후보자



첨부서류 □ 사진을 첨부한 이력서, 자기소개서 및 그 파일, 과태료 이상의 징계전력에 관한
증명서

대한변호사협회 선거관리위원회 귀중



별지 제3호 서식

사 퇴 신 고 서

본인은 년 월 일에 시행하는 (협회장/대의원) 선거에 있어 후보자로 등록신청 하였으나 에 의하여 사퇴하고자 이 신고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대한변호사협회 선거관리위원회 귀중



별지 제4호 서식 (가) (개정 2018. 11. 19.)

공고 제 호

협 회 장 후 보 자 등 록 공 고

년 월 일에 시행하는 협회장 선거에 있어 후보자로서 다음과 같이 등록되었으므로 이를 공고함.

년 월 일

대한변호사협회 선거관리위원회

후 보 자 구 분	협 회 장
성 명	
변 호 사 등 록 연 월 일	
생 년 월 일	
소 속 지 방 변 호 사 회	
사 무 소	
최종 학력 및 최고 학위	
과태료 이상의 징계전력	



별지 제4호 서식 (나)

공고 제 호

후보자 사퇴, 사망 공고

년 월 일에 시행하는 협회장 선거에 있어 다음의 후보자는
 년 월 일 사퇴, 사망하였으므로 이를 공고함.

년 월 일

대한변호사협회 선거관리위원회

후보자 명단

번 호	후 보 자 명	비 고



별지 제4호 서식 (다)

공고 제 호

후보자 등록무효 공고

년 월 일에 시행하는 협회장 선거에 있어 후보자는 협회장 및 대의원 선거규칙 제9조에 의하여 그 후보자 등록이 무효가 되었으므로 이를 공고함.

다 음

1. 후 보 자 구 분 :
2. 성 명 :
3. 무효 등의 이유 :

년 월 일

대한변호사협회 선거관리위원회



별지 제4-1호 서식 (가) (개정 2018. 11. 19.)

공고 제 호

대 의 원 후 보 자 등 록 공 고

년 월 일에 시행하는 대의원 선거에 있어 후보자로서 다음과 같이 등록되었으므로 이를 공고함.

년 월 일

대한변호사협회 선거관리위원회

후 보 자 구 분	대 의 원
성 명	
변 호 사 등 록 연 월 일	
생 년 월 일	
소 속 지 방 변 호 사 회	
사 무 소	
과태료 이상의 징계전력	



별지 제4-1호 서식 (나)

공고 제 호

후 보 자 사 퇴, 사 망 공 고

년 월 일에 시행하는 대의원 선거에 있어 다음의 후보자는
년 월 일 사퇴, 사망하였으므로 이를 공고함.

년 월 일

대한변호사협회 선거관리위원회

후보자 명단

번 호	후 보 자 명	비 고



별지 제4-1호 서식 (다)

공고 제 호

후보자 등록무효 공고

년 월 일에 시행하는 대의원 선거에 있어 후보자는 협회장 및 대의원 선거규칙 제9조 및 제30조의 2에 의하여 그 후보자 등록이 무효가 되었으므로 이를 공고함.

다 음

1. 후 보 자 구 분 :
2. 성 명 :
3. 무효 등의 이유 :

년 월 일

대한변호사협회 선거관리위원회



별지 제5호 서식 (개정 2022. 2. 14.)

공고 제 호

선 거 공 고

협회장 및 대의원 선거규칙 제6조 및 동 시행규정 제14조에 의거 제○대 대한변호사협회 협회장 선거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다 음

1. 선 거 명 : 제○대 대한변호사협회 협회장 선거
2. 선거사유 : 협회장 임기만료에 따른 선거
3. 선거일정
 - ☐ 선거인 명부 열람기간 :
 - 열람장소 :
 - ☐ 후보자 등록기간 :
 - 등록장소 :
 - ☐ 후보자 선거운동기간
 - ☐ 선거일 :
 - 선거장소 :

년 월 일

대한변호사협회 선거관리위원회



별지 제5-1호 서식

공고 제 호

선 거 공 고

협회장 및 대의원 선거규칙 제25조 및 동 시행규정 제47조에 의거 대한 변호사협회 대의원 선거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다 음

1. 선 거 명 : 대한변호사협회 대의원 선거
2. 선거사유 : 대의원 임기만료에 따른 선거
3. 선거일정
 - ☐ 선거인 명부 열람기간 :
 - 열람장소 :
 - ☐ 후보자 등록기간 :
 - 등록장소 :
 - ☐ 후보자 선거운동기간
 - ☐ 선거일 :
 - 선거장소 :

년 월 일

대한변호사협회 선거관리위원회



별지 제6호 서식

(백색)

선거관리위원회 (인)

(협회장/대의원) 투 표 용 지

순번	(협회장/대의원) 후보	기표란



별지 제6-1호 서식

(백색)

선거관리위원회 (인)

협 회 장 투 표 용 지

기호	협회장 후보	기 표 란	
		찬 성	반 대



별지 제7호 서식

투·개표 참관인 신고서

년 월 일에 시행하는 (협회장/대의원) 선거에 있어 (협회장/대의원) 후보자의 투·개표참관인으로 다음 사람을 선정하였으므로 이를 신고합니다.

다 음

구분	성명	생년월일	투표구배정	비고 (투표 / 개표)
1				
2				
3				
4				
5				
6				
7				
계				

년 월 일

(협회장/대의원) 후보자

⑨

대한변호사협회 선거관리위원회 귀중



별지 제8호 서식

투 표 록

(○○ 지방변호사회 ○○ 투표소)

투 표 개 시 시 간 :

투 표 종 료 시 간 :

선 거 권 자 수 :

투 표 자 수 :

기 권 자 수

투표용지 교부수 :

잔여투표용지수 :

특 이 사 항 :

선거관리자	①
투표참관인	①
투표참관인	①
투표참관인	①
투표참관인	①



별지 제8-1호 서식 (신설 2020. 12. 28.)

현장투표 투표록

(○○ 지방변호사회 ○○ 투표소)

투 표 개 시 시 간 :

투 표 종 료 시 간 :

선 거 권 자 수 :

투 표 자 수 :

특 이 사 항 :

선거관리자

⑈

투표참관인

⑈

투표참관인

⑈

투표참관인

⑈

투표참관인

⑈



별지 제9호 서식 (개정 2018. 2. 5.)

(협회장/대의원) 선거 개표록

년 월 일 시행한 (협회장/대의원) 선거에서 00지방변호사회 개표결과를 다음과 같이 보고합니다.

다 음

- ☐ 선거인수 :
- ☐ 투 표 수 :
- ☐ 후보자별 득표수(유효투표수)
- 1.
 - 2.
 - 3.
 - 4.
 - 5.
- ☐ 무효표수 :
- ☐ 기 권 수 :
- ☐ 비 고 :

년 월 일

선거관리위원회 위원*

㉠

선거관리자

㉡

00지방변호사회 선거관리자

㉢

개표참관인

㉣

개표참관인

㉤

개표참관인

㉥

개표참관인

㉦

대한변호사협회 선거관리위원회 귀중

*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이 개표에 관여한 경우에 한함



별지 제9-1호 서식 (신설 2018. 2. 5.)

(협회장/대의원) 선거 선거록

년 월 일 시행한 (협회장/대의원) 선거에서의 선거 결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다 음

- ☐ 선거인수 :
- ☐ 투 표 수 :
- ☐ 후보자별 득표수(유효투표수)
 - 1.
 - 2.
 - 3.
 - 4.
 - 5.
- ☐ 무효표수 :
- ☐ 기 권 수 :
- ☐ 비 고 :

년 월 일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

위원

위원

위원

위원

위원

위원

위원

위원

위원

위원

㉠

㉠

㉠

㉠

㉠

㉠

㉠

㉠

㉠

㉠

㉠

대한변호사협회 선거관리위원회 귀중

*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이 개표에 관여한 경우에 한함



별지 제10호 서식

공고 제 호

당선자 공고

년 월 일 시행한 협회장 선거에서 다음과 같이 당선자가 결정되었으므로 이를 공고함.

다 음

협 회 장

년 월 일

대한변호사협회 선거관리위원회



별지 제10-1호 서식

공고 제 호

당선자 공고

년 월 일 시행한 대의원 선거에서 다음과 같이 당선자가 결정되었으므로 이를 공고함.

다 음

대 의 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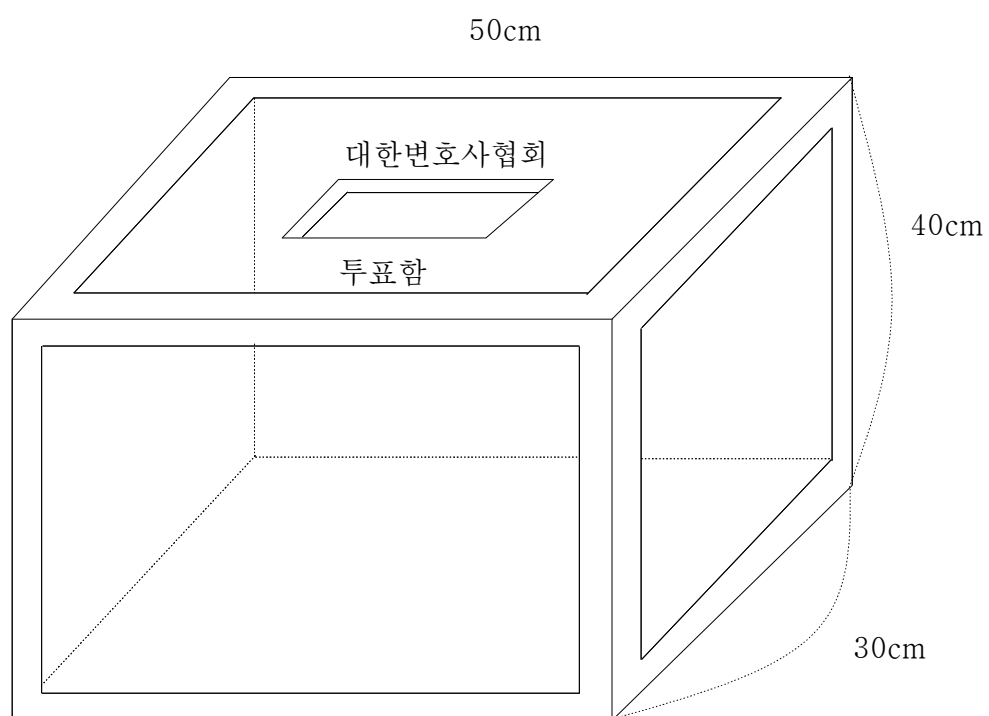
년 월 일

대한변호사협회 선거관리위원회



별지 제1호 그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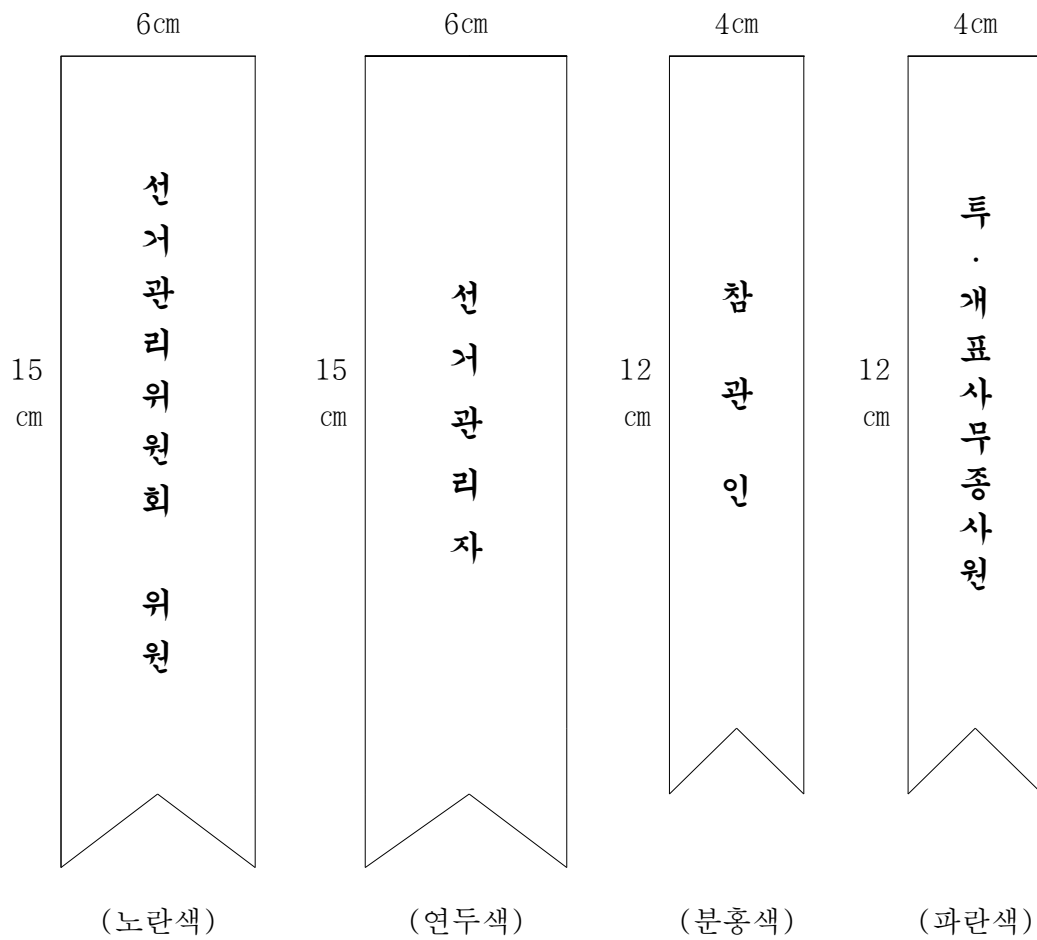
투 표 함





별지 제2호 그림

투표소 및 개표소 출입자의 기장





선거관리위원회규정

2012. 4. 23.

규정 제111호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회칙 제27조의 2 제1항에 의하여 설치되는 선거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조직과 운영 등 필요한 사항을 회칙 제27조의 2 제2항, 협회장 및 대의원 선거규칙 제34조에 따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기능] 위원회는 협회장 및 대의원 선거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동 시행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과 이 규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협회장 및 대의원 선거에 관한 사무를 담당한다.

제3조 [구성] ① 위원회는 30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은 협회장이 임명하되, 각 지방변호사회, 법원, 검찰,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언론, 학계, 기타 분야에서 학식과 덕망이 있는 자 중에서 추천을 받아 임명할 수 있다.

③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④ 이 회의 임원, 각 지방변호사회장, 조사위원회 및 징계위원회의 각 위원은 선거관리위원을 겸직할 수 없다.

⑤ 위원은 이 회의 대의원이 될 수 없고, 협회장, 대의원 및 감사 선거의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

제4조 [임원] ① 위원회에 위원장, 부위원장, 간사 각 1인을 둔다.

② 위원장, 부위원장은 호선하고, 간사는 위원장이 임명하되 위원이 아닌 자 중에서 임명할 수 있다.

③ 위원장은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하고 위원회를 대표한다.

④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⑤ 간사는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의 지휘를 받아 위원회의 실무를 처리한다.

제5조 [회의] ① 위원회는 위원장이 소집하고 위원장이 의장이 된다.

②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때에 위원회를 소집할 수 있다. 위원장은 협회장 또는 재적위원 5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위원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③ 위원회는 재적위원의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위원회가 규칙 제31조 제2항에 의하여 선거 또는 당선 효력에 관한 이의신청을 심사할 경우에는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장은 표결권을 가지며 가부동수인 때에는 결정권을 가진다.

제6조 [의사록 및 보고] ① 위원회는 의사에 관하여는 의사록을 작성하여 위원장과 간사가 서명 날인한다.

② 위원장은 위원회의 의안 및 의사의 경과와 결과를 협회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7조 [소위원회] ① 위원회의 업무를 분장 또는 보좌하기 위하여 위원회의 결의로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소위원회는 연구 및 조사 등의 결과를 서면으로 위원회에 보고한다.

제8조 [수당 등] ① 위원이 회의에 참석한 때에는 예산이 정한 범위 안에서 회의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② 위원은 위원회의 사무를 위한 출장 등으로 비용을 지출한 때에는 그 실비를 변상 받는다.

③ 위원회의 위원 등이 특정 과제의 연구 또는 조사 등을 한 경우 이에 필요한 수당 및 제반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9조 [준용] 이 규정이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관하여는 위원회운영규칙을 준용한다.

부 칙

이 규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임원인사규칙

1983. 5. 21.

규칙 제7호

개정

1985. 6. 22. 1988. 2. 27. 1990. 2. 24.
 1993. 5. 24. 1996. 6. 29. 1997. 3. 1.
 1997. 10. 27. 2000. 7. 3. 2001. 10. 29.
 2002. 11. 25. 2003. 10. 27. 2006. 2. 20.
 2007. 7. 23. 2010. 2. 8. 2010. 12. 20.
 2012. 10. 15. 2014. 10. 13. 2016. 2. 29.
 2021. 2. 22. 2021. 5. 31. 2023. 2. 27.
 2023. 4. 3. 2024. 1. 22. 2024. 10. 21.

제 1 장 총 칙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각종 임원의 정원과 직무분담, 선임, 직무집행과 보수, 기타 인사 사항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지위] ① 임원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써 그 직무를 집행하여야 한다.

② 임원은 이 회를 위한 직무를 집행하는 경우가 아니면 이 회 임원의 지위를 이용하거나 명예를 사용하지 못한다.

③ 임원과 이 회와의 관계에 관하여는 민법 중 위임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3조 [성격] 임원은 무보수, 명예직으로 한다. 다만, 이 규칙에 정한 바에 따라 판공비, 직무수당 또는 실비변상은 받을 수 있다. (개정 2010. 12. 20.)

제4조 [겸임금지] ① <삭제> (2012. 10. 15.)

② 임원은 이 규칙에 달리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른 종류의 임원을 겸임하지 못한다.

③ 협회장은 지방변호사회의 임원을 겸임하지 못하고, 정당의 당적을 보유하지 못하며, 부협회장은 회장을 제외한 지방변호사회의 임원을 겸임하지 못한다.

제5조 [남설금지] 이 회의 임원은 회칙과 이 규칙에 정한 것 외에 남설하지 못한다. 다만,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규칙 또는 규정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위원회 위원 또는 고문 약간인을 둘 수 있다.

제 2 장 정원 및 직무분담



제6조 [상임이사 및 이사회 의 정원] ① 상임이사의 정원은 회칙 제23조제3호에 따라 25인 이하로 한다. (개정 2023. 4. 3.)

② 이사의 정원은 회칙 제23조제4호에 따라 50인 이하로 한다. (개정 2012. 10. 15.)

제7조 [협회장 직무대행] 협회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부협회장 중 협회장이 미리 정한 순서에 따라 협회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제7조의2 [전결사항] 협회장은 부협회장과 상임이사에게 협회사무 일부 중 그 범위를 특정하여 전결사항으로 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1. 5. 31.)

제8조 [상임이사의 종류] 협회는 25인 이내의 범위 안에서 다음 각 호의 상임이사 각 1인 및 그 외의 특정 업무들을 담당할 상임이사를 둘 수 있다. (개정 2023. 4. 3.)

1. 총무이사
2. 재무이사
3. 법제이사
4. 인권이사
5. 교육이사
6. 회원이사
7. 공보이사
8. 홍보이사 (신설 2021. 5. 31.)
9. 국제이사 (개정 2021. 5. 31.)
10. 기획이사 (개정 2021. 5. 31.)
11. 사업이사 (개정 2021. 5. 31.)
12. 윤리이사 (개정 2021. 5. 31.)
13. 정책이사 (신설 2021. 5. 31.)
14. 정무이사 (신설 2023. 4. 3.)

제9조 [총무이사] 총무이사는 다음 업무를 분담·처리한다.

1. 이 회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기본 계획의 수립
2. 이 회의 회칙 및 규칙, 규정의 제정 또는 폐지 (개정 2000. 7. 3.)
3. 각종 회의의 소집 및 의사록의 작성
4. 이 회의 기밀 및 보안의 유지
5. 변호사정보센터에 관한 사항 (신설 2024. 1. 22.)
6. 기타 다른 상임이사의 소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5호에서 이동 2024. 1. 22.)

제10조 [재무이사] 재무이사는 다음 업무를 분담·처리한다.

1. 예산 및 결산안의 작성
2. 수입 및 지출의 관리
3. 재산의 관리



4. 기타 이 회의 재정에 관한 사항

제11조 [법제이사] 법제이사는 다음 업무를 분담·처리한다.

1. 법령의 제정 및 개정에 관한 조사연구 및 건의
2. 변호사직역 및 인접직역에 대한 조사·연구 및 정책수립에 관한 사항 (개정 2016. 2. 29.)
3. 판례의 조사연구
4. 법령의 질의 및 해석

제12조 [인권이사] 인권이사는 다음 업무를 분담·처리한다.

1. 인권사상의 보급 및 계몽
2. 인권침해에 대한 조사 및 건의
3. <삭제> (2007. 7. 23.)

제13조 [교육이사] 교육이사는 다음 업무를 분담·처리한다.

1. 변호사사무의 개선에 관한 조사연구
2. 변호사·법무법인·법무법인(유한)·법무조합, 공증인가합동법률사무소 및 변호사사무직원에게 대한 교육과 지도 (개정 2006. 2. 20.)
3. 사법연수생에 대한 교육과 지도
4. 변호사시험합격자에 대한 교육과 지도 (개정 2012. 10. 15.)
5. 변호사연수사업에 대한 계획의 수립 (신설 2012. 10. 15.)
6. 법학전문대학원 평가위원회 관련 사항 (신설 2016. 2. 29.)

제14조 [회원이사] 회원이사는 다음 업무를 분담·처리한다.

1. 변호사 및 외국법자문사의 등록과 신고, 등록심사위원회에 회부할 등록거부 또는 등록취소 안건의 조사 (개정 2014. 10. 13.)
2. 지방변호사회·법무법인·법무법인(유한)·법무조합의 설립 (개정 2006. 2. 20.)
3. <삭제> (2014. 10. 13.)
4. 변호사의 권익옹호 및 분쟁조정 (개정 2000. 7. 3.)
5. 회원의 포상, 경조 및 공제
6. 회원의 복지후생
7. <삭제> (신설 2021. 2. 22.)

제14조의2 [윤리이사] 윤리이사는 다음 업무를 분담·처리한다.

1. 변호사·법무법인·법무법인(유한)·법무조합의 조사 및 징계
2. 외국법자문사·외국법자문법률사무소의 조사 및 징계
3. 기타 변호사 및 외국법자문사의 윤리와 관련한 사항 (본조신설 2014. 10. 13.)

제15조 [공보이사] 공보이사는 다음 업무를 분담·처리한다.

1. 이 회의 정책 등에 대한 대변 (개정 2021. 5. 31.)
2. 회지·신문의 편집 및 간행 (개정 2000. 7. 3.)



3. 언론기관과의 교섭 및 협의에 관한 사항 (개정 2021. 5. 31.)
4. 법조 관련 우수언론인의 선정 및 시상에 관한 사항 (개정 2021. 5. 31.)
5. 기타 이 회와 관련한 광고 및 공보물의 제작에 관한 사항 (신설 2021. 5. 31.)

제15조의2 [홍보이사] 홍보이사는 다음 업무를 분담·처리한다.

1. 이 회의 홍보 및 선전
2. 뉴미디어 활용 사업의 계획 및 추진에 관한 사항
3. 소셜미디어를 활용한 대회원 및 대국민 소통에 관한 사항
4. 소셜미디어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사항

(본조신설 2021. 5. 31.)

제16조 [국제이사] 국제이사는 다음 업무를 분담·처리한다. (개정 2001. 10. 29.)

1. 국제법률문화의 교류 및 국제 법조단체와의 제휴
2. 회원의 해외파견 및 외국인사의 초청
3. 법률시장개방에 관한 사항

제17조 [기획이사] 기획이사는 다음 업무를 분담·처리한다.

1. 관계 기관과의 교섭 및 협의에 관한 사항 (개정 2016. 2. 29.)
2. 각종 현안에 대한 정보 수집 및 분석 (개정 2016. 2. 29.)
3. 법관·검사 평가 및 관련 자료 수집에 관한 사항 (개정 2016. 2. 29.)
4. 국회의원 및 입법 평가에 관한 사항 (신설 2016. 2. 29.)
5. 사법제도 개선에 관한 조사 및 연구에 관한 사항 (신설 2016. 2. 29.)
6. 변호사 전문분야 등록에 관한 사항 (신설 2021. 2. 22.)
7. 법학전문대학원 지원 및 평가에 관한 사항 (신설 2021. 5. 31.)

제18조 [사업이사] 사업이사는 다음 업무를 분담·처리한다.

1. 국선변호, 당직변호, 공익활동에 관한 조사연구
2. 법정활동에 관한 조사연구
3. <삭제> (2016. 2. 29.)
4. 회원들의 의견 수렴
5. 법률구조사업에 관한 계획의 수립 (개정 2007. 7. 23.)

제18조의2 [정책이사] 정책이사는 다음 업무를 분담·처리한다.

1. 변호사 직역 보호 및 확대에 관한 정책 제안
2. 비변호사의 변호사 혹은 변호사단체 대한 위법행위 내지 탈법행위 조사 및 대응
3. 비변호사 및 변호사의 광고에 대한 관련 법령 준수여부 조사, 관리 및 감독
4. 변호사 직역침탈 행위에 대한 조사 및 대응
5. 변호사의 업무 개선 및 복지 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6. 위 사항과 관련한 국회, 정부, 공공기관, 민간단체 등 대외협력 및 대응

(본조신설 2021. 5. 31.)

제18조의3 [정무이사] 정무이사는 다음 업무를 분담·처리한다.

1. 변호사제도 유지 및 개선을 위한 대외 활동
2. 변호사제도 관련 법령 등에 대한 모니터링

(본조신설 2023. 4. 3.)

제19조 [상임이사의 직무대행] ① 상임이사가 결원되거나 사고가 있는 때에는 협회장은 후임자가 선임될 때까지 다른 상임이사로 하여금 그 직무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 ② 협회장은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제9조 내지 제18조의 소관 상임이사의 업무를 다른 상임이사로 하여금 처리하게 할 수 있다. (신설 1990. 2. 24.)

제20조 [감사의 직무분담] 감사들은 상호 협의하여 감사의 직무를 분담·처리할 수 있다.

제 3 장 선 임

제21조 [협회장의 선출] ① 협회장은 회칙 제24조에 따라 회원의 직접 무기명 비밀투표로 선출한다. (개정 2012. 10. 15.)

- ② 협회장 선출절차는 이 회의 협회장 및 대의원 선거규칙을 따른다. (개정 2012. 10. 15.)

- ③ ~ ⑤ <삭제> (2012. 10. 15.)

제22조 [부협회장의 선임] ① 부협회장은 협회장이 추천하는 자 중에서 총회가 선임한다. (개정 2012. 10. 15.)

- ② 부협회장을 선임함에 있어서는 그 소속 지방변호사회를 참작하여 지역 간에 안배가 이루어지도록 배려하여야 한다. (개정 2012. 10. 15.)

- ③ 부협회장의 선임결의 정족수는 회칙 제14조에 정한 바에 따른다. (개정 2012. 10. 15.)

제23조 [상임이사의 선임] ① 상임이사는 협회장이 추천한 자 중에서 총회가 선임한다. 다만, 그 선임결의의 정족수는 회칙 제14조에 정한 바에 따른다.

- ② <삭제> (2010. 12. 20.)

제24조 [이사의 선임] ① 이사는 협회장이 추천한 자 중에서 총회가 선임한다.

- ② 이사의 선임결의의 정족수는 회칙 제14조에 정한 바에 따른다.

- ③ 이사 정원의 2분의 1은 협회장 임기가 시작되는 정기총회에서, 2분의 1은 임기 두 번째 정기총회에서 선임한다. 단, 협회장은 전체 이사들 중에서 각 지방변호사회 소속 회원이 각 최소 1인 이상이 될 수 있도록 추천하여야 한다. (개정 2023. 2. 27.)

제24조의2 [감사의 선출] ① 감사는 총회에서 무기명 투표로 선출한다.

- ② 감사 선출과 관련한 구체적인 사항은 임원선거규칙에 따른다.

(전문개정 2012. 10. 15.)

제24조의3 [부협회장, 상임이사, 이사 선임의 특례] 부협회장, 상임이사, 이사로 입후보한 자가 회칙



제23조의 정수 이내인 때에는 총회의 결의에 따라 투표 없이 입후보자를 당선자로 할 수 있다.

(신설 2012. 10. 15.)

제25조 [투표권의 대리행사금지] 임원선임을 위한 투표권은 대리인에 의하여 행사하지 못한다.

제26조 [보선] ① 협회장은 회칙 제25조 제1항 본문에 의하여 후임자를 보선하고자 할 때에는 이 사회의 의결을 거쳐 총회의 소집을 요구하여야 한다.

② 협회장은 회칙 제25조 제1항 단서에 의하여 후임자를 보선하지 아니하기로 결정한 때에는 지체 없이 그 뜻을 총회 의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2. 10. 15.)

제27조 [임원선임 등의 공시] ① 협회장은 임원이 선임, 개선 또는 퇴임된 때에는 지체 없이 그 뜻을 법무부장관에게 보고하고, 각 지방변호사회에 통지하여야 한다.

② 협회장은 임원의 선임, 개선 또는 퇴임 사실을 공고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0. 2. 8.)

제 4 장 직무집행과 보수

제28조 [협회장 등의 직무집행] 협회장, 부협회장 및 상임이사는 회칙 제29조에 의하여 상임이사회 의 심의를 거쳐 사항을 제외하고는 회칙 제27조제1항 내지 제3항에 의하여 각자 그의 소관 직무를 집행한다.

제29조 [이사의 직무집행] 이사는 이사회의 구성원으로서 그 직무를 집행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회칙 제27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임받은 회무를 처리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2. 10. 15.)

제30조 [감사의 직무집행] 감사는 회칙 제27조제5항의 직무를 각자 처리한다. 다만, 제20조에 의하여 분담·처리하기로 협의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2. 10. 15.)

제30조의2 [직무 및 수당지급 정지] 이 회 변호사징계위원회 징계 결정의 결과 정직 이상의 징계처분을 받은 협회 임원은 그 직무가 정지되며, 그에 따라 수당 지급도 정지한다. 다만, 법원의 판결이나 변호사법 제96조에 따른 결과로 그 징계처분의 취소가 확정된 경우 그 즉시 직무가 재개되고, 미지급된 수당을 지급한다. (신설 2024. 1. 22.) (단서 신설 2024. 10. 21.)

제31조 [사무국의 보조 등] 임원이 그 직무를 집행함에 있어서는 사무국 직원의 보조를 받을 수 있고,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직무에 관하여 사무국 직원을 직접 지휘·감독할 수 있다.

제32조 [관공비·직무수당] 임원은 그 직무수행에 관하여 매 년도 예산이 정한 범위 안에서 관공비 또는 직무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다.



제33조 [실비변상] 임원이 회무처리를 위하여 출장하거나 비용을 체당한 때에는 실비를 변상받는다.

제34조 [사무총장의 급여] ① <삭제> (2010. 12. 20.)

② 사무총장의 급여, 수당 기타 보수는 매 년도 예산에 계상하여야 한다.

부 칙

이 규칙은 1983. 6. 1.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85. 6. 22.)

이 규칙은 1985. 6. 24.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88. 2. 27.)

이 규칙은 1988. 1. 1.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90. 2. 24.)

① [시행일] 이 규칙은 1990. 3. 1.부터 시행한다.

②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에 선출된 임원은 이 규칙에 의하여 선임된 것으로 본다.

부 칙 (1993. 5. 24.)

① 이 규칙은 1993. 5. 24.부터 시행한다.

② 이 규칙에 의하여 최초로 선임되는 증원된 부협회장 2인의 임기는 1995년도 정기총회일까지로 한다.

③ 이 규칙에 의하여 최초로 선임되는 증원된 이사 20인 중 10인의 임기는 1994년도 정기총회 일, 나머지 10인의 임기는 1995년도 정기총회일까지로 한다.



부 칙 (1996. 6. 29.)

이 규칙은 1996. 6. 29.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0. 7. 3.)

이 규칙은 2000. 7. 29.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1. 10. 29.)

이 규칙은 2001. 10. 29.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2. 11. 25.)

이 규칙은 2003. 1. 1.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3. 10. 13.)

이 규칙은 2003. 10. 27.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6. 2. 20.)

이 규칙은 공포 후 20일이 경과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0. 2. 8.)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0. 12. 2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2. 10. 15.)

- ①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 ②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에 선출된 임원은 이 규칙에 의하여 선임된 것으로 본다.

부 칙 (2014. 10. 13.)

이 규칙은 2015년 정기총회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6. 2. 29.)

- ①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②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에 실시한 법제이사, 교육이사, 기획이사 업무는 이 규칙에 의하여 실시한 것으로 본다.

부 칙 (2021. 2. 22.)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21. 7. 2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23. 4. 28. 회칙인가)

이 규칙은 회칙이 법무부장관의 인가를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23. 6. 19. 회칙인가)

이 규칙은 회칙이 법무부장관의 인가를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24. 1. 22.)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24. 10. 2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임원선거규칙

2002. 11. 25.

규칙 제28호

개정 2012. 2. 20. 2017. 2. 27.
2019. 2. 25. 2021. 5. 31.
2022. 4. 25. 2023. 2. 27.
2023. 4. 3.

제1장 총 칙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회칙 제24조제3항 내지 제5항에 의하여 이 회 협회장을 제외한 임원의 선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2. 2. 20.)

제2조 [정의] 이 규칙에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임원”이라 함은 회칙 제23조 제2호 내지 제5호의 임원을 말한다. (개정 2012. 2. 20.)
2. “선거”라 함은 총회에서 임원을 선임·선출 또는 추천하기 위한 일련의 절차를 말한다.
3. “선거일”이라 함은 임원을 선임·선출 또는 추천하기 위하여 소집되는 총회일을 말한다.
4. “선거운동”이라 함은 임원으로 당선되거나, 당선되게 하거나 또는 당선되지 못하게 하기 위한 행위를 말한다. 다만, 선거에 관한 단순의견을 개진하거나 의사의 표시와 입후보를 위한 준비행위는 선거운동이 아니다.

제3조 [선임] ① 부협회장 및 상임이사, 이사는 협회장이 추천한 자 중에서 총회가 선임한다. (개정 2012. 2. 20.)

② 감사는 총회에서 대의원의 직접 무기명투표로 선출한다. (개정 2012. 2. 20.)

③ <삭제> (2012. 2. 20.)

제4조 [선거임원정수] ① 이 규칙에 의하여 선거할 임원의 정수는 다음과 같다.

1. 부협회장 5인 이상 15인 이하 (개정 2023. 4. 3.)
2. 상임이사 25인 이하 (개정 2023. 4. 3.)
3. 이사 50인 이하 (개정 2012. 2. 20.)
4. 감사 3인 (개정 2012. 2. 20.)
5. <삭제> (2012. 2. 20.)

② 이사 정원의 2분의 1은 협회장 임기가 시작되는 정기총회에서, 2분의 1은 임기 두 번째 정기총회에서 선임한다. 단, 협회장은 전체 이사들 중에서 각 지방변호사회 소속 회원이 각 최소 1인 이상이 될 수 있도록 추천하여야 한다. (개정 2023. 2. 27.)



제5조 [선거관리] ① 이 규칙에 의한 선거의 관리는 이 규칙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총회 의장이 담당한다.

② 총회 의장이 궐위되거나 사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총회 부의장, 협회장의 순으로 그 권한을 대행한다.

제6조 [선거권] 지방변호사회 회장과 대의원은 임원을 선거할 권리가 있다. 다만, 선거권은 대리인에 의하여 행사하지 못한다. (개정 2012. 2. 20.)

제7조 [피선거권] 선거일 현재 이 회에 등록 및 개업신고를 한 회원은 임원이 될 수 있다. 단,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임원이 될 수 없다.

1. 등록취소 후 재등록을 한 날로부터 2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2. 변호사법에 의한 업무정지명령을 받고 그 기간 중에 있는 자
3. 휴업신고를 한 자

(전문개정 2012. 2. 20.)

제8조 [후보자 추천] ① 협회장 당선자는 부협회장 후보자와 상임이사 후보자, 이사 후보자를 선임 직전까지 총회 의장에게 추천하여야 한다.

② 제28조의 보궐선거를 실시하는 경우에는 협회장은 감사를 제외한 결원이 된 수에 해당하는 임원 후보자를 추천하여 이 회에 등록 신청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2. 2. 20.)

제 2 장 감사 선거 (2012. 2. 20. 본장 제목 개정 및 제7조 뒤에서 현 위치로 이동)

제9조 [선거공고] ① 협회는 선거일 15일 전까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공고하여야 한다.

1. 선거인 명부
2. 선거운동기간
3. 감사 후보자 등록기간 및 절차
4. 선거 관련 금지행위 등 기타 협회가 공고할 필요가 있다고 결정한 사항

② 선거 공고는 다음 각 호의 매체를 1개 이상 이용하여 공고하여야 하고, 선거권자에게 전자우편 방식의 개별 통지를 할 수 있다.

1. 법조신문 (개정 2022. 4. 25.)
2. 협회 홈페이지(www.koreanbar.or.kr)

제10조 [등록신청] 감사에 입후보하고자 하는 자는 선거공고일로부터 3일 이내에 이 회에 후보자 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2. 2. 20.)

제10조의2 [기탁금] ① 제10조에 따라 등록 신청하는 자는 2천만 원의 범위 내에서 상임이사회가 정한 선거비용을 등록신청 시에 납부하여야 한다.



② 전항의 기탁금은 다음 각 호에 따라 반환한다.

1. 선거 종료 후 선거비용 정산 결과, 이 회가 사용한 선거비용 중 상임이사회의 결정에 따라 정해진 각 후보의 선거비용 부담액이 납부금보다 적은 경우 그 차액
2. 후보자 등록 후 사망하거나, 천재지변 기타 후보자의 귀책사유 없이 후보자 등록 유지가 불가능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상임이사회의 결정에 따라 이 회가 사용한 선거비용을 공제한 나머지 납부금 전액
3. 전항의 사유 외에 후보자 사퇴, 후보자 등록무효의 경우에는 납부금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몰취하고, 나머지 금액 범위 내에서 납부금 반환의 사유, 이 회가 사용한 선거비용 등 구체적인 사정을 고려하여 상임이사회가 결정한 금액

(본조신설 2017. 2. 27.)

제11조 [등록무효 및 후보자 사퇴] ① 후보자 등록 후에 후보자가 피선거권이 없거나 등록 절차 규정에 위반하여 등록한 것이 발견된 때에는 그 등록은 무효로 한다.

② 후보자가 후보 사퇴를 하고자 하는 때에는 이 회에 후보 사퇴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2. 2. 20.)

제12조 [등록공고] ①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협회장은 이를 지체 없이 공고하여야 한다.

1. 제10조에 의하여 후보자 등록 신청이 있을 때 (개정 2012. 2. 20.)
2. 제11조 제1항에 의하여 후보자 등록이 무효로 된 때 (개정 2012. 2. 20.)
3. 등록된 후보자가 사퇴 또는 사망한 때

② 제1항의 공고는 제9조 제2항 제1호 내지 제2호의 매체를 1개 이상 이용하여 공고하여야 하고, 선거권자에게 전자우편방식의 개별 통지를 할 수 있다. (개정 2012. 2. 20.)

제 3 장 선거운동

제13조 [선거운동기간] 선거운동기간은 후보 등록 기간 종료일 익일부터 선거일까지로 한다.

(개정 2012. 2. 20.)

제14조 [선거공보 및 서신] ① 협회는 선거일 7일 전까지 선거공보를 제작하여 선거권자에게 발송하여야 한다.

② 감사가 되고자 하는 자는 자기의 학력, 경력 및 후보자로서의 소견을 기재한 문서·도화, 인쇄물의 발송을 선거운동기간 중 1회에 한하여 선거권자에게 발송할 수 있다. 단,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발송되는 전자우편, 문자메시지 등은 이 규칙에서 정하는 문서·도화, 인쇄물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전문개정 2012. 2. 20.)

제15조 [금지사항] 후보자,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 기타 회원은 선거운동기간 중 선거에 관하여



다음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또한 회원 이외의 자에게 이를 시켜서도 아니 된다.

1. 제14조 제2항에 정한 방법 이외의 방법으로 선거에 관한 서신 또는 문서를 발송 또는 반포하는 행위
2. 회원의 자택을 개별로 방문하는 행위
3. 회원에게 금품, 향응 기타 편익을 제공하는 행위
4. 후보자의 신문, 경력, 인격 또는 활동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을 진술하거나 공연한 사실을 적시 하여 후보자를 비방하는 행위
5. 이 회에 기부행위를 하거나 할 것을 약속하는 행위

(전문개정 2012. 2. 20.)

제16조 [선거 후 답례금지] 누구든지 선거 후에 당선 또는 낙선에 관하여 회원에게 답례를 위한 금품을 제공할 수 없다. (개정 2012. 2. 20.)

제17조 [위반행위에 대한 제재] 후보가 이 규칙에 위반하여 선거운동을 한 경우에는 총회 의장은 선거 당일 위 사실을 공표할 수 있다. (개정 2012. 2. 20.)

제18조 [진행순서] 선거절차는 다음 순서로 진행한다.

1. 선거안건의 부의 선언
2. 투표 및 개표요령의 안내
3. 투표
4. 개표
5. 당선자 결정
6. 당선 선포

(전문개정 2012. 2. 20.)

제19조 [투표방법] ① 투표는 후보자 전원을 연기한 투표용지에 의하여 등록된 후보자에 대해서만 실시한다.

② 투표는 선거권자 본인이 직접 총회장에 설치한 투표소에서 기표하여 투표함에 투입하는 방법으로 행한다.

③ 투표는 1인 1표로 하되, 투표를 함에 있어서 투표자 또는 후보자의 성명을 표시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기표방법은 투표인이 투표용지의 기표란에 ○표를 하는 것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2. 2. 20.)

⑤ 감사선거는 정보·통신기술을 이용한 기기 및 운용체제를 사용한 전자투표 방법으로 선출할 수 있다. (신설 2019. 2. 25.)

제20조 [투표용지] ① 투표용지는 이 회가 마련하고 이 회의 회인을 압날하여야 한다.

② 투표용지에는 후보자의 등록번호, 성명 및 기표란을 인쇄하여야 한다.

③ 후보자 등록기간이 지난 후에 후보자가 사퇴·사망하거나 등록이 실효 또는 무효로 된 때라도 투표용지에서 그 후보자의 성명을 말소하지 아니한다.



(전문개정 2012. 2. 20.)

제21조 [개표방법] ① 개표는 투표가 완료된 때에 개시한다.

② 개표는 선거참관인이 사무국 직원의 보조를 받아 실시한다.

③ 개표는 다음 순서로 진행한다.

1. 투표 수의 확인
2. 무효투표지의 구분
3. 후보자별 집계

(전문개정 2012. 2. 20.)

제22조 [무효투표] ①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투표는 무효로 한다.

1. 정규의 투표용지를 사용하지 아니한 것
2. 어느 난에도 기표하지 아니하거나 2개 이상 난에 기표한 것
3. 어느 난에 기표한 것인지 식별할 수 없는 것
4. ○표를 하지 아니하고 문자 또는 다른 표시를 한 것
5. ○표를 한 외에 다른 사항을 기입한 것

②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투표는 유효로 본다.

1. ○표가 일부분만 표시되거나 ○표가 빠뚫어지거나 메워진 것
2. 동일 후보자란에만 2개 이상 기표되거나 중첩 기표된 것
3. 기표란 외에 기표되었으나 어느 후보자에게 기표한 것인지 명확한 것
4. 두 후보자란의 구분선상에 기표된 것으로서 어느 후보자에게 기표한 것인지 명확한 것
5. 기표한 것이 전사되었으나 어느 후보자에게 기표한 것인지 명확한 것

③ 투표의 효력에 관하여 이의가 있는 때에는 총회 의장이 이를 결정한다.

(전문개정 2012. 2. 20.)

제23조 [선거참관] ① 총회 의장은 선거참관인으로 하여금 투표 및 개표상황을 참관하게 하여야 한다.

② 감사 후보는 각 2인 이내의 선거참관인을 선정하여 총회 의장에게 선거 전일까지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총회 의장은 사정에 따라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선거참관인을 증감할 수 있다.

③ 선거참관인은 선거사항에 간섭하거나 투표권유, 선거운동, 기타 어떠한 방법으로든지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전문개정 2012. 2. 20.)

제24조 [무투표당선] 감사 후보자가 제4조에서 정한 정수 이내일 때에는 투표 없이 그를 당선자로 할 수 있다. 다만, 총회의 결의로 신임투표를 하여 당선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개정 2012. 2. 20.)

제25조 [당선정족수] 감사는 다수투표자를 당선자로 한다. 다만, 득표수가 동수일 때에는 연장자를 당선자로 한다. (개정 2012. 2. 20.)



제26조 [당선선포] 총회 의장은 당선자가 결정된 때에는 즉시 총회에서 당선자를 선포하여야 한다. 다만, 제24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총회 의장이 신임투표의 시행 여부를 총회에 문의하고, 신임투표를 하게 되면 그 결과에 따라 당선자를 결정하여 선포하여야 한다. (개정 2012. 2. 20.)

제27조 [재선거] ①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재선거를 실시한다.

1. 당선자가 임기개시 전에 사퇴·사망하거나 피선거권이 없게 된 때
 2. 제29조의 규정에 의하여 선거 또는 당선이 무효로 된 때
 - ② 제1항의 재선거는 그 사유가 확정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실시하여야 한다.
 - ③ 재선거에 관하여는 제9조 내지 제26조 규정을 준용한다.
- (전문개정 2012. 2. 20.)

제 4 장 보 칙 (2012. 2. 20. 본장 제목 개정 및 제12조 뒤에서 이동)

제28조 [보궐선거] ① 임원 중 결원이 생긴 때에는 지체 없이 그 후임자를 선임하여야 한다. 다만, 부협회장 2인, 상임이사 및 이사 정원의 4분의 1 이내에서 결원이 생긴 때에는 그 후임자를 선임하지 아니할 수 있다.

- ② 감사의 보궐선거에 관하여는 제9조 내지 제26조 규정을 준용한다.
 - ③ 감사 이외의 임원 중 결원이 생긴 때에는 그 후임자를 이사회에서 선임할 수 있다.
- (전문개정 2012. 2. 20.)

제29조 [이의신청] ① 선거 또는 당선의 효력에 관하여 이의가 있는 후보자는 선거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총회 의장에게 이의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다.

- ② 제1항 신청에 대하여는 후보자 등록, 선거활동, 선거절차 또는 당선결정이 회칙 및 이 규칙에 위반된 사실이 있는 때라도 선거의 결과에 중대한 영향을 미쳤다고 인정할 때에 한하여 선거 또는 당선의 무효를 결정할 수 있다.
- ③ 총회 의장이 제1항의 신청을 받은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심사하며 그 신청이 이유가 없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바로 신청인에게 그 뜻을 통지한다.
- ④ 총회 의장이 심사한 결과 제1항의 신청이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지체 없이 의견서를 첨부하여 이를 협회장에게 전달하여야 하고 협회장은 이를 임시총회에 부의하여 그 가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 ⑤ 총회가 제2항에 의하여 선거 또는 당선무효의 결정을 함에 있어서는 제6조의 규정에 정한 선거권자의 과반수 출석과 출석한 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다만, 결정권은 이를 대리인에 의하여 행사하지 못한다.
- ⑥ 선거무효 또는 당선무효에 관한 총회의 결정이 있는 때에는 협회장은 이를 신청인에게 통지하고 전 회원에게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당선무효의 결정은 장래에 대하여서만 효력이 있다.



(전문개정 2012. 2. 20.)

제30조 [선거비용] 선거관리에 필요한 일체의 비용은 이 회가 부담한다. 다만, 제14조 제1항의 선거공보제작 및 발송을 제외한 감사 후보자의 선거운동에 관한 비용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2. 2. 20.)

제31조 [시행규정] 이 규칙을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정으로 정한다. (개정 2012. 2. 20.)

부 칙

이 규칙은 2003. 1. 1.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2. 2. 20.)

- ① [시행일] 이 규칙은 2012. 3. 1.부터 시행한다.
- ② [경과조치] 현재의 부협회장, 상임이사, 이사, 감사는 이 규칙에 의하여 당선된 것으로 본다. 그 임기는 종전 규칙에 의한 선출로 정하여진 임기만료일까지로 한다.

부 칙 (2017. 2. 27.)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9. 2. 25.)

이 규칙은 2019년 정기총회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21. 7. 2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22. 4. 25.)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23. 4. 28. 회칙인가)

이 규칙은 회칙이 법무부장관의 인가를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23. 6. 19. 회칙인가)

이 규칙은 회칙이 법무부장관의 인가를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전국지방법변호사회장협의회규칙

2018. 12. 3.

규칙 제39호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전국지방법변호사회장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의 구성, 소집, 의사 기타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지위 및 권한] ① 협의회는 중요한 회무에 대하여 각 지방변호사회장이 심의·의결하여 그 결과를 협회장에게 제안하거나, 협의회에서 의결된 사항의 집행을 요청할 수 있다.

② 협회장은 협의회에 제안이나 요청사항을 존중한다.

③ 협의회는 재적 구성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회의의 목적사항과 소집의 이유를 기재한 서면을 총회 의장에게 제출하고 총회의 소집을 요구할 수 있다.

제3조 [구성] 협의회는 각 지방변호사회장으로 구성한다.

제4조 [협의회장] ① 협의회장은 각 지방변호사회장 중에서 호선하고, 유고 시 간사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② 협의회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를 소집하며 의사를 진행한다.

③ 협의회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④ 협의회는 그 임기 중이라 하더라도 재적 구성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협의회장을 해임할 수 있다.

제5조 [간사] ① 협의회는 간사는 각 지방변호사회장 중에서 호선하고, 유고 시 협의회장이 지명한다.

② 간사는 협의회장의 명을 받아 협의회 의사진행 보좌, 의사록 작성, 재무관리 등의 총괄업무를 담당한다.

③ 간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④ 협의회는 그 임기 중이라 하더라도 재적 구성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간사를 해임할 수 있다.

제6조 [소집] ① 협의회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한다.

② 정기회는 협의회장이 직전 정기회에서 정한 일시·장소에 소집하되, 개최 2주일 전까지 각 지방변호사회 및 이 회에 통지하여야 한다.

③ 임시회는 협의회장 또는 재적 구성원 3분의 1 이상이 연명으로 소집할 수 있다.

④ 제3항의 경우 소집권자는 개최 1주일 전까지 일시·장소 및 회의의 목적사항을 명시하여 각 지방변호사회 및 이 회에 통지하여야 한다.

⑤ 협회장, 부협회장, 상임이사 및 감사는 협의회에 참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제7조 [정족수] ① 협의회는 재적 구성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구성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협의회 명의를 대외적 의견표명 등 중요사안인 경우에는 만장일치를 원칙으로 한다.



② 긴급한 사정이 있을 경우 유선 또는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다.

제8조 [의사록] ① 협의회 의사록 작성에 관하여는 총회운영규칙 제42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② 의사록의 기명날인은 협의회장과 간사가 한다.

제9조 [재정] ① 협의회회 재정은 이 회의 예산과 각 지방변호사회의 부담금으로 한다.

② 협의회회 결산은 매년 첫 번째 정기회에서 처리한다.

제10조 [구성원 변경과 정기회] ① 협의회회 구성원이 변경되는 경우, 그 이후 처음으로 개최되는 정기회는 변경 전후의 구성원이 연석하여 회의를 진행한다.

② 새로운 구성원의 임원이 선출될 때까지 변경 전의 협의회장이 회의를 주재하되, 의결권은 변경된 구성원만 행사한다.

제11조 [기타] 이 규칙에서 정하지 아니한 세부적인 사항에 관하여는 협의회회 의결로 정한다.

부 칙 (2018. 12. 3.)

이 규칙은 2019년 2월 정기총회부터 시행한다.

전임지방변호사회장협의회규정

2023. 3. 20.

규정 제183호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협회장의 정책 결정 및 수행에 대한 자문과 지원을 위하여 전임지방변호사회장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설치하고, 그 조직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기능] 협의회는 다음 사항에 관하여 역할을 수행하고 그 결과를 협회장에게 건의한다.

1. 대한변호사협회(이하 “회”라 함)의 정책 결정 방향 설정
2. 회원을 위한 제안
3. 사회적 문제에 대한 의견 제시
4. 기타 협회장이 자문한 사항

제3조 [구성] 협의회는 2013년 직선제 협회장 이후 전임지방변호사회장으로 구성하되, 전임 회장의 참여 의사에 따른다.

제4조 [협의회장, 부의장, 고문] ① 협의회장 및 부의장은 전임지방변호사회장 중에서 호선하고, 협의회장 유고 시 선임기수 부의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② 협의회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를 소집하며 의사를 진행한다.

③ 협의회장과 부의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④ 직선제 전임 대한변호사협회장은 당연직 고문으로 한다.

⑤ 협의회는 그 임기 중이라 하더라도 재적 구성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협의회장을 해임할 수 있다.

제5조 [사무총장] ① 협의회는 사무총장은 전임지방변호사회장 중에서 호선하고, 유고 시 협의회장이 지명한다.

② 사무총장은 협의회장의 명을 받아 협의회 의의진행 보좌, 의사록 작성, 재무관리 등의 총괄업무를 담당한다.

③ 사무총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④ 협의회는 그 임기 중이라 하더라도 재적 구성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사무총장을 해임할 수 있다.

제6조 [소집] ① 협의회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한다.

② 정기회는 협의회장이 직전 정기회에서 정한 일시·장소에 소집하되, 개최 2주일 전까지 이회에 통지하여야 한다.



- ③ 임시회는 협의회장 또는 재적 구성원 3분의 1 이상이 연명으로 소집할 수 있다.
 - ④ 제3항의 경우 소집권자는 개최 1주일 전까지 일시·장소 및 회의의 목적 사항을 명시하여 이 회에 통지하여야 한다.
 - ⑤ 협회장, 부협회장, 상임이사 및 감사는 협의회에 참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 제7조 [정족수] ① 협의회는 재적 구성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구성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② 긴급한 사정이 있는 경우 유선 또는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다.
- 제8조 [의사록] ① 협의회 의사록 작성은 총회운영규칙 제42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 ② 의사록 기명날인은 협의회장과 사무총장이 한다.
- 제9조 [재정] ① 이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협의회 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 ② 협의회 결산은 매년 첫 번째 정기회에서 처리한다.
- 제10조 [기타] 이 규정에서 정하지 아니한 세부적인 사항은 협의회 내부 규정과 관례 및 의결로 정한다.

부 칙 (2023. 3. 20.)

- 제1조 [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제2조 [경과조치] 이 규정 공포 이전에 협의회에서 의결 및 집행한 사항은 이 규정에 저촉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는 이 규정에 따라 의결 및 집행한 것으로 본다.



대한변호사협회 감사규정

2018. 4. 9.

규정 제154호

제 1 장 총 칙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대한변호사협회(이하 “협회”라 약칭함) 회칙 제27조 제5항에 의한 감사의 업무 집행에 관하여 협회의 재정 및 업무집행감사 직무수행의 기준과 절차 범위 등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적용범위] 이 규정은 협회의 조직의 업무 및 회계 직무수행 관련 사항 등에 대한 감사에 적용하며 회칙이나 다른 규정에서 특별히 정한 사항을 제외하고는 이 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 [감사의 직무] 감사는 공동으로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1. 협회업무 및 회계에 대한 감사
2. 협회장이 요청하는 사항에 대한 감사

제4조 [감사의 종류] ① 감사는 업무감사와 회계감사로 나눈다.

② 분기감사는 매 분기 종료 후 30일 이내에 직전분기의 업무 및 회계업무전반에 관하여 실시한다.

③ 특별감사는 필요한 경우 특정업무 또는 특정사안에 대하여 비정기적으로 실시한다.

제5조 [감사방법] 감사는 감사대상부서에 출석하여 행하는 실지감사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실지감사의 방법에 의하지 아니하고도 감사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거나 실지감사가 부적절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감사자료 등을 제출을 받아 서면감사의 방법으로 실시할 수 있다.

제 2 장 감사의 직무원칙

제6조 [직무독립의 원칙] 감사는 감사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각자 협회내부 및 외부로부터의 독립성을 유지하고 공정하게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제7조 [감사자세] ① 감사는 협회운영의 감시자로서의 책무를 인식하고 공정하고 성실하게 건전한 윤리에 따라 감사하여야 한다.

② 감사는 효율적으로 감사를 수행하고 감사대상 부서의 업무 부담이 최소화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8조 [감사의 의견진술] 감사는 이사회와 상임이사회에 출석하여 감사업무에 관한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제9조 [의무와 책임] ① 감사는 그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고 협회 제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② 감사는 직무상 취득한 비밀을 정당한 이유 없이 누설하거나 유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0조 [감사의 권한] 감사는 그 업무수행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권한을 가진다. 다만, 협회의 업무에 대해서는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행사하여야 한다.

1. 관계서류, 장부, 증빙서 및 물품의 제출요구
2. 관계자의 출석 및 답변요구와 확인서 또는 질문서나 문답서의 청구
3. 금고 창고 장부 물품의 봉인 및 실태조사
4. 전산시스템에 대한 접근 및 조사
5. 기타 감사업무 수행에 필요한 조치

제 3 장 감사업무절차

제11조 [감사의 원칙] 감사는 다음의 감사원칙에 따라 감사한다.

- ① 합법성 및 합리성
- ② 형평성, 공정성 및 객관성
- ③ 기타 통상적이고 합리적인 감사원칙

제12조 [감사세부계획의 수립] 감사는 감사실시전에 감사의 목적, 감사대상부서, 감사기간, 감사사항 등에 관한 세부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제13조 [사전통보] 감사는 감사시작 14일전에 협회장, 사무총장 또는 그 직무대행자에게 감사의 목적, 감사대상부서, 감사기간, 감사사항 등을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신속하게 감사를 실시하여야 할 사정이 있거나 감사의 실효성을 위하여 긴급하거나 부득이한 경우에는 서면 통보 직후 감사를 실시할 수 있다.

제14조 [감사대상 부서 등의 협조의무] ① 감사대상 부서의 장 또는 소속 직원은 감사의 자료제출 등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법에 위반되거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협조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의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자료제출 등의 요구에 불응하거나 기타 감사실시에 협조하지 아니함으로써 감사업무 수행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케 하였을 경우, 감사는 협회장에게 관련자에 대한 징계를 요구할 수 있다.

제15조 [출석답변의 요구] 감사는 관계자의 출석 및 답변을 요구할 수 있다. 관계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16조 [봉인] 감사는 감사목적상 봉인이 필요한 경우 당해 목적물의 관리자 등에게 감사상 봉인을 필요로 하는 이유를 설명한 후 그의 입회하에 봉인한다.



제17조 [증빙서류의 징구 등] ① 감사는 감사결과 지적사항에 대한 입증을 위하여 필요한 관계서류 등의 등본 또는 사본을 증거서류로서 징구할 수 있다.

② 증거의 대상이 물건이나 상태인 경우에는 현품채집 또는 사진촬영 등의 방법에 의하여 증거를 확보한다.

③ 증거서류로서 등본 또는 사본을 요하는 원본의 분량이 많아서 필요한 부분을 발췌하거나 일정한 서식으로 정리·이기하는 경우에는 그 출처를 명시하고 작성자의 소속 및 직·성명을 기입날인하게 한다.

④ 감사의 증거를 보강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관련자로부터 사안에 관련된 사실관계 등을 기술한 확인서를 징구할 수 있다.

제18조 [질문서, 문답서 등] ① 감사결과 위법 또는 부당하다는 의심이 있는 사항에 대하여는 관계자로부터 질문서 또는 경위서 제출을 요구하거나 문답서에 대한 답변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② 감사는 감사대상자에게 반드시 구두 또는 서면으로 소명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제19조 [감사결과에 따른 처분요구] 감사는 감사결과 위법부당하거나 개선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협회장에게 징계처분을 요구할 수 있다.

제20조 [감사방해] 감사는 제10조에 의한 감사의 권한행사를 정당한 이유 없이 방해 또는 거부하는 관계자에 대하여 협회장에게 징계를 요구할 수 있다.

제 4 장 감사결과외의 제출

제21조 [종합감사보고] 감사는 매 회계연도 종료 후 종합감사보고서를 작성하여 총회에 보고한다.

제22조 [분기감사보고] 감사는 분기감사 종료 3주 이내에 분기감사보고서를 작성하여 상임이사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23조 [감사보고서작성의 원칙] 감사보고서는 다음의 원칙에 따라 작성한다.

1. 완결성: 감사가 수행한 감사와 관련된 모든 정보를 포함하여 작성
2. 간결성: 보고하고자 하는 내용만을 간결하게 작성
3. 논리성: 논리적이고 설득력있게 작성
4. 정확성: 수집된 증거에 기초하여 정확하게 작성하고 증거에 한계가 있는 경우 그 사유를 명시
5. 공정성: 문제점을 편향되지 않은 관점에서 작성
6. 이해가능성: 이해하기 쉽도록 작성

부 칙 (2018. 4. 9.)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감사위원회규칙

2018. 12. 3.

규칙 제40호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감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고 한다)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기능] 위원회는 독립하여 감사의 업무를 보좌한다.

제3조 [구성] ① 위원회는 감사 및 감사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감사위원은 회원 중 감사로부터 각 1인씩 추천받아 협회장이 임명한다. 다만, 필요한 때에는 감사로부터 회원이 아닌 덕망 있는 사회인사를 추천받아 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

③ 감사위원의 임기는 감사의 임기와 동일한 것으로 한다.

④ 감사위원 중에서 결원이 생긴 때에는 그 감사위원을 추천한 감사의 추천을 받아 그 후임자를 지체 없이 추가하여 임명 또는 위촉한다. 다만, 그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제4조 [임원] ① 위원회에 위원장, 부위원장, 간사 각 1인을 둔다.

② 위원장은 감사 중에서 호선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간사는 위원 중에서 위원장이 임명한다.

③ 위원장은 위원회의 사무를 통할하고 위원회를 대표한다.

④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⑤ 간사는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의 지휘를 받아 위원회의 실무를 처리한다.

제5조 [회의] ① 위원회는 위원장이 소집하고 위원장이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는 재적위원 2분의 1 이상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장은 표결권을 가지며 가부동수인 때에는 결정권을 가진다.

④ 위원회의 의사는 비공개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위원회가 공개결의를 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6조 [의사록] 위원회는 의사에 관하여는 의사록을 작성하여 위원장과 간사가 서명·날인한다.

제7조 [수당 등] ① 위원이 회의에 참석한 때에는 예산이 정한 범위 안에서 회의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② 위원은 위원회의 사무를 위한 출장 등으로 비용을 지출한 때에는 그 실비를 변상 받는다.

③ 위원 등이 특정 과제의 연구 또는 조사 등을 한 경우 이에 필요한 수당 및 제반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부 칙 (2018. 12. 3.)

이 규칙은 2019년 2월 정기총회부터 시행한다.



총회운영규칙

1983. 5. 21.

규칙 제2호

개정 1986. 2. 22. 1990. 2. 24.
1993. 5. 24. 2001. 10. 29.
2010. 2. 8. 2012. 10. 15.
2018. 12. 3. 2013. 2. 27.

제 1 장 총 칙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총회의 구성, 기관, 소집, 의사, 의사록 기타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지위] ① 총회는 이 회의 최고의결기관으로 한다.

② 총회의 의결에 반하는 이사회, 상임이사회 또는 위원회의 의결은 효력이 없다.

③ 임원은 총회의 의결을 성실하게 집행하여야 한다.

제3조 [의결사항] 총회는 회칙 제13조에 정한 사항을 의결한다.

제 2 장 구 성

제4조 [구성] 총회는 지방변호사회 회장, 지방변호사회 회장이 지명하는 소속 지방변호사회 부회장 중 1인 및 대의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8. 12. 3.)

제5조 [지방변호사회장 등] ① 제4조에 따른 지방변호사회 회장 및 부회장은 그 지위를 보유하는 동안 당연히 총회의 구성원이 된다. (개정 2018. 12. 3.)

② <삭제> (2018. 12. 3.)

③ <삭제> (2018. 12. 3.)

제6조 [대의원의 선거] ① 총회의 구성원이 되는 대의원의 선거는 이 회의 회칙과 협회장 및 대의원 선거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 회의가 실시한다.

② 대의원의 선거는 정기선거와 보궐선거로 한다.

③ 정기선거는 대의원의 임기 만료 20일 전까지 실시한다.

④ 보궐선거는 대의원 중 결원이 생긴 때에 실시한다.

제7조 [대의원 수의 배정통지] <삭제> (2012. 10. 15.)



제8조 [대의원 결원의 통지] <삭제> (2012. 10. 15.)

제9조 [대의원선거의 절차] <삭제> (2012. 10. 15.)

제10조 [선출의 통지] <삭제> (2012. 10. 15.)

제11조 [대의원의 임기] ① 대의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그 시기와 종기는 정기총회일을 기준으로 한다. 다만, 보궐선거에 의하여 선출된 대의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개정 2023. 2. 27.)

② 대의원은 후임자가 선출될 때까지 계속하여 그 직무를 행하며, 후임자가 선출되면 그 임기가 만료된 것으로 한다.

제12조 [대의원의 자격상실] 대의원이 소속 지방변호사회의 회원자격을 상실한 때에는 당연히 대의원의 자격을 상실한다.

제13조 [대의원의 임원겸직금지] <삭제> (2012. 10. 15.)

제14조 [회의수당] 총회의 구성원이 총회의 회의에 참석한 때에는 매 년도 예산이 정한 범위 안에서 회의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그 출장비와 체재여비는 소속 지방변호사회가 부담한다.

제 3 장 기 관

제15조 [의장 및 부의장] ① 총회에 의장과 부의장 각 1인을 둔다.

② 의장은 총회를 소집하고, 사회자로서 회의의 질서를 유지하며 의사를 진행한다.

③ 부의장은 의장이 사고가 있거나 사회를 위임한 때에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6조 [의장·부의장의 선출] ① 대의원의 정기선거 후 최초로 소집되는 총회의 회의일에는 그 구성원 중에서 의장과 부의장을 선출하여야 한다.

② <삭제> (1990. 2. 24.)

③ 의장과 부의장의 선출은 단기무기명투표의 방법으로 행한다. 다만, 총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의결로써 선출방법을 달리할 수 있다.

④ 의장 또는 부의장이 결원된 때에는 제3항의 방법으로 그 후임자를 보선하여야 한다. 다만, 그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⑤ 의장 또는 부의장이 총회 구성원의 자격을 상실한 때에는 당연히 의장 또는 부의장직에서 퇴임한다.

제17조 [간사] ① 총회에 간사 1인을 둔다.

② 간사는 의장이 총회의 승인을 얻어 총회 구성원 또는 사무국 직원 중에서 지명한다.

③ 간사는 의장과 부의장을 선출한 직후에 지명하되, 필요한 때에는 언제든지 교체할 수 있다.

④ 간사는 의장의 명을 받아 총회의 의사진행을 보조하고, 의사록을 작성한다.



제 4 장 소집과 의안제출

제18조 [소집시기] ① 정기회는 매년 2월 중 의장이 적당하다고 인정하는 날에 소집한다.

② 임시회는 회칙 제12조 제3항에 의한 소집요구가 있을 때에 의장이 적당하다고 인정하는 날에 소집한다.

제19조 [소집요구] ① 총회 구성원의 3분의 1 이상, 협회장 또는 전국지방변호사회장협의회 구성원의 3분의 2 이상이 회칙 제12조 제3항에 의하여 임시회의 소집을 요구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의 목적사항과 소집요구의 이유를 명시한 소집요구서를 작성하여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8. 12. 3.)

② 의장이 제1항에 의한 소집요구를 받은 때에는 늦어도 2주일 이내에 총회소집을 위한 절차를 취하여야 한다. 다만, 소집요구가 명백하게 이유 없다고 인정할 때에는 의장은 그 요구를 거절할 수 있다.

③ 의장이 제2항 단서에 의하여 소집요구를 거절하기로 한 때에는 소집요구가 있는 날로부터 2주일 이내에 소집 요구자 또는 그 대표자에게 그 뜻을 통지하여야 한다.

제20조 [소집절차] ① 의장이 회칙 제12조 제5항에 의하여 총회를 소집할 때에는 다음 사항을 명시한 소집통지서를 개회 1주일 전까지 총회 구성원 전원에게 발송하여야 한다.

1. 개회일시
2. 개회장소
3. 회의의 목적사항
4. 기타 필요한 사항

② 회칙 제12조 제5항 단서에 의하여 제1항의 소집통지기간을 단축하는 경우에도 제1항의 소집통지서가 총회 구성원에게 도달할 수 있는 기간을 두어야 한다.

③ 회칙 제12조 제4항 단서에 의하여 소집 요구자가 총회를 소집할 때에는 제1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21조 [소집장소] 총회의 소집장소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회의 소재지 또는 그 인접지이어야 한다.

제22조 [의안의 제출] ① 총회에 부의할 의안은 협회장이 이사회 의결을 거쳐 총회일 10일 전까지 총회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그러나 임시회의 경우는 소집을 요구한 자가 지체 없이 의안을 작성하여 총회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986. 2. 22.)

② 총회 구성원은 7인 이상 찬반으로 서면으로써 총회 의장에게 의안을 제출할 수 있다.
(개정 1986. 2. 22.)

제23조 [의안의 송부] 의장은 늦어도 개회 3일 전까지 총회에 부의할 의안을 총회 구성원에게 발송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정이 있거나 회칙 제12조 제5항 단서에 의하여 소집통지기간을 단축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4조 [제출의 제한] 총회에서 부결된 의안 또는 이와 유사한 취지의 의안은 부결된 때로부터 6



월이 경과하지 아니하면 다시 제출할 수 없다. 다만, 총회 구성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있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 5 장 의사진행과 발언

제25조 [의사일정] ① 의장은 총회의 회의를 시작하기 전에 의사일정을 작성하고 이를 회의장에 게시하거나 총회 구성원에게 유인물로 작성하여 교부하여야 한다.

1. 정족수 확인과 개회선언
2. 전회 의사록의 통과와 의사록 기명 날인자의 지명
3. 각종 보고
4. 전회 심의미완료 의안의 심의
5. 새로운 의안의 심의
6. 폐회의 선언

제26조 [개회선언] ① 의장은 개회시각이 되면 간사로 하여금 출석자의 수를 확인하여 회칙 제14조제1항에 정한 의사정족수에 도달하였는지 여부를 보고하게 하여야 한다.

② 의장은 간사로부터 의사정족수에 도달되었음을 보고받은 때에는 지체 없이 개회를 선언하여야 한다.

③ 의장은 개회선언 후에 국민의례절차를 진행하고 간단한 개회인사를 할 수 있다.

제27조 [의사록 통과] ① 의장은 개회벽두에 간사로 하여금 전회 총회의 의사록을 보고하게 하고, 총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의장은 전회 의사록에 수정 또는 가감할 것이 있으면 총회의 결의에 따라 이를 수정 또는 가감하고 그 뜻을 의사록에 기재하게 하여야 한다.

③ 의장은 전회 의사록이 통과되면 회칙 제17조 제1항에 의하여 이번의 의사를 기록한 의사록에 기명날인할 구성원 2인을 지명하고 총회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28조 [각종 보고] ① 총회는 의안심의에 앞서 다음의 각종 보고를 접수한다.

1. 의장의 보고
2. 임원의 보고
3. 감사의 보고

② 의장은 전회 총회 종료 후부터 이번 총회까지 사이에 긴급한 문제로 의장이 단독 처리한 사항이 있으면 이를 총회에 보고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 의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협회장의 요구가 있는 때에는 임원으로 하여금 회 운영에 관한 중요 사항을 총회에 보고하게 할 수 있다.

④ 의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감사의 요구가 있는 때에는 회의 재정 및 사무 집행상황에 관한 감사결과를 총회에 보고하게 하여야 한다.

제29조 [심사위촉] ① 의장은 의안에 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출석 대의원 10인 이상의 동의가 있을 때에는 총회 구성원 중에서 위원을 선임하여 그 의안에 대한 심사를 위촉할 수 있



다.

② 제1항에 따라 선임된 위원은 바로 심사에 착수하고 심사를 마치면 즉시 그 결과를 의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 의장은 제2항의 보고를 바로 총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30조 [발언] ① 회의에서 발언하고자 하는 구성원은 기립하여 의장을 부르고, 자기의 이름과 소속 지방변호사회를 고시한 다음 의장의 허가를 얻어 발언할 수 있다.

② 2인 이상이 기립하여 발언을 요구한 때에는 의장은 먼저 기립한 자를 지명하여 발언하게 하여야 한다.

제31조 [의사진행발언] 의사진행에 관한 발언은 의제에 직접 관계가 있거나 바로 처리하여야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 한하여 의장이 이를 허가한다.

제32조 [질서유지] ① 구성원이 의장의 허가 없이 발언하거나 총회의 질서를 문란하게 할 때에는 의장은 이를 제지하고 그 발언을 취소할 수 있다.

② 의장은 대의원이 제1항의 명령에 따르지 아니할 때에는 그 발언을 금지하거나 퇴장을 명할 수 있다.

제33조 [의장의 발언] 의장이 발언하고자 할 때에는 부의장을 의장석에 앉히고 발언하여야 한다.

제 6 장 의안심의

제34조 [심의의 순서] ① 의안의 심의는 전회 총회에서 심의를 완료하지 못한 의안을 먼저 심의하고 새로 제출된 의안을 뒤에 심의한다.

② 각종 의안의 심의는 의사일정에 정하여진 순서에 따라 심의한다. 다만, 총회가 달리 의결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35조 [의안의 부의와 제안설명] ① 의장은 의사일정에 따라 의안심의에 들어가게 되면 제25조에 정한 순서에 따라 의안을 부의할 것을 선언하여야 한다.

② 의장은 의안을 부의하게 되면 먼저 그 제안자로 하여금 제안의 취지를 설명하게 하여야 한다.

제36조 [질의] ① 제안설명이 끝나면 구성원은 의안에 대하여 자유롭게 질의할 수 있다.

② 질의가 속출하여 쉽게 끝나지 아니할 때에는 구성원은 2인 이상의 찬성을 얻어 질의종결의 동의를 제출할 수 있다.

③ 질의종결동의를 성립한 때에는 의장은 총회에 그 가부를 물어야 한다.

④ 더이상 질의를 하는 자가 없거나 제3항에 의한 질의종결동의를 가결된 때에는 의장은 질의의 종결을 선언하여야 한다.

제37조 [토론] ① 질의가 종결되면 구성원은 부의된 의안에 대하여 자유로 찬성 또는 반대의 토론



을 할 수 있다.

② 토론은 찬성과 반대의 순서로 교차진행함을 원칙으로 한다.

③ 토론이 속출하여 쉽게 끝나지 아니할 때에는 구성원은 2인 이상의 찬성을 얻어 토론종결의 동의를 제출할 수 있다.

④ 토론종결동이가 성립한 때에는 의장은 총회에 그 가부를 물어야 한다.

⑤ 더 이상 토론을 하는 자가 없거나 제4항에 의한 토론종결동이가 가결된 때에는 의장은 토론의 종결을 선언하여야 한다.

제38조 [동의, 개의 또는 재개의] ① 구성원은 토론이 어느 정도 진행되면 부의된 의안을 원안대로 통과시킬 것인지 여부에 대하여 동의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구성원은 동이가 성립되면 그 동의의 내용을 수정하는 동의로써 개의를 제출할 수 있고, 개이가 성립되면 또 다른 구성원은 재개의 또는 재재개의의 순서로 다른 수정동의를 제출할 수 있다.

③ 동의 또는 개이는 어느 것이나 2인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비로소 성립한다. 재개의 이하의 수정동의도 같다.

제39조 [표결] ① 의장은 제37조 제5항에 의하여 토론이 종결되면 그 토론과정에서 성립된 동의와 각종 수정동의를 표결에 부쳐야 한다.

② 의장은 표결선언을 한 직후 그 표결방법을 총회에 문의하여 총회의 의사로 정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회칙 또는 규칙으로 달리 정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표결방법이 정하여지면 최종수정동의로부터 시작하여 원동의에 이르기까지 모든 동의를 차례로 표결에 부쳐야 한다. 다만, 동의 또는 수정동의 중 어느 하나가 만장일치로 표결된 때에는 나머지 동의에 대한 표결을 생략할 수 있다.

④ 표결은 회칙 제14조 제2항에 정한 의결정족수에 도달하여야만 가결되고, 이에 미달하면 부결된다. 다만, 회칙 또는 규칙으로 재표결하도록 규정된 경우에는 그 절차에 따라 가부를 정하여야 한다.

⑤ 의장은 표결 결과를 확인하고 그 가부를 총회에 선포하여야 한다.

제40조 [폐회] 의장은 의사일정에 따른 의안의 심의를 모두 마친 때에는 폐회를 선언하여야 한다.

제 7 장 보 칙

제41조 [총회의 연기·속행] ① 총회는 시간의 부족, 예비심사 기타 사정으로 그 날의 의사일정에 올라 있는 의안을 모두 심의할 수 없을 때에는 결의로써 그 의안의 심의를 다음 총회로 연기하거나, 그 날의 회의를 중지하고 따로 열리는 계속회에서 속행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 후단에 의한 계속회는 그 회의가 중지된 전회 총회와 동일한 총회로 보고, 따로 제20조에 의한 소집절차를 밟지 아니한다.



③ 제1항 후단에 의한 계속회는 그 회의가 중지된 전회 총회와 근접한 날에 열어야 하고, 그 장소도 달리 결의한 경우가 아니면 변경하지 못한다.

제42조 [의사록의 작성] 총회의 의사에 관하여는 의사록을 작성하고 다음 사항을 기재한다.

1. 총회의 일시
2. 총회의 장소
3. 출석구성원의 수
4. 의사의 경과요령
5. 의사의 결과
6. 폐회

제43조 [의사록의 기명날인] ① 의사록에는 그 총회의 의사진행에 관여한 의장과 의사록을 작성한 간사가 먼저 기명날인하고 총회의 승인을 얻어 지명한 구성원이 기명날인한다.

② 기명날인한 의사록은 다음 총회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비로소 확정된다.

부 칙

① [시행일] 이 규칙은 1983. 6. 1.부터 시행한다.

②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재임하는 총회 구성원은 이 규칙에 의한 총회 구성원으로 본다.

③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재임하는 의장과 부의장은 이 규칙에 의한 의장과 부의장으로 본다.

부 칙

이 규칙은 1986. 1. 1.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90. 2. 24.)

이 규칙은 1990. 3. 1.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93. 5. 24.)

이 규칙은 1993. 5. 24.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1. 10. 29.)

이 규칙은 2001. 10. 29.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0. 2. 8.)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2. 10. 15.)

이 규칙은 회칙이 법무부장관의 인가를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8. 12. 3.)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경과규정] ① 제4조의 개정규정은 2019년 2월 정기총회 구성 시부터 적용한다.

② 제5조 및 제19조의 개정규정은 2019년 2월 정기총회부터 적용한다.

부 칙 (2023. 4. 28. 회칙인가)

이 규칙은 회칙이 법무부장관의 인가를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대의원의 임기에 관한 규정은 2025년도 정기총회일부터 적용한다.



총회 사무국 규칙

2019. 7. 22.

규칙 제41호

개정 2022. 4. 25. 2023. 2. 27.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회칙 제11조의2에 의하여 총회 사무국(이하 “사무국”이라 한다)의 직제와 정원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 4. 25.)

제2조 [구성] ① 사무국은 사무총장 1인과 약간 명의 직원을 둔다. (개정 2022. 4. 25.)

② 사무국 직원은 대한변호사협회 사무국 직원 중 총회 의장이 지명하는 2인 이상의 직원으로 구성하고, 지명된 사무국 직원은 총회 업무를 우선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신설 2022. 4. 25.)

③ 사무국 직원은 총회 의장의 명을 받아 사무를 처리하며, 임원은 사무국 직원의 총회 업무에 간섭하여서는 아니 된다. (신설 2022. 4. 25.)

제3조 [사무총장] ① 사무총장은 총회 의장의 명을 받아 사무국의 직무를 통할하고 직원을 지휘·감독한다.

② 사무총장은 총회 간사가 겸직한다.

제4조 [업무] 사무국은 다음의 사무를 담당한다.

1. 총회 개최 및 운영에 관한 사항
2. 총회 산하의 예산결산심사위원회 및 특별위원회의 활동에 관한 사항
3. <삭제> (개정 2022. 4. 25.) (개정 2023. 2. 27.)
4. 기타 총회 의장이 정하는 사항 (신설 2022. 4. 25.)

제5조 [운영 지원] ① 협회장은 총회의 운영에 필요한 지원을 한다. (개정 2022. 4. 25.)

② 회칙 제11조의3, 제11조의4에서 정한 위원회의 활동에 대하여 총회예산의 범위 안에서 회칙 제31조에서 정한 위원회의 위원에 준하는 수당 등을 지급하여야 한다. (신설 2022. 4. 25.)

(제목 2022. 4. 25.)

제6조 [시행세칙] 사무국의 사무집행, 문서관리 기타 이 규칙을 시행하는 데 필요한 세부사항은 협회 회규를 따른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22. 4. 25.)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23. 4. 28.)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총회 운영위원회 규칙

2022. 4. 25.

규칙 제43호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회칙 제11조의4에 의하여 총회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조직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기능] 위원회는 총회 운영을 위한 준비와 회칙 및 규칙의 제정·개정에 대한 자문 등의 업무를 수행한다.

제3조 [조직] ① 위원회는 2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위원회의 업무를 보좌하기 위하여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위원은 총회 의장이 대의원 중에서 임명한다.

③ 위원 중에서 결원이 생긴 때에는 그 후임자를 보충하여 임명할 수 있다.

제4조 [임원] ① 위원회에 위원장 1인, 부위원장 1인, 간사 1인을 둔다.

②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회에서 호선하고, 간사는 위원장이 선임한다.

③ 위원장은 위원회를 통할하고 위원회를 대표한다.

④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유고 시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⑤ 간사는 위원장의 지시에 따라 위원회의 사무를 담당한다.

제5조 [임기] ① 위원의 임기는 대의원의 임기와 동일하게 한다.

② 제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임명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제6조 [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소집하고 위원장이 위원회의 의장이 된다. 다만, 위원장이 선출되기까지는 총회 의장이 이를 소집한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성립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7조 [준용] 이 규칙이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관하여는 협회 위원회운영규칙을 준용한다.

부 칙 (2022. 4. 25.)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총회 예산결산심사위원회 규칙

2019. 7. 22.

규칙 제42호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회칙 제11조의3에 의하여 총회 예산결산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조직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기능] 위원회는 협회 예산 및 결산 승인을 위한 총회 시 그 심사내용을 공표하고, 적격 및 부적격 의견을 표명한다. 다만, 대의원선출 후 최초로 소집되는 정기총회에서는 직전 위원장이 심사내용 및 의견을 공표한다.

제3조 [조직] ① 위원회는 2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은 총회에서 대의원 중 선임한다.

③ 위원 중에서 결원이 생긴 때에는 그 후임자를 보충하여 선임할 수 있다.

제4조 [임원] ① 위원회에 위원장 1인, 부위원장 및 간사 1인을 둔다.

②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회에서 호선하고, 간사는 위원장이 선임한다.

③ 위원장은 위원회를 통할하고 위원회를 대표한다.

④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유고 시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⑤ 간사는 위원장의 지시에 따라 위원회의 사무를 담당한다.

제5조 [임기] ① 위원의 임기는 대의원의 임기와 동일하게 한다.

② 제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임명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제6조 [회의] ① 위원회는 위원장이 소집한다. 다만, 위원장이 선출되기까지는 총회의장이 이를 소집한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성립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협회장, 부협회장, 상임이사는 위원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제7조 [준용] 이 규칙이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관하여는 협회 위원회운영규칙을 준용한다.

부 칙 (2019. 7. 22.)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사회운영규칙

1983. 5. 21.

규칙 제3호

개정 1996. 6. 17.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이사회의 구성, 임원, 소집, 의사 기타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지위 및 의결사항] 이사회는 회무에 관한 중요 사항을 의결하는 합의제 집행기관으로서 회칙 제20조에 정한 사항을 의결한다.

제3조 [구성] ① 이사회는 협회장, 부협회장, 상임이사 및 이사로 구성한다.

② 감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제4조 [의장 및 부의장] ① 이사회의 의장은 협회장이 되고 부의장은 부협회장이 된다.

② 의장은 이사회를 소집하고, 사회자로서 회의의 질서를 유지하며, 의사를 진행한다.

③ 부의장은 의장이 사고가 있거나 사회를 위임한 때에 미리 정한 순서에 따라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5조 [간사] ① 이사회의 간사는 총무이사가 된다.

② 간사는 의장의 명을 받아 이사회의 의사진행을 보좌하고 의사록을 작성한다.

제6조 [소집] ① 이사회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한다.

② 정기회는 매 3개월마다 협회장이 적당하다고 인정하는 날에 소집한다.

③ 임시회는 회칙 제19조제3항에 해당하는 때에 협회장이 적당하다고 인정하는 날에 소집한다.

④ 이사회의 소집요구, 소집절차 및 소집장소에 관하여 회칙에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총회운영규칙 제19조 내지 제21조를 준용한다.

제7조 [의안의 제출] 협회장은 이사회에 부의할 의안을 늦어도 회의개시 전까지 구성원에게 배부하여야 한다.

제8조 [의사진행과 발언] 이사회의 의사진행과 발언에 관하여는 총회운영규칙 제5장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9조 [의안심의] 이사회의 의안심의에 관하여는 총회운영규칙 제6장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10조 [이사회연기·속행] 이사회연기와 속행에 관하여는 총회운영규칙 제41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11조 [의사록] ① 이사회연기·속행에 관하여는 총회운영규칙 제42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② 의사록의 기명날인은 의장과 간사가 한다.



부 칙

- ① [시행일] 이 규칙은 1983. 6. 1.부터 시행한다.
- ② [경과조치] 협회장은 이 규칙 시행 후 1월 이내에 이사회를 소집하여야 하고, 그 이사회는 정기회로 한다.

부 칙 (1996. 6. 17.)

이 규칙은 1996. 6. 29.부터 시행한다.



상임이사회운영규칙

1983. 5. 21.

규칙 제4호

개정 1993. 2. 27.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상임이사회의 구성, 소집, 의사 기타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지위 및 의결사항] 상임이사회는 회무집행에 관한 심의기관으로서 회칙 제29조에 정한 사항을 심의한다.

제3조 [구성] ① 상임이사회는 협회장, 부협회장, 상임이사로 구성한다.

② 협회장은 상임이사회의 심의를 거쳐 회무의 연속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전임 집행부의 부협회장 또는 상임이사 중 1인을 6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상임이사회에 출석 발언케 할 수 있다.

제4조 [소집] 상임이사회는 매월 1회 정기적으로 소집한다. 다만, 협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언제든지 소집할 수 있다.

제5조 [준용규정] 상임이사회의 운영에 관하여는 그 성질에 반하지 아니하는 한 이사회운영규칙을 준용한다.

부 칙

① [시행일] 이 규칙은 1983. 6. 1.부터 시행한다.

② [경과조치] 협회장은 이 규칙 시행 후 1주일 이내에 상임이사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부 칙 (1993. 2. 27.)

이 규칙은 1993. 3. 1.부터 시행한다.



위원회운영규칙

1983. 5. 21.

규칙 제5호

개정

1988. 2. 27. 1990. 2. 24. 1993. 5. 24.
 1995. 9. 25. 1996. 6. 17. 1998. 2. 27.
 1998. 6. 8. 2001. 10. 29. 2003. 10. 27.
 2005. 2. 21. 2006. 2. 20. 2007. 7. 23.
 2014.10. 13. 2016. 2. 29. 2017. 2. 27.
 2018. 2. 26. 2021. 2. 22. 2021. 5. 31.
 2024. 1. 22.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회칙 제31조에 의하여 설치할 각종 위원회의 종류, 조직, 권한, 의사 기타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종류] ① 위원회는 상설위원회와 특별위원회로 한다.

② 상설위원회를 다음과 같이 둔다.

1. 총무위원회
2. 재무위원회
3. 법제위원회
4. 인권위원회
5. 교육위원회
6. 회원위원회
7. 공보위원회
8. 국제위원회 (개정 2001. 10. 29.)
9. 기획위원회 (신설 2003. 10. 27.)
10. 사업위원회 (신설 2003. 10. 27.)
11. 미디어소통위원회 (신설 2021. 5. 31.)
12. 정책위원회 (신설 2021. 5. 31.)
13. 정무위원회 (신설 2024. 1. 22.)

③ 특별위원회는 특별한 업무를 분담하게 할 목적으로 이사회가 그 조직, 권한, 존속기간 기타 필요한 사항을 규정으로 정하는 경우에 한하여 둘 수 있다.

제3조 [위원] ① 위원회의 정원은 10인 이상 100인 이하로 한다. 다만, 특별위원회의 설치규정에서 따로 정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1. 2. 22.)

② 위원은 협회장이 상임이사회의 심의를 거쳐 개인회원 중에서 지명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 상임이사회의 심의를 거쳐 학식과 덕망이 있는 인사를 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 (개정 2014. 10. 13.)



- ③ 감사 및 징계처분이 확정된 때부터 변호사법시행령 제23조의2 제2항에 따른 징계정보의 인터넷 홈페이지 게재 기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위원회의 위원이 될 수 없다. (개정 2018. 2. 26.)
- 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특별위원회의 위원은 이 회의 임원개선에 불구하고 그 설치 규정에서 정한 임기까지 재임한다. (개정 1998. 6. 8.)
- ⑤ 위원 중 결원이 생긴 때에는 지체 없이 그 후임자를 지명 또는 위촉한다. 다만, 위원 정원의 4분의 1 이내에서 결원이 생긴 때에는 그 후임자를 지명 또는 위촉하지 아니할 수 있다.
- ⑥ 제5항에 의하여 지명 또는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 ⑦ 위원은 임기가 만료되었더라도 후임자가 지명 또는 위촉될 때까지는 계속하여 그 직무를 행한다.

제3조의2 [위원의 직무집행정지] ① 이 회의 징계위원회의 징계처분이 확정된 위원은 변호사법시행령 제23조의2 제2항의 기간 동안 직무집행이 정지된다. (개정 2018. 2. 26.)

② <삭제> (2018. 2. 26.)

③ 협회장은 위원에게 적절한 직무수행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위원을 해임 또는 해촉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6. 2. 29.)

제4조 [임원] ① 위원회에 위원장 1인, 부위원장 1인 및 간사 약간인을 둔다. (개정 1988. 2. 27.)

② 상설위원회의 위원장은 협회장이 추천한 위원 중에서 위원회가 선임한다. (개정 2014. 10. 13.)

③ 특별위원회의 위원장은 협회장이 추천한 위원 중에서 선임한다. (신설 1990. 2. 24.)

④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간사는 위원, 사무차장 및 촉탁변호사 중에서 위원장이 선임한다. (개정 1998. 6. 8.)

⑤ 제3조제4항 내지 제7항은 임원의 경우에 준용한다.

제5조 [임원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사무를 통할하고 위원회를 대표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간사는 위원장의 지시에 따라 위원회의 서무를 담당한다.

제6조 [회의] ① 위원회는 위원장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매월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다만, 위원장이 선임되기까지는 협회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14. 10. 13.)

② 위원회는 협회장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 위원회 구성원의 3분의 1 이상이 회의의 목적사항과 소집의 이유를 기재한 서면을 위원장에게 제출하고 위원회의 소집을 요구하는 때에 소집한다. (개정 2014. 10. 13.)

③ 위원회는 이 규칙에서 달리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적위원 4분의 1 이상의 출석으로 성립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가부동수인 때에는 위원장이 결정한다. (개정 1990. 2. 24.)

④ 위원회의 의사진행, 발언, 의안심의 기타 회의운영에 관하여는 총회운영규칙 제5장 및 제6장의 규정을 준용한다.

⑤ 협회장, 부협회장, 상임이사 및 이사는 위원회에 참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제7조 [소위원회] ① 위원회 위원장은 특정한 사항을 연구 또는 조사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상임이사회의 심의를 거쳐 위원 또는 위원이 아닌 자로 구성된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 (개정 2017. 2. 27.)

② <삭제> (2017. 2. 27.)

③ 소위원회의 소집, 회의 및 의사진행에 관하여는 위원회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④ 소위원회 위원장은 의사의 경과와 결과를 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⑤ 소위원회 위원 임기는 소위원회 위원으로 임명 또는 위촉된 날부터 위원회 임기가 만료되는 날까지로 한다. 다만, 소위원회의 목적사업이 임기 만료 전 종료된 때에는 소위원회 위원의 임기도 만료된 것으로 본다. (신설 2018. 2. 26.)

제8조 [연석회의] 위원장은 심의안건이 다른 위원회와 관련이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관련 위원회의 위원장과 협의하여 연석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다만, 그 의결은 위원회별로 따로 하여야 한다.

제9조 [의사록 및 보고] ① 위원회의 의사에 관하여는 사무국 직원으로 하여금 의사록을 작성케 하고, 위원장과 간사가 기명날인 또는 서명한다. (개정 2014. 10. 13.)

② 위원장은 위원회의 의사의 경과와 결과를 협회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0조 [수당 등의 지급] ① 위원(소위원회 위원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회의에 참석한 때에는 예산이 정한 범위 안에서 회의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4. 10. 13.)

② 위원은 위원회의 사무를 위하여 출장하거나 비용을 체당한 때에는 그 실비를 변상 받는다.

제11조 [총무위원회] 총무위원회의 심의사항은 다음과 같다.

1. 이 회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기본 계획의 수립
2. 이 회의 회칙, 규칙 및 규정의 제정 또는 개폐 (개정 1998. 6. 8.)
3. 이 회의 기밀 및 보안의 유지
4. 기타 다른 위원회의 소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제12조 [재무위원회] 재무위원회의 심의사항은 다음과 같다.

1. 예산 및 결산안의 작성
2. 수입 및 지출의 관리
3. 재산의 관리
4. 기타 이 회의 재정에 관한 사항

제13조 [법제위원회] 법제위원회의 심의사항은 다음과 같다.

1. 법령의 제정 및 개정에 관한 조사연구 및 건의
2. 사법제도 및 변호사제도의 개선
3. 판례의 조사연구
4. 법령의 질의 및 해석



제14조 [인권위원회] 인권위원회의 심의사항은 다음과 같다.

1. 인권사상의 보급 및 계몽
2. 인권침해사건에 대한 조사 및 건의
3. <삭제> (2007. 7. 23.)
4. 인권 관련 법령의 제정 및 개정에 관한 조사연구 및 건의 (신설 2021. 2. 22.)

제15조 [교육위원회] 교육위원회의 심의사항은 다음과 같다.

1. 변호사사무의 개선에 관한 조사연구
2. 회원 및 변호사사무직원에 대한 교육과 지도
3. 사법연수생에 대한 교육과 지도
4. 변호사연수사업에 대한 계획의 수립

제16조 [회원위원회] 회원위원회의 심의사항은 다음과 같다.

1. 변호사의 등록과 신고, 등록심사위원회에 회부할 등록거부 또는 등록취소안건의 조사
2. 지방변호사회, 법무법인·법무법인(유한)·법무조합의 설립 (2006. 2. 20. 개정)
3. <삭제> (2014. 10. 13.)
4. 회원의 분쟁조정
5. 회원의 포상, 경조 (개정 2014. 10. 13.)
6. 회원의 복지후생

제17조 [공보위원회] 공보위원회의 심의사항은 다음과 같다.

1. 이 회의 정책 등 대변에 관한 사항 (개정 2021. 5. 31.)
2. <삭제> (1988. 2. 27.)
3. 언론기관과의 교섭 및 협의에 관한 사항 (개정 2021. 5. 31.)
4. 법조 관련 우수언론인의 선정 및 시상에 관한 사항 (개정 2021. 5. 31.)
5. 기타 이 회와 관련한 광고 및 공보물의 제작에 관한 사항 (신설 2021. 5. 31.)

제18조 [국제위원회] 국제위원회의 심의사항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01. 10. 29.)

1. 국제법률문화의 교류 및 국제 법조단체와의 제휴
2. 회원의 해외파견 및 외국인사의 초청
3. 법률시장개방에 관한 사항 (개정 2003. 10. 27.)

제19조 [기획위원회] 기획위원회의 심의사항은 다음과 같다.

1. 관계 기관과의 교섭 및 협의에 관한 사항 (개정 2016. 2. 29.)
2. 각종 현안에 대한 정보 수집 및 분석 (개정 2016. 2. 29.)
3. 입법평가에 관한 사항 (개정 2016. 2. 29.)

제20조 [사업위원회] 사업위원회의 심의사항은 다음과 같다.

1. 국선번호, 당직번호, 공익활동에 관한 조사연구
2. <삭제> (2014. 10. 13.)



3. 각종 현안에 대한 정보의 조사연구 (개정 2014. 10. 13.)

4. <삭제> (2014. 10. 13.)

5. 법률구조사업에 관한 계획의 수립 (개정 2007. 7. 23.)

제21조 [미디어소통위원회] 미디어소통위원회의 심의사항은 다음과 같다.

1. 이 회의 홍보 및 선전
2. 뉴미디어 활용 사업의 계획 및 추진에 관한 사항
3. 소셜미디어를 활용한 대회원 및 대국민 소통에 관한 사항
4. 소셜미디어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사항

(본조신설 2021. 5. 31.)

제22조 [정책위원회] 정책위원회의 심의사항은 다음과 같다.

1. 변호사 직역 보호 및 확대에 관한 정책 제안
2. 비변호사의 변호사 혹은 변호사단체 대한 위법행위 내지 탈법행위 조사 및 대응
3. 비변호사 및 변호사의 광고에 대한 관련 법령 준수여부 조사, 관리 및 감독
4. 변호사 직역침탈 행위에 대한 조사 및 대응
5. 변호사의 업무 개선 및 복지 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6. 위 사항과 관련한 국회, 정부, 공공기관, 민간단체 등 대외협력 및 대응

(본조신설 2021. 5. 31.)

제23조 [정무위원회] 정무위원회의 심의사항은 다음과 같다.

1. 변호사제도 유지 및 개선을 위한 대외 활동
2. 변호사제도 관련 법령 등에 대한 모니터링

(본조신설 2024. 1. 22.)

부 칙

① [시행일] 이 규칙은 1983. 6. 1.부터 시행한다.

② [경과조치] 이 규칙에 의하여 최초로 선임되는 위원의 임기는 1984년 정기총회일까지로 한다.

부 칙 (1988. 2. 27.)

이 규칙은 1988. 1. 1.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96. 6. 17.)

이 규칙은 1996. 6. 29.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98. 2. 27.)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20일이 경과함으로써 그 효력이 발생한다.

부 칙 (1998. 6. 8.)

- ① [시행일] 이 규칙은 1998. 7. 1.부터 시행한다.
- ②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의 임원의 임기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 칙 (2001. 10. 29.)

이 규칙은 2001. 10. 29.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5. 2. 2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20일이 경과함으로써 그 효력이 발생한다.

부 칙 (2006. 2. 2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20일이 경과함으로써 그 효력이 발생한다.

부 칙 (2007. 7. 23.)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20일이 경과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4. 10. 13.)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20일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6. 2. 29.)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7. 2. 27.)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8. 2. 26.)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21. 2. 22.)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21. 7. 2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24. 1. 22.)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변호사 등록 등에 관한 규칙

(2016. 2. 29. 규칙제목개정)

1983. 5. 21.

규칙 제15호

개정 1984. 2. 26. 1986. 2. 22. 1990. 2. 24.
 1992. 2. 29. 1992. 5. 18. 1996. 6. 17.
 1997. 2. 22. 2000. 7. 3. 2001. 10. 29.
 2003. 2. 10. 2004. 2. 23. 2006. 2. 20.
 2007. 2. 26. 2007. 7. 23. 2009. 2. 26.
 2010. 2. 8. 2011. 12. 12. 2012. 10. 15.
 2014. 2. 24. 2014. 10. 13.

전부개정 2016. 2. 29.

개정 2017. 2. 27. 2018. 2. 26. 2021. 2. 22.
 2024. 1. 22.

제 1 장 총 칙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변호사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회칙에 의하여 변호사 등록 등의 신청 및 신고, 등록거부 및 등록취소에 관한 사무처리의 기준과 절차 및 등록심사위원회의 심사 절차와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변호사 명부에 등록”이란 이 규칙이 정하는 사항을 전산정보처리시스템을 이용하여 변호사 명부에 기록하는 것을 말한다.
2. “전산정보처리시스템”이란 변호사 등록 등의 신청 및 신고 등의 절차에 필요한 전자문서를 작성·제출·송달하거나 관리하는 데에 이용되는 정보처리능력을 가진 전자적 장치 또는 체계로서 이 회가 지정하는 것을 말한다.
3. “전자문서”란 컴퓨터 등 정보처리능력을 가진 장치에 의하여 전자적인 형태로 작성되거나 변환되어 송신·수신 또는 저장되는 정보를 말한다.

제3조 [적용범위] 이 규칙은 이 회의 개인회원에게 적용한다.

제4조 [전산정보처리시스템의 운영] 이 회의는 전산정보처리시스템을 설치·운영한다.

제5조 [전자문서에 의한 신청 및 신고] ① 이 규칙에 따른 신청 및 신고(이하 “신청등”이라고 한다)는 전산정보처리시스템을 이용하여 이 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전자문서로 제출하여야 한다.

② 이 규칙에 따라 작성·제출·송달·보존하는 전자문서는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법과 이 규칙에서 정한 요건과 절차에 따른 문서로 본다.



제6조 [사용자등록] ① 변호사 자격을 가진 자로서 전산정보처리시스템을 이용하려는 자는 이 규칙에 따라 사용자등록을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사용자등록을 한 자(이하 “등록사용자”라 한다)는 규정으로 정하는 절차 및 방법에 따라 사용자등록을 철회할 수 있다.

③ 이 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등록사용자의 사용을 정지하거나 사용자등록을 말소할 수 있다.

1. 변호사 자격이 없는 자가 사용자등록을 한 경우
2. 등록사용자의 등록신청이 거부된 경우
3. 등록사용자의 동일성이 인정되지 아니하는 경우
4. 사용자등록을 신청하거나 사용자정보를 변경할 때 거짓의 내용을 입력한 경우
5. 다른 등록사용자의 사용을 방해하거나 그 정보를 도용하는 등 전산정보처리시스템을 이용한 신청등의 진행에 지장을 준 경우
6.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전산정보처리시스템에 장애를 일으킨 경우
7. 그 밖에 규정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④ 제3항에 따른 등록사용자의 사용 정지 및 사용자등록 말소의 구체적인 절차와 방법은 규정으로 정한다.

제7조 [전자적 송부 또는 통지] ① 이 회 및 지방변호사회는 이 규칙에 따른 송부 또는 통지(이하 “송부등”이라 한다)를 전산정보처리시스템을 이용하여 전자적인 방법으로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송부등은 등록사용자가 등록한 전자우편주소로 전자우편을 보내거나 휴대전화번호로 문자메시지를 보내는 방법 기타 이에 준하는 방법으로 한다.

③ 제2항의 전자우편이나 문자메시지는 전자우편이 전자우편주소로 전송된 때 또는 문자메시지가 휴대전화번호로 전송된 때 그 효력이 생긴다.

제8조 [전자문서의 접수 등] ① 지방변호사회는 신청등이 제출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문서를 제출한 신청인 또는 신고인(이하 “신청인등”이라 한다)에게 접수사실을 전산정보처리시스템을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접수통지를 한 때에 신청등이 접수된 것으로 본다.

제9조 [신청등의 추후 보완] ① 이 회 및 지방변호사회는 신청등의 기재사항이나 첨부서류에 흠이 있는 경우에는 신청인등에게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보완할 것을 명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명령에 따른 경우 신청등이 최초로 접수된 때에 접수된 것으로 보고, 이 명령에 따르지 아니하는 경우 접수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제 2 장 등 록

제10조 [등록의 구분] 이 규칙에 의한 등록은 다음 각 호로 구분한다.



1. 변호사자격등록

2. 소속변경등록

제11조 [전자문서를 이용한 등록신청] ① 이 규칙에 따른 등록신청은 전산정보처리시스템을 이용하여 전자문서로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등록신청은 규정에서 정한 신청서 기재사항에 대한 정보와 첨부서류를 전자문서로 송신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한다.

제12조 [등록료의 납부] ① 이 규칙에 따른 등록을 신청한 자는 200만 원 이하의 범위 내에서 규정으로 정하는 등록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등록을 신청한 자가 법무법인·법무법인(유한)·법무조합 또는 공증인가합동법률사무소(이하 “법무법인등”이라 한다)의 구성원 또는 소속변호사가 되는 때에 법무법인등은 제1항의 등록을 신청한 자와 연대하여 제1항의 등록료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제13조 [지방변호사회의 처리] ① 지방변호사회는 제10조의 등록신청을 받은 때에는 의견서를 첨부하여 지체 없이 이 회에 등록신청서를 송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송부는 전산정보처리시스템을 이용하여 전자문서로 송신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한다.

③ 지방변호사회가 제1항의 송부를 한 때에 등록신청이 지방변호사회를 거친 것으로 본다.

제14조 [이 회의 처리] ① 이 회의는 제13조에 따른 송부를 받은 때에는 이를 심사하여 제8조제1항에 따른 접수통지가 된 날부터 3월 이내에 등록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② 협회장은 제1항에 의한 심사를 함에 있어서 필요한 때에는 소관 상임이사 또는 소관 위원회로 하여금 필요한 조사를 하게 할 수 있다.

③ 이 회의는 심사결과 등록을 거부할 사유가 없다고 인정한 때에는 지체 없이 변호사 명부(이하 “명부”라 한다)에 등록하여야 한다.

④ 협회장은 심사결과 제16조의 등록거부사유에 해당한다고 인정되거나 의심되는 때에는 지체 없이 등록심사위원회에 등록거부에 관한 안건을 회부하여야 한다.

제15조 [등록 후 절차] ① 이 회의는 변호사자격등록을 한 경우 신청인에게 등록증서를 교부하고, 신청인 및 해당 지방변호사회에 그 뜻을 통지하여야 한다.

② 이 회의는 소속변경등록을 한 경우 신청인, 해당 지방변호사회 및 신청인의 종전 소속 지방변호사회에 그 뜻을 통지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교부 및 통지는 전산정보처리시스템을 이용하여 전자문서로 송신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한다. 다만, 상임이사회 심의를 거쳐 문서를 송신하는 방법으로 할 수 있다. (단서신설 2017. 2. 27.)

제16조 [등록거부] 이 회의는 제10조에 의한 등록을 신청한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등록심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그 등록을 거부할 수 있다. 이 경우 제4호에 해당하여 등록을 거부할 때에는 등록심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1년 이상 2년 이하의 등록금지기간을 정하여야 한다.

1. 법 제4조에 따른 변호사의 자격이 없는 자



2. 법 제5조에 따른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자
 3. 심신장애로 인하여 변호사의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현저히 곤란한 자
 4. 공무원 재직 중의 위법 행위로 인하여 형사소추(과실범으로 공소제기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또는 징계처분[과면, 해임, 면직 및 정직(해당 징계처분에 의한 정직기간이 끝나기 전인 경우에 한한다)]을 받거나 그 위법행위와 관련하여 퇴직한 자로서 변호사의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현저히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자(개정 2018. 2. 26.)
 5. 제4호에 해당하여 등록이 거부된 후 등록금지기간이 지나지 아니한 자
 6. 제4호에 해당하여 법 제18조제2항에 따라 등록이 취소된 후 등록금지기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제17조 [등록거부의 의결 등] ① 등록심사위원회는 제14조제4항에 따라 등록거부에 관한 안건을 회부 받은 때에는 이를 심사하여 등록거부의 가·부를 의결하여야 한다.
- ② 등록심사위원회가 등록거부의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여 등록거부를 의결한 때에는 이회는 지체 없이 그 뜻을 신청인과 해당 지방변호사회에 통지하여야 한다.
- ③ 등록심사위원회가 등록거부의 사유가 없다고 인정하여 등록거부를 하지 않기로 의결한 때에는 이회는 지체 없이 명부에 등록하여야 한다.
- ④ 제2항의 통지는 전산정보처리시스템을 이용하여 전자문서로 송신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한다.
- 제18조 [등록거부에 대한 이의신청] 제17조제2항에 따라 등록이 거부된 자는 등록거부통지를 받은 날부터 3월 이내에 등록거부에 관하여 부당한 이유를 소명하여 법무부장관에게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 제19조 [등록간주 및 등록명령의 처리] 이회는 법 제8조제3항에 해당하거나 법무부장관으로부터 법 제8조제5항에 의한 등록명령을 받은 때에는 지체 없이 명부에 등록하여야 한다.

제 3 장 등록취소

제20조 [등록취소의 구분] 이 규칙에 의한 등록취소는 다음 각 호로 구분한다.

1. 신청에 의한 등록취소
2. 직권에 의한 등록취소
3. 명령에 의한 등록취소

제21조 [신청에 의한 등록취소] ① 이 규칙에 따른 등록취소신청은 전산정보처리시스템을 이용하여 전자문서로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등록취소신청을 할 수 없다.

1. 법 제18조의 등록취소사유(제1항제1호는 제외한다)에 해당하는 경우
2. 법 제19조의 등록취소명령 또는 법 제102조의 업무정지명령이 있는 경우
3. 지방변호사회장·지방검찰청 검사장·법조윤리협의회 위원장의 징계개시신청 또는 협회장의 징계개시청구가 있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등록취소신청은 규정에서 정한 신고서 기재사항에 대한 정보와 첨부서류를 전자문서로 송신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한다.

제22조 [지방변호사회의 처리] ① 지방변호사회는 제21조의 등록취소신청을 받은 때에는 지체 없이 이 회에 등록취소신청서를 송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송부는 전산정보처리시스템을 이용하여 전자문서로 송신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한다.

③ 지방변호사회가 제1항의 송부를 한 때에 등록취소신청이 지방변호사회를 거친 것으로 본다.

제23조 [이 회의 처리] ① 이 회의는 제22조에 따른 송부를 받은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수리하여 변호사자격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② 협회장은 신청인에게 징계협의를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21조제1항제3호의 징계개시신청 또는 징계개시청구 여부에 대한 결정이 있을 때까지 제1항의 수리를 보류할 수 있다.

제24조 [직권에 의한 등록취소] ① 이 회의는 변호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변호사자격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2호에 해당하여 변호사의 등록을 취소하려면 등록심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1. 사망한 경우

2. 법 제4조에 따른 변호사의 자격이 없거나 법 제5조에 따른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② 이 회의는 변호사가 법 제8조제1항제3호·제4호에 해당하면 등록심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변호사의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이 경우 법 제8조제1항제4호에 해당하여 등록을 취소할 때에는 등록심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1년 이상 2년 이하의 등록금지기간을 정하여야 한다.

③ 지방변호사회는 소속 변호사에게 등록취소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이 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④ 이 회의는 변호사에게 등록취소사유가 있음을 발견한 때에는 당사자 또는 유족, 소속 지방변호사회 등에 조회하여 소명자료를 제출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⑤ 협회장은 등록취소사유(제1항제1호의 경우는 제외한다)에 해당한다고 인정되거나 의심되는 때에는 지체 없이 등록심사위원회에 등록취소에 관한 안건을 회부하여야 한다.

제25조 [등록취소에 대한 이의신청] ① 제24조에 의하여 등록이 취소된 자는 제27조제2항에 의한 등록취소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월 이내에 등록취소에 관하여 부당한 이유를 소명하여 법무부장관에게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② 제24조제1항제1호의 사유로 등록이 취소된 때에는 이를 안 날로부터 3월 이내에 부당한 이유를 소명하여 법무부장관에게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③ 법무부장관이 제1항 및 제2항의 이의신청이 이유 있다고 인정하여 당해 변호사의 등록취소의 취소를 명한 때에는 이 회의는 지체 없이 등록취소를 취소하여야 한다.

제26조 [명령에 의한 등록취소] 이 회의가 법무부장관으로부터 법 제19조에 의한 등록취소명령을 받은 때에는 지체 없이 변호사자격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 제27조 [등록취소 후 절차] ① 이 회가 등록취소를 한 경우 명부에 그 사유와 취소연월일을 기재한 후 이를 폐쇄하여야 한다.
- ② 제1항에 의한 등록취소를 한 때에는 그 뜻을 당사자(제24조제1항제1호의 경우는 제외한다), 소속 지방변호사회 및 법원행정처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③ 제25조제3항에 의하여 등록취소가 효력을 상실한 때에는 그 사실을 당사자, 소속 지방변호사회 및 법원행정처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④ 제2항 및 제3항의 통지는 전산정보처리시스템을 이용하여 전자문서로 송신하는 방법 또는 우편 발송에 의한 방법으로 하여야 한다.

제 4 장 등록심사위원회

- 제28조 [등록심사위원회의 구성] ① 등록심사위원회는 판사 1인, 검사 1인, 변호사 4인, 법학교수 1인 및 경험과 덕망이 있는 자로서 변호사가 아닌 자 2인으로 구성하고, 위원의 수와 같은 수의 예비위원을 둔다.
- ② 판사인 위원 및 예비위원은 법원행정처장의, 검사인 위원 및 예비위원은 법무부장관의 각 추천을 받아 협회장이 위촉하며, 변호사인 위원 및 예비위원은 총회에서 선출하고, 법학교수 및 경험과 덕망이 있는 자로서 변호사가 아닌 위원 및 예비위원은 협회장이 상임이사회의 심의를 거쳐 위촉한다.
- ③ 판사, 검사, 변호사인 위원 및 예비위원은 변호사자격을 취득한 때부터 10년을 경과한 자이어야 하며, 변호사인 위원 및 예비위원은 변호사로서 5년 이상 개업한 경력이 있어야 한다.
- ④ 위원장은 변호사인 위원 중에서 호선으로 선출한다.
- ⑤ 위원 및 예비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보선된 위원 및 예비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 ⑥ 위원 및 예비위원에 결원이 생겼을 때에는 조속히 위촉하거나 선출하여야 한다.
- ⑦ 위원이 사고, 결원, 제척, 기피, 회피 등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명하는 예비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29조 [제척, 기피, 회피] ① 위원은 자기 또는 8촌 이내의 친족이나 4촌 이내의 인척 및 배우자에 관한 안건의 심사 및 의결에서 제척된다.
- ② 당사자는 심사 및 의결의 공정성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는 위원에 대하여 기피신청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등록심사위원회는 지체 없이 결정하여야 한다.
- ③ 제2항의 사유가 있을 때에는 위원은 회피할 수 있다. 회피의 신청이 있을 때에는 등록심사위원회는 지체 없이 결정하여야 한다.

- 제30조 [등록심사위원회의 기구] ① 등록심사위원회에는 위원장 및 간사 각 1인을 둔다.
- ② 간사는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 ③ 위원장은 등록심사위원회를 대표하고, 등록심사위원회의 사무를 통할한다. 위원장이 사고 기타의



사유로 위원장의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등록심사위원회가 정한 순서에 의하여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④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등록심사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한다.

제31조 [안전의 회부] 협회장이 안전을 등록심사위원회에 회부할 때에는 대상자의 인적사항 및 등록거부 또는 등록취소사유 등을 기재한 안전회부서와 관련 자료를 등록심사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32조 [심사기일의 통지 등] ① 위원장은 등록거부 또는 등록취소의 안전이 회부되면 지체 없이 심사기일을 정하여 위원 및 당사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최초 심사기일의 경우에는 심사기일의 7일 전까지 통지하여야 하며, 심사기일에 출석한 당사자에게는 다음 심사기일을 고지함으로써 통지에 갈음할 수 있다.

② 등록심사위원회는 당사자로 하여금 심사기일에 출석하여 진술하고 증거자료 등을 제출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다만, 당사자가 심사기일의 통지를 받고도 출석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최초 심사기일을 통지할 때에는 안전회부서에 기재된 등록거부 또는 등록취소 사유의 요지 및 제33조에 따른 권리가 있음을 기재하여야 한다.

④ 제1항의 통지는 전산정보처리시스템을 이용하여 전자문서로 송신하는 방법 또는 우편발송에 의한 방법으로 하여야 한다.

제33조 [당사자 등의 권리] ① 당사자는 다음 각 호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1. 심사기일 출석 및 당해 안전에 대한 의견 진술(구술 또는 서면)
2. 증거서류 또는 증거물 제출
3. 심사 공개의 신청
4. 참고인의 심문, 검증 등의 증거조사 신청
5. 심사기록 및 증거물 등에 대한 열람 또는 등사

② 당사자는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하여 제1항의 권리를 행사하게 할 수 있다.

제34조 [심사] ① 심사기일은 공개하지 아니하되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여 공개할 수 있다. 다만, 비공개인 경우라도 등록심사위원회는 상당하다고 인정하는 자의 방청을 허가할 수 있다.

② 등록심사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당사자들의 의견을 들어 수 개의 안전의 심사를 병합하거나 분리할 수 있다.

③ 등록심사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당사자, 관계인 및 관계기관·단체 등에 대하여 사실의 조회, 자료의 제출 또는 등록심사위원회에 출석하여 진술 또는 설명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④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위원 1인 또는 수인을 정하여 당해 안전에 대한 심사의 준비를 하게 할 수 있다. 지정받은 위원(이하 "주임심사위원"이라 한다)은 안전의 심사준비에 관하여 위원장의 권한을 행사할 수 있다.

⑤ 주임심사위원은 심사조서를 작성하여야 하며, 조서에는 주임심사위원이 서명 또는 날인하여야 한다.

⑥ 심사기일에는 심사조서를 작성하여야 하며, 조서에는 심사일시, 장소, 출석한 위원의 성명, 공개 여부, 심사의 경과 및 내용 등을 기재하여, 위원장과 간사가 서명 또는 날인하여야 한다.

제35조 [의결] ① 등록심사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② 등록심사위원회는 의결을 한 때에는 주문과 이유를 기재한 의결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 ③ 제2항의 의결서에는 위원장과 심의·의결에 참여한 위원이 서명 또는 날인하고, 위원장이 간인하여야 한다.
- ④ 제2항의 의결서의 정본(正本)은 당사자 및 협회장에게 각각 송달하여야 한다.

제 5 장 신 고

제36조 [신고의 구분] 이 규칙에 의한 신고는 다음 각 호로 구분한다.

- 1. 변호사개업신고
- 2. 사무소이전신고
- 3. 변호사휴업신고
- 4. 소속변경신고
- 5. 회원기본사항변경신고

제36조의2 [휴업신고에 따른 통지] 법무법인 등의 구성원 변호사는 제36조제3호에 따른 신고를 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해당 법무법인 등에 통지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7. 2. 27.)

제37조 [전자문서를 이용한 신고] ① 이 규칙에 따른 신고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7일 이내에 전산정보처리시스템을 이용하여 전자문서로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소속변경신고의 경우에는 이 회가 종전 소속 지방변호사회에 하는 전산정보처리시스템을 이용한 통지로 이를 갈음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신고는 규정에서 정한 신고서 기재사항에 대한 정보와 첨부서류를 전자문서로 송신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한다.

제38조 [지방변호사회의 처리] ① 지방변호사회는 제36조의 신고(제4호의 신고는 제외한다)를 받은 때에는 지체 없이 이 회에 신고서를 송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송부는 전산정보처리시스템을 이용하여 전자문서로 송신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한다.

③ 지방변호사회가 제1항의 송부를 한 때에 신고가 지방변호사회를 거친 것으로 본다.

제39조 [이 회의 처리] ① 이 회의는 제38조에 따른 송부를 받은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수리하여 명부에 기재하여야 한다.

② 이 회의는 제1항에 의하여 신고를 수리한 경우 신고인 및 해당 지방변호사회에 그 뜻을 통지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통지는 전산정보처리시스템을 이용하여 전자문서로 송신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한다.

④ 이 회의는 법무법인 등의 구성원 변호사가 제36조제3호에 따른 신고를 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법무부 및 해당 법무법인 등에 통지한다. (신설 2017. 2. 27.)



제 6 장 명부의 작성 및 정정 등

제40조 [명부의 작성 등] ① 명부는 전산정보처리시스템에 의하여 입력·처리된 명부 등록사항에 관한 전산정보자료를 개인별로 구분하여 작성한다.

② 명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록한다.

1. 성명·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
2. 등록기준지·주소 또는 국내 거소지
3. 사무소의 명칭 및 소재지
4. 소속 지방변호사회 및 입회연월일
5. 자격취득의 연월일 및 사유
6. 자격등록의 번호 및 연월일
7. 개업 및 휴업에 관한 사항
8. 등록취소의 연월일 및 사유
9. 업무정지 및 징계에 관한 사항
10. 기타 이 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41조 [명부의 작성] ① 명부는 이 규칙에 의하여 신청인등이 제출하는 각종 신청서, 신고서 및 그 첨부서류에 의하여 이 회가 작성한다.

② 동일한 사람에 대한 수개의 신청등이 접수된 경우에는 접수된 순서에 따라 명부에 기록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경우에 뒤에 접수된 신청등에 따라 명부에 기록할 때에는 먼저 접수된 신청등에 맞추어 명부의 기록을 정정하여야 한다.

제42조 [명부의 정정] ① 명부의 기재사항에 착오나 누락이 있는 경우에는 신청인등은 명부의 정정을 신청할 수 있다.

② 명부의 기재사항에 변동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당사자가 이를 신고하지 아니하거나 당사자가 제출한 서류의 기재내용이 명백히 사실과 다르다고 인정할 만한 현저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이사회회의결을 거쳐 직권으로 정정할 수 있다.

제43조 [이중명부의 정리] 동일한 사람이 성명이나 자격등록의 번호 등을 달리하여 2개 이상의 명부가 있음이 명백히 밝혀진 경우에는 이회는 이사회회의결을 거쳐 직권으로 그 명부를 폐쇄할 수 있다.

제44조 [명부 등의 보존] ① 명부 및 전산정보처리시스템에 기록된 전자문서는 전자파일로 영구 보존하되, 위조·변조·훼손·유출 등을 방지하기 위한 보안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명부가 멸실 또는 훼손된 경우에는 등록신청서, 등록증서, 등록통지, 등록보고 기타 신빙할 수 있는 자료에 의하여 지체 없이 복구하여야 한다.



제 7 장 증명서의 교부

제45조 [증명서의 교부 등] ① 등록사용자는 전산정보처리시스템을 이용하여 제40조제2항에 규정된 명부의 기록사항에 관하여 발급할 수 있는 증명서의 교부를 청구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증명서의 교부를 청구하는 사람은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제46조 [전산정보처리시스템에 의한 증명서 발급] 증명서의 발급사무는 전산정보처리시스템을 이용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제47조 [증명서의 종류 및 기록사항] ① 명부의 기록사항에 관하여 발급할 수 있는 증명서의 종류와 그 기록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변호사 등록 증명서 (국문, 영문) (개정 2024. 1. 22.)

가. 본인의 성명·성별·주민등록번호·주소·등록기준지 등

나. 본인의 등록번호·등록연월일·개업 및 휴업에 관한 사항·소속 지방변호사회·사무소 명칭·사무소 형태·사무소 소재지 등

2. 변호사 징계정보 증명서 (국문, 영문) (개정 2021. 2. 22.) (개정 2024. 1. 22.)

가. 본인의 성명·주민등록번호·등록번호·등록연월일·개업 및 휴업에 관한 사항·소속 지방변호사회·사무소 명칭·사무소 소재지 등

나. 징계확인사항. 다만, 변호사법시행령 제23조의3 제3항에 따른 기간 내 정보에 한한다.
(개정 2021. 2. 22.)

3. 법인회원 등 증명서(국문, 영문) (신설 2024. 1. 22.)

가. 법인의 인가연월일 및 인가번호

나. 법인의 명칭·대표성명·구성원 및 소속변호사 수·주사무소 및 분사무소 소재지·소속변호사회 등

4. 법인회원 등 징계정보 증명서(국문, 영문) (신설 2024. 1. 22.)

가. 법인의 인가연월일 및 인가번호

나. 법인의 명칭·주사무소 및 분사무소 소재지·징계정보 등

② 이 회는 제1항 각 호의 증명서의 기록사항 중 일부사항을 증명하는 증명서를 발급할 수 있다.

제 8 장 보 칙

제48조 [보고] ① 이 회가 법 제20조에 의하여 법무부장관에게 보고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제14조제3항, 제17조제3항 및 제19조에 의한 각종 등록

2. 제17조제2항에 의한 각종 등록의 거부



3. 제39조제1항에 의한 각종 신고의 수리

4. 제23조제1항, 제24조제1항·제2항 및 제26조에 의한 각종 등록취소

② 제1항의 보고는 지체없이 하여야 한다. (개정 2017. 2. 27.)

제49조 [전산정보처리시스템의 운영] ① 이 회는 제12조제1항에서 정한 등록료 및 제45조제2항에서 정한 수수료의 전산적 납부를 위하여 필요한 범위 안에서 전산정보처리시스템의 이용시간을 지정할 수 있다.

② 이 회는 전산정보처리시스템의 점검을 위하여 필요한 시간 동안 전산정보처리시스템의 이용시간을 일시 제한할 수 있다.

③ 이 회는 전산정보처리시스템에 장애가 발생하거나 그 밖에 부득이한 사정이 있을 때에는 장애발생사실 및 그 복구사실을 이 회의 홈페이지 및 전산정보처리시스템에 게시하여야 한다.

제50조 [시행세칙] 이 규칙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규정으로 정한다.

부 칙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1983. 6. 1.부터 시행한다.

제2조 [폐지규칙] 이 규칙 시행 전의 변호사등록규칙(1983. 1. 1. 시행)은 이를 폐지한다. 다만, 종전 규칙에 의하여 이 회가 한 각종 등록, 신고 또는 등록취소는 이 규칙에 의하여 한 것으로 본다.

제3조 [경과조치] ① 변호사법개정법률(1982. 12. 31. 법률 제3594호) 부칙 제2조제1항에 의하여 법무부장관으로부터 이 회에 인계된 변호사명부(이하 “종전 명부”라 한다)는 이 규칙 제3조에 의한 변호사명부가 작성되어 대체될 때까지 이 규칙에 의한 명부로 본다. 다만, 종전 명부 중 소속변호사회가 서울변호사회, 서울제일변호사회 또는 서울통합변호사회로 기재된 것은 서울지방변호사회로, 서울제이변호사회로 기재된 것은 인천지방변호사회로 본다.

② 협회장은 이 규칙 시행일로부터 6월 이내에 규칙 제3조에 의한 변호사명부를 새로 작성하여 종전 명부와 대체하여야 한다. 다만, 등록번호는 종전 명부에 적힌 번호를 그대로 사용하고, 이 규칙에 의한 최초의 등록을 그에 이어서 붙인다.

③ 개정법률 시행 전에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변호사의 등록을 한 자는 제2항에 의한 변호사명부를 작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협회에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이 경우에 등록료는 징수하지 아니한다.

④ 이 회는 제3항에 의한 신고가 없는 때에는 종전 명부에 의하여 제2항에 의한 명부를 새로 작성한다. 다만, 제27조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한다고 인정되는 자에 대하여는 새로 작성한 후 지체 없이 제30조에 의한 등록취소절차를 행한다.



부 칙

이 규칙은 1984. 2. 26.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칙은 1986. 1. 1.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칙은 1990. 3. 1.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칙은 1992. 3. 1.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1992. 5. 1.부터 시행한다.

제2조 [경과조치] 종전 명부 중 소속변호사회가 마산지방법변호사회로 기재된 것은 창원지방법변호사회로 본다.

부 칙

① 이 규칙은 1996. 6. 29.부터 시행한다.

② 이 규칙에 의하여 최초로 선임되는 등록심사위원회의 위원과 예비위원의 임기는 1998년도 정기총회



일까지로 한다.

부 칙

이 규칙은 1997. 3. 1.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칙은 2000. 7. 29.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칙은 2001. 10. 29.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칙은 2004. 2. 23.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6. 2. 20.)

이 규칙은 공포 후 20일이 경과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9. 2. 26.)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0. 2. 8.)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1. 12. 12.)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2. 10. 15.)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4. 2. 24.)

- ①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② [국가공로 외국변호사에 대한 경과조치] 2008. 9. 28. 개정 변호사법 시행 당시 외국변호사로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변호사의 인가를 받은 자에 대하여는 제6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

부 칙 (2014. 10. 13.)

- ①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② 종전 명부 중 소속지방변호사회가 '의정부'로 기재된 것은 '경기북부'로, '수원'으로 기재된 것은 '경기중앙'으로, '춘천'으로 기재된 것은 '강원'으로, '청주'로 기재된 것은 '충북'으로, '창원'으로 기재된 것은 '경남'으로, '전주'로 기재된 것은 '전라북도'로 본다.
- ③ 이 규칙 시행 전 작성된 종이형태의 명부는 전자문서 형태로 변환한다.

부 칙 (2016. 2. 29.)

이 규칙은 2016년 4월 2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7. 2. 27.)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8. 2. 26.)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21. 2. 22.)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24. 1. 22.)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변호사 등록 등에 관한 규정

(2016. 2. 15. 규정제목개정)

1983. 1. 17.

규정 제1호

개정 1986. 2. 10. 1997. 2. 10.
2000. 6. 26. 2009. 2. 16.
2010. 12. 6. 2013. 9. 9.
2014. 2. 3. 2014. 6. 2.

전부개정 2016. 2. 15.

개정 2017. 1. 31. 2018. 4. 9.
2018. 7. 9. 2020. 12. 28.
2024. 1. 8.

제1장 총 칙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변호사 등록 등에 관한 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50조의 규정에 의하여 규칙을 시행하는데 필요한 세칙과 그 사무처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전자등록시스템”이란 변호사 등록 등의 신청 및 신고 등의 절차에 필요한 전자문서를 작성·제출·송달하거나 관리할 수 있도록 하드웨어·소프트웨어·데이터베이스·네트워크·보안요소 등을 결합시켜 구축·운영하는 전산정보처리시스템으로서 규칙 제2조제2호에 따라 지정된 것을 말한다.
2. “전자등록홈페이지”란 이 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전자문서를 이용하여 변호사 등록 등의 신청 및 신고 등의 절차를 진행할 수 있도록 전산정보처리시스템에 의하여 구축된 인터넷 활용공간을 말한다.

제3조 [전자문서에 의한 신청 및 신고] ① 규칙 제5조에 따른 신청 및 신고(이하 “신청등”이라고 한다)는 전자등록홈페이지를 이용하여 이 규정에서 정한 신청서 및 신고서 기재사항에 대한 정보를 빈칸 채우기 방식으로 입력한 후, 이에 관한 증빙서류인 전자문서를 등재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한다. 다만, 이 회가 인정하는 경우 전자등록홈페이지와 연계된 지방변호사회 자체의 전산정보처리시스템을 이용하여 신청등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전자문서는 전자등록홈페이지에서 요구하는 방식에 따라 각 별도의 파일로 구분하여 제출하여야 하고, 이를 합하여 하나의 파일로 제출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제1항의 규정을 따르지 아니하는 경우 그 서류는 제출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④ 이 회 및 지방변호사회가 신청등의 사무를 처리하는 전산정보처리시스템을 통하여 증빙서류에



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확인으로 해당 서류의 첨부을 갈음한다.

제4조 [사용자등록] 변호사 자격을 가진 자로서 전자등록시스템을 이용하려는 자는 전자등록시스템에 접속하여 전자등록홈페이지에서 요구하는 정보를 해당란에 입력한 후 사용자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제5조 [사용자등록의 철회 등] ① 제4조에 따라 사용자등록을 한 자(이하 “등록사용자”라 한다)는 전자등록시스템에 접속하여 사용자등록 철회의 취지를 입력함으로써 사용자등록을 철회할 수 있다.

② 신청등의 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에는 그 전부에 관하여 절차를 마친 때에만 제1항의 철회를 할 수 있다.

제6조 [사용자등록의 말소 등] ① 이 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등록사용자의 사용을 정지하거나 사용자등록을 말소할 수 있다.

1. 등록사용자가 등록취소된 경우
2. 등록사용자가 영구제명, 제명 및 정직의 징계를 받은 경우
3. 그 밖에 위 각 호의 사유에 준하는 경우

② 이 회는 규칙 제6조제3항에 따라 등록사용자의 사용을 정지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등록사용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이 회는 규칙 제6조제3항에 따라 사용자등록을 말소하기 전에 해당 등록사용자에게 미리 그 사유를 통지하고 소명할 기회를 부여하여야 한다.

④ 제2항 및 제3항의 통지는 전산정보처리시스템을 이용하여 전자문서로 송신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한다.

제7조 [보완명령] 규칙 제9조제1항에 의한 보완명령서에 기재할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기재사항의 흠결내용 또는 미비된 첨부서류
2. 보완기한

제 2 장 등 록

제8조 [등록신청서] ① 규칙 제11조제2항에 따른 등록신청서에 기재할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변호사자격등록신청서
 - 가. 성명·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
 - 나. 등록기준지·주소 또는 국내 거소지
 - 다. 휴대전화번호 및 전자우편주소
 - 라. 자격취득의 연월일 및 사유
 - 마. 소속하고자 하는 지방변호사회
 - 바. 기타 이 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2. 소속변경등록신청서

가. 성명·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

나. 등록기준지·주소 또는 국내 거소지

다. 자격등록의 번호 및 연월일

라. 종전 소속의 지방변호사회

마. 새로 소속할 지방변호사회

바. 기타 이 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규칙 제11조제2항에 따른 등록신청서의 첨부서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변호사자격등록

가. 변호사의 자격이 있음을 증명하는 서면

나. 범죄경력조회서 등 법 제5조의 결격사유가 없음을 증명하는 서면

다. 위법행위사실확인서 등 법 제8조제1항제4호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한 서면

라. 가족관계증명서

마. 주민등록표초본 또는 국내 거소사실을 증명하는 서면

바. 사진

사. 학력 및 경력 사항 등을 증명하는 서면

아. 등록료납부서

자. 진술서

차. 개업계획서

2. 소속변경등록

가. 등록료납부서

나. 소속 지방변호사회의 회비완납증명서

③ 제2항의 첨부서류 중 전산정보처리시스템에서 확인할 수 있는 서류는 전산정보처리시스템을 통한 확인으로 첨부할 수 있다.

제9조 [등록료] 규칙 제12조제1항에 의한 등록료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변호사자격등록의 경우 (개정 2018. 4. 9.)

가. 판사, 검사, 장기 군법무관의 경우 : 1,500,000원 (개정 2018. 4. 9.)

나. 그 외의 경우(재판연구원 포함) : 500,000원 (개정 2018. 4. 9.)

2. 소속변경등록의 경우 : 50,000원

제10조 [의견서] 규칙 제13조제1항에 의한 의견서에 기재할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신청인의 성명·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

2. 신청인의 등록기준지·주소 또는 국내 거소지

3. 등록이 타당한지 여부에 관한 의견의 요지 및 그 이유

제11조 [등록증서] 규칙 제15조제1항에 의한 등록증서는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다.

제12조 [등록통지] 규칙 제15조에 의한 등록통지서에 기재할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성명
2. 소속 지방변호사회
3. 등록번호 및 등록연월일

제13조 [등록거부통지] 규칙 제17조제2항에 의한 등록거부통지서에 기재할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성명
2. 신청서 접수 연월일
3. 등록이 거부되었다는 취지 및 그 이유
4. 등록거부 연월일
5. 등록거부에 대해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는 취지

제 3 장 등록취소

제14조 [등록취소신청서] 규칙 제21조제1항에 의한 등록취소신청서에 기재할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등록취소신청 사유
2. 규칙 제21조제1항 단서에 해당되지 않음을 확인하는 취지

제15조 [등록취소통지] 규칙 제27조제2항에 의한 등록취소통지서에 기재할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성명
2. 등록이 취소되었다는 취지 및 그 이유
3. 등록취소 연월일
4. 등록취소에 대해 이의신청할 수 있다는 취지

제 4 장 등록심사위원회

제16조 [안건회부서] 규칙 제31조에 의한 안건회부서는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다.

제17조 [심사기일통지서] 규칙 제32조제1항에 의한 심사기일통지서는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한다.

제18조 [심사조서] 규칙 제34조제5항에 의한 주임심사위원의 심사조서는 <별지 제4호서식>에 의하고, 제6항에 의한 심사조서는 <별지 제5호서식>에 의한다.

제19조 [의결서] 규칙 제35조제2항에 의한 의결서는 <별지 제6호서식>에 의한다.

제 5 장 신 고



제20조 [신고서] ① 규칙 제37조제1항에 의한 신고서에 기재할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변호사개업신고서
 - 가. 성명·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
 - 나. 등록기준지·주소 또는 국내 거소지
 - 다. 휴대전화번호 및 전자우편주소
 - 라. 소속 지방변호사회
 - 마. 자격등록 번호
 - 바. 사무소 명칭 및 소재지
 - 사. 기타 이 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2. 사무소이전신고서
 - 가. 성명·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
 - 나. 등록기준지·주소 또는 국내 거소지
 - 다. 휴대전화번호 및 전자우편주소
 - 라. 소속 지방변호사회
 - 마. 자격등록 번호
 - 바. 이전사유
 - 사. 이전할 사무소 명칭 및 소재지
 - 아. 기타 이 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3. 변호사휴업신고서
 - 가. 성명·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
 - 나. 등록기준지·주소 또는 국내 거소지
 - 다. 휴대전화번호 및 전자우편주소
 - 라. 소속 지방변호사회
 - 마. 자격등록 번호
 - 바. 사무소 명칭 및 소재지
 - 사. 휴업사유
 - 아. 기타 이 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4. 소속변경신고서
 - 가. 성명·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
 - 나. 등록기준지·주소 또는 국내 거소지
 - 다. 휴대전화번호 및 전자우편주소
 - 라. 변경된 소속 지방변호사회
 - 마. 변경등록 연월일
 - 바. 기타 이 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5. 회원기본사항변경신고서
 - 가. 성명·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



- 나. 등록기준지·주소 또는 국내 거소지
- 다. 휴대전화번호 및 전자우편주소
- 라. 소속 지방변호사회
- 마. 자격등록 번호
- 바. 변동사항 및 그 사유
- 사. 기타 이 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규칙 제37조제2항에 의한 신고서의 첨부서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변호사개업신고서

- 가. 변호사시험합격자의 경우 : 법 제21조의2에 의한 법률사무소 개설 요건을 충족한다는 사실을 증명하는 서면
- 나. 공직퇴임변호사의 경우 : 위법행위사실확인서 등 법 제8조 제1항 제4호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한 서면 및 경력 사항 등을 증명하는 서면 (신설 2018. 7. 9.)

2. 회원기본사항변경신고서

- 가. 성명·주민등록번호·주소 변경의 경우 : 주민등록등본
- 나. 등록기준지 변경의 경우 : 가족관계증명서

제 6 장 증명서의 교부

제21조 [증명서의 교부청구] 규칙 제45조제1항에 따라 증명서의 교부를 청구하는 경우 증명서가 필요한 이유를 구체적으로 밝혀야 한다.

제22조 [전자등록홈페이지를 통한 증명서의 발급] 증명서의 발급사무는 전자등록홈페이지를 통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제23조 [증명서의 수수료] 규칙 제45조제2항에 의한 증명서의 수수료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변호사 등록 증명서 (개정 2024. 1. 8.)

- 가. 국문 : 2,000원
- 나. 영문 : 4,000원

2. 변호사 징계정보 증명서 (개정 2020. 12. 28.) (개정 2024. 1. 8.)

- 가. 국문 : 2,000원
- 나. 영문 : 4,000원

3. 법인회원 등 증명서 (신설 2024. 1. 8.)

- 가. 국문 : 2,000원
- 나. 영문 : 4,000원

4. 법인회원 등 징계정보 증명서 (신설 2024. 1. 8.)

- 가. 국문 : 2,000원



나. 영문 : 4,000원

제24조 [등록 등에 관한 보고] 규칙 제48조제1항에 의한 보고서는 <별지 제7호서식>에 의하고, 보고서에는 <별지 제8호서식>부터 <별지 제15호서식>까지의 해당명세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부 칙

이 규정은 1983. 1. 17.부터 시행한다.

부 칙

① [시행일] 이 규정은 1986. 2. 10.부터 시행한다.

② [경과조치] 이 규정시행 전에 변호사명부의 확인란에 확인한 것은 이 규정에 의한 것으로 본다.

부 칙

이 규정은 1997. 2. 10.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00. 7. 29.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4. 2. 3.)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4. 6. 2.)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6. 2. 15.)

이 규정은 2016년 4월 2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7. 1. 31.)

이 규정은 2017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8. 4. 9.)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8. 7. 9.)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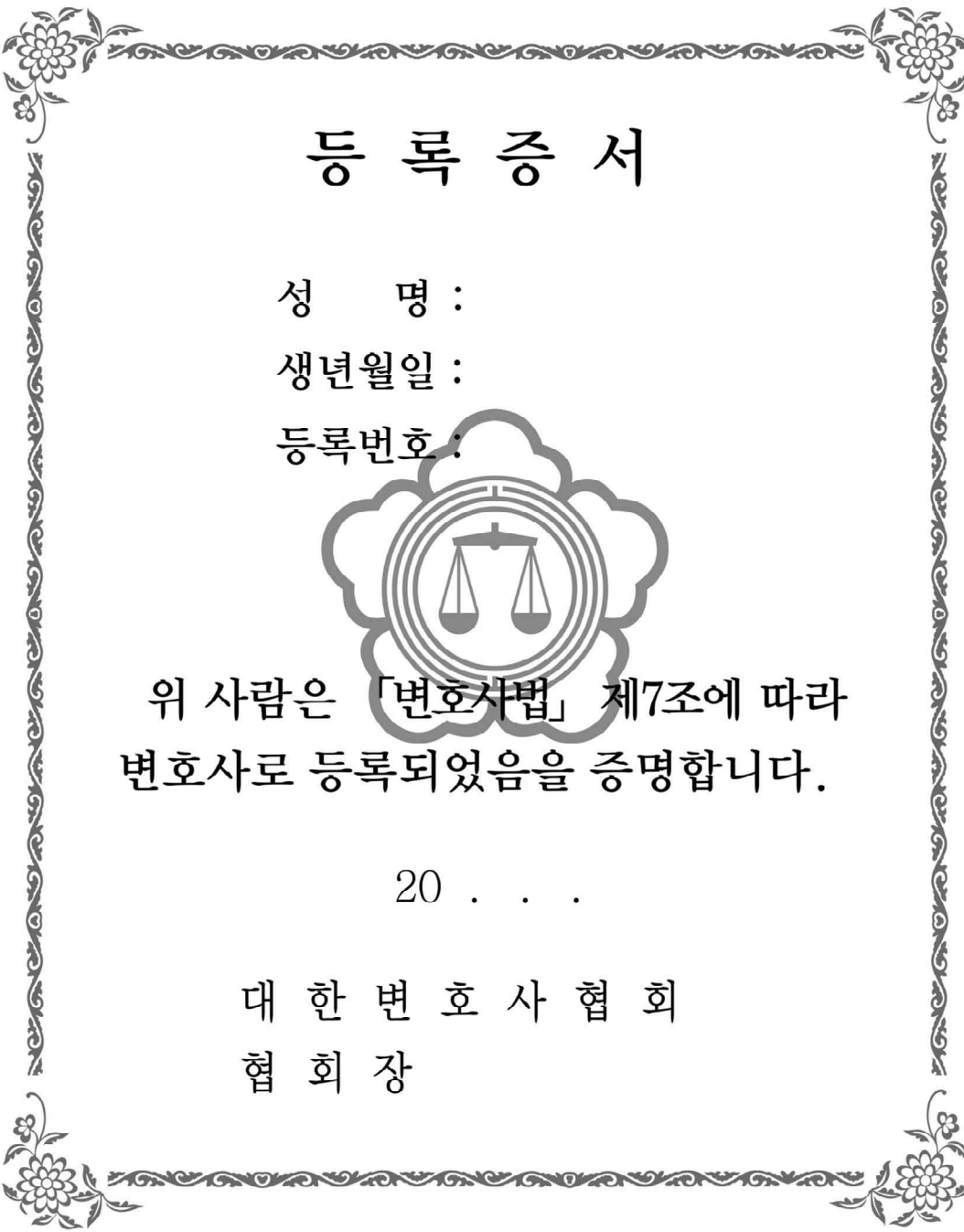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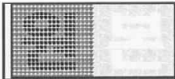
부 칙 (2021. 2. 22.)

이 규정은 변호사 등록 등에 관한 규칙이 차기 총회의 의결이 있는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24. 1. 22.)

이 규정은 변호사 등록 등에 관한 규칙이 차기 총회의 의결이 있는 날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1호 서식

 등 록 증 서 성 명 : 생년월일 : 등록번호 :  위 사람은 「변호사법」 제7조에 따라 변호사로 등록되었음을 증명합니다. 20 . . . 대한 변호사 협회 협 회 장	
	

변협서식 31-34
등록증서



별지 제2호 서식 (개정 2020. 12. 28.)

안 건 회 부 서				
당사자 인 적 사 항	성 명		한 자	
	등 록 기 준 지			
	주 소			
	생 년 월 일			
경 유 또 는 소 속 회		지방변호사회	등 록 번 호	
안 건				
사 유				
관 련 규				
첨 부 서 류				
위 당사자에 대한 안건을 회부합니다. 20 . . . 대한 변호사 협회 협 회 장 대한변호사협회 등록심사위원회 귀중				

210mm×297mm
인쇄용지 80g/m²



별지 제3호 서식

심 사 기 일 통 지 서				
당 사 자	성 명		한 자	
	생 년 월 일			
	주 소			
	경유 또는 소속회	지방변호사회	등 록 번 호	
심 사 일 시		2 0		
심 사 장 소				
(등록거부, 등록취소) 사유의 요지				
고 지 사 항		당사자는 (1) 심사기일 출석 및 당해 안전에 대한 의견 진술(구술 또는 서면), (2) 증거서류 또는 증거물 제출, (3) 심사 공개의 신청, (4) 참고인의 심문, 검증 등의 증거조사 신청, (5) 심사기록 및 증거물 등에 대한 열람 또는 등사, (6) 대리인 선임의 권리가 있습니다.		
유 의 사 항		당사자나 그 대리인이 심사기일에 출석하지 않은 경우에도 심사 절차를 진행하고 심사를 종결할 수 있습니다.		
첨 부 서 류		안전회부서 1부		
귀하에 대한 [변호사등록거부 변호사등록취소] 안전의 심사기일을 위와 같이 통지합니다. 2 0 대한변호사협회 등록심사위원회 위 원 장 (인) 귀하				



별지 제4호 서식

주임심사위원 심사조서

안전번호 :

당 사 자	성명		한자	
	경유 또는 소속회	지방변호사회		
	주소			
	생년월일			
	대리인			
심사일시		20 . . .		
심사장소				
주임심사위원				
참여인				
대리인				
심사의 경과 및 내용				
20 . .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심사위원회 주임심사위원 (서명 또는 인)				

210mm×297mm
인쇄용지 80g/m²



별지 제5호 서식

심 사 조 서

안건번호 :

당 사 자	성 명		한 자	
	경유 또는 소속회	지방변호사회		
	주 소			
	생 년 월 일			
	대 리 인			
심 사 일 시		20 . . .		
심 사 장 소				
주 임 심 사 위 원				
출 석 위 원				
당사자 출석여부				
대리인 출석여부				
참 여 인				
공 개 여 부				
심 사 의 경 과 및 내 용				
20 . .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심사위원회 위 원 장 (서명 또는 인) 간 사 (서명 또는 인)				

210mm×297mm
인쇄용지 80g/m²



별지 제6호 서식

의 결 서

안전번호 :

당 사 자	성 명		한 자	
	등 록 기 준 지			
	주 소			
	생 년 월 일			
	소 속 회	지방변호사회	등 록 번 호	
	대 리 인			
주 문				
이 유				
20 . .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심사위원회 위 원 장 (서명 또는 인) 위 원 (서명 또는 인)				



별지 제7호 서식

대한변호사협회

변 협 제 호

2 0 . . .

수 신 법무부장관

참 조 법무실장

제 목 변호사등록 등에 관한 보고

변호사의 각종 등록, 등록거부, 신고 또는 등록취소에 관한 상황을 변호사법 제20조에 의하여 별첨 명세서의 기재와 같이 보고합니다.

첨부서류 :

대한변호사협회
협회장



별지 제8호 서식

변호사자격등록명세서

등 록 연 월 일	성 명 (한 자)	주 민 등 록 번 호	등 록 번 호	자격취득연월일 및 자격취득사유	소속하고자하는 지 방 변 호 사 회

210mm×297mm
인쇄용지 80g/m²



별지 제9호 서식

소속변경등록명세서

등 록 연 월 일	성 명 (한 자)	주 민 등 록 번 호	자 격 등 록 번 호	구 소 속 지 방 변 호 사 회	신 소 속 지 방 변 호 사 회

210mm×297mm
인쇄용지 80g/m²



별지 제10호 서식

변호사등록거부명세서

거 부 연 월 일	성 명 (한 자)	주 민 등 록 번 호	신 구 청 분	신 청 연 월 일	거 부 사 유

210mm×297mm
인쇄용지 80g/m²



별지 제11호 서식

변호사개업신고명세서

신 고 연 월 일	성 명 (한 자)	소 속 지 방 변 호 사 회	자 격 등 록 번 호	개 업 연 월 일	개업한 사무소의 명칭 및 소재지

210mm×297mm
인쇄용지 80g/m²



별지 제12호 서식

사무소이전신고명세서

신 고 연 월 일	성 명 (한 자)	소 속 지 방 변 호 사 회	자 격 등 록 번 호	이 전 연 월 일	이 전 한 사 무 소 의 명 칭 및 소재 지

210mm×297mm
인쇄용지 80g/m²



별지 제13호 서식

변호사휴업신고명세서

신 고 연 월 일	성 명 (한 자)	소 속 지 방 변 호 사 회	자 격 등 록 번 호	휴 업 연 월 일	휴 업 사 유

210mm×297mm
인쇄용지 80g/m²



별지 제14호 서식

회원기본사항변경신고명세서

신 고 연 월 일	성 명 (한 자)	소 속 지 방 변 호 사 회	자 격 등 록 번 호	변 동 사 항	변 동 내 용

210mm×297mm
인쇄용지 80g/m²



별지 제15호 서식

변호사등록취소명세서

취 소 연 월 일	성 명 (한 자)	소 속 지 방 변 호 사 회	자 격 등 록 번 호	취 소 구 분	취 소 사 유

210mm×297mm
인쇄용지 80g/m²



공증합동법률사무소의설립등에관한규칙

1983. 5. 21.

규칙 제16호

개정 1993. 5. 24.
2000. 7. 3.
2001. 10. 29.
2010. 2. 8.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변호사법(이하 “법”이라 한다)에 의하여 설립되고, 회칙에 따라 신고의무를 지는 공증인가합동법률사무소(이하 “공증합동사무소”라 한다)의 설립인가, 변경인가 및 각종 신고에 관한 기준과 절차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0. 7. 3.)

제2조 [설립인가신청] ① 변호사가 합동하여 법률사무에 종사할 것을 규약하고 법 제59조에 따라 공증합동사무소를 설립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규약준칙에 준하여 규약을 작성하고 그 설립인가신청서류 3통을 구성원이 될 변호사가 소속한 지방변호사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0. 7. 3.)
② 지방변호사회가 제1항의 서류를 받은 때에는 그 1통을 보관하고 나머지 2통에 경유사실을 증명하여 지체 없이 이 회에 진달하여야 한다.

제3조 [심사와 의견제출] ① 이 회는 제2조제2항에 의하여 진달된 공증합동사무소의 설립인가신청이 법 또는 법무부장관이 정한 설립인가기준에 합당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이 회의 의견을 첨부하여 그 인가신청서류를 법무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0. 7. 3.)
② 이 회는 제2조제2항에 의하여 진달된 인가신청서류에 기재사항의 흠결이 있거나 첨부서류의 미비가 있는 때에는 경유한 지방변호사회를 거쳐 그 신청인에게 보완을 명할 수 있다.
③ 이 회는 제2조제2항에 의하여 진달된 공증합동사무소의 설립인가신청이 법 또는 법무부장관이 정한 설립인가기준에 합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할 때에도 이 회의 의견을 첨부하여 법무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0. 7. 3.)
④ 이 회가 공증합동사무소의 설립인가신청서류를 심사함에 있어서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회원위원회의 심의에 부쳐 필요한 사실과 증거를 조사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0. 7. 3.)

제4조 [기타 인가신청] ① 공증합동사무소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인가신청서류 3통을 구성원이 소속한 지방변호사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0. 7. 3.)
1. <삭제> (2000. 7. 3.)
2. 규약의 변경
② 제2조제2항 및 제3조의 규정은 제1항의 경우에 준용한다.

제5조 [신고] ① 공증합동사무소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그 때로부터 7일 이내



에 구성원이 소속한 지방변호사회를 거쳐 이 회에 그 사유를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0. 7. 3.)

1. 법무부장관으로부터 공증합동사무소의 설립인가와 설치인가를 받은 때 (개정 2000. 7. 3.)
2. 공증합동사무소가 그 업무를 개시하거나 사무소를 이전한 때 (개정 2000. 7. 3.)
3. 규약변경의 인가를 받은 때
4. 구성원의 변경이 있는 때
5. 법 제63조제2항에 의한 업무집행정지사유가 발생한 때 (개정 2000. 7. 3.)
6. 설립인가의 취소를 받은 때

② 제1항에 의한 각종 신고에 첨부할 서류와 절차는 규정으로 정한다.

제6조 [명부의 비치] ① 이 회에 공증합동사무소 명부를 비치하고 제5조에 의한 각종 신고사항 및 기타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다. (개정 2000. 7. 3.)

② 공증합동사무소 명부의 기재사항과 관리절차에 관하여는 규정으로 정한다. (개정 2000. 7. 3.)

제7조 [공고] 이 회가 제5조에 의한 각종 신고를 받은 때에는 2월 이내에 그 요지를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0. 2. 8.)

제8조 [시행세칙] 이 규칙을 시행하는 데 필요한 세부사항은 규정으로 정한다.

부 칙 (1983. 5. 21.)

① [시행일] 이 규칙은 1983. 6. 1.부터 시행한다.

②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에 설립된 합동사무소는 이 규칙에 의한 합동사무소로 본다.

③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에 설립된 합동사무소는 이 규칙 시행일로부터 1월 이내에 이 규칙에 의한 각종 신고를 하여야 한다.

부 칙 (1993. 5. 24.)

① [시행일] 이 규칙은 1993. 5. 24.부터 시행한다.

②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에 설립된 공증합동사무소는 이 규칙에 의한 공증합동사무소로 본다.

부 칙 (2000. 7. 3.)

이 규칙은 2000. 7. 29.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칙은 2001. 10. 29.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0. 2. 8.)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별 지

공증합동법률사무소규약준칙

공증인가○○합동법률사무소규약

제1조 [명칭] 이 사무소는 공증인가○○합동법률사무소라 한다.

제2조 [목적] 이 사무소는 구성원이 합동하여 변호사법(이하 “법”이라 칭한다) 규정에 의한 법률사무와 공증사무에 종사함으로써 구성원 상호간의 친목과 품위향상을 도모하고, 변호사윤리강령을 실천하며, 공정·신속한 사법운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 [사무소] 이 사무소는 ○○○○○에 둔다.

제4조 [구성] 이 사무소는 개업한 변호사로서 제2조의 목적에 찬동하고 법정절차를 마친 자로서 구성한다.

제5조 [신규가입] 이 사무소설립 후 구성원으로 가입하고자 하는 개업한 변호사는 기존 구성원 전원의 동의를 얻어 법정절차를 마친 자라야 한다.

제6조 [탈퇴] 구성원 중 탈퇴원을 자진제출 하였거나 법 제18조 해당사유가 발생하였거나 또는 제명되었을 때에는 이 사무소에서 탈퇴한다. (개정 2000. 7. 3.)

제7조 [제명사유] ① 구성원이 법령에 위배하였거나 또는 현저하게 공익이나 품위를 해하여 본사무소에 누를 끼쳤을 때에는 제명할 수 있다.

② 제명은 다른 구성원전원의 동의로써 한다.

제8조 [탈퇴 및 제명의 효력발생] 탈퇴 및 제명은 구성원이 소속한 지방변호사회와 대한변호사협회를 거쳐 법무부장관의 인가를 받음으로써 효력이 발생한다.

제9조 [회의] ① 규약의 변경, 임원선출, 예산, 결산 등 사무소운영상 중요 안건은 구성원으로 조직된 총회에서 의결한다.

② 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의 2종으로 하고 정기총회는 매년 1월에 소집하고 임시총회는 필요에 따라 소집한다.

제10조 [총회소집과 결의방법] ① 총회는 대표자가 소집하여 그 의장이 되고 구성원 3분의 2 이상 출석으로 성립하며, 출석인원 3분의 2 이상 찬동으로 결의한다.

② 구성원 3분의 2 이상이 연명으로 안건을 제시하여 대표자에게 임시총회소집을 요구하면 대표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③ 대표자가 제2항의 요구가 있는 날로부터 5일 이내에 임시총회를 소집하지 아니할 때에는 임시총회소집요구자 중 연장자가 소집할 수 있으며, 그 의장이 된다.

제11조 [대표자] ① 이 사무소 대표자는 구성원총회에서 선출하고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중임할 수 있다.



② 대표자 유고 시 대표자직무대행자가 지명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법 제61조의 해당구성원 중 연장자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대표자의 선출과 변경, 대표자직무대행자지명 및 제2항의 사유가 있을 때에는 지체 없이 구성원이 소속한 지방변호사회와 대한변호사협회를 거쳐 법무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12조 [기타임원] 이 사무소는 대표자 외에 총회결의로써 필요한 임원을 둘 수 있다.

제13조 [회계연도] 이 사무소의 회계연도는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제14조 [출자] 이 사무소의 출자는 1구좌당 금○○○원으로 하고, 각 구성원은 그 인수구좌에 따라 지분권을 가진다.

제15조 [손익배분] 이 사무소의 손익배분에 관하여는 법과 민법상 조합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다만, 구성원 전원일치의 합의로써 이를 증감할 수 있다.

제16조 [채무에 대한 책임] 이 사무소의 채무는 구성원이 균분하여 분담한다.

제17조 [공정증서원본 또는 정본 보관 및 출납] ① 이 사무소가 작성한 공정증서원본 또는 정본은 이 사무소내에 설치된 장소에 보관시켜야 한다. (개정 1992. 2. 29.)

② 서류보관장소를 변경할 때에 법무부장관의 인가를 받는다. (개정 1992. 2. 29.)

제18조 [사무보조자] 이 사무소의 사무보조자는 대표자가 임명하고 관할지방검찰청 검사장의 인가를 받는다.

제19조 [타법의 준용] 이 규약에 없는 사항은 공증인법과 민법 중 조합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20조 [개정] 이 규약을 개정하고자 할 때에는 개정당시의 구성원 3분의 2 이상의 출석과 출석인원 3분의 2 이상의 찬동을 얻어 구성원이 소속한 지방변호사회 및 대한변호사협회를 거쳐 법무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부 칙

① 이 규약은 법의 규정에 의하여 법무부장관의 인가를 받은 날로부터 실시한다.

② 이 사무소를 설립하기 위하여 아래와 같이 각 구성원이 출자구좌수를 밝히고 기명날인한다.

20
구성원 대표자 변호사 ○ ○ ○
(출자구좌수 ○○구좌)
변호사 ○ ○ ○
(출자구좌수 ○○구좌)
변호사 ○ ○ ○
(출자구좌수 ○○구좌)



법무법인및법무법인(유한)의설립등에관한규칙

1983. 5. 21.

규칙 제17호

개정 1993. 5. 24. 2000. 7. 3.
2001. 10. 29. 2006. 2. 20.
2009. 2. 26. 2010. 2. 8.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변호사법(이하 “법”이라 한다)에 의하여 설립되고, 이 회의 법인회원으로서 회칙에 따라 신고의무를 지는 법무법인 및 법무법인(유한)의 설립인가, 변경인가 및 각종 신고에 관한 기준과 절차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6. 2. 20.)

제2조 [설립인가신청] ① 변호사가 그 직무를 조직적·전문적으로 행하기 위하여 법 제40조 및 제58조의2의 규정에 따라 법무법인 및 법무법인(유한)을 설립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정관준칙에 준하여 정관을 작성하고 그 설립인가신청서류 3통을 예정된 주사무소 소재지의 지방변호사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6. 2. 20.)

② 지방변호사회가 제1항의 서류를 받은 때에는 그 1통을 보관하고 나머지 2통에 경유사실을 증명하여 지체 없이 이 회의에 진달하여야 한다.

제3조 [심사와 의견제출] ① 이 회의는 제2조제2항에 의하여 진달된 법무법인 및 법무법인(유한)의 설립인가신청이 법, 법시행령 또는 법무부장관이 정하는 설립인가기준에 합당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이 회의의 의견을 첨부하여 그 인가신청서류를 법무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6. 2. 20.)

② 이 회의는 제2조제2항에 의하여 진달된 인가신청서류에 기재사항의 흠결이 있거나 첨부서류의 미비가 있는 때에는 경유한 지방변호사회를 거쳐 그 신청인에게 보완을 명할 수 있다.

③ 이 회의는 제2조제2항에 의하여 진달된 법무법인 및 법무법인(유한)의 설립인가신청이 법, 법시행령 또는 법무부장관이 정한 설립인가기준에 합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할 때에도 이 회의의 의견을 첨부하여 법무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6. 2. 20.)

④ 이 회의가 법무법인 및 법무법인(유한)의 설립인가신청서류를 심사함에 있어서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회원위원회의 심의에 부쳐 필요한 사실과 증거를 조사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6. 2. 20.)

제4조 [기타 인가신청] ① 법무법인 및 법무법인(유한)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인가신청서류 3통을 소속 지방변호사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6. 2. 20.)

1. 법 제41조 및 제58조의3 단서에 의한 정관변경 (개정 2006. 2. 20.)

2. <삭제> (2000. 7. 3.)

3. 법 제55조에 의한 합병 (개정 2000. 7. 3.)

② 제2조제2항 및 제3조의 규정은 제1항의 경우에 준용한다.

제5조 [신고] ① 법무법인 및 법무법인(유한)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그 때로부터 7



일 이내에 소속 지방변호사회를 거쳐 이 회에 그 사유를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6. 2. 20.)

1. 설립인가를 받아 설립등기를 마친 때
2. 법 제43조제2항 및 제58조의5 제2항에 정한 등기사항에 관하여 변경등기를 마친 때 (개정 2006. 2. 20.)
3. 개업 또는 사업소를 이전하거나 분사무소를 설치한 때
4. 정관변경의 인가를 받은 때
5. 구성원의 변경이 있는 때
6. 구성원 아닌 소속변호사의 채용 또는 변경이 있는 때
7. 주사무소 또는 분사무소에 주재하거나 직무를 행할 구성원 또는 구성원 아닌 소속변호사의 변동이 있는 때
8. 징계 또는 설립인가의 취소를 받은 때
9. 해산 또는 합병한 때

② 제1항에 의한 각종 신고에 첨부할 서류와 절차는 규정으로 정한다.

제6조 [명부의 비치] ① 이 회에 법무법인 및 법무법인(유한) 명부를 비치하고, 제5조에 의한 각종 신고사항 기타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다. (개정 2006. 2. 20.)

② 법무법인 및 법무법인(유한) 명부의 기재사항과 관리절차에 관하여는 규정으로 정한다. (개정 2006. 2. 20.)

제7조 [공고] 이 회가 제5조에 의한 각종 신고를 받은 때에는 2월 이내에 그 요지를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0. 2. 8.)

제8조 [시행세칙] 이 규칙을 시행하는 데 필요한 사항은 규정으로 정한다.

부 칙 (1983. 5. 21.)

- ① [시행일] 이 규칙은 1983. 6. 1.부터 시행한다.
- ②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에 설립된 법무법인은 이 규칙에 의한 법무법인으로 본다.
- ③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에 설립된 법무법인은 이 규칙 시행일로부터 1월 이내에 이 규칙에 의한 각종 신고를 하여야 한다.

부 칙 (1993. 5. 24.)

이 규칙은 1993. 5. 24.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칙은 2000. 7. 29.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칙은 2001. 10. 29.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6. 2. 20.)

이 규칙은 공포 후 20일이 경과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0. 2. 8.)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별 지

법무법인정관준칙

법 무 법 인 정 관

제 1 장 총 칙

제1조 [명칭] (갑) 이 법인은 ○○법무법인이라 한다.

(을) 이 법인은 법무법인 ○○이라 한다.

제2조 [목적] 이 법인은 다음의 업무를 행함을 목적으로 한다.

1. 변호사의 직무에 속하는 업무
2. 공증인의 직무에 속하는 업무
3. 변호사법 제49조제2항에 의한 업무 (개정 2000. 7. 3.)
4. 위 각 호에 부대되는 일절의 업무

제3조 [사무소의 소재지] ① 이 법인의 주사무소는 ○○○○에 둔다.

② (갑) 이 법인은 다음의 분사무소를 둔다.

1. ○○분사무소 ○○시
2. ○○분사무소 ○○시

(을) 이 법인은 필요에 따라 이 정관을 개정하고 주무관청의 인가를 얻어 필요한 곳에 분사무소를 둘 수 있다.

제4조 [존립시기] 이 법인은 설립등기일부터 만○○년간 존립한다. 다만, 구성원회의의 결의로 그 기간을 연장 또는 단축할 수 있다.

제 2 장 구성원과 출자

제5조 [구성원] ① 구성원의 성명과 주민등록번호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09. 2. 26.)

성 명	주민등록번호
○ ○ ○	
○ ○ ○	

② 대표변호사의 성명과 주소는 다음과 같다.

성 명	주민등록번호
○ ○ ○	



제6조 [출자] 각 구성원이 출자할 출자의 목적, 가액, 평가기준 및 지분은 다음과 같다. 다만, 출자의 목적인 노무는 변호사로서의 계속적인 정신적·육체적 노무를 말한다.

구 성 원	목 적	가 액	평가기준	출자지분
○ ○ ○	금전	원	원	%
○ ○ ○	노무	해당없음	원	%
○ ○ ○	금전	원	원	%
○ ○ ○	노무	해당없음	원	%
○ ○ ○	노무	"	원	%
○ ○ ○	노무	"	원	%
○ ○ ○	노무	"	원	%
합 계	금전	원	원	100%

제7조 [지분의 양도] 구성원은 그 지분의 전부 또는 일부를 구성원회의의 결의에 따른 승인없이 타인에게 양도할 수 없다.

제8조 [자기거래] 구성원은 다른 구성원과반수의 결의가 있는 때에 한하여 자기 또는 제3자 계산으로 법인과 거래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민법 제124조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 3 장 구성원회의

제9조 [구성] 구성원회의는 구성원인 변호사 전원으로 구성한다.

제10조 [권한] 구성원회의는 다음 사항을 결의한다.

1. 정관의 변경
2. 구성원의 가입, 승계 및 제명
3. 출자지분의 양도에 관한 승인
4. 대표변호사의 선임 및 해임
5. 대표변호사 및 업무담당구성원의 보수결정
6. 분사무소주재구성원의 결정
7. 계산서류의 승인
8. 법인의 해산, 합병
9. 해산에 따른 청산인의 선임, 해임 및 잔여재산의 처분
10. 기타 법인의 운영에 관한 중요 사항

제11조 [소집] ① 구성원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한다.

② 정기회는 매결산기종료 후 2월 이내에 소집하고, 임시회는 필요에 따라 수시 소집한다.

③ 구성원회의는 대표변호사가 소집한다. 다만, 구성원 ○분의 ○ 이상이 회의의 목적사항을 명시하



여 임시회의 소집을 요구하면 대표변호사는 ○일 이내에 이를 소집하여야 한다.

제12조 [결의방법] ① 구성원회의의 결의는 출자지분의 과반수를 가진 구성원이 출석하고, 그 의결권의 과반수 찬성으로 하여야 한다. 다만, 제10조제1호, 제2호 및 제8호에 정한 사항에 관하여는 구성원 전원의 출석과 찬성이 있어야 한다.

② 구성원은 다른 구성원으로 하여금 그 의결권을 대리행사하게 할 수 있다.

제13조 [의결권] (갑) 각 구성원은 그 출자지분의 비율에 따라 의결권을 가진다.

(을) 각 구성원은 평등한 의결권을 가진다.

제14조 [회의] ① 구성원회의의 의장은 대표변호사가 된다.

② 구성원회의의 의사에 관하여는 의사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의사록에는 의사의 경과요령과 그 결과를 기재하고, 의장과 출석한 구성원이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제 4 장 업무집행과 법인대표

제15조 [업무담당변호사의 지정] ① 이 법인이 변호사법 제50조제1항 및 제2항에 의하여 업무를 담당할 변호사를 지정할 때에는 대표변호사가 그 취지를 기재한 서면을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2000. 7. 3.)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담당변호사는 지정된 업무의 집행에 한하여 이 법인을 대표한다.

제16조 (갑) [대표변호사] ① 이 법인에 대표변호사 1인을 둔다.

② 대표변호사는 구성원회의의 결의로 구성원 중에서 선임한다.

③ 대표변호사는 이 법인을 대표하고 일절의 업무를 통할한다.

④ 대표변호사 유고 시에는 대표변호사가 미리 지정한 구성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⑤ 대표변호사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구성원회의의 결의로 연임할 수 있다.

(을) [법인대표] 구성원은 각자 이 법인을 대표한다.

제17조 [보고업무] 대표변호사는 다른 구성원의 요구가 있으면 언제든지 법인의 업무 및 재산상태를 보고하여야 한다.

제18조 [보수] 대표변호사와 업무를 담당하는 구성원의 보수는 구성원회의의 결의로 정한다.

제19조 [분사무소주채구성원] ① 분사무소에 주채할 구성원은 구성원회의의 결의로 정한다.

② 분사무소에 주채하는 구성원은 그 분사무소의 지배인으로 한다.

제 5 장 구성원의 가입 및 탈퇴



제20조 [가입] ① 구성원의 신규가입은 구성원회의의 결의로 정한다.

② 구성원이 새로 가입한 때에는 각 구성원의 출자지분을 다시 정하여야 한다.

제21조 [탈퇴] ① 구성원은 언제든지 임의로 탈퇴할 수 있다. 다만, 6월 전에 그 뜻을 법인에 예고하여야 한다.

② 구성원은 변호사법 제46조제3항제1호 내지 제3호의 사유가 발생한 때 외에 법원으로부터 제명의 선고가 있는 때에는 당연히 탈퇴한다. (개정 2000. 7. 3.)

제22조 [상속] ① 구성원이 사망한 때에는 그 상속인이 변호사의 자격이 있고, 구성원회의의 결의로 승낙한 때에 한하여 권리의무를 승계하여 구성원이 될 수 있다.

② 상속인이 상속의 개시를 안 날로부터 3월내에 법인에 대하여 승계 또는 포기의 여부를 법인에 통지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통지 없이 3월을 경과한 때에는 구성원이 될 권리를 포기한 것으로 본다.

제23조 [제명의 선고] 구성원에게 다음의 사유가 있는 때에는 법인은 구성원회의의 결의에 의하여 그 구성원의 제명의 선고를 법원에 청구할 수 있다.

1. 출자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
2. 변호사법 제52조제1항에 위반한 때 (개정 2000. 7. 3.)
3. 법인의 업무집행 또는 대표에 관하여 부정한 행위가 있는 때
4. 권한없이 업무를 집행하거나 법인을 대표한 때
5. 기타 중요한 사유가 있는 때

제24조 [지분의 환급] (갑) 재산을 출자의 목적으로 한 구성원이 탈퇴한 때에는 탈퇴일 현재 법인재산에 그 구성원의 지분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환급받을 권리가 있다. 다만, 노무 또는 신용을 출자의 목적으로 한 구성원이 탈퇴한 때에는 그 지분의 환급을 받을 수 없다.

(을) 구성원이 탈퇴한 때에는 탈퇴일 현재의 법인재산에 그 구성원의 지분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환급받을 권리가 있다.

제 6 장 계 산

제25조 [영업연도] 이 법인의 영업연도는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제26조 [계산서류의 승인] 대표변호사는 매영업연도 말에 다음 서류를 구성원회의에 제출하고 그 승인을 받아야 한다.

1. 재산목록
2. 대차대조표
3. 영업보고서
4. 손익계산서



5. 손익금처분에 관한 의안

6. 이익배당에 관한 의안

제27조 [손익계산] 이 법인의 손익계산은 영업연도의 총익금에서 총손금을 공제한 차액을 수익금으로 하고, 총손금에서 총익금을 공제한 차액을 결손금으로 한다.

제28조 [배당] ① 이 법인은 수익금으로 결손금을 충당한 후가 아니면 구성원에게 이익금배당을 할 수 없다.

② 이 법인의 구성원은 법인의 결손금이 발생한 경우에는 어떠한 명목으로든지 법인으로부터 배당을 받을 수 없다.

제29조 [배당비율] 각 구성원의 이익배당은 출자지분의 비율에 따른다.

제 7 장 해산 및 청산

제30조 [해산사유] 이 법인은 다음의 사유로 해산한다.

1. 제4조에 정한 존립시기의 도래
2. 구성원회의의 결의
3. 합병
4. 파산
5. 설립인가의 취소
6. 법원의 명령 또는 판결

제31조 [재산처분] 법인이 해산한 경우 법인의 재산은 구성원회의의 결의로 정한 방법에 따라 이를 처분한다.

제32조 [청산인의 임면] 청산인의 선임 및 해임은 구성원회의의 결의로 한다.

제33조 [잔여재산의 배분] 법인의 잔여재산은 각 구성원의 출자지분비율에 따라 배분한다.

위 ○ ○ 법무법인을 설립하기 위하여 정관을 작성하고, 각 구성원이 기명날인한다.

○ ○ 법 무 법 인

구 성 원
구 성 원
구 성 원
구 성 원
구 성 원



법무조합의설립등에관한규칙

2006. 2. 20.

규칙 제30호

개정 2010. 2. 8.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변호사법(이하 “법”이라 한다)에 의하여 설립되고, 회칙에 따라 신고의무를 지는 법무조합의 설립인가, 변경인가 및 각종 신고에 관한 기준과 절차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설립인가신청] ① 변호사가 합동하여 법률사무에 종사할 것을 규약하고 법 제58조의18에 따라 법무조합을 설립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규약준칙에 준하여 규약을 작성하고 그 설립인가신청서류 3통을 구성원이 될 변호사가 소속한 지방변호사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지방변호사회가 제1항의 서류를 받은 때에는 그 1통을 보관하고 나머지 2통에 경유사실을 증명하여 지체 없이 이 회에 진달하여야 한다.

제3조 [심사와 의견제출] ① 이회는 제2조제2항에 의하여 진달된 법무조합의 설립인가신청이 법 또는 법무부장관이 정한 설립인가기준에 해당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이 회의 의견을 첨부하여 그 인가신청서류를 법무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이회는 제2조제2항에 의하여 진달된 인가신청서류에 기재사항의 흠결이 있거나 첨부서류의 미비가 있는 때에는 경유한 지방변호사회를 거쳐 그 신청인에게 보완을 명할 수 있다.

③ 이회는 제2조제2항에 의하여 진달된 법무조합의 설립인가신청이 법 또는 법무부장관이 정한 설립인가기준에 해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할 때에도 이 회의 의견을 첨부하여 법무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이회가 법무조합의 설립인가신청서류를 심사함에 있어서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회원위원회의 심의에 따라 필요한 사실과 증거를 조사하게 할 수 있다.

제4조 [기타 인가신청] ① 법무조합은 규약의 변경이 있는 때에는 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인가신청서류 3통을 구성원이 소속한 지방변호사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2조제2항 및 제3조의 규정은 제1항의 경우에 준용한다.

제5조 [신고] ① 법무조합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그 때로부터 7일 이내에 구성원이 소속한 지방변호사회를 거쳐 이 회에 그 사유를 신고하여야 한다.

1. 법무부장관으로부터 법무조합의 설립인가를 받은 때
2. 법무조합이 그 업무를 개시하거나 사무소를 이전한 때
3. 규약변경의 인가를 받은 때
4. 구성원의 변경이 있는 때



5. 구성원이 아닌 소속변호사의 채용 또는 변경이 있는 때

6. 징계 또는 설립인가의 취소를 받은 때

7. 해산한 때

② 제1항에 의한 각종 신고에 첨부할 서류와 절차는 규정으로 정한다.

제6조 [명부의 비치] ① 제5조에 의한 각종 신고사항 및 기타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다.

② 법무조합의 기재사항과 관리절차에 관하여는 규정으로 정한다.

제7조 [공고] 이 회가 제5조에 의한 각종 신고를 받은 때에는 2월 이내에 그 요지를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0. 2. 8.)

제8조 [시행세칙] 이 규칙을 시행하는 데 필요한 세부사항은 규정으로 정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 후 20일이 경과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0. 2. 8.)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지방법원사회설립과감독에관한규칙

1983. 5. 21.

규칙 제18호

개정

1986. 2. 22. 1992. 5. 18.
1993. 5. 24. 1995. 2. 25.
1998. 6. 8. 2000. 7. 3.
2001. 10. 29. 2004. 2. 23.
2006. 2. 20. 2006. 8. 21.
2007. 7. 23. 2009. 2. 26.
2010. 2. 8. 2014. 2. 24.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변호사법(이하 “법”이라 한다)에 의하여 설립되고, 법 및 회칙에 따라 이 회의 단체회원으로서 이 회의 감독을 받는 지방변호사회의 설립과 감독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설립기준] ① 지방변호사회는 법 제64조제1항에 따라 지방법원의 관할구역마다 1개를 둔다.
(개정 2000. 7. 3.)

②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령의 개정으로 지방법원이 신설 또는 합병되는 때에는 이에 맞추어 지방변호사회를 신설 또는 합병하여야 한다.

제3조 [명칭 및 소재지] ① 지방변호사회의 명칭은 그 설립기준이 되는 지방법원의 명칭에 표시된 지역명에 “지방변호사회”라는 용어를 붙여 정한다. 다만, 지방변호사회는 회칙변경의 절차에 따라 그 지역명칭을 달리 정할 수 있다. (단서신설 2006. 8. 21.)

② 지방변호사회의 소재지는 그 설립기준이 되는 지방법원의 본원소재지로 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4조 [관할지역] ① 지방변호사회의 관할지역은 그 설립기준이 되는 지방법원의 관할구역에 따른다.

② 지방법원의 관할구역에 관한 법령의 개정으로 지방법원의 관할구역이 변경되는 때에는 이를 맞추어 지방변호사회의 관할지역을 변경하여야 한다.

제5조 [순서] 이 회가 명부의 관리, 문서의 작성, 대의원의 선출 기타 지방변호사회를 감독함에 있어서 각 지방변호사회의 순서를 정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별표에 정한 순서에 따른다.

제6조 [회원의 종류] ① 지방변호사회의 회원은 개인회원, 법인회원 및 준회원으로 한다. (개정 2014. 2. 24.)

② 개인회원은 개업신고를 한 변호사로 한다.

③ <삭제> (2014. 2. 24.)

④ 법인회원은 법무법인 및 법무법인(유한)·법무조합과 공증인가합동법률사무소로 한다. (개정 2006. 2. 20.)



⑤ 준회원은 변호사등록을 하였으나, 개업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와 개업하였다가 휴업신고를 한 자로 한다.

제7조 [설립인가신청] 법 제65조에 따라 지방변호사회를 설립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회칙준칙에 준하여 회칙을 작성하고, 그 설립인가신청서류 2통을 받기인 대표자가 이 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0. 7. 3.)

제8조 [심사와 의견제출] ① 이회는 제7조에 의한 설립인가신청을 받은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심사하고, 그 신청이 관계법령 또는 이 규칙에 정한 설립기준에 합당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의견을 첨부하여 인가신청서류를 법무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이회는 제7조에 의한 인가신청서류의 기재사항에 흠결이 있거나 첨부서류에 미비가 있는 때에는 그 신청인에게 보완을 명할 수 있다.

③ 이회는 제7조에 의한 설립인가신청이 관계법령 또는 이 규칙에 정한 설립기준에 합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이사회회의 결의를 거쳐 이 회의 의견을 첨부하여 법무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9조 [회칙변경인가신청] ① 지방변호사회가 법 제65조 후단에 의하여 회칙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인가신청서류 2통을 이 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0. 7. 3.)

② 제8조의 규정은 제1항의 경우에 준용한다.

제10조 [이해조정] ① 이회는 회칙 제46조에 의하여 지방변호사회 사이의 이해를 조정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이사회 또는 총회의 의결을 거쳐 다음과 같은 조치를 할 수 있다.

1. 기금 또는 자산의 양여
2. 회원의 소속변경

② 이회가 제1항의 조치를 함에 있어서는 사전에 관계되는 각 지방변호사회 및 그 소속회원의 의견을 충분히 청취하고 변동되는 회원 수 비례에 따라 그 이해가 공평하게 조정되도록 하여야 한다.

제11조 [보고] ① 지방변호사회는 회칙 제47조 각 호에 정한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그 때로부터 5일 이내에 그 사유를 이 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의한 보고의 요령과 첨부서류는 규정으로 정한다.

제12조 [총회결의의 취소] ① 이회는 지방변호사회의 총회결의가 법령, 이 회 또는 그 지방변호사회의 회칙에 위반된다고 인정할 때에는 총회의 의결을 거쳐 그 지방변호사회의 결의를 취소할 수 있다. (개정 2007. 7. 23.)

② 이회는 법무부장관으로부터 법 제77조제3항에 의한 지방변호사회 총회결의취소여부에 관한 의견요청을 받은 때에도 제1항에 준하여 총회의 결의를 거쳐 스스로 그 지방변호사회의 총회결의를 취소하거나 법무부장관에 대한 의견을 회신할 수 있다. (개정 2000. 7. 3.)

제13조 [변호사실무수습에 관한 지도와 감독] ① 이회는 회칙 제48조제2항에 의하여 지방변호사회가 담당하는 사법연수생의 변호사실무수습에 관하여 필요한 지도와 감독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의한 지도와 감독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정으로 정한다.

제14조 [분쟁조정에 관한 지도와 감독] ① 이회는 회칙 제48조제3항에 의하여 지방변호사회가 행하는



변호사·법무법인·법무법인(유한)·법무조합이나 공증인가합동법률사무소 사이 또는 변호사·법무법인·법무법인(유한)·법무조합이나 공증인가합동법률사무소와 위임인 사이의 분쟁조정에 관하여 필요한 지도와 감독을 할 수 있다. (개정 2006. 2. 20.)

② 제1항에 의한 지도와 감독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정으로 정한다.

제15조 [공고] 제11조에 의하여 지방변호사회가 이 회에 보고한 사항과 기타 지방변호사회의 회무에 관한 중요 사항은 그 요지를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0. 2. 8.)

제16조 [시행세칙] 이 규칙을 시행하는 데 필요한 세부사항은 규정으로 정한다.

부 칙 (1983. 5. 21.)

이 규칙은 1983. 6. 1.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92. 5. 18.)

이 규칙은 1992. 5. 1.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93. 5. 24.)

이 규칙은 1992. 5. 24.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98. 6. 8.)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칙은 2000. 7. 29.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칙은 2001. 10. 29.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칙은 2004. 2. 23.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6. 2. 20.)

이 규칙은 공포 후 20일이 경과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0. 2. 8.)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4. 2. 24.)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 표 (1986. 2. 22. 개정), (1992. 5. 18. 개정), (1998. 6. 8. 개정)
(2007. 7. 23. 개정), (2009. 2. 26. 개정), (2010. 2. 8. 개정)

지방법변호사회의 순서

1. 서울지방법변호사회
2. 경기북부지방법변호사회
3. 인천지방법변호사회
4. 경기중앙지방법변호사회
5. 강원지방법변호사회
6. 충북지방법변호사회
7. 대전지방법변호사회
8. 대구지방법변호사회
9. 부산지방법변호사회
10. 울산지방법변호사회
11. 경남지방법변호사회
12. 광주지방법변호사회
13. 전북지방법변호사회
14. 제주지방법변호사회



별 지

지방변호사회회칙준칙

지방변호사회 회칙

제 1 장 총 칙

제1조 [명칭] 이회는 변호사법(이하 “법”이라 한다)에 의하여 설립되는 법인으로서 ○○지방변호사회라 한다.

제2조 [목적] 이회는 다음 사항을 그 설립목적으로 한다.

1. 기본적 인권의 옹호와 사회정의의 실현
2. 법률문화의 창달과 국제적 교류
3. 변호사사무의 개선 및 발전
4. 변호사의 품위보전과 자질향상
5. 변호사·법무법인·법무법인(유한)·법무조합 및 공증인가합동법률사무소의 지도·감독
6. 회원의 권익옹호와 복지증진

제3조 [구성] 이회는 관할지역안에 사무소를 두는 변호사·법무법인·법무법인(유한)·법무조합으로 구성한다.

제4조 [관할지역] 이회의 관할지역은 ○○지방법원의 관할구역으로 한다.

제5조 [소재지] 이회의 사무소는 ○○시에 둔다.

제6조 [의견발표와 건의] 이회는 관할지역에 관계되는 법령의 제정과 개폐 또는 법제도의 운영과 개선문제에 관하여 제2조에 정한 설립목적에 비추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의견을 발표하거나 건의할 수 있다.

제 2 장 회 원

제7조 [회원의 종류] ① 이회 회원의 종류는 개인회원, 법인회원으로 한다. (개정 2014. 2. 24.)

② 개인회원은 개업신고를 한 변호사로 한다.

③ <삭제> (2014. 2. 24.)

④ 법인회원은 법무법인·법무법인(유한)·법무조합과 공증인가합동법률사무소로 한다.



제8조 [입회]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이 회에 입회하여야 한다. (개정 2014. 2. 24.)

1. 이 회의 관할 구역 안에 법률사무소를 개설하는 변호사
2. 이 회의 관할 구역 안에 설립하는 법무법인·법무법인(유한)·법무조합이나 공증인가합동법률사무소의 구성원이 되는 변호사
3. 이 회의 관할 구역 안에 설치하는 법무법인·법무법인(유한)·법무조합의 주사무소 또는 분사무소에 주재하는 구성원인 변호사 또는 구성원이 아닌 소속변호사
4. 이 회의 관할 구역 안에 주사무소를 두는 법무법인·법무법인(유한)·법무조합
5. 이 회의 관할 구역 안에 설립하는 공증인가합동법률사무소

제9조 [입회절차] ① 이 회에 입회하고자 하는 자는 법에 의한 변호사자격등록, 소속변경등록 또는 법무법인·법무법인(유한)·법무조합 및 공증인가합동법률사무소의 설립인가를 받은 후 지체 없이 이 회에 입회원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 ② 제1항의 입회원서를 제출할 때에는 이 회가 규칙으로 정하는 입회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 ③ 제1항의 입회원서를 제출하고 제2항의 입회금을 납입한 자는 그 때부터 당연히 이 회의 회원이 된다.
- ④ 이 회의 회원이 되고자 하는 자의 입회신청이 있을 때에는 입회적정여부를 심사하여야 한다.
- ⑤ 입회심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0조 [퇴회] 회원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당연히 이 회에서 퇴회한다.

1. 변호사자격등록이 취소된 때
2. 소속변경등록에 의하여 다른 지방변호사회의 회원이 된 때
3. 법무법인·법무법인(유한)·법무조합 또는 공증인가합동법률사무소가 해산하거나 인가취소된 때
4. 법무법인·법무법인(유한)·법무조합 또는 공증인가합동법률사무소가 그 사무소를 이전하여 다른 지방변호사회의 회원이 된 때

제11조 [회원의 권리] ① 개인회원은 이 회칙 또는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임원의 선거권 및 피선거권을 가진다.

- ② 모든 회원은 이 회의 운영에 관하여 회장에게 의견을 진술하고,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을 건의할 수 있다.
- ③ 모든 회원은 규칙 또는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 회의 시설을 이용할 수 있다.

제12조 [회원의 의무] ① 모든 회원은 이 회의 회칙, 규칙 및 규정이나 결의를 준수하여야 한다.

- ② 모든 회원은 규칙 또는 총회의 의결에 따라 부과한 각종 회비를 납부하여야 한다.
- ③ 모든 회원은 이 회가 지정한 업무를 성실히 처리하고 이 회의 운영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 ④ 개인회원이나 법인회원은 법률사건 또는 법률사무에 관한 수임장부를 작성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 ⑤ 개인회원이나 법인회원은 법률사건 또는 법률사무에 관한 변호인선임서나 위임장을 제출할 때에는 소속 지방변호사회를 경유하여야 한다.

제12조의 2 [공익활동 참가 등] ① 개인회원은 연간 일정 시간 이상 공익활동에 종사하여야 한다.

- ② 개인 회원은 법령에 의하여 공공기관, 이 회 또는 소속 지방변호사회가 지정한 업무를 처리하여



야 한다.

③ 공익활동의 범위와 시행방법 등은 규정으로 정한다.

제13조 [의례와 포상] ① 이회는 회원의 친목을 도모하기 위하여 필요한 행사와 의례를 행하고 공로가 현저한 회원을 포상할 수 있다.

② 회원의 경조, 포상에 관한 사항은 규정으로 정한다.

제14조 [준회원등] ① 이회를 입회하고자 하는 지방변호사회로 정하여 등록하였으나 개업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와 이회의 회원으로 있다가 휴업신고를 한 자는 이회의 준회원으로 된다.

② 준회원에 대하여는 회원의 권리·의무와 변호사의 지도·감독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15조 [회원명부등] ① 이회에 회원명부를 비치한다.

② 회원명부에 기재할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③ 모든 회원은 회원명부에 기재한 사항에 변동이 있을 때에는 지체 없이 이회에 신고하여야 한다.

제 3 장 총 회

제16조 (갑) [설치 및 구성] ① 이회의 최고의결기관으로서 총회를 둔다.

② 총회는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선출한 대의원으로 구성한다.

③ 대의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제16조 (을) [설치 및 구성] ① 이회의 최고의결기관으로서 총회를 둔다.

② 총회는 개인회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4. 2. 24.)

제17조 (갑) [종류 및 소집] ① 총회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한다.

② 정기회는 매년 1월 중에 의장이 소집한다.

③ 임시회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의장이 소집한다.

1. 총회 구성원의 3분의 1 이상이 회의의 목적사항과 소집의 이유를 기재한 서면을 의장에게 제출하고 총회의 소집을 요구한 때

2. 회장이 이사회 결의를 거쳐 회의의 목적사항을 정하여 총회의 소집을 요구한 때

④ 제3항의 경우 의장은 그 요구가 있는 날로부터 2주일 내에 총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다만, 의장이 그 때까지 총회를 소집하지 아니할 때에는 그 소집을 요구한 자가 소집할 수 있다.

⑤ 총회를 소집할 때에는 총회의 일시, 장소 및 회의의 목적사항을 명시하여 개회 1주일 전에 구성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

제17조 (을) [종류 및 소집] ① 총회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한다.

② 총회는 매년 1월 중에 회장이 소집한다.

③ 임시회는 총회 구성원의 3분의 1 이상이 회의의 목적사항과 소집의 이유를 기재한 서면을 회장에게 제출하고 총회의 소집을 요구한 때 또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소집한다.

④ 총회 구성원의 3분의 1 이상이 제2항에 의한 총회의 소집을 요구한 때에는 회장은 그 요구가 있



은 날로부터 2주일 내에 총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다만, 회장이 그 때까지 총회를 소집하지 아니할 때에는 그 소집을 요구한 자가 소집할 수 있다.

⑤ 회장이 임시총회를 소집할 때에는 이사회 의결을 거쳐야 하고, 총회 구성원에게 총회의 일시, 장소 및 회의의 목적사항을 명시하여 총회 1주일 전에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

제18조 [의결사항] 총회는 다음 사항을 의결한다.

1. 회칙 및 규칙의 제정 또는 개정에 관한 사항
2. 예산 및 결산의 승인에 관한 사항
3. 임원의 선임에 관한 사항
4. 법령, 회칙 또는 규칙에 의하여 총회의 의결을 받아야 할 사항
5. 기타 회장이 이사회 의결을 거쳐 부의한 사항

제19조 (갑) [정족수] ① 총회는 재적구성원의 과반수 출석으로 성립한다.

② 총회는 이 회칙에서 달리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적구성원의 과반수 출석과 출석구성원의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가부동수인 때는 의장이 결정권을 가진다.

제19조 (을) [정족수] ① 총회는 재적구성원의 ○분의 1 이상의 출석으로 성립한다.

② 총회는 이 회칙에서 달리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적구성원의 ○분의 1 이상의 출석과 재적구성원의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가부동수인 때는 의장이 결정권을 갖는다.

제20조 (갑) [의장 및 부의장] ① 대의원선출 후 최초로 소집되는 총회에서는 의장 및 부의장 각 1인을 구성원 중에서 선출하여야 한다.

② 의장은 총회를 소집하고 총회의 질서를 유지하며 의사를 진행한다.

③ 의장이 사고가 있거나 위임한 때에는 부의장이 의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다만, 의장 및 부의장이 선출되기까지의 의장의 직무는 회장이 대행한다.

④ 의장 및 부의장의 임기는 대의원의 임기와 같다. 다만, 대의원의 자격을 상실한 때에는 그 임기에 불구하고 퇴임한 것으로 본다.

제20조 (을) [의장] ① 총회의 의장은 회장이 된다.

② 의장은 총회의 질서를 유지하며 의사를 진행한다.

③ 의장이 사고가 있거나 위임한 때에는 부의장이 의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제21조 [회의의 공개와 발언] ① 총회의 회의는 공개한다. 다만, 총회가 달리 의결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회장, 부회장 및 감사는 총회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③ 총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임원 또는 회원으로 하여금 총회에 출석하여 발언하게 할 수 있다.

제22조 [의사록] ① 총회의 의사에 관하여는 의사록을 작성하고, 의장 및 총회가 지명한 2인 이상의 구성원이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의사록은 다음 총회에 보고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 4 장 이 사 회

제23조 [설치 및 구성] ① 이 회의 회무에 관한 중요 사항을 의결하기 위하여 이사회를 둔다.

② 이사회는 회장, 부회장, 상임이사 및 이사로 구성한다.

제24조 [종류 및 소집] ① 이사회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한다.

② 정기회는 매 3개월마다 회장이 소집한다.

③ 임시회는 이사회구성원 3분의 1 이상이 회의의 목적사항과 소집의 이유를 기재한 서면을 회장에 게 제출하고 이사회의 소집을 요구하거나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회장이 소집한다.

④ 이사회구성원 3분의 1 이상이 제3항에 의한 소집요구를 한 때에는 회장은 그 요구가 있는 날로부터 1주일 이내에 이사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제25조 [의결사항] 이사회는 다음 사항을 의결한다.

1. 규정의 제정 및 개정에 관한 사항
2. 사업계획의 승인에 관한 사항
3. 제6조에 의한 의견발표 또는 건의에 관한 중요 사항
4. 회칙, 규칙 또는 규정에 의하여 이사회의 의결을 받아야 할 사항
5. 총회가 위임한 사항
6. 총회의 소집과 총회에 부의할 의안에 관한 사항
- 6의2. 조사위원의 선임에 관한 사항
7. 기타 회장이 부의한 회 운영에 관한 중요 사항

제26조 [정족수] ① 이사회는 재적구성원의 과반수 출석으로 성립한다.

② 이사회는 재적구성원의 과반수 출석과 출석구성원의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가부동수인 때에는 의장이 결정권을 가진다.

제27조 [의장] 이사회의장은 회장이 된다.

제28조 [준용규정] 제21조 및 제22조의 규정은 이사회에 이를 준용한다.

제 5 장 임 원

제29조 (갑) [종류] 이 회에 다음의 임원을 둔다.

1. 회장 1인
2. 부회장 2인
3. 상임이사 10인 이내
4. 이사 20인 이내
5. 감사 2인



제29조 (을) [종류] 이 회에 다음의 임원을 둔다.

1. 회장 1인
2. 부회장 1인
3. 상임이사 5인 이내
4. 이사 20인 이내
5. 감사 2인

제29조 (병) [종류] 이 회에 다음의 임원을 둔다.

1. 회장 1인
2. 부회장 1인
3. 상임이사 3인 이내
4. 이사 10인 이내
5. 감사 2인

제30조 (갑) [선임] ① 회장, 부회장은 총회에서 무기명투표로 선임한다.

② 제1차 투표에서 당선자가 없는 경우에 최고득표자가 수인인 때에는 그들에 대하여, 최고득표자가 1인인 때에는 그와 차위득표자에 대하여 결선투표를 하고, 그 중 다수득표자를 당선자로 한다. 다만, 결선투표에서도 다수득표자가 수인인 때에는 그 중 연장자를 당선자로 한다.

③ 상임이사는 회장이 추천한 자 중에서 총회가 선임한다.

④ 이사와 감사는 총회가 선임한다. 다만, 이사는 매년 그 정원 2분의 1씩을 개선한다.

⑤ 임원선임을 위한 투표권은 이를 대리인에 의하여 행사하지 못한다.

⑥ 대의원은 임원이 될 수 없고, 임원은 다른 종류의 임원을 겸임할 수 없다.

제30조 (을) [선임] (제4항 단서 및 제6항을 삭제하는 외에는 위 갑과 같다)

제31조 [보선] 임원 중 결원이 생긴 때에는 지체 없이 그 후임자를 선임하여야 한다. 다만, 부회장 1인, 이사 정원의 4분의 1 이내에서 결원이 생긴 때에는 그 후임자를 선임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32조 [임원선거에 관한 준수사항] 회원은 임원선거에 관하여 금품, 향응 기타 편익을 제공하여 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33조 [임원] ① 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② 제31조의 규정에 의하여 보선된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③ 임기가 만료된 임원은 후임자가 취임할 때까지 계속하여 그 직무를 행한다.

제34조 [직무] ① 회장은 이 회를 대표하고, 회무를 통할한다. 회장은 재임기간 중 정당의 당적을 가지지 못한다.

② (갑)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고, 회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미리 정한 순서에 따라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을)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고, 회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④ 상임이사는 회장을 보좌하여 회무를 처리한다. 다만, 상임이사는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담



별로 회무를 분담처리할 수 있다.

⑤ 이사는 이사회 의 구성원으로서 회무에 관한 중요 사항을 심의 의결하고, 이사회 또는 회장으로 부터 위임받은 회무를 처리한다.

⑥ 감사는 이 회의 재정 및 업무집행상황을 감사하고 그 결과를 총회에 보고한다.

제34조의2 [임원의 보수] ① 임원에게 예산의 범위 내에서 보수를 지급할 수 있다.

② 보수지급의 기준과 범위에 관한 사항은 규정으로 정한다.

제35조 [정치활동의 금지] ① 회장과 부회장은 그 임기 중 정당의 당적을 가지지 못한다.

제 6 장 위 원 회

제36조 [위원회] ① 이 회의는 그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자문기관으로서 각종 위원회를 둔다.

② 위원회는 상설위원회와 특별위원회로 한다.

③ 상설위원회의 종류, 설치, 조직, 권한 및 회의에 관하여는 규칙으로 정한다.

④ 특별위원회는 이사회가 그 조직, 권한, 존속기간 기타 필요한 사항을 규정으로 정하는 경우에 한하여 둘 수 있다.

제37조 [위원회의 조직] ① 위원회에 위원장, 부위원장 및 간사 각 1인을 둔다.

② 위원장은 회장이 추천한 상임이사 또는 이사 중에서 위원회가 선임하고, 부위원장 및 간사는 위원 중에서 위원회가 호선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회장이 이사회 의 승인을 얻어 개인회원 중에서 지명한다.

제 7 장 사 무 국

제38조 [설치와 조직] ① 이 회의 일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사무국을 둔다.

② 사무국에 국장 1인과 필요한 직원을 둔다.

제39조 [사무국장] ① 사무국장은 회장의 명을 받아 이 회의 일반 사무를 관장하고, 사무국의 직원을 지휘·감독한다.

② 사무국장은 회장이 이사회 의 승인을 얻어 임명한다.

③ 사무국장은 총회, 이사회 또는 임원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제40조 [직제와 정원] 사무국의 직제와 정원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 8 장 지도와 감독

제41조 [등록과 신고] ① 변호사가 각종 등록 또는 신고를 하고자 할 때에는 이 회를 경유하여야 한다. (개정 2014. 2. 24.)

② 회원이 소속변경등록을 하여 다른 지방변호사회의 회원이 된 때에는 지체 없이 이 회에 그 뜻을 신고하여야 한다.

③ 공증인가합동법률사무소는 그 설립, 설치, 규약변경, 사무소이전, 구성원변경 기타 필요한 사항을 지체 없이 그 회에 신고하여야 한다.

④ 법무법인·법무법인(유한)·법무조합은 그 설립 및 변경의 등기정관의 제정 및 변경, 개업, 사무소 이전, 분사무소 설치, 구성원변경 기타 필요한 사항을 지체 없이 이 회에 신고하여야 한다.

⑤ 이 회는 제1항 내지 제3항의 등록이나 신고가 있을 때에는 등록이나 신고에 필요한 자격요건의 유무, 등록요건의 구비여부 등을 심사하여야 한다.

⑥ 등록이나 신고의 심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42조 [사무직원] ① 변호사·법무법인·법무법인(유한)·법무조합은 사무직원을 둘 수 있다.

② 사무직원의 종류, 자격, 인원, 연수, 신고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한변호사협회 회칙 및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 회가 규칙으로 정한다.

③ 사무직원의 품위보전과 자질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이 회에 변호사사무직원회를 둔다.

④ 사무직원회의 조직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43조 [회원의 윤리] ① 회원은 변호사의 사명에 따라 성실하게 직무를 수행하고 대한변호사협회의 변호사윤리규칙을 준수하여 변호사로서의 품위를 보전하여야 한다.

② 회원은 부정한 방법으로 법률사건이나 법률사무를 수임하거나 이를 유치하여서는 아니 되며, 변호사법 제109조제1호·제2호 또는 제111조, 제112조제1호에 규정된 자로부터 이를 알선 받거나 자기명의를 사용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회원은 광고를 하거나 간판을 설치할 때에는 이 회가 정한 기준에 따라야 한다.

제44조 [연수교육] 변호사는 대한변호사협회 및 이 회가 정하는 바에 따라 연수교육을 받는다.

제45조 [변호사 법무법인 법무법인(유한)·법무조합의 보수] ① 변호사·법무법인·법무법인(유한)·법무조합은 그 직무에 관하여 사무보수, 사건보수 및 실비변상을 받을 수 있다.

② 사무보수는 상담료, 감정료, 문서작성료 및 고문료로, 사건보수는 그 사건의 종류에 따라 착수금과 성공보수로, 실비변상은 수임사무 및 사건의 처리비용과 여비 등으로 나눌 수 있다.

③ 변호사·법무법인·법무법인(유한)·법무조합의 보수는 위임인과의 계약으로 정한다. 다만, 보수는 사회통념에 비추어 현저하게 부당한 것이어서는 아니된다.

제46조 [징계] ① 회장은 변호사에게 징계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대한변호사협회장에게 징계개시의 신청을 하여야 한다.

② 회장이 제1항에 의하여 징계개시신청을 하기 위해서는 조사위원회로 하여금 사실과 증거를 조사



하게 하여야 한다.

③ 회장이 징계개시의 신청을 한 때에는 지체 없이 본인에게 그 뜻을 통지하여야 한다.

④ 조사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47조 [사법연수생의 지도] ① 이회는 사법연수원의 위촉에 의하여 사법연수생의 변호사실무수습을 담당한다.

② 이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사법연수생을 회원에게 위촉하여 개별지도를 하게 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의하여 위촉받은 회원은 이회가 정하는 지도계획에 따라 사법연수생으로 하여금 인격을 도야하고, 변호사로서 필요한 지식 및 실무능력을 습득할 수 있도록 성실하게 지도하여야 한다.

④ 이회는 수습 중인 사법연수생에게 면직의 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사법연수원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48조 [분쟁조정] ① 변호사·법무법인·법무법인(유한)·법무조합 또는 공증인가합동법률사무소 등의 업무에 관하여 회원 상호간 또는 회원과 위임인 또는 그 상대방 사이에 분쟁이 발생하였을 경우 그 분쟁당사자는 이회에 서면으로 분쟁의 조정을 청구할 수 있다.

② 이회는 분쟁조정청구사건을 처리하기 위하여 분쟁조정위원회를 둔다.

③ 분쟁조정위원회는 위원장인 조정위원을 포함하여 5인 이상 9인 이하의 조정위원으로 구성한다.

④ 분쟁조정위원회의 위원장은 총회에서 선출하며, 조정위원은 변호사, 판사, 검사, 대학교수, 언론인, 소비자단체임원 중에서 회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며, 조정위원의 과반수는 변호사 아닌 자 중에서 위촉하여야 한다.

⑤ 분쟁조정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48조2 [정보제공 등] ① 이회는 의뢰인의 변호사 선임의 편의를 도모하고 법률사건 또는 법률사무수임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회원들의 학력·경력·주요취급업무·업무실적 등 사건수임을 위한 정보를 의뢰인에게 제공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정보의 제공범위·제공방법 기타 필요한 사항은 규정으로 정한다.

제 9 장 법률구조와 공제

제49조 [법률구조사업] ① 이회는 대한변호사협회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빈곤 기타 사유로 권리구제를 받기 어려운 자에 대하여 법률구조사업을 실시한다.

② 이회에 대한변호사협회 법률구조사업회 지부를 둔다.

제50조 [공제사업] ① 이회는 회원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회원공제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② 공제사업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 10 장 재 정

제51조 [재원] 이 회의 경비는 다음의 수익금으로 충당한다.

1. 회비
2. 입회비
3. 찬조금
4. 기타 수입금

제52조 [회계연도] 이 회의 회계연도는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제53조 [예산 및 결산] ① 이 회의 매 년도 세입·세출예산은 총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새로운 회계연도가 개시된 뒤 예산이 성립될 때까지의 필요한 경비는 전년도예산에 준하여 집행할 수 있다. 이 경우 집행된 예산은 당해연도 예산에 의하여 집행된 것으로 본다.

③ 이 회의 매 년도 세입·세출은 회계연도 종료 후 감사의 감사를 거쳐 다음 연도 정기총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54조 [특별회계] 이 회의는 변호사연수, 회원공제 기타 사업을 실시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총회의 승인을 얻어 특별회계를 둘 수 있다.

제 11 장 보 칙

제55조 [회칙개정] ① 회칙을 개정하고자 할 때에는 총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

② 회칙개정은 대한변호사협회를 거쳐 법무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제56조 [규칙 및 규정] ① 이 회의는 법령에 의하여 위임 또는 위탁된 사무를 처리하고, 회칙에서 위임한 사항과 회칙을 시행하기 위한 사항을 정하기 위하여 규칙을 제정할 수 있다.

② 이 회의는 회무를 처리하고, 회칙에서 위임한 사항과 규칙을 시행하기 위한 사항을 정하기 위하여 규정을 제정할 수 있다.

③ 규칙은 총회의, 규정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정한다.

부 칙

제1조 [시행일] 이 회칙은 법 제62조 및 부칙 제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법무부장관의 인가를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 [경과조치] ① 이 회칙 시행 당시의 ○○변호사회는 이 회칙에 의한 ○○지방변호사회로 본다.

② 이 회칙시행 당시 이 회의 회원은 이 회칙에 의한 회원으로 본다.



③ 이 회칙에 의한 최초의 총회 및 이사회가 구성될 때까지 총회의 기능은 종전의 총회가, 이사회
의 기능은 종전의 상임위원회가 행한다.

④ 이 회칙시행 당시의 임원은 이 회칙에 의하여 선임된 것으로 보며, 그 임기를 이 회칙에 의한 최
초의 임원이 선임될 때까지로 한다. 다만, 종전의 총무와 재무는 이 회칙에 의한 상임이사로 본다.

제3조 [경과조치] ① 이회는 이 회칙시행일로부터 3월 이내에 이 회칙에 위임한 각종 규칙을 제정하
여야 한다.

② 이회는 법 부칙 제2조제4항에 정한 기간 내에 법 및 이 회칙에 의한 기관을 구성하고, 임원을
선임하여야 한다.

③ 이 회칙시행 후 최초로 선임되는 임원 및 대의원의 임기는 1985년도 정기총회일까지로 한다.

④ 이 회칙시행 후 최초로 선임되는 이사 중 2분의 1은 이 회칙 제31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임
기는 1984년도 정기총회일로 하여 선임한다.

부 칙

① 이 회칙은 법무부장관의 인가를 받는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 이 회칙에 의하여 증원된 감사 1인의 임기는 1995년도 정기총회일까지로 한다.

③ 이 회칙에 의하여 조사위원회가 구성될 때까지는 징계개시신청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는 상설위원회
가 조사위원회의 직무를 행한다.

부 칙 (개정 2014. 2. 24.)

이 회칙은 법무부장관의 인가를 받는 날부터 시행한다.

변호사신분증규칙

2004. 2. 23.

규칙 제29호

전부개정 2010. 12. 20.

개정 2013. 2. 25.

2021. 2. 22.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변호사의 신분을 표시하는 변호사신분증(이하 “신분증”이라 한다)의 제작 및 배급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발급권자 및 발급의 대행] ① 신분증의 발급권자는 대한변호사협회 협회장으로 한다.

② 대한변호사협회장은 상임이사회의 결의를 거쳐 신분증 제작 및 발급 업무를 제3자에게 대행하도록 할 수 있다.

③ 발급 대행의 경우 이 회에서 특별히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한하여 대한변호사협회와 제3자 사이의 계약 내용에 따른다.

제3조 [기재사항] 신분증에는 이 회의 명칭, 회원의 성명, 소속지방변호사회의 명칭, 등록번호, 발급일 전 6개월 이내에 촬영한 사진, 그 밖에 규정으로 정하는 사항이 각 표시되어야 한다. (개정 2021. 2. 22.)

제4조 [휴대 및 제시] 변호사는 항시 신분증을 휴대하여야 하며, 업무집행에 있어서 그 제시를 요구받았을 때에는 이를 제시하여야 한다.

제5조 [신분증의 재발급 및 변경] ① 신분증이 분실 또는 파손되거나 기재사항의 변동으로 재발급 받고자 하는 변호사는 대한변호사협회 홈페이지를 통하여 신분증 재발급신청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21. 2. 22.)

② 기재사항의 변동으로 재발급을 신청한 변호사는 재발급 신분증 수령 즉시 종전 신분증을 협회에 반납하여야 한다.

③ 신분증을 재발급 할 때에는 이 규칙 시행 이전에 발급된 신분증이 아닌 규칙 시행 이후에 발급된 신분증을 발급한다.

제6조 [신분증의 반납] 변호사가 영구제명·제명·정직 또는 등록취소의 처분을 받아 그 처분이 확정된 때에는 대한변호사협회장에게 신분증을 반납하여야 한다.

제7조 [반납신분증의 폐기] 반납 또는 회수된 신분증은 즉시 폐기조치 하여야 한다. (개정 2021. 2. 22.)

제8조 [시행규정] 이 규칙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규정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21. 2. 22.)



부 칙 (2004. 2. 23.)

- ①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20일을 경과함으로써 효력이 발생한다.
- ②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이전에 발급한 신분증은 이 규칙에 의한 발급이 있을 때까지 유효한 것으로 본다.

부 칙 (2010. 12. 20.)

- ①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 ②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이전에 발급한 신분증은 2012년 12월 31일까지 유효한 것으로 본다.

부 칙 (2013. 2. 25.)

- ①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 ②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이전에 발급한 신분증은 이 규칙에서 정하는 재발급 사유가 발생하여 신분증을 재발급 받을 때까지 유효한 것으로 한다.

부 칙 (2021. 2. 22.)

- ①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 ②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 발급한 신분증은 이 규칙에서 정하는 재발급 사유가 발생하여 신분증을 재발급 받을 때까지 유효한 것으로 한다.



별지 제1호 서식 <삭제> (2013. 2. 25.)

별지 제2호 서식 <삭제> (2021. 2. 22.)



모바일 변호사 신분증 규정

2024. 9. 9.

규칙 제186호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변호사신분증규칙에 의하여 변호사의 신분을 표시하는 변호사신분증(이하 “신분증”이라 한다) 중 모바일 변호사 신분증(이하 “모바일 신분증”이라 한다)의 제작 및 발급, 확인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모바일 신분증이라 함은 변호사신분증규칙 제2조에 따라 신분증을 발급받은 사람에게 대한 변호사협회장이 나의 변호사 어플리케이션(이하 “나의 변호사”라 한다)을 통해 본인의 스마트폰에 발급하는 전자적 방식의 신분증을 말한다.
2. 모바일 신분증 서비스라 함은 모바일 신분증을 필요에 따라 온라인 및 오프라인을 통해 이용기관에서 본인 확인 등에 사용할 수 있는 서비스를 말한다.
3. “이용기관”이라 함은 모바일 신분증이 제공하는 검증소프트웨어를 해당기관의 시스템, 웹사이트 등에 설치하는 등 모바일 신분증 이용자(이하 “이용자”라 한다)가 시스템 등 이용 시 모바일 신분증으로 본인 확인 등을 할 수 있도록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을 말한다.

제3조 [발급권자 및 발급] ① 모바일 신분증의 발급권자는 대한변호사협회장으로 하며, 발급 대상은 개인회원에 한한다.

② 대한변호사협회장은 나의 변호사를 통해 모바일 신분증 발급한다.

③ 대한변호사협회장은 협회의 신분증 정보를 이용하여 모바일 신분증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제4조 [기재사항] ① 모바일 신분증에는 이 회의 명칭, 회원의 성명, 소속지방변호사회의 명칭, 등록번호, 사진, 회원을 식별하는 QR코드, 그 밖에 변호사신분증지침으로 정하는 사항이 각 표시되어야 한다.

② 변호사가 변호사신분증규칙 제5조 제1항의 사유로 신분증을 재발급받아 기재사항이 변경되는 경우, 협회는 모바일 신분증의 기재사항도 동일하게 변경한다.

제5조 [모바일 신분증의 이용 및 효력] ① 이용자는 모바일 신분증을 이용기관에서 신원 또는 자격 확인, 모바일 신분증 정보 제출을 통한 간편 인증 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

② 모바일 신분증은 신분증과 동일한 효력을 갖는다. 다만, 나의 변호사를 통해 구현되지 않거나 다른 이동통신단말장치로 촬영 또는 화면 캡처본은 신분증으로 인정되지 않는다.

제6조 [모바일 신분증의 이용 제한, 정지, 폐기] ① 협회는 다음 각 호의 경우 이용자에게 발급된 신분증 이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제한할 수 있다.



1. 이용자의 사망, 구속 등으로 신원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
 2. 이용자가 부정한 방법으로 신분증을 발급받거나 사용한 사실을 인지한 경우
 3. 이용자의 신분증이 부정하게 사용된 사실을 인지한 경우
 4. 서비스와 관련된 보안절차나 이용자의 전자서명 신원정보 유출과 같은 보안상의 이유로 기 발급된 신분증의 이용 제한이 필요한 경우
 5. 전시, 사변, 천재지변 또는 이에 준하는 비상사태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6. 협회에 신분증 또는 휴대폰의 도난·분실신고가 접수된 경우
 7. 기타 서비스의 안전성과 신뢰성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 ② 영구제명·제명 또는 등록취소의 처분을 받아 그 처분이 확정된 변호사의 모바일 신분증은 폐기한다.
- ③ 정직 및 업무정지의 처분을 받아 그 기간 중에 있는 변호사의 모바일 신분증의 사용은 정지한다.

제7조 [이용자의 의무] ① 이용자는 단말기, 앱, 비밀번호, 서비스 내 화면 등의 접근 매체를 제3자에게 대여하거나 사용 위임, 양도 또는 담보 목적으로 제공할 수 없다.

② 이용자는 단말기, 앱, 비밀번호, 서비스 내 화면 등의 접근 매체를 제3자에게 누설 또는 노출하거나 방치하여서는 안 되며, 접근 매체의 도용이나 위조 또는 변조를 방지하기 위하여 충분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③ 이용자는 단말기, 앱, 비밀번호, 서비스 내 화면 등의 접근 매체를 스스로의 책임 하에 관리하여야 하며, 접근 매체의 훼손·분실·도난·유출되는 등의 사고가 발생하는 경우, 이용자는 즉시 그 사실을 대한변호사협회에 통지하여야 한다.

④ 이용자는 서비스를 이용할 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1. 서비스에 장애나 중단을 초래할 수 있는 일체의 행위
2. 모바일 신분증 및 이용기관의 지적재산권, 인격권 등 일체의 권리를 침해하는 행위
3. 모바일 신분증 또는 이용기관이 제공하는 정상적인 용도 이외의 방법이나 부당한 방법으로 서비스를 이용하는 행위
4. 신분증 신청 및 발급 시 허위 사실을 기재하거나, 다른 사람의 정보를 도용하여 부정하게 사용하는 행위
5. 자기 또는 타인에게 재산상의 이익을 주거나 타인에게 손해를 가할 목적으로 서비스를 이용하는 행위
6. 앱의 내용을 수정·변경하거나 리버스 엔지니어링, 디컴파일 또는 디어셈블 등 본래의 목적에 벗어난 변형, 소스 코드 분석 등의 행위
7. 서비스 또는 서비스를 통해 바이러스, 기타 악성 소프트웨어, 코드 등을 배포하는 행위
8. 서비스에 대한 기술적 보호조치를 회피 또는 무력화하는 행위
9. 기타 모바일 신분증 또는 이용기관이 제시한 지침 및 관계 법령에서 금지하는 행위 또는 사회상규, 미풍양속에 반하는 행위

⑤ 이용자가 본 조항을 명백히 위반하였다고 판단되는 경우, 협회는 이용자의 계정을 중지하거



나 서비스 이용을 제한할 수 있으며, 모든 또는 일부의 서비스 이용을 거절할 수 있다.
제8조 [시행세칙] 이 규정을 시행하는 데 필요한 사항은 변호사신분증지침으로 정한다.

부 칙 (2024. 9. 9.)

- ① [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② [경과조치] 이 규정의 모바일 신분증은 2011. 3. 17. 이후 발급된 신분증부터 적용한다.



모바일 외국법자문사 신분증 규정

2025. 1. 7.

규정 188호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외국법자문사신분증규칙에 의하여 외국법자문사의 신분을 표시하는 외국법자문사신분증(이하 “신분증”이라 한다) 중 모바일 외국법자문사 신분증(이하 “모바일 신분증”이라 한다)의 제작 및 발급, 확인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모바일 신분증”이라 함은 외국법자문사신분증규칙 제2조에 따라 신분증을 발급받은 사람에게 대한변호사협회장이 나의 변호사 어플리케이션(이하 “나의 변호사”라 한다)을 통해 본인의 스마트폰에 발급하는 전자적 방식의 신분증을 말한다.
2. “모바일 신분증 서비스”라 함은 모바일 신분증을 필요에 따라 온라인 및 오프라인을 통해 이용기관에서 본인 확인 등에 사용할 수 있는 서비스를 말한다.
3. “이용기관”이라 함은 모바일 신분증이 제공하는 검증소프트웨어를 해당기관의 시스템, 웹사이트 등에 설치하는 등 모바일 신분증 이용자(이하 “이용자”라 한다)가 시스템 등 이용 시 모바일 신분증으로 본인 확인 등을 할 수 있도록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을 말한다.

제3조 [발급권자 및 발급] ① 모바일 신분증의 발급권자는 대한변호사협회장으로 하며, 발급 대상은 외국회원에 한한다.

② 대한변호사협회장은 나의 변호사를 통해 모바일 신분증 발급한다.

③ 대한변호사협회장은 협회의 신분증 정보를 이용하여 모바일 신분증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제4조 [기재사항] ① 모바일 신분증에는 이 회의 명칭, 회원의 성명, 원자격국명, 등록번호, 사진, 그 밖에 외국법자문사신분증규칙으로 정하는 사항이 각 표시되어야 한다.

② 외국법자문사가 외국법자문사신분증규칙 제5조 제1항의 사유로 신분증을 재발급받아 기재사항이 변경되는 경우, 협회는 모바일 신분증의 기재사항도 동일하게 변경한다.

제5조 [모바일 신분증의 이용 및 효력] ① 이용자는 모바일 신분증을 이용기관에서 신원 또는 자격 확인, 모바일 신분증 정보 제출을 통한 간편 인증 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

② 모바일 신분증은 신분증과 동일한 효력을 갖는다. 다만, 나의 변호사를 통해 구현되지 않거



나 다른 이동통신단말장치로 촬영 또는 화면 캡처본은 신분증으로 인정되지 않는다.

제6조 [모바일 신분증의 이용 제한, 정지, 폐기] ① 협회는 다음 각 호의 경우 이용자에게 발급된 모바일 신분증 이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제한할 수 있다.

1. 이용자의 사망, 구속 등으로 신원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
2. 이용자가 부정한 방법으로 신분증을 발급받거나 사용한 사실을 인지한 경우
3. 이용자의 신분증이 부정하게 사용된 사실을 인지한 경우
4. 서비스와 관련된 보안절차나 이용자의 전자서명 신원정보 유출과 같은 보안상의 이유로 기 발급된 신분증의 이용 제한이 필요한 경우
5. 전시, 사변, 천재지변 또는 이에 준하는 비상사태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6. 협회에 신분증 또는 휴대폰의 도난·분실신고가 접수된 경우
7. 기타 서비스의 안전성과 신뢰성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② 협회는 다음 각 호의 경우 이용자에게 발급된 모바일 신분증을 폐기한다.

1. 이용자가 외국법자문사 자격승인취소 또는 등록취소의 처분을 받아 그 처분이 확정된 경우
2. 이용자가 외국법자문사 등록 갱신을 하지 아니하고 등록의 유효기간이 만료된 경우

③ 정직 또는 업무정지의 처분을 받아 그 기간 중에 있는 외국법자문사의 모바일 신분증의 사용은 정지한다.

제7조 [이용자의 의무] ① 이용자는 단말기, 앱, 비밀번호, 서비스 내 화면 등의 접근 매체를 제3자에게 대여하거나 사용 위임, 양도 또는 담보 목적으로 제공할 수 없다.

② 이용자는 단말기, 앱, 비밀번호, 서비스 내 화면 등의 접근 매체를 제3자에게 누설 또는 노출하거나 방치하여서는 안 되며, 접근 매체의 도용이나 위조 또는 변조를 방지하기 위하여 충분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③ 이용자는 단말기, 앱, 비밀번호, 서비스 내 화면 등의 접근 매체를 스스로의 책임 하에 관리하여야 하며, 접근 매체의 훼손·분실·도난·유출되는 등의 사고가 발생하는 경우, 이용자는 즉시 그 사실을 대한변호사협회에 통지하여야 한다.

④ 이용자는 서비스를 이용할 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1. 서비스에 장애나 중단을 초래할 수 있는 일체의 행위
2. 모바일 신분증 및 이용기관의 지적재산권, 인격권 등 일체의 권리를 침해하는 행위
3. 모바일 신분증 또는 이용기관이 제공하는 정상적인 용도 이외의 방법이나 부당한 방법으로 서비스를 이용하는 행위
4. 신분증 신청 및 발급 시 허위 사실을 기재하거나, 다른 사람의 정보를 도용하여 부정하게 사용하는 행위



5. 자기 또는 타인에게 재산상의 이익을 주거나 타인에게 손해를 가할 목적으로 서비스를 이용하는 행위
 6. 앱의 내용을 수정·변경하거나 리버스 엔지니어링, 디컴파일 또는 디어셈블 등 본래의 목적에 벗어난 변형, 소스 코드 분석 등의 행위
 7. 서비스 또는 서비스를 통해 바이러스, 기타 악성 소프트웨어, 코드 등을 배포하는 행위
 8. 서비스에 대한 기술적 보호조치를 회피 또는 무력화하는 행위
 9. 기타 모바일 신분증 또는 이용기관이 제시한 지침 및 관계 법령에서 금지하는 행위 또는 사회상규, 미풍양속에 반하는 행위
- ⑤ 이용자가 본 조항을 명백히 위반하였다고 판단되는 경우, 협회는 이용자의 계정을 중지하거나 서비스 이용을 제한할 수 있으며, 모든 또는 일부의 서비스 이용을 거절할 수 있다.

제8조 [시행세칙] 이 규정을 시행하는 데 필요한 사항은 지침으로 정한다.

부 칙 (2025. 1. 7.)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대한변호사협회기및변호사배지등에관한규칙

1986. 6. 22.

규칙 제23호

개정 2009. 2. 26.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대한변호사협회(이하 “협회”라 한다)를 상징하는 협회기 및 휘장에 관한 사항과 변호사배지의 제식 및 패용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협회기의 제식 등] 협회기의 제식 및 모양은 [별표 1]과 같이 한다.

제3조 [게양] ① 협회기는 회관건물 및 협회장 집무실에 게양한다.

② 국기와 같이 게양할 때에는 협회기를 국기의 왼편에 게양한다.

제4조 [관리] 협회기의 관리는 국기의 관리방법을 준용한다.

제5조 [협회기에 대한 예의] 협회기에 대한 예의는 주목만으로 한다.

제6조 [협회휘장 및 변호사배지의 제식 등] ① 협회휘장의 제식 및 모양은 [별표 2]와 같이 하고, 협회 발신문서, 철인 등에 사용한다.

② 변호사배지의 제식 및 모양은 [별표 3]과 같이 한다.

③ <삭제> (2009. 2. 26.)

제7조 [배지 저작권] ① 변호사배지는 협회가 제작한다.

② 협회 회원의 신청에 따라 금제변호사배지를 제작하여 교부할 수 있다. 금제변호사배지의 제식과 모양은 몸체의 재료를 금으로 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제6조제2항의 그것과 같이 한다.

제8조 [배지의 교부] ① 변호사배지는 협회가 변호사개업신고를 수리하였을 때에 소속 지방변호사회를 통하여 변호사에게 교부한다.

② 배지는 타인에게 양도 또는 대여하지 못하며, 분실 또는 훼손하였을 때에는 사유를 신고하고 재교부를 받아야 한다.

③ 회원이 2개 이상의 변호사배지가 필요한 경우에는 그 사유를 신고하고 이를 교부받을 수 있다.

④ 제2항 및 제3항의 경우와 제7조제2항에 의한 금제배지의 교부를 받을 때에는 그 비용을 납부하여야 한다.

제9조 [패용] ① 변호사가 변호사업무수행 중 또는 기타의 경우 그 신분표시를 필요로 할 때에는 이 규칙에 정한 변호사배지를 패용하여야 한다.

② 변호사배지는 좌측 옷깃에 패용한다.

③ <삭제> (2009. 2. 26.)



부 칙 (1986. 2. 22.)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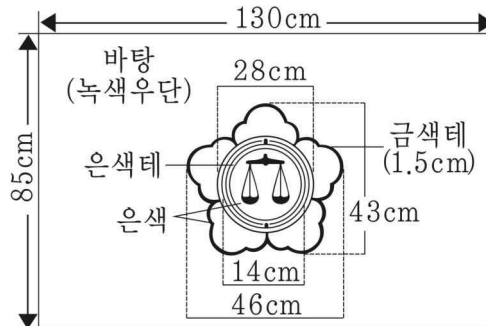
부 칙 (2009. 2. 26.)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별표 1

협회기의 제식과 모양



별표 2

협회회장의 제식과 모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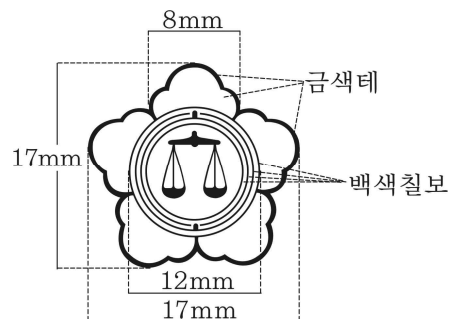
철인 : 발신문서에 사용되는 회장의 크기는 그 문서의 크기에 알맞게 확대 또는 축소한 크기로 제작 사용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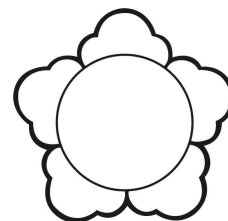
별표 3 (개정 2009. 2. 26)

변호사배지의 제식과 모양

(전면)



(후면)





합작법무법인 설립 등에 관한 규칙

2024. 1. 22.

규칙 제44호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회칙 제40조의5에 따라 외국법자문사법(이하 “법”이라 한다)에 의하여 설립된 합작법무법인의 설립인가, 변경인가 및 각종 신고에 관한 기준과 절차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설립인가신청] ① 법 제35조의2에 따라 합작참여자가 합작법무법인을 설립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정관준칙에 준하여 정관을 작성하고 그 설립인가신청서류 3통을 예정된 주사무소 소재지의 지방변호사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지방변호사회가 제1항의 서류를 받은 때에는 그 1통을 보관하고 나머지 2통에 경유사실을 증명하여 지체 없이 이 회에 전달하여야 한다.

제3조 [심사와 의견제출] ① 이회는 제2조 제2항에 의하여 전달된 합작법무법인의 설립인가신청이 법, 법시행령 또는 법무부장관이 정하는 설립인가 기준에 합당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이회의 의견을 첨부하여 그 인가신청서류를 법무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이회는 제2조 제2항에 의하여 전달된 인가신청서류에 기재사항의 흠결이 있거나 첨부서류의 미비가 있는 때에는 경유한 지방변호사회를 거쳐 그 신청인에게 보완을 명할 수 있다.

③ 이회는 제2조 제2항에 의하여 전달된 합작법무법인의 설립인가신청이 법, 법시행령 또는 법무부장관이 정한 설립인가 기준에 합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할 때에도 이회의 의견을 첨부하여 법무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이회가 합작법무법인의 설립인가신청서류를 심사함에 있어서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회원위원회의 심의에 부쳐 필요한 사실과 증거를 조사하게 할 수 있다.

제4조 [기타 인가신청] ① 합작법무법인은 법 제35조의3에 의한 정관 변경이 있는 때에는 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인가신청서류 3통을 소속 지방변호사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2조 제2항 및 제3조의 규정은 제1항의 경우에 준용한다.

제5조 [신고] 합작법무법인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그 때부터 7일 이내에 소속 지방변호사회를 거쳐 이 회에 그 사유를 신고하여야 한다.

1. 설립인가를 받아 설립등기를 마친 때
2. 법 제35조의5 제2항에 정한 등기사항에 관하여 변경등기를 마친 때
3. 개업 또는 사업소를 이전하거나 분사무소를 설치한 때
4. 정관변경의 인가를 받은 때
5. 선임변호사 및 선임외국법자문사의 변경이 있는 때



6. 선임변호사 아닌 소속변호사 및 선임외국법자문사 아닌 소속외국법자문사의 채용 또는 변경이 있는 때
7. 주사무소 또는 분사무소에 주재하거나 직무를 행할 선임변호사 및 선임외국법자문사 또는 소속변호사 및 소속외국법자문사의 변동이 있는 때
8. 징계 또는 설립인가의 취소를 받은 때
9. 해산한 때

제6조 [명부의 비치] 이 회에 합작법무법인 명부를 비치하고, 제5조에 의한 각종 신고사항 및 기타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다.

제7조 [시행세칙] 이 규칙을 시행하는 데 필요한 사항은 규정으로 정한다.

부 칙 (2024. 1. 22.)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1호 서식

합작법무법인 정관준칙

합 작 법 무 법 인 정 관

제 1 장 총 칙

제1조 [명칭] 이 법인은 합작법무법인 ○○이라 한다.

제2조 [목적] 이 법인은 다음의 업무를 행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외국법자문사의 직무에 속하는 업무
2. 외국법자문사법 제35조의19에 따른 업무
3. 위 각 호에 부대되는 일체의 업무

제3조 [사무소의 소재지] ① 이 법인의 주사무소는 ○○○○에 둔다.

② (갑) 이 법인은 다음의 분사무소를 둔다.

1. ○○분사무소 ○○시
2. ○○분사무소 ○○시

(을) 이 법인은 필요에 따라 이 정관을 변경하고 법무부장관의 인가를 얻어 필요한 곳에 분사무소를 둘 수 있다.

제4조 [존립시기] 이 법인은 설립등기일부터 만○○년간 존립한다. 다만, 합작참여자회의의 결의로 그 기간을 연장 또는 단축할 수 있다.

제 2 장 구성원과 출자

제5조 [합작참여자] ① 전체 합작참여자의 명칭과 등록번호는 다음과 같다.

명칭 등록번호

○○ △△△△

명칭 등록번호

○○ △△△△

② 각 합작참여자의 주사무소 주소는 다음과 같다.

- ○○○○○○○○○○

- △△△△△△△△△



제6조 [출자] 각 합작참여자가 출자할 출자의 목적, 가액, 평가기준 및 지분은 다음과 같다. 다만, 출자의 목적인 노무는 변호사 및 외국법자문사로서의 계속적인 정신적·육체적 노무를 말한다.

합작참여자	목 적	가 액	평가기준	출자치분
○ ○ ○	금전	원	원	%
○ ○ ○	노무	해당없음	원	%
○ ○ ○	금전	원	원	%
○ ○ ○	노무	해당없음	원	%
○ ○ ○	노무	"	원	%
○ ○ ○	노무	"	원	%
○ ○ ○	노무	"	원	%
합 계	금전	원	원	100%

제7조 [지분의 양도] 합작참여자는 그 지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다른 모든 합작참여자의 동의 없이 타인에게 양도할 수 없다.

제 3 장 합작참여자회의

제8조 [구성] 합작참여자회의(합작참여자를 대표하는 자들로 구성된 회의)는 모든 합작참여자로 구성한다.

제9조 [권한] 합작참여자회의는 다음 사항을 결의한다.

1. 정관의 변경
2. 합작참여자의 가입, 탈퇴 및 그 밖의 변경
3. 출자치분의 양도에 관한 승인
4. 대표의 선임 및 해임
5. 대표 및 선임변호사(선임외국법자문사)의 보수결정
6. 분사무소 주재 선임변호사(선임외국법자문사)의 결정
7. 계산서류의 승인
8. 법인의 해산
9. 해산에 따른 청산인의 선임, 해임 및 잔여재산의 처분
10. 기타 법인의 운영에 관한 중요 사항

제10조 [소집] ① 합작참여자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한다.

② 정기회는 매결산기 종료 후 2월 이내에 소집하고, 임시회는 필요에 따라 수시 소집한다.

③ 합작참여자회의는 대표가 소집한다. 다만, 선임변호사(선임외국법자문사) ○분의 ○ 이상이 회의의 목적사항을 명시하여 임시회의 소집을 요구하면 대표는 ○일 이내에 이를 소집하여야 한다.

제11조 [결의방법] ① 합작참여자회의는 총의결권의 과반수로 의결한다.

② 합작참여자는 다른 합작참여자로 하여금 그 의결권을 대리행사하게 할 수 있다.

제12조 [의결권] 각 합작참여자는 그 지분의 비율에 따라 의결권을 가진다.

제13조 [회의] ① 합작참여자회의의 의장은 대표가 된다.

② 합작참여자회의의 의사에 관하여는 의사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의사록에는 의사의 경과요령과 그 결과를 기재하고, 의장과 출석한 구성원이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제 4 장 업무집행과 법인대표

제14조 [담당변호사 또는 담당외국법자문사의 지정] ① 이 법인이 외국법자문사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35조의20에 의하여 법인 명의로 업무를 수행하며 그 업무를 담당할 변호사 또는 외국법자문사(이하 “담당변호사” 또는 “담당외국법자문사”라 한다)를 지정할 때에는 대표가 그 취지를 기재한 서면을 작성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담당변호사 또는 담당외국법자문사는 지정된 업무의 집행에 한하여 이 법인을 대표한다.

제15조 [대표] ① 이 법인에 대표 1인을 둔다.

② 대표는 합작참여자회의의 결의로 선임변호사 또는 선임외국법자문사 중에서 선임한다.

③ 대표는 이 법인을 대표하고 일체의 업무를 통할한다.

④ 대표 유고 시에는 대표가 미리 지정한 선임변호사 또는 선임외국법자문사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⑤ 대표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합작참여자회의의 결의로 연임할 수 있다.

제16조 [보고업무] 대표는 합작참여자의 요구가 있으면 언제든지 법인의 업무 및 재산상태를 보고하여야 한다.

제17조 [보수] 대표와 업무를 담당하는 선임변호사(선임외국법자문사)의 보수는 합작참여자회의의 결의로 정한다.

제18조 [분사무소 주재 변호사 및 외국법자문사] ① 분사무소에는 선임변호사 및 선임외국법자문사가 각각 1명 이상 주재하여야 한다.

② 분사무소에 주재할 선임변호사(선임외국법자문사)는 합작참여자회의의 결의로 정한다.



제 5 장 합작참여자의 가입 및 탈퇴

제19조 [가입] ① 합작참여자의 신규가입은 합작참여자 전원의 동의를 받은 후 법무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② 합작참여자가 새로 가입한 때에는 법 제35조의8의 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제20조 [탈퇴] ① 합작참여자는 언제든지 임의로 탈퇴할 수 있다. 다만, 6월 전에 그 뜻을 법인에 예고하여야 한다.

② 합작참여자는 법 제35조의10 제2항에서 제3항의 사유가 발생한 때 외에 법원으로부터 제명의 선고가 있는 때에는 당연히 탈퇴한다.

제21조 [제명의 선고] 합작참여자에게 다음의 사유가 있는 때에는 법인은 합작참여자회의의 결의에 의하여 그 합작참여자의 제명의 선고를 법원에 청구할 수 있다.

1. 출자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
2. 법 제35조의22에 위반한 때
3. 법인의 업무집행 또는 대표에 관하여 부정한 행위가 있는 때
4. 권한 없이 업무를 집행하거나 법인을 대표한 때
5. 기타 중요한 사유가 있는 때

제22조 [지분의 환급] (갑) 재산을 출자의 목적으로 한 합작참여자가 탈퇴한 때에는 탈퇴일 현재 법인재산에 그 합작참여자의 지분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환급받을 권리가 있다. 다만, 노무 또는 신용을 출자의 목적으로 한 합작참여자가 탈퇴한 때에는 그 지분의 환급을 받을 수 없다.

(을) 합작참여자가 탈퇴한 때에는 탈퇴일 현재의 법인재산에 그 합작참여자의 지분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환급받을 권리가 있다.

제 6 장 계 산

제23조 [영업연도] 이 법인의 영업연도는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제24조 [계산서류의 승인] 대표는 매영업연도 말에 다음 서류를 합작참여자회의에 제출하고 그 승인을 받아야 한다.

1. 재산목록
2. 대차대조표
3. 영업보고서
4. 손익계산서
5. 손익금처분에 관한 의안
6. 이익배당에 관한 의안

제25조 [손익계산] 이 법인의 손익계산은 영업연도의 총익금에서 총손금을 공제한 차액을 수익금으로 하고, 총손금에서 총익금을 공제한 차액을 결손금으로 한다.

제26조 [배당] ① 이 법인은 수익금으로 결손금을 충당한 후가 아니면 합작참여자에게 이익금 배당을 할 수 없다.

② 이 법인의 합작참여자는 법인의 결손금이 발생한 경우에는 어떠한 명목으로든지 법인으로부터 배당을 받을 수 없다.

제27조 [배당비율] 각 합작참여자의 이익배당은 출자지분의 비율에 따른다.

제 7 장 해산 및 청산

제29조 [해산사유] 이 법인은 다음의 사유로 해산한다.

1. 제4조에 정한 존립시기의 도래
2. 합작참여자 전원의 동의
3. 파산
4. 설립인가의 취소
5. 인가 유효기간 만료 후 인가 갱신을 받지 못한 때

제30조 [재산처분] 법인이 해산한 경우 법인의 재산은 합작참여자회의의 결의로 정한 방법에 따라 이를 처분한다.

제31조 [청산인의 임면] 청산인의 선임 및 해임은 합작참여자회의의 결의로 한다.

제32조 [잔여재산의 배분] 법인의 잔여재산은 각 합작참여자의 출자지분비율에 따라 배분한다.

위 합작법무법인 ○ ○ 을 설립하기 위하여 정관을 작성하고, 각 합작참여자가 기명날인한다.

합작법무법인 ○ ○

합작참여자

합작참여자



변호사징계규칙

1993. 5. 24.

규칙 제25호

개정 1996. 6. 17. 1998. 6. 8.
2000. 7. 3. 2001. 10. 29.
2002. 11. 25. 2003. 10. 27.
2006. 2. 20. 2007. 2. 26.

전부개정 2007. 7. 23.

개정 2010. 2. 8. 2012. 2. 20.
2013. 2. 25. 2014. 2. 24.
2014. 10. 13. 2018. 2. 26.
2021. 2. 22. 2024. 1. 22.

제 1 장 통 칙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변호사법」 및 대한변호사협회 회칙에 의하여 대한변호사협회변호사징계위원회 및 조사위원회의 설치·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과 「변호사법」 제98조의5 제4항에 따른 징계처분의 공개범위 및 시행방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대한변호사협회변호사징계위원회의 구성] ① 대한변호사협회변호사징계위원회(이하 “징계위원회”라 한다)는 판사 1인, 검사 1인, 변호사 3인, 변호사가 아닌 법학 교수 1인 및 경험과 덕망이 있는 자 3인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같은 자격의 예비위원을 동수로 둔다. (개정 2018. 2. 26.)

② 판사 1인과 변호사가 아닌 경험과 덕망이 있는 자 1인 및 예비위원은 법원행정처장의, 검사 1인과 변호사가 아닌 경험과 덕망이 있는 자 1인 및 예비위원은 법무부장관의 각 추천을 받아 협회장이 위촉하며, 변호사인 위원 및 예비위원은 총회에서 선출하고, 법학 교수 및 경험과 덕망이 있는 자인 위원 및 예비위원은 협회장이 상임이사회의 심의를 거쳐 위촉한다. (개정 2018. 2. 26.)

③ 판사, 검사, 변호사인 위원 및 예비위원은 변호사자격을 취득한 때부터 10년을 경과한 자이어야 하며, 변호사인 위원 및 예비위원은 변호사로서 5년 이상 개업한 경력이 있어야 한다.

④ 위원장은 변호사인 위원 중에서 협회장이 추천한 위원 중에서 선임한다.

⑤ 위원장, 위원 및 예비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보선된 위원장, 위원 및 예비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⑥ 위원장, 위원 및 예비위원에 결원이 생겼을 때에는 조속히 위촉하거나 선출하여야 한다.

⑦ 위원이 사고, 결원, 제척, 기피, 회피 등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같은 자격으로 위촉된 예비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판사, 검사, 변호사인 예비위원의 직무대행 순서는 위원장이 지정한다. (개정 2014. 10. 13.)



제3조 [제척, 기피, 회피] ① 위원장·위원 및 예비위원은 자기 또는 8촌 이내의 혈족이나 4촌 이내의 인척 및 배우자에 관한 징계혐의사건, 조사위원회에 관여한 사건 및 지방변호사회의 징계혐의자에 대한 조사에 관여한 사건의 심사에서 제척된다.

② 위원장·위원 및 예비위원에 관하여 심사의 공정성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는 때에는 징계개시청구를 받은 자(이하 “징계혐의자”라 한다)는 기피의 신청을 할 수 있다. 이 경우에 징계위원회는 지체 없이 결정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사유가 있을 때에는 위원장·위원 및 예비위원은 회피할 수 있다. 회피의 신청이 있을 때에는 징계위원회는 지체 없이 결정하여야 한다.

제4조 [징계위원회의 기구와 직무] ① 위원장은 징계위원회를 대표하며 징계위원회의 업무를 통할한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을 선출할 당시, 그 위원장이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그 직무를 대행할 위원 2인을 순위를 정하여 결정한다. 위원장과 그 대행자로 지명된 자가 모두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위원회는 의결로써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할 자를 정한다.

③ 징계위원회에 간사 1인과 서기 약간인을 둔다.

④ 간사는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서기는 협회장이 사무국의 직원 중에서 임명한다.

⑤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징계위원회의 심의에 참여하여 의사록 등을 작성하며 서기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심의에 관한 서류의 작성, 송달 기타 사무를 처리한다.

제5조 [주임징계위원의 지명] ① 징계위원장은 필요한 때에는 징계사건에 대한 심사를 담당하게 하기 위하여 주임징계위원을 지명할 수 있다.

② 주임징계위원은 징계사건에 관하여 심사기일을 지정하여 혐의사실에 대한 심사를 한 후 심사조서를 징계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 주임징계위원은 지정받은 징계사건의 심사에 관하여 위원장의 권한을 행사할 수 있다.

④ 제26조의 규정은 주임징계위원의 심사에 준용한다.

제6조 [징계위원회의 소집] ① 징계위원회는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협회장 또는 위원 2인 이상의 소집요구가 있을 때에는 위원장은 징계위원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제7조 [비용부담] 징계위원회는 징계결정을 받은 자에 대하여 심의에 소요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게 할 수 있다.

제8조 [수당] 협회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심사에 관여한 위원장·위원 및 예비위원에게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 2 장 징계사유와 징계개시청구

제9조 [징계사유] 변호사에 대한 징계사유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변호사의 직무와 관련하여 2회 이상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아(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경우를 포함한



- 다) 그 형이 확정된 경우(과실범의 경우를 제외한다)
2. 이 규칙에 의하여 2회 이상 정직이상의 징계처분을 받은 후 다시 제3호 내지 제5호의 징계사유가 있는 자로서 변호사의 직무를 수행함이 현저히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 변호사법에 정한 의무를 위반한 경우
 4. 협회 또는 소속 지방변호사회의 회칙에 정한 의무를 위반한 경우
 5. 직무의 내외를 불문하고 변호사로서의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한 경우
 6. 이 규칙에 의하여 출석, 경위서 및 소명자료제출 등의 요구를 받고도 2회 이상 불응한 경우
- 제10조 [징계개시의 청구] 협회장은 변호사에게 제9조의 징계사유가 있다고 판단하는 때에는 징계위원회에 대하여 징계개시청구(이하 “징계청구”라 한다)를 하여야 한다.
- 제11조 [징계개시의 신청] ① 지방검찰청 검사장이 검찰업무수행중 변호사에게 징계사유가 있는 것을 발견한 때에는 협회장에게 해당 변호사에 대한 징계개시신청을 하여야 한다.
- ② 지방변호사회장이 소속변호사에게 징계사유가 있는 것을 발견한 때에도 제1항과 같다.
- ③ 법조윤리협의회 위원장이 공직퇴임변호사 또는 특정변호사에게 징계사유가 있는 것을 발견한 때에도 제1항과 같다.
- 제12조 [징계개시의 청원 및 재청원] ① 의뢰인 또는 의뢰인의 법정대리인·배우자·직계친족 또는 형제자매는 수임변호사 또는 법무법인 [「변호사법」 제58조의2 규정에 따른 법무법인(유한) 및 제58조의18의 규정에 따른 법무조합을 포함한다]의 담당변호사에게 징계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소속 지방변호사회장에게 해당 변호사에 대한 징계개시의 신청을 청원할 수 있다.
- ② 지방변호사회장은 제1항의 청원이 있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징계개시의 신청 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와 이유의 요지를 청원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③ 청원인은 지방변호사회장이 제1항의 청원을 기각하거나 청원이 접수된 날부터 3월이 경과하여도 징계개시의 신청 여부를 결정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협회장에게 재청원할 수 있다. 이 경우 재청원은 제2항의 규정에 따른 통지를 받은 날 또는 청원이 접수되어 3월이 경과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 제13조 [진정 등] ① 변호사로 하여금 징계를 받게 할 목적으로 제기되는 진정, 고발, 고소 등은 그 명칭을 불문하고 제12조의 규정에 따른 징계개시 신청의 청원으로 본다.
- ② 협회가 전항의 진정, 고발, 고소 등을 접수한 경우에는 이를 소속 지방변호사회에 이첩하여야 한다.
- ③ 제12조 제3항의 기간은 소속 지방변호사회에 이첩이 완료된 날부터 기산한다.
- 제14조 [협회장의 결정] ① 협회장은 제11조의 규정에 따른 징계개시의 신청이 있거나 제12조 제3항의 규정에 따른 재청원이 있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징계청구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 ② 협회장은 징계청구 여부를 결정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조사위원회로 하여금 징계혐의사실에 대하여 조사하도록 할 수 있다.
- ③ 협회장은 제1항의 결정을 한 때에는 지체 없이 그 결과와 이유를 징계개시 신청인(징계개시를 신청한 법조윤리협의회 위원장 또는 지방검찰청 검사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 또는 재청원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15조 [이의신청] ① 징계개시 신청인은 협회장이 징계개시의 신청을 기각하거나 징계개시의 신청이 접수된 날부터 3월이 경과하여도 징계개시의 청구 여부를 결정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징계위원회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이의신청은 제14조 제3항의 규정에 따른 통지를 받은 날 또는 징계개시의 신청이 접수되어 3월이 경과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② 징계위원회는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이의신청이 이유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징계절차를 개시하여야 하며, 이유 없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이의신청을 기각하여야 한다.

③ 징계위원회는 제2항의 결정을 한 때에는 지체 없이 그 결과와 이유를 이의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16조 [징계청구절차] ① 징계청구를 할 때에는 징계혐의자의 인적사항, 징계혐의사실 등을 기재한 징계개시청구서와 부분 10통 및 조사위원회의 조사기록 또는 지방변호사회장이나 지방검찰청 검사장의 징계개시신청서를 징계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협회장은 징계청구를 한 때에는 징계혐의자와 소속 지방변호사회장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③ 협회장은 국가기관의 통보에 의한 변호사의 징계혐의사실에 대하여 징계청구 여부를 결정하였을 때에는 이를 즉시 당해 국가기관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④ 징계사유가 있는 날부터 3년을 경과한 때에는 징계청구를 하지 못한다.

제 3 장 징계위원회의 심의절차

제17조 [징계개시의 통지] ① 징계위원회는 징계청구가 있는 경우 즉시 징계혐의자에게 징계개시통지서와 징계개시청구서 부분 1통을 송달하고, 제15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징계절차를 개시한 때에는 즉시 징계혐의자에게 징계개시통지서와 이의신청 결정문 등본 1통을 송달하여야 한다. (개정 2013. 2. 25.)

② 징계개시통지서에는 심의기일에 출석하여 진술할 수 있고, 증거자료 등을 제출할 수 있으며, 특별변호인을 선임할 수 있음과 심시기일의 공개를 신청할 수 있음을 기재하여야 한다.

제18조 [징계결정기간] 징계위원회는 징계청구가 있거나 제15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징계절차를 개시한 날부터 6월 이내에 징계에 관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6월에 한하여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19조 [심의의 정지] 징계위원회는 징계혐의자가 징계청구된 징계혐의사실로 공소제기되어 있을 때에는 그 사건이 확정될 때까지 심의절차를 정지한다. 다만 공소의 제기가 있는 경우로서 징계사유에 관하여 명백한 증명자료가 있거나 징계혐의자의 심신상실·질병 등의 사유로 형사재판절차가 진행되지 아니할 때에는 징계심의를 진행할 수 있다.

제20조 [심의기일의 통지] ① 징계위원회는 징계혐의자에게 심의기일의 일시·장소를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심의기일에 출석한 징계혐의자에게는 고지할 수 있다.

② 징계위원회는 징계청구가 징계개시 신청인의 신청에 의한 것일 때에는 당해 징계개시 신청인에게도 제1항의 통지를 하여야 한다.

③ 최초 심의기일의 통지는 그 기일의 7일 전까지 통지서를 송달하여야 한다.

제21조 [심의기일의 비공개] ① 심의기일은 공개하지 아니한다. 다만 징계위원회는 상당하다고 인정하는 자의 방청을 허가할 수 있다.

② 징계혐의자가 공개신청을 한 때에는 공개한다.

제22조 [사건의 병합·분리] 징계위원회는 필요한 때에는 징계혐의자의 의견을 들어 수개의 징계혐의사건의 심의를 병합하거나 분리할 수 있다.

제23조 [징계혐의자의 출석의무] ① 징계혐의자는 심의기일에 출석하여야 한다.

② 징계위원회는 징계혐의자나 그 특별변호인이 심의기일에 출석하지 않는 경우에도 심의절차를 진행하고 심의를 종결할 수 있다.

제24조 [특별변호인] ① 징계혐의자는 변호사 또는 학식과 경험이 있는 자를 특별변호인으로 선임하여 사건에 대한 보충진술과 증거제출을 하게 할 수 있다.

② 특별변호인은 징계혐의자를 위하여 독립하여 이 규칙이 정한 행위를 할 수 있다.

제25조 [징계혐의자 등의 진술 및 증거제출] ① 징계혐의자는 심의기일에 출석하여 구술 또는 서면으로 진술할 수 있고, 증거서류나 증거물을 제출할 수 있으며, 징계에 관한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다만 징계위원회가 그 제출기한을 정한 때에는 그 기한 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징계혐의자는 참고인의 심문, 검증 등의 증거방법을 제출할 수 있다.

③ 협회장은 직접 또는 대리인을 통하여 구술 또는 서면으로 징계혐의사건에 대한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④ 징계개시 신청인의 신청에 따라 징계청구된 사건에 관하여는 당해 징계개시 신청인은 제3항의 방법으로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제26조 [징계위원회의 심의방법] ① 징계위원회는 직권 또는 징계혐의자의 신청에 의하여 징계혐의자를 심문할 수 있고 참고인에게 사실의 진술이나 감정을 요구할 수 있다.

② 징계위원회는 직권 또는 신청에 의하여 필요한 물건이나 장소에 대한 검증을 할 수 있고 서류 기타의 물건의 소지인에게 그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③ 징계위원회는 필요한 때에는 직권으로 징계혐의사실에 대한 조사를 담당할 자를 소환하여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④ 징계위원회는 필요한 때에 국가기관 등에 대하여 사실조회를 할 수 있다.

⑤ 징계위원회의 위원장은 출석한 징계혐의자 및 선임된 특별변호인에게 최종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제27조 [서류의 열람] 징계혐의자는 심의기록과 증거물 등을 열람 또는 등사할 수 있다.

제28조 [심의기일조서 등] ① 심의기일에는 심의조서를 작성하여야 하며, 조서에는 위원장과 간사가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여야 한다.

② 조서에는 심의일시·장소, 출석한 위원의 성명, 공개여부, 심의의 경과와 내용 등을 기재하여야 한다.

③ 주임징계위원의 심사기일의 조서에 관하여는 제1항 및 제2항을 준용한다.

제29조 [문서의 송달] 문서의 송달은 우편 또는 모사전송(FAX)의 방법에 의한다.

② <삭제> (2010. 2. 8.)

③ <삭제> (2010. 2. 8.)

제30조 [비밀엄수] ① 위원장·위원·예비위원·간사·서기 등은 징계위원회의 심의나 결정에 관하여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엄수하여야 한다.

② 징계위원 또는 예비위원들은 직무를 수행하기 전에 별지 제1호 서식의 서약서를 징계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24. 1. 22.)

제31조 [결정] ① 징계위원회는 심의를 종료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징계사건에 관하여 결정을 하여야 한다.

② 징계위원회의 징계에 관한 결정은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한다. 다만 과반수의 찬성을 얻은 의견이 없을 때에는 과반수에 달할 때까지 징계혐의자에게 가장 불리한 의견의 수에 순차 유리한 의견의 수를 더하여 그 중 가장 유리한 의견을 합의된 의견으로 한다.

③ 징계위원회는 징계혐의자에게 기본적 인권옹호를 위한 사회공헌활동, 협회 변호사포상규칙에 의한 수상 등 법률문화향상에 기여한 공로가 인정된 때에는 징계양정을 함에 있어 참작할 수 있다. (개정 2014. 2. 24.)

제31조의2 [징계의 감경기준 등] 징계의 감경기준 등은 규정으로 정한다. (신설 2024. 1. 22.)

제32조 [징계결정서의 작성] 징계위원회가 징계에 관하여 결정을 하였을 때에는 징계결정서를 작성하여야 하며, 징계결정서에는 주문과 이유를 기재하고 위원장과 출석한 위원 및 간사가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여야 한다.

제33조 [결정의 통보 및 통지] ① 징계위원회는 결정을 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협회장에게 서면으로 그 결과와 이유를 통보하여야 한다.

② 징계위원회는 지체 없이 결정서를 징계혐의자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③ 징계청구가 징계개시 신청인의 신청에 의한 경우에는 당해 징계개시 신청인에게 징계결정 결과를 통지하여야 한다.

제34조 [이의신청] ① 징계위원회의 결정에 불복이 있는 징계혐의자 및 징계개시 신청인은 제33조의 규정에 따른 송달 또는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협회를 경유하여 법무부변호사징계위원회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② 이의신청인은 징계심의기록과 증거물을 열람·등사할 수 있다.

제35조 [징계결정의 효력발생] 징계결정은 이의신청기간이 만료한 때 또는 법무부변호사징계위원회의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을 송달받은 날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개정 2013. 2. 25.)



제36조 [다른 법률의 준용] 서류의 송달, 기일의 지정이나 변경 및 증인·감정인의 선서와 급여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는 「형사소송법」과 「형사소송 비용 등에 관한 법률」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 4 장 조사위원회의 설치

제37조 [조사위원회의 설치와 구성] ① 협회에 징계혐의사실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기 위하여 조사위원회를 둔다. 다만 협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특별조사위원회를 둘 수 있다. 특별조사위원회의 직무, 설치, 구성, 운영, 조사절차 등의 필요한 사항은 규정으로 정한다.

② 조사위원회는 10인 이상 50인 이내의 조사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8. 2. 26.)

③ 조사위원은 협회장의 추천으로 이사회에서 선출한다.

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⑤ 위원 중 결원이 생긴 때에는 즉시 보선한다. 보선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⑥ 조사위원의 제척·기피·회피에 관하여는 제3조를 준용한다.

제38조 [조사위원회의 직무] ① 조사위원회는 협회장의 요구가 있거나 변호사에게 징계사유에 해당하는 혐의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혐의유무에 대하여 조사를 한 후 그 결과를 협회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삭제> (2014. 10. 13.)

③ 조사위원의 수당 등에 관하여는 제8조를 준용한다.

제39조 [조사위원회의 기구] ① 조사위원회에는 위원장, 부위원장 및 간사 각 1인을 둔다.

② 위원장, 부위원장 및 간사는 조사위원회에서 선출한다.

③ 위원장은 조사위원회를 대표하고 조사위원회의 사무를 통할한다.

④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⑤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한다.

⑥ 조사위원회에는 조사업무를 보조하는 서기 약간인을 둘 수 있다. 서기는 사무국 직원 중에서 지명할 수 있다.

⑦ 제30조 규정은 조사위원회의 위원 및 서기에 준용한다.

제40조 [조사위원회의 운영] ① 조사위원회는 위원장이 소집한다. 다만 위원장이 선출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협회장이 소집한다.

② 위원장은 협회장 또는 위원 3인 이상의 소집요구가 있을 때에는 조사위원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③ 조사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결정한다. (개정 2014. 10. 13.)

④ <삭제> (2014. 10. 13.)

⑤ 협회장은 조사위원회의 결정 또는 결과보고에 대하여 재조사를 요구할 수 있다. (신설 2014. 10. 13.)

제41조 [조사위원회의 조사절차] ① 위원장은 징계혐의가 있다고 인정되거나 제14조제2항의 사유가 있



을 때에는 즉시 조사위원회를 소집하여 징계혐의사실에 대한 조사를 하여야 한다. 만일 변호사법위반 등 범죄혐의가 있는 피조사자가 조사에 불응하거나 허위의 자료를 제출하는 때에는 위원장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수사기관에 고발하거나 수사의뢰할 것을 협회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② 조사위원회는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기관·단체 등에 대하여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당사자 또는 관계인을 면담하여 사실에 관한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③ 조사위원회는 징계혐의사실에 대한 조사를 한 후 그 결과를 조사기록과 함께 협회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④ 조사위원회는 징계위원회로부터 징계혐의사실에 대한 조사 요청을 받은 경우 이를 조사하여 그 결과를 징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신설 2014. 10. 13.)

⑤ 조사위원회의 징계혐의사실에 대한 조사절차와 방법에 관해서는 징계위원회의 심사절차와 방법에 관한 제26조 제1항 내지 제4항, 제29조를 준용한다. (개정 2014. 10. 13.)

제41조의2 [징계개시신청서 및 재청원서에 대한 경위서 등의 제출요구 등] ① 조사위원회는 협회장으로부터 변호사법 제89조의4 제4항, 제89조의5 제3항, 제89조의6 제5항, 동법 제97조의2, 이 규칙 제11조에 의한 징계개시 신청에 대한 조사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징계개시 신청서의 부분을 첨부하여 피신청인에게 경위서 및 소명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14. 10. 13.)

② 조사위원회는 협회장으로부터 변호사법 제97조의3 제3항, 이 규칙 제12조 제3항에 의한 재청원에 대한 조사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재청원서의 부분을 첨부하여 피청원인에게 경위서 및 소명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14. 10. 13.)

③ 피신청인과 피청원인은 조사위원회에 의견서 및 소명자료를 제출할 수 있다. (신설 2014. 10. 13.)

제42조 [주임조사위원의 지정과 조사] ① 조사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위원 1인 또는 수인을 지정하여 징계혐의사실을 조사하게 할 수 있다.

② 주임조사위원의 조사절차와 방법은 제41조에 의한다.

제 5 장 징계의 집행 및 공고

제43조 [징계의 집행] ① 협회장은 징계결정이 효력을 발생하면 즉시 다음 각 호에 정한 방법으로 징계처분을 집행하여야 한다.

1. 제명은 징계혐의자의 변호사등록원부에 그 징계결정의 내용을 기재하여 등록을 취소하고 변호사등록원부를 말소한다.
2. 정직은 징계혐의자의 변호사등록원부에 정직개시일과 정직기일을 명시하여 징계결정의 내용을 기재한다.
3. 과태료는 징계결정의 내용을 변호사등록원부에 기재하고, 협회장이 검사에게 의뢰하여 집행한다.
4. 견책은 협회장이 징계혐의자에게 근신자숙하라는 취지의 문서를 송달하고, 징계결정의 내용을 변호사등록원부에 기재한다.



② 영구제명, 제명 및 정직의 경우의 징계집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따로 규정으로 정한다.

제44조 [보고 및 통지] ① 협회장은 징계처분의 결과를 법무부장관에게 보고하고, 소속 지방변호사회에 통지하여야 한다.

② 협회장은 징계협의자에게 징계의 집행 사실을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제45조 [공고] 협회장은 확정된 징계처분의 내용을 인터넷 홈페이지 및 협회가 발행하는 회지 또는 신문에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2. 2. 20.)

제46조 [공고방법 등의 지정] 협회장은 징계처분의 확정일로부터 2주일 이내에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하고, 해당 징계처분의 확정일 이후 최초로 발간하는 대한변호사협회 발행 정기간행물에 게재하여야 한다. (개정 2012. 2. 20.)

제47조 [공고의 범위] ① 이 규칙에 의하여 공고되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2. 2. 20.)

1. 징계처분을 받은 변호사의 성명·생년월일·소속지방변호사회 및 사무실의 주소·명칭 [해당 변호사가 법무법인, 법무법인(유한), 법무조합(이하 “법무법인등”이라 한다)에 소속되어 있거나 그 구성원인 경우에는 그 법무법인등의 주소·명칭]
2. 징계처분의 내용 및 징계사유의 요지(위반행위의 태양 등 그 사유를 구체적으로 알 수 있는 사실관계의 개요를 포함한다)
3. 징계처분의 효력발생일. 다만, 징계의 종류가 정직인 경우에는 정직개시일 및 정직기간(개정 전 제47조 제4호)

② 제1항에 따라 징계처분정보를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하는 기간은 최초 게재일부터 기산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으로 한다. (신설 2012. 2. 20.)

1. 영구제명·제명: 3년
2. 정직: 1년. 다만, 정직기간이 1년보다 장기인 경우에는 그 정직기간으로 한다.
3. 과태료: 6개월
4. 견책: 3개월
5. 법 5조에 의한 등록취소: 취소기간

③ 협회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징계처분정보를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할 경우 홈페이지 최상단 메뉴에 변호사 정보란을, 그 하위 메뉴로 변호사 징계 내역을 두고, 변호사 징계 내역 메뉴에 징계처분정보를 기재하는 방법으로 게재하여야 한다. (신설 2012. 2. 20.)

④ 협회장은 제3항에 따라 설치되는 변호사 징계 내역 메뉴에서 변호사의 성명 및 사무실의 명칭(해당 변호사가 법무법인등에 소속되어 있거나 그 구성원인 경우에는 그 법무법인등의 명칭을 말한다)으로 징계처분정보가 검색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신설 2012. 2. 20.)



제 6 장 징계정보의 제공

제48조 [신청자격] 징계정보의 열람·등사를 신청할 수 있는 자(이하 “신청권자”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개정 2012. 2. 20.)

1. 해당 변호사와 면담하였거나 사건수임 계약을 체결하는 등 변호사를 선임하였거나 선임하려는 자
2. 제1호에 규정된 자의 직계존비속, 동거친족 또는 대리인

제49조 [신청방법] ① 신청권자가 징계정보의 열람·등사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해당 변호사의 인적사항, 변호사 선임 대상 사건의 개요 및 징계정보의 열람·등사를 신청하는 취지를 적은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협회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2. 2. 20.)

1. 주민등록증 사본 등 신청권자의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2. 변호사 선임 대상 사건과 관련하여 해당 변호사의 징계정보가 필요한 사유 등을 적은 선임의사확인서. 다만, 계약서, 선임계 또는 해당 변호사의 동의서 등 위임계약 등을 체결하였거나 징계정보의 열람·등사에 대한 해당 변호사의 동의가 있었음을 증명하는 서류가 있으면 선임의사확인서를 갈음하여 그 서류를 제출할 수 있다.
3. 제1항 제2호의 신청권자가 신청하는 경우에는 가족관계증명서, 위임장 등 가족관계나 대리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② 신청권자는 신청서 및 그 첨부서류를 협회장에게 직접 제출하거나 우편, 모사전송 또는 이메일 등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징계정보의 열람·등사를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12. 2. 20.)

제49조의2 [예외사항] ① 협회장은 제49조의 신청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신청에 따른 징계정보를 제공하지 아니할 수 있다. (신설 2012. 2. 20.)

1. 신청서에 필수적 기재사항을 누락하였거나 제1항에 따른 신청권이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2. 정당한 이유 없이 수회에 걸쳐 반복적으로 열람·등사를 신청하거나, 징계정보의 제공신청대상 변호사가 사건에 비추어 과도하게 다수인 경우 등 열람·등사 신청의 목적이 변호사를 선임하기 위한 것이 아님이 명백한 경우

② 협회장은 징계정보를 제공하지 아니하기로 결정한 때에는 지체 없이 신청인에게 그 취지 및 사유를 통지하여야 한다. (신설 2012. 2. 20.)

제50조 [신청의 처리] 협회장은 정보제공 신청을 받으면 신청일 부터 1주일 이내에 해당 변호사에 관한 징계정보 확인서를 제공하여야 한다. (개정 2012. 2. 20.)

제51조 [제공방법] ① 정보제공은 직접 수령, 우편, 모사전송 또는 이메일 등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방법 중 신청인이 선택한 방법으로 제공하여야 한다. (개정 2012. 2. 20.)

② 협회장은 제1항에 따라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정보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위조방지를 위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2. 2. 20.)



제52조 [유의사항] ① 협회가 이 규칙에 따라 정보제공을 하는 경우에는 대상 회원이 아닌 제3자의 명예가 훼손되지 않도록 유의하여야 한다.

② 이 규칙에 따라 정보제공을 받은 신청자는 그 내용을 제3자에게 알리거나 신청목적 이외의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53조 [정보제공 기간] 열람·등사를 신청할 수 있는 징계정보의 범위는 신청일부터 기산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 이내에 확정된 징계처분정보로 한다. (개정 2012. 2. 20.)

1. 영구제명·제명·법5조에 의한 등록취소: 10년
2. 정직: 7년
3. 과태료: 5년
4. 견책: 3년

제54조 [회원의 자기 정보 열람 등] ① 회원은 언제든지 자신의 징계처분 기록에 대한 열람을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21. 2. 22.)

② 회원은 징계처분 기록의 등사 및 징계처분 여부에 대한 확인서 발급을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징계처분정보는 제53조의 범위에 한한다. (개정 2021. 2. 22.)

③ 회원은 제1항 및 제2항의 기록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그 기록의 정정을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21. 2. 22.)

④ 협회장은 제3항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신청이 있는 날부터 30일 이내에 정정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개정 2021. 2. 22.)

⑤ 제4항의 결정이 있을 때까지는 당해 회원의 징계처분의 내용을 공개하지 못한다. (신설 2021. 2. 22.)

제55조 [비용 등 부담] ① 협회는 정보제공과 관련하여 소요된 비용 등을 신청자에게 부과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비용 등은 상임이사회의 심의를 거쳐 협회장이 정한다.

부 칙

① 이 규칙은 1993. 5. 24.부터 시행한다.

② 이 규칙에 의하여 최초로 선임되는 조사위원의 임기는 1995년도 정기총회일까지로 한다.

부 칙

① 이 규칙은 1996. 6. 29.부터 시행한다.

② 이 규칙에 의하여 최초로 선임되는 징계위원, 예비위원의 임기는 1998년도 정기총회일까지로 한다.



- ③ 이 규칙개정 전에 징계청구되었거나 징계결정된 사건은 이 규칙에 의하여 징계청구되거나 징계결정된 것으로 본다.

부 칙 (1998. 6. 8.)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 [경과조치] 이 규칙은 제31조제2항 개정 후에 선임된 조사위원의 임기는 2000년 정기총회일까지로 한다.

부 칙

① 이 규칙은 2000. 7. 29.부터 시행한다.

② 이 규칙에 의하여 판사, 검사의 자격으로 추가 선임되는 최초의 위원, 예비위원의 임기는 2002년 정기총회일까지로 한다.

③ 이 규칙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한 징계사유 및 종류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 칙

규칙은 2001. 10. 29.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20일이 경과함으로써 그 효력이 발생한다.

부 칙 (2006. 2. 20.)

이 규칙은 공포 후 20일이 경과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7. 7. 23.)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2007. 7. 27.부터 시행한다.

제2조 [징계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규칙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한 징계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② 제6장의 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의 징계처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 [다른 규정의 개정] ① 변호사징계처분집행규정 제1조 중 “변호사징계규칙 제30조제4항에 정한 징계처분”을 “변호사징계규칙 제43조 제2항에 정한 징계처분”으로 한다.

② 윤리위원회규정 제1조 중 “변호사징계규칙 제31조제1항 단서에”를 “변호사징계규칙 제37조 제1항 단서에”로 하고, 제14조 중 “변호사징계규칙 제35조를 준용한다”를 “변호사징계규칙 제41조를 준용한다”로 한다.

부 칙 (2010. 2. 8.)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2. 2. 2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3. 2. 25.)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4. 2. 24.)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4. 10. 13.)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8. 2. 26.)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21. 2. 22.)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24. 1. 22.)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1호 서식 (신설 2024. 1. 22.)

서 약 서

※ 관련 : 변호사징계규칙 제30조

직위 : 대한변호사협회 변호사징계위원회 위원

성명 :

상기 본인은 대한변호사협회 변호사징계위원회 위원으로서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직무 수행 과정에서 지득한 사실에 대하여 이를 비밀로 엄수할 것을 약속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위원 해촉 및 관련 법령에 따른 책임을 질 것을 서약합니다.

년 월 일

(서명)

대한변호사협회 변호사징계위원회 귀중



변호사징계처분집행규정

1998. 5. 25.

규정 제50호

개정

2000. 6. 26.

2011. 5. 23.

2012. 12. 28.

2018. 7. 9.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대한변호사협회로부터 변호사징계규칙 제43조 제2항에 정한 징계처분(이하 “처분”이라고 함)을 받은 변호사(이하 “피징계변호사”라고 함)의 징계집행에 관하여 통보할 관계기관 및 피징계변호사에 대한 정직기간 중의 업무규제 등 처분의 집행에 관하여 본 협회 및 지방변호사회(이하 “변호사회 등”이라고 함)가 취할 조치를 정함으로써 국민의 변호사 및 변호사회 등에 대한 신뢰 및 징계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함과 아울러 처분의 적정·공평한 운용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2. 12. 28.)

제2조 [징계사실을 통보할 관계기관] ① 대한변호사협회는 징계혐의자에 대한 처분이 확정된 때에는 대법원, 대검찰청, 피징계변호사가 속한 소속 지방변호사회 및 해당 지방변호사회의 관할 고등, 지방, 가정, 특허, 행정 등 각 법원에 징계집행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8. 7. 9.)

② <삭제> (2012. 12. 28.)

제3조 [업무규제 등의 범위] 변호사회 등은 처분의 고지에 있어 피징계변호사에게 이하의 각 호에 정한 사항 및 변호사회가 따로 정한 규제조치에 대하여 설명하고 그 준수를 실시하여야 한다.

1. (사건 등의 취급) 피징계변호사는 수임한 법률사건(법원, 검찰청 및 행정청에 계속 전의 것도 포함)에 대하여 즉시 의뢰자와의 위임계약에 의한 사무처리를 정지한다. 다만, 피징계변호사가 6월 이상의 정직처분을 받은 때에는 의뢰자와의 위임계약을 해제하여야 한다.
2. (고문계약의 취급) 피징계변호사는 의뢰자와의 고문활동을 정지하여야 한다.
3. (기일변경신청 등) 피징계변호사는 기일의 연기·변경신청을 할 수 없다. 피징계변호사는 수임한 법률사건에 관하여 법원 등에서 서류의 송달 및 송부가 있는 때에는 이를 수령하여서는 아니 된다. 잘못 수령한 때에는 반환하는 등 곧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4. (보석보증금의 환부 등) 피징계변호사는 보석보증금의 환부, 보전보증금 및 공탁금의 수령, 회수 및 화해금 등의 변제의 수령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민법 제691조에 해당하는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5. (의뢰자 등에게 인계) 피징계변호사는 제1호 단서의 경우 의뢰자 및 당해 사건을 새로 취급할 변호사에게 성실하게 법률사무를 인계하여야 한다.
6. (복대리의 선임 등) 피징계변호사는 새로운 복대리인을 선임하거나 다른 변호사를 고용하는 등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7. (복대리인들의 감독) 피징계변호사는 처분을 받기 전에 선임한 복대리인 또는 고용한 변호사(이하 “보조변호사”라고 함)에게 지시·감독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8. (사무소의 관리행위 등) 피징계변호사는 법률사무소로서 사용한 사무소(이하 “사무소”라고 함)의 관리행위·임대차계약의 계속 및 보조변호사와 사무원과의 고용 등을 계속하여서는 아니 된다.
9. (사무소의 사용) 피징계변호사는 정직기간 중 사무소를 법률사무소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수임하고 있는 법률사건의 인계 기타 이 규정에 의하여 업무정지기간 중 인정되어 있는 사무 등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변호사회 등의 승인을 얻어 그 사용을 할 수 있다. 보조변호사는 피징계변호사의 사무소를 자기의 법률사무소로서 사용할 수 있다. 피징계변호사의 사무소가 자택을 겸한 때에는 사생활 기타 변호사 업무 이외의 목적으로만 사용할 수 있다. 사무원 등은 사무소의 관리, 청소, 우편물의 정리 기타 변호사업무 이외의 목적을 위하여 사무소로 사용할 수 있다.
10. (법률사무소 표시의 제거) 피징계변호사가 6월 이상의 정직처분을 받은 때에는 즉시 변호사 및 법률사무소인 것을 표시한 표찰·간판 등의 일체의 표시를 제거(표시로서의 기능을 잃게 하는 조치 일반을 말한다)하여야 한다.
11. (변호사 명함 등의 사용) 피징계변호사는 변호사 명의 또는 법률사무소명을 표시한 명함, 사무용지 및 봉투를 사용하거나 타인으로 하여금 사용하게 하여서도 아니 된다.
12. (회무활동) 피징계변호사는 변호사회 등의 회무에 관한 활동을 할 수 없다.
13. (공직 등의 사임) 피징계변호사는 변호사회 등의 추천에 의하여 관공서 등의 위원 등에 취임한 때에는 즉시 당해 관공서 등에 사임의 절차를 취하여야 한다.
14. (변리사, 세무사 업무) 피징계변호사는 변호사의 자격에 의한 변리사, 세무사의 등록을 한 때에도 변리사, 세무사 업무를 행할 수 없다.
15. (지도·감독) 변호사회 등은 피징계변호사가 이 규정이 정하는 규제조치를 준수하도록 지도·감독을 하여야 한다.

부 칙

제1조 [시행일] 이 기준은 1998. 7. 1.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00. 7. 29.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1. 5. 23.)

이 규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2. 12. 28.)

이 규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8. 7. 9.)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윤리위원회규정

1997. 12. 15.

규정 제49호

개정 1998. 5. 25. 2000. 6. 26.
2001. 7. 9. 2015. 4. 27.
2016. 2. 15.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대한변호사협회 회칙 제31조제4항, 제48조의3제1항 단서와 변호사징계규칙 제37조제1항 단서에 의한 특별조사위원회로서 변호사윤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하고 그 조직의 구성·운영 기타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 2. 15.)

제2조 [조직] ① 위원회는 10인 이상 4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각 지방회별로 1인 이상의 위원을 위촉한다.

② 위원은 협회장이 회원 중에서 위촉한다. 다만, 필요한 때에는 회원이 아닌 덕망 있는 사회인사를 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

③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④ 위원 중에서 결원이 생긴 때에는 추가하여 위촉한다. 다만, 그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제3조 [임원] ① 위원회에 위원장, 부위원장 각 1인 및 간사 수인을 둔다.

② 위원장은 협회장이 추천한 위원 중에서 선임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간사는 위원, 사무차장, 촉탁변호사 중에서 위원장이 선임한다. (개정 2001. 7. 9.)

③ 위원장은 위원회를 통할하고 위원회를 대표한다.

④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⑤ 간사는 위원장의 지시에 따라 위원회의 업무를 담당한다.

⑥ 임원의 임기 및 보선에 관하여는 제2조제3항 및 제4항을 준용한다.

제4조 [회의] ① 위원회는 위원장이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다만, 위원장이 선출되기까지는 협회장이 이를 소집한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4분의 1 이상의 출석으로 성립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협회장, 부협회장, 상임이사는 위원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④ 위원회의 의사는 비공개로 원칙으로 한다. 다만, 위원회가 공개결의를 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⑤ 위원회의 의사에 관하여는 의사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제5조 [직무] 위원회의 직무는 다음과 같다.

1. 변호사윤리규칙 위반사건에 대한 진상조사 및 대책 수립
2. 조사결과에 따른 징계개시청구 요청 (신설 2000. 6. 26.)



3. 기타 협회장이 위촉하는 사항 (개정 2000. 6. 26.)

제6조 [권한] ① 위원회는 사건수임의 비리 및 부조리 등 윤리규칙 위반의 혐의가 있는 때에는 변호사, 사무원, 의뢰인 및 진정인 등 관계인에 대하여 조사에 필요한 각종 자료의 제출 및 설명을 요구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각 지방회 및 관련 국가기관에 대하여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협회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③ 윤리규칙 위반과 관련된 분쟁, 진정사건에 대하여 위원회는 조정을 명할 수 있다.

④ 조사결과 윤리규칙 위반의 혐의가 발견된 때에는 위원회는 협회장에게 징계개시청구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00. 6. 26.)

제7조 [조사]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건·사항에 관한 혐의사실을 조사하여야 한다.

1. 협회장이 조사의뢰한 사건

2. 위원회에 접수된 변호사윤리와 관련된 진정사건

3. 사건수임에 관하여 변호사윤리규칙을 위반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때

4. 언론에 보도된 변호사의 윤리위반사건에 관하여 조사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될 때

(개정 2000. 6. 26.)

제8조 [소위원회] ① 위원회는 사건수임과정의 비리 및 부조리 등 윤리위반사건의 조사 및 조정을 위하여 3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는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소위원회는 조사 및 조정결과를 서면으로 위원회에 보고한다. (개정 2000. 6. 26.)

제9조 [감찰위원의 선임·임기] ① 각 지방변호사회 단위로 적정수의 감찰위원을 둔다. (개정 2000. 6. 26.)

② 위원회는 협회장에게 각 지방변호사회 단위로 감찰위원을 추천한다.

③ 협회장은 상임이사회의 심의를 거쳐 감찰위원을 선임한다.

④ 감찰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개정 2000. 6. 26.)

제10조 [감찰위원의 직무·권한] ① 감찰위원은 매달 1회 이상 관내 소속변호사들의 사건수임실태와 변호사윤리규칙 위반사항을 조사·평가한 보고서를 작성하여 다음 달 10일까지 협회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감찰위원은 그 직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관내 소속변호사들에게 매월 형사, 민사, 행정, 가사 등 수임사건수, 사건명, 사건구분, 의뢰인의 인적사항, 소개인의 유무, 소개인의 성명, 수임료 등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도록 요구할 수 있으며, 당해 변호사는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③ 감찰위원은 제6조제1항의 권한을 가지며, 직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지방변호사회장에게 소속변호사들의 수임사건수, 사건명, 사무직원명단 등의 자료제출 등 협조를 요구할 수 있다.

④ 감찰위원은 제2항, 제3항의 자료나 정보에 의하여 관내 소속변호사가 비리가 있다고 의심 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을 때에는 제1항의 예에 의하여 보고하여야 한다.

⑤ 감찰위원은 소속변호사가 자료제출에 대한 협조를 하지 않을 때에는 그 횟수와 이유 등을 협회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0. 6. 26.)

제11조 [위원 등의 해임] 협회장은 위원이나 감찰위원이 그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않는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사유를 발견한 때에는 위원장의 의견을 들어 해당 위원 또는 감찰위원을 해임할 수 있



다. (신설 2000. 6. 26.)

제12조 [비밀유지의무] 위원장, 위원 및 위원회의 업무를 담당한 직원과 감찰위원은 업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 직을 그만 둔 후에도 같다. 다만, 국가기관의 정당한 요구가 있거나 협회장의 요구가 있는 때에는 위원장은 자료를 공개할 수 있다. (개정 2000. 6. 26.)

제13조 [수당] 이회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위원, 감찰위원에게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00. 6. 26.)

제14조 [준용] 윤리위원회와 감찰위원의 조사절차에 관하여는 변호사징계규칙 제41조, 제42조를 준용한다. (개정 2016. 2. 15.)

제15조 [세칙제정] 위원회는 필요한 때에는 운영세칙을 제정할 수 있다.

부 칙

이 규정은 1997. 12. 15.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98. 5. 25.)

이 규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00. 7. 29.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01. 7. 9.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5. 4. 27.)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6. 2. 15.)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회규 위반 법률플랫폼 가입 회원 조사를 위한 특별조사위원회 규정

2021. 10. 5.

규정 제173호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법률플랫폼 서비스 등 새로운 형태의 사업자들에 의한 불법적 법률시장 교란행위에 함께 한 회원의 징계혐의사실을 조사하기 위해 대한변호사협회 회칙 제31조제4항, 제48조의3제1항 단서와 변호사징계규칙 제37조제1항 단서에 의한 회규 위반 법률플랫폼 가입 회원 조사를 위한 특별조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하고 그 조직의 구성·운영 기타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조직] ① 위원회는 10인 이상 4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은 협회장이 회원 중에서 임명한다.

③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④ 위원 중에서 결원이 생긴 때에는 추가하여 임명한다. 다만, 그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제3조 [임원] ① 위원회에 위원장, 부위원장, 간사 각 1인을 둔다.

② 위원장은 협회장이 추천한 위원 중에서 선임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간사는 위원 중에서 위원장이 선임한다.

③ 위원장은 위원회를 통할하고 위원회를 대표한다.

④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⑤ 간사는 위원장의 지시에 따라 위원회의 업무를 담당한다.

제4조 [회의] ① 위원회는 위원장이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다만, 위원장이 선출되기전까지는 협회장이 이를 소집한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4분의 1 이상의 출석으로 성립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협회장, 부협회장, 상임이사는 위원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④ 위원회의 의사는 비공개로 원칙으로 한다. 다만, 위원회가 공개 결의를 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⑤ 위원회의 의사에 관하여는 의사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제5조 [직무] 위원회의 직무는 다음과 같다.

1. 변호사윤리장전 위반사건, 변호사 광고에 관한 규정, 협회 회규 및 변호사법 위반 사항에 대한 진상조사



2. 변호사 수임질서 교란 행위·광고에 대한 조사
3. 변호사 직역침탈 행위·광고에 대한 조사
4. 비변호사 또는 변호사의 광고(특히 법률사무나 법률사건의 수임에 관하여 이를 알선·소개·유인하거나 변호사를 알선·홍보·소개하는 행위, 기타 법률사무 취급과 관련하여 이익분배 등에 관한 사항)에 대한 법령(본 회의 회칙, 규칙, 규정 및 변호사법을 포함한다) 위반에 대한 조사
5. 조사결과에 따른 징계개시청구 요청
6. 기타 상임이사회의 심의를 거쳐 협회장이 위촉하는 사항

제6조 [권한] ① 위원회는 이 회에 등록한 회원의 변호사윤리장전, 변호사 광고에 관한 규정, 협회 회규 및 변호사법에 위반되는 혐의에 대해 변호사, 사무원, 의뢰인 및 진정한 등 관계인에 대하여 조사에 필요한 각종 자료의 제출 및 설명을 요구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각 지방회 및 관련 국가기관에 대하여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③ 조사결과 회규 위반의 혐의가 있을 때에는 위원회는 협회장에게 징계개시청구를 요청할 수 있다.

제7조 [위원 등의 해임] 협회장은 위원이 그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않는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사유를 발견한 때에는 위원장의 의견을 들어 해당 위원을 해임할 수 있다.

제8조 [비밀유지의무] 위원장, 위원 및 위원회의 업무를 담당한 직원은 업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 직을 그만 둔 후에도 같다. 다만, 국가기관의 정당한 요구가 있거나 협회장의 요구가 있는 때에는 위원장은 자료를 공개할 수 있다.

제9조 [수당] 이회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위원에게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10조 [준용] 위원회의 운영 및 조사절차에 관하여 본 규정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변호사징계 규칙 제4장을 준용한다.

제11조 [존속기간] 위원회는 이사회가 폐지를 의결한 때까지 존속한다.

부 칙 (2021. 10. 5.)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변호사징계양정규정

2024. 1. 8.

규정 제184호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대한변호사협회 회칙 및 변호사징계규칙 제31조의2에 의해 대한변호사협회 변호사징계위원회(이하 '징계위원회'라고 한다)의 변호사 징계의 감경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징계의 감경 등] ① 징계위원회는 「변호사법」 제90조 및 제91조의 징계의 종류 및 사유에 따른 징계혐의자에 대한 징계와 관련하여 그 경위와 공적 또는 그 밖의 정상 등을 고려하여 징계의 감경을 의결할 수 있다.

② 징계위원회는 직무와 관련이 없는 사고로 인한 비위 및 이에 준하는 사안으로 사회통념에 비추어 변호사의 품위를 손상하지 아니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징계의결을 하지 않을 수 있다.

제3조 [징계의 감경기준] ① 징계위원회는 징계청구된 사람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적이 있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별표 1의 징계의 감경기준에 따라 징계를 감경할 수 있다. 다만, 그 변호사가 징계처분이나 이 규정에 따른 경고를 받은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징계처분이나 경고처분 전의 공적은 감경 대상 공적에서 제외한다.

1. 기본적 인권옹호를 위한 사회공헌활동
2. 협회 변호사포상규칙에 의한 수상
3. 국선변호인 활동 및 기타 이에 준하는 활동

② 징계위원회는 징계청구된 징계혐의자의 비위가 성실하고 능동적인 법률사무처리 과정에서 경미한 과실로 인하여 생긴 것으로 인정되거나, 직무와 관련이 없는 사고로 인한 비위라고 인정될 때, 기타 이에 준하는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그 정상을 참작하여 별표1 징계의 감경기준에 따라 징계를 감경할 수 있다.

부 칙 (2024. 1. 8.)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1

징계의 감경기준

변호사징계규칙 제9조에 따라 인정되는 징계	변호사징계규칙 제31조의2에 따라 감경된 징계
영구제명 제명 정직 과태료 견책	제명 정직 과태료 견책 불문(경고)



사법평가위원회규정

1999. 3. 15.

규정 제52호

개정

2001. 7. 9. 2003. 6. 2.
2011. 2. 14. 2015. 10. 19.
2016. 12. 30. 2017. 6. 19.
2020. 2. 10.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위원회운영규칙 제2조제3항에 의한 특별위원회로서 사법평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하고, 그 조직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필요한 자료의 수집과 설문조사 등을 하고 이를 분석·평가하여 그 결과를 협회장에게 건의한다.

1. 대법원장, 헌법재판소장, 대법관, 헌법재판소재판관, 검찰총장,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에 대한 적임자 추천 (개정 2020. 2. 10.)
2. 국회의 동의를 요하는 법조관련 공직자의 경우 국회에 대한 의견 개진 (제3호에서 변경 2011. 2. 14.)
3. <삭제> (2016. 12. 30.)
4. <삭제> (2016. 12. 30.)

제3조 [조직] ① 위원회는 10인 이상 4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7. 6. 19.)

② 위원은 협회장이 회원 중에서 위촉한다. 다만, 필요한 때에는 법관, 검찰관 또는 회원이 아닌 덕망 있는 사회인사를 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

③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④ 위원 중에서 결원이 생길 때에는 그 후임자를 보충하여 위촉한다. 다만, 그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제4조 [임원] ① 위원회에 위원장, 부위원장, 간사 각 1인을 둔다.

② 위원장은 협회장이 추천한 위원 중에서 선임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간사는 위원, 사무차장, 촉탁변호사 중에서 위원장이 선임한다. (개정 2001. 7. 9.)

③ 위원장은 위원회를 통할하고 위원회를 대표한다.

④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유고 시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⑤ 간사는 위원장의 지시에 따라 위원회의 사무를 담당한다.

제5조 [회의] ① 위원회는 위원장이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다만, 위원장이 선출되기까지는 협회장이 소집한다. 위원장은 협회장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위원회를 소집하



여야 한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성립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협회장, 부협회장 및 상임이사는 위원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④ 위원회의 의사는 비공개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위원회가 공개결의를 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6조 [실무위원회] ① 위원회의 업무를 보좌하기 위하여 위원회의 결의로 실무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실무위원회는 10인 이상 15인 이내의 실무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실무위원은 위원장이 회원 중에서 위촉한다. 다만, 필요한 때에는 사법연수원생, 법과대학원생 또는 시민사회단체 간부를 실무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

④ 실무위원회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기타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가 정한다.

제6조의2 [평가방법 등] 평가 항목과 방법은 위원회가 정한다. (개정 2016. 12. 30.)

제6조의3 <삭제> (2015. 10. 19.)

제7조 [준용] 이 규정이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관하여는 위원회운영규칙을 준용한다.

제8조 [존속기간] 위원회는 이사회가 이 규정의 폐지를 의결할 때까지 존속한다.

부 칙 (1999. 3. 15.)

이 규정은 1999. 3. 15.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01. 7. 9.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3. 6. 2.)

이 규정은 공포한 날로부터 20일이 경과함으로써 그 효력이 발생한다.

부 칙 (2011. 2. 14.)

이 규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5. 10. 19.)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6. 12. 30.)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7. 6. 19.)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20. 2. 10.)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사법제도개선특별위원회규정

2010. 4. 5.

규정 제99호

개정 2021. 10. 5.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사법제도전반에 걸친 제도개혁과 법조인력양성제도의 개선에 관한 자료의 수집·연구와 그 개선안을 마련하기 위하여 위원회운영규칙 제2조 제3항에 의하여 사법제도개선 특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하고 그 조직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 10. 5.)

제2조 [기능] 위원회는 다음 사항에 관하여 자료의 조사·연구와 추진방안을 심의하여 그 결과를 협회장에게 건의한다.

1. 변호사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
2. 증거조사제도 및 배심제의 도입 등 재판제도의 개선에 관한 사항 (개정 2021. 10. 5.)
3. 수사제도의 개선 등 형사사법제도의 개선에 관한 사항 (개정 2021. 10. 5.)
4. 법조인력양성제도의 개선에 관한 사항 (개정 2021. 10. 5.)
5. 법원과 검찰의 조직 및 직제개선에 관한 사항 (개정 2021. 10. 5.)
6. 기타 협회장이 요청하는 사항 (신설 2021. 10. 5.)

제3조 [조직] ① 위원회는 10인 이상 3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은 협회장이 회원 중에서 임명한다. 다만, 필요한 때에는 회원이 아닌 인사를 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

③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한다.

④ 위원 중에서 결원이 생긴 때에는 추가하여 임명한다. 다만, 그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제4조 [임원] ① 위원회에 위원장·부위원장·간사 각1인을 둔다.

② 위원장은 협회장이 임명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 간사는 위원장이 지명한다. (개정 2021. 10. 5.)

③ 위원장은 위원회를 통할하고 위원회를 대표한다.

④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유고시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⑤ 간사는 위원장의 지시에 따라 위원회의 사무를 담당한다.

⑥ 임원의 임기 및 보선에 관하여는 제3조 제3항을 준용한다. (개정 2021. 10. 5.)

제5조 [회의] ① 위원회는 위원장이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다만, 위원장이 선출되기까지는 협회장이 이를 소집한다.



- ② 회의는 재적위원 4분의 1 이상의 출석으로 성립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③ 협회장, 부협회장, 상임이사는 위원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 ④ 위원회의 의사는 비공개로 원칙으로 한다. 다만, 위원회가 공개결의를 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5조의2 [소위원회] 제2조의 기능을 수행하기 위해서 소위원회를 두거나 TF를 둘 수 있고, 소위원회 운영에 관해서는 제5조를 준용한다.

(본조신설 2021. 10. 5.)

제6조 [준용] 이 규정이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관하여는 위원회운영규칙을 준용한다.

제7조 [존속기간] 위원회는 상임이사회가 폐지를 의결할 때까지 존속한다.

부 칙

이 규정은 공포일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21. 10. 5.)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통일문제연구위원회규정

1985. 6. 10.

규정 제10호

개정 2001. 7. 9.
2003. 6. 2.
2014. 6. 2.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제2조 업무를 분담하게 하기 위하여 위원회운영규칙 제2조제3항에 의한 특별 위원회로서 통일문제연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하고, 그 조직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권능] 위원회는 다음 사항에 관하여 협회장의 자문에 따라 조사, 연구, 심의하고 그 결과를 건의한다.

1. 북한의 사회·법률제도의 조사연구에 관한 사항
2. 통일헌법안 및 통일기본법안 등의 조사·연구와 입법에 관한 사항

제3조 [조직] ① 위원회는 10인 이상 3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03. 6. 2.)

② 위원은 협회장이 상임이사회의 심의를 거쳐 회원 중에서 지명한다. 다만, 협회장은 위원회의 조사 및 연구활동에 필요한 때에는 상임이사회의 심의를 거쳐 회원이 아닌 인사를 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고, 위원회는 그러한 위원을 협회장에게 추천할 수 있다. (개정 2014. 6. 2.)

③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④ 위원 중에서 결원이 생긴 때에는 그 잔임기간을 임기로 하여 지체 없이 보궐지명한다.

제4조 [임원] ① 위원회에 위원장, 부위원장 및 간사 1인을 둔다.

② 위원장은 협회장이 추천한 위원 중에서 선임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간사는 위원, 사무차장, 촉탁변호사 중에서 위원장이 선임한다. (개정 2001. 7. 9.)

③ 임원의 임기와 보선에 관하여는 전조 제3항 및 제4항을 준용한다.

④ 위원장은 위원회를 통할하고 위원회를 대표한다.

⑤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유고 시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⑥ 간사는 위원장의 지시에 따라 위원회의 사무를 담당한다.

제5조 [회의] ① 위원회는 위원장이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다만, 위원장이 선출되기까지는 협회장이 이를 소집한다.

② 위원장은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으로부터 소집요구가 있을 때에는 지체 없이 위원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③ 회의는 재적위원 4분의 1 이상의 출석으로 성립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협회장, 부협회장, 상임이사는 위원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⑤ 위원회의 의사는 공개함을 원칙으로 한다. 그러나 위원회가 비공개 결의를 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6조 [준용] 이 규정이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관하여는 위원회운영규칙을 준용한다.

제7조 [존속기간] 위원회는 이사회가 이 규정을 폐지할 때까지 존속한다.

부 칙 (1985. 6. 10.)

① 이 규정시행 후 최초로 지명되는 위원 중 반수의 임기는 1986년도의, 나머지 반수의 임기는 1987년도의 정기총회일까지로 한다.

② 이 규정은 1985. 6. 17.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01. 7. 9.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3. 6. 2.)

이 규정은 공포한 날로부터 20일이 경과함으로써 그 효력이 발생한다.

부 칙 (2014. 6. 2.)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환경과에너지연구위원회규정

1991. 6. 24.

규정 제35호

개정 2000. 6. 26.
2001. 7. 9.
2003. 6. 2.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제2조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위원회운영규칙 제2조제3항에 의한 특별위원회로서 환경과에너지연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하고, 그 조직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1. 7. 9.)

제2조 [권능] 위원회는 환경과 에너지 연구에 관하여 연구조사활동을 하여 그 개선책을 강구하고 개선안을 협회장에게 건의한다. (개정 2001. 7. 9.)

제3조 [조직] ① 위원회는 10인 이상 3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03. 6. 2.)

② 위원은 협회장이 회원 중에서 위촉한다.

③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④ 위원 중에서 결원이 생긴 때에는 추가하여 위촉한다. 다만, 그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제4조 [임원] ① 위원회에 위원장, 부위원장, 간사 각 1인을 둔다.

② 위원장은 협회장이 추천한 위원 중에서 선임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선임하고, 간사는 위원, 사무차장, 촉탁변호사 중에서 위원장이 선임한다. (개정 2001. 7. 9.)

③ 위원장은 위원회를 통할하고 위원회를 대표한다.

④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유고 시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⑤ 간사는 위원장의 지시에 따라 위원회의 사무를 담당한다.

⑥ 임원의 임기 및 보선에 관하여는 제3조제3항 및 제4항을 준용한다.

제5조 [회의] ① 위원회는 위원장이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다만, 위원장이 선출되기까지는 협회장이 이를 소집한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4분의 1 이상의 출석으로 성립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협회장, 부협회장, 상임이사는 위원회에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④ 위원회의 의사는 비공개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위원회가 공개결의를 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6조 [준용] 이 규정이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관하여는 위원회운영규칙을 준용한다.

제7조 [존속기간] 위원회는 이사회가 이 규정의 폐지를 의결할 때까지 존속한다. (개정 2000. 6. 26.)



부 칙 (1991. 6. 24.)

이 규정은 1991. 6. 24.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00. 7. 29.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01. 7. 9.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3. 6. 2.)

이 규정은 공포한 날로부터 20일이 경과함으로써 그 효력이 발생한다.

헌법개정특별위원회규정

(2017. 2. 22. 규정제목개정)

2009. 11. 23.

규정 제88호

개정 2017. 2. 22.
2017. 3. 22.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협회 특별위원회로서 헌법개정특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하고, 그 조직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 2. 22.)

제2조 [권능] 위원회는 기본적 인권의 수호와 민주적 기본질서의 확립을 이념으로 하여 국민의 입장에서 현행 헌법을 조사·연구·심의하고, 본 협회의 새로운 헌법개정시안을 입안하여 협회장에게 건의한다.

제3조 [조직] ① 위원회는 40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7. 3. 22.)

② 위원은 상임이사회의 심의를 거쳐 협회장이 임명한다. (개정 2017. 3. 22.)

③ 위원 중 결원이 생긴 때에는 지체없이 협회장이 보궐임명한다.

제4조 [임원] ① 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및 간사 1인을 둔다.

② 위원장은 협회장이 위원 중에서 임명하고, 부위원장 및 간사는 위원회에서 호선한다.

③ 임원 중 결원이 생긴 때에는 지체 없이 보선한다.

④ 위원장은 위원회의 사무를 통할하고, 위원회를 대표한다.

⑤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 유고 시에는 그 직무를 대표한다.

⑥ 간사는 위원장의 지시에 따라 위원회의 사무를 담당한다.

제5조 [회의] ① 위원회는 위원장이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다만, 위원장이 선출되기까지는 협회장이 소집한다. 위원장은 협회장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위원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성립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협회장, 부협회장 및 상임이사는 위원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④ 위원회의 의사는 비공개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위원회가 공개결의를 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6조 [준용] 이 규정이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관하여는 위원회운영규칙을 준용한다.

제7조 [존속기간] 위원회는 이사회가 이 규정의 폐지를 의결할 때까지 존속한다.



부 칙

이 규정은 공포일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7. 2. 22.)

이 규정은 공포일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7. 3. 22.)

이 규정은 공포일로부터 시행한다.

대한변호사협회 법학전문대학원 평가 및 발전 특별위원회 규정

2022. 2. 14.

규정 제176호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위원회운영규칙 제2조 제3항에 의한 특별위원회로서 대한변호사협회 법학전문대학원 평가 및 발전 특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하고, 그 조직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기능] 위원회는 자질있는 법조인을 양성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연구·검토·분석·평가하여 그 결과를 협회장에게 건의한다.

1. 법학전문대학원 교육발전을 위한 연구 및 방향 제시
2. 법학전문대학원 정착과 발전을 위한 지원 방안 마련
3. 법학전문대학원 평가의 방향설정, 계획수립 및 취합, 결과 분석
4. 법학전문대학원 평가결과의 활용방안에 대한 조사연구
5. 기타 이 제도의 목적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3조 [구성] ① 위원회는 10인 이상 10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은 협회장이 상임이사회의 심의를 거쳐 개인회원 중에서 임명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 상임이사회의 심의를 거쳐 학식과 덕망이 있는 인사를 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

③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④ 위원 중에서 결원이 생긴 때에는 그 후임자를 보충하여 임명 또는 위촉한다. 다만, 그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제4조 [임원] ① 위원회에 위원장 1인, 부위원장 1인, 간사 1인을 둔다.

② 위원장은 전조 제2항의 위원 중에서 협회장이 임명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간사는 위원 중에서 위원장이 선임한다.

③ 위원장은 위원회를 통할하고 위원회를 대표한다.

④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의 유고 시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⑤ 간사는 위원장의 지시에 따라 위원회의 사무를 담당한다.

⑥ 임원의 임기 및 보선에 관하여는 제3조 제3항 및 제4항을 준용한다.

제5조 [회의] ① 위원회는 위원장이 소집하고 위원장이 의장이 된다. 다만, 위원장이 선출되기까지는 협회장이 이를 소집한다.

② 위원장은 협회장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는 때에는 위원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③ 회의는 재적위원 4분의 1 이상의 출석으로 성립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협회장, 부협회장, 상임이사는 위원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⑤ 위원회의 의사는 비공개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위원회가 공개결의를 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6조 [소위원회] ① 위원회의 업무를 분장 또는 보좌하기 위하여 위원회 결의로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소위원회 임원은 위원장이 지명하여 구성한다.

③ 소위원회는 연구 및 조사 등의 결과를 서면으로 위원회에 보고한다.

제7조 [수당] ① 위원(소위원회 위원을 포함한다)이 회의에 참석한 때에는 예산이 정한 범위 안에서 회의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② 위원은 위원회의 사무를 위하여 출장하거나 비용을 체당한 때에는 그 실비를 변상 받는다.

제8조 [비밀엄수] 위원 등 법학전문대학원 업무에 관여한 자 및 사무국 직원은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알게 된 비밀을 임기 전후를 불문하고 외부에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9조 [준용] 이 규정이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관하여는 위원회운영규칙을 준용한다.

제10조 [존속기간] 위원회는 이사회가 이 규정을 폐지할 때까지 존속한다.

부 칙 (2022. 2. 14.)

제1조 [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경과조치] ① 이 규정 시행 전에 임명된 대한변호사협회 법학전문대학원 평가 및 발전 특별위원회 위원은 이 규정에 의하여 임명된 것으로 본다.

② 이 규정 시행 전에 개최한 위원회는 이 규정에 의해 개최한 것으로 본다.



변협포럼운영규정

2010. 1. 25.

규정 제98호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이 회가 운영하는 포럼(변협포럼·KBA GLOBAL FORUM)의 준비, 집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취지] 국내·외 현안에 대한 관련 사회 저명인사를 연사로 초청하여 의견의 청취와 상호교환을 통해 법조인의 인식의 폭을 넓히고, 다양한 해결방안을 모색함으로써 우리 사회의 발전과 법률문화의 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매월 정기적으로 포럼을 개최한다.

제3조 [운영위원회] ① 포럼의 준비와 집행을 위하여 포럼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고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포럼기본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2. 포럼실행계획의 수립과 실시에 관한 사항
3. 기타 협회장이 부의하는 사항

제4조 [위원의 위촉] ① 위원회는 10인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은 협회장이 위촉한다.

③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한다.

④ 위원 중에서 결원이 생긴 때에는 그 후임자를 보충하여 위촉한다. 다만, 그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제5조 [임원] ① 위원회에 위원장, 부위원장, 간사 각 1인을 둔다.

② 위원장은 협회장이 임명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간사는 위원 중에서 위원장이 선임한다.

③ 위원장은 위원회를 통할하고 위원회를 대표한다.

④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유고시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⑤ 간사는 위원장의 지시에 따라 위원회의 사무를 담당한다.

⑥ 임원의 임기 및 보선에 관하여는 제4조 제3항을 준용한다.

제6조 [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소집하고 위원회의 의장이 된다. 다만, 위원장이 선출되기까지는 협회장이 소집한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4분의 1 이상의 출석으로 성립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협회장, 부협회장 및 상임이사는 위원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④ 위원회의 의사는 비공개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위원회가 공개 결의를 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7조 [포럼운영계획의 수립] ① 위원장은 매 사업연도 개시 1개월 전까지 포럼의 주제, 연사 등에 관한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협회장에게 제출한다.

② 위원장은 제1항의 기본계획에 따라 포럼의 연사를 섭외하고, 개최장소와 기간 등 포럼실행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제8조 [준용] 이 규정이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관하여는 위원회운영규칙을 준용한다.

제9조 [존속기간] 위원회는 이사회가 이 규정의 폐지를 결의할 때까지 존속한다.

부 칙

이 규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국제인권특별위원회규정

2011. 5. 23.

규정 제105호

개정 2023. 2. 13.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위원회운영규칙 제2조 제3항에 의한 특별위원회로서 국제인권특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하고, 그 조직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기능] 위원회는 다음 사항에 관하여 협회장의 자문에 따라 조사, 연구, 심의하고 그 결과를 건의한다.

1. 국제인권상황 및 인권문제에 대한 조사
2. 국제기구 및 각국의 인권 관련 정부기관, 해외 인권단체 등에서 제안한 인권문제 개선방안 등에 대한 의견 개진
3. 회원의 국제인권법적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
4. 기타 국제인권메커니즘을 통한 권리 구제 방안 모색 등

제3조 [조직] ① 위원회는 10인 이상 3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은 협회장이 회원 중에서 임명한다. 다만, 필요한 때에는 법관, 검찰관 또는 회원이 아닌 덕망 있는 사회인사를 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

③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④ 위원 중에서 결원이 생길 때에는 그 후임자를 보충하여 임명 또는 위촉한다. 다만, 그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제4조 [임원] ① 위원회에 위원장, 부위원장, 간사 각 1인을 둔다.

② 위원장은 협회장이 추천한 위원 중에서 선임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간사는 위원 중에서 위원장이 선임한다.

③ 위원장은 위원회를 통할하고 위원회를 대표한다.

④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유고 시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⑤ 간사는 위원장의 지시에 따라 위원회의 사무를 담당한다.

제5조 [회의] ① 위원회는 위원장이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다만, 위원장이 선출되기까지는 협회장이 소집한다. 위원장은 협회장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위원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4분의 1 이상의 출석으로 성립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23. 2. 13.)



③ 협회장, 부협회장 및 상임이사는 위원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④ 위원회의 의사는 비공개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위원회가 공개결의를 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6조 [소위원회] ① 위원회의 업무를 보좌하기 위하여 위원회의 결의로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소위원회는 연구 및 조사 등의 결과를 서면으로 위원회에 보고한다.

③ 소위원회의 위원은 위원회 위원 중 선임하고, 소위원회의 위원장은 소위원회 위원 중에서 호선하거나 위원회가 선임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 위원회는 위원회 위원이 아닌 자를 소위원회 위원으로 지명 또는 위촉할 수 있다.

④ 소위원회의 조직과 운영에 관하여 기타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가 정한다.

제7조 [준용] 이 규정이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관하여는 위원회운영규칙을 준용한다.

제8조 [존속기간] 위원회는 이사회가 이 규정의 폐지를 의결할 때까지 존속한다.

부 칙

이 규정은 공포한 날로부터 그 효력이 발생한다.

부 칙 (2023. 2. 13.)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일제피해자인권특별위원회규정

2011. 2. 14.

규정 제104호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일제피해자 관련 인권 및 법률 문제에 관하여 필요한 법률지원을 위하여 위원회운영규칙 제2조 제3항에 의한 특별위원회로서 일제피해자인권특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하고, 그 조직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기능] 위원회는 다음 사항에 관하여 협회장의 자문에 따라, 조사, 연구, 심의하고 그 결과를 협회장에게 건의한다.

1. 일제피해자 피해회복을 위한 법률적 지원에 관한 사항
2. 일제피해자에 관한 문헌의 수집·연구·분석에 관한 사항
3. 일제피해자에 관한 각종 법률자문에 관한 사항
4. 기타 협회장이 자문한 사항

제3조 [조직] ① 위원회는 10인 이상 3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 ② 위원회에는 10인 이내의 외부 자문위원을 둘 수 있다.
- ③ 위원은 협회장이 위촉한다.
- 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 ⑤ 위원 중에서 결원이 생긴 때에는 그 후임자를 보충하여 위촉한다. 다만, 그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제4조 [임원] ① 위원회에 위원장, 부위원장, 간사 각 1인을 둔다.

- ② 위원장은 협회장이 위원 중에서 위촉하고, 부위원장 및 간사는 위원회에서 호선한다.
- ③ 위원장은 위원회를 통할하고 위원회를 대표한다.
- ④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의 유고시 그 직무를 대행한다.
- ⑤ 간사는 위원장의 지시에 따라 위원회의 사무를 담당한다.
- ⑥ 임원의 임기 및 보선에 관하여는 제3조 제4항 및 제5항을 준용한다.

제5조 [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다만, 위원장이 선출되기까지는 협회장이 소집한다. 위원장은 협회장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위원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 ② 회의는 재적위원 1/4 이상의 출석으로 성립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③ 협회장, 부협회장 및 상임이사는 위원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 ④ 위원회의 의사는 비공개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위원회가 공개결의를 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6조 [수당] 이회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회의에 참여한 위원장·위원 및 자문위원에게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7조 [위임규정] 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은 별도의 규정이나 지침 또는 세칙으로 정한다.

제8조 [준용] 이 규정이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관하여는 위원회운영규칙을 준용한다.

제9조 [존속기간] 위원회는 이사회가 이 규정을 폐지할 때까지 존속한다.

부 칙

이 규정은 공포한 날로부터 20일을 경과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성년후견법률지원특별위원회규정

2017. 9. 11.

규정 제150호

개정 2021. 10. 5.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성년후견제도의 올바른 정착을 위한 자료의 조사·연구 및 제도 개선책을 마련하기 위해 위원회운영규칙 제2조 제3항에 따라 ‘성년후견법률지원특별위원회(이하 “위원회”라고 한다)’를 설치하고, 그 조직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기능] 위원회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성년후견제도 정착을 위한 법·제도 개선
2. 성년후견제도 실태 조사 및 연구
3. 후견인·후견감독인의 교육 양성 및 지도 감독
4. 가정법원, 지방자치단체 및 전문가단체 등과의 업무 협조
5. 기타 협회장이 요청하는 사항

제3조 [조직] ① 위원회의 정원은 10인 이상 50인 이하로 한다. (개정 2021. 10. 5.)

② 위원은 협회장이 회원 중에서 임명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 변호사가 아닌 자 중에서 학식과 덕망이 있는 외부인사를 상임이사회의 승인을 얻어 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

제4조 [임기]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② 위원 중에서 결원이 생긴 때에는 그 후임자를 보충하여 임명 또는 위촉할 수 있다. 다만, 그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제5조 [임원] ① 위원회에는 위원장, 부위원장, 간사 각 1인을 둔다.

② 위원장은 협회장이 추천한 위원 중에서 위원회가 선임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간사는 위원장이 위원 중에서 선임한다.

③ 위원장은 위원회의 사무를 통할하고 위원회를 대표한다.

④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⑤ 간사는 위원장의 지시에 따라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한다.

제6조 [회의] ① 위원회는 위원장이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다만, 위원장이 선임되기 전까지는 협회장이 그 직무를 수행한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4분의 1 이상의 출석으로 성립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위원장이 결정한다.

③ 위원은 위원회에 출석하지 아니하고 서면 또는 전자우편(이메일)으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다.

④ 협회장, 부협회장 및 상임이사는 위원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⑤ 위원회의 의사는 비공개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위원회가 공개결의를 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7조 [준용] 이 규정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관하여는 위원회운영규칙을 준용한다.

제8조 [존속기간] 위원회는 이사회가 이 규정의 폐지를 의결한 때까지 존속한다.

부 칙

① [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경과조치] 이 규정 시행 전에 개최한 위원회는 이 규정에 의해 개최한 것으로 본다.

부 칙 (2021. 10. 5.)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생명존중재난안전특별위원회규정

(2015. 10. 19. 규정제목개정)

2014. 6. 2.

규정 제126호

개정 2015. 10. 19.
2017. 1. 31.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위원회운영규칙 제2조 제3항에 의한 특별위원회로서 생명존중재난안전특별위원회(약칭 생명안전특위, 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하고, 그 조직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 10. 19.)

제2조 [업무의 범위]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자료의 조사·연구와 추진방안 및 제도개선책을 마련하여 그 결과를 협회장에게 건의한다.

1. 공익법률지원단의 조직 및 관리
2. 재난 관련 조사 및 제도 개선 연구 (개정 2015. 10. 19.)
3. 공익소송 지원 방안 연구
4. 기타 관련 사항

제3조 [조직] ① 위원회는 10인 이상 3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다만, 필요한 때에는 상근 위원 약간인을 둘 수 있다. (개정 2015. 10. 19.)

② 위원은 협회장이 회원 중에서 임명한다. 다만, 필요한 때에는 회원이 아닌 덕망 있는 사회인사를 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

③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④ 위원 중에서 결원이 생길 때에는 협회장이 그 후임자를 보충하여 위촉한다.

제4조 [임원 등] ① 위원회에 위원장(공동위원장 체제로 할 경우 위원장은 2인 이상을 둘 수 있다), 부위원장, 간사 각 1인을 둔다.

② 위원장은 협회장이 추천한 위원 중에서 위원회가 선임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간사는 위원 중에서 위원장이 선임한다.

③ 위원장은 위원회를 통할하고 위원회를 대표한다.

④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 유고 시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⑤ 간사는 위원장의 지시에 따라 위원회의 사무를 집행한다.

제5조 [회의] ① 위원회는 위원장이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위원장은 협회장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는 때에는 위원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3분의 1의 출석으로 성립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③ 협회장, 부협회장 및 상임이사는 위원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 ④ 위원회는 전문가 기타 관계자로부터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 ⑤ 위원회의 의사는 비공개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위원회가 공개결의를 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6조 [소위원회] ① 위원회의 업무를 보좌하기 위하여 위원회의 결의로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

- ② 소위원회는 5인 이상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 ③ 소위원회 위원장은 위원회가 선임하고, 소위원회 위원은 회원 또는 회원이 아닌 관련 전문가 중에서 위원회가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 ④ 소위원회는 조사 및 법적조치 등의 결과를 서면으로 위원회에 보고한다.
- ⑤ 소위원회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기타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가 정한다.

제7조 [법률지원변호사단의 구성] ① 위원회는 각 지방변호사회장의 추천 또는 회원의 지원을 받아 법률지원변호사를 선정하고 법률지원변호사단을 구성한다.

- ② 위원회는 법률지원변호사단을 구성한 후 그 명단을 협회장에게 보고하고, 협회장은 이를 해당 지방변호사회장에게 통보한다.
- ③ 위원회의 위원 중 변호사인 위원은 법률지원변호사가 된다.

제8조 [법률지원변호사단의 임기] 법률지원변호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제9조 [법률지원 변호사단의 직무] ① 법률지원변호사단은 재난 피해자 및 가족에 대한 법률상담, 공익소송 등의 업무를 행한다. (개정 2017. 1. 31.)

- ② 재난 피해자 및 가족에 대한 법률구조신청의 절차는 대한변협법률구조재단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17. 1. 31.)

제10조 [수당 등] 위원회 위원 또는 소위원회가 특정과제의 연구 또는 조사 등을 한 경우 이에 필요한 수당 또는 제반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1조 [준용] 이 규정이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관하여는 위원회운영규칙을 준용한다.

제12조 [존속기간] 위원회는 이사회가 이 규정의 폐지를 결의할 때까지 존속한다.

제13조 [시행세칙] 위원회는 업무와 관련된 필요한 사항을 시행세칙으로 정할 수 있다.

(신설 2017. 1. 31.)

부 칙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5. 10. 19.)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7. 1. 31.)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북한인권특별위원회규정

2015. 4. 27.

규정 제130호

개정 2015. 10. 19.

전부개정 2019. 7. 8.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북한주민 및 재외 북한이탈주민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하여 위원회운영규칙 제2조 제3항에 의한 특별위원회로서 북한인권특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하고 그 조직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북한주민”이라 함은 북한에 거주하며 직계가족·배우자·직장 등 생활의 근거를 두고 있는 자를 말한다.
2. “재외 북한이탈주민”이라 함은 북한에 주소·직계가족·배우자·직장 등을 두고 있는 자로서 북한을 벗어난 후 외국의 국적을 취득하지 아니하고 외국에 체류하고 있는 자를 말한다.

제3조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조사·연구하고 그 결과를 협회장에게 건의한다.

1. 북한주민의 인권 보호 및 개선에 관한 사항
2. 북한 인권 관련 법안의 조사·연구와 입법에 관한 사항
3. 재외 북한이탈주민의 인권 보호에 관한 사항
4. 기타 협회장이 요청하는 사항

제4조 [구성] ① 위원회는 10인 이상 4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은 협회장이 회원 중에서 임명한다. 다만, 필요한 때에는 회원이 아닌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회 인사를 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

③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④ 위원 중에서 결원이 생긴 때에는 그 후임자를 보충하여 임명 또는 위촉한다. 다만, 그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제5조 [임원] ① 위원회에 위원장, 부위원장, 간사 각 1인을 둔다.

② 위원장은 협회장이 위원 중에서 임명하고, 부위원장 및 간사는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장은 위원회의 업무를 통괄하고 위원회를 대표한다.

④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의 유고 시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⑤ 간사는 위원장의 지시에 따라 위원회의 사무를 담당한다.

제6조 [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소집하고 위원장이 위원회의 의장이 된다. 다만, 위원장이 임명되



기까지는 협회장이 소집한다.

② 위원장은 협회장이 소집을 요구하는 때에는 위원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③ 회의는 재적위원 4분의 1 이상의 출석으로 성립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협회장, 부협회장, 상임이사는 위원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⑤ 위원회의 의사는 공개한다. 다만, 위원회가 비공개 결의를 한 때에는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7조 [소위원회] ① 위원회의 업무를 보좌하기 위하여 상임이사회의 심의를 거쳐 위원 또는 위원이 아닌 자로 구성된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소위원회는 연구 및 조사 등의 결과를 서면으로 위원회에 보고한다.

제8조 [준용] 이 규정이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관하여는 위원회운영규칙을 준용한다.

제9조 [존속기간] 위원회는 이사회가 이 규정의 폐지를 의결할 때까지 존속한다.

부 칙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5. 10. 19.)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9. 7. 8.)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북한이탈주민법률지원위원회규정

2019. 7. 8.

규정 제163호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북한이탈주민의 생활안정과 우리 사회 적응에 필요한 법률지원을 위하여 위원회운영규칙 제2조 제3항에 의한 특별위원회로서 북한이탈주민법률지원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하고, 그 조직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북한이탈주민”이라 함은 북한에 주소·직계가족·배우자·직장 등을 두고 있는 자로서 북한을 벗어난 후 외국의 국적을 취득하지 아니하고 국내에 거주하고 있는 자를 말한다.
2. “법률지원변호사단”이라 함은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법률상담, 법률구조 등 법률지원을 위하여 이 규정에 의해 조직된 변호사단을 말한다.
3. “법률지원변호사”라 함은 법률지원변호사단에 소속된 변호사를 말한다.

제3조 [기능] 위원회는 다음 사항에 관하여 조사, 연구, 심의하고 그 결과를 협회장에게 건의한다.

1. 북한이탈주민 관련 제도의 조사·연구와 입법에 관한 사항
2. 북한이탈주민을 위한 법률지원변호사단의 조직 및 관리
3. 기타 협회장이 자문한 사항

제4조 [조직] ① 위원회는 10인 이상 4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 ② 위원은 협회장이 회원 중에서 임명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 상임이사회의 심의를 거쳐 학식과 덕망이 있는 인사를 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
- ③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 ④ 위원 중에서 결원이 생긴 때에는 그 후임자를 보충하여 임명 또는 위촉한다. 다만, 그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 기간으로 한다.

제5조 [임원] ① 위원회에 위원장, 부위원장, 간사 각 1인을 둔다.

- ② 위원장은 협회장이 위원 중에서 임명하고, 부위원장 및 간사는 위원회에서 호선한다.
- ③ 위원장은 위원회를 통할하고 위원회를 대표한다.
- ④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의 유고 시 그 직무를 대행한다.
- ⑤ 간사는 위원장의 지시에 따라 위원회의 사무를 담당한다.

제6조 [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다만, 위원장이 임명되기까지는 협회장이 소집한다.

- ② 위원장은 협회장이 소집을 요구한 때에는 위원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 ③ 회의는 재적위원 4분의 1 이상의 출석으로 성립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협회장, 부협회장 및 상임이사는 위원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⑤ 위원회의 의사는 공개한다. 다만, 위원회가 비공개 결의를 한 때에는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7조 [법률지원변호사단의 구성] ① 위원회는 각 지방변호사회장의 추천 또는 회원의 지원을 받아 법률지원변호사를 선정하고 법률지원변호사단을 구성한다.

② 위원회는 법률지원변호사단을 구성한 후 그 명단을 협회장에게 보고하고, 협회장은 이를 해당 지방변호사회장에게 통보한다.

제8조 [법률지원변호사단의 임기] 법률지원변호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제9조 [법률지원변호사단의 직무] ① 법률지원변호사는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법률상담, 법률교육, 법률구조신청 등의 업무를 행한다.

②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법률구조신청의 절차는 대한변협법률구조재단이 정한 바에 따른다.

제10조 [보고] 법률지원변호사가 북한이탈주민을 상담한 때에는 상담일지를 작성하여 보고하여야 한다.

제11조 [소위원회] ① 위원회의 업무를 보좌하기 위하여 상임이사회의 심의를 거쳐 위원 또는 위원이 아닌 자로 구성된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소위원회는 연구 및 조사 등의 결과를 서면으로 위원회에 보고한다.

제12조 [위임규정] 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은 지침 또는 세칙으로 정한다.

제13조 [준용] 이 규정이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관하여는 위원회운영규칙을 준용한다.

제14조 [존속기간] 위원회는 이사회가 이 규정의 폐지를 의결할 때까지 존속한다.

부 칙 (2019. 7. 8.)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난민이주외국인특별위원회 규정

2020. 12. 28.

규정 제169호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위원회운영규칙 제2조 제3항에 의한 특별위원회로서 난민이주외국인특별위원회(약칭 난민이주외국인특위, 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하고, 그 조직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업무의 범위]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조사·연구·심의하며, 그 결과를 협회장에게 건의한다.

1. 난민·이주외국인 지위 및 처우에 관한 사항
2. 난민·이주외국인 관련 정책에 관한 사항
3. 난민·이주외국인의 국내 실태에 관한 사항
4. 난민·이주외국인 관련 소송 지원에 관한 사항
5. 기타 관련 사항

제3조 [조직] ① 위원회는 10인 이상 3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다만, 필요한 때에는 상근 위원 약간인을 둘 수 있다.

② 위원은 협회장이 회원 중에서 임명한다. 다만, 필요한 때에는 회원이 아닌 덕망 있는 사회인사를 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

③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④ 위원 중에서 결원이 생긴 때에는 협회장이 그 후임자를 보충하여 임명한다. 다만, 그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제4조 [임원 등] ① 위원회에 위원장, 부위원장 각 1인과 간사 2인을 둔다

② 위원장은 협회장이 추천한 위원 중에서 위원회가 선임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간사는 위원 중에서 위원장이 선임한다.

③ 위원장은 위원회를 통할하고 위원회를 대표한다.

④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 유고 시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⑤ 간사는 위원장의 지시에 따라 위원회의 사무를 집행한다.

제5조 [회의] ① 위원회는 위원장이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위원장은 협회장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는 때에는 위원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3분의 1의 출석으로 성립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협회장, 부협회장 및 상임이사는 위원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④ 위원회는 전문가 기타 관계자로부터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⑤ 위원회의 의사는 비공개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위원회가 공개결의를 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6조 [난민법률지원변호사단 구성] ① 위원회는 각 지방변호사회장의 추천 또는 회원의 지원을 받아 난민법률지원변호사단(이하 “변호사단”이라 한다)을 구성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변호사단을 구성한 후 그 명단을 협회장에게 보고하고, 협회장이 임명한다.

③ 단원 중에서 결원이 생긴 때에는 협회장이 그 후임자를 보충하여 임명한다. 다만, 그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제7조 [변호사단 임원 등] ① 변호사단에 단장, 부단장 각 1인과 간사 2인을 둔다.

② 변호사단장은 협회장이 임명한다.

③ 부단장은 단원 중에서 호선하고, 간사는 단장이 선임한다.

제8조 [변호사단 임기] 변호사단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제9조 [변호사단의 직무] ① 변호사단은 다음 각 호의 직무를 수행한다.

1. 난민신청단계 조력

2. 난민지위불인정처분 취소 등 행정소송 단계 조력

3. 난민 신청인의 법적 지위 보호를 위한 부수 업무 조력

4. 기존 출입국관리사무소 공무원의 허위면접조서 작성 관련 재신청 사건 조력

5. 기타 법률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된 경우

② 변호사단은 직무와 관련하여 직무 수행 전에 사업 내용을 난민이주외국인특별위원회에 보고하고 상임이사회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직무 수행에 긴급을 요할 때에는 사후 승인을 받을 수 있다.

③ 변호사단 단원의 구체적인 사건 수임 후 조력에 대한 자금 지원 등은 대한변협법률구조재단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10조 [수당 등] 위원회 위원 또는 소위원회 및 변호사단이 특정과제의 연구 또는 조사 등을 한 경우 이에 필요한 수당 또는 제반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1조 [준용] 이 규정이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관하여는 위원회운영규칙을 준용한다.

제12조 [존속기간] 위원회는 이사회가 이 규정의 폐지를 결의할 때까지 존속한다.

제13조 [시행세칙] 위원회는 업무와 관련된 필요한 사항을 시행세칙으로 정할 수 있다.

부 칙 (2020. 12. 28.)

제1조 [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경과조치] 이 규정 시행 전에 임명된 난민법률지원변호사단 단원은 이 규정에 의하여 임명된 것으로 본다.



대한변협 프로보노지원센터 규정

2020. 12. 28.

규정 제170호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회원들의 공익활동을 보편화하고 나아가 변호사단체의 기본권 인권 옹호와 사회정의 실현을 위한 대한변협 프로보노지원센터(이하 “센터”라 한다)의 설치 및 조직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프로보노지원센터 및 사무소의 설치] 프로보노 지원 등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대한변협 사협회(이하 “이 회”라 한다)에 센터를 두며, 센터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이 회 내에 사무소를 설치한다.

제3조 [센터의 기구] ① 센터에는 센터장 1인과 부센터장 1인 및 필요한 사무직원을 둘 수 있다.
 ② 센터장 및 부센터장은 협회장이 상임이사회의 심의를 거쳐 회원 중에서 임명한다.
 ③ 센터장은 센터를 대표하고 센터의 업무를 총괄한다.
 ④ 부센터장은 센터장을 보좌하고 센터장이 유고 시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⑤ 센터장과 부센터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임기가 만료된 경우 후임이 임명될 때까지 그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제4조 [센터의 업무] 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전국 지방변호사회의 공익활동 현황 조사 및 교류
2. 변호사-공익단체 1:1 프로보노 매칭
3. 프로보노 교육 · 멘토링 사업
4. 공익기관에의 변호사 활동 지원
5. 공익활동 활성화를 위한 제도 개선 연구
6. 공익인권연구 지원사업
7. 센터의 운영에 관한 사항
8. 기타 목적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5조 [운영위원회] ① 센터의 업무 집행을 위하여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 ② 위원회는 센터장과 부센터장 및 협회장이 회원 중 위촉하는 2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 외부인사를 위촉할 수 있다.
- ③ 위원장은 센터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부센터장이 되며, 간사는 위원장이 지명한다.
- 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유고 또는 사임으로 후임자를 임명 또는 위촉할 경우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제6조 [운영위원회의 회의] ① 위원회는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위원회는 제4조 각호에 정한 센터 업무에 관한 사항을 심의한다.

③ 위원회는 재적 위원 4분의 1 이상의 출석으로 개최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7조 [사업계획 수립] ① 위원회는 매 사업연도 개시 2개월 전까지 그 사업연도의 사업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는 제1항의 사업계획을 상임이사회의 심의에 붙여 이 회가 수립하는 매년도 사업계획과 예산안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8조 [지방변호사회 공익활동 현황 조사 및 교류] ① 센터는 각 지방변호사회(이하 “지방회”라 한다)와 긴밀한 교류 및 소통, 정보 공유 등을 위해 각 지방회와 간담회를 개최할 수 있다.

② 센터는 각 지방회 공익활동 현황 파악을 위해 각 지방회에 자료제공 또는 실태조사를 요청할 수 있다.

제9조 [공익활동 중개] 센터는 위원회에서 결정된 사항에 따라 회원과 공익단체 간의 공익활동을 중개하는 사무를 처리한다.

제10조 [중개대상] 센터를 통하여 공익활동을 중개 받을 수 있는 대상은 다음과 같다.

1. 이 회 소속 회원
2. 공익단체
3. 그 밖에 공익성이 있거나, 시민사회 역량 강화를 위해 필요하다고 위원회가 인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

제11조 [중개절차] ① 공익단체는 센터 홈페이지를 이용하여 회원의 공익활동을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경우 제출하여야 하는 서류는 다음과 같다.

1. 프로보노 요청서
2. 공익활동의뢰신고서

③ 제1항에 따라 공익단체가 센터를 통하여 변호사의 법률지원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④ 회원은 센터 홈페이지를 이용하여 공익활동에 지원할 수 있다.

⑤ 센터장은 공익단체와 공익활동에 지원한 회원을 개별적으로 중개하여 공익활동이 원활하게 진행되도록 하여야 한다.

⑥ 공익활동을 마친 회원은 이 회에 공익활동수행결과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12조 [프로보노 교육 및 멘토링 사업] ① 센터는 공익활동이 활성화되어 있지 않은 지방회를 방문하여 프로보노 관련 교육을 시행할 수 있다.

② 센터는 권역별 프로보노 멘토링 행사를 개최할 수 있다.

제13조 [공익기관에의 변호사 활동지원] ① 센터는 공익기관(노인·아동보호전문기관, 장애인권익옹호기관, 성폭력상담소 등)이 법률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해당 지역의 공익기관에 변호사 법률 자문 활동을 지원할 수 있다.



② 공익기관 법률 자문 활동을 실시한 변호사는 자문 건에 대한 보고서를 작성하여 센터에 제출하면 소정의 자문료를 지급받을 수 있다.

③ 공익기관 선정 및 변호사 활동지원에 관한 사항은 위원회 의결과 상임이사회의 승인을 거쳐 정한다.

제14조 [중간평가 및 점검] ① 법률지원 변호사는 본 지침에 따라 공익활동의 진행 상황 및 결과 등 자세한 사항을 이 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② 센터장은 법률지원 변호사의 활동 현황 전반에 관한 사항을 수시로 점검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에는 현장 실태조사를 시행할 수 있다.

③ 센터장은 점검 결과, 시정이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지원대상자에게 개선 및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제15조 [지원중단 및 지원비 환수] ① 센터장의 점검 또는 기타의 방법에 의하여 지원대상자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위원회의 의결과 상임이사회의 승인을 거쳐 해당 대상자에 대한 지원을 중지할 수 있다.

1. 신청내용 및 증빙서류가 허위 또는 기타 부정행위에 의하여 선정된 경우
2. 정당한 사유 없이 기간 내에 보고서 등을 제출하지 않은 경우
3. 제출한 보고서가 허위로 작성되었거나, 표절 등의 부정행위가 있는 경우
4. 지원대상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지원 취지에 반하는 행동을 하는 경우
5. 보고서 등 지원 결과물이 일정한 기준에 현저하게 미달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6. 사망·실종·형사소추 등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지원을 받을 수 없게 되는 경우

② 제1항의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위원회의 의결과 상임이사회의 승인을 거쳐 기 지급한 지원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내지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기 지급한 지원비 전액을 환수하여야 한다.

제16조 [연구지원] ① 센터는 공익·인권 분야에 대한 연구를 진행하는 회원 중에 연구비 지원이 필요하다고 선정된 회원에 대한 연구지원 관련 사무를 처리한다.

② 연구비 지원 대상은 한 명 또는 한 팀 이상으로 한다.

③ 연구비 지원 대상으로 선정된 회원은 해당 연구 종료 후 연구보고서를 작성하여 이 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④ 연구 결과 및 내용에 대하여 이 회에서 발표를 요구할 때, 연구비를 지원받은 회원은 이에 적극 응하여야 한다.

⑤ 연구 결과 및 내용을 각종 학술지 및 언론매체 등에 발표할 경우, 연구비를 지원받은 회원은 이 회의 지원에 의한 연구 결과임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7조 [기타사업] 센터는 위에서 규정한 사업 외에도 회원들의 공익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각종 사업을 기획하여 협회장에게 건의할 수 있다.

제18조 [비밀유지의무] 센터장, 부센터장, 위원들은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엄수하여야 한다.



제19조 [수당 등] ① 이회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센터장, 부센터장 및 위원에게 수당, 교통비, 기타 필요한 비용을 지급할 수 있다.

② 센터장에게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매월 일정액의 활동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③ 활동비 지급금액은 상임이사회의 심의를 거쳐 협회장이 결정한다.

제20조 [준용] 이 규정이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관하여는 위원회운영규칙을 준용한다.

제21조 [시행세칙] 이 규정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지침으로 정한다.

제22조 [존속기간] 센터는 이사회가 이 규정의 폐지를 의결할 때까지 존속한다.

부 칙 (2020. 12. 28.)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법관평가특별위원회규정

2016. 2. 15.

규정 제134호

개정 2017. 9. 11.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위원회운영규칙 제2조제3항에 의한 특별위원회로서 변호사의 법관평가에 관한 업무를 담당할 법관평가특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하고, 그 조직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기능] 위원회의 기능은 다음과 같다.

1. 법관평가업무의 방향설정 및 계획수립
2. 법관평가 기준, 방법, 절차 등의 결정
3. 각 지방변호사회에 설치된 법관평가위원회와의 역할 분담 및 조정
4. <삭 제> (2017. 9. 11.)
5. 각 지방변호사회의 법관평가자료 취합 및 분석
6. 공정하고 객관적인 법관평가방법의 개발 및 개선을 위한 조사·연구
7. 법관평가결과의 활용방안에 대한 조사·연구
8. 법관평가제도의 홍보 및 활성화 방안에 관한 조사·연구
9. 기타 이 제도의 목적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3조 [구성] ① 위원회는 10인 이상 3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은 협회장이 회원 중에서 임명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 법조계, 학계, 유관기관 등의 외부인사와 경험과 덕망이 있는 자 중에서 위촉할 수 있다.

③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제4조 [임원] ① 위원회에 위원장, 부위원장, 간사 각 1인을 둔다.

② 위원장은 협회장이 추천한 위원 중에서 위원회가 선임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간사는 위원, 사무차장 중에서 위원장이 선임한다.

③ 위원장은 위원회를 통할하고 위원회를 대표한다.

④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의 유고시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⑤ 간사는 위원장의 지시에 따라 위원회의 사무를 담당한다.

⑥ 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위원 또는 사무차장의 지위를 상실한 경우에는 그 임기가 만료된다.



제5조 [회의] ① 위원회는 위원장이 소집하고 위원장이 의장이 된다. 다만, 위원장이 선출되기까지는 협회장이 이를 소집한다. 위원장은 협회장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위원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4분의 1 이상의 출석으로 성립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협회장, 부협회장, 상임이사는 위원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④ 위원회의 의사는 비공개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위원회가 공개결의를 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6조 [평가방법 등] ① 법관평가는 각 지방변호사회가 주관하며, 회원이 전년도 12월 1일부터 당해 연도 11월 30일까지(이하 “평가 연도”라 한다) 수행한 사건을 담당 법관에 대하여 평가한다. (개정 2017. 9. 11.)

② 각 지방변호사회는, 소속 회원이 직접 자신이 수행한 사건의 재판을 담당 법관에 대하여 작성해서 제출한 법관평가표(이하 “평가표”라 한다)를 취합하여 집계·분석한 후 그 평가결과(이하 “평가결과”라 한다)를 공개하는 방법으로 법관평가를 수행하고, 협회가 정한 집계표(이하 “집계표”라 한다)에 평가결과를 입력하여 그 집계표를 협회에 송부한다.

③ 협회는 전국에서 취합한 자료를 종합·분석하여 그 평가결과를 공개하는 방법으로 법관평가를 수행한다.

④ 평가의 방법·기준·등급, 평가표 양식, 평가표 작성방법, 집계표 양식 등은 위원회가 지침으로 정하고, 각 지방변호사회는 평가의 전국적 통일을 기하기 위하여 이에 협조한다. (개정 2017. 9. 11.)

제7조 [평가결과의 공개] 평가결과의 공개 범위 및 절차에 관하여는 위원회가 지침으로 정하고, 각 지방변호사회는 자체적으로 그 지침을 정하거나 위원회가 정한 지침에 준하여 공개 범위 및 절차를 결정할 수 있다.

제8조 [수당] 협회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법관평가활동에 참여한 위원에게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9조 [비밀엄수] 위원 등 법관평가업무에 참여한 자 및 사무국 직원은 업무처리로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0조 [집계표 보관 관리] ① 각 지방변호사회가 작성하여 협회에 보낸 집계표는 스캔 등 전자적 형태로 변환하여 영구 보관하되, 이에 관한 컴퓨터 파일은 3개 이상의 지정된 저장매체에 분산 보관하고, 보안을 위해 비밀번호를 부여한다.

② 제1항의 자료 관리는 협회장의 책임 하에 평가팀장이 담당한다.

제11조 [지침의 제·개정] 위원회가 이 규정에 따라 정하거나 이를 개정하는 지침은 상임이사회의 심의 및 협회장의 승인을 거쳐 그 효력을 발생한다.

제12조 [기타] 이 규정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관하여는 위원회운영규칙을 준용한다.

제13조 [존속기간] 위원회는 이사회가 이 규정을 폐지할 때까지 존속한다.



부 칙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7. 9. 11.)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검사평가특별위원회규정

2016. 2. 15.

규정 제135호

개정 2017. 1. 31.
2018. 12. 28.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위원회 운영규칙 제2조 제3항에 의한 특별위원회로서 변호사의 검사평가에 관한 업무를 담당할 검사평가특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하고, 그 조직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기능] 위원회의 기능은 다음과 같다.

1. 검사평가업무의 방향설정 및 계획수립
2. 검사평가 기준, 방법, 절차 등의 결정 (신설 2017. 1. 31.)
3. 각 지방변호사회에 설치된 검사평가위원회와의 역할 분담 및 조정 (개정 2017. 1. 31.)
4. 각 지방변호사회가 행하는 검사평가에 대한 감독 및 관리 (신설 2017. 1. 31.)
5. 검사평가의 실시, 평가자료 취합 및 분석
6. 공정하고 객관적인 검사평가방법의 개발 및 개선을 위한 조사·연구
7. 검사평가결과의 활용방안에 대한 조사·연구
8. 검사평가제도의 홍보 및 활성화 방안에 관한 조사·연구
9. 기타 이 제도의 목적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3호, 제5~9호는 제2호, 제4호 신설에 따른 호번호 변경 2017. 1. 31.)

제3조 [구성] ① 위원회는 10인 이상 3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은 협회장이 회원 중에서 임명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 법조계, 학계, 언론계, 유관기관 등의 외부인사와 경험과 덕망이 있는 자 중에서 위촉할 수 있다.

③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④ 위원 중에서 결원이 생긴 때에는 그 후임자를 보충하여 임명 또는 위촉한다. 다만, 그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개정 2017. 1. 31.)

제4조 [임원] ① 위원회에 위원장 1인, 부위원장 3인, 간사 1인을 둔다.

② 위원장은 협회장이 추천한 위원 중에서 위원회가 선임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간사는 위원, 사무차장 중에서 위원장이 선임한다.

③ 위원장은 위원회를 통할하고 위원회를 대표한다.

④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의 유고 시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⑤ 간사는 위원장의 지시에 따라 위원회의 사무를 담당한다.

⑥ 임원의 임기 및 보선에 관하여는 제3조 제3항 및 제4항을 준용한다.

제5조 [회의] ① 위원회는 위원장이 소집하고 위원장이 의장이 된다. 다만, 위원장이 선출되기까지는 협회장이 이를 소집한다. 위원장은 협회장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위원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개정 2017. 1. 31.)

② 회의는 재적위원 4분의 1 이상의 출석으로 성립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협회장, 부협회장, 상임이사는 위원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④ 위원회의 의사는 비공개로 원칙으로 한다. 다만, 위원회가 공개결의를 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6조 [검사평가방법 등] ① 검사평가는 회원이 전년도 11월 1일부터 당해 연도 10월 31일까지(이하 “평가 연도”라 한다) 수행한 사건을 담당한 검사에 대하여 위원회가 정하는 방법으로 시행한다. (개정 2018. 12. 28.)

② 평가자는 검사평가표를 작성하여 서명한 후 수시로 평가자가 속한 지방변호사회에 송부하거나, 협회 또는 지방회의 온라인 검사평가 시스템에 접속하여 평가한다. (개정 2017. 1. 31.)

③ 각 지방변호사회는 소속 회원이 직접 자신이 수행한 사건을 담당한 검사에 대하여 작성해서 제출한 검사평가표(이하 “평가표”라 한다)를 취합하여 집계·분석한 후 그 평가결과(이하 “평가결과”라 한다)를 공개하는 방법으로 검사평가를 수행하고, 협회가 정한 집계표(이하 “집계표”라 한다)에 평가결과를 입력하여 그 집계표를 협회에 송부한다. (개정 2017. 1. 31.)

④ 협회는 각 지방변호사회로부터 취합한 자료를 종합·분석하여 그 평가결과를 공개하는 방법으로 검사평가를 수행한다. (신설 2017. 1. 31.)

⑤ 평가의 방법·기준·등급, 평가표 양식, 평가표 작성방법 등은 위원회가 지침으로 정하고, 각 지방변호사회는 평가의 전국적 통일을 기하기 위하여 이에 따른다. (신설 2017. 1. 31.)

제7조 [평가결과의 공개] 평가결과의 공개 범위 및 절차에 관하여는 위원회가 지침으로 정하고, 각 지방변호사회는 자체적으로 그 지침을 정하거나 위원회가 정한 지침에 준하여 공개 범위 및 절차를 결정할 수 있다. (개정 2017. 1. 31.)

제8조 [수당] 협회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검사평가활동에 참여한 위원에게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7. 1. 31.)

제9조 [비밀엄수] 위원 등 검사평가업무에 관여한 자 및 사무국 직원은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0조 [평가결과 자료의 보관 및 열람] ① 각 지방변호사회가 작성하여 협회에 보낸 집계표, 협회로 직접 제출된 검사평가표의 결과 분석자료는 스캔 등 전자적 형태로 변환하여 영구 보관하되, 이에 관한 컴퓨터 파일은 3개 이상의 지정된 저장매체에 분산 보관하고, 보안을 위해 비밀번호를 부여한다. (개정 2017. 1. 31.)

② 위 제1항 자료 관리는 협회장의 책임 하에 평가팀장이 담당한다. (개정 2017. 1. 31.)



③ 제1항의 자료는 「검사평가의 방법 및 평가결과의 공개 등에 관한 지침」에 따른 평가결과 공개가 필요한 경우 외에는 열람할 수 없다. 다만, 협회장은 필요한 경우 위원회의 자문 및 상임이사회의 심의를 거쳐 열람할 수 있다. (개정 2017. 1. 31.)

제10조의2 [검사평가표의 보관 및 폐기] ① 협회로 제출되거나 협회 온라인 시스템으로 접수된 검사평가표 원본은 평가 연도 종료일로부터 1년간 보관 후 폐기한다.

② 제1항의 검사평가표 중 평가자 정보기재 부분은 평가 연도 종료일로부터 3개월간 분리 보관 후 폐기한다.

③ 제1, 2항의 자료 가운데 종이로 된 문서는 잠금장치가 장착된 서류보관고에 보관하며, 전자적 형태의 컴퓨터 파일은 3개 이상의 지정된 저장매체에 분산 보관하고 보안을 위해 비밀번호를 부여한다.

④ 제1항 내지 제3항의 자료 관리는 협회장의 책임 하에 평가팀장이 담당한다.

(본조신설 2017. 1. 31.)

제11조 [지침의 제·개정] 위원회가 이 규정에 따라 정하거나 이를 개정하는 지침은 상임이사회의 심의 및 협회장의 승인을 거쳐 그 효력을 발생한다.

제12조 [준용] 이 규정이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관하여는 위원회운영규칙을 준용한다. (개정 2017. 1. 31.)

제13조 [존속기간] 위원회는 이사회가 이 규정을 폐지할 때까지 존속한다.

부 칙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7. 1. 31.)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8. 12. 28.)

제1조 [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경과조치] 이 규정 제6조 제1항 개정규정에 따른 2019년 평가연도는 2018년 12월 1일부터 2019년 10월 31일까지로 한다.



사법경찰평가특별위원회 규정

2024. 9. 9.

규정 제187호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위원회운영규칙 제2조 제3항에 의한 특별위원회로서 변호사의 사법경찰평가에 관한 업무를 담당할 사법경찰평가특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하고, 그 조직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기능) 위원회의 기능은 다음과 같다.

1. 사법경찰평가업무의 방향설정 및 계획수립
2. 사법경찰평가 기준, 방법, 절차 등의 결정
3. 각 지방변호사회에 설치된 사법경찰평가위원회와의 역할 분담 및 조정
4. 각 지방변호사회의 사법경찰평가자료 취합 및 분석
5. 공정하고 객관적인 사법경찰평가방법의 개발 및 개선을 위한 조사·연구
6. 사법경찰평가결과의 활용방안에 대한 조사·연구
7. 사법경찰평가제도의 홍보 및 활성화 방안에 관한 조사·연구
8. 기타 이 제도의 목적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3조 (구성) ① 위원회는 10인 이상 3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은 협회장이 회원 중에서 임명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 법조계, 학계, 유관기관 등의 외부인사와 경험과 덕망이 있는 자 중에서 위촉할 수 있다.

③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제4조 (임원) ① 위원회에 위원장, 부위원장, 간사 각 1인을 둔다.

② 위원장은 협회장이 추천한 위원 중에서 위원회가 선임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간사는 위원, 사무차장 중에서 위원장이 선임한다.

③ 위원장은 위원회를 통할하고 위원회를 대표한다.

④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의 유고시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⑤ 간사는 위원장의 지시에 따라 위원회의 사무를 담당한다.

⑥ 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위원 또는 사무차장의 지위를 상실한 경우에는 그 임기가 만료된다.



제5조(회의) ① 위원회는 위원장이 소집하고 위원장이 의장이 된다. 다만, 위원장이 선출되기까지는 협회장이 이를 소집한다. 위원장은 협회장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위원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4분의 1 이상의 출석으로 성립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협회장, 부협회장, 상임이사는 위원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④ 위원회의 의사는 비공개로 원칙으로 한다. 다만, 위원회가 공개결의를 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6조(평가방법 등) ① 사법경찰평가는 각 지방변호사회가 주관하며, 회원이 전년도 12월 1일부터 당해 연도 11월 30일까지(이하 “평가 연도”라 한다) 수행한 사건을 담당 사법경찰에 대하여 평가한다.

② 각 지방변호사회는, 소속 회원이 직접 자신이 수행한 사건을 담당 사법경찰에 대하여 작성해서 제출한 사법경찰평가표(이하 “평가표”라 한다)를 취합하여 집계·분석한 후 그 평가결과(이하 “평가결과”라 한다)를 공개하는 방법으로 사법경찰평가를 수행하고, 협회가 정한 집계표(이하 “집계표”라 한다)에 평가결과를 입력하여 그 집계표를 협회에 송부한다.

③ 협회는 전국에서 취합한 자료를 종합·분석하여 그 평가결과를 공개하는 방법으로 사법경찰평가를 수행한다.

④ 평가의 방법·기준·등급, 평가표 양식, 평가표 작성방법, 집계표 양식 등은 위원회가 지침으로 정하고, 각 지방변호사회는 평가의 전국적 통일을 기하기 위하여 이에 협조한다.

제7조(평가결과의 공개) ① 협회장은 사법경찰평가 결과를 회원 및 언론 등에 공개할 수 있다.

② 평가결과의 공개 범위 및 절차에 관하여는 위원회가 지침으로 정하고, 각 지방변호사회는 자체적으로 그 지침을 정하거나 위원회가 정한 지침에 준하여 공개 범위 및 절차를 결정할 수 있다.

제8조(수당) 협회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사법경찰평가활동에 참여한 위원에게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9조(비밀엄수) 위원 등 사법경찰평가업무에 참여한 자 및 사무국 직원은 업무처리로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0조(집계표 보관 관리) ① 각 지방변호사회가 작성하여 협회에 보낸 집계표는 스캔 등 전자적 형태로 변환하여 영구 보관하되, 이에 관한 컴퓨터 파일은 3개 이상의 지정된 저장매체에 분산 보관하고, 보안을 위해 비밀번호를 부여한다.



② 제1항의 자료 관리는 협회장의 책임 하에 평가팀장이 담당한다.

제11조 (지침의 제·개정) 위원회가 이 규정에 따라 정하거나 이를 개정하는 지침은 상임이사회
회의 심의 및 협회장의 승인을 거쳐 그 효력을 발생한다.

제12조 (기타) 이 규정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관하여는 위원회운영규칙을 준용한다.

제13조 (존속기간) 위원회는 이사회가 이 규정을 폐지할 때까지 존속한다.

부 칙 (2024. 9. 9.)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법제연구원규칙

2016. 2. 29.

규칙 제38호

개정 2017. 2. 27.
2019. 2. 25.
2021. 2. 22.
2023. 4. 3.
2024. 2. 26.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회칙 제32조의2제5항에 의하여 변호사제도 등 사법제도 전반의 법제를 조사·연구하기 위한 법제연구원(이하 “연구원”이라고 한다)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기능] ① 연구원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조사·연구한다.

1. 변호사제도에 관한 사항
 2. 변호사직역에 관한 사항
 3. 법조인 선발·양성제도에 관한 사항
 4. 법률시장 개방에 관한 사항
 5. 기타 사법제도 전반에 관한 사항 중 조사·연구가 필요하다고 운영위원회에서 인정한 사항
- ② 연구원은 협회장의 승인을 얻어 연구용역을 발주받아 조사·연구를 수행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연구용역을 의뢰할 수 있다.

제3조 [기구] ① 연구원은 원장 및 간사 각 1인, 운영위원 및 필요한 연구위원을 두며, 연구를 담당할 상근연구원을 둘 수 있다. (개정 2023. 4. 3.)

- ② 원장은 상임이사회의 심의를 거쳐 협회장이 임명한다.
- ③ 간사는 사무차장 중에서 협회장이 임명한다.
- ④ 상근연구원의 보수 및 기타 근무조건에 대해서는 원장의 의견을 들어 협회장이 정한다. (신설 2023. 4. 3.)

제4조 [운영위원회] ① 연구원은 원장의 제청으로 협회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는 8인 이상 12인 이내의 운영위원으로 구성되는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단, 총무이사 및 법제이사와 운영위원이었던 직전 법제이사는 운영위원회의 당연직 위원으로 한다. (개정 2019. 2. 25.)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연구원의 연구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2. 연구과제의 분담에 관한 사항
3. 연구과제의 중간보고에 관한 사항



4. 연구과제의 결과보고에 관한 사항

5. 기타 연구원의 운영에 관한 사항

③ 위원회 회의는 원장이 소집하고 주재하며, 의사록을 작성하여 원장이 서명한다.

④ 회의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출석으로 성립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원장은 위원회 회의 의사록을 협회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5조 [연구위원] ① 연구원에 10인 이내의 연구위원(이하 “책임 연구위원”이라 한다)을 두고, 필요한 경우 연구위원을 보좌할 연구위원(이하 “일반 연구위원”이라 한다)을 둘 수 있다.

② 책임 연구위원은 원장의 추천을 받아 협회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③ 일반 연구위원은 공모 또는 원장의 추천을 받아 협회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④ 책임 연구위원은 각 분야 연구책임자로서 연구원이 제안한 과제에 대하여 조사·연구하며, 필요한 경우 일반 연구위원과 함께 조사·연구를 할 수 있다.

제6조 [임기] ① 원장, 위원회 위원 및 책임 연구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협회장은 책임 연구위원이 연구를 수행하기에 부적절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상임이사회의 심의를 거쳐 책임 연구위원을 해임 또는 해촉할 수 있다.

② 일반 연구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 다만, 연구원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운영위원회의 결의를 거쳐 조사·연구기간으로 그 임기를 한정할 일반 연구위원을 둘 수 있다. (개정 2021. 2. 22.)

③ 협회장은 원장의 결원이 생긴 때에는 지체 없이 그 후임자를 임명 또는 위촉하여야 한다. 다만, 이 때의 임기는 잔여임기로 한다.

제7조 [직무] ① 원장은 연구원을 대표하고, 제2조제1항 각 호에 관한 조사·연구 업무를 총괄한다.

② 책임 연구위원은 연구원에서 선정한 과제에 대하여 조사·연구하고 보고서를 작성하여 연구원에 제출한다.

제8조 [연구비] ① 원장에게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매월 일정액의 연구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② 연구위원에게 예산의 범위 내에서 연구위원이 수행한 연구의 용도와 그 정도를 고려하여 연구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③ 연구비 지급금액은 상임이사회의 심의를 거쳐 협회장이 결정한다. 단, 상임이사회에서 승인 받은 총액 범위 내에서 건당 300만 원 이하의 금액으로서 세칙에서 정하는 연구비는 상임이사회의 심의를 거치지 않고 지급할 수 있다. (단서신설 2024. 2. 26.)

제9조 [연구위원의 의무] 연구위원은 연구를 수행함에 있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1. 연구계획서 작성

2. 중간보고서 작성 및 보고

3. 최종연구보고서 제출

4. 기타 연구 수행에 필요한 사항

5. 회의에서 알게 된 사항에 대한 비밀준수



제10조 [저작권] 연구위원이 제출한 연구보고서에 대한 저작권은 ‘대한변호사협회’에 귀속한다.

부 칙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경과규정] 이 규칙 시행 전의 법제연구원은 이 규칙에 의하여 설립된 것으로 본다.

부 칙 (2017. 2. 27.)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9. 2. 25.)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21. 2. 22.)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23. 4. 3.)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 임용된 상근연구원의 인사는 이 규칙에 의한 것으로 본다.

부 칙 (2024. 2. 26.)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우수 국회의원 선정 특별위원회 규정

2018. 10. 22.

규정 제159호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위원회운영규칙 제2조제3항에 따른 특별위원회로서 국회의 선진 정치문화 구현을 위해 부단히 노력하고 국가 발전과 국민 행복을 위해 헌신적인 입법 활동을 펼치는데 큰 기여를 한 우수 국회의원 선정을 위하여 우수국회의원선정특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하고, 그 조직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기능] 위원회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우수 국회의원 선정 업무의 방향설정 및 계획수립
2. 우수 국회의원 선정 기준, 방법, 절차, 공개 등의 결정
3. 우수 국회의원 선정 항목 개발
4. 기타 협회장이 자문한 사항

제3조 [구성] ① 위원회는 10인 이상 30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은 협회장이 상임이사회의 심의를 거쳐 협회장이 회원 중에서 임명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 상임이사회 심의를 거쳐 경험과 덕망이 있는 자 중에서 위촉할 수 있다.

제4조 [임원] ① 위원회에 위원장, 부위원장 및 간사 각 1인을 둔다.

② 위원장은 협회장이 추천한 위원 중에서 위원회가 선임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간사는 위원장이 임명한다.

③ 위원장은 위원회를 통할하고 위원회를 대표한다.

④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유고 시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⑤ 간사는 위원장의 지시에 따라 위원회의 사무를 담당한다.

제5조 [임기]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② 위원 중에서 결원이 생긴 때에는 그 후임자를 보충하여 임명 또는 위촉 한다. 다만, 그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제6조 [회의] ① 위원회는 위원장이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다만, 위원장이 선출되기까지는 협회장이 이를 소집한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출석으로 성립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협회장, 부협회장, 상임이사는 위원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④ 위원회의 의사는 비공개함을 원칙으로 한다. 그러나 위원회가 공개 결의를 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7조 [준용] 이 규정이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관하여는 위원회운영규칙을 준용한다.

제8조 [존속기간] 위원회는 이사회가 이 규정의 폐지를 결의할 때까지 존속한다.

부 칙 (2018. 10. 22.)

제1조 [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경과조치] 이 규정 시행 전에 개최한 우수국회의원선정특별위원회는 이 규정에 의하여 개최한 것으로 본다.



법질서위반 감독센터 규정

2021. 5. 3.

규정 제172호

제1조 [목적] 변호사는 기본적 인권 옹호와 사회정의 실현에 기여하는 공익성을 지닌 법률 전문직이다. 변호사가 이러한 공익적 역할에 충실하기 위해서는 건전한 수임질서를 통한 건강한 법률시장의 정착이 요구된다. 본 규정은 건전하고 건강한 수임질서를 정착시키고, 법률플랫폼 서비스 등 새로운 형태의 사업자들에 의한 불법적 법률시장 교란행위 및 유사법조지역의 변호사지역 침탈행위를 조사하고 감독관리하며, 유효한 대응조치를 취하기 위한 ‘법질서위반 감독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치하고, 그 업무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센터 및 사무소의 설치] 변호사법을 위반하거나 잠탈하는 행위, 비변호사가 영업으로서 하는 법률사무 광고행위 등 수임질서를 교란하는 행위, 비변호사 단체 등의 변호사 업무 잠식 행위, 기타 회원들의 권익을 침해하는 행위 등을 근절하고 대응하는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대한변호사협회(이하 “본 회”라 한다)에 센터를 두며, 센터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본 회 내에 사무소를 설치한다.

제3조 [센터의 기구] ① 센터는 센터장 1인과 부센터장 및 필요한 사무직원을 둘 수 있다.

② 센터장은 협회장이 임명한다.

③ 센터장은 센터를 대표하고 센터의 업무를 총괄한다.

④ 협회장은 센터장의 의견을 들어 부센터장을 임명할 수 있으며, 부센터장은 센터장을 보좌하고 센터장이 부재할 시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⑤ 센터장과 부센터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임기가 만료된 경우 후임자가 없을 때는 후임이 임명될 때까지 그 직무를 수행한다.

제4조 [센터의 업무] 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이하 “행위”의 주체와 업무수행의 “대상”은 변호사, 비(非)변호사, 개인 및 단체를 포함한다).

1. 변호사법 위반과 잠탈 행위에 대한 조사 및 대응

2. 변호사 지역의 수호와 확대에 관한 본 회의 정책 입안 및 필요한 감독

3. 변호사 수임질서 교란 행위·광고에 대한 조사 및 대응

4. 변호사 지역침탈 행위·광고에 대한 조사 및 대응

5. 비변호사 또는 변호사의 광고(특히 법률사무나 법률사건의 수임에 관하여 이를 알선·소개·유인하거나 변호사를 알선·홍보·소개하는 행위, 기타 법률사무 취급과 관련하여 이익분배 등에 관한 사항)에 대한 법령(본 회의 회칙, 규칙, 규정을 포함한다) 준수 여부 조사, 관리 및 감독

6. 기타 변호사의 권익을 위하여 센터에서 수행이 가능한 사항으로 상임이사회 의결을 받은 사항

제5조 [운영위원회] ① 센터의 업무 집행을 위하여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센터장, 부센터장과 협회장이 회원 중 위촉하는 5인 이상 2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각 센터장과 부센터장이 담당한다. 간사는 위원장이 지명한다.

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

제6조 [운영위원회의 회의] ① 위원회는 위원장이 필요한 경우 소집한다. 회의는 대면회의 이외에도 비대면 방법으로 수시로 협회장이 승인하는 온라인, 모바일 매체를 통하여 개최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센터 업무에 관한 의견들을 개진하고 필요한 안건들을 심의할 수 있다. 또한 이 회 집행부에 의견을 개진할 수 있고, 필요한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③ 위원회는 재적 위원 4분의 1 이상의 출석으로 개최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7조 [지방변호사회 업무 협조] 센터는 접수된 신고 사건의 원활한 처리를 위해 각 지방변호사회(이하 “지방회”라 한다)와 협력할 수 있고, 지방회에 신고된 사건의 검토와 조치를 요청할 수 있다. 센터는 이와 관련한 사항을 협회장에게 보고한다.

제8조 [업무 처리] ① 센터는 제4조의 업무에 따라 신고·접수되거나 감독한 사항(이하 “센터관할업무”라고 한다)과 관련하여 그 신고·접수 내지 감독의 대상자(이하 대상자, “변호사”, “비변호사”를 불문한다)에게 신속히 소명과 자료 제출 등(이하 “소명 등”이라고 한다)을 요구할 수 있다. 또한 협회장에게 해당 대상자에 대하여 협조 촉구, 주의나 시정, 경고등 필요한 조치를 요구하는 등의 공문 발송을 건의할 수 있다.

② 접수된 건에 대해 대상자가 소명 등을 거부하거나 그 내용이 중대한 경우 센터는 협회장에게 이를 보고하고, 협회장은 지방회 또는 본 회의 조사위원회, 징계위원회 등과 경찰, 검찰 등의 외부 기관에 필요한 조치를 의뢰할 수 있다.

③ 센터는 협회장에게 제4조의 업무 이행을 위하여 정부, 공공기관, 지자체, 민간단체, 기업 등을 상대로 협조 요구, 주의나 근절 촉구, 시정조치를 요구하는 등의 공문 발송을 건의할 수 있다.

④ 협회장은 센터가 보고한 내용의 상임이사회 회부를 지시할 수 있다.

⑤ 센터장은 기타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상임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개진하고 필요한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제9조 [부적합 또는 중첩 사안의 처리] ① 센터는 본 회의 업무와 무관한 사안이 신고·접수된 경우 이를 반려하거나 각하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센터관할업무 중 본 회의 상임이사, 위원회 등이 담당하는 것이 적합하다고 판단한 사안에 대하여는 소관 상임이사 또는 위원회로 이관할 것을 의결할 수 있다. 협회장은 이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을 지시할 수 있다.

제10조 [결과 통보] 센터는 제8조 내지 제9조에 따른 업무처리의 결과를 신고·접수한 당사자와 대상자에게 조속히 통보하도록 한다.

제11조 [수당 등] ① 센터장, 부센터장, 위원에게 직책에 따른 보수는 지급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② 본 회는 센터장, 부센터장 및 위원에게 수당, 교통비, 기타 필요한 비용을 지급할 수 있다. 위수당 등은 상임이사회회의 심의를 거쳐 협회장이 결정한다.

제12조 [적용순서 및 준용] 센터의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이 규정은 다른 규정에 우선하여 적용한다. 다만 이 규정이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관하여는 위원회 운영규칙을 준용할 수 있다.

제13조 [시행지침] 이 규정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지침으로 정할 수 있다.

제14조 [존속기간] 센터는 이사회가 이 규정의 폐지를 의결할 때까지 존속한다.

부 칙 (2021. 5. 3.)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SG 특별위원회 규정

2022. 10. 11.

규정 제179호

개정 2024. 9. 9.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ESG(Environment, Social, Governance) 경영 확대를 위한 법·제도 개선 및 연구를 위하여 위원회운영규칙 제2조 제3항에 따라 ‘ESG 특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하고, 그 조직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ESG 관련 법·제도화 추진
2. ESG 관련 연구 및 포럼 등 개최
3. ESG 관련 교육계획 수립
4. 기타 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

제3조 [조직] ① 위원회는 협회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는 10인 이상 7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24. 9. 9.)

②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회 임기 중 임명된 위원의 임기는 위원회 임기가 종료됨과 동시에 종료된다.

제4조 [임원] ① 위원회에 위원장 1인, 부위원장 2인, 간사 3인을 둔다. (개정 2024. 9. 9.)

② 위원장은 협회장이 추천한 위원 중에서 위원회가 선임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간사는 위원장이 위원 중에서 임명한다.

③ 위원장은 위원회를 통할하고 위원회를 대표한다.

④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사고가 있는 때에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⑤ 간사는 위원장의 지시에 따라 위원회의 사무를 담당한다.

제5조 [회의] ① 위원회는 위원장이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다만, 위원장이 선임되기 전까지는 협회장이 그 직무를 수행한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4분의 1 이상의 출석으로 성립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위원장이 결정한다.

③ 위원장은 위원회 회의 의사록을 협회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6조 [준용] 이 규정이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관하여는 위원회운영규칙을 준용한다.

제7조 [존속기간] 위원회는 이사회가 폐지를 의결할 때까지 존속한다.



부 칙 (2022. 10. 11.)

제1조 [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경과조치] 이 규정 시행 전에 개최된 ESG 특별위원회는 이 규정에 의하여 개최된 것으로 본다.

부 칙 (2024. 9. 9.)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대한변협 전문변호사회 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2024. 1. 8.

규정 제185호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대한변호사협회 산하 전문변호사회의 사업과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대한변호사협회가 전문변호사회 지원센터를 설치하며, 그 조직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전문변호사회의 종류] 이 규정에서의 전문변호사회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대한특허변호사회
2. 대한변협 채권추심변호사회
3. 대한변협 등기경매변호사회
4. 대한변협 세무변호사회
5. 대한변협 노무변호사회
6. 대한변협 이민출입국변호사회
7. 대한변협 도산변호사회
8. 대한변협 국공선변호사회
9. 대한변협 신탁변호사회
10. 대한변협 금융변호사회

제3조 [센터의 설치] 대한변호사협회 산하 전문변호사회의 사업과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대한변호사협회에 ‘전문변호사회 지원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둔다.

제4조 [센터의 기구] ① 센터에는 센터장 1인과 부센터장 1인 및 필요한 사무직원을 둘 수 있다.

② 센터장은 대한변호사협회 제1기획이사가 임하며, 부센터장은 대한변호사협회 제2기획이사가 임한다.

③ 센터장은 센터를 대표하며, 센터의 업무를 총괄한다.

④ 부센터장은 센터장을 보좌하고, 센터장이 부재할 시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5조 [센터의 업무] 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전문변호사회의 변호사 직역 확대 및 수호 활동에 관한 사항
2. 전문변호사회의 교육 및 연수프로그램에 관한 사항



3. 전문변호사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
4. 센터의 운영에 관한 사항
5. 기타 목적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6조 [전문변호사회의 운영] ① 전문변호사회는 그 목적에 부합하는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 ② 전문변호사회는 그 사업과 활동에 관한 의견을 센터에 전달할 수 있다.
- ③ 전문변호사회는 매년 12월에 다음 연도의 사업계획서를 센터에 제출하여야 한다.
- ④ 전문변호사회는 추진하고자 하는 사업 중 지출이 수반되는 사항에 관하여는 해당 사업의 최초 시행예정일 1개월 전까지 지출예산내역을 첨부한 사업계획서로써 센터에 승인을 요청하여야 한다.

제7조 [운영위원회 구성 등] ① 센터의 운영 및 그에 필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 ② 위원회는 센터장, 부센터장, 각 전문변호사회의 회장과 협회장이 회원 중 위촉하는 3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 ③ 위원장은 센터장이 되며, 운영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 ④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 한다.

1. 센터의 활동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2. 협회장이 요청한 사항
3. 기타 센터의 운영에 관한 사항

⑤ 이 규칙이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위원회운영규칙을 준용한다.

제8조 [센터의 운영] ① 센터는 전문변호사회가 제6조 제2항 및 제3항에 의해 전달하거나 제출한 내역을 협회장에게 보고한다.

- ② 센터는 전문변호사회가 제6조 제4항에 따라 승인을 요청한 내역을 검토한 후 협회장에게 보고한다.
- ③ 센터는 전문변호사회의 원활한 사업 진행을 위해 각 전문변호사회에 필요한 사항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9조 [수당 등] 센터장, 부센터장, 사무직원에게 직책에 따른 보수는 지급하지 않는 것으로 한다. 다만 대한변호사협회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직무수당 기타 업무수행에 필요한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0조 [시행지침] ① 이 규정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센터가 지침으로 정할 수 있다.

- ② 센터가 지침을 제정하거나 개정하는 경우 상임이사회의 심의와 협회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11조 [존속기간] 센터는 이사회가 이 규정의 폐지를 의결할 때까지 존속한다.

부 칙 (2024. 1. 8.)

제1조 [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경과규정] 이 규정 시행 전에 집행된 각 전문변호사회의 지원은 이 규정에 의하여 시행한 것으로 본다.



변호사 연수규칙

1983. 5. 21.

규칙 제11호

개정 1994. 2. 26. 1997. 2. 22.
1997. 10. 27. 1998. 6. 8.
2002. 11. 25. 2003. 10. 27.
2006. 2. 20.

전부개정 2007. 7. 23.

개정 2009. 2. 26. 2009. 10. 19.
2010. 2. 8. 2012. 2. 20.
2013. 2. 25. 2014. 2. 24.
2018. 2. 26. 2021. 2. 22.
2023. 4. 3.

제 1 장 총 칙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변호사법」 제85조 및 동 시행령 제17조의2에 의하여 실시하는 변호사연수교육과 변호사연수원(이하 “연수원”이라 한다)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변호사연수 : 공공성 있는 법률전문직으로서 전문성과 윤리의식을 제고하기 위한 일련의 교육
2. 윤리연수 : 변호사로서의 직업윤리의식 함양을 위하여 이루어지는 변호사연수
3. 전문연수 : 변호사로서의 업무수행에 필요한 법학이론, 실무지식 기타 이와 관련된 인문·사회·자연과학 지식의 습득·향상을 위하여 이루어지는 변호사 연수
4. 의무연수 : 「변호사법」 제85조에 의해 부과된 연수교육 의무의 이행으로 인정되는 변호사연수
5. 현장연수 : 연수교육 대상자의 직접 출석을 전제로 일정한 장소에서 이루어지는 변호사연수
6. 개별연수 : 일정한 장소의 출석을 전제로 하지 않고 비디오테이프, DVD 등 저장매체나 온라인을 통해 이루어지는 변호사연수
7. 연수주기 : 의무연수 이수시간의 산정기준이 되는 단위 기간

제3조 [연수의 종류] ① 변호사연수는 일반연수와 특별연수로 한다.

② 일반연수는 변호사 전원을 대상으로, 특별연수는 희망하는 변호사를 대상으로 실시한다.

③ 이 규칙에 의하여 인정되는 특별연수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자체연수 : 대한변호사협회(이하 “협회”라 한다)가 실시하는 변호사연수
2. 위임연수 : 협회의 위임에 따라 지방변호사회(이하 “지방회”라 한다)가 실시하는 변호사연수



3. 위탁연수 : 협회의 위탁을 받아 지방회 이외의 기관 또는 단체가 실시하는 변호사연수

4. 인정연수 : 협회의 인정을 받아 변호사연수로 포함되는 교육연수, 학술대회, 세미나 기타 강좌 등

제4조 [일반연수의 실시] ① 일반연수는 매년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실시한다.

② 변호사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일반연수에 참가하여야 한다.

제 2 장 의무연수

제5조 [현장연수의 원칙] ① 의무연수는 의무전문연수와 의무윤리연수로 하며, 현장연수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연수 장소, 방법, 효과 기타 회원들의 부담을 고려하여 일정한 범위를 정하여 개별연수를 의무연수로 인정할 수 있다.

② 개별연수로 갈음할 수 있는 의무연수의 범위, 의무연수로 인정되는 개별연수의 구체적인 내용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정으로 정한다.

제6조 [의무연수의 대상] ① 의무연수는 「변호사법」 제15조에 따라 협회에 개업신고를 한 60세 미만의 등록 회원을 대상으로 한다. 다만, 협회는 의무전문연수에 한하여 그 대상을 55세 미만으로 하향 조정할 수 있다. (개정 2021. 2. 22.)

② 변호사법 제31조 제3항의 공직퇴임변호사가 회원으로 등록하는 경우 전향에도 불구하고 개업 후 2년이 경과되는 날이 속한 연수주기까지 의무윤리연수의 대상으로 한다. 다만, 공직퇴임변호사가 공직 임명 전 55세까지 변호사로 등록하였던 자의 경우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설 2021. 2. 22.)

③ 질병, 출산, 배우자 출산, 장기 해외체류, 군복무 기타 연수교육을 받지 못할 정당한 사유가 있는 회원의 신청이 있는 경우 연수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협회장이 그 의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 또는 유예할 수 있다. (개정 2023. 4. 3.)

④ 전향의 경우 그 내용을 지체 없이 회원 및 지방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그 내용이 면제 또는 유예의 신청을 기각하는 경우에는 그 취지 및 이유를 명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1. 2. 22.)

제7조 [연수주기 및 의무연수이수시간] ① 연수주기는 매 홀수연도의 1월 1일부터 그 다음해의 12월 31일까지 2년으로 한다. (개정 2013. 2. 25.)

② 협회는 의무연수의 실효성을 확보하고, 회원의 연수기회를 늘리기 위해 연수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의무전문연수와 의무윤리연수의 전부 또는 일부의 연수주기를 조정할 수 있다. (개정 2010. 2. 8.)

③ 의무연수이수시간은 의무전문연수의 경우 1년 7시간을 기준으로, 의무윤리연수의 경우 1년 1시간을 기준으로 각 연수주기에 맞추어 비례적으로 계산한다. (단서삭제 2018. 2. 26.)

④ 기간의 계산에 관하여 이 규칙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민법의 일반적인 기준에 따른다.

제8조 [의무연수이수시간의 계산] ① 의무연수이수시간은 매 연수주기마다 10분 단위로 누적계산하며, 10분 미만의 이수시간은 포함시키지 않는다.



② 하나의 연수교육과정이 수회에 걸쳐 이루어진 경우 그 전체 시간을 기준으로 의무연수이수시간을 계산한다.

③ 각 연수주기의 중간에 개업신고를 한 회원의 의무연수이수시간 계산은 다음의 각 호의 예에 따른다.

1. 연수주기 내 개업일수가 1년 6개월 이상 2년 미만인 경우, 전문연수 12시간, 윤리연수 1시간으로 한다. (개정 2013. 2. 25.)

2. 연수주기 내 개업일수가 1년 이상 1년 6개월 미만인 경우, 전문연수 8시간, 윤리연수 1시간으로 한다. (개정 2013. 2. 25.)

3. 연수주기 내 개업일수가 6개월 이상 1년 미만인 경우, 전문연수 4시간, 윤리연수 1시간으로 한다. (신설 2013. 2. 25.)

4. 연수주기 내 개업일수가 6개월 미만인 경우, 윤리연수 1시간으로 한다. (신설 2013. 2. 25.)

④ 개업신고일로부터 연수주기 만료일까지 6월 미만이 남은 경우 당해 회원은 협회에 의무연수의 유예를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13. 2. 25.)

⑤ 연수주기 내에 55세가 되는 경우 당해 주기부터 전문연수를 면제하고, 60세가 되는 경우 의무연수를 면제한다. (개정 2021. 2. 22.)

1. ~ 2. <삭제> (2013. 2. 25.)

⑥ 연수주기 내에 휴업한 회원의 의무연수이수시간 계산은 연수주기 내의 실제 개업일수에 따라 제 8조 제3항 각 호의 예에 의하고, 휴업일이 속하는 연수주기의 연수의무는 재개업 시까지 유예한다. (개정 2013. 2. 25.)

1. ~ 2. <삭제> (2013. 2. 25.)

제9조 [의무연수이수시간의 확인] ① 의무연수의 대상인 회원은 자신의 의무연수이수시간을 확인할 수 있으며,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그 정정을 신청할 수 있다.

② 협회는 전항의 확인이 신속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 3 장 변호사연수의 위임 등

제10조 [위임연수] ① 위임연수를 실시하고자 하는 지방회는 전년도 11월 30일까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1. 1년간의 연수계획

2. 위임연수로 인정받고자 하는 개별 강좌의 세부내용 및 연수시간, 회원이 부담할 비용 등

3. 개별 강좌를 담당할 강사의 약력(강사가 선정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는 강사 선정 기준)

4. 출석관리 등 연수관리계획

5. 기타 협회에서 보완을 요청한 사항

② 협회는 전항의 신청이 있는 경우 연수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당



해 지방회에 특별연수를 위임할 수 있다. (개정 2010. 2. 8.)

③ 지방회는 제2항의 위임을 받은 이후에도 변호사연수의 목적 및 당해 지방회의 연수 여건 등을 고려하여 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내용을 변경할 수 있다. 다만, 그 변경에 따른 연수 실시 30일 전까지 제2항의 절차에 따른 위임을 받아야 한다.

④ 협회는 위임연수가 효율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강의 주제, 강의 자료 및 강사 관련 정보를 당해 지방회에 제공할 수 있다.

⑤ 위임연수를 실시하는 지방회는 개별 강좌별로 연수를 종료한 후 30일 이내에 이를 이수한 회원의 명부 및 각각의 이수시간 등을 기재한 위임연수실시결과보고서를 협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1조 [위탁연수] ① 위탁연수를 실시하고자 하는 기관 또는 단체는 연수 실시 30일 전까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고등교육법」 제4조에 따라 설립된 대학, 산업대학, 교육대학, 전문대학, 방송·통신대학의 경우에는 제1호의 기재를 생략할 수 있다.

1. 신청 기관 또는 단체의 설립연도와 설립목적, 활동개요
2. 위탁연수로 인정받고자 하는 강좌의 세부내용, 강의기간 및 강의시간 합계, 회원이 부담할 비용 등
3. 강좌를 담당할 강사의 약력(강사가 선정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는 강사 선정 기준)
4. 출석관리 등 연수관리계획
5. 기타 협회에서 보완을 요청한 사항

② 협회는 전항의 신청이 있는 경우 연수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당해 기관 또는 단체에 특별연수를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0. 2. 8.)

③ 위탁의 효력은 제1항의 신청서에 기재된 강좌에 한한다. 다만, 당해 강좌가 일정한 간격을 두고 반복되는 것일 때에는 2년 이하의 기간을 정하여 위탁할 수 있다.

④ 위탁연수를 실시하는 기관 또는 단체는 당해 강좌를 종료한 후 30일 이내에 이를 이수한 회원의 명부, 출결상황 및 이수시간 합계 등을 기재한 위탁연수실시결과보고서를 협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2조 [인정연수] ① 인정연수로 지정받고자 하는 교육연수, 학술대회, 세미나 기타 강좌를 개최하는 학술단체 등은 연수 실시 30일 전까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1. 신청한 학술단체 등의 창립년도, 창립목적, 구성원 및 활동 개요
2. 인정연수로 지정받고자 하는 학술대회 등의 주제, 발표자의 약력(발표자가 선정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는 발표자 선정 기준), 발표예정내용(발표예정내용이 확정되어 있지 않은 경우 그 내용의 개요), 학술대회 등의 기간 및 소요시간 합계, 회원이 부담할 비용 등
3. 출석관리 등 연수관리계획
4. 기타 협회에서 보완을 요청한 사항

② 협회는 전항의 신청이 있는 경우 연수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당해 학술대회 등을 인정연수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10. 2. 8.)

③ 인정의 효력은 제1항의 신청서에 기재된 학술대회 등에 한한다.

④ 인정연수를 실시한 학술단체는 당해 학술대회를 마친 후 30일 이내에 이를 이수한 회원의 명부,



출결상황 및 이수시간 합계 등을 기재한 인정연수실시결과보고서를 협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3조 [위임연수기관 등의 의무] ① 전 제3조의 규정에 따라 연수를 실시하는 지방회, 기관, 단체 또는 학술단체 등은 연수를 이수한 회원의 명부 기타 이수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3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② 협회는 전항의 지방회 등에 대해 회원의 연수교육 이수 여부의 확인을 위하여 필요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제14조 [위임 등의 철회] ① 위임연수, 위탁연수 또는 인정연수의 내용이 위임 등 당시 제출한 자료와 실질적으로 상이하거나 전조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는 위임 등을 철회할 수 있다.

② 전항의 철회의 효력은 이미 실시한 연수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제15조 [위임규정] 변호사연수의 위임, 위탁 및 인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정으로 정한다.

제16조 [사후교육인정신청] ① 위임, 위탁, 인정연수로 미리 지정 받지 않은 변호사연수를 실시한 기관이나 그 변호사연수를 받은 회원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 첨부하여 그 연수를 의무연수로 인정해 줄 것을 협회에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09. 2. 26.)

1. 연수를 실시한 기관, 단체 또는 학술단체 등의 개요
2. 연수일시, 장소 및 소요시간
3. 연수주제, 내용 및 연수방법
4. 연수를 담당한 강사의 약력 또는 발표자의 약력
5. 출석관리 등 연수결과보고서 또는 제1호의 기관 등에서 발급한 참석확인서 (개정 2009. 2. 26.)
6. 참석과 관련하여 회원이 지불한 비용 등
7. 기타 협회에서 보완을 요청한 사항

② 제3조에서 정한 변호사연수에 강사로서 참가한 회원 및 국내외 대학 또는 대학원의 교수·강사, 국내외 교육연수, 학술대회, 세미나 기타 단체에서 실시한 법률학 또는 인접학문 강좌의 강사 또는 발표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 첨부하여 그 활동을 의무연수로 인정해 줄 것을 협회에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10. 2. 8.)

1. 연수 실시 주체
2. 강의일시, 장소 및 소요시간
3. 강의주제 및 주요 내용
4. 제1호의 주체가 발급한 확인서
5. 기타 협회에서 보완을 요청한 사항

③ 국내외 대학 또는 대학원에서 수학한 회원은 수학한 대학 또는 대학원, 수학한 과정의 명칭과 기간, 수학한 과목과 그 주당 시간수를 기재하고 이에 관한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그 수학시간을 의무연수이수로 인정해 줄 것을 협회에 신청할 수 있다. (신설 2009. 2. 26.)

④ 협회는 제1항, 제2항, 제3항의 신청이 있는 경우 연수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당해 회원의 연수 전부 또는 일부를 의무연수로 인정할 수 있다. (개정 2010. 2. 8.)

제17조 <삭제> (2009. 10. 19.)

제 4 장 변호사연수원

제18조 [연수원의 설치] ① 협회는 자체연수를 실시하기 위하여 변호사연수원을 둔다.

② 연수원은 변호사와 변호사사무직원의 연수교육을 담당한다.

제19조 [연수원의 기구] ① 연수원에는 원장 1인, 부원장 1인 및 필요한 사무직원을 둔다.

② 원장 및 부원장은 이사회의 승인을 얻어 협회장이 임명한다.

③ 연수원에 연수부장 1인을 두되, 연수부장은 원장의 제청으로 협회장이 임명한다.

④ 원장, 부원장 및 연수부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제20조 [운영위원회] ① 연수원에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원장의 자문에 응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일반연수 및 자체연수의 기본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2. 일반연수 및 자체연수를 위한 교육과정의 수립에 관한 사항
3. 일반연수 및 자체연수의 실행계획 수립과 실시에 관한 사항
4. 기타 원장이 부의하는 사항

③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조사·심의하고 그 결과를 협회장에게 건의한다.

1. 의무연수의 면제 또는 유예에 관한 사항
2. 연수주기의 변경에 관한 사항
3. 변호사연수의 위임, 위탁, 인정에 관한 사항
4. 의무연수의 사후교육인정에 관한 사항
5. 기타 변호사연수와 관련하여 협회장이 부의한 사항

(신설 2009. 10. 19.)

④ 위원회는 위원장 1인과 부위원장 1인 및 원장의 제청으로 협회장이 위촉하는 10인 이상 3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 중에는 헌법재판소·사법연수원·대검찰청에서 추천하는 인사 각 1인을 포함한다. (제3항에서 이동 2009. 10. 19.)

⑤ 위원장은 연수원의 원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회에서 호선한다. (제4항에서 이동 2009. 10. 19.)

⑥ 위원회는 위원장이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제5항에서 이동 2009. 10. 19.)

⑦ 위원회에 간사를 두되, 연수원 연수부장이 겸임한다. (제6항에서 이동 2009. 10. 19.)

⑧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제7항에서 이동 2009. 10. 19.)

⑨ 기타 위원회 운영에 관하여는 위원회운영규칙 제5조 내지 제10조를 준용한다. (제8항에서 이동 2009. 10. 19.)

제20조의2 [소위원회] ① 위원회의 연수교육심사 업무를 보좌하기 위하여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는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소위원회의 위원장은 의사의 경과와 결과를 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신설 2009. 10. 19.)

제21조 [직무] ① 원장은 연수원을 대표하고 원무를 관장하며 소속 직원을 지휘·감독한다.

② 부원장은 원장을 보좌하고, 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연수부장은 원장의 지시에 따라 연수원의 사무를 담당한다.

제22조 [연수계획의 수립] ① 연수원장은 매 사업연도 개시 1개월 전까지 일반연수 및 자체연수의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협회장에게 제출하고, 교육이사는 제출된 기본계획을 교육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협회의 사업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② 연수원장은 제1항의 기본계획에 따라 위원회의 연수대상자, 연수분야와 과목, 실시장소와 기간 등 연수실행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실행계획은 교육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제 5 장 보 칙

제23조 [비용 등 부과] ① 협회는 제3장의 규정에 따른 변호사연수의 위임, 위탁, 지정과 관련하여 발생한 비용 등을 해당 지방회, 기관, 단체 또는 학술단체 등에 부과할 수 있다.

② 협회는 일반연수 및 자체연수에 참가한 회원에게 비용 등을 징수할 수 있다.

제24조 [특별회계] ① 연수실시와 관련하여 발생한 수입과 지출은 특별회계로 한다.

② 특별회계의 수입은 일반회계전입금, 특별회계 기타 수입으로 충당한다.

부 칙

① [시행일] 이 규칙은 1983. 6. 1.부터 시행한다.

②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에 실시한 변호사연수는 이 규칙에 의하여 실시한 것으로 본다.

부 칙 (1994. 2. 26.)

이 규칙은 1995. 1. 1.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97. 2. 22.)

이 규칙은 1997. 3. 1.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98. 6. 8.)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1998. 7. 1.부터 시행한다.

제2조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의 원장, 부원장 및 간사의 임기는 1999년도 정기총회일까지로 한다.

부 칙

이 규칙은 2003. 1. 1.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20일이 경과함으로써 그 효력이 발생한다.

부 칙 (2006. 2. 20.)

이 규칙은 공포 후 20일이 경과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7. 7. 23.)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2007. 7. 27.부터 시행한다.

제2조 [경과규정] ① 「변호사법」 제85조 및 동 시행령 부칙 제2조에 근거하여 2007년과 2008년의 의무연수이수시간은 통산하여 의무전문연수 7시간 이상, 의무윤리연수 1시간 이상으로 한다.

② 2008년에 개업신고를 한 회원의 의무전문연수는 그 개업신고일이 2008. 1. 1.부터 매 3월이 경과할 때마다 2시간씩 차감한다.

③ 개업신고일이 2008. 7. 1. 이후인 회원은 소속 지방회를 경유하여 협회에 의무연수의 유예를 신청할 수 있다.

부 칙 (2009. 2. 26.)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 [경과규정] 2008년에 65세가 된 경우, 2007년과 2008년의 의무연수이수시간은 면제된 것으로 본다.

부 칙 (2009. 10. 19.)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0. 2. 8.)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2. 2. 2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3. 2. 25.)

이 규칙은 2013. 1. 1.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4. 2. 24.)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경과규정] 이 규칙 시행 이전 제7조 제3항의 신규변호사연수를 2시간 이상 이수한 회원에게는 추가로 이수한 과목과 시간에 따라 전문연수 또는 윤리연수를 각 이수한 것으로 한다.

부 칙 (2018. 2. 26.)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21. 2. 22.)

- ① 제1조 [연수주기에 따른 적용례] 이 규칙의 효력은 제7주기 의무연수 시작 일인 2019. 1. 1.부터 소급하여 적용한다. 단, 이 규칙 제6조 제2항은 2021. 1. 1.부터 시행한다.
- ②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23. 4. 3.)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변호사시험 합격자 연수규칙

2012. 2. 20.

규칙 제35호

개정 2024. 2. 26.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변호사법 제21조의2 제1항, 제2항, 제9항 및 회칙 제43조의2에 따라 변호사시험 합격자의 연수(이하 “연수”)를 실시하는데 있어 구체적인 방법, 절차, 비용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 2. 26.)

제2조 [연수목표] 변호사시험 합격자의 연수는 변호사로서의 기본소양 함양과 실무능력의 향상을 도모함을 목표로 한다.

제3조 [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집합연수 : 연수 대상자의 직접 출석을 전제로 일정한 장소에서 이 회의 주관하에 이루어지는 연수
2. 위탁연수 : 법 제21조의2 제1항 제3호의 법률사무종사기관에 연수의 일부 또는 전부를 위탁하여 이루어지는 연수
3. 현장실습 : 법률사무종사기관, 법률사무소, 법원·검찰 등에서 실습의 형태로 이루어지는 연수
4. 개별연수 : 일정한 장소의 출석을 전제로 하지 않고, 비디오테이프, DVD 등 저장매체나 온라인을 통해 이루어지는 연수

제4조 [변호사시험합격자연수운영위원회] ① 이 회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조사·심의하기 위하여 변호사시험합격자연수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를 둔다.

1. 연수일정, 학사관리 등 연수운영에 관한 사항
2. 연수과목 및 연수방법에 관한 사항
3. 연수 이수 인정 여부의 결정에 관한 사항
4. 제3호의 결정에 대한 재심의 요청에 관한 사항
5. 위탁연수의 내용 및 절차에 관한 사항
6. 기타 협회장이 부의한 사항

② 위원회는 협회장이 위촉하는 10인 이상 3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 중에는 헌법재판소·법원행정처·법무부·사법연수원·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에서 추천하는 인사를 포함한다.

③ 위원장은 협회장이 추천한 위원 중에서 위원회가 선임하고, 부위원장과 간사는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위원들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보선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⑤ 기타 위원회 운영에 관하여서는 위원회운영규칙 제3조 내지 제9조를 준용한다.

제5조 [연수기간] ① 연수는 매년 1회 변호사시험 합격자 발표 후 이 회가 정하는 6개월의 기간 동안 실시한다.

② 연수가 개시된 이후에 연수를 신청하는 경우 신청일부터 연수종료일까지의 기간만 법 제21조의 제1항에 따른 연수기간으로 인정된다.

제6조 [연수신청 및 변경] ① 연수를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 서식의 연수신청서를 작성하여 연수개시 2주전까지 이 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연수 중에 군복무, 질병, 기타 장기간 연수 이수가 어려운 사유가 발생하거나 법률사무종사기관에서 법률사무에 종사하려는 자는 별지 제2호 서식의 중지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사유로 연수가 중지한 때까지 이수한 연수기간은 법 제21조의2 제1항에 따른 연수기간으로 인정되며, 이 회는 연수자에게 별지 제3호 또는 제8호 서식의 연수이수확인서를 발급한다. (개정 2024. 2. 26.)

제7조 [연수자명부] 이 회는 연수대상자에 대하여 별지 제4호 서식의 연수자명부를 작성하여 연수 관련 사항 등을 기록하여야 한다.

제8조 [연수과정] ① 이 회는 제2조의 연수목표에 부합하는 과목을 개설하고, 집합연수와 현장실습 등을 적절히 편성하는 등 체계적인 연수과정을 운영하여야 한다.

② 이 회가 운영하는 연수과정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한다.

1. 변호사 개업실무
2. 민사, 형사, 가사, 행정 등 일반 분야 실무
3. 기타 개설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전문 분야 실무

제9조 [연수의 이수] ① 연수자는 원칙적으로 이 회가 운영하는 연수과정을 모두 이수하여야 법 제21의2 제1항의 연수를 마친 것으로 한다.

② 연수 중에 예비군훈련, 질병, 기타 일시적으로 연수 이수가 어려운 사유가 발생한 경우 연수자는 사전에 별지 제5호 서식의 불참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하고, 이수하지 못한 시간은 개별연수 등 이 회가 정하는 별도의 방법에 따라 이수하여야 한다.

③ 위원회는 제2항의 경우 심의를 거쳐 보충연수 이수의 면제를 결정할 수 있다.

④ 이 회는 연수를 모두 이수한 자에게 별지 제6호 서식의 연수수료증을 발급한다.

⑤ 이 회는 연수를 이수한 자에게 별지 제3호 또는 제8호 서식의 연수이수확인서를 발급한다. (신설 2024. 2. 26.)

제10조 [연수자의 의무] ① 연수자는 이 회가 실시하는 연수를 성실히 이수하고 이 회의 지시



감독에 따라야 할 의무가 있다.

② 이회는 제1항의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지 않는 연수자에게 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연수의 일부 또는 전부를 이수하지 않은 것으로 결정할 수 있다.

③ 제2항 결정에 대한 이의가 있는 연수자는 별지 제7호 서식의 재심의신청서를 위원회에 제출하고 재심의를 요청할 수 있다.

제11조 [연수계획의 수립] 위원회는 매 사업연도 개시 1개월 전까지 연수기간, 연수과목 등 기본 연수계획을 수립하여 이 회에 제출하고, 제출된 기본연수계획은 상임이사회의 심의를 거쳐 협회장이 확정한다.

제12조 [비용 부과] 이회는 연수신청자에게 연수에 소요되는 비용을 징수할 수 있고, 비용은 상임이사회 심의를 거쳐 협회장이 정한다.

부 칙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24. 2. 26.)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연수자등록번호		변호사시험 합격자 연수신청서		
신	성명		영문성명	
	생년월일	-		
청 인	주소	()		
	연락처			
	이메일			
자격취득		제회 변호사시험 합격년월일		
변호사자격등록 번호(※해당자에 한함)			소속 지방회 (※해당자에 한함)	지방변호사회
변호사법 제21조의2 제1항 및 변호사시험합격자연수규칙 제6조 제1항에 따라 변호사시험 합격자 연수를 신청합니다. 년월일 신청인 ① 대한변호사협회장 귀하				
첨부서류	☐ 변호사시험합격증 ☐ 연수서약서 ☐ 이력서 ☐ 사진			



연 수 서 약 서

성 명 :

생 년 월 일 :

주 소 :

본인은 변호사법 제21조의2 제1항 및 대한변호사협회 변호사시험
합격자 연수 규칙 제10조 제1항에 따라 연수를 받는 동안 모든 준칙을 준수하고
연수 이수에 최선을 다할 것을 서약하며, 그러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어떠한
조치도 감수하겠습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인

대한변호사협회장 귀하

별지 제2호 서식 (개정 2024. 2. 26.)

연수자 등록번호	연 수 중 지 신 청 서		
성 명		생년월일	
주 소			
연락처		이메일	
연수중지 사 유			
변호사시험 합격자 연수 규칙 제6조 제2항에 따라 연수 중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인 대한변호사협회장 귀하			



별지 제3호 서식 (개정 2024. 2. 26.)

변호사시험 합격자 연수 이수 확인서

성 명 :

생 년 월 일 :

연수자등록번호 :

인 정 기 간 :

위 사람은 대한변호사협회가 실시하는 변호사시험 합격자 연수를
위 기간 동안 이수하였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대한변호사협회
협회장

별지 제4호 서식 (개정 2024. 2. 26.)

연수자등록번호		연 수 자 명 부				사 진 3.5×4.5cm	
연수 신청일	. . .	연 수 자 등록번호					
성 명		생년월일					
이메일		연락처					
주 소						. . .	
						. . .	
자격취득	제 회 변호사시험 합격 년 월 일						
연수 개시일	. . .	연수 종료일	. . .				
변 호 사 연 수	연수기간	연수기관		인정기간		비고	
	~			개월 일			
	~			개월 일			
	~			개월 일			
	~			개월 일			
	~			개월 일			
연수 중지사항	중지신청일	중지사유		인정연수기간		비고	
	. . .			총 개월 일			
	. . .			총 개월 일			
	. . .			총 개월 일			
기타사항							



별지 제5호 서식 (개정 2024. 2. 26.)

연수자 등록번호	연수불참신고서		
성명		생년월일	
주소			
이메일		연락처	
연수불참 사유			
연수불참 기간	~		
학점인정 신청	☐ 신청 ☐ 미신청		
변호사시험 합격자 연수 규칙 제9조 제2항에 따라 연수 불참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대한변호사협회장 귀하			
첨부 서류	☐ 병원진단서 ☐ 예비군훈련소집통지서 ☐ 기타		



별지 제6호 서식

연 수 수 료 증

성 명 :

생 년 월 일 :

연수자등록번호 :

연 수 기 간 :

위 사람은 대한변호사협회의 변호사시험 합격자 연수를 모두 수료하였
기에 이 증서를 수여합니다.

년 월 일

대한변호사협회
협회장



별지 제7호 서식 (개정 2024. 2. 26.)

연수자 등록번호	재심 의 신 청 서		
성 명		생년월일	
주 소			
이메일		연락처	
이의신청 사 유			
변호사시험 합격자 연수 규칙 제10조 제3항에 따라 변호사시험합격자운영위원회의 연수 미이수 결정에 대하여 재심의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인 대한변호사협회장 귀하			
첨부 자료	(재심의 신청을 소명하는 자료 첨부)		



별지 제8호 서식 (신설 2024. 2. 26.)



KOREAN BAR ASSOCIATION

Certificate of Completion

Is presented to:

Date of Birth:

Training Registration Number:

For completing

**The Training and Education for Whom Has Passed
the National Bar Exam**

During the period of

President

KOREAN BAR ASSOCIATION



개별연수방법등에관한규정

2007. 7. 16.

규정 제78호

개정 2012. 2. 20.
2014. 2. 3.
2020. 12. 28.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대한변호사협회(이하 “협회”라 한다) 변호사연수규칙 제5조에 따라 의무연수로 인정될 수 있는 개별연수의 범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개별연수의 방법] 변호사연수규칙 제5조에 따라 의무연수로 인정될 수 있는 개별연수의 방법은 협회가 인터넷을 이용하여 실시하는 온라인 교육에 한한다. 단, 변호사연수규칙 제12조 소정의 절차에 따라 연수교육심사소위원회의 인정연수 지정을 받은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단서신설 2020. 12. 28.)

제3조 [확인서 제출] 전조의 방법으로 개별연수를 받은 회원은 연수를 마친 후 1월 이내에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한 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4조 [개별연수의 인정범위] ① 개별연수의 방법으로 인정되는 의무연수이수시간은 연간 의무전문연수 7시간과 의무윤리연수 1시간으로 정하며, 각 연수주기에 맞추어 비례적으로 계산한다.

(개정 2012. 2. 20.)

② 삭제 (개정 2014. 2. 3.)

③ 연수교육심사위원회는 전조의 규정에 따라 회원이 제출한 확인서를 심사하여 그 회원이 받은 개별연수 시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의무연수이수시간으로 인정할 수 있다. (개정 2012. 2. 20.)

④ 연수교육심사위원회가 전항의 심사를 완료한 때에는 지체없이 그 결과를 당해 회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별연수 시간의 일부만을 의무연수이수시간으로 인정한 경우에는 그 이유도 명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2. 2. 20.)

⑤ 전항의 통지에 대해 이의가 있는 회원은 15일 이내에 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한 이의신청서를 협회에 제출하여야 있다. (개정 2012. 2. 20.)

제5조 [개별연수의 비용 등] 협회는 제2조의 개별연수를 받고자 하는 회원에게 일정한 비용 등을 징수할 수 있다.



부 칙

이 규정은 2007. 7. 27.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2. 2. 20.)

이 규정은 2012. 1. 1.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4. 2. 3.)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20. 12. 28.)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1호 서식

개별연수교육 이수 확인서

회 원	성명(한글)		한 자	
	등록번호		소 속	지방변호사회
강 좌	강좌번호		시 간	시간 분
	강좌명		기 간	. . . ~ . . .
	강사이름			

☐ 강좌내용(요약) ※ 별지사용 가능

상기 회원은 위와 같이 협회에서 실시한 개별연수교육을 이수하였음을 확인합니다.

20 . . .

_____ (서명 또는 날인)



별지 제2호 서식

이 의 신 청 서

회 원	성 명 (한글)		한 자	
	등 록 번 호		소 속	지방변호사회
강 좌	개별연수 이수시간			
	의무연수 인정시간			

☐ 이의사유 ※ 별지사용 가능
☐ 소명자료 ※ 별지사용 가능

상기 회원은 위와 같은 사유로 이의신청서를 제출합니다.

20 . . .

_____ (서명 또는 날인)



법인지배를위한변호사대회규정

1991. 2. 11.

규정 제32호

개정 2020. 2. 10.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회칙 제2조의 목적사항을 수행하기 위하여 “법의 지배를 위한 변호사대회”(이하 “대회”라 한다)를 개최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실시] 대한변호사협회(이하 “협회”라 한다)는 협회 창립기념일을 전후하여 매년 1회 대회를 개최한다.

제3조 [행사의 내용] ① 협회는 입법, 사법, 행정 등 모든 분야에 걸쳐 법의 지배실현을 위한 과제를 검토·분석하고, 그에 대한 대책을 연구·발표한다.

② 대회는 연구회, 토론회, 심포지엄 및 기타 필요한 행사를 할 수 있다.

제4조 [기구] ① 협회는 대회의 준비와 집행을 위하여 개최 4개월 전까지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된 집행위원회를 조직하여야 한다.

② 집행위원회의 위원은 협회장이 회원 중에서 위촉한다.

③ 집행위원의 임기는 선출된 때로부터 위 대회의 사무가 완결될 때까지로 한다.

④ 전국지방변호사회장협의회 회장은 집행위원회의 위원장이 되며, 전국지방변호사회장협의회 간사는 부위원장이 된다. (개정 2020. 2. 10.)

제5조 [회의] ① 위원회는 위원장이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장은 협회장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소집요구가 있을 때에는 지체 없이 소집하여야 한다.

③ 회의는 재적위원 4분의 1 이상의 출석으로 성립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6조 [집행내용 등의 결정] ① 대회의 개최일, 개최지, 행사의 주제 및 내용 등은 집행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협회장이 결정한다.

② 연구회, 토론회 등의 주제에 관하여 회원은 언제든지 집행위원회에 그 의견을 개진할 수 있다.

제7조 [참가비용의 부담] 협회는 대회에 요하는 비용의 일부를 참가회원에게 부담하게 할 수 있다.

부 칙 (1991. 2. 11.)

이 규정은 1991. 3. 1.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20. 2. 10.)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한국법률문화상규칙

1983. 5. 21.

규칙 제12호

전부개정 1998. 6. 8.

개정 2001. 10. 29.
2016. 2. 29.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이 회가 수여하는 한국법률문화상의 추천, 심사, 결정 및 시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취지] 한국법률문화상은 법조실무나 법률학 연구를 통하여 인권옹호, 법률문화의 향상 또는 법률문화교류에 현저한 공로가 있는 자에 대하여 그 업적을 치하하고 공로를 현양하기 위하여 수여한다.

제3조 [운영위원회] ① 이 회에 한국법률문화상의 시상에 관한 준비와 집행을 위하여 한국법률문화상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고 한다)를 둔다.

제4조 [위원의 위촉] ① 협회장은 변호사 중에서 11인 이내의 위원을 위촉한다. 다만, 법률학 교수, 판사, 검사 및 사회저명인사 중 5인 이내의 위원을 위촉할 수 있다. (개정 2016. 2. 29.)

② 협회장이 위원을 위촉할 때에는 상임이사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제5조 [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장은 협회장이 추천한 위원 중에서 선임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개정 2001. 10. 29.)

②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를 소집하여 그 의장이 된다.

③ 부위원장은 위원장이 유고 시에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④ 위원회의 업무를 보조하기 위하여 협회장이 추천하는 직원을 간사로 둘 수 있다.

⑤ 위원의 임기는 수상자를 결정하여 시상할 때까지로 한다.

제6조 [수상후보자 추천] ① 협회장은 법조인(각 해당 기관도 포함) 및 법학회, 대학 기타 유관기관이 추천마감일 전에 추천한 수상후보자 중 상임이사회의 심의를 거쳐 명단을 위원회에 제출한다. (개정 2001. 10. 29.)

② 전항의 경우 추천권자는 수상후보자 추천에 있어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1. 추천서
2. 후보자의 공적설명서 및 소명서류
3. 수상후보자의 이력서 및 반명함판 사진 2매

제7조 [수상자 결정] ① 위원회는 협회장이 추천한 수상후보자 중에서 수상자 1인을 결정한다.

② 수상자의 결정은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한다. 다만, 가



부동수인 때에는 위원장이 결정권을 가진다.

제8조 [결과통지] 위원장은 심사결과를 지체 없이 협회장에게 회보하여야 한다.

제9조 [수당] 위원에게는 상임이사회의 심의를 거쳐 상당한 수당을 지급하여야 한다.

제10조 [수상자발표] 협회장은 위원회로부터 수상자결정통지를 받은 때에는 즉시 이를 공표하여야 한다. (개정 2001. 10. 29.)

제11조 [비밀준수 등] 수상후보자의 추천 및 심사와 수상자 결정에 관한 사항은 비밀로 하며, 관련서류는 일체 공표하지 않는다.

제12조 [특별회계] ① 이 상의 수여에 필요한 수입과 지출은 특별회계로 한다.

② 이 특별회계의 기금은 회원의 찬조금과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금으로 충당한다.

③ 협회장은 이 상을 시상하는데 필요한 기금이 조성될 때까지 매년 상당액을 일반회계에서 전입시켜야 한다.

부 칙

① [시행일] 이 규칙은 1983. 6. 1.부터 시행한다.

②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에 서울제일변호사회 및 서울통합변호사회가 시행한 한국법률문화상은 이 규칙에 의하여 시행한 것으로 본다.

③ [경과조치] 1983년도의 시상일과 제4조, 제5조, 제9조, 제12조의 기한 등은 협회장이 상임이사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한다.

부 칙

이 규칙은 1984. 2. 26.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칙은 1988. 1. 1.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칙은 1990. 3. 1.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98. 6. 8.)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1. 10. 29.)

이 규칙은 2001. 10. 29.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6. 2. 29.)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지식재산연수원규정

2015. 10. 19.

규정 제132호

개정 2018. 2. 5.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지식재산 전문변호사의 집중적인 양성을 목표로 하여 회원들의 지식재산 지식 및 소송능력 강화를 도모하고자 지식재산 관련 제도를 연구하고 특허 등 지식재산에 관한 연수교육 실시를 위한 지식재산연수원(이하 “연수원”이라고 한다)을 설치 및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지식재산연수원의 설치] 협회는 특허 등 지식재산 관련 연수를 실시하기 위하여 지식재산연수원을 둔다.

제3조 [연수원의 기구] ① 연수원에는 원장 1인, 부원장 1인 및 필요한 사무직원을 둔다.

② 원장 및 부원장은 협회장이 임명한다. (개정 2018. 2. 5.)

③ 연수원에 연수부장 1인을 두되, 연수부장은 원장의 제청으로 협회장이 임명한다.

④ 원장, 부원장 및 연수부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제4조 [운영위원회] ① 연수원의 준비와 집행을 위하여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고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원장의 자문에 응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지식재산 관련 제도 연구에 관한 사항
2. 지식재산 전문변호사의 교육 및 양성에 관한 사항
3. 지식재산 관련 연수의 실행계획 수립과 실시에 관한 사항
4. 기타 원장이 부의하는 사항

③ 위원회는 위원장 1인과 부위원장 1인 및 원장의 제청으로 협회장이 위촉하는 10인 이상 3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④ 위원장은 연수원의 원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연수원 부원장이 되며, 간사는 연수부장이 된다.

⑤ 위원회는 위원장이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⑥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⑦ 이 규정이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관하여는 위원회운영규칙을 준용한다.

제5조 [직무] ① 원장은 연수원을 대표하고 원무를 관장하며 소속 직원을 지휘·감독한다.

② 부원장은 원장을 보좌하고, 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연수부장은 원장의 지시에 따라 연수원의 사무를 담당한다.

제6조 [연수계획의 수립] ① 연수원장은 매 사업연도 개시 1개월 전까지 연수의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협회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연수원장은 제1항의 기본계획에 따라 위원회의 연수대상자, 연수분야와 과목, 실시장소와 기간 등 연수실행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제7조 [비용 등 부과] 협회는 연수에 참가한 회원에게 비용 등을 징수할 수 있다.

제8조 [특별회계] ① 연수실시와 관련하여 발생한 수입과 지출은 특별회계로 한다.

② 특별회계의 수입은 일반회계전입금, 특별회계 기타 수입으로 충당한다.

부 칙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8. 2. 5.)

이 규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변호사 사무대리 실무교육 등에 관한 규정

(2025. 02. 06. 규정제목개정)

2021. 10. 5.

규정 제174호

전부개정 2025. 2. 6.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세무사법 제20조의2, 동법 시행령 제33조의6 및 변호사 연수규칙 제20조 제2항에 의하여 협회가 실시하는 자체연수 중 변호사 사무대리 실무교육(이하 “실무교육”)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적용] 실무교육은 세무사법, 동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 규정된 사항 이외에는 이 규정에 의한다.

제3조 [교육기관] 이 규정에 의한 연수는 변호사연수원에서 실시한다.

제4조 [교육대상] 협회 회원 중 사무대리업무 등록이 필요한 자를 원칙으로 하며, 상임이사회의 심의를 거쳐 협회장이 별도로 정할 수 있다.

제5조 [변호사연수원 운영위원회] ① 변호사연수원 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실무교육의 기본계획 수립
2. 교육과정의 수립에 관한 사항
3. 실행계획 수립과 실시에 관한 사항
4. 교육 수료 요건 등에 관한 사항
5. 기타 변호사연수원장(이하 “원장”)이 부의한 사항

② 원장은 제1항의 운영위원회에서 심의한 사항에 따라 연수 과목, 실시장소, 연수방법, 연수기간, 이수요건 등 연수실행 계획을 수립하여 협회장에게 건의한다.

제6조 [수료증 발급 및 재발급] ① 협회는 운영위원회에서 정한 수료 요건을 이수한 회원에 대하여 별지 제1호 서식의 수료증을 발급하고, 그 사실을 별지 제2호 서식의 실무교육 수료증 발급대장에 기재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발급받은 수료증을 분실하거나 훼손하여 재발급을 요청하는 경우 수료증을 재발급할 수 있고, 그 사실을 별지 제3호 서식의 실무교육 수료증 재발급대장에 기재하여야 한다.

제7조 [결과보고] 원장은 매 연수과정 종료 후 협회장에게 실무교육 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제8조 [강사료 등의 특칙] 회의비, 수당등에관한지침에도 불구하고 운영위원회에서 강사료 등



을 심의하여 협회장에게 건의할 수 있다.

제9조 [비용 등 부과] 협회는 교육 대상자에게 비용 등을 징수할 수 있고, 비용 등은 상임이사회 심의를 거쳐 협회장이 정한다.

제10조 [시행지침] ① 이 규정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운영위원회가 지침으로 정할 수 있다.

② 운영위원회가 지침을 제정하거나 개정하는 경우 상임이사회의 심의와 협회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부 칙 (2021. 10. 5.)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25. 2. 10.)

제1조 [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경과규정] 이 규정 시행 전에 실시한 실무교육은 이 규정에 의하여 시행한 것으로 본다.



별지 제1호 서식

세무대리 제 - 호

수료증

변호사 성명
생년월일

위 사람은 세무사법 제20조의2 제3항에
의거하여 대한변호사협회가 실시한 『변호사 세무
대리 실무교육』 과정을 수료하였으므로 이 증서를
드립니다.

년 월 일



별지 제2호 서식

실무교육 수료증 발급대장

수료증번호	성명	생년월일	등록번호	발급일	비고

[illegible]



변호사 광고에 관한 규칙

2024. 10. 21.

규칙 제45호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변호사법 제23조, 제24조 및 대한변호사협회 회칙 제44조 제5항, 제57조에 의하여 변호사·법률사무소·법무법인·법무법인(유한)·법무조합·합동법률사무소·공동법률사무소(이하 “변호사등”이라 한다)의 광고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변호사등 광고”(이하 “광고”)라 함은 변호사등에 관한 소개·홍보, 변호사등이 수행하는 일체의 직무에 관한 소개·홍보, 그 밖의 소비자와 변호사등을 연결하는 일체의 수단과 방법을 말한다.

제3조 (광고의 원칙) ① 변호사등은 자신의 이름으로 광고를 하여야 한다.

② 변호사등은 자기가 아닌 변호사·비(非)변호사, 개인·단체, 사업자 등(이하 “타인”이라 한다)의 영업이나 홍보 등을 위하여 광고에 타인의 성명, 사업자명, 기타 상호 등을 표시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변호사등은 타인과 이해관계를 함께하거나 함께하는 것으로 오해할 수 있는 광고 행위(제3자에게 위탁하거나 함께하는 행위를 포함한다)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변호사등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비변호사의 행위에 협조하여서는 아니된다.

1. 법률상담 또는 사건을 소개, 알선 또는 유인하기 위해 변호사등과 소비자를 연결하는 행위
2. 변호사 보수에 관하여 견적 또는 비교하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행위

제4조 (광고의 방법과 내용) ① 변호사등은 변호사의 품위를 훼손하는 방법으로 광고할 수 없다.

② 변호사등은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방법으로 광고할 수 없다.

③ 변호사등은 사실을 과장하거나 허위사실로 광고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변호사등은 승소율이나 석방률, 결과 예측 등 사건에 대한 부당한 기대를 가지도록 하는 내용의 광고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⑤ 변호사등은 변호사 등이 아닌 제3자가 사건 또는 법률상담을 수행한다고 광고할 수 없다.

⑥ 기타 법령, 변호사윤리장전 및 대한변호사협회 및 지방변호사회의 회규에 위반되는 내용의 광고를 할 수 없다.



제5조 (인공지능 광고의 제한과 기준) ① 변호사등은 협회가 인증하고 책임변호사가 감독하는 인공지능 등 프로그램(지능정보화 기본법에 따른 지능정보를 포함한다)외에는 이를 업무에 이용한다는 사실을 광고할 수 없다.

② 변호사등은 소비자가 인공지능 등 프로그램을 직접 사용하게 하거나 소비자에게 인공지능 등 프로그램을 연결하는 방식·내용의 광고를 할 수 없다.

③ 제1항에 따른 협회의 인증기준 등은 별도의 규정에 따른다.

제6조 (공직재직 사실 표시의 제한) 변호사등은 법원이나 검찰 등의 기관에 재직한 사실을 바탕으로 사건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다고 오인될 만한 광고를 할 수 없다.

제7조 (명칭 등의 사용 기준) 변호사등은 범죄명 등을 명시한 ‘○○변호사’ 등 품위를 훼손하거나 공정한 수임질서를 저해할 수 있는 명칭(호칭, 홈페이지나 URL 등의 전자정보를 포함한다)을 사용하는 광고를 할 수 없다.

제8조 (구체적 사항의 위임) 본 규칙에 관한 구체적 사항은 규정으로 정한다.

부 칙 (2024. 10. 24.)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변호사 광고에 관한 규정

(2021. 5. 3. 규정제목개정)

1993. 6. 28.

규정 제44호

개정	1994. 3. 29.	1998. 5. 25.
전부개정	2001. 7. 9.	
개정	2004. 2. 9.	2004. 11. 29.
	2006. 2. 13.	
전부개정	2007. 2. 5.	
개정	2009. 9. 14.	
전부개정	2016. 6. 27.	
개정	2016. 12. 30.	
전부개정	2021. 5. 3.	
개정	2022. 10. 11.	2025. 2. 6.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변호사법 제23조, 제24조 및 대한변호사협회 회칙 제44조 제5항, 제57조, 변호사 광고에 관한 규칙 제8조에 의하여 변호사·법률사무소·법무법인·법무법인(유한)·법무조합·합동법률사무소·공동법률사무소(이하 “변호사등”이라 한다)의 광고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5. 2. 6.)

제2조 [정의] ① 변호사등이 다음 각 호의 행위와 관련하여 금전·기타 경제적 이익을 제공할 경우, 이는 그 명칭과 형식을 불문하고 광고로 보며 본 규정이 적용된다. (개정 2025. 2. 6.)

1. 기사 작성 (보도자료 배포를 포함한다) (개정 2025. 2. 6.)
 2. 인터뷰 게재
 3.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출연
 4. 방송 출연
 5. 상훈
 6. 제3자의 온라인 게시물 작성(제3자에게 온라인 게시물 작성을 위한 자료를 제공하는 행위를 포함한다) (신설 2025. 2. 6.)
- ② 위 제1항 외의 방법으로서 광고의 실질을 가진 경우에는 본 규정의 대상으로 한다. (신설 2025. 2. 6.)
- ③ “광고책임변호사”라 함은 법무법인·법무법인(유한)·법무조합·합동법률사무소·공동법률사무소(이하 “법무법인등”)가 법무법인등에 관한 광고를 할 경우 구성원 중 광고 담당자로 지정된 변호사를 말한다.

제3조 [광고의 주체] ① 아래 각 호의 행위에 대해서는 변호사 광고에 관한 규칙 제3조 제1항



에 따라 변호사가 자신의 이름으로 광고한 것으로 보아 회규의 적용 대상이 된다. (개정 2025. 2. 6.)

1. 제3자가 변호사등이 직접 작성한 글 등의 광고를 변호사등이 개설한 홈페이지 기타 인터넷 사이트에 게시하는 경우 (신설 2025. 2. 6.)
2. 제3자가 변호사등이 제1호에 따른 요청이 있었음을 표시하여 인터넷 사이트에 게시하는 경우 (신설 2025. 2. 6.)

② 변호사등 광고에는 광고 주체인 변호사 또는 광고책임변호사의 성명을 광고마다 표시하여야 한다. 다만, 사무소 소재지에 위치하면서 사무소 명칭, 연락처만을 표시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개정 2025. 2. 6.)

제4조 [광고내용 등의 제한] 변호사등은 스스로 또는 타인을 통하여 다음과 같은 광고를 할 수 없다.

1. 변호사등의 업무 및 경력과 사건수행 건수, 사건수행 시간 등에 관한 객관적 사실에 부합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의 내용을 표시한 광고 (개정 2025. 2. 6.)
2. 객관적 사실을 과장하거나 사실의 일부를 누락하는 등으로 고객을 호도하거나 고객으로 하여금 객관적 사실에 관하여 오해를 불러일으킬 우려가 있는 내용의 광고
3. 다른 변호사를 비방하거나 다른 변호사나 그 업무의 내용, 출신, 공직경험 등을 자신의 입장에서 비교하는 내용의 광고 (개정 2025. 2. 6.)
4. 변호사의 품위 또는 신용을 훼손할 우려가 있는 내용의 광고
(5호에서 이동 2025. 2. 6.)
5. 특정사건과 관련하여 당사자나 이해관계인(당사자나 이해관계인으로 예상되는 자 포함)에 대하여 그 요청이나 동의 없이 방문, 전화, 팩스, 우편, 전자우편, 문자 메시지 송부, 기타 이에 준하는 방식으로 접촉하여 당해 사건의 의뢰를 권유하는 내용의 광고. 다만, 소속 지방변호사회(이하 “지방회”)의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6호에서 이동 2025. 2. 6.)
6. 국제변호사 기타 법적 근거가 없는 자격이나 명칭을 표방하는 내용의 광고
(7호에서 이동 2025. 2. 6.)
7. 과거에 취급하였거나 관여한 사건이나 현재 수임중인 사건 또는 의뢰인(고문 포함)을 표시하는 내용의 광고. 다만, 의뢰인이 동의하거나, 당해 사건이 널리 일반에 알려져 있거나 의뢰인이 특정되지 않는 경우 등 의뢰인의 이익을 해칠 우려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8호에서 이동 2025. 2. 6.)
8. 법률사건이나 법률사무의 수임을 위하여 재판이나 수사 등 업무(변호사법 제109조 제1호 각 목에 정한 사건 관련 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원과의 연고 등 사적인 관계를 드러내며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것으로 선전하거나 암시하는 내용의 광고
(9호에서 이동 2025. 2. 6.)
9. 변호사법 제31조 제3항에서 정한 수임제한의 해제 광고



(10호에서 이동 2025. 2. 6.)

10. 변호사 보수액(수임료, 상담비용 기타 변호사 업무와 관련된 경제적 대가를 모두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관하여 견적, 입찰, 비교, 최저, 원가, 후불, 환불, 할인쿠폰, 수익금 지급을 표방하는 등 공정한 수임질서를 저해할 수 있는 내용의 광고 (개정 2025. 2. 6.)
11. 변호사 보수액에 관하여 공정한 수임질서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무료 또는 부당한 염가를 표방하는 광고 (개정 2025. 2. 6.)
12. 수사기관과 행정기관의 처분·법원 판결 등의 결과 예측을 표방하는 광고 (13호에서 이동 2025. 2. 6.)
13. 변호사법이 정한 주사무소, 분사무소 외에 다른 명칭을 사용하는 광고 (신설 2025. 2. 6.)
14. 대한변호사협회 회칙 제41조에 따라 소속지방회에 사무직원으로 신고되지 아니한 사람을 변호사등의 홈페이지 등 매체에 게시하는 광고 (신설 2025. 2. 6.)
15. 변호사가 아닌 자를 대표 또는 대표에 준하는 직함으로 표시하는 광고 (신설 2025. 2. 6.)
16. 기타 법령, 변호사윤리장전, 대한변호사협회(이하 “협회”) 및 지방회의 회칙이나 규칙, 규정(이하 “회규”)에 위반되는 내용의 광고 (개정 2022. 10. 11.) (개정 2025. 2. 6.)

제5조 [광고방법 등에 관한 제한] ① 변호사등은 스스로 또는 타인을 이용하여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광고할 수 없다.

1. 불특정한 다수에게 전화를 걸거나 전자적 매체를 통한 메시지를 발송하는 행위
2. 광고 전단, 명함 기타 광고물을 공공장소에서 불특정한 다수인에게 나누어주거나 살포하는 행위
3. 운송수단(자동차, 전동차, 기차, 선박, 비행기 등)의 외부에 광고물을 비치, 부착, 게시하는 행위
4. 운송수단 또는 운송수단이 정차하는 곳(정류소, 역, 공항, 항구 등 이하 같다)의 명칭에 변호사등을 부기하는 행위 (신설 2025. 2. 6.)
5. 운송수단 또는 운송수단이 정차하는 곳에서 불특정 또는 다수에게 음성을 도달하게 하는 행위 (신설 2025. 2. 6.)
6. 현수막, 애드벌룬, 확장기, 샌드위치맨, 어깨띠를 사용하여 광고하는 행위. 단, 지방회의 허가를 받은 경우는 제외한다. (신설 2025. 2. 6.)
7. 기타 큰 소음, 소란, 교통체증 등을 유발하는 등 변호사의 품위를 해칠만한 방법

(5호에서 이동 2025. 2. 6.)

② 변호사등은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는 자(개인·법인·기타단체를 불문한다)에게 광고·홍보·소개를 의뢰하거나 참여 또는 협조하여서는 아니 된다.

1. 변호사 또는 소비자로부터 금전·기타 경제적 대가(알선료, 중개료, 수수료, 회비, 가입비, 광고비 등 명칭과 정기·비정기 형식을 불문한다)를 받고 법률상담 또는 사건등을 소개·알선·유인하기 위하여 변호사등과 소비자를 연결하는 행위 (개정 2022. 10. 11.)
2. 광고 주체인 변호사등 이외의 자가 자신의 성명, 기업명, 상호 등을 표시하거나 기타 자신을 드러내는 방법으로, 법률상담 또는 사건등을 소개·알선·유인하기 위하여 변호사등과 소비자를 연결하거나 변호사등을 광고·홍보·소개 하는 행위



3. 변호사등이 아님에도 수사기관과 행정기관의 처분·법원 판결 등의 결과 예측을 표방하는 서비스를 취급·제공하는 행위
 4. 변호사등이 아님에도 변호사등의 수입료 내지 보수의 산정에 직접 관여하거나, 이에 대한 견적·비교·입찰 서비스 등을 취급·제공하는 행위
 5. 변호사등이 아님에도 변호사등의 직무와 관련한 서비스의 취급·제공 등을 표시하거나, 기타 소비자로 하여금 변호사등으로 오인하게 만들 수 있는 일체의 행위
 6. 기타 법령, 변호사윤리장전, 협회 및 지방회의 회규에 위반되는 광고행위
- ③ 변호사등은 광고이면서도 광고가 아닌 것처럼 가장하는 방법으로 광고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 ④ 변호사등은 환불을 표방하거나 소비자에게 금전·기타 경제적 이익을 공여하거나 공여할 것을 약속하는 방법으로 광고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5. 2. 6.)

제6조 [인공지능 광고의 제한과 기준] 변호사등은 규칙 제5조에 따라 자신의 업무에 인공지능을 이용한다는 사실을 광고할 경우, 다음 각 호의 절차와 요건을 준수하여야 한다.

1. 협회 인증기준에 따라 해당 인공지능 시스템을 사전에 등록할 것
 2. 인공지능의 결과물을 검토한 변호사 이름을 광고 및 인공지능 결과물에 표시할 것
- (본조신설 2025. 2. 6.)

제7조 [공직표기 광고의 제한] 변호사는 과거 법원, 검찰, 경찰, 공정거래위원회, 금융감독원 기타 이에 준하는 기관(이하 ‘공직’이라 한다)에 재직한 사실에 관하여 아래와 같은 방법으로 광고할 수 없다. 다만, 변호사로 개업한 사실을 알리거나 명함이나 저서 및 홈페이지 등에 재직한 경력을 표시하는 행위는 제외한다.

1. 공직에 재직한 사실을 강조하며 수입을 유도하거나 소비자를 현혹하는 행위
2. 공직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다는 취지가 있는 문구를 사용하는 행위
3. ‘전관’, ‘전관 변호사’, ‘전관예우’ 라는 문구를 사용하는 행위
4. 공직에서 사용하는 제복 또는 이와 유사한 복식을 입는 방법으로 표시한 행위
5. 기타 공직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거나 이익을 받을 수 있다고 일반인이 오해할 만한 문구를 사용하는 행위
6. 변호사가 아닌 공직 출신의 사무직원(전문위원, 고문 등 명칭을 불문한다)을 통하여 전술한 각 호의 광고를 하는 행위
7. 온라인 포털, 블로그, 카페 등 인터넷에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행위로 수입을 유도하거나 소비자를 현혹하는 행위

(본조신설 2025. 2. 6.)

제8조 [사전광고의 금지] 변호사는 협회에서 자격등록신청이 수리되기 전이나 소속 지방회에서 입회신청이 허가되기 전에 미리 광고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6조에서 이동 2025. 2. 6.)

제9조 [주로 취급하는 업무 광고] ① 변호사는 주로 취급하는 업무(“주요취급업무”, “주로 취급하는



분야”, “주요취급분야”, “전문”, “전담”등의 용어도 사용 가능하다)를 광고할 수 있다. 단, 협회의 명칭을 병기하는 “전문” 표시의 경우, 협회 ‘변호사전문분야 등록에 관한 규정’에 따라 전문분야 등록을 한 변호사만이 사용할 수 있다.

② 변호사등은 자신이나 자신의 업무에 대하여 “최고”, “유일” 기타 이와 유사한 용어를 사용하여 광고할 수 없다. (개정 2025. 2. 6.)

(7조에서 이동 2025. 2. 6.)

제10조 [법률상담 광고] ① 변호사등은 무료 또는 부당한 요금의 법률상담 방식에 의한 광고 (할인쿠폰 등을 지급하는 형태를 포함한다)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공익을 위한 경우 등 공정한 수입질서를 저해할 우려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 하다. (개정 2025. 2. 6.)

② 변호사등은 다음에 해당하는 법률상담과 관련한 광고를 하거나 그러한 사업구조를 갖는 타인에게 하도록 허용해서는 아니 된다.

1. 변호사등이 아닌 자가 법률상담 대가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취득하는 경우
2. 변호사등 또는 소비자가 법률상담 연결 또는 알선과 관련하여 금전·기타 경제적 이익(알선료, 중개료, 수수료, 회비, 가입비, 광고비 등 명칭과 정기·비정기 형식을 불문한다)을 타인에게 지급하는 경우
3. 타인의 영업 또는 홍보의 일환으로 운영되는 법률상담에 참여하는 경우
4. 기타 법령 및 협회의 회규에 위반되는 행위를 목적 또는 수단으로 하여 행하는 경우 (개정 2022. 10. 11.)

(8조에서 이동 2025. 2. 6.)

제11조 [관련 행정법령의 준수] 변호사가 이 규정상 허용되는 광고를 함에 있어서는 관련 행정 법령상의 규제를 준수하여야 한다.

(9조에서 이동 2025. 2. 6.)

제12조 [광고심사위원회의 설치] 변호사광고에 관한 심사를 위하여 협회와 각 지방회에 광고심사위원회(이하 “협회 위원회”와 “지방회 위원회”)를 둔다.

(10조에서 이동 2025. 2. 6.)

제13조 [위임] 각 지방회는 소속 광고심사위원회의 조직,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이 규정의 범위 내에서 정한다.

(11조에서 이동 2025. 2. 6.)

제14조 [협회 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10인 이상 5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 부위원장, 간사 각 1인을 둔다.

② 위원 및 위원장은 대한변호사협회장(이하 “협회장”)이 회원 중에서 임명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간사는 위원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한다.

③ 위원 및 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위원의 임기 중에 선임된 임원의 임기는 위원의 임기가 종료됨과 동시에 종료된다.



- ④ 위원장은 위원회를 통할하고 위원회를 대표한다.
 - ⑤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유고시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 ⑥ 간사는 위원장의 지시에 따라 위원회의 사무를 담당한다.
- (12조에서 이동 2025. 2. 6.)

제15조 [협회 위원회의 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소집하고 위원장이 위원회의 의장이 된다. 다만, 위원장이 선출되기까지는 협회장이 소집한다.

- ② 회의는 재적위원 4분의 1 이상의 출석으로 성립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③ 협회장, 부협회장 및 상임이사는 위원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 ④ 위원회의 의사는 비공개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위원회가 공개 결의를 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3조에서 이동 2025. 2. 6.)

제16조 [지방회 위원회의 업무] ① 변호사는 변호사 광고에 관한 규정 위반 여부에 대한 심사를 소속 지방회 위원회 위원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 ② 위원장은 제1항의 요청을 받으면 지체 없이 변호사 광고에 관한 규정 위반 여부를 심사하고 그 결과와 이유를 변호사에게 통지한다.
- ③ 변호사는 위원장이 제1항의 요청을 회신하지 않거나 요청서가 접수된 날부터 3개월이 지나도 위반 여부를 심사하지 아니하면 협회 위원회 위원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14조에서 이동 2025. 2. 6.)

제17조 [협회 위원회의 업무] ① 위원장은 제14조 제3항에 따른 요청이 있으면 변호사 광고에 관한 규정 위반 여부를 심사한다.

- ② 위원장은 제1항의 결정을 하였을 때에는 그 결과와 이유를 변호사에게 통지한다.
- ③ 위원장은 변호사 광고에 관한 규정 위반 여부에 대하여 직권으로 조사할 수 있다.
 1. 위원장은 소속 변호사가 광고규정상 금지나 의무에 위반했는지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사를 할 수 있다.
 2. 위원장은 소속 변호사가 광고규정 위반의 의심이 있다고 의심할만한 상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변호사나 사무원, 의뢰인, 진정인 등 관계자에 대하여 변호사등 광고와 관련한 사실 및 증거조사에 필요한 각종 자료(광고한 내역, 광고물, 광고계약계약서, 광고비 지급 증빙자료 포함)의 제출 및 설명을 요구할 수 있다.
 3. 위원장은 각 지방회 및 관련 국가기관 기타 관련 단체에 대하여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여 줄 것을 협회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4. 위원장은 변호사의 광고규정 위반 혐의를 발견하였을 때에는 의견서를 첨부하여 협회장에게 보고한다.
 5. 위원장은 변호사의 광고규정 위반 여부의 심사를 위하여 위원회 위원 중에서 주심위원을 지명할 수 있다. 이 경우 주심위원은 위원장을 대행하여 본조 제1호 내지 제3호의 권한을 행사할 수 있다.
- ④ 위원장은 변호사 광고에 관한 규정과 관련한 법령 및 광고허용 범위의 해석을 한다.



(15조에서 이동 2025. 2. 6.)

제18조 [위반행위에 대한 조치] ① 지방변호사회장(이하 “지방회장”)은 이 규정에 위반한 변호사에 대하여 지방회 위원회 의결을 거쳐 경고하거나 위반행위의 중지 또는 시정을 위하여 필요한 요구 기타 필요한 조치를 하고, 이를 협회장에게 보고한다. 다만, 이러한 조치를 취하기 전에 당해 변호사에게 소명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② 변호사는 소속 지방회장으로부터 제1항의 요구를 받았을 때에는 즉시 이를 이행한 후 그 결과를 보고하고, 지방회장은 이를 협회장에게 보고한다.

③ 지방회장은 변호사가 제1항의 요구에 불구하고 즉시 시정조치를 취하지 아니하는 경우, 지방회장의 명의로 시정조치 요구 사실 및 그 이유의 요지를 공표할 수 있고, 그 비용은 당해 변호사가 부담한다.

④ 협회장은 지방회장이 제1항 및 제3항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거나 그 조치가 부적절하다고 판단될 때에는, 협회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제1항 및 제3항의 조치 기타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16조에서 이동 2025. 2. 6.)

제19조 [질의와 회신] ① 변호사 및 이해관계자는 광고의 내용과 방법 등에 관하여 의문이 있을 때에는 소속 지방회장에게 서면으로 질의할 수 있다.

② 지방회장은 제1항의 질의가 있을 때에는 지방회 위원회의 의견을 들어 질의에 대한 답변을 질의자에게 회신하고, 그 내용을 협회장에게 보고한다. 다만 질의에 대한 답변 선례가 없거나 그 해석이 모호한 경우에는 협회장에게 서면으로 질의할 수 있다.

③ 협회장은 제2항의 질의가 있을 때에는 협회 위원회의 의견을 들어 질의에 대한 답변을 회신한다.

(17조에서 이동 2025. 2. 6.)

제20조 [준용]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이 규정이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위원회운영규칙을 준용한다.

(18조에서 이동 2025. 2. 6.)

제21조 [세부기준 제정] 협회는 이 규정의 시행에 필요한 세부기준을 정할 수 있다.

(19조에서 이동 2025. 2. 6.)

부 칙 (2016. 6. 27. 전부개정)

제1조 [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일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 [기존 세부기준 폐지] 이 규정에 따른 세부기준인 “인터넷등을이용한변호사업무광고기준”은 이 규정의 시행과 동시에 폐지한다.



부 칙 (2016. 12. 30.)

이 규정은 공포일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21. 5. 3. 전부개정)

이 규정은 공포한 날로부터 3월이 경과함으로써 그 효력이 발생한다.

부 칙 (2022. 10. 11.)

이 규정은 공포일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25. 2. 10.)

이 규정은 공포일로부터 시행한다.

변호사 전문분야 등록에 관한 규정

2009. 9. 14.

규정 제80호

개정 2009. 11. 23. 2010. 1. 25.
2010. 4. 5. 2013. 9. 9.
2014. 6. 2. 2016. 2. 15.
2017. 6. 19. 2018. 4. 9.
2018. 7. 9. 2018. 10. 22.
2019. 1. 28. 2019. 7. 8.
2020. 12. 28. 2022. 2. 14.
2024. 1. 8. 2025. 1. 7.

제 1 장 총 칙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변호사 업무와 관련하여 전문분야를 등록·관리함으로써 각 업무 분야의 전문성을 극대화하여 변호사들의 직역확대에 기여할 뿐 아니라 변호사의 전문분야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높이기 위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전문분야의 구분] ① 변호사가 전문분야로 등록할 수 있는 업무는 <별표 1>과 같다.
② 변호사는 자신의 전문분야를 2개까지 등록할 수 있다.

제 2 장 전문분야등록심사위원회 등

제3조 [전문분야등록심사위원회] ① 이회는 전문분야등록제도의 운영, 전문분야의 등록 등에 대한 심사를 위하여 전문분야등록심사위원회(이하 “심사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18. 4. 9.)

② 심사위원회는 10인 이상 3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은 협회장이 상임이사회의 심의를 거쳐 개인회원 중에서 임명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 상임이사회의 심의를 거쳐 학식과 덕망이 있는 인사를 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

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연임할 수 있다.

⑤ 위원 중에서 결원이 생긴 때에는 지체 없이 그 후임자를 임명 또는 위촉한다. 다만, 위원 정원의 4분의 1 이내에서 결원이 생긴 때에는 그 후임자를 임명 또는 위촉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⑥ 제5항에 의하여 임명 또는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제4조 [심사위원회의 기구] ① 심사위원회에는 위원장, 부위원장 및 간사 각 1인을 둔다.



- ② 위원장은 상임이사회의 심의를 거쳐 협회장이 임명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간사는 위원 중에서 위원장이 선임한다.
- ③ 위원장은 심사위원회를 대표하며 심사위원회의 업무를 통할한다.
- ④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유고 시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 ⑤ 간사는 위원장의 지시에 따라 심사위원회의 사무를 담당한다.

제5조 [심사위원회의 회의] ① 위원장은 심사위원회를 소집하고 위원장이 심사위원회의 의장이 된다. 다만, 위원장이 선출되기까지는 협회장이 소집한다.

- ② 회의는 재적위원 4분의 1 이상의 출석으로 성립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③ 협회장, 부협회장 및 상임이사는 심사위원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 ④ 심사위원회의 의사는 비공개로 원칙으로 한다. 다만, 심사위원회가 공개 결의를 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6조 <삭제> (2017. 6. 19.)

제7조 [비밀유지의무] 위원은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 3 장 전문분야의 등록

제8조 [등록요건] ① 전문분야의 등록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한다.

1. 해당 변호사의 법조경력 3년 이상일 것 (개정 2017. 6. 19.)
2. 해당 변호사가 전문분야의 등록신청 전 최근 3년 내에 이 회가 인정하는 연수 또는 제12조 제1항에서 정한 기준을 포함하여 해당 전문분야 관련 교육을 14시간 이상 이수하였을 것 (개정 2017. 6. 19.)
3. 해당 변호사가 전문분야의 등록신청 전 최근 3년 내에 전문분야별 요구되는 사건수임 건수 이상의 사건을 수임하였을 것 (개정 2017. 6. 19.)
- ② 제1항제3호의 전문분야별 요구되는 사건수임 건수는 <별표 2>와 같다.

제9조 [등록신청] ① 전문분야의 등록을 신청하려는 변호사(이하 “등록신청인”이라 한다)는 해당분야에 대한 전문성을 입증할 수 있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신청서를 심사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1. 해당 전문분야 관련 학위 증명서
2. 해당 전문분야 관련 강의 경력 증명서
3. 이 회가 인정하는 연수 중 해당 전문분야 관련 교육 수료 증명서
4. 해당 전문분야 관련 수임사건 목록과 증빙할 수 있는 서류. 해당 증빙서류는 심사위원회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다만, 자문사건의 경우에는 수임사건 목록에 해당 자문사건 관련 의견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업무상 비밀이 포함되어 있는 부분은 삭제하고 제출할 수



있다. (개정 2024. 1. 8.)

② 제1항의 등록을 신청한 자는 등록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제10조 [심사절차] ① 이 회가 제9조제1항에 따른 등록신청을 받은 때에는 지체 없이 심사위원회에 안건을 회부하여 등록신청에 대한 심사를 하게 하여야 한다. (개정 2017. 6. 19.)

② 심사위원회는 제1항의 안건을 회부 받은 때부터 1개월 이내에 등록신청에 대한 심사를 하여 그 결과를 상임이사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7. 6. 19.)

③ 상임이사회는 제2항에 따른 보고를 받은 때부터 1개월 이내에 전문분야의 등록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7. 6. 19.)

제11조 [등록신청의 추후 보완] ① 심사위원회는 제10조제2항의 심사를 함에 있어서 등록신청서의 기재사항이나 첨부서류에 흠이 있는 경우에는 등록신청인에게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보완할 것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17. 6. 19.)

② 등록신청인이 제1항의 명령에 따르지 아니하는 경우 심사위원회는 등록신청인의 보완 없이 이미 제출된 등록신청서 및 첨부서류에 따라 심사할 수 있다. (개정 2017. 6. 19.)

③ 제1항의 보완기간은 제10조제2항의 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제12조 [심사기준] ① 심사위원회가 제8조제1항제2호의 요건을 심사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심사하여야 한다. (개정 2017. 6. 19.)

1. 해당 전문분야 관련 석·박사 학위에 대해서는 제8조제1항제2호의 연수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인정한다. (개정 2017. 6. 19.)

2. 법과대학 또는 법과대학원, 법학전문대학원, 사법연수원 등에서의 해당 전문분야에 관한 강의 경력에 대해서는 전체 강의시간과 동일한 시간의 교육시간을 인정한다.

② 심사위원회가 제8조제1항제3호의 요건을 심사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심사하여야 한다. (개정 2017. 6. 19.)

1. 소송사건 등 (개정 2019. 1. 28.)

가. <삭제> (2017. 6. 19.)

나. 심급이 다른 사건은 개별사건으로 인정한다.

다. 보전처분 중 임시지위를 정하는 가처분은 소송사건과 동일하게 인정한다.

라. 다목에서 정한 것 이외의 보전처분, 가사소송법상 사전처분, 비송사건 및 이와 유사한 절차의 사건은 2건 이상의 건을 1건으로 인정할 수 있다. (신설 2019. 1. 28.)

마. 경찰·검찰수사단계 및 고소대리 건은 소송사건과 동일하게 인정할 수 있다. (신설 2019. 1. 28.)

바. 행정·조세·특허심판 등 본안에 준하는 사건은 소송사건과 동일하게 인정할 수 있다. (신설 2019. 1. 28.)

사. 개업 변호사로서 소속 기관의 소송대리인으로 진행한 사건은 연간 10건 이내로 인정한다.

다만, 위 소속 기관은 겸직허가 또는 겸직 신고 대상 기관에 한한다. (신설 2024. 1. 8.)

2. 자문사건



가. <삭제> (2017. 6. 19.)

나. 자문사건 3건을 소송사건 1건으로 본다. 다만, 심사위원회는 그 결정에 따라 자문사건을 전문분야별 요구되는 사건수임 건수에서 제외할 수 있다. (개정 2017. 6. 19.)

다. 동종사건의 자문은 동일한 자문사건으로 본다.

3. <삭제> (2018. 7. 9.)

4. <삭제> (2018. 7. 9.)

제13조 [등록 후 절차] ① 심사위원회는 전문분야의 등록을 한 경우 등록신청인에게 <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한 등록증을 교부하고, 그 뜻을 통지하여야 한다.

② 이 회는 제1항의 전문분야 등록 후 1개월 이내에 법조신문에 전문분야의 등록사실을 공시하고, 그 명단을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 (개정 2022. 2. 14.)

제14조 [등록거부] ① 심사위원회는 등록신청인이 제8조제1항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그 등록을 거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등록을 거부한 경우 심사위원회는 지체 없이 그 뜻을 등록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15조 <삭제> (2017. 6. 19.)

제16조 [등록취소] ① 심사위원회는 전문분야 등록을 한 변호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전문분야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1. 전문분야 등록요건을 갖추지 못한 사실이 발견된 경우

2. 전문분야 등록을 유지하는 것이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사유가 있는 경우

② 심사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전문분야의 등록을 취소하기 전에 해당 변호사에게 소명의 기회를 부여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등록을 취소한 경우 심사위원회는 지체 없이 그 뜻을 해당 변호사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④ 이 회는 제1항의 등록 취소 후 1개월 이내에 법조신문에 전문분야 등록의 취소사실을 공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2. 2. 14.)

제 4 장 <삭제> (2017. 6. 19.)

제17조 <삭제> (2017. 6. 19.)

제18조 <삭제> (2017. 6. 19.)

제19조 <삭제> (2017. 6. 19.)

제20조 <삭제> (2017. 6. 19.)

제21조 <삭제> (2017. 6. 19.)



제22조 <삭제> (2017. 6. 19.)

제 5 장 전문분야 등록의 거부, 취소 등에 대한 이의신청

제23조 [이의신청]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전문분야 등록의 거부 또는 취소에 관하여 부당한 이유를 소명하여 이 회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이의신청은 제14조제2항, 제16조제3항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하여야 한다. (개정 2017. 6. 19.)

1. 제14조제1항에 따라 전문분야 등록이 거부된 자
2. 제16조제1항에 따라 전문분야 등록이 취소된 자
3. <삭제> (2017. 6. 19.)
4. <삭제> (2017. 6. 19.)

② 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을 하려는 자는 이 회에 <별지 제5호서식>에 의한 이의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이의신청서에는 이의신청의 취지와 이유를 적어야 하고, 그 밖에 필요한 자료를 첨부할 수 있다.

④ 이회는 상임이사회의 심의를 거쳐 제2항의 이의신청이 이유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해당 변호사에 대한 전문분야의 등록 또는 재등록을 승인하여야 하며, 이유 없다고 인정할 때에는 이의신청을 기각하여야 한다. (개정 2017. 6. 19.)

⑤ 이회는 제4항의 결정을 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결과와 이유를 이의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⑥ 이회는 제4항에 따라 전문분야의 등록 또는 재등록을 승인한 경우, 1개월 이내에 법조신문에 이의신청의 인용에 따라 전문분야의 등록 또는 재등록이 된 사실을 공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2. 2. 14.)

제 6 장 전문분야 등록의 재신청

제24조 [등록의 재신청]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전문분야의 등록을 재신청할 수 있다.

1. 제14조제1항에 따라 전문분야 등록이 거부된 자
2. 제16조제1항에 따라 전문분야 등록이 취소된 자
3. <삭제> (2017. 6. 19.)
4. <삭제> (2017. 6. 19.)

② 제1항에 따른 재신청의 요건 및 절차 등에 관하여는 제8조 내지 제16조를 준용한다.



제 7 장 기 타

제25조 [등록료 등] ① 전문분야의 등록신청에 따른 등록료는 전문분야별로 200,000원으로 한다.
(개정 2018. 4. 9.)

② <삭제> (2017. 6. 19.)

제26조 [준용] 전문분야의 등록 등에 관하여 이 규정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상임이사회의 심의에 따라 처리한다. (개정 2017. 6. 19.)

부 칙

이 규정은 공포일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9. 11. 23.)

이 규정은 공포일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0. 1. 25.)

이 규정은 공포일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0. 4. 5.)

이 규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3. 9. 9.)

이 규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4. 6. 2.)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6. 2. 15.)

제1조 [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경과규정] ① 이 규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등록 또는 등록갱신된 전문분야는 이 규정의 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라 유효한 것으로 본다.

② 이 규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전문분야의 등록 또는 등록갱신을 한 자가 이 규정 시행 후 최초로 전문분야 등록의 갱신을 하기 위해서는 제8조의 개정규정에 따른 등록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부 칙 (2017. 6. 19.)

제1조 [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경과조치] 이 규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등록 또는 등록갱신된 전문분야는 이 규정의 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라 유효한 것으로 본다. 다만, 유효기간은 없는 것으로 한다.

제3조 [등록말소제도 폐지에 관한 적용례] ① 등록말소제도 폐지의 효력은 이 규정 시행 전에 종전의 규정 제22조에 의하여 등록말소된 사람에게도 적용한다.

② 이회는 제1항의 등록말소된 사람이 말소된 전문분야의 재등록을 원하는 경우에는 제10조의 개정규정에 따른 심사 없이 재등록하여야 한다.

부 칙 (2018. 4. 9.)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8. 7. 9.)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8. 10. 22.)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9. 1. 28.)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9. 7. 8.)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20. 12. 28.)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22. 4. 25.)

제1조 [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경과조치] 이 규정 시행 전에 실시한 신문을 통한 공시는 이 규정에 의하여 실시한 것으로 본다.

부 칙 (2024. 1. 8.)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25. 1. 7.)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1 (개정 2024. 1. 8.) (개정 2025. 1. 7.)

전문분야 등록신청 분류표

순 번	전문분야
1	민사법
2	부동산
3	건설
4	재개발 · 재건축
5	의료
6	손해배상
7	교통사고
8	임대차관련법
9	국가계약
10	민사집행
11	채권추심
12	등기 · 경매
13	상사법
14	회사법
15	인수합병
16	도산
17	증권
18	금융
19	보험
20	해상
21	무역
22	조선
23	중재
24	IT
25	형사법
26	군형법
27	가사법
28	상속
29	이혼
30	소년법
31	행정법

순 번	전문분야
32	공정거래
33	언론·방송통신
34	헌법재판
35	환경
36	에너지
37	수용 및 보상
38	식품 · 의약
39	노동법
40	산재
41	조세법
42	법인세
43	관세
44	상속증여세
45	국제조세
46	지식재산권법
47	특허
48	상표
49	저작권
50	영업비밀
51	엔터테인먼트
52	국제관계법
53	국제거래
54	국제중재
55	이주 및 비자
56	해외투자
57	스포츠
58	종교
59	성년후견
60	스타트업
61	학교폭력
62	입법
63	신탁



별표 2 (개정 2024. 1. 8.) (개정 2025. 1. 7.)

전문분야별 요구되는 사건수임 건수

분 야	사건수임 건수
가사법	30건
건설	30건
교통사고	30건
군형법	30건
도산	30건
등기·경매	30건
민사법	30건
민사집행	30건
보험	30건
부동산	30건
상사법	30건
소년법	30건
손해배상	30건
이혼	30건
임대차관련법	30건
재개발·재건축	30건
채권추심	30건
형사법	30건
공정거래	25건
금융	25건
수용 및 보상	25건
식품·의약	25건
의료	25건
증권	25건
행정법	25건
관세	20건
국가계약	20건
국제거래	20건
노동법	20건
무역	20건
법인세	20건

분 야	사건수임 건수
산재	20건
상속	20건
상속증여세	20건
상표	20건
신탁	20건
엔터테인먼트	20건
영업비밀	20건
인수합병	20건
저작권	20건
조세법	20건
지식재산권법	20건
특허	20건
해외투자	20건
회사법	20건
IT	10건
국제관계법	10건
국제조세	10건
국제중재	10건
언론·방송통신	10건
스포츠	10건
에너지	10건
이주 및 비자	10건
조선	10건
종교	10건
중재	10건
해상	10건
헌법재판	10건
환경	10건
성년후견	10건
스타트업	10건
학교폭력	10건
입법	10건

별지 제1호 서식 (개정 2018. 4. 9.) (개정 2024. 1. 8.)

전문분야 등록 신청서					
신청인	성명				
	생년월일		등록번호		
	사무소 주소				
		전화 :	Fax :		
	소속회		자격취득	연수원(기) / 변호사시험(회)	
	휴대전화		E-mail		
등록신청 전문분야		전문분야			
		①			
		②			
변호사 전문분야 등록에 관한 규정 제9조제1항에 의하여 위와 같이 전문분야 등록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 상기 본인의 개인정보 등이 전문분야 등록 신청 관리를 위한 행정처리 등에 이용 되는 것에 동의합니다.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다만, 동의를 거부할 경우에는 전문분야 등록 증서 발행 등 이용목적에 따른 행정 처리에 불편이 있을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대한변호사회 전문분야등록심사위원회 귀중					
첨부서류	신청 요지	☐ 신청 요지 - 2개 전문분야 신청 시 각각 작성 요			
	수임 전수	☐ 해당 전문분야 관련 수입사건 목록 (신청일 기준 3년 이내) - 소송사건의 경우 사건번호·사건명·당사자명·관할법원 등 기재 - 자문사건의 경우 수입사건 목록에 해당 자문사건 관련 의견서 첨부 요			
	연수 시간 (우측 3가지 중 1개 필수 선택)	☐ 해당 전문분야 관련 교육 수료증 및 강의일정표(신청일 기준 3년 이내) ☐ 해당 전문분야 관련 학위 증명서 (신청일 기준 3년 이내) ☐ 해당 전문분야 관련 강의 경력 증명서 (신청일 기준 3년 이내)			
	등 록 료	☐ 이체확인증(각 분야별 등록료 20만원. 이체 확인 후, 심사 진행)			
	서 약 서	☐ 서약서(서명 또는 날인 기재)			



별지 제2호 서식 (개정 2017. 6. 19.) (개정 2024. 1. 8.)

등록 제20 - 호

전문분야 등록증서

성 명

생년월일

전문분야

등 록 일

위 사람은 변호사전문분야등록에 관한
규정 제13조에 따라 대한변호사협회
전문분야에 등록되었음을 증명합니다.

20 . . .

대한변호사협회

협 회 장



별지 제3호 서식 <삭제> (2017. 6. 19.)



별지 제4호 서식 <삭제> (2017. 6. 19.)

이 의 신 청 서				
신 청 인	성 명			
	생년월일		등록번호	
	사무소 주 소			
		전화 :	Fax :	
	소속회		자격시험	시험 (회)
	휴대전화		E-mail	
처분 내용		☐ 전문분야 등록 거부 ☐ 전문분야 등록 취소		
처분통지를 받은 날		년 월 일		
불복 취지				
불복 이유				
변호사전문분야등록에관한규정 제24조제1항에 의하여 위와 같이 이의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대한변호사협회 귀중				
첨 부 서 류	☐ 불복이유서 - 불복의 이유를 별지로 작성한 경우 ☐ 불복이유에 대한 증거서류			



별지 제6호 서식 (신설 2024. 1. 8.)

서 약 서

성 명 :

상기 본인은 대한변호사협회 변호사전문분야 등록 신청시 제출한 서류 및 자료가 사실과 같으며, 수임사건을 실제 수행하였음을 확인합니다. 만약 위 사실이 허위로 판명된 때에는 전문분야등록취소 및 관련 규정에 따른 책임을 질 것을 서약합니다.

년 월 일

변호사 ○○○ (서명)

대한변호사협회 전문분야등록심사위원회 귀중

변호사수임장부에관한규정

2000. 6. 26.

규정 제55호

개정 2006. 2. 13.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변호사(법무법인·법무법인(유한)·법무조합, 공증인가합동법률사무소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수임장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6. 2. 13.)

제2조 [수임장부의 정의] 변호사 수임장부라 함은 변호사가 수임사무에 관하여 변호사법 제28조에 따라 작성, 보관하는 장부를 말한다.

제3조 [수임사무의 정의] 변호사의 수임사무라 함은 변호사가 소송 기타 일반 법률사무에 관하여 의뢰인으로부터 보수를 받거나 또는 받지 아니하고 수임한 사무일체를 말한다.

제4조 [수임장부 기재의무] 변호사는 수임사무에 관한 사항을 사건을 수임한 때로부터 1월 이내에 수임장부에 기재하여야 한다.

제5조 [수임장부 기재사항] ① 변호사가 소송사무에 관하여 수임장부에 기재해야 할 수임사무에 관한 사항은 다음과 같다.

1. 수임일자
2. 위임인
3. 상대방
4. 사건명
5. 사건번호
6. 수임사무내용
7. 처리결과
8. 변호사 수임액 (신설 2006. 2. 13.)

② 변호사는 소송사무 이외의 일반 법률사무에 관하여도 수임장부를 작성하되, 수임일자, 위임인, 수임사무 내용 등을 기재한 장부를 제1항의 장부와 별도로 작성 보관할 수 있다.

제6조 [보존기간] 변호사는 수임장부를 그 작성일로부터 3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00. 7. 29.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6. 2. 13.)

이 규정은 공포 후 20일이 경과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변호사 사무직원 규칙

(2018. 12. 3. 규칙제목개정)

1983. 5. 21.

규칙 제21호

개정 2000. 7. 3.
2006. 2. 20.
2009. 2. 26.
2018. 2. 26.
2018. 12. 3.
2019. 7. 22.
2023. 2. 27.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회칙 제41조에 의하여 변호사사무직원의 종류, 의무, 연수, 신고 그밖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 2. 26.)

제2조 [종류] ① 사무직원의 종류는 일반직과 기능직의 2종으로 한다.

② 일반직 사무직원은 서류의 작성, 보관, 제출, 기록관리, 서무, 경리, 기타 변호사의 업무를 보조 하는 자로 한다.

③ 기능직 사무직원은 운전사, 타자원, 사환 기타 기능적인 업무에 종사하는 자로 한다.

제3조 [자격] <삭제> (2009. 2. 26.)

제3조의2 [법률사무소 중복소속 금지] 변호사사무직원(이하 사무직원이라고만 한다)은 둘 이상의 법률사무소에 소속할 수 없다. 다만 제12조에 따른 공동사무직원의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본 조신설 2018. 2. 26.)

제4조 [결격사유] ①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법률사무소의 사무직원이 될 수 없다.

1. 변호사법 또는 형법 제129조 내지 제132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2조 내지 제3조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법률에 의하여 유죄판결을 받은 자로서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자

(일부 신설 2000. 7. 3.)

가. 징역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3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나.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받고 그 기간이 경과한 후 2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다. 징역형의 선고유예를 받고 그 기간 중에 있는 자

2. 공무원으로서 징계처분에 의하여 파면 또는 해임된 후 3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3.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개정 2018. 12. 3.)

4. <삭제> (2018. 12. 3.)



5. (제3호로 통합) (개정 2000. 7. 3.)

6. (제4호로 변동) (개정 2000. 7. 3.)

② <삭제> (2018. 12. 3.)

③ 변호사 또는 법무법인·법무법인(유한)·법무조합·합작법무법인의 사무직원이 결격사유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이를 지체 없이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3. 2. 27.)

④ 합작법무법인의 사무직원의 경우 협회장은 각 지방변호사회의 신청에 따라 그 결격사유를 심사하여 각 지방변호사회에 그 결과를 회신할 수 있다. (신설 2023. 2. 27.)

제5조 [인원] <삭제> (2009. 2. 26.)

제6조 [의무] ① 사무직원은 이 규칙 및 소속 지방변호사회가 정하는 사무직원에 관한 규칙을 준수하고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사무직원 또는 사무직원이었던 자는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사무직원은 그 변호사 또는 법무법인·법무법인(유한)·법무조합·합작법무법인이 수임하고 있는 사건에 관하여 수임인 또는 상대방으로부터 이익을 받거나 이를 요구 또는 약속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3. 2. 27.)

④ 사무직원은 그 정을 알면서 변호사법에 위반되는 행위를 하는 자로부터 사건수임의 알선을 받아 서는 아니 된다.

제7조 [연수] 사무직원은 이 회 및 소속 지방변호사회가 정하는 바에 따라 연수교육을 받아야 한다.

제8조 [신고] 변호사 또는 법무법인·법무법인(유한)·법무조합·합작법무법인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때에는 지체 없이 소속 지방변호사회에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3. 2. 27.)

1. 사무직원을 신규로 채용한 때
2. 사무직원을 해고한 때
3. 제9조에 정한 사무직원명부의 기재사항에 변동이 생기거나 새로 기재할 사항이 생긴 때

제9조 [등록] ① 지방변호사회는 사무직원명부를 비치하고, 다음 사항을 기재한다. (개정 2009. 2. 26.)

1.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
2. 주소 및 등록기준지
3. 사무소의 명칭 및 소재지
4. 사무직원의 종류
5. 기타 필요한 사항

② 사무직원의 등록, 등록거부, 등록취소, 등록을 위한 신고, 명부의 관리 기타 필요한 사항은 지방 변호사회가 정한다.

제10조 [사무직원회] ① 대한변호사협회 및 지방변호사회는 그 소속하에 사무직원회를 둘 수 있다.

(개정 2019. 7. 22.)

② 사무직원회의 조직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한변호사협회 및 지방변호사회가 정한다. (개정 2019. 7. 22.)

제11조 [적용제외] 제7조 및 제10조의 규정은 기능직 사무직원에게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12조 [공동사무직원에 관한 특칙] 법률사무소의 경비 절감, 공간 부족 등의 사유로 인하여 셋 이하의 법률사무소에서 공동으로 사무직원을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에 관하여는 별도의 규정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8. 2. 26.)

부 칙 (1983. 5. 21.)

이 규칙은 1983. 6. 1.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0. 7. 3.)

이 규칙은 2000. 7. 29.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6. 2. 20.)

이 규칙은 공포 후 20일이 경과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9. 2. 26.)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8. 2. 26.)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8. 12. 3.)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9. 7. 22.)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23. 4. 28.)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변호사 공동 사무직원 규정

2017. 9. 11.

규정 제152호

개정 2021. 10. 5.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변호사사무원규칙 제12조에 따른 공동사무직원의 소속, 등록, 그밖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공동사무직원] ① 법률사무소의 경비 절감, 공간부족 등 사유가 있는 경우 셋 이하의 법률사무소에 사무직원을 공동으로 소속하게 할 수 있다.

② <삭제> (2021. 10. 5.)

③ 공동사무직원이 소속하는 셋 이하의 법률사무소는 대한변호사협회가 정하는 바에 따른 인접성을 갖추어야 한다.

④ 대한변호사협회는 제3항의 기준을 지방변호사회에 위임하여 정하게 할 수 있다.

제3조 [공동사무직원의 수] ① 공동사무직원의 수는 2인 이하로 한다. (개정 2021. 10. 5.)

② 3인 이상의 공동사무직원이 필요한 경우, 해당 법률사무소들은 공동하여 지방변호사회에 그 사유를 소명하여 3인 이상의 공동사무직원을 채용하는 것에 대한 허가를 신청하여야 한다.

(신설 2021. 10. 5.)

③ 제2항의 신청을 받은 지방변호사회는 제2조의 요건에 부합하는지 여부를 심리하여 공동사무직원이 소속하는 법률사무소들의 변호사 총수의 2분의 1 범위 내에서 공동사무직원의 수를 정하여 허가할 수 있다. (신설 2021. 10. 5.)

제4조 [공동사무직원의 등록] ① 공동사무직원을 채용하고자 하는 변호사는 공동으로 소속 지방변호사회에 공동사무원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신청을 받은 지방변호사회는 공동사무직원 등록을 신청한 변호사 사이에 수입제한 의무 또는 비밀유지의무 등 변호사법이나 회칙이 정한 변호사의 의무를 위반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그 등록을 거절할 수 있다.

③ 공동사무직원 등록 이후에 제2항의 사정이 발생한 경우에 공동사무직원이 등록된 지방변호사회는 그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제5조 [공동사무직원의 신분증] 공동사무직원의 신분증에는 소속하는 회원의 명칭을 연기하여야 한다.

제6조 [적용범위] 이 규정은 법무법인, 법무법인(유한), 법무조합, 공동법률사무소에도 준용한다. 다만, 이 경우 법무법인·법무법인(유한)·법무조합의 각 분사무소는 각 하나의 법률사무소로 본다. (단서신설 2021. 10. 5.)



부 칙 (2018. 2. 26.)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21. 10. 5.)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변호사 권익위원회 규정

(2018. 7. 9. 규정제목개정)

1991. 10. 21.

규정 제37호

개정 1998. 5. 25. 2001. 7. 9.
2005. 2. 14. 2018. 7. 9.
2022. 10. 11.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변호사에 대한 변호권 침해 등 직무상 어려움을 파악하여 해결하기 위하여 위원회운영규칙 제2조제3항에 의한 특별위원회로서 변호사 권익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하고, 그 조직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8. 7. 9.)

제2조 [권능] 위원회는 제1조의 목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정보 및 자료의 수집과 대책을 수립하여 협회장에게 보고한다.

1. 변호사가 법원, 검찰 기타 기관 또는 소송 관계인 등으로부터 변호권을 침해당하였거나 직무상 부당한 대우를 받은 사실
2. 변호사가 직무와 관련하여 폭언, 협박, 폭력 등 신변의 위협을 받은 사실 (개정 2022. 10. 11.)
3. 기타 변호사가 직무상 겪는 어려움 (제2호에서 이동 2018. 7. 9.)

제3조 [조직] ① 위원회는 10인 이상 5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22. 10. 11.)

② 위원은 협회장이 위촉한다.

③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④ 위원 중에서 결원이 생긴 때에는 추가하여 위촉한다. 다만, 그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제4조 [임원] ① 위원회에 위원장, 부위원장, 간사 각 1인을 둔다.

② 위원장은 협회장이 추천한 위원 중에서 선임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간사는 위원, 사무차장, 촉탁변호사 중에서 위원장이 선임한다. (개정 2001. 7. 9.)

③ 위원장은 위원회를 통할하고 위원회를 대표한다.

④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유고 시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⑤ 간사는 위원장의 지시에 따라 위원회의 사무를 담당한다.

⑥ 임원의 임기 및 보선에 관하여는 제3조제3항 및 제4항을 준용한다.

제5조 [회의] ① 위원회는 위원장이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다만, 위원장이 선출되기까지는 협회장이 이를 소집한다.



- ② 회의는 재적위원 4분의 1 이상의 출석으로 성립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③ 협회장, 부협회장, 상임이사는 위원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 ④ 위원회의 의사는 비공개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위원회가 공개결의를 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6조 [소위원회] ① 위원장은 특정한 사항을 연구 또는 조사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상임이사회의 심의를 거쳐 위원 또는 위원이 아닌 자로 구성된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

- ② 소위원회의 소집, 회의 및 의사진행에 관하여는 제5조를 준용한다.
- ③ 소위원회는 연구 및 조사 등의 결과를 서면으로 위원회에 보고한다.
- ④ 소위원회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기타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가 정한다.

(본조신설 2022. 10. 11.)

(중전 제6조는 제8조로 이동 2022. 10. 11.)

제7조 [변호사권익보호센터 설치] ① 위원회는 제2조 제2호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고, 실효성 있는 대책 수립을 위하여 변호사권익보호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둘 수 있다.

- ② 센터의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기타 필요한 사항은 지침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22. 10. 11.)

(중전 제7조는 제9조로 이동 2022. 10. 11.)

제8조 [조사] ① 위원회는 조사를 함에 있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당사자, 관계인 및 관계기관에 대하여 진술 또는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 ② 위원장은 필요에 따라 소속 위원으로 하여금 수시로 법정에 임하여 방청케 하거나 사실관계를 조사할 수 있다.

(제6조에서 이동 2022. 10. 11.)

제9조 [조치] 협회장은 사안이 중대하고 회원의 권익이 침해된 것으로 인정될 때에는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7조에서 이동 2022. 10. 11.)

제10조 [준용] 이 규정이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관하여는 위원회운영규칙을 준용한다.

(본조신설 2022. 10. 11.)

(제8조에서 이동 2022. 10. 11.)

제11조 [존속기간] 위원회는 상임이사회가 폐지를 의결할 때까지 존속한다.

(본조신설 2022. 10. 11.)

(제9조에서 이동 2022. 10. 11.)

부 칙 (1991. 10. 21.)



- ① 이 규정에 의하여 최초로 위촉되는 위원의 임기는 1993년 정기총회일까지로 한다.
- ② 이 규정은 1991. 10. 21.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01. 7. 9.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5. 2. 14.)

이 규정은 공포한 날로부터 20일을 경과함으로써 그 효력이 발생한다.

부 칙 (2018. 7. 9.)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22. 10. 11.)

제1조 [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경과조치] 이 규정 시행 전에 임명된 변호사 권익위원회 위원은 이 규정에 의하여 임명된 것으로 본다.



대한변호사협회 변호인조력권침해 신고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2022. 4. 11.

규정 제177호

개정 2022. 10. 11.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법률시장에서 각급 수사기관과 행정조사기관 등 공공기관으로부터 발생하는 변호인조력권 및 변론권 침해 등 부당한 처우를 방지함으로써, 헌법상 국민의 기본권을 실효적으로 보장하기 위해 대한변호사협회에 ‘변호인조력권 침해 신고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치하며, 그 조직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센터의 설치] 변호인조력권 및 변론권 침해 등 부당한 처우에 대한 신고를 접수하고 유효한 대응조치를 취하기 위하여 대한변호사협회 변호인조력권침해 신고센터를 둔다.

제3조 [센터의 기구] ① 센터에는 센터장 1인과 부센터장 및 필요한 사무직원을 둘 수 있다.

② 센터장은 협회장이 임명하고, 센터를 대표하며, 센터의 업무를 총괄한다.

③ 협회장은 센터장의 의견을 들어 부센터장을 임명할 수 있으며, 부센터장은 센터장을 보좌하고 센터장이 부재할 시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④ 센터장과 부센터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임기가 만료된 경우 후임자가 없을 때는 후임이 임명될 때까지 그 직무를 수행한다.

제4조 [센터의 업무] 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변호인조력권 및 변론권 침해에 관한 신고 접수 및 처리
2. 공공기관의 적법절차 준수를 위한 개선책 마련 및 법 개정 검토
3. 센터의 운영에 관한 사항
4. 기타 목적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5조 [운영위원회] ① 센터의 업무 집행을 위하여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센터장, 부센터장과 협회장이 회원 중 위촉하는 10인 이상 5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22. 10. 11.)

③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각 센터장과 부센터장이 담당하고, 간사는 위원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한다.

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

⑤ 위원 중에서 결원이 생긴 때에는 그 후임자를 보충하여 위촉한다. 다만, 그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제6조 [회의] ① 위원회는 위원장이 소집하고 위원장이 의장이 된다.

② 위원장은 협회장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소집 요구가 있는 때에는 위원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③ 회의는 재적위원 4분의 1 이상의 출석으로 성립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가부동수인 때에는 위원장이 결정한다.

④ 협회장, 부협회장, 상임이사는 위원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⑤ 위원회의 의사는 비공개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위원회가 공개 결의를 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7조 [지방변호사회의 업무 협조] 센터는 접수된 신고 사건의 원활한 처리를 위해 각 지방변호사회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고, 센터는 이와 관련한 사항을 협회장에게 보고한다.

제8조 [업무 처리] ① 신고를 하려는 사람은 ‘별지의 신고서’와 변호인조력권 및 변론권 침해 증거 등의 자료를 첨부하여 센터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센터는 접수된 건에 대해 신속히 검토하고, 조치와 결과를 신고인에게 회신한다.

③ 센터는 협회장에게 제4조의 업무 이행을 위하여 정부, 공공기관, 지자체, 민간단체, 기업 등을 상대로 협조 요구, 주의나 근절 촉구, 시정 조치를 요구하는 등의 공문 발송을 건의할 수 있다.

④ 협회장은 센터가 보고한 내용을 상임이사회 회부를 지시할 수 있다.

⑤ 센터장은 기타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상임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개진하고 필요한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제9조 [부적합 또는 중첩 사안의 처리] ① 센터는 본 회의 업무와 무관한 사안이 신고·접수된 경우 이를 반려하거나 각하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센터관할업무 중 본 회의 상임이사, 위원회 등이 담당하는 것이 적합하다고 판단한 사안에 대하여는 소관 상임이사 또는 위원회로 이관할 것을 의결할 수 있다. 협회장은 이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을 지시할 수 있다.

제10조 [임원의 보수] 센터장, 부센터장, 위원에게 보수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직무수당, 회의수당, 기타 업무수행에 필요한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1조 [비밀엄수] 센터장, 부센터장, 위원 및 사무직원은 업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2조 [시행지침] ① 이 규정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위원회가 지침으로 정할 수 있다.

② 위원회가 지침을 제정하거나 개정하는 경우 상임이사회의 심의와 협회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13조 [준용] 제5조 운영위원회에 관하여 이 규정이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위원회운영규칙을 준용한다.

제14조 [존속기간] 센터는 이사회가 이 규정의 폐지를 의결할 때까지 존속한다.



부 칙 (2022. 4. 11.)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22. 10. 11.)

제1조 [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경과조치] 이 규정 시행 전에 임명된 변호인조력권침해 신고센터 운영위원회 위원은 이 규정에 의하여 임명된 것으로 본다.



별지 제1호 서식

대한변호사협회 변호인조력권침해신고센터 신고서

신고인 인적사항			
회원여부	☐ 회원 / ☐ 비회원 * ☐ 안에 “V” 표시를 해주십시오.		
이 름		생년월일	
휴대전화		이 메 일	
신고사항			
제 목			
내 용	① 일시: ② 장소(기관): ③ 내용: ※ 별지 작성 가능(첨부서류 포함)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변호사 및 법률사무 종사자 안전의 날 제정에 관한 규정

2022. 10. 11.

규정 제181호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변호사 및 법률사무소 종사자(이하 “변호사등”이라 한다)에게 대한 업무와 관련한 각종 사고에 대비하는 한편, 2022년 법률사무소 방화 테러 사건 희생자들을 추모하고, 고귀한 희생을 기리기 위하여 협회가 주관하는 추모행사 등에 관해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법률사무소 안전의 날] 변호사등의 안전의식을 고취를 위하여 매년 6월 9일을 법률사무소 안전의 날로 정한다.

제3조 [추모식 및 행사] ① 협회는 변호사등에 대한 테러 재발 방지 및 안전의식 고취를 위하여 법률사무소 안전의 날에 추모식을 개최한다. 다만, 6월 9일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이거나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 법률사무소 안전의 날 집행위원회의 결의로 별도의 추모식 개최일을 정할 수 있다.

② 추모식 및 그에 부수되는 행사(이하 “추모 행사”라 한다)는 엄숙하고 검소하게 실시하여 추모의 의의를 높일 수 있도록 한다.

제4조 [법률사무소 안전의 날 집행위원회] 협회는 변호사등에 대한 안전의식 고취, 추모식 및 추모행사 준비 및 개최를 위하여 법률사무소 안전의 날 집행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5조 [위원회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심의하고, 그 결과를 협회장에게 건의한다.

1. 안전의식 고취를 위한 계획 수립
2. 추모식 계획 수립
3. 추모행사 계획 수립
4. 추모주간 설정
5. 협회장이 부의한 사항
6. 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제6조 [위원회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인, 부위원장 1인, 간사 1인 및 협회장이 상임이사회의 심의를 거쳐 개인 회원 중에서 임명하는 10인 이상 3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 상임이사회의 심의를 거쳐 학식과 덕망이 있는 인사를 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

②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협회장이 추천하고 위원회가 선임한다.

③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간사는 위원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한다.

제7조 [위원 임기]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② 위원 중에서 결원이 생긴 때에는 그 후임자를 보충하여 임명 또는 위촉한다. 이때 임명 또는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③ 위원의 임기가 만료되었더라도 후임자가 선임될 때까지는 계속하여 그 직무를 행한다.

제8조 [회의] ① 위원회는 위원장이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다만, 위원장이 선출되기까지는 협회장이 소집한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4분의 1 이상의 출석으로 성립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협회장, 부협회장 및 상임이사, 감사는 위원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제9조 [준용]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이 규정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위원회운영규칙을 준용한다.

부 칙 (2022. 10. 11.)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회지간행 및 학술사업 규칙

(2024. 02. 26. 규칙제목개정)

1983. 5. 21.

규칙 제10호

전부개정 2024. 02. 26.

개정 1988. 2. 27. 1989. 2. 25.
1990. 2. 24. 2003. 10. 27.
2007. 2. 26. 2009. 10. 19.
2016. 2. 29. 2018. 2. 26.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회칙 제2조, 제6조에 의하여 학술대회, 학술논문상 시상 및 이 회가 간행하는 회지의 편집, 제작, 배포에 관한 기준 및 절차와 기타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성격] ① 회지는 이 회의 기관지로서 이 회의 설립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홍보수단이다.
② 회지는 이 회가 대내 또는 대외적으로 공표하여야 할 각종 공시사항을 게재하는 공보가 되고, 법률문화의 창달과 법제도의 개선을 위하여 법학계와 법조계의 연구성과를 반영하는 종합법률지가 된다.
③ 학술적 역량을 강화하는 학술상을 제정하고 관련 학술대회 개최로 법률지식 보급과 변호사 자질 향상에 기여한다.

제3조 [체제 등] ① 회지의 제호는 “인권과정의(이하 “회지”라 한다)”라 한다.

② 회지의 간행 면수는 150면 전후로 한다.

제4조 [주관] 회지의 발행인은 협회장이 되고, 편집인은 공보이사가 된다.

제5조 [인권과정의위원회] ① 회지 편집, 학술상 선정 및 관련 학술대회 업무를 담당하기 위하여 이 회에 인권과정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10인 이상 50인 이내로 구성한다.

③ 위원은 상임이사회의 심의를 거쳐 협회장이 임명한다.

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제6조 [회지 게재사항] ① 회지에는 공시, 연구, 조사, 분석사항 등을 게재한다.

② 회지 공시사항의 범위는 회칙 제6조 제2항 및 각종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③ 회지 게재 범위는 변호사제도, 변호사실무, 법률학 또는 관련 분야에 관한 논문, 논설, 작품,

기사, 자료 기타의 원고로 한다.

④ 회지에는 필요한 광고를 게재할 수 있다.

제7조 [회지 간행계획] ① 위원회는 매 사업연도 개시 2개월 전까지 그 사업연도의 간행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는 제1항의 간행계획을 상임이사회의 심의에 부쳐 이 회가 수립하는 매년도 사업계획과 예산안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8조 [회지 편집계획] ① 위원회는 제13조에 따른 발간일 전월 10일까지 간행할 회지의 편집계획을 심의·결정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는 제1항에 의하여 결정된 편집계획을 협회장에게 보고하고, 그 계획에 따라 회지를 편집하여야 한다.

제9조 [회지 원고수집] ① 위원회는 월별 회지 편집계획이 확정되면 지체 없이 편집계획에 의하여 확정된 게재사항에 관한 원고를 청탁하고, 간행계획에 맞추어 이를 수집하여야 한다.

② 협회 각 사업 담당 상임이사는 회지에 게재할 공시사항의 원고를 편집계획에 맞추어 위원회에 인계하여야 한다.

제10조 [회지 원고 심사] ① 위원회는 제9조에 의하여 수집된 원고의 회지 게재 여부를 심사하여야 한다.

②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원고는 게재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이 회의 설립목적이나 공익에 반하는 내용이 포함된 경우
2. 제2조에 정한 회지의 성격에 반하는 내용이 포함된 경우
3. 회지의 간행계획 및 편집계획에 비추어 회지에 게재하기 곤란한 사정이 있는 경우

제11조 [원고료] ① 회지에 게재된 연구사항에 속하는 원고에 대하여는 그 집필자에게 소정의 원고료를 지급할 수 있다.

② 원고료는 회지간행 후에 지급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12조 [제작] 회지의 제작은 인쇄업자에게 도급 주어 제작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13조 [간행 시기 및 부수] 회지는 연 8회 발간하되 발간일은 2월 1일, 3월 1일, 5월 1일, 6월 1일, 8월 1일, 9월 1일, 11월 1일, 12월 1일로 하며, 필요에 따라 증감하거나 합병호를 간행할 수 있다.

제14조 [회지 배포] ① 회지는 유료로 한다. 다만, 이 회의 회원과 공공도서관, 유관기관, 국내외의 법조단체, 기타 관련 기관 및 협회장이 정하는 자에게는 무료로 배포할 수 있다.

② 준회원, 공공도서관, 유관기관, 국내외의 법조단체, 기타 관련 기관에 무료로 배포할 수 있다.



제15조 [시행규정] 이 규칙을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규정으로 정한다.

부 칙

① [시행일] 이 규칙은 1983. 6. 1.부터 시행한다.

②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에 간행된 회지는 이 규칙에 의하여 간행된 것으로 보고, 회지의 간행 호수는 이 규칙 시행 후에도 계속하여 붙인다.

부 칙 (1988. 2. 27.)

이 규칙은 1988. 3. 1.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89. 2. 25.)

이 규칙은 1989. 3. 1.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90. 2. 24.)

이 규칙은 1990. 3. 1.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3. 10. 27.)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20일이 경과함으로써 그 효력이 발생한다.

부 칙 (2007. 2. 26.)

이 규칙은 공포 후 20일이 경과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9. 10. 19.)



- ①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일로부터 시행한다.
- ② [경과조치] 이 개정규칙에 의하여 최초로 임명된 편집위원의 임기는 차기 협회장 취임 시까지로 한다.

부 칙 (2016. 2. 29.)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8. 2. 26.)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24. 2. 26.)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에 임명된 회지편집위원회 위원과 학술위원회 위원은 이 규칙에 의하여 임명된 것으로 본다.

제3조[폐지규정] 이 규칙 시행 전의 학술위원회 규정(2019. 11. 4. 시행)은 폐지한다. 다만, 종전 규정에 의하여 이 회가 실시한 학술대회, 학술상 시상은 이 규칙에 의하여 한 것으로 본다.

제4조[다른 규정의 개정] ① 인권과정의원고작성요령및투고방법에관한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제3항 중 “편집위원회”를 “인권과정의위원회”로 한다.

제7조 중 “회지편집위원회”를 “인권과정의위원회”로 한다.

② 회지게재논문 심사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중 “편집위원회”를 “인권과정의위원회”로 하고 “회지편집위원회”를 “인권과정의위원회”로 하고, “회지편집위원회(이하 “편집위원회”라 한다)”를 “인권과정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로 한다.

제4조 중 “편집위원회”를 “위원회”로 하고 “편집위원”을 “위원회 위원”으로 하고, “회지편집위원회”를 “위원회”로 하고, 편집회의를 “회의”로 한다.

제5조 제11호 중 “편집위원회”를 “위원회”로 한다.

제6조 중 “편집회의”를 “회의”로 하고, “편집위원회”를 “위원회”로 한다.

제7조 중 “편집위원회”를 “위원회”로 한다.



제8조 중 “편집위원회”를 “위원회”로 한다.

③ 회지윤리지침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내 “회지간행규칙 제16조”를 “회지간행 및 학술사업 규칙 제15조”로 한다.

제8조 내 “편집위원회”를 “인권과정의위원회”로 하고, “편집위원”을 “위원회 위원”으로 한다.

제9조 내 “편집위원”을 “위원회 위원”으로 한다.

제10조 내 “편집위원”을 “위원회 위원”으로 한다.

제13조 내 “편집위원회”를 “인권과정의위원회”로 한다.

제16조 제3항 내 “편집위원회”를 “인권과정의위원회”로 한다.

④ 회의비, 수당등에관한지침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제1항 제1호 내 “회지편집위원회”를 “인권과정의위원회”로 한다.

인권과정의위원회 규정

(2024. 02. 05. 규정제목개정)

1988. 4. 18.

규정 제21호

전부개정 2000. 6. 26.

개정 2009. 9. 14.

2024. 02. 05.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회지간행 및 학술사업 규칙 제15조에 의하여 인권과정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운영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 02. 05.)

제2조 [직무]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행한다. (개정 2024. 02. 05.)

1. 회지의 내용, 지면구성에 관한 기획 수립
2. 회지에 게재하는 원고의 집필의뢰 또는 청탁
3. 회지편집에 필요한 조사·분석
4. 회지에 게재하는 투고 및 광고 심사
5. <삭제> (개정 2024. 02. 05.)
6. 실무 중심의 학술대회 개최 (신설 2024. 02. 05.)
7. 우수 논문에 대한 학술상 제정 및 시상 (신설 2024. 02. 05.)
8. 기타 관련 사항 (신설 2024. 02. 05.)

제3조 [구성] ① 위원회에 위원장, 부위원장 및 간사 각 1인을 둔다. (개정 2024. 02. 05.)

② 위원장은 상임이사회의 심의를 거쳐 협회장이 임명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간사는 위원 중에서 위원장이 선임한다. (개정 2009. 9. 14.) (개정 2024. 02. 05.)

③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를 소집하여 그 의장이 된다.

④ 부위원장은 위원장 유고 시에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24. 02. 05.)

⑤ 간사는 위원장의 지시에 따라 위원회의 사무를 집행한다. (신설 2024. 02. 05.)

제4조 [회의] ① 위원회는 회지간행 및 학술사업 규칙 제13조에 규정된 발간일 전월 10일까지 다음 달에 간행할 회지의 편집계획을 심의·결정한다. (개정 2024. 02. 05.)

②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때에 위원회를 소집할 수 있다. 위원장은 협회장 또는 재적 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는 때에는 위원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개정 2024. 02. 05.)

③ <삭제> (개정 2024. 02. 05.)

④ 협회장, 부협회장 및 상임이사는 위원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개정 2024. 02. 05.)



제5조 [수당 등의 지급] <삭제> (개정 2024. 02. 05.)

제6조 [소위원회] ① 위원회는 상임이사회의 심의를 거쳐 회지 간행을 담당하는 제1소위원회와 학술상 및 관련 학술대회를 담당하는 제2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소위원회의 소집, 회의 및 의사진행에 관하여는 제4조를 준용한다.

③ 소위원회 위원장은 의사의 경과와 결과를 위원회에 서면으로 보고한다.

(조문 신설 2024. 02. 05.)

제7조 [준용] 이 규정이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관하여는 위원회운영규칙을 준용한다. (조문 신설 2024. 02. 05.)

부 칙

이 규정은 2000. 7. 29.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24. 2. 26. 회지간행 및 학술사업 규칙)

제1조 [시행일] 이 규정은 회지간행 및 학술사업 규칙 공포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9. 9. 14.)

이 규정은 공포일로부터 시행한다.



인권과정의원고작성요령및투고방법에관한규정

2007. 2. 5.

규정 제70호

개정 2016. 12. 30.
2018. 2. 5.
2024. 2. 26.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대한변호사협회가 발간하는 ‘인권과 정의’에 게재될 원고의 작성요령 및 투고 방법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투고자격] 인권과 정의의 투고자격은 다음과 같고, 공동저술도 가능하다.

- ① 전국의 법과대학 교수, 판사, 검사, 변호사
- ② 법학 박사학위 소지자
- ③ 기타 인권과정의위원회의 승인을 얻은 자 (개정 2024. 2. 26.)

제3조 [게재조건] ① 독창적인 학술 논문이어야 하며 다른 곳에 이미 게재되었거나 게재될 예정인 논문은 게재대상에서 제외된다.

- ② 동일호에는 1인 1편의 논문만 게재할 수 있다.

제4조 [원고 작성요령] ① 원고는 논문, 논설, 판례평석, 서평, 자료로 구별하여 작성한다.

- ② 원고의 표지에는 원고의 종류, 제목(괄호 안에 영문 및 기타 외국어 제목 표기), 이름(괄호 안에 영문 이름 표기), 소속, 직책, 학위, 주소, 전화번호(사무실, 자택), 이메일주소 및 팩스번호를 적고, 논문 본문에는 저자의 성명을 기재하지 않는다.

- ③ 논문, 논설, 판례평석 등의 경우, 국·영문 초록 및 5개 이상의 주제어, 참고문헌 목록을 작성한다. 다만, 국·영문 초록의 경우 국문 1500자 이내, 영문 2000자 이내로 한다. (개정 2018. 2. 5.)

- ④ 원고의 분량은 200자 원고지 150매 내외를 원칙으로 한다.

- ⑤ 원고 작성은 한글 프로그램으로 다음의 규격에 따라 작성한다.

1. 본문 : 왼쪽 여백 25, 오른 여백 25, 들여쓰기 5, 줄간격 170, 글꼴 바탕, 글자 크기 10.5
2. 각주 : 왼쪽 여백 3, 오른 여백 0, 들여쓰기 -3, 줄간격 150, 글꼴 바탕, 글자 크기 9

- ⑥ 직접 인용할 때에는 “ ”를 사용하고 강조할 때는 ‘ ’, 방점 또는 밑줄을 사용한다.

제5조 [각주표기 요령] ① 저자의 표기는 다음과 같이 한다.

1. 공저자는 ‘/’를 사용하여 표기한다. [예:김갑돌/이을순/박명희] (개정 2018. 2. 5.)
2. 기관저자일 경우 해당 기관명을 표기한다.

- ② 문헌명의 표기는 다음과 같다.

1. 출전은 저자, 논문명(서명), 판수, (출판사, 간행연도) 인용면수 순으로 표시한다. 외국출전은 그 나

- 라의 표준적인 표시방법에 따라 표시할 수 있다.
2. 국문 또는 한자로 표기되는 저서는 「 」로, 논문은 “ ”로 표시한다.
 3. 국문 또는 한자로 표시되는 저서나 논문을 인용할 때는 쪽 또는 면으로, 로마자로 표시되는 저서나 논문을 인용할 때는 p. 또는 S. 로 인용면수를 표시한다.
 4. 국내판결은 선고 법원, 선고일, 판결 또는 결정, 사건번호의 순으로 표시하고 [예 : 대법원 1995. 1. 1. 선고, 1994다1111 판결], 외국의 판결은 그 나라의 표준적인 인용방법에 따른다.
 5. 외국 인명이나 지명은 우리말로 표기하고 명확히 하고자 할 때에는 ()안에 언어를 표시한다. [예 : 화이트(James J. White)]
 6. 참고문헌의 저자가 2명인 경우 2명의 이름을 모두 밝히고, 3명 이상인 경우에는 참고문헌목록에 서는 모두 밝히고 각주에는 ‘○○○ 외’로 표기한다. (개정 2018. 2. 5.)
 7. 면수나 연도 등에서 ‘부터 까지’를 나타내는 부호로 ‘-’이 아닌 ‘~’를 사용한다.
 8. 영문 성명, 논문명, 판결명 등에서 첫 자 이외에는 소문자로 표기한다.
 9. 일본어 논문명, 서명 등은 번역하지 않고 그대로 표기한다.
 10. 기념논문집은 ‘××× 기념논문집’ 또는 ‘○○○-××× 기념논문집’으로 표기한다.
 11. 특별한 의미가 없는 한 각주에서 ‘참조’ 표시를 하지 않는다.
- 제6조 [투고방법] ① 투고원고는 원칙적으로 이메일(journal@koreanbar.or.kr)로 수시 접수하고, 투고일은 원고가 도착한 날로 한다.
- ② 인편전달, 우편송부된 원고는 당 협회에 도착한 날을 투고일로 한다.
- 제7조 [원고료 지급] 접수된 원고가 게재될 경우 인권과정의위원회에서 정한 소정의 원고료를 지급할 수 있다. 단, 인권과정의 발간 후 게재 논문이 다른 학술지 등에 먼저 게재되었음이 밝혀진 경우에는 이미 지급한 원고료가 환수될 수 있다. (개정 2016. 12. 30.) (개정 2024. 2. 26.)
- 제8조 [원고의 저작권] 인권과 정의에 게재된 원고의 저작권은 저자에게 있으나, 저자는 대한변호사협회가 홈페이지 게재, 기타 전자매체 등에 의한 공익적인 목적으로 사용할 경우 무상으로 허락한 것으로 본다.

부 칙

이 규정은 공포 후 20일이 경과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6. 12. 30.)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8. 2. 5.)

이 규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24. 2. 26. 회지간행 및 학술사업 규칙)

제1조 [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3조 까지 생략

제4조 [다른 규정의 개정] ① 인권과정의원고작성요령및투고방법에관한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제3항 중 “편집위원회”를 “인권과정의위원회”로 한다.

제7조 중 “회지편집위원회”를 “인권과정의위원회”로 한다.

②부터 ④ 까지 생략



회지게재논문 심사규정

2007. 2. 5.

규정 제71호

개정 2018. 2. 5.
2019. 7. 8.
2024. 2. 26.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대한변호사협회가 회지로서 간행하는 『인권과 정의』(이하 “회지”라 한다)에 게재할 연구논문, 판례평석, 서평, 자료 등(이하 “논문 등”이라 한다)의 심사절차와 기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대상] 심사대상 논문 등은 다른 학회지나 학술지 기타 간행물에 발표되지 않은 것이어야 하며, 원고의 체제와 분량은 회지투고규정에 따라야 한다.

제3조 [인권과정의위원회 구성 및 권한] ① 회지에 게재할 논문 등의 심사는 인권과정의위원회 규정에 따라 구성된 인권과정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가 행한다. (개정 2024. 2. 26.)

② 위원회는 다음 사항에 관하여 결정권한을 갖는다. (개정 2024. 2. 26.)

1. 제출된 논문 등의 게재 여부 심사 및 결정
2. 회지 게재 논문 등에 관한 심사규정의 개정
3. 기타 회지의 편집 및 출판에 필요한 사항

제4조 [논문 등의 심사] ① 위원회는 심사대상 논문 등을 심사할 심사위원을 위원회 위원 중에서 위촉한다. 다만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위원회 위원이 아닌 외부 인사에게 논문 등의 심사를 위촉할 수 있다. (개정 2024. 2. 26.)

② 심사대상 논문 등은 회의 개최 전에 1편당 2인 이상의 심사위원에 의한 심사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9. 7. 8.) (개정 2024. 2. 26.)

③ 심사위원은 해당 원고에 대한 심사의견을 서면으로 작성하여 위원회에 제출한다. (개정 2024. 2. 26.)

④ 위원회는 매 발행 시 회의를 통하여 심사대상 논문 등의 게재 여부를 결정한다. (개정 2024. 2. 26.)

제5조 [심사기준] 논문 등의 심사기준은 다음과 같다.

1. 주제설정에 있어서 창의성과 적실성
2. 연구관점의 참신성
3. 연구방법의 논리적 일관성
4. 학문적 또는 실무적 기여도



5. 참고문헌(국문 및 영문 포함) 인용의 적합성 (개정 2018. 2. 5.)
6. 논문체계와 기술방법의 적절성 (개정 2018. 2. 5.)
7. 국문 또는 영문 초록의 적절성 (신설 2018. 2. 5.)
8. 기존연구와의 차별성 (신설 2018. 2. 5.)
9. 연구방법과 결과 제시(통계, 표, 그림)의 명확성 (신설 2018. 2. 5.)
10. 연구윤리 준수 여부 (신설 2018. 2. 5.)
11. 기타 위원회에서 논문 등의 심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신설 2018. 2. 5.)
(개정 2024. 2. 26.)

제6조 [심사보고 및 결정] ① 심사위원은 회의에서 논문 등의 심사결과보고서를 작성·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4. 2. 26.)

② 회의 결과 위원회는 논문 등에 대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결정한다. (개정 2024. 2. 26.)

1. 무수정 게재가
2. 수정 후 게재가
3. 수정 후 재심사
4. 게재 불가

③ 제2항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수정 후 재심사’로 판정된 논문 등은 필자에게 수정하게 한 후 회의에서 게재 여부를 다시 결정하며, 필자가 논문을 철회하거나 위원회에서 정한 상당한 기간 내 논문을 수정하지 않을 경우 ‘게재 불가’로 간주한다. (개정 2018. 2. 5.) (개정 2024. 2. 26.)

제7조 [논문 등의 게재] ① 위원회에서 ‘무수정 게재가’, ‘수정 후 게재가’, 제6조제3항에 따라 수정 후 재심사하여 게재로 결정한 논문 등은 회지에 게재한다. (개정 2024. 2. 26.)

② 회지에 게재된 논문 등의 내용은 법학연구소 및 관련기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할 수 있다.

제8조 [규정의 개정] 본 규정은 위원회의 위원 3분의 2 이상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이상의 찬성에 의하여 개정할 수 있다. (개정 2024. 2. 26.)

부 칙

이 규정은 공포 후 20일이 경과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8. 2. 5.)

이 규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9. 7. 8.)

이 규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24. 2. 26. 회지간행 및 학술사업 규칙)

제1조 [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3조 까지 생략

제4조 [다른 규정의 개정] ① 생략

② 회지게재논문 심사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중 “편집위원회”를 “인권과정의위원회”로 하고 “회지편집위원회”를 “인권과정의위원회”로 하고, “회지편집위원회(이하 “편집위원회”라 한다)”를 “인권과정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로 한다.

제4조 중 “편집위원회”를 “위원회”로 하고 “편집위원”을 “위원회 위원”으로 하고, “회지편집위원회”를 “위원회”로 하고, 편집회의를 “회의”로 한다.

제5조 제11호 중 “편집위원회”를 “위원회”로 한다.

제6조 중 “편집회의”를 “회의”로 하고, “편집위원회”를 “위원회”로 한다.

제7조 중 “편집위원회”를 “위원회”로 한다.

제8조 중 “편집위원회”를 “위원회”로 한다.

③ 부터 ④ 까지 생략



신문 등 간행규칙

(2021. 5. 31. 규칙제목개정)

2000. 7. 3.

규칙 제27호

개정 2001. 2. 12. 2003. 10. 27.
2005. 2. 21. 2009. 10. 19.
2011. 12. 12. 2015. 2. 23.
2018. 2. 26. 2021. 2. 22.

전부개정 2021. 5. 31.

개정 2022. 4. 25.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회칙 제6조의2에 의하여 이 회가 발행하는 신문 등의 편집, 제작, 배포에 관한 기준, 절차 기타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신문 등”이란 이 회에서 지면(紙面) 또는 각종 전자문서의 형태로 월 1회 이상 발행, 제작, 배포하는 같은 제호(題號)의 모든 정기간행물을 말한다.
2. “전자간행물”이란 회칙 제6조의2 제2항에서 정한 내용의 기사 등을 PDF, e-BOOK 형태의 전자문서로 제작하여, 통신망을 이용하지 아니하고 컴퓨터 등의 정보처리장치를 이용하여 읽거나 보고 들을 수 있도록 전자적으로 발행한 간행물을 말한다.
3. “인터넷신문”이란 이 회가 문화체육관광부에 등록(서울,아02608호)하고, 기사를 게재한 인터넷 홈페이지를 말한다.

제3조 [창간정신] ① 신문 등은 이 회를 대표하는 정기간행물로서 이 회의 설립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홍보수단이다.

② 신문 등은 이 회가 대내 또는 대외적으로 공표하여야 할 각종 보도자료 및 회원들의 의견 등을 게재하는 공보로서의 역할을 한다.

③ 신문 등은 기본적 인권을 옹호하며 사회정의를 실현하고, 법조계의 발전과 법률문화의 창달, 법제도의 개선을 위하여 법학계와 법조계의 연구성과를 반영한다.

제4조 [체제 등] ① 신문 등의 제호는 “법조신문”이라 한다. (개정 2022. 4. 25.)

② 신문 등은 월 1회 이상 지면, 전자간행물 또는 인터넷신문으로 발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필요에 따라 호외를 발행할 수 있다.

③ 신문 등의 판형과 발행 면수 등은 신문편집위원회에서 정한다.

제5조 [발행인 등] ① 신문 등의 발행인은 협회장이 된다.

② 신문 등의 편집인은 공보이사로 한다.

③ 편집인의 위임과 지시를 받아 신문편집 사무를 담당하기 위해 편집장 1인을 둘 수 있다.

제6조 [신문편집위원회] ① 신문 등의 편집을 담당하기 위하여 이 회에 신문편집위원회를 둔다.

② 신문편집위원회는 편집위원 5인 이상 25인 이내로 구성한다.

③ 신문편집위원은 상임이사회의 심의를 거쳐 협회장이 임명한다. 단, 공보이사는 당연직 편집위원이 된다.

④ 위원장은 협회장이 임명하고, 위원 중 간사 1인을 두되,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⑤ 신문편집위원의 임기는 임명·위촉일부터 위원회를 구성한 협회장의 임기종료일까지로 한다.

⑥ 신문편집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취재에 필요한 수당 및 실비와 원고료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7조 [신문편집위원회의 직무 등] ① 신문편집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행한다.

1. 신문 등의 내용, 지면 구성에 관한 기획 수립
2. 신문 등에 게재하는 원고의 집필의뢰 또는 청탁
3. 신문 등의 편집에 필요한 취재·조사
4. 신문 등에 게재하는 투고원고 및 광고 심사
5. 사설, 논단 등의 집필 기타 신문 등 편집에 필요한 행위
6. 인터넷을 통한 신문 등의 발행에 관한 사항

② 신문편집위원회는 신문 등의 편집계획, 방향 등을 논의하고 발행, 게재된 기사 등에 대해 평가한다.

③ 편집인은 신문편집위원회에서 논의 및 결정된 사항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 협회장에게 보고하고, 편집 계획에 관하여 협의할 수 있다.

④ 협회장은 긴급하거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편집인과 미리 협의한 후 편집 계획의 수정을 요청할 수 있다.

제8조 [변호사기자 등] ① 신문 등의 집필과 취재 등을 위하여 약간 명의 논설위원 및 논설위원을 겸하는 변호사기자를 둘 수 있다.

② 변호사기자는 기자로서의 소질과 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중에서 공보이사가 추천하고 협회장이 임명한다.

③ 논설위원 및 변호사기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협회장이 연장할 수 있다.

④ 변호사기자에게는 원고료 외에 취재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9조 [발행계획] ① 공보이사는 매사업연도 개시 전까지 그 사업연도에 신문 등의 발행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공보이사는 전항의 발행계획을 상임이사회의 심의에 붙여 이 회가 수립하는 매 년도 사업계획과 예산안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10조 [기사 및 원고의 작성 등] ① 신문 등에 게재할 기사는 이 회의 사무국 담당부서에서 작성한다.



② 신문 등에 게재할 원고는 이 회의 회원 또는 회원 이외의 자에게 집필을 의뢰할 수 있으며, 투고는 수시 접수한다.

③ 원고 등의 수집 및 수정·정리는 이 회의 사무국 담당부서에서 한다.

④ 이 회의 사무국 담당부서는 작성한 기사 및 정리된 원고 등을 편집인과 발행인에게 보고한다.

제11조 [편집] 신문편집위원회는 기사 및 원고 등의 게재 여부 및 게재면 등을 심의·결정한다.

제12조 [게재불가 원고 등] 다음 각 호에 해당한다고 인정되는 집필원고 및 투고는 신문 등에 게재하지 않는다.

1.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또는 훼손할 우려가 있는 경우
2. 명백한 사실과 다르게 기술되어 있는 경우
3. 독단, 편견에 기한 경우 또는 기초자료를 다루는 데 하자가 있는 경우
4. 변호사법, 이 회 회칙 및 규칙 등에 반하는 경우
5. 다른 신문, 잡지에 이미 게재되었거나 이미 투고가 되었던 사실이 밝혀진 경우
6. 기타 사회풍속 등에 저해되거나 신문 등의 편집방향에 맞지 않는다고 신문편집위원회가 판단한 경우

제13조 [광고] ① 신문 등은 광고를 게재할 수 있다.

② 광고게재 여부는 신문편집위원회에서 결정한다.

③ 광고의 형태 및 요금은 신문편집위원회에서 정한다. 단, 장기적 광고, 유관기관의 광고 및 기타 특별한 경우에 한하여 신문편집위원회의 결의로 광고료를 감액 결정할 수 있다.

④ 이 회 및 각 지방변호사회에서 출고된 광고 또는 공익성을 띤 광고는 신문편집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무료로 게재할 수 있다.

제14조 [게재불가 광고] 다음 각 호에 해당한다고 인정되는 광고는 게재하지 않는다.

1. 명백한 사실과 다르게 기술된 경우
2. 변호사법, 이 회 회칙 및 규칙에 반하는 경우
3. 기타 사회풍속 등에 저해되거나 신문 등의 편집방향에 맞지 않는다고 신문편집위원회가 판단한 경우

제15조 [원고료 등] ① 신문 등에 게재되는 집필원고 및 투고원고에 관하여는 그 집필자 및 투고자에게는 상임이사회의 결정에 의한 소정의 원고료를 지급한다.

② 원고료는 신문발행 후에 지불함을 원칙으로 한다.

③ 이 회가 비용 등을 지원하여 참여한 행사의 참관기, 보고서 등에 대해서는 원고료를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16조 [조판 및 인쇄] 신문 등의 조판과 편집은 이 회의 사무국 담당부서에서 하며, 인쇄는 인쇄업자에게 도급 주어 제작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17조 [배포 등] ① 신문 등은 회원, 유관기관 및 일반구독신청자에게 무료로 배포한다. 다만, 인

쇄 등 출판물로 간행한 경우에는 유료로 배포할 수 있으며, 유료 금액은 신문편집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상임이사회에서 결정한다.

② 신문 등은 신문편집위원회의 결의로써 전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유관기관, 공공도서관 및 회원 이외의 자 등에게 무료로 배포할 수 있다.

제18조 [원고 및 교정쇄의 보존] 신문 등의 원고 및 교정쇄는 당해 원고를 게재한 신문 등이 발행된 날로부터 3개월간 보존한다.

제19조 [신문의 보존] 신문 등은 각 호당 3부 또는 전자문서를 영구 보존한다.

제20조 [축쇄판] ① 신문 등의 축쇄판은 100호마다 발행할 수 있다.

② 신문 등의 축쇄판은 각 권당 3부를 영구 보존한다.

③ 신문 등의 축쇄판은 전자매체로 제작하여 보관할 수 있다.

제21조 [보칙] 이 규칙을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정으로 정한다.

부 칙

① [시행일] 이 규칙은 2000. 7. 29.부터 시행한다.

②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에 발행된 신문은 이 규칙에 의하여 발행된 것으로 보고, 신문의 발행 호수는 이 규칙 시행 후에도 계속하여 붙인다.

부 칙 (2005. 2. 2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20일이 경과함으로써 그 효력이 발생한다.

부 칙 (2009. 10. 19.)

①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일로부터 시행한다.

② [경과조치] 이 개정 규칙에 의하여 최초로 임명된 편집위원의 임기는 차기 협회장 취임 시까지로 한다.

부 칙 (2011. 12. 12.)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5. 2. 23.)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8. 2. 26.)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21. 2. 22.)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21. 5. 31.)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에도 불구하고, 인쇄 및 용역계약 등의 잔여기간으로 인해 지면(紙面)으로 발행한 신문 등은 이 규칙에 의하여 발행된 것으로 보고, 신문의 발행 호수는 이 규칙 시행 후에도 계속하여 붙인다.

부 칙 (2022. 4. 25.)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에 발행한 신문은 이 규칙에 의하여 발행한 것으로 보고, 이 규칙 시행 후에도 발행 호수를 연번하여 붙인다.



대한변호사협회공고에관한규칙

2010. 2. 8.

규칙 제32호

개정 2022. 4. 25.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대한변호사협회(이하 “회”라 함) 회칙·규칙·규정의 공고사항 및 기타 협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에 대하여 공고할 매체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공고매체] 회에서 아래의 매체 중 1가지를 이용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1. 인권과 정의
2. 법조신문 (개정 2022. 4. 25.)
3. 협회 홈페이지(www.koreanbar.or.kr)

제3조 [공시송달] ① 문서의 송달을 받을 자의 소재를 알 수 없거나 문서를 송달할 수 없을 때에는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할 수 있다.

② 공시송달의 방법에 의한 송달은 협회가 그 문서를 보관하고 그 뜻을 공고매체를 통해 공고함으로써 한다. 이 경우 공고를 기재한 인권과 정의 및 법조신문의 발송을 시작한 다음 날로부터 또는 협회 홈페이지에 게시한 다음 날로부터 14일이 경과한 때 송달된 것으로 한다.

(개정 2022. 4. 25.)

제4조 [시행규정] 이 규칙을 시행하는 데 필요한 사항은 규정으로 정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22. 4. 25.)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에 실시한 신문을 통한 공고는 이 규칙에 의하여 실시한 것으로 본다.



변호사신상정보의수집및활용에관한규정

2005. 10. 10.

규정 제66호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법관 임용을 포함한 공직추천과 관련하여 회원의 신상에 관한 정보의 수집, 보관 및 활용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변호사 신상정보의 정의] 변호사 신상정보라 함은 별지 서식에 기재된 변호사의 신상정보를 말한다.

제3조 [변호사 신상정보의 수집 및 보관] ① 대한변호사협회(이하 “본 회”라 한다)는 매년 1월 초 또는 필요한 시기에 법관 혹은 공직에 취임할 의사가 있는 변호사에게 별지 서식의 신상정보를(신상정보를 이미 제출한 변호사에게는 변경하여 기재할 사항을) 제출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② 위 제1항에 따라 수집된 변호사의 신상정보는 법조일원화 및 공직추천 관련 목적이 아닌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수집된 변호사의 신상정보를 기본으로 하여, 개별 변호사의 징계, 상벌, 기타 법관 및 공직임용에 참고가 될 수 있는 제반 정보를 수집하여야 한다.

④ 변호사 신상정보에 대한 수집, 관리 및 보전업무는 사업이사가 담당한다.

제4조 [변호사 신상정보의 활용] ① 본 회가 대법원 또는 법무부 등으로부터 법관 혹은 공직임용 후보자에 대한 추천 혹은 검토를 의뢰 받을 경우, 협회장은 의제를 정하고 법관·검사 등 인사추천위원회로 하여금 이를 심의하게 하여야 한다.

② 전항의 경우 위원회는 해당 후보자의 소속 지방변호사회의 의견과 제3조제3항에 규정된 신상정보를 종합하여 심의하여야 한다.

③ 협회장은 사법평가위원회의 건의를 받아 법관 및 공직임용 후보자를 추천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05. 10. 10.부터 시행한다.



별지 서식

변호사 신상정보에 관한 자료		
사 진 (3cm×4cm) *우편 별도 송부	성 명	(한자)
	주민등록번호	
	사무실 주 소	
	연 락 처	(H.P.)
자기소개 및 지원 동기(별지)		
연구 실적(논문, 세미나, 주제발표 등 연구발표 경력 중요 활동사항 기재)		
변호사 활동 사항(수임사건 처리결과 등)		



사회활동 및 공익활동 사항 (정부, 기업 관련 자문 및 참여 활동 등)

회무 참여 사항(대한변협 및 지방회 활동)

진정 및 징계 사항

특기 사항

협회 기재 사항(면담 등을 통한 추천 의견)

공 란



【변호사 신상정보에 관한 자료 작성요령】

1. 성명은 한글을 우선 기재하고, 한자를 부가하여 기재
2. 사진(2매, 반명함판 3cm×4cm)은 뒷면에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 기재하여 우편으로 별도 송부
3. 기재란이 부족한 경우 별지에 추가해 주시기 바람



대변인규정

2007. 4. 16.

규정 제74호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위원회운영규칙 제17조제1호에 의하여 이 회의 홍보 및 선전 기능을 강화하기 위한 방안으로 대변인 직책을 신설하고, 대변인의 정원, 선임, 직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원] 대변인의 정원은 1인으로 한다. 다만, 협회장은 필요에 따라 대변인을 증원할 수 있다.

제3조 [선임] 대변인은 공보위원회 위원 중 공보위원장의 추천을 받은 자를 협회장이 임명한다.

제4조 [직무] 대변인의 직무는 다음과 같다.

1. 협회장 명의의 각종 성명서 및 보도자료 문안 작성
2. 협회장 명의의 공식 논평의 발표 및 기자 회견
3. 언론보도에 대한 논평 및 협회 관련 대외 발표
4. 기타 협회장이 지시하는 사항

제5조 [성명 및 논평의 발표] ① 대변인은 대변인 명의의 성명 또는 논평을 발표할 경우, 사전에 공보이사와 협의하고, 이를 협회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대변인은 발표할 성명서 및 논평의 내용과 관련하여, 그 발표 내용과 관련된 업무를 관장하는 상임이사 및 사무총장과 협의하여야 하고, 이를 협회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부 칙

이 규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청년변호사특별위원회규정

2007. 7. 16.

규정 제76호

개정 2011. 5. 23.
2020. 2. 10.
2021. 5. 3.

제 1 장 <삭제> (2021. 5. 3.)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위원회운영규칙 제2조 제3항에 따라 청년변호사의 권익보호, 처우개선 등을 지원하기 위하여 대한변호사협회 내의 특별위원회로 청년변호사특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하고, 그 조직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 5. 3.)

제2조 [기능] 위원회는 다음 사항에 관하여 조사, 연구하고 그 결과를 협회장에게 건의한다. (개정 2021. 5. 3.)

1. 청년변호사 권익 보호, 처우개선에 대한 조사·연구 (개정 2021. 5. 3.)
2. 청년변호사 지원방안에 관한 연구 (개정 2021. 5. 3.)
3. 기타 협회장이 요청한 사항 (개정 2021. 5. 3.)

제3조 [구성] ① 위원회는 10인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21. 5. 3.)

② 위원은 협회장이 회원 중에 임명한다. 다만, 필요한 때에는 회원이 아닌 덕망 있는 사회인사를 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 (개정 2021. 5. 3.)

③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신설 2021. 5. 3.)

④ 위원 중에서 결원이 생긴 때에는 그 후임자를 보충하여 임명한다. 다만, 그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 기간으로 한다. (신설 2021. 5. 3.)

제 2 장 <삭제> (2021. 5. 3.)

제4조 [임원] ① 위원회에는 위원장, 부위원장, 간사 각 1인을 둔다. (개정 2021. 5. 3.)

② 위원장은 협회장이 추천한 위원 중에서 위원회가 선임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간사는 위원 중에서 위원장이 선임한다. (신설 2021. 5. 3.)

③ 위원장은 위원회를 통할하고 위원회를 대표한다. (신설 2021. 5. 3.)

④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유고 시 그 직무를 대행한다. (신설 2021. 5. 3.)



⑤ 간사는 위원장의 지시에 따라 위원회의 사무를 담당한다. (신설 2021. 5. 3.)

⑥ 임원의 임기 및 보선에 관하여는 제3조 제3항 및 제4항을 준용한다. (신설 2021. 5. 3.)

제5조 [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소집하고 위원장이 위원회의 의장이 된다. 다만, 위원장이 선출되기까지는 협회장이 소집한다. (개정 2021. 5. 3.)

② 회의는 재적위원 4분의 1 이상의 출석으로 성립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21. 5. 3.)

③ 협회장, 부협회장 및 상임이사는 위원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개정 2021. 5. 3.)

④ 위원회의 의사는 비공개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위원회가 공개 결의를 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1. 5. 3.)

제6조 [소위원회] ① 위원회의 업무를 보좌하기 위하여 상임이사회의 심의를 거쳐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 (개정 2021. 5. 3.)

② 소위원회는 연구 및 조사 등의 결과를 서면으로 위원회에 보고한다. (개정 2021. 5. 3.)

③ <삭제> (2021. 5. 3.)

제 3 장 <삭제> (2021. 5. 3.)

제7조 [준용] 이 규정이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관하여는 위원회운영규칙을 준용한다.

(개정 2021. 5. 3.)

제8조 [존속기간] 위원회는 이사회가 이 규정의 폐지를 의결할 때까지 존속한다. (개정 2021. 5. 3.)

② <삭제> (2021. 5. 3.)

③ <삭제> (2021. 5. 3.)

1. <삭제> (2021. 5. 3.)

2. <삭제> (2021. 5. 3.)

④ <삭제> (2021. 5. 3.)

⑤ <삭제> (2021. 5. 3.)

제9조 <삭제> (2021. 5. 3.)

제10조 <삭제> (2021. 5. 3.)

제11조 <삭제> (2021. 5. 3.)

제 4 장 <삭제> (2021. 5. 3.)



제12조 <삭제> (2021. 5. 3.)

제13조 <삭제> (2021. 5. 3.)

제14조 <삭제> (2021. 5. 3.)

제15조 <삭제> (2021. 5. 3.)

제 5 장 <삭제> (2021. 5. 3.)

제16조 <삭제> (2021. 5. 3.)

제17조 <삭제> (2021. 5. 3.)

제18조 <삭제> (2021. 5. 3.)

제 6 장 <삭제> (2021. 5. 3.)

제19조 <삭제> (2021. 5. 3.)

제20조 <삭제> (2021. 5. 3.)

제21조 <삭제> (2021. 5. 3.)

부 칙

이 규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1. 5. 23.)

이 규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20. 2. 10.)

이 규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21. 5. 3.)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1 <삭제> (2021. 5. 3.)



법조원로특별위원회규정

2010. 1. 25.

규정 제96호

개정 2010. 4. 5.

제 1 장 총 칙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원로법조인 상호간의 친선과 우의를 돈독히 하고 자조사업을 돕기 위하여 위원회운영규칙 제2조 제3항에 의한 특별위원회로서 법조원로특별위원회를 설치하고, 그 조직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구성] 법조원로특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대한변호사협회 회원 중 75세 이상의 원로변호사들로 구성한다.

제 2 장 임 원

제3조 [임원의 종류 및 임기] ① 위원회는 다음의 임원을 둔다

1. 위원장 1인
2. 부위원장 2인
3. 집행위원 10인 이상 15인 이하
4. 감사 1인 (개정 2010. 4. 5.)

② 위원회는 명예회장, (상임)고문 및 자문위원을 둘 수 있다. (신설 2010. 4. 5.)

③ 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보선된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신설 2010. 4. 5.)

제4조 [선임] ① 위원장은 협회장의 추천을 받아 총회에서 선임한다. (개정 2010. 4. 5.)

② 감사는 총회에서 선임한다. (신설 2010. 4. 5.)

③ 부위원장 및 집행위원은 위원장이 추천한 자 중에서 총회가 선임한다. (개정 2010. 4. 5.)

④ 명예회장, (상임)고문 및 자문위원은 집행위원회에서 선임한다. (신설 2010. 4. 5.)

제5조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통할하고 위원회를 대표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유고시에는 연령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 3 장 총 회

제6조 [설치 및 구성] ① 위원회는 최고의결기관으로 총회를 둔다.

② 총회는 위원회 구성원 전원으로 구성한다.

(전문개정 2010. 4. 5.)

제7조 [의장] ① 총회의 의장은 위원장이 된다.

② 의장은 총회의 질서를 유지하고 의사를 진행한다.

제8조 [회의의 종류 및 소집] ① 총회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한다.

② 정기회는 매년 1월 중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개정 2010. 4. 5.)

③ 임시회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1. 총회 구성원의 10분의 1 이상이 회의의 목적사항과 소집의 이유를 기재한 서면을 위원장에게 제출하고 총회의 소집을 요구한 때

2. 위원장이 집행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회의의 목적사항을 정하여 총회의 소집을 요구한 때

제9조 [의결사항] 총회는 다음 사항을 의결한다.

1. 위원회운영세칙의 제정 또는 개정에 관한 사항

2. 임원의 선임에 관한 사항

3. 예산 및 결산의 승인에 관한 사항 (신설 2010. 4. 5.)

4. 기타 협회장, 사무총장, 집행위원회가 부의한 사항 (개정 2010. 4. 5.)

제10조 [의결 정족수] ① 총회는 총회 구성원의 10분의 1 이상의 출석으로 개최하고 출석 구성원의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10. 4. 5.)

② 총회구성원은 의결권을 위임할 수 있다.

③ 의결권을 위임하고자 하는 자는 협회가 송부한 양식에 따른 위임장을 제출하여야 한다.

제11조 [회의의 공개 및 발언] ① 총회의 회의는 공개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총회의 의결이 있는 때에는 이를 비공개로 할 수 있다.

② 협회장, 부협회장 및 상임이사는 총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0. 4. 5.)

제 4 장 집행위원회

제12조 [설치 및 구성] ① 위원회에는 위원회의 운영을 위한 의사결정기구 및 집행기구로서 집행위원회를 둔다.

② 집행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등을 포함한 집행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삭제> (2010. 4. 5.)



제13조 [소집] 집행위원회는 위원장이 소집한다.

제14조 [의결사항] 집행위원회는 다음 사항을 의결한다.

1. 총회의 의결을 집행하기 위한 사항
2. 예산 및 사업계획의 집행을 위한 사항
3. 명예회장, (상임)고문 및 자문위원 선출 (신설 2010. 4. 5.)
4. 총회가 위임한 사항 (개정 2010. 4. 5.)
5. 기타 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중요 사항 (개정 2010. 4. 5.)

제15조 [회의] 집행위원회는 재적구성원의 3분의 1 이상의 출석으로 개최하고 출석 구성원의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10. 4. 5.)

제 5 장 보 칙

제16조 [세칙] 위원회는 이 규정의 범위 내에서 필요한 때에는 세칙을 정할 수 있다.

제17조 [준용] 이 규정이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관하여는 위원회운영규칙을 준용한다.

제18조 <삭제> (2010. 4. 5.)

부 칙

이 규정은 공포 후 즉시 시행한다.

부 칙 (2010. 4. 5.)

이 규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사내변호사특별위원회규정

2011. 5. 23.

규정 제107호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위원회운영규칙 제2조 제3항에 따라 사내변호사 제도의 발전과 사내변호사들의 사회정의 실현, 인권옹호, 회원들 사이의 정보 교류, 위상 제고 및 이들에 대한 지원 및 회무에 대한 적극적 참여 등을 유도하기 위하여 대한변호사협회 내의 특별위원회로 사내변호사특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하고, 그 조직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기능] 위원회는 다음 사항에 관하여 조사, 연구하고 그 결과를 협회장에게 건의한다.

1. 사내변호사 지위 및 역할 등 사내변호사제도에 대한 조사·연구
2. 사내변호사 지원 방안에 대한 연구
3. 기타 협회장이 요청한 사항

제3조 [구성] ① 위원회는 10인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은 협회장이 위촉한다.

③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④ 위원 중에서 결원이 생긴 때에는 그 후임자를 보충하여 위촉한다. 다만, 그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제4조 [임원] ① 위원회에는 위원장(공동위원장 체제로 할 경우 위원장은 2인 이상을 둘 수 있다), 부위원장 3인 이상, 간사 3인 이상을 둔다.

② 위원장은 협회장이 추천한 위원 중에서 위원회가 선임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간사는 위원 중에서 위원장이 선임한다.

③ 위원장은 위원회를 통할하고 위원회를 대표한다.

④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유고시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⑤ 간사는 위원장의 지시에 따라 위원회의 사무를 담당한다.

⑥ 임원의 임기 및 보선에 관하여는 제3조 제3항 및 제4항을 준용한다.

제5조 [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소집하고 위원장이 위원회의 의장이 된다. 다만, 위원장이 선출되기까지는 협회장이 소집한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4분의 1 이상의 출석으로 성립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협회장, 부협회장 및 상임이사는 위원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④ 위원회의 의사는 비공개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위원회가 공개 결의를 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6조 [소위원회] ① 위원회의 업무를 보좌하기 위하여 위원회의 결의로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소위원회 위원은 위원장이 위촉한다.

제7조 [준용] 이 규정이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관하여는 위원회운영규칙을 준용한다.

제8조 [존속기간] 위원회는 이사회가 이 규정의 폐지를 결의할 때까지 존속한다.

부 칙

이 규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여성변호사특별위원회규정

2011. 5. 23.

규정 제110호

개정

2015. 10. 19.

2021. 5. 3.

제 1 장 <삭제> (2021. 5. 3.)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위원회운영규칙 제2조제3항에 따라 여성의 기본적인 인권 옹호와 사회적 지위의 향상 및 사회정의 실현에 기여하고, 여성변호사들의 상호 정보교류, 위상 제고 및 이들에 대한 지원 등을 위하여 대한변호사협회 내의 특별위원회로 여성변호사특별위원회를 설치하고, 그 조직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 5. 3.)

제2조 [기능] 위원회는 다음 사항에 관하여 조사, 연구하고 그 결과를 협회장에게 건의한다.

(개정 2021. 5. 3.)

1. 여성변호사 권익 보호, 처우개선에 대한 조사·연구 (신설 2021. 5. 3.)
2. 여성변호사 지원방안에 관한 연구 (신설 2021. 5. 3.)
3. 기타 협회장이 요청한 사항 (신설 2021. 5. 3.)

제3조 [구성] ① 위원회는 10인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21. 5. 3.)

② 위원은 협회장이 회원 중에 임명한다. 다만, 필요한 때에는 회원이 아닌 덕망 있는 사회인사를 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 (개정 2021. 5. 3.)

③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신설 2021. 5. 3.)

④ 위원 중에서 결원이 생긴 때에는 그 후임자를 보충하여 임명한다. 다만, 그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 기간으로 한다. (신설 2021. 5. 3.)

제 2 장 <삭제> (2021. 5. 3.)

제4조 [임원] ① 위원회에는 위원장, 부위원장, 간사 각 1인을 둔다. (개정 2021. 5. 3.)

② 위원장은 협회장이 추천한 위원 중에서 위원회가 선임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간사는 위원 중에서 위원장이 선임한다. (신설 2021. 5. 3.)

③ 위원장은 위원회를 통할하고 위원회를 대표한다. (신설 2021. 5. 3.)



④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유고 시 그 직무를 대행한다. (신설 2021. 5. 3.)

⑤ 간사는 위원장의 지시에 따라 위원회의 사무를 담당한다. (신설 2021. 5. 3.)

⑥ 임원의 임기 및 보선에 관하여는 제3조 제3항 및 제4항을 준용한다. (신설 2021. 5. 3.)

제5조 [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소집하고 위원장이 위원회의 의장이 된다. 다만, 위원장이 선출되기까지는 협회장이 소집한다. (개정 2021. 5. 3.)

② 회의는 재적위원 4분의 1 이상의 출석으로 성립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21. 5. 3.)

③ 협회장, 부협회장 및 상임이사는 위원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개정 2021. 5. 3.)

④ 위원회의 의사는 비공개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위원회가 공개 결의를 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1. 5. 3.)

제6조 [소위원회] ① 위원회의 업무를 보좌하기 위하여 상임이사회의 심의를 거쳐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 (개정 2021. 5. 3.)

② 소위원회는 연구 및 조사 등의 결과를 서면으로 위원회에 보고한다. (개정 2021. 5. 3.)

③ <삭제> (2021. 5. 3.)

제 3 장 <삭제> (2021. 5. 3.)

제7조 [준용] 이 규정이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관하여는 위원회운영규칙을 준용한다. (개정 2021. 5. 3.)

제8조 [존속기간] ① 위원회는 이사회가 이 규정의 폐지를 의결할 때까지 존속한다. (개정 2021. 5. 3.)

② <삭제> (2021. 5. 3.)

③ <삭제> (2021. 5. 3.)

1. <삭제> (2021. 5. 3.)

2. <삭제> (2021. 5. 3.)

④ <삭제> (2021. 5. 3.)

⑤ <삭제> (2021. 5. 3.)

제9조 <삭제> (2021. 5. 3.)

제10조 <삭제> (2021. 5. 3.)

제11조 <삭제> (2021. 5. 3.)

제 4 장 <삭제> (2021. 5. 3.)



제12조 <삭제> (2021. 5. 3.)

제13조 <삭제> (2021. 5. 3.)

제14조 <삭제> (2021. 5. 3.)

제15조 <삭제> (2021. 5. 3.)

제 5 장 <삭제> (2021. 5. 3.)

제16조 <삭제> (2021. 5. 3.)

제 6 장 <삭제> (2021. 5. 3.)

제17조 <삭제> (2021. 5. 3.)

제18조 <삭제> (2021. 5. 3.)

제19조 <삭제> (2021. 5. 3.)

부 칙

이 규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5. 10. 19.)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21. 5. 3.)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명예변호사위촉에관한규정

2010. 1. 25.

규정 제95호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대한변호사협회(이하 “회”라 함) 및 소속 회원의 대국민 홍보를 위한 명예변호사를 위촉하기 위하여 그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명예변호사] 협회장은 회를 홍보하고 모범적인 변호사상을 홍보하기 위하여 변호사 아닌 일반 국민들 중에서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사람을 상임이사회 결의를 거쳐 명예변호사로 위촉할 수 있다.

제3조 [자격요건] 명예변호사는 사회적 명망이 있는 사람으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에 부합하여야 한다.

1. 회의 설립목적을 구현할 수 있는 이미지를 가진 사람
2. 모범적인 변호사상을 구현할 수 있는 이미지를 가진 사람

제4조 [위촉기간] 명예변호사의 자격은 원칙적으로 영구적으로 한다. 다만, 위촉사안에 따라 기간을 다르게 하여 위촉할 수 있다.

제5조 [해촉] 명예변호사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해촉할 수 있다.

1. 사망한 때
2. 명예변호사가 일신상의 사유로 해촉을 요청할 때
3. 회 또는 변호사의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였을 때
4. 변호사법 제5조의 변호사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때
5. 명예변호사 위촉사업이 폐기될 때

제6조 [위촉증 및 변호사 배지 수여] 협회장은 위촉된 명예변호사에게 위촉증 및 변호사 배지를 수여할 수 있다.

제7조 [명예변호사의 활동] ① 명예변호사는 초상권사용에 동의하여야 한다. 단, 협회의 초상권의 사용범위는 목적사업에 한한다.

② 명예변호사는 이 회 또는 변호사의 이미지 홍보에 적극 참여하여야 한다.

③ 명예변호사는 이 회의 각종 공익사업이나 중점사업 홍보에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

제8조 [보수] 명예변호사는 무보수 명예직으로 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 상임이사회 결의에 따라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부 칙

① [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 [경과조치] 이 규정 시행 전에 위촉한 제1호 명예변호사는 이 규정에 의하여 위촉한 것으로 본다.



일과가정양립을위한위원회규정

2013. 5. 13.

규정 제119호

개정 2017. 3. 22.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위원회운영규칙 제2조 제3항에 따른 특별위원회로서 대한변호사협회 회원이 일과 가정을 양립하여 안정적으로 가정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정책을 제발하고 지원하기 위하여 ‘일과가정양립을위한위원회(이하 “위원회”라고 한다)’를 설치하고, 그 조직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조직] ① 위원회의 정원은 10인 이상 50인 이하로 한다. (개정 2017. 3. 22.)

② 위원은 협회장이 회원 중에서 임명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 변호사가 아닌 자 중에서 학식과 덕망이 있는 외부인사를 상임이사회의 승인을 얻어 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

③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제3조 [임원] ① 위원회에는 위원장, 부위원장, 간사 각 1인을 둔다.

② 위원장은 협회장이 추천한 위원 중에서 선임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간사는 위원장이 위원 중에서 선임한다.

③ 위원장은 위원회의 사무를 통할하고 위원회를 대표한다.

④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⑤ 간사는 위원장의 지시에 따라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한다.

제4조 [회의] ① 위원회는 위원장이 매월 1회 이상 소집할 수 있고 그 의장이 된다. 다만, 위원장이 선임되기 전까지는 협회장이 그 직무를 수행한다.

② 위원회는 필요에 따라 인터넷, 전화, 서신을 이용하여 회의를 진행할 수 있다.

③ 위원회는 위원회 구성원의 3분의 1 이상이 회의의 목적사항과 소집의 이유를 기재한 서면을 위원장에게 제출하고 위원회의 소집을 요구한 때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에 소집한다.

제5조 [의결] ① 위원회는 재적위원 4분의 1 이상의 출석으로 성립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위원장이 결정한다.

② 위원은 위원회에 출석하지 아니하고 서면 또는 전자우편(이메일)으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다.

③ 위원회 전일까지 도착한 제2항의 서면 또는 전자우편(이메일)은 위원의 출석 및 의결권 행사로 간주할 수 있다.

제6조 [설치 및 구성] ① 위원 중에서 결원이 생긴 때에는 그 후임자를 보충하여 위촉한다. 다만, 위원 정원의 5분의 1 이내에서 결원이 생긴 때에는 그 후임자를 임명하지 아니할 수 있다. 이 때 선임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② 위원은 임기가 만료되었더라도 후임자가 선임될 때까지는 계속하여 그 직무를 행한다.

제7조 [의결사항] 위원회는 다음 사항을 의결한다.

1. 위원회운영세칙의 제정 또는 개정에 관한 사항
2. 임원의 선임에 관한 사항
3. 기타 협회장이 부의한 사항
4. 위원장이 부의한 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중요 사항

제8조 [회의의 공개와 발언] ① 협회장, 부협회장, 상임이사는 위원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 할 수 있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공개한다. 다만, 위원회가 달리 의결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9조 [소위원회] ① 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고 특정한 사항을 연구, 심의 또는 조사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위원회의 결의로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소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에서 정한다.

제10조 [준용] 이 규정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관하여는 위원회운영규칙을 준용한다.

제11조 [존속기간] 위원회는 이사회가 이 규정의 폐지를 의결할 때까지 존속한다.

부 칙

이 규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7. 3. 22.)

이 규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대한변협 양성평등센터 규정

2019. 11. 4.

규정 제166호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양성평등기본법」 및 그 밖의 관계 법령에 따라 변호사업계의 성차별을 해소하고 성희롱, 성폭력을 금지·예방하며 나아가 변호사 직역 내 양성평등한 문화를 조성하기 위하여 양성평등센터의 설치 및 조직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양성평등센터 및 사무소의 설치] 양성평등 문화 조성 등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대한변호사협회에 양성평등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두며, 센터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대한변호사협회 내에 사무소를 설치한다.

제3조 [센터의 기구] ① 센터에는 센터장 1인과 부센터장 1인 및 필요한 사무직원을 둘 수 있다.

② 센터장 및 부센터장은 협회장이 상임이사회의 심의를 거쳐 회원 중에서 임명한다.

③ 센터장은 센터를 대표하고 센터의 업무를 총괄한다.

④ 부센터장은 센터장을 보좌하고 센터장이 유고 시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⑤ 센터장과 부센터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단, 임기가 만료된 경우 후임이 정하여 질 때까지 그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제4조 [센터의 업무] 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양성평등 인식 제고를 위한 교육
2. 양성평등 인식·현황 실태조사와 연구
3. 양성평등 제도 개선방안 마련
4. 양성평등문화 확산을 위한 사업
5. 성차별, 성희롱, 성폭력으로 인한 회원의 고충처리
6. 센터의 운영에 관한 사항
7. 기타 목적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5조 [운영위원회] ① 센터의 업무집행을 위하여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센터장 1인과 부센터장 1인 및 협회장이 회원 중 위촉하는 2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단, 필요한 경우에는 위원 수 3분의 1 이내에서 외부인사를 위촉할 수 있다.

③ 위원장은 센터장이 되고, 간사는 위원장이 지명한다.

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단, 유고 또는 사임으로 후임자를 위촉할 경우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제6조 [운영위원회의 회의] ① 위원회는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위원회는 제4조 각호에 정한 센터의 업무에 관한 사항을 심의한다.

③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최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단, 고충 처리 심의에 관하여는 제12조의 규정에 의한다.

제7조 [교육] ① 센터는 다음 각 호의 변호사연수교육에서 양성평등 및 성차별금지, 성인지, 성희롱·성폭력 예방에 관한 교육과정을 편성·운영할 수 있다.

1. 윤리연수
2. 전문연수
3. 의무연수
4. 현장연수
5. 개별연수

② 센터는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남녀고용평등법”이라 한다) 제13조의 성희롱 예방교육을 요청하는 변호사 단체(법무법인, 법률사무소 포함)의 요청이 있을 경우 성희롱 예방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단, 강연자 선정 및 교육대상자의 범위, 비용징수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별도의 지침에 의한다.

③ 센터는 변호사 업무와 관련된 모든 영역에서의 양성평등을 고양, 증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은 내용의 교육 관련 활동을 실시할 수 있다.

1. 양성평등 교육 프로그램의 개발 및 운영
2. 양성평등 문화축진을 위한 강연 행사 등의 기획 및 홍보
3. 양성평등 의식 제고를 위한 지침서, 사례집 등의 자료 발간

제8조 [양성평등 의식 현황 실태조사 및 연구] ① 센터는 변호사의 채용·승진 등 근로조건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표할 수 있다.

② 센터는 소속변호사수 30인 이상인 국내 법무법인 및 합동법률사무소를 대상으로 소속변호사의 성별, 임원 수에 관한 자료를 조사하고 그 결과를 공표할 수 있다.

③ 센터는 협회소속의 변호사들을 대상으로 성희롱·성폭력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표할 수 있다.

④ 제1항 내지 제3항의 구체적인 조사 방법, 시기, 내용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별도의 지침으로 정한다.

⑤ 센터는 제1항 내지 제3항의 조사결과에 따라 제도개선을 위한 연구를 수행할 수 있다.

제9조 [변호사 단체의 양성평등실현을 위한 권고조치] 센터는 대한변호사협회 및 각 지방변호사회 내부의 이사회와 각종 위원회(위원회, 심의회, 협의회 등 명칭을 불문하고 단체 사무에 관하여 자문에 응하거나 조정, 협의, 심의 또는 의결을 하기 위한 복수의 구성원으로 이루어진 합의제 기관을 말한다. 이하 같다)를 구성할 때,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제10조 [포상] 대한변호사협회장은 양성평등센터의 추천을 받아 양성평등의 촉진, 양성평등한 참여 확대 등에 공헌한 개인, 단체 등에게 포상할 수 있다.



제11조 [고충처리의 신청 등] ① 성차별, 성희롱, 성폭력 피해를 입은 회원은 누구든지 센터에 고충처리 신청을 할 수 있다. 피해당사자가 아닌 경우에도 위 피해사실을 인지한 경우에는 고충처리 신청을 할 수 있다. 단,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센터에 고충처리를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신청인 및 피해자의 이름과 주소, 신청의 취지·이유와 고충신청의 원인이 된 사실 내용을 기재하여 문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로 이를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문서에 의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구술로 신청할 수 있다.

③ 위원장은 제1항의 고충 처리 신청이 접수된 때에는 지체 없이 운영위원회를 소집하고 운영위원회로 하여금 제12조에 정한 절차를 진행하도록 하여야 한다.

④ 기타 고충처리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별도의 지침으로 정한다.

제12조 [고충처리 신청 사건의 심의 등] ① 운영위원회는 고충처리 사건을 심의함에 있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정할 수 있다. 단, 징계절차에 관한 사항은 변호사징계규칙을 따른다.

1. 고충처리 신청자에 대한 면담, 사실관계 확인 등을 위한 담당위원의 선정
2. 화해권고
3. 징계절차 개시를 위한 조사 등 촉구 결정
4. 고충처리를 위하여 기타 필요한 조치
5. 제2호, 제3호, 제4호 외의 사유로 인한 고충처리절차의 종료

② 운영위원회의 심의결과, 고충처리 신청자에 대한 피해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위원장은 즉시 최종 심의결과를 협회장에게 보고한다.

③ 제1항의 심의에 관하여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최하고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3조 [비밀유지의무] 센터장, 부센터장, 위원들은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엄수하여야 한다.

제14조 [수당 등] 이회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센터장, 부센터장 및 위원에게 수당, 교통비, 기타 필요한 비용을 지급할 수 있다.

제15조 [준용] 이 규정이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관하여는 위원회운영규칙을 준용한다.

제16조 [존속기간] 센터는 이사회가 이 규정의 폐지를 의결할 때까지 존속한다.

부 칙 (2019. 11. 4.)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확장된단일사무소심사규정

2013. 5. 13.

규정 제120호

개정 2013. 9. 9.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변호사법 제21조 제3항 단서의 규정에 따라 인접한 장소에 둔 별도의 사무소를 하나의 사무소(이하 “확장된 단일사무소”라고 한다)로 보기 위한 심사기준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심사] ① 확장된 단일사무소로 볼 것인지 여부는 대한변호사협회에서 심사한다.

② 확장된 단일사무소로 볼 것인지 여부를 심사하기 위하여 심사위원회를 둔다. (신설 2013. 9. 9.)

제2조의2 [심사위원회] ① 심사위원회는 협회장이 위촉한 5인 이상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위원장, 부위원장, 간사를 둔다.

② 위원장은 상임이사회의 심의를 거쳐 협회장이 임명하고, 부위원장 및 간사는 심사위원회에서 호선한다.

③ 심사를 의뢰 받은 심사위원회는 심사 의견을 첨부하여 상임이사회에 보고한다. 다만, 협회장은 신속한 처리를 위해 상임이사 중 1인을 정해 확장된 단일사무소로 볼 것인지 여부를 검토하도록 하고, 담당 상임이사로 하여금 심사의견을 상임이사회에 보고하도록 할 수 있다.

④ 상임이사회는 심사위원회의 의견을 참고하여 확장된 단일사무소로 볼 것인지 여부를 결정하며, 상당한 이유가 있을 경우 심사위원회에 재심사를 요구할 수 있다.

(신설 2013. 9. 9.)

제3조 [심사의 기준] 대한변호사협회는 제2조의 심사에 있어서 다음 각 호의 사정을 고려하여야 한다.

1. 복수 사무소 사이의 거리, 복수 사무소를 연결하는 통로 및 도로 등 물리적인 접근성
2. 복수 사무소의 이용 상황, 복수 사무소에 주재하는 변호사의 수 등 실질적인 사용현황
3. 인근 사무용 빌딩 등 사무공간 공실률(空室率), 임료(賃料)의 수준 등 경제적인 사무실 확보가능성
4. 본래의 사무소에서 별도의 사무소를 필요로 하는 업무의 내용
5. 본래의 사무소의 이용현황
6. 그밖에 이에 준하여 심사에 필요하다고 대한변호사협회가 인정하는 사항

제4조 [사실조회 등] 대한변호사협회는 제2조의 심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계인 및 관계 기관·단체 등에 대하여 사실을 조회하거나 자료의 제출 또는 대한변호사협회에 출석하여 진술하거나 설명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제5조 [준용규정] 이 규정이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관하여는 위원회운영규칙을 준용한다.

(신설 2013. 9. 9.)



부 칙 (2013. 5. 13.)

이 규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3. 9. 9.)

이 규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변호사 수급 정상화 특별위원회 규정

2017. 3. 22.

규정 제142호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위원회운영규칙 제2조 제3항에 의한 특별위원회로서 변호사 수급 정상화 특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하고 그 조직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업무] 위원회는 변호사 수급 정상화 실현을 위한 대안정책과 개선활동 방안을 마련하여 협회장에게 건의한다.

제3조 [구성] ① 위원회는 10인 이상 5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은 협회장이 회원 중에서 임명한다. 다만, 필요한 때에는 회원이 아닌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회 인사를 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

③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④ 위원 중에서 결원이 생긴 때에는 그 후임자를 보충하여 임명할 수 있다. 다만, 그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 기간으로 한다.

제4조 [임원] ① 위원회에 위원장, 부위원장, 간사 각 1인을 둔다.

② 위원장은 협회장이 위원 중에서 임명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간사는 위원 중에서 위원장이 임명한다.

③ 위원장은 위원회의 업무를 통할하고 위원회를 대표한다.

④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의 유고 시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⑤ 간사는 위원장의 지시에 따라 위원회의 사무를 담당한다.

제5조 [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다만, 위원장이 선출되기 전까지는 협회장이 이를 소집한다.

②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판단할 때에 위원회를 소집할 수 있다. 다만, 위원장은 협회장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위원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③ 회의는 재적위원 4분의 1 이상의 출석으로 성립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장이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관계자 또는 전문가를 회의에 참석시켜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⑤ 협회장, 부협회장, 상임이사는 위원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⑥ 위원회의 의사는 비공개로 원칙으로 한다. 다만, 위원회가 공개를 결의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6조 [소위원회] ① 위원장은 특정한 사항을 연구 또는 조사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상임이사회의 심의를 거쳐 위원 또는 위원이 아닌 자로 구성된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소위원회의 소집, 회의 및 의사진행에 관하여는 제5조를 준용한다.

③ 소위원회 위원장은 의사의 경과와 결과를 위원회에 서면으로 보고한다.

제7조 [수당 등] 위원회의 위원, 제5조 제4항의 관계자 및 전문가 또는 소위원회가 출석, 특정과제의 연구 또는 조사 등을 한 경우 이에 필요한 제반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8조 [준용] 이 규정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관하여는 위원회운영규칙을 준용한다.

제9조 [존속기간] 위원회는 이사회가 이 규정의 폐지를 결의할 때까지 존속한다.

부 칙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우수변호사선정특별위원회규정

2017. 3. 22.

규정 제143호

개정 2021. 10. 5.
2022. 2. 14.
2022. 10. 11.
2023. 1. 2.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변호사의 위상을 제고하는 데 큰 기여를 한 우수 변호사 선정을 위하여 위원회운영규칙 제2조제3항에 따라 우수변호사선정특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하고, 그 조직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기능] 위원회의 기능은 다음과 같다.

1. 우수 변호사 선정 업무의 방향설정 및 계획수립
2. 우수 변호사 선정 기준, 방법, 절차, 공개 등의 결정
3. 우수 변호사 평가 실시, 선정 항목 개발
4. 공정하고 객관적인 우수 변호사 선정 방법의 개선을 위한 조사·연구
5. 우수 변호사 선정의 홍보 및 활성화 방안에 관한 조사·연구
6. 기타 협회장이 요청하는 사항

제3조 [구성] ① 위원회는 10인 이상 5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은 상임이사회 심의를 거쳐 협회장이 회원 중에서 임명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 상임이사회 심의를 거쳐 법조계, 학계, 언론계, 유관기관 등의 외부인사와 경험과 덕망이 있는 자 중에서 위촉할 수 있다.

제4조 [임기]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② 위원 중에서 결원이 생긴 때에는 그 후임자를 보충하여 임명 또는 위촉한다. 다만, 그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제5조 [임원] ① 위원회에 위원장 1인, 부위원장 1인, 간사 1인을 둔다.

② 위원장은 협회장이 추천한 위원 중에서 위원회가 선임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간사는 위원, 사무차장 중에서 위원장이 선임한다.

③ 위원장은 위원회를 통할하고 위원회를 대표한다.

④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의 유고 시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⑤ 간사는 위원장의 지시에 따라 위원회의 사무를 담당한다.

⑥ 임원의 임기 및 보선에 관하여는 제4조제1항 및 제2항을 준용한다.

제6조 [회의] ① 위원회는 위원장이 소집하고 위원장이 의장이 된다. 다만, 위원장이 선출되기까지



는 협회장이 이를 소집한다. 위원장은 협회장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는 때에는 위원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4분의 1 이상의 출석으로 성립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협회장, 부협회장, 상임이사는 위원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④ 위원회의 의사는 비공개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위원회가 공개결의를 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7조 [선정 방법 등] ① 우수 변호사 선정은 회원이 다른 회원을 직접 평가하고 위원회가 심사하는 방법으로 시행한다. (개정 2022. 10. 11.)

② 우수변호사는 상임이사회 심의를 거쳐 협회장이 정한다. (개정 2022. 10. 11.)

③ 선정의 방법·기준·등급·항목 등은 위원회가 지침으로 정할 수 있다. (제2항에서 이동 2022. 10. 11.)

제8조 [선정 결과의 보고 및 공개] 위원회는 선정한 결과를 취합하여 협회장에게 보고한 후 보도자료, 법조신문, 협회 홈페이지에 공개할 수 있다. (개정 2022. 2. 14.)

제9조 [선정취소] ① 협회는 우수변호사로 선정된 변호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우수변호사 선정을 취소할 수 있다. (개정 2023. 1. 2.)

1. 변호사로서 징계처분을 받은 경우

2. 변호사로서 품위유지 의무를 위반하거나 협회 제반 회규를 위반하는 등 우수변호사로 유지하는 것이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 공적의 내용이 허위일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우수변호사 선정 취소는 위원회의 심사와 상임이사회 심의를 거쳐 협회장이 정한다. (개정 2023. 1. 2.)

③ 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우수변호사 선정 취소를 심사하기 전에 해당 변호사에게 소명의 기회를 부여하여야 한다. (개정 2023. 1. 2.)

④ 제1항에 따라 선정을 취소한 경우 협회는 지체 없이 그 뜻을 해당 변호사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신설 2023. 1. 2.)

⑤ 우수변호사 선정이 취소될 경우 해당 변호사는 상장과 부상을 협회에 즉시 반납하여야 하며, 어떠한 방식으로도 우수변호사 명칭을 사용, 활용해서는 아니 된다. (신설 2023. 1. 2.)

(본조신설 2021. 10. 5.)

제10조 [수당] 협회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우수 변호사 선정 활동에 참여한 위원에게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9조에서 이동, 종전 제10조는 제11조로 이동, 2021. 10. 5.)

제11조 [비밀엄수] 위원 등 우수 변호사 선정 업무에 참여한 자 및 사무국 직원은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0조에서 이동, 종전 제11조는 제12조로 이동, 2021. 10. 5.)

제12조 [지침의 제·개정] 위원회가 이 규정에 따라 지침을 제정하거나 개정하는 경우 상임이사회



의 심의와 협회장의 승인을 거쳐야 그 효력을 발생한다. (제11조에서 이동, 종전 제12조는 제13조로 이동, 2021. 10. 5.)

제13조 [준용] 이 규정이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관하여는 위원회운영규칙을 준용한다. (제12조에서 이동, 종전 제13조는 제14조로 이동, 2021. 10. 5.)

제14조 [존속기간] 위원회는 이사회가 이 규정을 폐지할 때까지 존속한다. (제13조에서 이동, 2021. 10. 5.)

부 칙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21. 10. 5.)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22. 4. 25.)

제1조 [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경과조치] 이 규정 시행 전에 실시한 신문을 통한 공개는 이 규정에 의하여 실시한 것으로 본다.

부 칙 (2022. 10. 11.)

제1조 [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경과조치] 이 규정 시행 전에 선정한 우수변호사는 이 규정에 의해 선정한 것으로 본다.

부 칙 (2023. 1. 2.)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입법특별위원회규정

2017. 9. 11.

규정 제151호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위원회운영규칙 제2조제3항에 따른 특별위원회로서 변호사직역 수호 및 확장 등에 관한 사항을 조사·연구 및 입법추진하기 위하여 입법특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하고, 그 조직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기능] 위원회는 다음 사항에 관한 조사·연구와 추진방안을 심의하여 입법지원 및 자문 역할을 수행하고 그 결과를 협회장에게 건의한다.

1. 변호사직역 수호 및 확장에 관한 사항
2. 변호사직역에 관한 법·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
3. 외국의 변호사직역에 관한 연구
4. 기타 협회장이 자문한 사항

제3조 [조직] ① 위원회는 4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은 협회장이 상임이사회의 심의를 거쳐 회원 또는 외부 인사를 위촉할 수 있다.

③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결원이 생긴 때에는 그 후임자를 지체 없이 지명한다.

제4조 [임원] ① 위원회에 위원장, 부위원장 및 간사 각 1인을 둔다.

② 위원장은 협회장이 추천한 위원 중에서 위원회가 선임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간사는 위원장이 선임한다.

③ 위원장은 위원회를 통할하고 위원회를 대표한다.

④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유고 시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⑤ 간사는 위원장의 지시에 따라 위원회의 사무를 담당한다.

제5조 [임기]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② 제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임명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제6조 [회의] ① 위원회는 위원장이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다만, 위원장이 선출되기까지는 협회장이 이를 소집한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4분의 1 이상의 출석으로 성립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협회장, 부협회장, 상임이사는 위원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④ 위원회의 의사는 비공개함을 원칙으로 한다. 그러나 위원회가 공개 결의를 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7조 [준용] 이 규정이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관하여는 위원회운영규칙을 준용한다.



제8조 [존속기간] 위원회는 이사회가 이 규정의 폐지를 결의할 때까지 존속한다.

부 칙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입법평가 특별위원회 규정

2018. 4. 9.

규정 제155호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위원회운영규칙 제2조제3항에 의한 특별위원회로서 입법평가 특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하고, 그 조직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업무의 범위]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각종 입법에 관한 사항에 관하여 필요한 자료를 수집, 분석, 평가하는 업무 등을 수행한다.

1. 각종 법령
2. 각종 법령안
3. 입법의 주체, 기타 유관기관 및 단체
4. 기타 관련사항

제3조 [조직] ① 위원회는 10인 이상 7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은 협회장이 회원 중에서 임명한다. 다만, 필요한 때에는 회원이 아닌 덕망 있는 사회인사를 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

③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④ 위원 중에서 결원이 생긴 때에는 그 후임자를 보충하여 임명 또는 위촉할 수 있다.

제4조 [임원 등] ① 위원회에 위원장 1인, 부위원장 2인, 간사 1인을 둔다.

② 위원장은 협회장이 추천한 위원 중에서 위원회가 선임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간사는 위원 중에서 위원장이 선임한다.

③ 위원장은 위원회를 통할하고 위원회를 대표한다.

④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유고 시에는 선임 시에 지정된 순서에 따라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⑤ 간사는 위원장의 지시에 따라 위원회의 사무를 집행한다.

제5조 [회의] ① 위원회는 위원장이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위원장은 협회장 또는 재적위원 4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위원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4분의 1의 출석으로 성립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협회장, 부협회장 및 상임이사는 위원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④ 위원회는 전문가 기타 관계자를 출석시켜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⑤ 위원회의 의사는 비공개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위원회가 공개결의를 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6조 [평가기준 등] 입법평가의 기준 및 기타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가 정한다.



제7조 [평가결과의 제출 및 공표 등] 위원회는 평가결과를 협회장에게 제출하고, 협회장의 위임에 따라 그 내용을 공표하거나 해당 기관에 송부할 수 있다.

제8조 [준용] 이 규정이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관하여는 위원회운영규칙을 준용한다.

부 칙 (2018. 4. 9.)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IT·블록체인특별위원회 규정

2018. 12. 28.

규정 제160호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블록체인 및 관련 IT산업에 대한 제도 연구와 대책 마련을 위하여 위원회운영 규칙 제2조 제3항에 따라 ‘IT·블록체인특별위원회(이하 “위원회”라고 한다)’를 설치하고, 그 조직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기능] 위원회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블록체인과 관련 IT산업 제도 연구
2. 블록체인과 관련 IT산업 대책 수립
3. 블록체인과 관련 IT산업 법제화 추진
4. 기타 협회장이 요청하는 사항

제3조 [구성] ① 위원회의 정원은 10인 이상 70인 이하로 한다.

② 위원은 협회장이 회원 중에서 임명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 변호사가 아닌 자 중에서 학식과 덕망이 있는 외부 인사를 상임이사회의 승인을 얻어 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

제4조 [임기]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② 위원 중에서 결원이 생긴 때에는 그 후임자를 보충하여 임명 또는 위촉할 수 있다. 다만, 그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제5조 [임원] ① 위원회에는 위원장 1인, 부위원장 2인, 간사 2인을 둔다.

② 위원장은 협회장이 추천한 위원 중에서 선임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간사는 위원장이 위원 중에서 임명한다.

③ 위원장은 위원회의 사무를 통할하고 위원회를 대표한다.

④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 그 직무를 대행한다. 이 경우 부위원장의 대행 순서는 협회장이 지명하는 순으로 한다.

⑤ 간사는 위원장의 지시에 따라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한다.

제6조 [회의] ① 위원회는 위원장이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다만, 위원장이 선임되기 전까지는 협회장이 그 직무를 수행한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4분의 1 이상의 출석으로 성립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위원장이 결정한다.

제7조 [소위원회] ① 위원회 위원장은 특정한 사항을 연구 또는 조사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상임이사회의 심의를 거쳐 위원 또는 위원이 아닌 자로 구성된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소위원회의 소집, 회의 및 의사진행에 관하여는 위원회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③ 소위원회 위원장은 의사의 경과와 결과를 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8조 [준용] 이 규정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관하여는 위원회운영규칙을 준용한다.

제9조 [존속기간] 위원회는 이사회가 이 규정의 폐지를 의결한 때까지 존속한다.

부 칙 (2018. 12. 28.)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벤처·스타트업법률지원특별위원회 규정

(2022. 10. 11. 규정제목개정)

2022. 4. 11.

규정 제178호

전부개정 2022. 10. 11.

제1조 [목적] ① 이 규정은 창업기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정부 등에서 실시하는 벤처·스타트업 법률지원 사업에 대한변협이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벤처·스타트업법률지원특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하고, 그 조직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② 위원회는 벤처·스타트업 기업을 대상으로 한 변호사의 법률지원을 중개하는 사무를 처리한다.

제2조 [기능] ① 위원회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정부, 공공기관의 벤처·스타트업 법률 지원 사업 자문
2. 벤처·스타트업 법률 지원을 위한 각종 입법 활동 자문
3. 벤처·스타트업 법률 사업을 위한 멘토링, 교육, 협회 회원 매칭 프로그램 수립 운영
4. 벤처·스타트업 법률 지원을 위한 DB 구축 및 관리
5. 협회장 요청사항
6. 기타 위원회가 결정한 사항

② 위원회는 전항의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이해관계인 및 단체 또는 관계 전문가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으며, 이들에게 예산의 범위 내에서 여비 및 기타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③ 위원회는 벤처·스타트업 기업에 대한 법률지원활동의 내용을 체계화하고, 회원의 각종 법률지원활동에 상응하는 보수기준 등을 수립하여 협회장에게 보고한다.

제3조 [조직] ① 위원회의 정원은 10인 이상 50인 이하로 한다.

② 위원은 협회장이 회원 중에서 임명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 변호사가 아닌 자 중에서 학식과 덕망이 있는 외부인사를 상임이사회의 승인을 얻어 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

제4조 [임기]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② 위원 중에서 결원이 생긴 때에는 그 후임자를 보충하여 임명 또는 위촉할 수 있다. 다만, 그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제5조 [임원] ① 위원회에는 위원장, 부위원장, 간사 각 1인을 둔다.

② 위원장은 협회장이 추천한 위원 중에서 위원회가 선임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간사는 위원장이 위원 중에서 선임한다.

③ 위원장은 위원회의 사무를 통할하고 위원회를 대표한다.



④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⑤ 간사는 위원장의 지시에 따라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한다.

제6조 [회의] ① 위원회는 위원장이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다만, 위원장이 선임되기 전까지는 협회장이 그 직무를 수행한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4분의 1 이상의 출석으로 성립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은 위원회에 출석하지 아니하고 서면 또는 전자우편(이메일)으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다.

④ 협회장, 부협회장 및 상임이사는 위원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⑤ 위원회의 의사는 비공개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위원회가 공개결의를 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7조 [소위원회] ① 위원회의 업무를 보좌하기 위하여 상임이사회의 심의를 거쳐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소위원회는 연구 및 조사 등의 결과를 서면으로 위원회에 보고한다.

제8조 [준용] 이 규정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관하여는 위원회운영규칙을 준용한다.

제9조 [존속기간] 위원회는 이사회가 이 규정의 폐지를 의결한 때까지 존속한다.

부 칙 (2022. 4. 11.)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22. 10. 11.)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대한변호사협회 변호사정보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2022. 2. 14.

규정 제175호

개정 2023. 3. 20.
2024. 9. 9.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법률시장의 공공성을 수호하고 소비자에게 변호사 정보 및 법률 상담 서비스 등을 제공하기 위하여 대한변호사협회가 변호사정보센터를 설치하며, 그 조직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 9. 9.)

제2조 [대한변호사협회 변호사정보센터의 설치] 변호사 회원(이하 “회원”이라 한다) 정보 제공 및 법률 상담 서비스 운영 등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대한변호사협회에 대한변호사협회 변호사정보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24. 9. 9.)

제3조 [센터의 기구] ① 센터에는 센터장 1인과 부센터장 및 필요한 사무직원을 둘 수 있다.
② 센터장은 협회장이 임명하고, 센터를 대표하며, 센터의 업무를 총괄한다.
③ 협회장은 센터장의 의견을 들어 부센터장을 임명할 수 있으며, 부센터장은 센터장을 보좌하고 센터장이 부재할 시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④ 센터장과 부센터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임기가 만료된 경우 후임자가 없을 때는 후임이 임명될 때까지 그 직무를 수행한다.

제4조 [센터의 업무] 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회원 정보의 제공에 관한 사항
2. 회원 정보의 확인·검증에 관한 사항
3. 회원 정보의 관리 및 사용에 관한 사항
4. 법률 상담 서비스 운영에 관한 사항 (개정 2024. 9. 9.)
5. 소송 등 의뢰 서비스 운영에 관한 사항 (개정 2024. 9. 9.)
6. 센터의 운영에 관한 사항(4호에서 이동 개정 2024. 9. 9.)
7. 기타 목적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5호에서 이동 개정 2024. 9. 9.)

제5조 [지방변호사회의 업무 협조] ① 대한변호사협회는 센터의 설치 및 원활한 운영을 위해 각 지방변호사회(이하 “지방회”라 한다)와 협력하고, 지방회에 사무직원의 파견 등을 요청할 수 있다.

② 센터는 제1항에 관한 사항을 협회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6조 [운영위원회] ① 센터의 업무 집행을 위하여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센터장, 부센터장과 협회장이 회원 중 위촉하는 10인 이상 5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23. 3. 20.)

③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각 센터장과 부센터장이 담당하고, 간사는 위원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한다.

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

⑤ 위원 중에서 결원이 생긴 때에는 그 후임자를 보충하여 위촉한다. 다만, 그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제7조 [회의] ① 위원회는 위원장이 소집하고 위원장이 의장이 된다.

② 위원장은 협회장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소집 요구가 있는 때에는 위원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③ 회의는 재적위원 4분의 1 이상의 출석으로 성립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제4조의 각 호에 관한 사항을 의결한다. 다만, 가부동수인 때에는 위원장이 결정한다.

④ 협회장, 부협회장, 상임이사, 각 지방회장은 위원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⑤ 위원회의 의사는 비공개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위원회가 공개결의를 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8조 [정보의 제공 등] ① 센터는 웹사이트 등을 통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은 회원의 정보를 제공한다.

1. 기본정보 : 성명, 자격시험, 소속회, 사무소명, 사무실 주소, 사무실 전화번호, 이메일 등 회원이 대한변호사협회에 신고·등록한 정보

2. 상세정보 : 생년월일, 학력, 경력, 공식홈페이지 등 기본정보 이외의 정보 중 회원이 제공을 희망하고 지방회 또는 위원회가 확인·검증 결과 제공하기로 결정한 정보 (개정 2024. 9. 9.)

② 회원은 제1항 제1호의 기본정보 중 공개를 원하지 않는 정보는 센터에 삭제를 요구할 수 있다.

③ 회원이 센터에 상세정보를 제공하고자 할 경우 해당 정보에 대하여 지방회 또는 위원회의 확인·검증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24. 9. 9.)

④ 대한변호사협회는 센터의 회원 정보를 관리할 권한과 책임이 있다.

제9조 [정보제공·사용에 대한 동의] ① 센터는 회원으로부터 회원 개인정보의 게재·사용 등에 대하여 동의를 받는다.

② 회원은 센터에 대하여 자신의 개인정보의 게재·사용을 중지하거나 삭제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③ 센터는 회원으로부터 제2항의 요구를 받은 때에는 그 개인정보의 게재·사용을 즉시 중지하거나 삭제하여야 한다.

제10조 [확인·검증 결과의 통지 및 이의신청] ① 지방회 또는 위원회는 상세정보에 대한 확인·검증 후 센터에 회원의 상세정보를 제공하지 아니하기로 결정한 경우 그 이유를 기재하여 회원에게 통지한다. (개정 2024. 9. 9.)

② 회원은 제1항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2주 이내에 확인·검증 결과에 대하여 위원회에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③ 위원회는 회원으로부터 이의신청을 받은 경우 그 내용을 상임이사회에 보고한다.



제10조의1 [법률 상담 서비스의 제공 등] ① 센터는 웹사이트를 통해 법률 사무 등에 관한 상담 서비스를 제공한다.

② 협회는 제1항의 상담 서비스를 이용한 일반인에게 센터 웹사이트를 통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이 기록된 상담 확인증을 발급할 수 있다.

1. 의뢰인 정보 : 성명, 생년월일, 연락처 등
2. 상담 정보 : 상담 종류, 상담 일시, 상담 분야, 상담 변호사 등
3. 결제 정보 : 결제 상태, 결제 방법, 결제 금액 등

(조문 신설 2024. 9. 9.)

제11조 [수당 등] 센터장, 부센터장, 위원에게 직책에 따른 보수는 지급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대한변호사협회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센터장, 부센터장, 위원에게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12조 [비밀엄수] 센터장, 부센터장, 위원 및 사무직원은 업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3조 [시행지침] ① 이 규정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위원회가 지침으로 정할 수 있다.

② 위원회가 지침을 제정하거나 개정하는 경우 상임이사회의 심의와 협회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14조 [준용] 이 규정이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관하여는 위원회운영규칙을 준용한다.

제15조 [준속기간] 센터는 이사회가 이 규정의 폐지를 의결할 때까지 존속한다.

부 칙 (2022. 2. 14.)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23. 3. 20.)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24. 9. 9.)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변호사 에이전트 제도와 특별위원회 규정

2025. 1. 7.

규정 189호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스포츠 종사자의 인권 옹호 및 변호사 에이전트 시장의 활성화를 위하여 위원회 운영규칙 제2조 제3항에 따라 ‘변호사 에이전트 제도와 특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하고, 그 조직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기능] 위원회의 기능은 다음과 같다.

1. 변호사 에이전트 관련 법·제도화 추진
2. 변호사 에이전트 관련 연구 및 세미나 등 개최
3. 해외 변호사 에이전트 업계와의 교류 및 협력
4. 스포츠 종사자의 인권 관련 연구 및 세미나 개최
5. 스포츠 분쟁 해결을 위한 중재기구의 설치 등을 위한 연구
6. 기타 협회장이 요청하는 사항

제3조 [조직] ① 위원회는 협회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는 10인 이상 10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회 임기 중 임명된 위원의 임기는 위원회 임기가 종료됨과 동시에 종료된다.

제4조 [임원] ① 위원회에 위원장 1인, 부위원장 3인, 간사 1인을 둔다.

② 위원장은 협회장이 추천한 위원 중에서 위원회가 선임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간사는 위원장이 위원 중에서 임명한다.

③ 위원장은 위원회를 통할하고 위원회를 대표한다.

④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사고가 있는 때에 부위원장 중 연장자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⑤ 간사는 위원장의 지시에 따라 위원회의 사무를 담당한다.

제5조 [회의] ① 위원회는 위원장이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다만, 위원장이 선임되기까지는 협회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4분의 1 이상의 출석으로 성립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협회장, 부협회장 및 상임이사는 위원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제6조 [준용] 이 규정이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관하여는 위원회운영규칙을 준용한다.



제7조 [존속기간] 위원회는 이사회가 폐지를 의결할 때까지 존속한다.

부 칙 (2025. 1. 7.)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공익활동등에관한규정

2000. 6. 26.

규정 제54호

개정 2003. 2. 10.
2006. 2. 13.
2010. 1. 25.
2014. 6. 2.
2018. 2. 5.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이 회 회칙 제9조의2에 의하여 개인회원의 공익활동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공익활동의 내용] 공익활동이라 함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것을 말한다.

1. 시민의 권리나 자유 또는 공익을 위하거나 경제적인 약자를 돕기 위하여 마련된 자선단체, 종교단체, 사회단체, 시민운동단체 및 교육기관 등 공익적 성격을 가진 단체에 대하여 무료 또는 상당히 저렴한 비용으로 법률서비스를 제공하는 활동과 위 공익적 단체의 임원 또는 상근자로서의 활동 중 이 회 또는 지방변호사회가 공익활동으로 인정하는 활동 (개정 2003. 2. 10.)
2. 이 회 또는 지방변호사회의 임원 또는 위원회의 위원으로서의 활동 (개정 2003. 2. 10.)
3. 이 회 또는 지방변호사회가 지정하는 법률상담변호사로서의 활동 (개정 2003. 2. 10.)
4. 이 회 또는 지방변호사회가 지정하는 공익활동 프로그램에서의 활동 (개정 2003. 2. 10.)
5. 국선변호인 또는 국선대리인으로서의 활동 (개정 2003. 2. 10.)
6. 법령 등에 의해 관공서로부터 위촉받은 사항에 관한 활동 (다만, 상당한 보수를 받는 경우를 제외) (개정 2003. 2. 10.)
7. 개인에 대한 무료변호 등 법률서비스 제공 행위 또는 입법 연구 등 법률지원활동 가운데 공익적 성격을 가진 것으로서 이 회 또는 지방변호사회가 공익활동으로 인정하는 활동 (개정 2010. 1. 25.)
8. 이 회 또는 지방변호사회가 설립한 공익재단에 대한 기부행위 (신설 2010. 1. 25.)

제3조 [공익활동 등의 실행] ① 개인회원은 제2조의 공익활동 중 적어도 하나 이상을 선택하여 연간 합계 30시간 이상 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지방변호사회는 위 30시간을 20시간까지 하향 조정할 수 있다.

② 부득이한 사정으로 제1항의 공익활동 시간을 완수하지 못한 개인회원은 1시간 당 금 20,000원 내지 30,000원에 해당하는 금액을 소속 지방변호사회에 납부하여야 한다.

③ 법조경력 2년 미만이거나 60세 이상인 회원, 질병 등으로 정상적인 변호사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회원과 기타 공익활동을 수행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회원은 제1항의 의무를 면제한다.



제4조 [공익활동 의무대체 등] ① 법무법인·법무법인(유한)·법무조합이 구성원 및 소속변호사 전원을 위해 아래 각 호의 방법으로 행한 공익활동시간은 그 법무법인·법무법인(유한)·법무조합의 구성원인 개인회원 및 소속변호사인 개인회원에게 배분하여 각 개인회원의 공익활동시간으로 인정할 수 있다. (개정 2014. 6. 2.)

1. 법무법인·법무법인(유한)·법무조합이 그 구성원인 개인회원 및 소속변호사인 개인회원 전원을 위해 행한 공익활동 (개정 2006. 2. 13.)
2. 법무법인·법무법인(유한)·법무조합이 그 구성원인 개인회원 및 소속변호사 전원을 대신하여 공익활동을 행할 변호사를 지정하여 그 변호사가 행한 공익활동 (개정 2006. 2. 13.)
- ② 제1항제2호의 경우 법무법인·법무법인(유한)·법무조합의 공익활동 수행 변호사에 대하여는 그가 행한 공익활동시간 중 그에게 배분이 인정된 시간에 한하여 그 수행변호사 자신의 공익활동시간으로 본다.
-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은 공증인가합동법률사무소와 기타 조합형 합동법률사무소의 경우에 준용한다.
- ④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공익활동시간의 배분 인정은 그 법무법인·법무법인(유한)·법무조합, 공증인가합동법률사무소 또는 조합형 합동법률사무소의 대표자가 소속 지방변호사회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06. 2. 13.)
- ⑤ 법무법인·법무법인(유한)·법무조합, 공증인가합동법률사무소 또는 조합형 합동법률사무소는 법조경력 2년 미만이거나 60세 이상인 개인회원을 공익활동 수행 변호사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06. 2. 13.)

제5조 [공익활동심사위원회의 설치] 지방변호사회는 소속 개인회원의 공익활동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심사·결정하기 위한 기구로 공익활동심사위원회를 둔다.

제6조 [기금의 운용] ① 지방변호사회는 공익활동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특별기금을 설치 운용한다.

- ② 제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된 돈은 제1항의 특별기금에 입금시킨다.

제7조 [협력의무] 개인회원을 고용하고 있는 법인회원 또는 개인회원은 고용된 회원이 공익활동 등에 참여할 수 있도록 협력하여야 한다.

제8조 [공익활동 등의 보고] ① 개인회원은 매년 2월 말까지 그 전년도 공익활동 등의 결과를 소속 지방변호사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8. 2. 5.)

- ② 지방변호사회는 매년 5월 말까지 소속회원의 그 전년도 공익활동 등의 결과를 이 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8. 2. 5.)

제9조 [징계] 지방변호사회 회장은 이 규정에 정한 공익활동을 정당한 이유 없이 수행하지 아니하거나 제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돈을 납부하지 아니한 개인회원에 대하여 협회장에게 징계개시신청을 할 수 있다. (개정 2003. 2. 10.)

제10조 [위임] 지방변호사회는 이 규정의 범위 내에서 필요한 규칙·규정 또는 세칙을 정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00. 7. 29.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03. 2. 10.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6. 2. 13.)

이 규정은 공포 후 20일이 경과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0. 1. 25.)

이 규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4. 6. 2.)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8. 2. 5.)

제1조 [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경과규정] 2017년도 공익활동 결과 보고는 종전 규정에 따른다.



공익활동심사위원회규정

2002. 2. 4.

규정 제57호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위원회운영규칙 제2조제3항에 의한 특별위원회로서 공익활동심사위원회를 설치하여 그 조직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권능] 위원회는 다음 사항에 관하여 협회장의 자문에 따라 조사, 연구, 심의하고, 그 결과를 협회장에게 건의한다.

1. 공익활동의 범위와 내용의 조사연구에 관한 사항
2. 공익활동의 활성화에 관한 사항
3. 공익활동범위의 인정에 관한 사항
4. 기타 협회장이 자문한 사항

제3조 [조직] ① 위원회는 10인 이상 3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은 협회장이 회원 중에서 위촉한다.

③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④ 위원 중에서 결원이 생긴 때에는 그 후임자를 보충하여 위촉한다. 다만, 그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제4조 [임원] ① 위원회에 위원장, 부위원장, 간사 각 1인을 둔다.

② 위원장은 협회장이 위원 중에서 위촉하고, 부위원장 및 간사는 위원회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장은 위원회를 통할하고 위원회를 대표한다.

④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의 유고 시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⑤ 간사는 위원장의 지시에 따라 위원회의 사무를 담당한다.

⑥ 임원의 임기 및 보선에 관하여는 제3조제3항 및 제4항을 준용한다.

제5조 [회의] ① 위원회는 위원장이 필요에 따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4분의 1 이상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협회장, 부협회장, 상임이사는 위원회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④ 위원회의 의사는 공개하지 아니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6조 [소위원회] ① 위원회의 업무를 보좌하기 위하여 위원회의 결의로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소위원회는 연구 및 조사 등의 결과를 서면으로 위원회에 보고한다.

제7조 [준용] 이 규정이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관하여는 위원회운영규칙을 준용한다.

제8조 [존속기간] 위원회는 이 규정시행일로부터 이사회가 폐지를 의결할 때까지 존속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02. 2. 4.부터 시행한다.



변호사공익대상규정

2012. 12. 28.

규정 제117호

개정 2016. 2. 15.
2016. 6. 27.
2024. 9. 9.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이 회가 수여하는 변호사공익대상의 추천, 심사, 결정 및 시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 6. 27.)

제2조 [취지] 변호사공익대상은 회원 중 공익활동을 통하여 기본적 인권을 옹호하고 이로써 사회공헌에 이바지한 개인 및 단체에 대하여 그 업적을 치하하여 상을 수여하고, 이를 통해 회원에 대한 사회봉사정신을 고양한다.

제3조 [심사위원회] 이 회에 변호사공익대상 심사를 위한 변호사공익대상 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고 한다)를 둔다.

제4조 [위원의 위촉] ① 협회장은 변호사 중에서 15인 이내의 위원을 위촉한다. 그 중, 교수·판사·검사 및 사회저명인사 중 5인 이내의 위원을 위촉할 수 있다.

② 협회장이 위원을 위촉할 때에는 이 회의 상임이사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제5조 [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장은 협회장이 추천한 위원 중에서 위원회가 선임하고, 부위원장 및 간사는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②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를 소집하여 그 의장이 된다.

③ 부위원장은 위원장이 유고 시에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④ 간사는 위원장의 지시에 따라 위원회의 사무를 담당한다.

⑤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제6조 [시상 등] ① 변호사공익대상은 회원 중 공익활동을 통하여 기본적 인권을 옹호하고 이로써 사회공헌에 이바지한 개인 및 단체를 선정하여 매년 변호사 동계연수 시 시상한다. (개정 2024. 9. 9.)

② 수상자에게는 변호사공익대상 상패(또는 메달)와 부상을 수여한다. 부상의 종류와 금액은 이 회가 결정한다. (개정 2016. 6. 27.)

③ 위원회는 수상자 선정을 위한 구체적 심사기준을 별도로 제정하고, 이를 공표함으로써 회원들의 사회공익활동을 촉진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7조 [공고] ① 위원회는 시상일 2개월 전까지 회원에게 추천 및 신청 공고를 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는 시상일 2개월 전까지 유관단체에 대하여 수상자 추천을 의뢰할 수 있다.

제8조 [수상후보자 추천 및 신청 등] ① 수상후보자의 추천 자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회원 중 법인 등 단체의 경우 대표자
2. 전항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회원 3인 이상의 공동명의 (개정 2016. 2. 15.)
3. 유관단체의 대표자

② 전항의 경우 추천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1. 추천서
2. 후보자의 공적설명서 및 소명서류
- ③ 수상후보자의 신청자격은 협회 회원(준회원 포함)으로 한다.
- ④ 전항의 경우 신청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1. 신청서
2. 후보자의 공적설명서 및 소명서류
3. 후보자의 이력서

⑤ 추천 및 신청 이외에 위원회는 직권으로 후보자를 발굴 할 수 있다.

제9조 [수상자 결정 및 통지] ① 위원회는 전조에 따른 후보자 중에서 개인 및 단체 수상자 각 1인을 결정한다. 다만, 개인 부문 또는 단체 부문 수상자 중 어느 한쪽에 선정자가 없는 경우에는 다른 부문의 수상자를 복수로 선정할 수 있다. (개정 2024. 9. 9.)

② 위원회는 수상자가 결정되면 지체 없이 협회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6. 6. 27.)

제10조 [자원] 협회장은 매 회계년도마다 변호사공익대상의 시상을 위한 재원을 별도로 예산에 책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6. 6. 27.)

부 칙

제1조 [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 [경과규정] 제1회 변호사공익대상 추천 및 신청 공고는 이 규정에 의하여 공고한 것으로 본다.

부 칙 (2016. 2. 15.)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6. 6. 27.)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24. 9. 9.)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외국법자문사등록규정

2009. 11. 23.

규정 제85호

개정

2010. 1. 25.

2024. 1. 8.

제 1 장 총 칙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외국법자문사법(이하 “법”이라고 한다)에 의거하여 이 회가 행할 외국법자문사의 각종 등록·신고 및 등록거부·등록취소에 관한 사무처리의 기준과 절차, 외국법자문사등록심사위원회(이하 “등록심사위원회”라 한다)의 심사절차와 운영 및 외국법자문법률사무소의 등록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적용범위] 이 규정은 법 제10조 제1항에 따라 이 회에 등록하려는 외국법자문사 및 법 제18조 제1항에 따라 이 회에 등록하려는 외국법자문법률사무소에게 적용한다.

제3조 [명부의 비치] ① 이회는 법 제11조 제1항에 의한 외국법자문사명부(이하 “외국법자문사명부”라 한다)를 비치하고, 다음 사항을 기재한다.

1.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
2. 주소 및 등록기준지(외국인은 본국 및 한국 주소)
3. 사무소의 명칭 및 소재지
4. 자격증인의 연월일 및 사유
5. 자격등록의 번호 및 연월일
6. 업무개시 및 휴업에 관한 사항
7. 자격승인취소 및 등록취소의 연월일 및 사유
8. 징계에 관한 사항
9. 원자격국
10. 외국변호사의 자격 명칭 및 외국변호사 자격 취득 연월일
11. 제6조 제2항의 등록 및 등록갱신 사항 변경 연월일 및 사유

② 이회는 법 제18조 제3항에 의한 외국법자문법률사무소명부(이하 “외국법자문법률사무소명부”라 하며, 외국법자문사명부와 총칭하여 이하 “명부”라 한다)를 비치하고, 다음 사항을 기재한다.

1. 목적, 명칭 및 사무소의 소재지
2. 구성원의 성명 및 주소와 외국법자문법률사무소를 대표할 구성원의 주소



3. 외국법자문법률사무소의 대표에 관한 사항
4. 설립인가 연월일
5. 본점사무소의 명칭 및 소재지
6. 손해배상책임을 보장하기 위하여 보험 또는 공제기금에 가입한 내용
7. 설립인가취소 및 등록취소의 연월일 및 사유
8. 제28조 제2항의 등록사항 변경 연월일 및 사유

제4조 [명부의 작성] 명부는 이 규정에 의하여 당사자가 제출하는 각종 신청서, 신고서 및 그 첨부서류에 의하여 이 회가 작성한다. 다만, 명부의 기재사항에 변동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당사자가 이를 신고하지 아니하거나 당사자가 제출한 서류의 기재내용이 명백히 사실과 다르다고 인정할 만한 현저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상임이사회의 결의를 거쳐 직권으로 작성할 수 있다.

제5조 [명부의 보관 보존] ① 명부는 멸실, 훼손을 방지할 수 있는 시설에 보관하여 영구 보존한다.
 ② 명부는 부득이한 경우가 아니면 반출할 수 없다.
 ③ 명부가 멸실 또는 훼손된 경우에는 등록신청서, 등록증서, 등록통지, 등록보고, 회지게재사항 기타 신빙할 수 있는 자료에 의하여 지체 없이 복구하여야 한다.

제 2 장 외국법자문사

제 1 절 등 록

제6조 [외국법자문사등록 등의 신청] ① 법 제10조 제1항에 의하여 외국법자문사등록을 하거나 법 제11조 제3항에 의하여 등록갱신을 하고자 하는 자는 제2항의 등록사항이 기재되고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한 등록신청서 또는 등록갱신신청서를 이 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증빙서류는 원본이거나 인증된 사본이어야 하고, 한글로 작성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공증된 한글 번역본을 첨부하여야 한다.

1. 여권, 외국인등록증명서 또는 그 밖에 신분을 증명하는 서류의 사본
 2. 이력서
 3. 외국법자문사의 자격이 있음을 증명하는 서면
 4. 사진
 5. ‘국가를 불문하고 공무원 재직 중의 직무에 관한 위법행위로 인하여 형사소추 또는 징계처분(파면 및 해임은 제외한다)을 받거나 퇴직한 자로서 외국법자문사의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현저히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련된 서면
 6. 외국변호사로서 받은 상벌 및 직무상 감독기관에 의한 직무경험연수에 관한 평가를 기재한 서면
 7. 별지 1 양식의 서약서
- ② 제1항에 따라 등록하여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
2. 주소 및 등록기준지(외국인은 본국 및 한국 주소)
3. 사무소의 명칭 및 소재지
4. 자격승인의 연월일 및 사유
5. 자격등록의 번호 및 연월일
6. 업무개시의 연월일
7. 원자격국
8. 외국변호사의 자격 명칭, 외국변호사 자격 취득 연월일

제7조 [이 회의 처리] ① 제6조에 의한 신청서류를 제출받은 때에는 이 회의 이를 심사하여 등록신청 또는 등록갱신신청을 받은 날부터 1월 이내에 등록 여부를 결정한다.

② 제1항에 의한 심사를 함에 있어서 필요한 때에는 협회장은 소관 상임이사 또는 소관 위원회로 하여금 필요한 조사를 하게 할 수 있다.

③ 이 회의 심사결과 등록을 거부할 사유가 없다고 인정한 때에는 지체 없이 명부에 등록하여야 한다.

④ 협회장은 심사결과 제8조에 정한 등록거부사유에 해당한다고 인정되거나 의심이 있는 때에는 지체 없이 등록심사위원회에 등록의 거부에 관한 안건을 회부하여야 한다.

제8조 [등록거부의 사유] 이 회의 제6조에 의한 외국법자문사등록 또는 등록갱신을 신청한 자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등록을 거부한다.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외국법자문사의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현저히 곤란한 경우
2. 국가를 불문하고 공무원 재직 중의 직무에 관한 위법행위로 인하여 형사소추 또는 징계처분(과면 및 해임은 제외한다)을 받거나 퇴직한 자로서 외국법자문사의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현저히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 법 제7조에 따라 자격승인이 취소된 경우
4. 등록 또는 등록 갱신이 거부되거나 법 제13조 또는 제36조에 따라 등록이 취소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경우

제9조 [등록거부 등] ① 등록심사위원회가 협회장으로부터 제7조 제4항에 의하여 등록거부안건을 회부 받은 때에는 이를 심사하여 등록거부의 가·부를 의결하여야 한다.

② 등록심사위원회가 등록거부의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여 등록거부를 의결한 때에는 협회장은 지체 없이 그 뜻을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등록심사위원회가 등록거부의 이유가 없다고 인정하여 등록거부를 하지 않기로 의결한 때에는 협회장은 지체 없이 명부에 등록하여야 한다.

제10조 [등록거부에 대한 이의신청] 제9조 제2항에 의하여 등록이 거부된 자는 등록거부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월 이내에 등록거부에 관하여 부당한 이유를 소명하여 법무부장관에게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제11조 [등록간주 및 등록명령의 처리] 이 회가 법무부장관으로부터 법 제12조제3항에 의한 등록명령을 받은 때에는 지체 없이 명부에 등록하여야 한다.



제12조 [등록의 절차] 협회장은 제7조 제3항, 제9조 제3항 및 제11조에 의하여 등록을 할 때에는 명부에 기재하고, 신청인에게 등록증서와 함께 등록통지서를 송부하여야 한다.

제13조 [등록료의 납부] ① 이 규정에 의한 각종 등록 또는 등록갱신 등을 신청한 자는 이 회가 정한 등록료 또는 등록갱신신청수수료 등을 등록신청서류 또는 등록갱신신청서류와 함께 납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의한 등록료와 등록갱신료 등은 이 회의 수입으로 한다. 다만, 등록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이를 환급한다.

제14조 [신고] ① 외국법자문사가 제6조 제2항에 정한 등록사항에 변동이 생기거나 추가할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지체없이 등록사항변동신고서를 증빙서류와 함께 이 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당사자로부터 신고서류를 송부받은 때에는 이 회의 지체 없이 이를 수리하고, 명부에 기재하여야 한다.

③ 이 회의 제1항에 의한 신고서류에 기재사항의 흠결이 있거나 첨부서류의 미비가 있는 때에는 그 수리를 보류하고, 당사자에게 그 보완을 명할 수 있다.

제 2 절 등록취소

제15조 [등록취소의 구분] 이 규칙에 의한 등록취소는 다음의 2종으로 나눈다.

1. 직권에 의한 등록취소
2. 신청에 의한 등록취소

제16조 [직권에 의한 등록취소] ① 이 회의 등록외국법자문사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한다고 인정할 때에는 직권으로 외국법자문사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1. 사망한 때
2. 외국법자문사의 자격이 없거나 자격승인이 취소된 경우
3. 변호사의 자격을 갖춘 외국법자문사가 이 회에 변호사로 등록한 경우
4. 심신장애로 인하여 외국법자문사의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현저히 곤란한 경우
5. 국가를 불문하고 공무원 재직 중의 직무에 관한 위법행위로 인하여 형사소추 또는 징계처분(파면 및 해임)을 받거나 퇴직한 자로서 외국법자문사의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현저히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6. 법 제24조, 제25조 및 제34조를 위반하거나 제35조에 따라 준용되는 변호사법 제33조 및 제34조를 위반한 경우

② 등록외국법자문사가 제1항 제2호 내지 제3호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지체 없이 등록취소사유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신고서에는 그 사유를 소명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하여야 한다.

④ 이 회의 제2항에 의한 신고를 받거나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가 있음을 발견한 때에는 당사자 또는 유족에게 조회하여 소명자료를 제출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⑤ 제1항 제4호 내지 제6호에 해당하여 등록을 취소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등록심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이를 위하여 협회장은 등록취소사유에 해당한다고 인정되거나 의심이 있는 때에는 지체 없이 등록심사위원회에 등록취소에 관한 안건을 회부하여야 한다.

제17조 [등록취소에 대한 이의신청] ① 제16조 (제16조 제1항 제1호는 제외한다)에 의하여 등록이 취소된 자는 제19조 제2항에 의한 등록취소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월 이내에 등록취소에 관하여 부당한 이유를 소명하여 법무부장관에게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② 제16조 제1항 제1호의 사유로 등록이 취소된 때에는 이를 안 날로부터 3월 이내에 부당한 이유를 소명하여 법무부장관에게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③ 법무부장관이 제1항 및 제2항의 이의신청이 이유 있다고 인정하여 당해 외국법자문사의 등록취소의 취소를 명한 때에는 이 회는 지체 없이 등록취소를 취소하여야 한다.

제18조 [신청에 의한 등록취소] ① 등록외국법자문사가 법 제13조 제1항 제3호에 의한 등록취소의 신청을 하고자 할 때에는 등록취소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징계를 회피할 목적으로 등록취소를 신청하였다고 볼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

② 제1항에 의한 신청서를 제출받은 때에는 이 회는 지체 없이 이를 수리하여 외국법자문사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다만 협회장이 징계혐의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항 단서의 징계개시신청여부 또는 징계개시청구여부에 대한 결정이 있을 때까지 그 수리를 보류할 수 있다.

제19조 [등록취소의 절차] ① 이 회가 등록취소를 하고자 할 때에는 명부에 그 사유와 취소연월일을 기재하고 그 명부용지를 폐쇄한다.

② 협회장이 제1항에 의한 등록취소를 한 때에는 등록취소통지서를 당사자(사망의 경우 제외)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③ 위 당사자는 제2항에 의해 등록취소통지서를 받은 경우 지체없이 등록증명서를 이 회에 반납하여야 한다.

제 3 절 등록심사위원회

제20조 [등록심사위원회의 구성] ① 등록심사위원회는 판사 1인, 검사 1인, 변호사 4인, 협회장이 추천하는 법학교수 1인 및 경험과 덕망이 있는 자로서 변호사가 아닌 자 2인으로 구성하고, 동 자격을 갖춘 동 수의 예비위원을 둔다.

② 판사인 위원 및 예비위원은 법원행정처장의, 검사인 위원 및 예비위원은 법무부장관의 각 추천을 받아 협회장이 위촉하며, 변호사인 위원 및 예비위원은 총회에서 선출하고, 법학교수 및 경험과 덕망이 있는 자로서 변호사가 아닌 위원 및 예비위원은 협회장이 상임이사회의 심의를 거쳐 위촉한다.

③ 판사, 검사, 변호사인 위원 및 예비위원은 변호사자격을 취득한 때부터 10년을 경과한 자이어야 하며, 변호사인 위원 및 예비위원은 변호사로서 5년 이상 개업한 경력이 있어야 한다.

④ 위원장은 변호사인 위원 중에 호선으로 선출한다.

⑤ 위원장, 위원 및 예비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보선된 위원장, 위원 및 예비위원의 임



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⑥ 위원장, 위원 및 예비위원에 결원이 생겼을 때에는 조속히 위촉하거나 선출하여야 한다.

⑦ 위원이 사고, 결원, 제척, 기피, 회피 등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명하는 동 자격의 예비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21조 [제척, 기피, 회피] ① 위원은 자기 또는 8촌 이내의 친족이나 4촌 이내의 인척 및 배우자에 관한 안건의 심사 및 의결에서 제척된다.

② 당사자는 심사 및 의결의 공정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는 위원에 대하여 기피신청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등록심사위원회는 지체 없이 결정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사유가 있을 때에는 위원은 회피할 수 있다. 회피의 신청이 있을 때에는 등록심사위원회는 지체 없이 결정하여야 한다.

제22조 [등록심사위원회의 기구] ① 등록심사위원회에는 위원장 및 간사 각 1인을 둔다.

② 간사는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장은 등록심사위원회를 대표하고, 등록심사위원회의 사무를 통할한다. 위원장이 사고 기타의 사유로 위원장의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등록심사위원회가 정한 순서에 의하여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④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등록심사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한다.

⑤ 등록심사위원회는 업무를 보조하는 1인 이상의 서기를 둘 수 있다. 서기는 사무국 직원 중에서 협회장이 지명한다.

제23조 [안건의 회부] 협회장이 안건을 등록심사위원회에 회부할 때에는 대상자의 인적사항 및 등록거부 또는 등록취소사유 등을 기재한 안건회부서와 관련자료를 등록심사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24조 [심사기일의 통지 등] ① 등록거부 또는 등록취소의 안건이 회부된 때에는 위원장은 지체 없이 심사기일을 정하여 위원과 당사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등록심사위원회는 최초 심사기일의 7일 전까지 통지서를 발송하여야 한다. 다만, 심사기일에 출석한 당사자에게는 다음 심사기일을 고지할 수 있다.

② 등록심사위원회는 등록거부 또는 등록취소를 의결하고자 하는 때에는 당사자로 하여금 심사기일에 출석하여 진술하고 증거자료 등을 제출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다만, 당사자나 그 대리인이 심사기일의 통지를 받고도 출석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최초 심사기일의 통지서에는 안건회부서에 기재된 등록거부 또는 등록취소사유의 요지를 기재한다. 또한 심사기일에 출석하여 진술할 수 있고, 증거자료 등을 제출할 수 있으며, 대리인의 선임이나 심사의 공개신청을 할 수 있음을 아울러 기재하여야 한다.

④ 문서의 송달은 우편 또는 모사전송(FAX)의 방법에 의한다.

⑤ <삭제> (2010. 1. 25.)

⑥ <삭제> (2010. 1. 25.)

제25조 [당사자 등의 권리 등] ① 당사자는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외국법자문사를 보조인으로 각 선임할 수 있으며, 대리인은 당사자를 위하여 독립하여 이 규정이 정한 행위를 할 수 있다.



② 당사자는 심사기일에 출석하여 구술 또는 서면으로 진술할 수 있고, 증거서류나 증거물을 제출할 수 있으며, 당해 안전에 대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단, 등록심사위원회가 증거서류 또는 증거물을 제출해야 할 상당한 기간을 정한 때에는 그 기간 내에 이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 당사자는 참고인의 심문, 검증 등의 증거조사를 신청할 수 있다.

④ 당사자는 심사기록과 증거물 등을 열람 또는 등사할 수 있다.

⑤ 협회장은 직접 또는 그 대리인을 통하여 구술 또는 서면으로 당해 안전에 대한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⑥ 대리인 또는 보조인을 선임한 때에는 그 성명, 주소, 법률사무소의 소재지 및 소속지방법 등을 등록심사위원회에 서면으로 신고하여야 한다. 대리인 또는 보조인을 해임한 경우에도 같다.

⑦ 보조인은 당사자 또는 대리인과 함께 등록심사위원회에 출두하여 이들을 보조할 수 있다. 보조인의 진술은 당사자 또는 대리인이 즉시 취소 또는 정정하지 않는 한 당사자 진술로 간주한다.

제26조 [심사] ① 심사기일은 공개하지 아니하되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여 공개할 수 있다. 등록심사위원회는 상당하다고 인정하는 자의 방청을 허가할 수 있다.

② 등록심사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당사자들의 의견을 들어 수 개의 안전의 심사를 병합하거나 분리할 수 있다.

③ 등록심사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당사자, 관계인 및 관계기관, 단체 등에 대하여 사실의 조회, 자료의 제출 또는 등록심사위원회에 출석하여 진술 또는 설명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④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위원 1인 또는 수인을 정하여 당해 안전에 대한 심사의 준비를 하게 할 수 있다. 지정받은 위원은 안전의 심사준비에 관하여 위원장의 권한을 행사할 수 있다.

⑤ 심사기일에는 심사조서를 작성하여야 하며, 조서에는 심사일시, 장소, 출석한 위원의 성명, 공개 여부, 심사의 경과와 내용 등을 기재하여, 위원장과 간사가 기명 날인 또는 서명하여야 한다.

제27조 [의결] ① 등록심사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등록심사위원회는 의결을 한 때에는 의결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의결서에는 주문과 이유를 기재하고 위원장과 출석한 위원 및 간사가 서명날인하여야 한다.

③ 등록심사위원회는 의결결과를 지체 없이 협회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 3 장 외국법자문법률사무소

제28조 [등록신청] ① 법무부장관의 설립인가를 받은 외국법자문법률사무소의 대표자는 그 고시가 있었던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제2항의 등록사항이 기재된 등록신청서를 작성하여 이 회에 외국법자문법률사무소의 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등록신청서에는 제2항 제6호를 증명하는 서류 및 기타 이 회가 요구하는 증빙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등록하여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목적, 명칭 및 사무소의 소재지



2. 구성원의 성명, 주소와 외국법자문법률사무소를 대표할 구성원의 주소
3. 외국법자문법률사무소의 대표에 관한 사항
4. 설립인가 연월일
5. 본점사무소의 명칭 및 소재지
6. 손해배상책임보험을 보장하기 위하여 보험 또는 공제기금에 가입한 내용

제29조 [등록심사] ① 이 회는 전조 제1항의 신청이 있는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지체 없이 외국법자문법률사무소 명부에 등록하고 신청인에게 외국법자문법률사무소 등록증명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② 이 회는 전조 제1항의 등록신청서류에 기재사항의 흠결이 있거나 첨부서류의 미비가 있는 때에는 그 신청인에게 보완을 명할 수 있다.

제30조 [신고] 외국법자문법률사무소의 대표자는 등록된 사항이 변경된 경우 그 변경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이 회에 등록변경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31조 [서면의 비치, 열람 등] ① 이회는 다음 각 호의 서면을 비치하여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1. 제28조 제2항 각 호의 등록사항이 적힌 서면
2. 설립인가 및 그 취소에 관한 서면
3. 손해배상책임을 보장하기 위하여 보험 또는 공제기금에 가입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면

② 이회는 외국법자문법률사무소명부를 비치하고 제28조 제2항의 등록사항, 제30조에 의한 각종 신고사항 기타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다.

제32조 [공고] 이 회가 제30조에 의한 각종 신고를 받은 때에는 2월 이내에 그 요지를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0. 1. 25.)

제33조 [시행세칙] 외국법자문법률사무소의 등록에 관한 기타 필요한 사항은 세칙으로 정한다.

제4장 증명서의 교부 (신설 2024. 1. 8.)

제34조 [증명서의 종류 및 기록사항] ① 명부의 기재사항에 관하여 발급할 수 있는 증명서의 종류와 그 기록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외국법자문사 자격등록 증명서(국문, 영문)
 - 가. 본인의 성명·국적·주민등록번호(또는 외국인등록번호)·국내주소 등
 - 나. 본인의 등록번호·자격취득국가·자격취득연월일·등록연월일·등록갱신연월일·개업 및 휴업에 관한 사항·사무소 명칭·사무소 소재지 등
2. 외국법자문사 징계정보 증명서(국문, 영문)
 - 가. 본인의 성명·국적·생년월일·등록번호·자격취득국가·자격취득연월일·등록연월일·등록갱신연월일·사무소 명칭·사무소 소재지 등
 - 나. 징계확인사항



3. 외국법자문법률사무소 등록확인 증명서(국문, 영문)

가. 외국법자문법률사무소의 등록연월일 및 등록번호

나. 외국법자문법률사무소의 명칭·사무소 소재지·대표 성명·구성원 성명 등

② 이 회는 제1항 각 호의 증명서의 기재사항 중 일부사항을 증명하는 증명서를 발급할 수 있다.

부 칙

이 규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0. 1. 25.)

이 규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24. 1. 8.)

이 규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외국법자문사회비납부규칙

2012. 10. 15.

규칙 제36호

개정 2014. 10. 13.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회칙 제7조제5항에 규정된 외국회원의 회비 납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4. 10. 13.)

제2조 [적용] <삭제> (2014. 10. 13.)

제3조 [월회비] 외국법자문사의 월회비는 이 회 상임이사회에서 정한다.

제4조 [월회비의 고지] 협회장은 각 외국회원에게 납부해야 할 월회비를 우편 또는 전자우편의 방법으로 고지하고, 납부방법을 안내하여야 한다.

제5조 [월회비의 납부] 매월 1일 현재 협회에 등록된 외국회원은 당월 20일까지 고지된 월회비를 당월 말일까지 협회에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0. 13.)

제6조 [가산금] 외국회원이 제5조에 정한 기한이 경과한 후 1개월까지 월회비를 납부하지 아니할 경우 100분의 10의 비율에 의한 가산금을 부담하게 할 수 있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부 칙 (2014. 10. 13.)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외국법자문사신분증규칙

2012. 10. 15.

규칙 제37호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외국법자문사법 시행에 따라 대한변호사협회(이하 “이 회”라 한다)에 등록하고, 회원으로 가입한 외국법자문사인 외국회원(이하 “외국회원”이라 한다)의 신분증 제작 및 발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발급권자 및 발급의 대행] ① 신분증의 발급권자는 대한변호사협회 협회장으로 한다.

② 대한변호사협회 협회장은 상임이사회의 결의를 거쳐 신분증 제작 및 발급 업무를 제3자에게 대행하도록 할 수 있다.

③ 발급 대행의 경우 이 회에서 특별히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한하여 대한변호사협회와 제3자 사이의 계약 내용에 따른다.

제3조 [필수 기재사항] 신분증에는 이 회의 명칭, 외국회원의 성명, 원자격국명, 등록번호, 발급일 전 6개월 이내에 촬영한 사진이 각 표시되어야 한다.

제4조 [휴대 및 제시] 외국회원은 항상 신분증을 휴대하여야 하며, 업무집행에 있어서 그 제시를 요구 받았을 때에는 이를 제시하여야 한다.

제5조 [신분증의 재발급 및 변경] ① 신분증이 분실 또는 파손되거나 기재사항의 변동으로 재발급 받고자 하는 외국회원은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월 이내에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한 신분증 재발급 신청서를 대한변호사협회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기재사항의 변동으로 재발급을 신청한 외국회원은 재발급 수령 시까지 종전 신분증을 협회에 반납하여야 한다.

③ 신분증을 재발급 할 때에는 이 규칙 시행 이전에 발급된 신분증이 아닌 규칙 시행 이후에 발급된 신분증을 발급한다.

제6조 [신분증의 반납] 외국회원이 영구제명·제명·정직 또는 등록취소의 처분을 받아 그 처분이 확정된 때에는 대한변호사협회장에게 신분증을 반납하여야 한다.

제7조 [반납신분증의 폐기] 반납 또는 회수된 신분증은 즉시 폐기조치 하여야 하며 폐기 조치한 사실을 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한 신분증 폐기대장에 등재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외국법자문사 신분증

<전면>

외국법자문사신분증	
사진 ①	
홍 길 동 ②	
대한변호사협회 ③	

⑦

<후면>

		④
외국법자문사		
등록번호	제	호 ⑤
발급번호	제	호 ⑥
원자격국		
성	명	
위와 같이 외국법자문사(외국회원)		
임을 증명함.		
20 . . .		
대한변호사협회장 ⑨		

<주> 1. 신분증의 크기는 전체 가로 5.5cm, 전체 세로 8.5cm로 하고,

위 ①, ②, ③ 등의 난에는 다음 사항을 표시한다.

① 사진 (5cm × 4cm)

② 성명의 표시

③ 대한변호사협회의 표시

④ 대한변호사협회의 계인

⑤ 대한변호사협회 외국법자문사 등록번호 (번호기를 사용)

⑥ 대한변호사협회의 발급번호 (번호기를 사용)

⑦ 외곽선으로부터 2mm의 여백을 둔다.

2. 외국법자문사신분증은 투명 P.V.C로 포장한다.

3. 외국법자문사신분증은 포장에 구멍을 뚫어 고리로 매달게 하거나 옷깃에 집계를 사용하여 패용이 가능하도록 한다.

4. 외국법자문사신분증을 패용할 때는 왼쪽 가슴에 단다.



별지 제1호 서식

외국법자문사 신분증 재발급 신청서

다음과 같이 신분증의 재발급을 신청합니다.

1. 소 속 :
2. 성 명 :
3. 생년월일 :
4. 신분증번호 :
5. 재발급신청사유 :
(구체적으로)

사 진
(2매첨부)

20 년 월 일

원인 (인)

(주민등록번호 -)

신분증 발급권자 대한변호사협회 협회장 귀하

결	담 당	과 장	부국장	국 장
재				

별지 제2호 서식

외국법자문사 신분증 폐기대장

[illegible]



외국법자문사징계규정

2009. 11. 23.

규정 제86호

개정 2010. 1. 25.
2018. 2. 5.

제 1 장 통 칙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외국법자문사법(이하 “법”이라고 한다)에 의하여 대한변호사협회외국법자문사징계위원회의 설치·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과 징계처분의 공개범위 및 시행방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대한변호사협회외국법자문사징계위원회의 구성] ① 대한변호사협회외국법자문사징계위원회(이하 “징계위원회”라 한다)는 판사 2인, 검사 2인, 외국법자문사 2인, 변호사 2인, 변호사가 아닌 법과대학교수 1인으로 구성하며, 위원과 같은 수의 예비위원을 둔다.

② 판사인 위원 및 예비위원은 법원행정처장의, 검사 및 외국법자문사인 위원 및 예비위원은 법무부장관의 각 추천을 받아 협회장이 위촉하며, 변호사 및 변호사가 아닌 법과대학교수인 위원 및 예비위원은 협회장이 추천하고 위촉한다.

③ 판사, 검사, 변호사인 위원 및 예비위원은 변호사자격을 취득한 때부터 10년을 경과한 자이어야 한다.

④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⑤ 위원장, 위원 및 예비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보선된 위원장, 위원 및 예비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⑥ 위원장, 위원 및 예비위원에 결원이 생겼을 때에는 조속히 위촉하거나 선출하여야 한다.

⑦ 예비위원은 위원이 결원, 제척, 기피, 회피 등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그 직무를 대행하며, 판사인 예비위원은 판사인 위원이, 검사인 예비위원은 검사인 위원이, 변호사인 예비위원은 변호사인 위원이, 법과대학교수인 예비위원은 법과대학교수인 위원이, 외국법자문사인 예비위원은 같은 자격으로 위촉된 위원이 각각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그 직무를 대행하며, 판사, 검사, 변호사, 외국법자문사인 예비위원의 직무대행 순서는 위원장이 지정한다.

제3조 [제척, 기피, 회피] ① 위원장·위원 및 예비위원은 자기 또는 8촌 이내의 혈족이나 4촌 이내의 인척 및 배우자에 관한 징계혐의사건의 심사에서 제척된다.

② 위원장·위원 및 예비위원에 관하여 심사의 공정성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는 때에는 징계개시청



구를 받은 자(이하 “징계협의를자”라 한다)는 기피의 신청을 할 수 있다. 이 경우에 징계위원회는 지체 없이 결정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사유가 있을 때에는 위원장·위원 및 예비위원은 회피할 수 있다. 회피의 신청이 있을 때에는 징계위원회는 지체 없이 결정하여야 한다.

제4조 [징계위원회의 기구와 직무] ① 위원장은 징계위원회를 대표하며 징계위원회의 업무를 통할한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을 선출할 당시, 그 위원장이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그 직무를 대행할 위원 2인을 순위를 정하여 결정한다. 위원장과 그 대행자로 지명된 자가 모두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위원회는 의결로써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할 자를 정한다.

③ 징계위원회에 간사 1인과 조사위원 및 서기 약간인을 둔다.

④ 간사는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조사위원은 위원 중에서 위원장이 임명하며, 서기는 협회장이 사무국의 직원 중에서 임명한다.

⑤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징계위원회의 심의에 참여하여 의사록 등을 작성하고, 조사위원은 위원장의 명을 받아 징계위원회가 심의하는 사안에 대하여 필요한 조사를 하며, 서기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심의에 관한 서류의 작성, 송달 기타 사무를 처리한다.

제5조 [주임징계위원의 지명] ① 징계위원장은 필요한 때에는 징계사건에 대한 심사를 담당하게 하기 위하여 주임징계위원을 지명할 수 있다.

② 주임징계위원은 징계사건에 관하여 심사기일을 지정하여 혐의사실에 대한 심사를 한 후 심사조서를 징계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 주임징계위원은 지정받은 징계사건의 심사에 관하여 위원장의 권한을 행사할 수 있다.

④ 제25조의 규정은 주임징계위원의 심사에 준용한다.

제6조 [징계위원회의 소집] ① 징계위원회는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협회장 또는 위원 2인 이상의 소집요구가 있을 때에는 위원장은 징계위원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제7조 [비용부담] 징계위원회는 징계결정을 받은 자에 대하여 심의에 소요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게 할 수 있다.

제8조 [수당] 협회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심사에 관여한 위원장·위원 및 예비위원에게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 2 장 징계사유 및 징계개시청구

제9조 [징계의 종류 및 사유] ① 외국법자문사에 대한 징계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1. 자격승인취소
2. 등록취소
3. 3년 이하의 정직(停職)



4.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5. 견책

② 전항 제1호에 해당하는 징계 사유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 제13조 제2항 제2호 또는 전항 제2호에 따른 등록취소 처분을 받은 사람으로서 외국법자문사의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현저히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2. 전항 제3호에 따른 정직 처분을 2회 이상 받은 후 다시 제3항에서 정하는 징계 사유가 있는 사람으로서 외국법자문사의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현저히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③ 제1항 제2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징계 사유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외국법자문사법을 위반한 경우

2. 이 회가 정하는 외국법자문사윤리장전을 위반한 경우

3. 직무의 내외를 막론하고 외국법자문사로서의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한 경우

제10조 [징계개시의 청구] 협회장은 외국법자문사가 전조 제2항에 따른 징계 사유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면 법무부외국법자문사징계위원회에 징계개시를 청구하여야 하고, 전조 제3항에 따른 징계 사유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면 변협징계위원회에 징계개시를 청구하여야 한다. 다만, 징계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3년이 지난 때에는 이를 청구하지 못한다.

제11조 [의뢰인 등의 징계개시청구의 신청] 의뢰인이나 의뢰인의 법정대리인·배우자·직계친족·형제자매(이하 "의뢰인 등"이라 한다)는 외국법자문사에게 전조에 따른 징계 사유가 있다고 판단되면 그 사유를 첨부하여 협회장에게 그 외국법자문사에 대한 징계개시의 청구를 신청할 수 있다.

제12조 [협회장의 결정] ① 협회장은 제11조의 규정에 따른 징계개시청구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징계 협의 사실에 대하여 조사하고 징계개시청구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② 협회장은 제11조의 신청에 대하여 징계개시청구를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이유를 신청인에게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개정 2010. 1. 25.)

제13조 [이의신청] ① 징계개시 신청인은 협회장이 징계개시청구의 신청을 기각하거나 징계개시청구의 신청이 접수된 날부터 3월이 경과하여도 징계개시청구 여부를 결정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징계위원회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이의신청은 제12조 제2항의 규정에 따른 통지를 받은 날 또는 징계개시청구의 신청이 접수되어 3월이 경과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개정 2010. 1. 25.)

② 징계위원회는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이의신청이 이유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징계절차를 개시하여야 하며, 이유 없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이의신청을 기각하여야 한다.

③ 징계위원회는 제2항의 결정을 한 때에는 지체 없이 그 결과와 이유를 이의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14조 [징계개시청구 절차] ① 징계개시청구를 할 때에는 징계협의자의 인적사항, 징계협의사실 등을 기재한 징계개시청구서와 부분 10통 및 의뢰인 등이나 지방검찰청 검사장의 징계개시청구 신청서를 징계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협회장은 징계개시청구를 한 때에는 징계 협의자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 ③ 협회장은 국가기관의 통보에 의한 외국법자문사의 징계혐의사실에 대하여 징계개시청구 여부를 결정하였을 때에는 이를 즉시 당해 국가기관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④ 징계사유가 있는 날부터 3년을 경과한 때에는 징계개시청구를 하지 못한다.

제 3 장 징계위원회의 심의절차

제15조 [징계개시의 통지] ① 징계위원회는 징계개시청구가 있거나 제14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징계 절차를 개시한 때에는 즉시 징계혐의자에게 징계개시통지서와 징계개시청구서 부분 1통을 송달하여야 한다. (개정 2010. 1. 25.)

② 징계개시통지서에는 심의기일에 출석하여 진술할 수 있고, 증거자료 등을 제출할 수 있으며, 특별 변호인을 선임할 수 있음과 심의기일의 공개를 신청할 수 있음을 기재하여야 한다.

제16조 [징계결정기간] 징계위원회는 징계청구가 있거나 제14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징계절차를 개시한 날부터 6월 이내에 징계에 관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6월에 한하여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10. 1. 25.)

제17조 [심의의 정지] 징계위원회는 징계혐의자가 징계개시청구된 징계혐의사실로 공소제기되어 있을 때에는 그 사건이 확정될 때까지 심의절차를 정지한다. 다만, 공소의 제기가 있는 경우로서 징계사유에 관하여 명백한 증명자료가 있거나 징계혐의자의 심신상실·질병 등의 사유로 형사재판절차가 진행되지 아니할 때에는 징계심의를 진행할 수 있다. (개정 2010. 1. 25.)

제18조 [심의기일의 통지] ① 징계위원회는 징계혐의자에게 심의기일의 일시·장소를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심의기일에 출석한 징계혐의자에게는 고지할 수 있다.

② 징계위원회는 징계개시청구가 징계개시 신청인의 신청에 의한 것일 때에는 당해 징계개시 신청인에게도 제1항의 통지를 하여야 한다.

③ 최초 심의기일의 통지는 그 기일의 7일 전까지 통지서를 송달하여야 한다.

제19조 [심의기일의 비공개] ① 심의기일은 공개하지 아니한다. 다만, 징계위원회는 상당하다고 인정하는 자의 방청을 허가할 수 있다.

② 징계혐의자가 공개신청을 한 때에는 공개한다.

제20조 [사건의 병합·분리] 징계위원회는 필요한 때에는 징계혐의자의 의견을 들어 수개의 징계혐의사건의 심의를 병합하거나 분리할 수 있다.

제21조 [징계혐의자의 출석의무] ① 징계혐의자는 심의기일에 출석하여야 한다.

② 징계위원회는 징계혐의자나 그 특별변호인이 심의기일에 출석하지 않는 경우에도 심의절차를 진행하고 심의를 종결할 수 있다.

제22조 [특별변호인] ① 징계혐의자는 변호사, 외국법자문사 또는 학식과 경험이 있는 자를 특별변호인으로 선임하여 사건에 대한 보충진술과 증거제출을 하게 할 수 있다.



② 특별변호인은 징계혐의자를 위하여 독립하여 이 규정이 정한 행위를 할 수 있다.

제23조 [징계혐의자 등의 진술 및 증거제출] ① 징계혐의자는 심의기일에 출석하여 구술 또는 서면으로 진술할 수 있고, 증거서류나 증거물을 제출할 수 있으며, 징계에 관한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다만 징계위원회가 그 제출기한을 정한 때에는 그 기한 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징계혐의자는 참고인의 심문, 검증 등의 증거방법을 제출할 수 있다.

③ 협회장은 직접 또는 대리인을 통하여 구술 또는 서면으로 징계혐의사건에 대한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④ 징계개시 신청인의 신청에 따라 징계 청구된 사건에 관하여는 당해 징계개시 신청인은 제3항의 방법으로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제24조 [징계위원회의 심의방법] ① 징계위원회는 직권 또는 징계혐의자의 신청에 의하여 징계혐의자를 심문할 수 있고 참고인에게 사실의 진술이나 감정을 요구할 수 있다. 징계혐의자는 정당한 이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② 징계위원회는 직권 또는 신청에 의하여 필요한 물건이나 장소에 대한 검증을 할 수 있고 서류 기타의 물건의 소지인에게 그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서류 등의 제출을 요구받은 자는 정당한 이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③ 징계위원회는 필요한 때에는 직권으로 징계혐의사실에 대한 조사를 담당한 자를 소환하여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④ 징계위원회는 필요한 때에 국가기관 등에 대하여 사실조회를 할 수 있다.

⑤ 징계위원회의 위원장은 출석한 징계혐의자 및 선임된 특별변호인에게 최종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제25조 [서류의 열람] 징계혐의자는 심의기록과 증거물 등을 열람 또는 등사할 수 있다. 단, 그 일시 및 장소는 위원장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제26조 [심의기일조서 등] ① 심의기일에는 심의기일조서를 작성하여야 하며, 조서에는 위원장과 간사가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여야 한다. (개정 2010. 1. 25.)

② 조서에는 심의일시·장소, 출석한 위원의 성명, 공개여부, 심의의 경과와 내용 등을 기재하여야 한다.

③ 주임징계위원의 심사기일의 조서에 관하여는 제1항 및 제2항을 준용한다.

제27조 [문서의 송달] 문서의 송달은 우편 또는 모사전송(FAX)의 방법에 의한다. (개정 2010. 1. 25.)

제28조 [비밀엄수] 위원장·위원·예비위원·간사·서기 등은 징계위원회의 심의나 결정에 관하여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엄수하여야 한다.

제29조 [결정] ① 징계위원회는 심의를 종료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징계사건에 관하여 결정을 하여야 한다.

② 징계위원회의 징계에 관한 결정은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한다. 다만 과반수의 찬성을 얻은 의견이 없을 때에는 과반수에 달할 때까지 징계혐의자에게 가장 불리한 의견의 수에 순차 유리한



의견의 수를 더하여 그 중 가장 유리한 의견을 합의된 의견으로 한다.

제30조 [징계결정서의 작성] ① 징계위원회가 징계에 관하여 결정을 하였을 때에는 징계결정서를 작성 하여야 하며, 징계결정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고 위원장과 출석한 위원 및 간사가 기명 날인 또는 서명하여야 한다.

1. 사건번호
2. 징계혐의자의 성명, 등록번호, 사무소 및 특별번호인의 성명 또는 명칭
3. 주문
4. 이유
5. 의결 연월일

② 징계결정서에는 전항에 규정하는 사항 외에 각 위원의 의견을 기재할 수 있다.

제31조 [결정의 통보 및 통지] ① 징계위원회는 결정을 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협회장에게 서면으로 그 결과와 이유를 통보하여야 한다.

② 징계위원회는 지체 없이 결정서를 징계혐의자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③ 징계개시청구가 징계개시 신청인의 신청에 의한 경우에는 당해 징계개시 신청인에게 징계결정 결과를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0. 1. 25.)

제32조 [이의신청] ① 징계위원회의 결정에 불복이 있는 징계혐의자 및 징계개시 신청인은 제31조의 규정에 따른 송달 또는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협회를 경유하여 법무부외국법자문사징계 위원회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개정 2010. 1. 25.)

② 이의신청인은 징계심의기록과 증거물을 열람·등사할 수 있다.

제33조 [징계결정의 효력발생] 징계결정은 이의신청기간이 만료한 때 또는 법무부외국법자문사징계위원회의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이 난 때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제34조 [다른 법률의 준용] 서류의 송달, 기일의 지정이나 변경 및 증인·감정인의 선서와 급여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는 「형사소송법」과 「형사소송 비용 등에 관한 법률」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 4 장 징계의 집행 및 공고

제35조 [징계의 집행] ① 협회장은 징계결정이 효력을 발생하면 즉시 다음 각 호에 정한 방법으로 징계처분을 집행하여야 한다.

1. 등록취소는 징계혐의자의 외국법자문사등록원부에 그 징계결정의 내용을 기재하여 등록을 취소 하고 외국법자문사등록원부를 말소한다.
2. 정직은 징계혐의자의 외국법자문사등록원부에 정직개시일과 정직기일을 명시하여 징계결정의 내용을 기재한다.
3. 과태료는 징계결정의 내용을 외국법자문사등록원부에 기재하고, 협회장이 검사에게 의뢰하여 집



행한다.

4. 견책은 협회장이 징계혐의자에게 근신자숙하라는 취지의 문서를 송달하고, 징계결정의 내용을 외국법자문사등록원부에 기재한다.

② 등록취소 및 정직의 경우의 징계집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따로 규정으로 정한다.

제36조 [보고 및 통지] ① 협회장은 징계처분의 결과를 법무부장관에게 보고한다.

② 협회장은 징계혐의자에게 징계의 집행 사실을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제37조 [공고 및 공표] ① 협회장은 징계처분의 내용을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0. 1. 25.)

② 협회장은 외국법자문사와 관련된 징계에 관한 처분 또는 징계결정서의 주문 및 이유 등을 공표할 수 있다.

제38조 [공고방법 및 범위] ① 협회장은 확정된 징계처분의 내용을 인터넷 홈페이지 및 협회가 발행하는 회지 또는 신문에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8. 2. 5.)

② 협회장은 징계처분의 확정일로부터 2주일 이내에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하고, 해당 징계처분의 확정일 이후 최초로 발간하는 대한변호사협회 발행 정기간행물에 게재하여야 한다. (신설 2018. 2. 5.)

③ 공고되는 사항은 다음과 같다. (신설 2018. 2. 5.)

1. 징계처분을 받은 외국법자문사의 성명·생년월일·사무실의 주소·명칭
2. 징계처분의 내용 및 징계사유의 요지(위반행위의 태양 등 그 사유를 구체적으로 알 수 있는 사실관계의 개요를 포함한다)
3. 징계처분의 효력발생일. 다만, 징계의 종류가 정직인 경우에는 정직개시일 및 정직기간 징계처분 정보를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하는 기간은 최초 게재일부터 기산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으로 한다.

가. 자격승인취소·등록취소: 3년

나. 정직: 1년. 다만, 정직기간이 1년보다 장기인 경우에는 그 정직기간으로 한다.

다.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6개월

라. 견책: 3개월

④ 협회장은 징계처분정보를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할 경우 홈페이지 최상단 메뉴에 외국법자문사 정보란을, 그 하위 메뉴로 외국법자문사 징계 내역을 두고, 외국법자문사 징계 내역 메뉴에 징계처분정보를 기재하는 방법으로 게재하여야 한다. (신설 2018. 2. 5.)

⑤ 협회장은 외국법자문사 징계 내역 메뉴에서 외국법자문사의 성명 및 사무실의 명칭(해당 외국법자문사가 법무법인 등에 소속되어 있으면 그 법무법인 등의 명칭을 말한다)으로 징계처분정보가 검색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신설 2018. 2. 5.)

제 5 장 징계정보의 제공

제39조 [정보제공의 신청] 사건의뢰, 상담 기타 합리적인 사유가 있는 자는 외국법자문사를 특정하여



징계처분의 내용에 대한 정보제공(이하 “정보제공”이라 한다)을 신청할 수 있다.

제40조 [신청방법] ① 정보제공을 신청하는 자(이하 “신청자”라 한다)는 그러한 취지를 기재한 서면을 협회에 직접 제출하거나 우편, 모사전송 또는 정보통신망에 의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② 2인 이상이 공동으로 정보제공을 신청하는 때에는 1인을 대표자로 선정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의 서면 내용이 불명확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제41조 [신청의 처리] 협회는 이 규정에 따른 정당한 정보제공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당해 외국법자문사의 징계처분 사실을 확인하는 서류를 제공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징계처분 사실은 제외한다.

1. 징계처분의 내용이 100만원 미만의 과태료부과 또는 견책인 경우
2. 제44조의 정보제공 기간을 도과한 징계처분인 경우 (개정 2010. 1. 25.)

제42조 [제공방법] 정보제공은 신청자의 선택에 따라 협회에서 직접수령, 우편발송, 모사전송,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전자우편발송의 방법에 의한다.

제43조 [유의사항] ① 협회가 이 규정에 따라 정보제공을 하는 경우에는 대상 외국법자문사가 아닌 제3자의 명예가 훼손되지 않도록 유의하여야 한다.

② 이 규칙에 따라 정보제공을 받은 신청자는 그 내용을 제3자에게 알리거나 신청목적 이외의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44조 [정보제공 기간] 정보제공을 할 수 있는 기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등록취소의 경우 징계처분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2. 정직의 경우 정직기간이 만료한 날부터 5년
3. 과태료의 경우 징계처분이 확정된 날부터 2년

제45조 [자기 정보 열람 등] ① 외국법자문사는 언제든지 자신의 징계처분 기록에 대한 열람·등사 및 징계처분 여부에 대한 확인서 발급을 신청할 수 있다.

② 외국법자문사는 제1항의 기록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그 기록의 정정을 신청할 수 있다.

③ 협회장은 제2항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신청이 있는 날부터 30일 이내에 정정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④ 제3항의 결정이 있을 때까지는 당해 외국법자문사의 징계처분의 내용을 공개하지 못한다.

제46조 [비용 등 부담] ① 협회는 정보제공과 관련하여 소요된 비용 등을 신청자에게 부과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비용 등은 상임이사회 심의를 거쳐 협회장이 정한다.

부 칙

이 규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0. 1. 25.)

이 규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8. 2. 5.)

이 규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외국법자문사업무광고규정

2009. 11. 23.

규정 제87호

전부개정 2016. 12. 30.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외국법자문사법 제31조에 의하여 외국법자문사(외국법자문법률사무소 및 합작법무법인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업무의 광고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광고의 정의] ① 외국법자문사업무에 관한 광고(이하 “광고”)라 함은 외국법자문사가 소비자의 외국법자문사 선택에 도움을 주고 고객·의뢰인의 유치 및 유지를 하기 위하여 자기 또는 그 구성원이나 그 업무에 관하여 아래에 열거한 방식을 포함한 일체의 방법으로 정보를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1. 외국법자문사사무소간판 등의 설치
2. 국내외의 신문·잡지 등의 정기 또는 부정기 간행물, 단행본, 화상 및 음성기록물, 일반전화번호부 및 비즈니스 디렉토리, 공중파, 케이블, DMB 기타 각종 방송, 유·무선통신, 인터넷, 컴퓨터 통신 등 각종 매체의 이용
3. 인사장, 연하장, 달력, 명함, 봉투, 서식, 편지지 기타의 사무용지 등의 유인물 또는 복사물의 배포
4. 안내책자, 사외용의 사무소보, 기념품, 안내편지, 관광안내지도, 개업연, 기타의 연회, 협찬
5. 법률상담, 설명회, 세미나 등

② “광고책임외국법자문사”라 함은 외국법자문법률사무소·합작법무법인(이하 “외국법자문사무소등”)가 외국법자문사 업무에 관한 광고를 할 경우 구성원 중 광고 담당자로 지정된 외국법자문사를 말한다.

제3조 [광고의 주체] ① 외국법자문사는 자신의 이름으로 업무광고를 하여야 한다.

② 외국법자문사무소 등이 광고를 하는 경우 변호사업무광고규정에 따른 광고책임변호사 또는 광고책임외국법자문사를 표시하여야 한다. 다만, 사무소 소재지에 위치하면서 사무소 명칭, 연락처만을 표시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제4조 [광고 내용에 대한 제한] ① 외국법자문사는 직접 또는 타인을 통하여 다음과 같은 광고를 할 수 없다.

1. 외국법자문사의 업무 및 경력에 관한 객관적 사실에 부합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의 내용을 표시한 광고
2. 객관적 사실을 과장하거나 사실의 일부를 누락하는 등으로 고객을 오도하거나 고객으로 하여금 객관적 사실에 관하여 오해를 불러일으킬 우려가 있는 내용의 광고
3. 승소율 기타 고객으로 하여금 업무수행결과에 대하여 부당한 기대를 가지도록 하는 내용의 광고
4. 다른 외국법자문사 또는 변호사(법무법인·법무법인(유한)·법무조합·공증인가합동법률사무소를 포함한



다. 이하 같다.)를 비방하거나 다른 외국법자문사 또는 변호사나 그 업무의 내용을 자신의 입장에서 비교하는 내용의 광고

5. 외국법자문사의 품위 또는 신용을 훼손할 우려가 있는 내용의 광고
6. 특정사건과 관련하여 당사자나 이해관계인(당사자나 이해관계인으로 예상되는 자 포함)에 대하여 그 요청이나 동의 없이 방문, 전화, 팩스, 우편, 전자우편, 문자 메시지 송부, 기타 이에 준하는 방식으로 접촉하여 당해 사건의 의뢰를 권유하는 내용의 광고. 다만, 대한변호사협회(이하 “협회”)의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7. 국제변호사 기타 법적 근거가 없는 자격이나 명칭을 표방하는 내용의 광고
8. 과거에 취급하였거나 관여한 사건이나 현재 수임중인 사건 또는 의뢰인(고문관계에 있는 의뢰인 포함)을 표시하는 내용의 광고. 다만, 의뢰인이 동의하거나, 당해 사건이 널리 일반에 알려져 있거나 의뢰인이 특정되지 않는 경우 등 의뢰인의 이익을 해칠 우려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9. 기타 법령 및 협회의 회칙이나 규정에 위반되는 내용의 광고

제5조 [광고방법 등에 대한 제한] ① 외국법자문사는 현재 및 과거의 의뢰인(법인 기타 단체인 경우, 담당 임·직원 포함), 친구, 친족 및 이에 준하는 사람 이외의 사람을 방문하거나 전화를 거는 방법으로 광고를 하여서는 안 된다. 다만, 상대방의 동의나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② 외국법자문사는 불특정한 다수인에게 팩스, 우편, 전자우편 또는 문자메시지 등을 보내거나 이에 준하는 방법을 이용하여 광고를 하여서는 안 된다.

③ 외국법자문사는 광고이면서도 광고가 아닌 것처럼 가장하는 방법으로 광고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외국법자문사는 광고 대상자에게 금품 기타의 이익을 공여하거나 공여할 것을 약속하는 방법으로 광고하여서는 아니 된다.

⑤ 외국법자문사는 제3자가 이 규정에 위반하여 외국법자문사업무에 관한 정보를 전달하거나 표시 행위를 하는 것을 용인하여서는 아니 된다.

⑥ 외국법자문사는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광고할 수 없다.

1. 자동차, 전동차, 기차, 선박, 비행기 기타 운송수단의 외부에 광고물을 비치, 부착, 게시하는 행위
2. 현수막을 설치하거나, 애드벌룬, 도로상의 시설 등에 광고물을 비치, 부착, 게시하는 행위
3. 광고 전단, 명함 기타 광고물을 신문 기타 다른 매체에 끼워 배포하거나, 공공장소에서 불특정한 다수인에게 나누어주거나, 차량, 비행기 등을 이용하여 살포하는 행위
4. 확성기, 샌드위치맨, 어깨띠 등을 사용하여 광고하는 행위
5. 관련 행정법령 등 법령에 위반되는 광고

⑦ 외국법자문사가 업무 외 다른 목적을 위한 광고를 하는 경우에는 외국법자문사업무에 관한 광고와 동시에 또는 연결하여 할 수 없다.

제6조 [사전 광고의 금지] 외국법자문사는 협회에서 등록신청이 수리되기 전에 미리 외국법자문사업무에 관한 광고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7조 [주로 취급하는 업무광고] ① 외국법자문사는 주로 취급하는 업무(‘주요취급업무’, ‘주로 취급하는 분



야', '주요취급분야' 등의 용어도 사용 가능하다)를 광고할 수 있다.

② 외국법자문사는 자신이나 자신의 업무에 대하여 “최고”, “유일”, “전문” 기타 이와 유사한 용어(외국어 포함 이하 같다)를 사용하여 광고할 수 없다. 단, “전문”이라는 용어는 협회가 정하는 기준에 따라 사용할 수 있다.

제8조 [법률상담 광고] ① 외국법자문사는 유료 또는 무료 법률상담에 관한 사항을 광고할 수 있으며, 법률상담 방식에 의한 광고를 할 수 있다.

② 외국법자문사는 다음에 해당하는 법률상담과 관련한 광고를 하거나 하게 허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외국법자문사가 아닌 자가 법률상담의 대가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갖는 경우
2. 외국법자문사 또는 법률 상담의 대상자가 법률상담 연결 또는 알선과 관련하여 대가(알선료, 중개료, 회비, 가입비, 기타 명칭 불문)를 지급하는 경우. 다만, 간행물, 인터넷, 케이블티브이를 포함한 유료 광고 매체를 사용하는 경우에 외국법자문사가 통상적인 사용료 또는 광고료를 지급하는 경우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3. 제3자의 영리를 위한 사업의 일환으로 운영되는 법률상담에 참여하는 경우
4. 기타 법령 및 협회의 회칙이나 규정에 위반되는 행위를 목적 또는 수단으로 하여 행하는 경우

제9조 [관련 행정법령의 준수] 외국법자문사가 이 규정상 허용되는 광고를 함에 있어서는 관련 행정법령상의 규제를 준수하여야 한다.

제10조 [광고에 표시하여야 할 사항] 외국법자문사는 광고 속에 원자격국 허용된 업무 범위, 자신의 성명 또는 명칭을 표시하고, 공동으로 광고할 때에는 대표자의 성명 또는 명칭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1조 [광고물의 보관 의무] 광고를 한 외국법자문사는 광고물 또는 그 사본, 사진 등 당해 광고물에 갈음하는 기록과 광고일시, 장소, 송부처 등의 광고방법 등 당해 광고에 관련한 기록을 광고 종료 시로부터 3년 간 보관하여야 한다.

제12조 [위반행위에 대한 조치] ① 협회장은 이 규정에 위반한 외국법자문사에 대하여 외국법자문사광고심사위원회 의결을 거쳐 경고하거나 위반행위의 중지 또는 시정을 위하여 필요한 요구 기타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단, 이러한 조치를 취하기 전에 당해 외국법자문사에 대하여 소명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② 외국법자문사는 제1항의 요구를 받았을 때에는 즉시 이를 이행한 후 그 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③ 협회장은 외국법자문사가 제1항의 요구에 불구하고 즉시 시정조치를 취하지 아니하는 경우, 협회장의 명의로 시정조치 요구 사실 및 그 이유의 요지를 공표할 수 있고, 그 비용은 당해 외국법자문사가 부담한다.

제13조 [외국법자문사광고심사위원회의 설치] 외국법자문사광고에 관한 심사를 위하여 협회에 외국법자문사광고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14조 [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10인 이상 3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 부위원장, 간사 각 1인을 둔다.

② 위원장은 협회장이 위원 중에서 임명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간사는 위원 중에



서 위원장이 지명한다.

③ 위원 및 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위원의 임기 중에 선임된 임원의 임기는 위원의 임기가 종료됨과 동시에 종료된다.

④ 위원장은 위원회를 통할하고 위원회를 대표한다.

⑤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유고시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⑥ 간사는 위원장의 지시에 따라 위원회의 사무를 담당한다.

제15조 [위원회의 회의] ① 위원장은 협회장의 요구가 있거나 위원의 5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지체 없이 위원회를 소집하여 심사를 하여야 한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4분의 1 이상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고, 가부동수인 때에는 위원장이 결정한다.

③ 협회장, 부협회장 및 상임이사는 위원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④ 위원회의 의사는 비공개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위원회가 공개 결의를 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⑤ 위원회의 심사결과는 협회장에게 서면으로 보고하여야 한다.

제16조 [위원회의 업무] ① 위원장은 소속 외국법자문사가 광고규정상의 금지나 의무에 위반했는지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사를 할 수 있고, 해당 외국법자문사는 그러한 조사에 협력하여야 한다.

② 위원장은 외국법자문사가 광고규정 위반의 의심이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외국법자문사나 사무원, 의뢰인, 진정인 등 관계자에 대하여 외국법자문사업무광고와 관련한 사실 및 증거조사에 필요한 각종 자료(광고한 내역, 광고물, 광고계약계약서, 광고비 지급 증빙자료 포함)의 제출 및 설명을 요구할 수 있다.

③ 광고가 제4조 제1항 제1호 위반의 의심이 있어 위원장이 요구를 하는 경우 광고를 한 외국법자문사는 광고 내용이 사실에 일치하고 있다는 것을 증명하여야 한다.

④ 위원장은 각 지방변호사회 및 관련 국가기관 기타 관련 단체에 대하여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여 줄 것을 협회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⑤ 위원장은 외국법자문사의 광고규정 위반 혐의를 발견하였을 때에는 의견서를 첨부하여 협회장에게 보고한다.

⑥ 위원장은 외국법자문사의 광고규정 위반 여부의 심사를 위하여 위원회 위원 중에서 주심 위원을 지명할 수 있다. 이 경우 주심 위원은 위원장을 대행하여 제1항 내지 제3항의 권한을 행사할 수 있다.

제17조 [질의와 회신] ① 외국법자문사 및 이해관계자는 광고의 내용과 방법 등에 관하여 의문이 있을 때에는 협회장에게 서면으로 질의할 수 있다.

② 협회장은 전항의 요청이 있을 때에 위원회의 의견을 들어 그 내용을 질의자에게 회신한다.

제18조 [준용]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이 규정이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위원회운영규칙을 준용한다.

제19조 [세부기준 제정] 협회는 이 규정의 시행에 필요한 세부기준을 정할 수 있다.



부 칙

이 규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외국법자문법률사무소공동사건처리등을위한규정

2013. 9. 9.

규정 제121호

제 1 장 총 칙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외국법자문사법(이하 “법”이라고 한다)에 따라 외국법자문법률사무소가 공동 사건 처리 등을 위한 등록(이하 “공동사건처리등을 위한 등록”이라고 한다), 공동사건처리등을 위한 등록의 취소, 공동사건처리등의 신고 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적용범위] 이 규정은 법 제34조의2 내지 5에 따라 공동사건처리등을 하고자 하는 외국법자문 법률사무소에 적용한다.

제3조 [공동사건처리등을 위한 외국법자문법률사무소 명부의 작성] 이 회는 법 제18조 제3항에 따라 비치된 외국법자문법률사무소 명부에 공동사건처리등 관련 명부 보충용지를 두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다.

1. 명칭 및 사무소의 소재지
2. 구성원의 성명, 주소와 외국법자문법률사무소의 대표에 관한 사항
3. 설립인가 연월일
4. 본점사무소의 명칭 및 소재지
5. 대한민국 내에서 공동사건처리등의 업무를 수행하기로 의결 또는 결정한 내용
6. 공동사건처리등을 위한 등록 번호 및 연월일
7. 공동사건처리등을 위한 등록 취소 연월일 및 사유
8. 제7조 제1항의 등록사항 변경 연월일 및 사유
9. 제19조에 따른 신고사항

제4조 [공동사건처리등 관련 명부 보충용지의 작성] 공동사건처리등 관련 명부 보충용지는 이 규정에 의하여 당사자가 제출하는 신청서, 신고서 및 그 첨부서류에 의하여 이 회가 작성한다. 다만, 명부 보충용지의 기재사항에 변경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당사자가 이를 신고하지 아니하거나 당사자가 제출한 서류의 기재내용이 명백히 사실과 다르다고 인정할 만한 현저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대한변호사협회장이 직권으로 작성할 수 있다.

제5조 [공동사건처리등 관련 명부 보충용지의 보관·보존] ① 공동사건처리등 관련 명부 보충용지는 멸실 또는 훼손을 방지할 수 있는 시설에 보관하여 영구 보존한다.

② 공동사건처리등 관련 명부 보충용지는 부득이한 경우가 아니면 반출할 수 없다.

③ 공동사건처리등 관련 명부 보충용지가 멸실 또는 훼손된 경우에는 등록신청서 및 각종 신고서,



이 규정에 따라 발부한 등록증명서 및 각종 통지서, 회지계재사항 기타 신빙할 수 있는 자료에 의하여 지체 없이 복구하여야 한다.

제6조 [시행세칙] 외국법자문법률사무소의 공동사건처리등을 위한 등록 및 신고 등에 관한 사항과 기타 필요한 사항은 세칙으로 정한다.

제 2 장 공동사건처리등 등록

제7조 [공동사건처리등을 위한 등록 신청] ① 법 제34조의3 제1항에 따라 등록하여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명칭 및 사무소의 소재지
 2. 구성원의 성명, 주소와 외국법자문법률사무소의 대표에 관한 사항
 3. 설립인가 연월일
 4. 본점사무소의 명칭 및 소재지
 5. 대한민국 내에서 공동사건처리등의 업무를 수행하기로 의결 또는 결정한 내용
- ② 법 제34조의3 제1항에 따라 공동사건처리등을 위한 등록을 하고자 하는 자는 제1항의 등록사항이 기재되고 다음 각 호의 서면을 첨부한 등록신청서를 이 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증빙서류는 원본이거나 인증된 사본이어야 하고, 한글로 작성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공증된 한글 번역본을 첨부하여야 한다.
1. 자유무역협정등에 따라 법무부장관이 고시하는 자유무역협정등의 당사국에 본점사무소가 설립·운영되고 있는 외국법자문법률사무소임을 증명하는 서면
 2. 외국법자문법률사무소의 본점사무소가 대한민국 내에서 공동사건처리 등의 업무를 수행하기로 의결 또는 결정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면
 3. 서약서
- ③ 공동사건처리등 등록을 신청하는 자는 제2항의 등록신청서와 증빙서류를 제출할 때 대한변호사협회장이 지명한 직원 앞에서 시행세칙에 따른 서약서를 읽고 이에 서명하여야 한다.

제8조 [이 회의 처리] ① 이 회의는 제7조 제2항에 따른 신청이 있는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지체 없이 외국법자문법률사무소 공동사건처리등 관련 명부 보충용지에 등록한 후 신청인에게 등록증명서를 발급하고, 그 취지를 신청인 및 법무부장관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② 이 회의는 제7조 제2항의 신청서류에 기재사항의 흠결이 있거나 첨부서류의 미비가 있는 때에는 신청인에게 이를 보완할 것을 명할 수 있다.

제9조 [등록료의 납부] ① 공동사건처리등을 위한 등록을 신청한 자는 이 회가 정한 등록료를 등록신청서류와 함께 납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등록료는 이 회의 수입으로 한다.



제10조 [공동사건처리등을 위한 등록심사위원회] ① 이 회에 공동사건처리등을 위한 등록 및 그 취소에 관한 심의를 위하여 공동사건처리등을 위한 등록심사위원회를 둔다.

② 공동사건처리등을 위한 등록심사위원회의 구성, 심사절차 및 운영에 관하여는 「외국법자문사제도 운영위원회규정」 제3조 내지 제9조를 준용한다.

제11조 [공동사건처리등을 위한 등록취소의 구분] 공동사건처리등을 위한 등록의 취소는 다음의 2종으로 나눈다.

1. 명령에 의한 공동사건처리등을 위한 등록취소
2. 직권에 의한 공동사건처리등을 위한 등록취소

제12조 [명령에 의한 공동사건처리등을 위한 등록취소] 이 회는 법 제34조의4 제1항에 따른 법무부장관의 등록취소명령이 있는 경우 공동사건처리등을 위한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제13조 [직권에 의한 공동사건처리등을 위한 등록취소] ① 이회는 제2항의 신고를 받거나 법 제34조의4 제1항의 등록취소 사유가 있음을 발견한 때에는 법 제34조의4 제2항에 따라 공동사건처리등을 위한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② 공동사건처리등을 위한 등록을 마친 외국법자문법률사무소는 법 제34조의4 제1항의 등록취소 사유가 있는 경우 지체 없이 공동사건처리등을 위한 등록취소사유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신고서에는 그 사유를 소명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하여야 한다.

④ 이회는 제2항에 의한 신고를 받거나 법 제34조의4 제1항의 등록취소 사유가 있음을 발견한 때에는 해당 외국법자문법률사무소에 소명자료를 제출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⑤ 이회는 제1항에 따라 공동사건처리등을 위한 등록을 취소하고자 하는 경우 사전에 제10조에 따라 구성된 공동사건처리등을 위한 등록심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이를 위하여 협회장은 등록취소사유에 해당한다고 인정되거나 의심이 있는 때에는 지체 없이 공동사건처리등을 위한 등록심사위원회에 등록취소에 관한 안건을 회부하여야 한다.

제14조 [공동사건처리등을 위한 등록의 취소 절차] ① 이회가 공동사건처리등을 위한 등록을 취소하는 경우 공동사건처리등 관련 명부 보충용지에 그 사유와 취소 연월일을 기재하고 그 명부 보충용지를 폐쇄한다.

② 이회가 공동사건처리 등을 위한 등록을 취소하는 경우 관련 명부 보충용지에 그 취지와 이유를 해당 외국법자문법률사무소에 지체 없이 서면으로 통지하고, 법무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 해당 외국법자문법률사무소는 제2항에 따른 등록취소통지서를 받은 경우 지체 없이 공동사건처리등을 위한 등록증명서를 이 회에 반납하여야 한다.

제15조 [공동사건처리등을 위한 등록취소에 대한 이의신청] ① 공동사건처리등을 위한 등록이 취소된 자는 제14조 제2항에 의한 등록취소통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소명자료를 첨부하여 법무부장관에게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② 법무부장관이 제1항의 이의신청이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여 해당 외국법자문법률사무소의 등록취소의 취소를 명한 때에는 이회는 지체 없이 등록취소를 취소하여야 한다.



제16조 [서면의 비치, 열람 등] 이 회는 다음 각 호의 서면을 비치하여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1. 제7조 제1항의 등록사항이 적힌 서면
2. 등록취소에 관한 서면

제17조 [신고] ① 외국법자문법률사무소의 대표자는 등록된 사항이 변경된 경우 그 변경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이 회에 등록변경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이 회는 제1항에 따라 등록된 사항을 변경한 경우 그 취지를 신고인 및 법무부장관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제18조 [공고] 이 회가 제17조에 의한 각종 신고를 받은 때에는 2개월 이내에 그 요지를 공고하여야 한다.

제 3 장 공동사건처리등의 신고

제19조 [공동사건처리등의 신고 등] ① 제7조의 등록을 마친 외국법자문법률사무소의 대표자는 매년 1월 31일까지 전년도에 그 외국법자문법률사무소가 법 제34조의2 제1항에 따라 체결한 계약과 관련하여 그 사안별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신고하여야 한다.

1. 상대방인 법률사무소, 법무법인, 법무법인(유한) 또는 법무조합의 명칭 및 그 사무소의 소재지
2. 계약체결일 및 사안별 요지
3. 실제 사건을 공동으로 처리한 상대방 측 변호사의 성명 및 사안별 수입액
4. 수익을 분배한 내역이 있다면 그 내역

② 제1항의 신고와 관련하여 이 회가 법 제32조 제1항의 감독을 수행하기 위하여 이유를 명시하여 그 업무·재산의 현황, 수입·회계 내역의 명세, 그 밖에 감독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경우에 따라야 한다.

제20조 [이 회의 처리] ① 이 회는 제19조에 따른 신고사항 및 자료에 기재사항의 흠결이 있거나 첨부서류의 미비가 있는 때에는 그 신청인에게 보완을 명할 수 있다.

② 이 회는 제19조에 따른 신고를 받은 경우에는 그 취지를 법무부장관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제21조 [신고처리수수료의 납부] ① 제19조에 따라 신고를 하는 자는 이 회가 정한 신고처리수수료를 신고서와 함께 납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수수료는 이 회의 수입으로 한다.

부 칙

이 규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예산회계규칙

1983. 5. 21.

규칙 제14호

개정 1990. 2. 24. 1998. 6. 8.
2000. 7. 3. 2011. 2. 28.
2016. 2. 29. 2018. 2. 26.
2019. 2. 25. 2021. 5. 31.

제1장 총 칙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이 회의 운영을 합리화하고, 업무집행을 원활히 하기 위하여 예산·결산 및 각종 회계에 관한 기준을 확립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적용범위] 이 회의 예산·결산 및 각종 회계에 관하여는 회칙에 정한 것을 제외하고 이 규칙에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 [회계원칙] ① 이 회의는 다음에 열거하는 원칙에 따라 예산서, 회계장부 및 계산서류를 작성하여야 한다.

1. 모든 재정집행과 회계처리는 진실한 내용을 반영하여야 한다.
2. 수입과 지출은 예산서에 따라 집행하여야 한다.
3. 회계장부는 예산단위의 총액이 50억 원 미만일 때에는 단식부기, 50억 원 이상일 때에는 복식부기의 원칙에 따라 정확하게 즉시 기장하여야 한다. (개정 1998. 6. 8.)
4. 계산서류는 회계장부에 따라 명료하게 기재하여야 한다.
5. 회계처리의 원칙과 절차는 매 회계연도에 계속하여 적용하고, 함부로 변경하지 못한다.

② 제1항에 규정한 이외의 사항은 일반적으로 공정타당하다고 인정되는 회계원칙에 따라 처리한다.

제3조의2 [전결사항] 협회장은 일정한 금액 이하의 재정집행사무를 재무이사의 전결사항으로 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1. 5. 31.)

제4조 [회계연도] 이 회의 회계연도는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제5조 [회계구분] ① 이 회의 회계는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로 한다.

② 특별회계는 법률구조, 변호사연수 기타 특별사업을 실시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총회의 승인을 얻어 둘 수 있다. (개정 1998. 6. 8.)

제6조 [기록의 보존] ① 이 규칙에 의한 모든 회계처리는 회계장부에 기장하고 이를 증빙하는 자료를 첨부하여 기록으로 보존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의한 회계기록의 보존기간은 다음과 같다.

1. 예산 및 결산서류 30년
2. 회계장부 10년
3. 기타 회계기록 5년

제7조 [시행세칙] 예산관리, 회계관리 기타 이 규칙을 시행하는 데 필요한 사항은 규정으로 정한다.

제 2 장 계정과목과 장표조직

제8조 [계정과목] ① 이 회의 모든 회계거래는 다음의 계정과목으로 구분하여 정리한다.

1. 대차대조표계정과목
2. 수지계산서계정과목

② 각 계정과목의 명칭, 배열, 내용 및 계정과목의 세분과 특별회계의 계정과목은 상임이사회에서 정한다. (개정 1998. 6. 8.)

제9조 [회계장부] ① 이 회에 다음의 회계장부를 비치하고, 회계연도마다 갱신한다.

1. 현금출납부
2. 총계정원장
3. 기타 보조부

② 회계장부의 구체적 종류, 양식 및 기재사항은 규정으로 정한다.

제10조 [회계전표] ① 이 회는 모든 회계거래 시마다 다음 구분에 따라 회계전표로 나누고 연속번호의 순서에 따라 매월마다 이를 합철한다. (개정 1998. 6. 8.)

1. 입금전표
2. 출금전표
3. 대체전표

② 회계전표는 그 회계거래가 정당하고 계산이 정확함을 증명하는 증빙서류에 의거하여 작성하여야 한다.

③ 증빙서류는 전표번호를 기입하고 각 전표철과 대응하게 나누어 전표순에 따라 1개월마다 전표철과는 별도로 철하고 각각 합철한다. (신설 1998. 6. 8.)

④ 회계전표의 서식과 기재사항은 규정으로 정한다.

제 3 장 예 산

제11조 [예산의 목적] 예산은 각 회계연도의 사업계획을 명확한 계수로써 표시하여 사업의 원활한 운



영을 기하고, 예상되는 모든 수입과 지출의 내용을 명확히 표시하여 수지의 합리적 규제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2조 [예산기간] ① 예산기간은 제4조에 정한 회계연도와 같게 하되, 필요하면 이를 다시 3개월씩 세분하여 4분기로 나눌 수 있다.

② 계속사업의 집행 기타 장기계획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예산기간을 장기로 책정할 수 있다. 다만, 그 경우에도 각 회계연도마다 예산액은 세분하여야 한다.

제13조 [예산의 편성] ① 예산은 사업계획에 맞추어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로 나누어 편성하되, 모든 수입과 세출을 반영하여야 한다.

② 재무이사는 매 회계연도개시 2개월 전까지 총무이사 및 각 사업 담당 상임이사와 협의하여 다음 연도 사업계획안에 맞추어 예산안을 작성하여야 한다.

③ 협회장은 매 회계연도 초에 사업계획과 함께 상임이사회의 심의를 거쳐 예산안을 이사회에 제출하고,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매 년도 2월 말까지 총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14조 [예산의 집행] ① 예산은 사업계획에 부합하도록 엄밀히 집행하고 그 집행실적을 수시 파악하여 그 운영과 관리에 만전을 기하여야 한다.

② 재무이사는 매 분기마다 예산의 집행실적을 협회장에게 보고하여야 하고, 협회장은 예산집행전반에 관하여 필요한 조정과 지시를 할 수 있다.

제15조 [예산의 전용] 예산에 정하여진 금액은 원칙으로 정하여진 목적 이외의 용도에 사용하거나 유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사업계획의 변경,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목적 외에 사용하거나 관간을 유용하고자 할 때에는 이사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개정 1990. 12. 24.)

제16조 [예비비의 사용] ① 예측할 수 없는 예산의 부족을 보전하기 위하여 세출예산액의 1할 범위 안에서 예비비를 예산에 계상할 수 있다.

② 예비비를 사용하고자 할 때에는 이사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17조 [잠정예산] ① 새로운 회계연도가 개시된 뒤 예산이 성립될 때까지의 필요한 경비는 전년도 예산에 준하여 집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의하여 집행된 수입과 지출은 후에 성립되는 당해연도의 예산에 의하여 집행된 것으로 본다.

제18조 [추가경정예산] 예산을 추가경정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총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 4 장 결 산

제19조 [결산의 목적] 결산은 일정기간의 회계기록을 정리하여 당해 기간의 수지를 계산하고 당해 기말의 재정상태를 명확하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0조 [결산의 종류] ① 결산은 기말결산과 연말결산으로 나눈다.

- ② 재무이사는 매 분기 말마다 회계기록을 정리하고 수지계산을 마감하여 결산서류를 작성하여야 한다.
- ③ 재무이사는 매 년도 말마다 제2항과 같은 방법으로 결산서류를 작성하여야 한다.
- ④ 협회장은 매 회계연도 종료 후 결산안을 사전에 감사의 감사를 받아 사무보고와 함께 상임이사회 심의와 이사회 심의를 거쳐 매 년도 2월 말까지 총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 ⑤ 결산안을 총회에 부의함에 있어 사전에 감사의 감사를 받아야 한다.

제21조 [결산서류] ① 매 기말 결산 시에는 다음 서류를 작성하여야 한다.

- 1. 수지계산서
- 2. 예산집행실적표

② 매 연말 결산 시에는 다음 서류를 작성하여야 한다.

- 1. 대차대조표
- 2. 수지계산서

③ 제1항 및 제2항에 의한 각종 결산서류의 종류, 양식 및 기재사항은 규정으로 정한다.

제22조 [잉여금의 이입] 매 회계연도에 있어서 세입·세출의 결산상 생긴 잉여금 중 일부를 다음 연도의 회관건축기금특별회계예산에 이입할 수 있다. (개정 2016. 2. 29.)

제 5 장 금전회계

제23조 [금전] ① 이 규칙에서 금전이라 함은 현금과 예금을 말하며, 현금에는 통화외 보관 중인 수표 및 우편환을 말한다.

② 기한이 도래된 유가증권과 어음은 금전에 준하는 것으로 취급한다.

제24조 [출납] ① 금전의 출납은 회계책임자의 지시에 따라 회계담당자가 행한다.

② 회계책임자는 재무이사로 하고, 회계담당자는 사무국 직원 중에서 사무총장이 지명한다. (개정 2000. 7. 3.)

③ 모든 금전출납은 회계전표에 의하여 집행한다.

제25조 [영수증의 발행] ① 이 회가 외부로부터 금전을 수납하는 때에는 영수증을 발행한다.

② 영수증은 회계담당자가 발행한다. (개정 2021. 5. 31.)

제26조 [예입] ① 수납된 금전은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회계책임자가 그 날 중에 은행에 예입하여야 한다. 다만, 회계책임자는 예측할 수 없는 현금의 지출을 위하여 규정으로 정하는 범위 안에서 시재현금을 보유할 수 있다.

② 은행과의 예금거래는 이 회 명의로 하고, 그 거래인감은 재무이사인으로 한다. (개정 2000. 7. 3.)



③ 예금거래통장과 거래인감은 재무이사가 보관한다. (신설 2000. 7. 3.)

제27조 [현금대조] 회계책임자는 매일 현금출납 종료 후에 금전잔액을 관계장부와 대조하여 확인하여야 한다.

제28조 [금전의 차입] ① 회 운영상 일시적 자금부족으로 부득이 자금을 차입하고자 할 때에는 세입예산의 범위 안에서 차입할 수 있다.

② 금전의 차입은 재무이사가 협회장에게 품의하고, 상임이사회의 심의를 거쳐 행한다.

③ 제1항에 의한 차입금은 늦어도 당해 회계연도 내 상환하여야 한다.

제29조 [금전의 지출] ① 금전의 지출은 최종 수령인으로부터 청구서 기타 증빙서류를 받고 행하여야 한다.

② <삭제> (2019. 2. 25.)

제30조 [유가증권의 취득 및 처분] ① 유가증권을 취득, 대여 또는 처분함에 있어서는 상임이사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② 유가증권의 장부가액은 취득가액으로 한다. 다만, 시가가 취득가액보다 현저하게 하락하고 취득가액으로 회복할 가망이 없을 때에는 시가에 준하여 평가할 수 있다.

제31조 [금전의 대여] 금전의 대여에 관하여는 제28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다만, 일시적 가지급금으로서 시행세칙이 정하는 범위내의 것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 6 장 고정자산회계

제32조 [고정자산의 범위] 고정자산이라 함은 다음 각 호에 정한 것을 말한다. 다만, 시간의 경과에 따라 그 가치가 감소하는 감가상각 자산에 관하여는 내용연수가 1년 이상 또는 취득가액이 100,000원 이상인 것을 말한다.

1. 유형고정자산
2. 무형고정자산

제33조 [취득가액] 고정자산의 취득가액은 다음 각 호에 따라 계산한다.

1. 구입자산은 구입가액에 부대비용을 가산한 금액으로 한다.
2. 교환자산은 교환시 제공한 물건의 장부가액으로 한다.
3. 수증자산은 수증시의 평가액으로 한다.

제34조 [고정자산의 구입] 고정자산의 구입은 회계책임자가 협회장의 결재를 받아 구입한다. 다만, 금 50,000,000원을 초과하는 고정자산의 구입은 이사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개정 2018. 2. 26.)

제35조 [고정자산의 관리] 고정자산의 재고조사, 개량, 보수, 매각, 처분, 이관 및 감가상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정으로 정한다.



제 7 장 물품회계

제36조 [물품의 범위] 물품이라 함은 내용연수가 1년 미만이거나 그 금액이 1,000,000원 미만인 소모성물품, 가구, 비품을 말한다. (개정 2021. 5. 31.)

제37조 [물품의 구입] 물품 구입 관련 사항은 회계담당자 전결사항으로 한다. (개정 2021. 5. 31.)

제38조 [물품의 관리] 물품의 재고조사, 개량, 보수, 수선, 처분, 이관 및 폐기에 관하여는 규정으로 정한다.

제 8 장 회계감사

제39조 [감사의 종류] ① 회계감사는 정기감사와 수시감사로 한다.

② 정기감사는 매 분기마다 감사가 실시한다.

③ 수시감사는 필요에 따라 감사 또는 재무이사가 실시한다.

제40조 [감사의 방법] ① 감사가 정기감사 또는 수시감사를 하고자 할 때에는 그 일시와 목적을 협회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 감사는 회계감사에 필요한 회계장부, 회계전표, 증빙서류 기타 필요한 회계기록의 제출과 필요한 설명을 요구할 수 있다.

③ 재무이사는 수시감사를 아무런 고지없이 실시할 수 있고, 필요한 회계기록을 제한 없이 열람할 수 있다.

제41조 [감사보고] ① 감사는 회계감사결과를 총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사전에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② 재무이사는 수시감사의 결과, 이상이 있음을 발견한 때에는 지체 없이 협회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부 칙

① [시행일] 이 규칙은 1983. 6. 1.부터 시행한다.

②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에 집행된 사항은 이 규칙에 의하여 집행된 것으로 본다.



부 칙 (1998. 6. 8.)

이 규칙은 1998. 7. 1.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0. 7. 3.)

이 규칙은 2000. 7. 29.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1. 2. 28.)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6. 2. 29.)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8. 2. 26.)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9. 2. 25.)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21. 5. 3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 표

<삭제> (2019. 2. 25.)



회계처리규정

1998. 5. 25.

규정 제51호

개정

2000. 6. 26.
2013. 2. 1.
2017. 3. 22.
2018. 12. 28.
2021. 5. 3.

제 1 장 총 칙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회칙, 사업계획규칙, 예산회계규칙에 의하여 회계사무처리 기준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 장 회계장부 및 전표

제2조 [장부의 종류] ① 회계장부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일반·특별회계 : 현금출납부와 총계정원장
2. 전도금 현금출납부

② 제1항이 정한 회계장부는 예산회계처리를 위한 전산회계프로그램으로 정리하여 출력한 문서로 대체할 수 있다.

제3조 [회계장부기재사항] ① 회계장부의 양식 및 기재사항은 일반회계원칙에 의하여 작성한다.

- ② 회계장부에는 매월 말의 그 합계와 누계를 기재한다.
- ③ 계정과목의 설정 및 그 개폐는 상임이사회가 정한다.

제4조 [전표작성] 수입과 지출의 내용에 따라 각 입금전표, 출금전표, 대체전표를 작성한다.

(개정 2018. 12. 28.)

제5조 [전표와 기장] ① 모든 수입과 지출은 예산회계원칙이 정한 항목별로 구분하여 수입과 지출이 있을 때마다 개별적으로 처리한다.

- ② 오기가 있을 경우에는 빨간색으로 복선을 긋고 글자의 오기는 그 부분을, 숫자의 오기는 그 전부를 정정하고 정정한 부분에 정정자의 날인을 하여야 한다.
- ③ 전표는 매일 연속번호를 붙여 이를 집계하고 소정의 전표집계표를 첨부하여 재무이사의 날인을



받아야 한다.

④ 재무이사의 날인을 받은 후 전표의 오기, 누락을 발견한 경우에는 새로 전표를 작성하고 정정하여야 한다.

⑤ 전향의 경우 신규전표에 그 정정의 이유를 명백히 하여 기재하고, 재무이사의 날인을 받아야 한다.

⑥ 수입에는 예산회계원칙이 정한 영수증 원부와 부합되는 입금전표를 발행해야 한다.

⑦ 수입과 지출은 현금출납부와 원장에 항목별로 기장하여야 한다.

제6조 [전표의 편철] ① 전표는 입금전표, 출금전표, 대체전표로 나누고 연속번호의 순서에 따라 1개월마다 이를 합철한다.

② 증빙서류는 전표번호를 기입하고 각 전표철과 대응하게 나누어 전표순에 따라 1개월마다 전표철과는 별도로 철하고 각각 합철한다.

제 3 장 금전회계

제7조 [현금의 관리] ① 현금은 대한변호사협회 명의로 은행에 예금하고 예금거래통장과 인감은 재무이사가 보관한다. (개정 2000. 6. 26.)

② 은행 마감시간 후 수입된 현금은 재무팀장이 책임보관하고, 다음날 즉시 예금하여야 한다. (개정 2017. 3. 22.)

③ 장기예금(1개월 이상)은 확정이율의 조건으로 은행 또는 지방변호사회가 운영하는 신용협동조합에 예치하고, 회계현황표에 명시한다. (개정 2000. 6. 26.)

제8조 [영수증] ① 수입이 있는 때에는 수입내역과 금액을 기재한 영수증원부수급대장을 작성하며, 원부에는 구매인의 사인을 받아 보관하고, 해당 내역에 대해 영수증을 발행해 주어야 한다.

(개정 2018. 12. 28.)

② 재무팀장은 영수증원부수급대장을 비치하여 그 수급사항을 명백히 하여야 한다.

(개정 2018. 12. 28.)

③ <삭제> (2018. 12. 28.)

④ <삭제> (2018. 12. 28.)

제9조 [예산지출신청] ① 사업비신청 및 각종인쇄, 용역, 공사 등을 발주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4호 서식에 의하여 예산을 신청하여야 한다.

② 제1항 이외의 예산신청은 다음 각 호에 의하여 신청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1. 소모품 신청(문구류, 전산소모품, 복사용지 등) : 별지 제5호 서식

2. 도서구입신청 : 별지 제6호 서식

③ 제1항에 의거해 결재를 받은 예산지출의 경우 즉시 무통장입금방식에 의하여 그 대금을 지급한다. 다만, 소액(10만 원 이하)인 때에는 현금으로 지급할 수 있다. (신설 2018. 12. 28.)



④ 회계책임자는 위임전결규정 제4조에 따라 회계담당자로 하여금 제2항에 관련된 사항을 전결처리하도록 명할 수 있다. (신설 2021. 5. 3.)

제10조 [일상경비의 범위] ① 일상경비의 지출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8. 12. 28.)

1. 일상적, 정기적인 지출
2. 교통·통신비로 지급하는 경비
3. 직원에게 지급하는 본봉, 상여금 및 복리후생비
4. 섭외비
5. 기타 협회장이 인정하는 경비

② 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비용의 지출시에는 영수증 또는 청구서 등을 첨부하여 지출결의서(별지 제8호 서식)를 작성한 후 사무국장의 결재를 받아야 한다. 다만, 직원의 급여, 각종 공과금, 세금, 기타 협회장이 승인한 사항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1. 5. 3.)

③ 제1항에 의거해 1년 이상의 고정적·정기적 지출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소관 이사의 결재를 받아 연월일, 계약기간, 대금 등이 포함된 계약서를 작성하고, 원본은 총무팀에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18. 12. 28.)

제11조 [금전의 지출] ① 금전을 지출한 때에는 반드시 최종 영수인으로부터 세금계산서 또는 영수증을 청구하여야 한다. (개정 2018. 12. 28.)

② 영수증 등의 증빙서류를 청구할 수 없는 사정이 있을 때에는 지급증명서를 작성하고 사무총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8. 12. 28.)

③ <삭제> (2018. 12. 28.)

④ <삭제> (2018. 12. 28.)

제12조 [현금대조 등] 재무이사는 수시로 그 현금잔고와 장부잔고를 대조하고 과부족이 있는 때 또는 금전출납에 과부족이 있음을 안 때에는 지체 없이 협회장에게 보고하고 그 지시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00. 6. 26.)

제 4 장 고정자산회계

제13조 [고정자산의 관리] ① 고정자산을 관리하기 위하여 별지 제7호 서식의 자산대장을 비치하여야 한다.

② 제13조에 의하여 구입한 자산은 매년 고정자산 구입현황을 정기총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4조 [고정자산의 처분] ① 고정자산의 처분은 사무총장이 협회장의 결재를 받아 처분한다. 다만, 금 5백만 원 이상 2천만 원 미만은 상임이사회의, 2천만 원 이상은 이사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에 의하여 고정자산을 처분한 때에는 고정자산대장에 그 연월일, 사유, 대금 등을 기재하고, 자산대장에 사무총장의 날인을 받아야 한다.



③ 제2항에 의하여 받은 대금은 잡수입으로 기장처리하고, 대체물을 구입한 때에는 그 대금과 상계 해서 처리해서는 아니 된다.

제 5 장 물품회계

제15조 [물품의 관리] 물품의 관리에 대하여는 별지 제7호 서식의 물품대장을 비치하여야 한다.

제16조 [물품의 처분] ① 물품의 처분은 사무총장이 협회장의 결재를 받아 처분한다.

② 제1항에 의하여 물품을 처분한 때에는 물품대장에 그 연월일, 사유, 대금 등을 기재하고, 물품 대장에 사무총장의 날인을 받아야 한다.

③ 제2항에 의하여 받은 대금은 잡수입으로 기장처리하고, 대체물을 구입한 때에는 그 대금과 상계 해서 처리해서는 아니된다.

제 6 장 운용리스 <신설 2018. 12. 28.>

제17조 [운용리스] 매달 100만원 이상이 지급되는 운용리스의 경우 상임이사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부 칙

제1조 [시행일] 이 규정은 1998. 7. 1.부터 시행한다.

제2조 [시행세칙] 이 규정을 시행하는 데 필요한 사항은 세칙으로 정할 수 있다.

제3조 [경과조치] 이 규정 시행 전에 집행된 사항 및 작성된 회계장부, 회계전표는 이 규정에 의하여 처리된 것으로 본다.

부 칙 (2000. 6. 26.)

이 규정은 2000. 7. 29.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3. 2. 1.)

제1조 [시행일] 이 규정은 2013. 2. 1.부터 시행한다.

제2조 [경과조치] 이 규정 시행 전에 전산회계프로그램으로 작성된 회계장부, 회계전표는 이 규정에 의하여 처리된 것으로 본다.



부 칙 (2017. 3. 22.)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8. 12. 28.)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21. 5. 3.)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1호 서식 <삭제> (2018. 12. 28.)

별지 제2호 서식 <삭제> (2018. 12. 28.)

별지 제3호 서식 <삭제> (2018. 12. 28.)



별지 제4호 서식

예산지출신청서

용 도	
금 액	
집행부서	
지출내용	
지출예정일	
예산항목	
비 고	※ 지출근거서류 첨부(견적서, 회의록, 영수증 등)

위와같이 예산지출을 신청합니다.

20

담 당 과 장 (인)

대한변호사협회장 귀하

사무국장	사무총장	담당이사	재무이사	협 회 장
20	20	20	20	20



별지 제5호 서식

소모품신청서

구분 No	품명	수량	단가	금액	비고
1					
2					
3					
4					
5					
합	계				

위와 같이 청구합니다.

20

신청인 (인)

별지 제6호 서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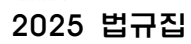
도서구입신청서

구분 No	도서명	수량	가격	용도	비고
1					
2					
3					
4					
합	계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20

신청인 : (인)

[illegible]



별지 제8호 서식 (신설 2018. 12. 28.)

지출결의서

용 도			
예산항목		근거규정	
금 액		비용지급처	
집행부서		비 고	
지출(예정)일		청 구 인	
이와 같이 비용지출을 신청합니다. 20 대한변호사협회장 귀하			



분담금납부규칙

1983. 5. 21.

규칙 제13호

개정 1984. 2. 25. 1990. 2. 24.
2000. 7. 3. 2005. 2. 21.
2021. 5. 31. 2022. 4. 25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대한변호사협회(이하 “이 회”라 한다)의 운영에 필요한 재원을 조달하기 위하여 변호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83조 및 회칙 제9조제2항, 제52조에 정한 분담금, 특별분담금 및 특별회비의 납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 5. 31.)

제2조 [적용] 이 규칙은 회칙 제7조에 정한 모든 회원에 준용한다.

제3조 [분담금] ① 지방변호사회는 매월 1일 현재의 소속 회원 수에 당해연도 정기총회가 정한 분담금 월정액을 곱한 금액 및 특별분담금 금액을 매월 이 회에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21. 5. 31.)

② 회원의 소재불명 등으로 소속 지방변호사회장의 요청이 있는 경우 상임이사회의 결의로 회원의 분담금 납부를 유예할 수 있다. (신설 2005. 2. 21.)

제3조의2 [분담금 납부의 면제] ① 출산일부터 1년 이내에 협회에 분담금 납부 면제 신청을 한 여성 회원에 대해 신청일 다음 달부터 6개월간 분담금 납부를 면제한다. 단, 면제기간 중 휴업신청 한 경우 면제기간에 포함된다.

② 제1항에 따른 면제 신청은 분담금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하며, 전산정보처리시스템을 이용하여 전자문서로 제출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2. 4. 25.)

제4조 [분담금의 고지] 협회장은 매월 20일까지 각 지방변호사회에 분담금납부고지서를 발송하여야 한다. 납부고지서에는 소속회별로 제3조의2에 따라 분담금 납부 면제 신청을 한 회원 수 및 면제자 명단을 포함한다. (후단신설 2022. 4. 25.)

제5조 [분담금의 납부] 지방변호사회는 매월 말일까지 제4조에 의하여 고지된 분담금을 어김없이 협회에 납부하여야 한다.

제6조 [가산금] 지방변호사회가 제5조에 정한 기한이 경과한 후 1개월까지 분담금을 납부하지 아니할 경우 100분의 10의 비율에 의한 가산금을 부담하게 할 수 있다. (개정 1990. 2. 24.)

제7조 [특별회비] ① 협회장은 회지의 발간, 법률구조사업, 변호사연수, 국제회의의 개최 또는 참가, 기타 협회의 설립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자금을 조달하기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총회의 의결을 거쳐 법인회원, 개인회원 및 외국회원에게 회칙 제9조제2항에 의한 특별회비를 납부할 것을 명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의한 특별회비의 정액, 납부기한 및 납부방법은 그 때마다 총회의 의결을 거쳐 협회장이 정한다.

③ 제5조의 규정은 제1항 및 제2항에 의한 특별회비의 납부에 이를 준용한다.

부 칙 (1983. 5. 21.)

이 규칙은 1983. 6. 1.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84. 2. 25.)

이 규칙은 1984. 3. 1.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90. 2. 24.)

이 규칙은 1990. 3. 1.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0. 7. 3.)

이 규칙은 2000. 7. 29.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5. 2. 2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20일을 경과함으로써 효력이 발생한다.

부 칙 (2021. 5. 3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22. 4. 25.)

이 규칙은 2022. 5. 1.부터 시행한다.



위임전결규정

1989. 6. 26.

규정 제30호

개정 2007. 7. 16.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회칙 제57조제2항 및 회규관리규칙 제3조제3항에 의하여 본 협회 사무의 능률적이고 신속한 처리를 위하여 위임전결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부협회장 전결사항] 협회장은 부협회장으로 하여금 협회사무의 일부를 그 범위를 특정하여 전결 처리하게 할 수 있다.

제3조 [총무이사 위임전결사항] 총무이사에게 위임전결 처리하게 하는 사항은 아래 각 호와 같다.

1. 지방변호사회에 대한 일상적이고 정례적인 사항에 관한 사무
2. 관계기관에 대한 정례적인 보고 및 통보에 관한 사항
3. 기정방침에 따른 관계기관에 대한 문서
4. 각 위원회 회의소집에 관한 사항
5. 기타 일반 잡서류의 처리에 관한 사항

제4조 [재무이사 위임전결사항] 재무이사에게 위임전결 처리하게 하는 사항은 다음과 같다.

1. 예산에 의한 세입에 관한 사항
2. 예산에 따른 정기적 지출에 관한 사항
3. 금 200만 원 이하의 지출에 관한 사항 (개정 2007. 7. 16.)

제5조 [기타 상임이사 전결사항] 협회장은 임원인사규칙 제11조 내지 제18조에 규정된 상임이사로 하여금 그 소관사무의 일부를 그 범위를 특정하여 전결처리하게 할 수 있다.

제6조 [예외] ① 제2조 내지 제5조에 정한 사항 중 특히 중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은 이 규정에 불구하고 협회장이 처리할 수 있다.

② 이 규정에 의한 전결사항 중 전결권자가 중요 회무라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전결처리 후 지체 없이 협회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부 칙 (1989. 6. 26.)

이 규정은 1989. 7. 1.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7. 7. 16.)

이 규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여비규정

1984. 2. 13.

규정 제7호

개정 1991. 2. 11.
2000. 6. 26.
2002. 11. 11.
2004. 2. 9.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임원 및 사무직원의 여비, 일당에 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여비] 임원 및 사무직원의 여비는 신분에 상응하는 실비 또는 실비에 해당하는 금액(친지로부터 접대를 받은 경우 등)을 지불한다.

제3조 [일당] ① 임원이 서울지역(정부종합청사가 있는 과천 포함) 외에 출장하는 경우 별표와 같은 일당을 지급한다.

② 직원이 근무시간 외에 출장하는 경우 급여규정 제14조에 따라 휴일 또는 시간외근무수당을 지급한다. (개정 2004. 2. 9.)

제4조 [여비 및 일당의 지급] 여비 및 일당은 별표와 같은 청구서에 의하여 이를 출장 전에 지급함을 원칙으로 한다.

부 칙

① 이 규정은 1984. 2. 26.부터 시행한다.

② 이 규정 시행 전 지급된 여비 등에 대하여는 종전의 예에 의한다.

부 칙 (1991. 2. 11.)

이 규정은 1991. 2. 11.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0. 6. 26.)

이 규정은 2000. 7. 29.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2. 11. 11.)

이 규정은 2003. 1. 1.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4. 2. 9.)

이 규정은 공포한 날로부터 20일을 경과함으로써 그 효력이 발생한다.



별 표 (개정 2004. 2. 9.)

일당지급기준표

직	급	일	당
임	원	60,000원	
사 무 총	장	60,000원	
사 무 차	장	50,000원	



별 표

출장비 청구서

1. 출 장 지			
2. 출 장 목 적			
3. 출 장 기 간	20 . . .부터 20 . . .까지(박 일)		
4. 출장비총액 : 원			
1) 교통비합계 원 항 공 료 원 기 차 료 원 택 시 료 원 기 타(회발유값 등) 원			
2) 객 실 료 : 1일 원× 일= 원			
3) 식 사 료 : 1식 원× 식= 원			
4) 잡 비(음료수대 등) : 원			
5) 일 당 : 1일 원× 일 = 원			
위 금액을 출장비로서 청구합니다. 20 . . . 출 장 자 (인)			
위 금액을 출장비로서 정히 영수함. 20 . . . (인)			



임원등해외여비규정

개정 2017. 9. 11.

제1조 이 규정은 대한변호사협회의 임원 및 직원이 협회의 공무로 해외출장을 하는 경우 지급할 항공료, 숙박료 및 체재비의 한도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① 협회장 및 그 외 임원의 체재비는 아래 각 호의 사정을 고려하여 1일 100달러(US달러 이하 동일) 내지 200달러의 범위 내에서 지급한다. (개정 2017. 9. 11.)

1. 출장의 성격
2. 출장지의 물가
3. 숙박료에 조식이 포함되는지 여부

② 직원의 체재비는 위 1항 각 호의 사정을 고려하여 1일 50달러 내지 100달러의 범위 내에서 지급한다. (제2항의 삭제로 인한 항번호 변경, 개정 2017. 9. 11.)

제3조 ① 협회장의 항공료는 2등급으로 지급한다. (개정 2017. 9. 11.)

② 그 외 임원의 항공료는 출장지까지의 비행시간을 고려하여 2등급 또는 3등급으로 지급한다.

③ 직원의 항공료는 3등급으로 지급한다.

제4조 ① 협회장의 숙박비는 특급호텔 기준으로 지급한다.

② 그 외 임원의 숙박비는 출장지의 사정에 따라 특급 또는 1급 호텔 기준으로 지급한다.

③ 직원의 숙박비는 1급 호텔 기준으로 지급한다.

부 칙 (2017. 9. 11.)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변호사 포상규칙

1986. 2. 22.

규칙 제24호

개정 1990. 2. 24. 1992. 7. 31.
1993. 2. 27. 1995. 2. 25.
2000. 7. 3. 2010. 12. 20.
2011. 12. 12. 2018. 2. 26.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변호사 등의 포상 및 상훈법에 의한 서훈대상자 추천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종류] ① 포상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1. 변호사50년상
 2. 공로상
 3. 청년변호사상 (신설 2011. 12. 12.)
 4. 표창 (제3호에서 이동 2011. 12. 12.)
 5. 감사포상 (제4호에서 이동 2011. 12. 12.)
- ② 시상은 협회장의 이름으로 상장, 표창장 또는 감사장과 상품을 수여 또는 추서한다.
- ③ 변호사50년상의 상장문은 <별표 1>과 같다.
- ④ 상품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변호사50년상 : 37.5그램의 순금메달로서 그 제식은 <별표 2>와 같다. (개정 2018. 2. 26.)
 2. 공로상, 청년변호사상 : 11.25그램의 순금메달로서 그 제식은 <별표 3>과 같다. (개정 2018. 2. 26.)
 3. 표창·감사포상 : 상임이사회의 심의를 거쳐 협회장이 정한다.

제3조 [변호사50년상] 변호사50년상은 변호사로서 50년 이상 종사하면서 그 직책을 성실히 수행하고, 협회·지방변호사회 발전 또는 법률문화향상에 기여한 영예로운 변호사에게 수여 또는 추서한다.

제4조 [공로상] 공로상은 회원(준회원 및 폐업한 전 회원 포함)으로서 협회·지방변호사회 발전에 기여한 공적이 특히 현저한 자에게 수여 또는 추서한다.

제5조 [청년변호사포상] 청년변호사상은 인권, 공익활동, 학술 등에서 활발히 활동하여 '인권옹호'와 '사회정의실현'이라는 변호사의 공익적 사명을 충실히 수행하고, 법률제도 개선에 크게 이바지한 청년변호사[실무경력 10년 이하의 변호사 자격 보유자(판사·검사·군법무관 및 공익법무관을 제외하되, 경력기간은 실무경력에 산입한다)]에게 수여한다. (신설 2011. 12. 12.)

제6조 [표창 및 감사포상] 표창 및 감사포상은 협회 또는 지방변호사회 회무에 관하여 특히 공



로가 현저한 자에게 수여한다. (제5조에서 이동 2011. 12. 12.)

제7조 [직원포상] 협회 또는 지방변호사회의 직원·전 직원으로서 다년간 근속하고 협회 또는 지방변호사회를 위하여 특히 공적이 현저한 자에게 포상(표창·감사포상)을 수여 또는 추서할 수 있다.

(제6조에서 이동 2011. 12. 12.)

제8조 [기간산정] 제3조에 규정한 변호사 종사기간은 본 협회의 변호사명부에 기재된 변호사 개업연수로 산정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7조에서 이동 2011. 12. 12.)

제9조 [제외사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제3조의 상을 받을 수 없다. 다만, 이사회에서 재적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다른 결의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형사사건으로 유죄판결을 받은 자
2. 변호사로서 징계처분을 받은 자
3. 탄핵 또는 징계처분에 의하여 파면 또는 해임된 자
4. 기타 변호사로서의 품위를 손상하여 변호사의 명예를 실추시킨 자

(제8조에서 이동 2011. 12. 12.)

제10조 [절차] ① 협회장은 수상후보자의 공적조서를 첨부하여 회원위원회의 자문과 상임이사회의 심의를 거쳐 수상자를 결정한다.

② 지방변호사회장은 공적조서를 첨부하여 협회장에게 수상후보자를 추천할 수 있다.

(제9조에서 이동 2011. 12. 12.)

제11조 [시기] 포상은 정기총회 또는 변호사대회에서 행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10조에서 이동 2011. 12. 12.)

제12조 [서훈대상자추천] 협회는 정부로부터 상훈법에 의한 서훈대상자 추천의뢰를 받았을 때에는 그 추천에 관하여 제9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11조에서 이동 2011. 12. 12.)

부 칙

- ① 이 규칙은 1992. 8. 1.부터 시행한다.
- ② 이 규칙 시행 이전의 포상은 이 규칙에 의한 포상으로 본다.
- ③ 추서는 이 규칙 시행 후에 사망한 자에 한한다.

부 칙 (1993. 2. 27.)

이 규칙은 1993. 3. 1.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95. 2. 25.)

- ① [시행일] 이 규칙은 1995. 3. 1.부터 시행한다.
- ②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의 법조50년상을 수상한 자는 이 규칙에 의하여 수상한 것으로 본다.

부 칙 (2000. 7. 3.)

이 규칙은 2000. 7. 29.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1. 12. 12.)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8. 2. 26.)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1 변호사50년상 상장문

변호사50년상

변호사 ○ ○ ○

위 사람은 50년 이상 변호사로 종사하면서 그 직책을 성실히 수행하고 회 발전 및 법률문화향상에 기여한 영예로운 변호사이므로 변호사포상규칙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 상을 드립니다.

년 월 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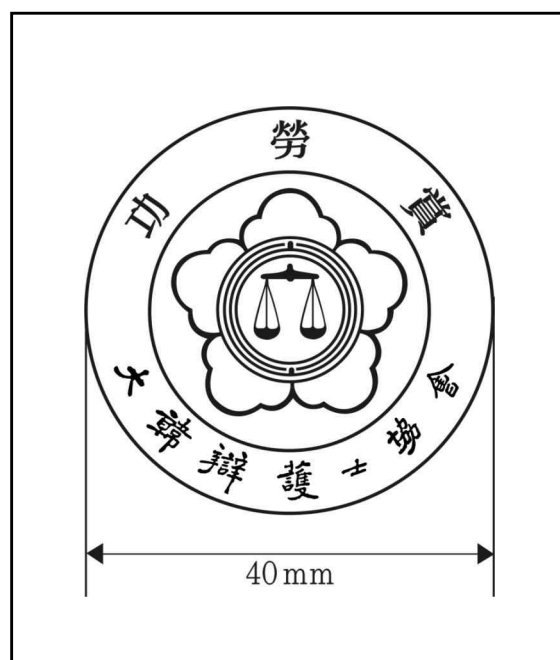
대한변호사협회

협회장 □ □ □

별표 2 변호사50년상 상품(순금메달) 제식



별표 3 공로상 상품(순금메달) 제식



경조규정

1985. 12. 27.

규정 제12호

개정 2004. 2. 9.
2007. 2. 5.
2018. 4. 9.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대한변호사협회(이하 “협회”라 한다)의 경조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대상] 경조의 대상은 협회의 개업회원 각 본인 및 그 배우자·직계존속·비속과 직원으로 함을 원칙으로 하되, 경조 당시의 재정상황 등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협회장이 경조 여부를 결정한다. 다만, 휴업회원 본인상의 경우 경조의 대상에 포함된다. (개정 2018. 4. 9.)

제3조 [사유] 경조는 전조의 대상자에게 다음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 행한다.

1. 결혼·회갑
2. 부상과 질병·사망
3. 기타 상임이사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

제4조 [방법] 경조방법은 그 사유에 상당한 금품의 급여·화환 증정·방문 또는 전문 등에 의한 상당한 문언의 표시방법 중의 한 가지 또는 2가지 이상을 병행할 수 있다. 위 경조사유에 상당한 금품의 액수와 화환의 품위는 매년도 초 상임이사회회의 심의를 거쳐 정한다.

제5조 [대한변협장] 협회에 현저한 공헌을 남긴 회원이 사망한 때에 상임이사회회의 심의를 거쳐 그 장례를 대한변협규정에 따른 장례(이하 “대한변협장”이라 한다)로 거행할 수 있다. (개정 2007. 2. 5.)

제6조 [장례위원회 설치] 대한변협장의 장례를 집행하기 위하여 장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구성할 수 있다. (개정 2007. 2. 5.)

제7조 [위원회 구성 및 직무] 장례위원회는 협회장이 위촉하는 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위원 중 연장자로 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행한다.

1. 장례식의 방법 및 절차에 관한 사항
2. 장례식에 소요되는 비용의 지원과 집행에 관한 사항
3. 장례 절차에 관한 유족과의 협의에 관한 사항
4. 기타 장례에 관한 필요 사항 (개정 2007. 2. 5.)

제8조 [직원의 경조방법] 직원의 경조방법은 제4조의 제한범위 내에서 협회장이 이를 정한다. (개정 2007. 2. 5.)



부 칙

- ① 이 규정은 1986. 1. 1.부터 시행한다.
- ② 종전의 관행에 따라 이미 시행한 경조행사는 이 규정에 의하여 시행한 것으로 본다.

부 칙

이 규정은 공포한 날로부터 20일을 경과함으로써 그 효력이 발생한다.

부 칙 (2007. 2. 5.)

이 규정은 공포 후 20일이 경과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8. 4. 9.)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세제위원회규정

1989. 2. 13.

규정 제26호

개정 1992. 2. 17.
2001. 7. 9.
2003. 6. 2.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제2조의 업무를 분담하게 하기 위하여 위원회운영규칙 제2조제3항에 의한 특별위원회로서 세제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설치와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권능] 위원회는 다음 사항에 관하여 협회장의 자문에 따라 조사, 연구, 심의하고, 그 결과를 협회장에게 건의한다.

1. 변호사에 대한 조세제도의 개선에 관한 사항
2. 변호사에 대한 세무운영의 개선에 관한 사항
3. 회원에 대한 세무대책에 관한 사항

제3조 [조직] ① 위원회는 10인 이상 3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03. 6. 2.)

- ② 위원은 협회장이 회원 중에서 지명한다.
- ③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개정 2001. 7. 9.)
- ④ 위원 중에 결원이 생긴 때에는 이를 추가 지명한다.

제4조 [임원] ① 위원회에 위원장, 부위원장 및 간사 각 1인을 둔다.

- ② 위원장은 협회장이 추천한 위원 중에서 선임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간사는 위원, 사무차장, 촉탁변호사 중에서 위원장이 선임한다. (개정 2001. 7. 9.)
- ③ 임원의 임기 및 보선에 관하여는 전조 제3항 및 제4항을 준용한다.
- ④ 위원장은 위원회의 사무를 통할하고, 위원회를 대표한다.
- ⑤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유고 시에 그 직무를 대행한다.
- ⑥ 간사는 위원장의 지시에 따라 위원회의 사무를 담당한다.

제5조 [회의] ① 위원회는 위원장이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다만, 위원장이 선출되기까지는 협회장이 이를 소집한다.

- ② 위원장은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으로부터 소집요구가 있을 때에는 지체 없이 위원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 ③ 회의는 재적위원 4분의 1 이상의 출석으로 성립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④ 협회장, 부협회장, 상임이사는 위원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 ⑤ 위원회의 의사는 공개함을 원칙으로 하며, 회원은 위원회의 의사를 방청할 수 있다. 다만, 위원회의 결의로 비밀회의로 하기로 정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6조 [준용] 이 규정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관하여는 위원회운영규칙을 준용한다.

제7조 [존속기간] 위원회는 상임이사회가 폐지를 의결할 때까지 존속한다.

부 칙

이 규정은 1989. 2. 13.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92. 2. 17.)

① [시행일] 이 규정은 1992. 2. 17.부터 시행한다.

② [경과조치] 이 규정시행 전의 위원의 임기는 만료된 것으로 한다.

부 칙 (2001. 7. 9.)

이 규정은 2001. 7. 9.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3. 6. 2.)

이 규정은 공포한 날로부터 20일이 경과함으로써 그 효력이 발생한다.



지방법변호사회의 회비에 관한 규정

2025. 2. 6.

규정 제190호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변호사법 제29조, 회칙 제9조에 따라 변호사(법무법인, 법무법인(유한), 법무조합, 변호사법 제31조 제2항의 공동법률사무소를 포함하며, 이하 이 규정에서는 총칭하여 “법무법인등”이라고 한다)가 공공기관에 제출하는 소송위임장 또는 변호인선임서(이하 이 규정에서는 선임서라 한다)의 지방변호사회경유와 관련하여 납부하게 되는 회비의 명칭을 “경유회비”로 통일하고, 법무법인등에 소속된 수인의 담당변호사가 서로 다른 지방변호사회 소속인 경우 그 회비를 납부할 지방변호사회를 정하는 기준을 제시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회비의 종류] 지방변호사회설립과감독에관한규칙 별지 지방변호사회회칙준칙 제51조 제1호의 회비 중 변호사가 공공기관에 제출하는 선임서의 지방변호사회 경유와 관련하여 납부하게 되는 회비를 “경유회비”라 칭하고, 경유회비를 제외한 나머지를 “일반회비”라 칭한다.

제3조 [경유회비 납부 지방변호사회] ① 변호사가 경유회비를 납부할 지방변호사회는 그 변호사가 개인회원으로 속한 지방변호사회로 한다.

② 법무법인등이 경유회비를 납부할 지방변호사회는 다음의 기준에 따라 정한다.

1. 담당변호사가 1인인 경우 담당변호사가 개인회원으로 속한 지방변호사회
2. 담당변호사가 수인이고 수인의 담당변호사가 모두 동일한 지방변호사회 소속인 경우에는 그 지방변호사회
3. 담당변호사가 수인이고 수인의 담당변호사 전부 또는 일부가 소속 지방변호사회를 달리 하는 경우에는 선임서를 제출하는 공공기관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변호사회
4. 변호사법 제50조 제3항(해당 조항을 준용하는 경우 포함)의 경우에도 위 제2호와 제3호에 따른다.

제4조 [경유회비의 추가납부] ① 변호사가 선임서를 새로 제출하거나 법무법인등에서 담당변호사를 변경(추가, 교체 포함)하여 추가로 경유회비를 납부하는 경우에도 위 제3조의 기준에 따른다.

② 동일한 사건에 대한 선임서 추가제출 중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경유회비를 추가로 납부하지 아니한다.

1. 선임서를 제출한 변호사가 법무법인등으로 소속을 변경하여 그 법무법인등이 선임서를 제출하는 경우 또는 법무법인등의 담당변호사이던 변호사가 개인회원으로 소속을 변경하여 선임서를 제출하는 경우



2. 변경하는 담당변호사가 해당 사건의 경유회비를 납부한 담당변호사 전부 또는 일부와 동일한 지방변호사회 소속인 경우

제5조 [지방변호사회에 위임하는 사항] 경유회비의 금액, 납부방법, 납부면제 그밖에 필요한 사항은 제3조 및 제4조의 기준에 따라 경유회비를 수취할 지방변호사회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부 칙

제1조 [경과규정]

이 규정은 이 규정 시행 후 새로 제출되는 선임서부터 적용한다. 이 규정 시행 전 이미 발생한 경유회비 납부의무의 이행 및 불이행에 따른 효과는 종전의 지방변호사회 회칙에 따른다.

제2조 [시행시기]

이 규정은 2025년 2월 10일부터 시행한다.



사무국직제규칙

1983. 5. 21.

규칙 제6호

개정 1995. 2. 5. 1997. 2. 22.
 1998. 6. 8. 2000. 7. 3.
 2002. 11. 25. 2003. 10. 27.
 2006. 2. 20. 2008. 2. 18.
 2010. 12. 20. 2011. 12. 12.
 2013. 2. 25. 2014. 2. 24.
 2014. 10. 13. 2017. 2. 27.

전부개정 2016. 2. 29.

개정 2017. 2. 27. 2018. 12. 3.
 2021. 2. 22.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회칙 제35조에 의하여 사무국의 직제와 정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기구] 사무국에 사무총장 1인, 사무차장 10인 이내, 사무국장을 두고, 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별도 규정에 따른 실 및 팀을 둔다. (개정 및 단서삭제 2021. 2. 22.)

1. ~ 15. <삭제> (2021. 2. 22.)

제3조 [정원] ① 직원의 직위, 직급 및 정원 한도는 별도 규정으로 정한다. (개정 2021. 2. 22.)

② 직원은 직원인사규정에 따라 채용하되, 전체 정원 한도의 15% 범위 내에서 일정기간의 경력을 요건으로 한 경력채용 방식으로 채용할 수 있다.

③ 경력채용되는 직원의 구체적인 직급 및 호봉은 직원인사규정에 따라 인사위원회 회의를 거쳐 협회장이 정한다. 단, 사무의 내용과 특성 등을 고려하여 예외적으로 직급, 근무기간, 보수 등 근무조건을 개별 계약으로 정할 수 있다.

제4조 [사무총장] ① 사무총장은 협회장의 명을 받아 사무국의 직무를 통할하고 직원을 지휘·감독한다.

② 사무총장은 이사회에 승인을 얻어 협회장이 임명한다.

③ 사무총장에게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급여를 지급할 수 있다.

④ 사무총장은 총회, 이사회, 상임이사회 또는 위원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제5조 [사무차장] ① 사무차장은 사무총장을 보좌하고 사무총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미리 상임이사회가 정한 순위로 사무차장, 사무국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② 사무차장은 변호사의 자격을 가진 자 중에서 이사회의 승인을 얻어 협회장이 임명한다.



③ 사무차장은 전임직으로 하고,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급여를 지급한다.

제6조 [사무국장] ① 사무국장은 직원인사규정에 따른 절차를 거쳐 사무총장의 제청으로 이사회의 승인을 얻어 협회장이 임명한다.

② 사무국장은 1급으로 한다.

③ 사무국장의 임기는 1년으로 한다. 다만, 연임할 수 있다.

제7조 [사무부국장] ① 사무국에 사무부국장을 둘 수 있다.

② 사무부국장은 2급으로 한다.

③ 사무부국장은 직원인사규정에 따른 절차를 거쳐 사무총장의 제청으로 협회장이 임명한다.

제8조 [팀장] ① 각 실 및 팀에 팀장 1인을 둘 수 있다. (개정 2021. 2. 22.)

② 팀장은 직원인사규정에 따른 절차를 거쳐 사무총장의 제청으로 직원 중에서 협회장이 임명한다.

③ 팀장은 상사의 명을 받아 팀의 업무를 관장한다.

제9조 <삭제> (2021. 2. 22.)

제10조 <삭제> (2021. 2. 22.)

제11조 <삭제> (2021. 2. 22.)

제12조 <삭제> (2021. 2. 22.)

제13조 <삭제> (2021. 2. 22.)

제14조 <삭제> (2021. 2. 22.)

제15조 <삭제> (2021. 2. 22.)

제16조 <삭제> (2021. 2. 22.)

제17조 <삭제> (2021. 2. 22.)

제18조 <삭제> (2021. 2. 22.)

제19조 <삭제> (2021. 2. 22.)

제20조 <삭제> (2021. 2. 22.)

제21조 <삭제> (2021. 2. 22.)

제22조 <삭제> (2021. 2. 22.)

제23조 <삭제> (2021. 2. 22.)

제24조 <삭제> (2021. 2. 22.)

제25조 [시행세칙] 사무국의 직제운영, 사무집행, 문서관리 기타 이 규칙을 시행하는 데 필요한 세부사항은 규정으로 정한다.

(제11조~제25조까지는 제10조 신설로 인한 조번호 변경 2017. 2. 27.)



부 칙

이 규칙은 1983. 6. 1.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95. 2. 25.)

① [시행일] 이 규칙은 1995. 3. 1.부터 시행한다.

② [경과조치] 이 규칙에 의한 조사과의 업무는 조사과가 신설될 때까지는 종전의 예에 의한다.

부 칙 (1997. 2. 22.)

이 규칙은 1997. 3. 1.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98. 6. 8.)

이 규칙은 1998. 7. 1.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0. 7. 3.)

① [시행일] 이 규칙은 2000. 7. 29.부터 시행한다.

②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의 직급 중 참사는 과장으로, 주사는 주임으로 서기는 직원(4급)으로 본다.

부 칙 (2002. 11. 25.)

이 규칙은 2003. 1. 1.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3. 10. 27.)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20일이 경과함으로써 그 효력이 발생한다.



부 칙 (2006. 2. 20.)

이 규칙은 공포 후 20일이 경과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8. 2. 18.)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20일이 경과함으로써 그 효력이 발생한다.

부 칙 (2010. 12. 2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1. 12. 12.)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3. 2. 25.)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4. 2. 24.)

①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경과규정] 이 규칙에 의한 기획과 업무는 기획과가 신설될 때까지는 종전의 예에 의한다.

부 칙 (2014. 10. 13.)

이 규칙은 2015년 정기총회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6. 2. 29.)

- ①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②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의 사무국직제는 이 규칙에 의해 정한 것으로 본다.

부 칙 (2017. 2. 27.)

- ①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②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의 입법지원실은 이 규칙에 의하여 설치된 것으로 본다.

부 칙 (2018. 12. 3.)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21. 2. 22.)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별 표 <삭제> (2021. 2. 22.)

사무국운영규정

2020. 2. 10.

규정 제168호

개정 2021. 5. 3.
2023. 7. 3.
2025. 1. 7.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사무국직제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에 의하여 사무국 운영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기구] 규칙 제2조에 의하여 사무국은 다음 각 호의 실 및 팀을 둔다. 다만, 특정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한시적으로 촉탁변호사 및 촉탁직원을 둘 수 있다.

1. 비서실
2. 입법지원실
3. 총무팀
4. 재무팀
5. 법제팀
6. 평가팀
7. 회원팀
8. 연수팀
9. 윤리팀
10. 인권팀
11. 사업팀
12. 기획팀
13. 국제팀
- 13의2. 공보팀 (신설 2021. 5. 3.)
14. 미디어소통팀 (개정 2021. 5. 3.)
- 14의2. 정책팀 (신설 2021. 5. 3.)
15. 전산팀
16. 법조신문팀 (신설 2023. 7. 3.)
17. 나의 변호사 운영팀 (신설 2025. 1. 7.)

제3조 [정원] 직원의 직위, 직급 및 정원 한도는 별표와 같다.

제4조 [비서실] 비서실은 다음의 사무를 담당한다.

1. 협회장의 대외활동 보좌에 관한 사항



2. 협회장 문서 정리 및 보관에 관한 사항
3. 협회장에게 제출되는 민원업무 처리에 관한 사항

제5조 [입법지원실] ① 사무총장 밑에 입법지원실을 둔다.

② 입법지원실장은 변호사 자격이 있는 자 중에서 직원인사규정에 따른 절차를 거쳐 협회장이 임명하고, 채우는 사무차장에 준한다.

③ 입법지원실은 협회장 및 사무총장의 명을 받아 다음의 사무를 담당한다.

1. <삭제> (2021. 5. 3.)
2. 변호사직역 방어를 위한 대국회·대정부 활동
3. 국회에 발의·계류된 변호사직역 관련 법안에 대한 모니터링
4. <삭제> (2021. 5. 3.)

제6조 [총무팀] 총무팀은 다음의 사무를 담당한다.

1. 총회, 이사회 및 상임이사회의 개최 및 운영에 관한 사항
2. 직원의 임용, 복무 기타 인사에 관한 사항
3. 물품의 구입 및 관리에 관한 사항
4. 기밀 및 보안에 관한 사항
5. 직인의 관리에 관한 사항
6. 문서의 수발, 통제 및 보존에 관한 사항

제7조 [재무팀] 재무팀은 다음의 사무를 담당한다.

1. 예산의 편성, 집행 및 결산에 관한 사항
2. 수입, 지출 기타 회계에 관한 사항
3. 회계감사 준비에 관한 사항

제8조 [법제팀] 법제팀은 다음의 사무를 담당한다.

1. 각종 법제의 조사 및 연구에 관한 사항
2. 각종 법제정책의 수립에 관한 사항

제9조 [평가팀] 평가팀은 다음의 사무를 담당한다.

1. 법관평가 및 관련 자료 수집에 관한 사항
2. 검사평가 및 관련 자료 수집에 관한 사항
3. 국회의원 및 입법평가와 관련 자료 수집에 관한 사항
4. 대법관 출신 변호사의 사건수임 현황 파악 및 결과 분석에 관한 사항
5. 변호사전문분야 등록에 관한 사항 (신설 2021. 5. 3.)
6. 법학전문대학원 지원 및 평가에 관한 사항 (신설 2021. 5. 3.)

제10조 [회원팀] 회원팀은 다음의 사무를 담당한다.

1. 변호사·법무법인·법무법인(유한)·법무조합·외국법자문사·외국법자문법률사무소의 등록, 신고 및 명부관리에 관한 사항
2. 회원의 포상 및 복지후생에 관한 사항



3. <삭제> (2021. 5. 3.)

4. 회원명부 간행에 관한 사항

제11조 [연수팀] 연수팀은 다음의 사무를 담당한다.

1. 변호사의 연수 교육에 관한 사항
2. 변호사시험 합격자에 대한 실무 수습에 관한 사항
3. 법학전문대학원 평가위원회의 활동에 관한 사항

제12조 [윤리팀] 윤리팀은 다음의 사무를 담당한다.

1. 진정사건의 처리에 관한 사항
2. 징계조사업무에 관한 사항
3. 징계청구사건의 징계업무처리에 관한 사항

제13조 [인권팀] 인권팀은 다음의 사무를 담당한다.

1. 인권문제에 관한 조사·연구 및 건의에 관한 사항
2. 인권 관련 정부기관 및 인권단체의 활동에 관한 모니터링

제14조 [사업팀] 사업팀은 다음의 사무를 담당한다.

1. 국선변호에 관한 조사 및 연구에 관한 사항
2. 공익활동에 관한 조사 및 연구에 관한 사항
3. 통일문제에 관한 조사 및 연구에 관한 사항
4. 법정 활동에 관한 조사 및 연구에 관한 사항
5. 법률구조에 관한 사항

제15조 [기획팀] 기획팀은 다음의 사무를 담당한다.

1. 관계기관과의 교섭 및 협의에 관한 사항
2. 각종 법조 현안에 대한 정보 수집 및 분석
3. 사법제도 개선에 관한 조사 및 연구에 관한 사항
4. 법조일원화에 관한 사항

제16조 [국제팀] 국제팀은 다음의 사무를 담당한다.

1. 법률문화의 국제적 교류 및 국제 법조단체와의 협력에 관한 사항
2. 회원의 해외파견, 외국법률가의 초청 기타 섭외에 관한 사항
3. 법률시장개방에 관한 사항

제16조의2 [공보팀] 공보팀은 다음의 사무를 담당한다.

1. 이 회의 정책 등에 대한 대변에 관한 사항
2. 회지의 편집 및 간행에 관한 사항 (개정 2023. 7. 3.)
3. 언론기관과의 교섭 및 협의에 관한 사항
4. 법조 관련 우수언론인의 선정 및 시상에 관한 사항
5. 기타 이 회와 관련한 광고 및 공보물의 제작에 관한 사항
(본조신설 2021. 5. 3.)



제17조 [미디어소통팀] 미디어소통팀은 다음의 사무를 담당한다. (개정 2021. 5. 3.)

1. 이 회의 홍보 및 선전에 관한 사항 (개정 2021. 5. 3.)
2. 뉴미디어 활용 사업의 계획 및 추진에 관한 사항 (개정 2021. 5. 3.)
3. 소셜미디어를 활용한 대회원 및 대국민 소통에 관한 사항 (개정 2021. 5. 3.)
4. 소셜미디어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사항 (신설 2021. 5. 3.)

제17조의2 [정책팀] 정책팀은 다음의 사무를 담당한다.

1. 변호사 직역 보호 및 확대에 관한 정책 제안에 관한 사항
2. 비변호사의 변호사 혹은 변호사단체에 대한 위법행위 내지 탈법행위 조사 및 대응에 관한 사항
3. 비변호사 및 변호사의 광고에 대한 관련 법령 준수여부 조사, 관리 및 감독에 관한 사항
4. 변호사 직역침탈 행위에 대한 조사 및 대응에 관한 사항
5. 변호사의 업무 개선 및 복지 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6. 위 사항과 관련한 국회, 정부, 공공기관, 민간단체 등 대외협력 및 대응에 관한 사항 (본조신설 2021. 5. 3.)

제18조 [법조신문팀] 법조신문팀은 다음의 사무를 담당한다.

1. 법조신문의 기사작성, 편집 및 간행에 관한 사항
2. 법조신문 광고에 관한 사항 (본조신설 2023. 7. 3.)

제19조 [전산팀] 전산팀은 다음의 사무를 담당한다.

1. 전산관리에 관한 사항
2. 업무전산화 개발 및 운영에 관한 사항
3. 홈페이지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
4. 전산 관련 소모품, 비품 구입 및 관리에 관한 사항 (제18조에서 이동 2023. 7. 3.)

제20조 [나의 변호사 운영팀] 나의 변호사 운영팀은 다음의 사무를 담당한다.

1. 나의 변호사 운영에 관한 전반적인 사항
2. 나의 변호사 시스템 개선에 관한 사항 (본조신설 2025. 1. 7.)

제21조 [특례와 지시] ① 협회장은 제4조 내지 제18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특정한 사무국 직원에게 특정한 사항을 지정하여 그 처리를 명하거나 소관사무가 아닌 사무에 대하여 겸무하여 처리할 것을 명할 수 있다.

② 사무총장은 각 팀의 소관사무 범위 내에서 제1항에 준하는 사무처리 또는 겸무처리를 명할 수 있다.

③ 임원은 사무국 직원에 대하여 규칙 및 규정에 의한 사무처리에 관하여 직접 지시할 수 있다. (제20조에서 이동 2025. 1. 7.)



부 칙 (2021. 2. 22.)

이 규정은 사무국직제규칙이 2021년 정기총회의 의결이 있는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21. 5. 3.)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23. 7. 3.)

제1조 [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경과조치] 이 규정 시행 전의 법조신문팀은 이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것으로 본다.

부 칙 (2025. 1. 7.)

제1조 [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경과조치] 이 규정 시행 전의 나의 변호사 운영팀은 이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것으로 본다.



별 표

직위/직급			정원 한도
사무국장		1급	25인
사무부국장		2급	
과 장		3급	
대 리		4급	70인
주 임		5급	
직 원	일반직	6급	
	계약직	7급	
합 계			95인 이내



사무총장및사무차장복무등기준에관한특례규칙

1997. 2. 22.

규칙 제26호

개정

2010. 12. 20.

2018. 12. 3.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사무총장 및 변호사인 사무차장(이하 “사무총장 등”이라 한다)의 복무, 보수 등 인사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적용제외] 사무총장 등에 대하여는 직원인사규칙(규칙 제8호)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3조 [복무] ①~② 삭제 (2010. 12. 20.)

제4조 [보수 등] 사무총장 등의 보수 및 기타 근무조건에 대하여는 상임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정한다.
(개정 2018. 12. 3)

부 칙

이 규칙은 1997. 3. 1.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0. 12. 2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8. 12. 3.)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특별보좌관 규정

2019. 11. 4.

규정 제165호

개정 2022. 10. 11.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협회 주요 정책사안 및 현안 관련 업무수행을 통해 협회장의 회무 운영을 보좌할 특별보좌관 직책을 마련하고,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원] 특별보좌관의 정원은 10인 이내로 한다. 다만, 협회장은 필요에 따라 특별보좌관을 증원할 수 있다.

제3조 [선임] 특별보좌관은 회무와 관련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회원 중에서 상임이사회의 심의를 거쳐 협회장이 임명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외부 인사를 위촉할 수 있다.

제4조 [직무] 특별보좌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연구 및 검토를 수행하며 협회장을 보좌한다.

1. 협회 주요 정책사안
2. 협회 특정 현안
3. 기타 협회장이 자문한 사항

제5조 [사무국의 보조 등] ① 특별보좌관이 협회장의 지시를 받아 그 직무를 집행할 때에는 사무국 직원의 보조를 받을 수 있다. (개정 2022. 10. 11.)

② 협회장은 필요한 경우 특별보좌관이 협회장의 지시에 따른 직무를 수행할 때에는 특별보좌관으로 하여금 그 직무에 관여하는 사무국 직원을 직접 지휘·감독하도록 할 수 있다. (개정 2022. 10. 11.)

(제목개정 2022. 10. 11.)

제6조 [수당 등] 협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특별보좌관에게 수당과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7조 [비밀누설 금지 등] 특별보좌관은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사익을 위해 이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부 칙 (2019. 11. 24)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22. 10. 11.)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직원인사규칙

1983. 5. 21.

규칙 제8호

개정 1984. 2. 25. 1986. 2. 22.
1997. 2. 22. 2000. 7. 3.
2002. 2. 25. 2005. 2. 21.
2006. 2. 20.

전부개정 2016. 2. 29.

제 1 장 총 칙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회칙 제33조제2항 및 제57조제1항에 따라 이 회 사무국 직원(이하 “직원”이라 한다)의 채용, 복무, 보수 및 징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직원의 구분] 직원은 사무직과 기능직으로 구분한다.

제3조 [적용범위] ① 직원의 인사에 관하여 회칙 또는 다른 규칙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이 규칙에 따른다.

② 이 규칙은 사무총장, 사무차장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4조 [용어의 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임용”이란 직원의 채용, 보직, 승진, 승급, 전보, 겸직, 파견, 휴직, 직위해제, 정직, 복직, 면직, 해고 등의 인사 발령을 말한다.
2. “채용”이라 함은 소정의 절차에 의하여 직원을 선발하여 근무하게 함을 말한다.
3. “직급(職級)”이란 직무의 종류, 난이도 및 책임도가 상당히 유사한 직위의 군을 말한다.
4. “직위(職位)”란 1인의 직원에게 부여하는 직무와 책임을 말한다.
5. “승진”이란 하위 직급에서 상위 직급으로 임용되는 것을 말한다.
6. “승급”이란 호봉이 하급으로부터 상급으로 승급함을 말한다.
7. “정직”이란 휴직 또는 직위 해제되어 대기하는 것을 말한다.
8. “복직”이란 휴직 또는 직위해제 중에 있는 직원을 직위에 복귀시키는 것을 말한다.
9. “면직”이란 직원의 신분을 해제하는 것을 말한다.

제5조 [임용] ① 직원의 임용은 시험성적·근무성적, 그 밖의 능력의 실증에 따른다.

② 직원의 임용은 직원인사위원회(이하 “인사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협회장이 한다. 다만, 직원의 징계는 직원징계위원회(이하 “징계위원회”라 한다)의 의결을 거쳐 협회장이 한다.



제6조 [인사위원회 및 징계위원회의 설치] ① 직원의 임용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인사위원회를 두고, 직원의 징계처분을 의결하게 하기 위하여 징계위원회를 둔다.

② 인사위원회 및 징계위원회의 구성·권한·심의절차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정으로 정한다.

제7조 [직급 및 직위] 직원의 직급 및 직위는 <별표 1>과 같다.

제 2 장 채 용

제8조 [채용] ① 직원의 채용은 공개채용의 방법에 의한다. 다만, 전체 정원 한도의 15% 범위 내에서 일정 기간의 경력을 요건으로 한 경력채용 방식으로 채용할 수 있다.

② 채용방법은 채용시험 또는 전형에 의한다.

제9조 [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직원으로 채용될 수 없다.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6. 법원의 판결 또는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7. 징계로 파면 또는 해임 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제10조 [구비서류] 직원으로 채용될 자는 다음의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1. 이력서 1통
2. 주민등록등본 1통
3. 병역증명서 1통
4. 최종학력증명서 1통
5. 면허증 또는 자격증이 있는 경우에는 그 면허증 또는 자격증 사본 1통
6. 신원보증서 또는 신원보증보험증권 1통
7. 사진(탈모상반신명함판) 1장 및 그 파일
8. 경력직 채용의 경우에는 경력증명서

제11조 [계약직 직원의 일반직 직원으로의 계약 변경] ① 근무성적이 우수한 계약직 직원은 정원의 범위 내에서 일반직 직원으로 그 채용을 전환할 수 있다.

② 전항의 경우 계약직 직원으로 근무한 기간은 일반직 직원으로 근무한 것으로 본다.

제12조 [승진 및 승급] ① 직원의 승진 및 승급(이하 “승진등”이라 한다)은 근무성적평정, 경력평정, 그



밖에 능력의 실증에 따른다.

② 승진등에 필요한 승진등소요최저연수, 승진등 제한, 그 밖의 승진등에 필요한 사항은 규정으로 정한다.

제 3 장 복 무

제13조 [성실의무] 직원은 법령 및 회규를 준수하며 성실히 그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제14조 [비밀준수의무] 직원은 재직 중은 물론 퇴직 후에도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엄수(嚴守)하여야 한다.

제15조 [영리 업무 및 겸직 금지] 직원은 직무 외에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하지 못하며, 협회장의 허가 없이 다른 직무를 겸할 수 없다.

제16조 [품위유지의무] 직원은 직무의 내외를 불문하고 그 품위가 손상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7조 [근무기강의 확립] 직원은 직무상 명령을 준수하며 근무기강을 확립하고 질서를 존중하여야 한다.

제18조 [직무개발] ① 직원의 성실한 회무수행과 직무능력 향상을 위하여 직무개발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직무개발비의 기준과 범위는 상임이사회 결의를 거쳐 지침으로 정한다.

제19조 [복무기준] 직원의 근무시간, 출근 및 결근, 휴가, 그 밖에 복무기준에 관하여는 규정으로 정한다.

제20조 [겸임] 협회장은 직위와 직무 내용이 유사하고 담당 직무 수행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면 직원에게 다른 직무를 겸임하게 할 수 있다.

제21조 [파견근무] ① 협회장은 이 회 사업의 수행 또는 그 업무 수행과 관련된 행정 지원이나 연수, 그 밖에 능력 개발 등을 위하여 필요하면 직원을 다른 국가기관·공공단체·정부투자기관·국내외의 교육기관·연구기관, 각 지방회, 그 밖의 기관(이하 “국가기관등”이라 한다)에 일정 기간 파견근무하게 할 수 있으며, 사업의 공동 수행 또는 전문성이 특히 요구되는 특수 업무의 효율적 수행 등을 위하여 필요하면 국가기관등의 임직원을 파견받아 근무하게 할 수 있다.

② 협회장은 파견 사유가 소멸하거나 파견 목적이 달성될 가망이 없으면 그 직원을 지체 없이 복귀시켜야 한다.

제22조 [근무성적의 평정] ① 협회장은 정기 또는 수시로 직원의 근무성적을 객관적이고 엄정하게 평정하여 인사관리에 반영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근무성적평정 결과 근무성적이 우수한 자에 대하여는 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포상금을 지급하거나 특별승급할 수 있다.

③ 제1항의 근무성적평정에 관한 사항은 규정으로 정한다.



제 4 장 급 여

제23조 [급여의 종류] ① 급여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본봉
2. 수당
3. 상여금
4. 퇴직금

② 총액임금제 급여를 수령하는 직원의 급여에 관하여는 별도의 규정으로 정한다.

제24조 [본봉] 직원의 본봉은 직급과 호봉별로 정한다.

제25조 [수당] ① 수당은 휴일 및 시간외근무수당, 연차휴가수당, 가족수당, 직책수당 등으로 한다.

② 제수당의 지급방법은 규정으로 정한다.

제26조 [상여금] 근무성적이 우수한 직원에게 연간 기본급 월액의 400%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상여금을 지급할 수 있다.

제27조 [여비] 직원이 직무상 출장을 가는 경우에는 여비를 지급한다.

제28조 [퇴직금] 직원이 1년 이상 근무한 후 퇴직한 때에는 퇴직금을 지급한다.

제29조 [급여지급일] ① 본봉 및 수당은 월액으로 하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달의 20일에 지급한다.

② 상여금의 지급일은 규정으로 정한다.

제30조 [급여계산] ① 신규채용, 승진, 감봉 및 면직은 발령일을 기준으로 그 월액을 일할 계산한다.

② 2년 이상 계속 근무하고 퇴직하는 직원이 퇴직하는 달의 7일 이상을 근무한 때에는 그 달의 급여액 전액을 지급한다. 다만, 징계에 의하여 면직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계약직의 급여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협회장이 정한다.

제31조 [휴직기간 중의 급여] ① 제38조제1항제1호 및 제2항 각 호의 사유로 휴직한 경우에는 그 기간 중 본봉의 100분의 60을 지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규정되지 아니한 휴직의 경우에는 그 기간 중 급여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제32조 [퇴직금기금] ① 직원의 퇴직금의 자원을 마련하기 위하여 퇴직금적립기금을 둔다.

② 퇴직금적립기금에는 매년 직원에 대한 급여액의 12분의 1 이상의 상당한 금액을 적립하여야 한다.

제33조 [보수 지급 방법 등] 이 규칙에서 규정한 것 외에 보수 지급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별도의 규정으로 정한다.

제 5 장 신분 보장

제34조 [의사에 반한 신분 조치] 직원은 형의 선고, 징계처분 또는 이 규칙에서 정하는 사유에 따르지



아니하고는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휴직 또는 면직을 당하지 아니한다.

제35조 [당연퇴직] 직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당연히 퇴직한다.

1. 제9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다만, 제9조제2호는 파산선고를 받은 사람으로서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신청기한 내에 면책신청을 하지 아니하였거나 면책 불허가 결정 또는 면책 취소가 확정된 경우만 해당한다.
2. 계약직원의 근무기간이 만료된 경우
3. 사망한 때

제36조 [의원면직] 직원이 사직하고자 할 때에는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퇴직 1개월 전에 사직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37조 [직권면직] ① 협회장은 직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직권으로 면직시킬 수 있다.

1. 직제와 정원의 개폐 또는 예산의 감소 등에 따라 폐직(廢職) 또는 과원(過員)이 되었을 때
2. 신체 또는 정신상의 이상으로 직무를 감당하지 못할 만한 지장이 있을 때
3. 직무수행 능력이 현저히 부족하고 근무성적이 극히 나쁜 때
4. 휴직 기간이 끝나거나 휴직 사유가 소멸된 후에도 직무에 복귀하지 아니하거나 직무를 감당할 수 없을 때
5. 제40조제3항에 따라 대기 명령을 받은 자가 그 기간에 능력 또는 근무성적의 향상을 기대하기 어렵다고 인정된 때
6. 징병검사·입영 또는 소집의 명령을 받고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기피하거나 군복무를 위하여 휴직 중에 있는 자가 군복무 중 군무(軍務)를 이탈하였을 때
- ② 협회장은 제1항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따라 면직시킬 경우에는 미리 징계위원회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다만, 제1항제5호에 따라 면직시킬 경우에는 징계위원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 ③ 협회장은 제1항제1호에 따라 직원을 면직시킬 때에는 임용 형태, 근무 실적, 직무수행 능력, 징계처분 사실 등을 고려하여 면직 기준을 정하여야 한다.
- ④ 제3항에 따른 면직 기준을 정하거나 제1항제1호에 따라 면직 대상자를 결정할 때에는 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 ⑤ 제1항제4호에 따른 직권 면직일은 휴직 기간이 끝난 날 또는 휴직 사유가 소멸한 날로 한다.

제38조 [휴직] ① 협회장은 직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본인의 의사에도 불구하고 휴직을 명하여야 한다.

1. 신체·정신상의 장애로 장기 요양이 필요할 때
2. 「병역법」에 따른 병역 복무를 마치기 위하여 징집 또는 소집된 때
3. 천재지변이나 전시·사변, 그 밖의 사유로 생사(生死) 또는 소재(所在)가 불명확하게 된 때
- ② 협회장은 직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휴직을 원하면 휴직을 명할 수 있다.
1.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
2. 사고나 질병 등으로 장기간 요양이 필요한 부모(배우자의 부모를 포함한다), 배우자, 자녀를 간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



③ 휴직 기간은 다음과 각 호와 같다.

1. 제1항제1호에 따른 휴직기간은 1년 이내로 하되, 부득이한 경우 1년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다.
다만,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에 따른 업무상 재해로 인한 휴직기간은 3년 이내로 한다.
2. 제1항제2호에 따른 휴직 기간은 그 복무 기간이 끝날 때까지로 한다.
3. 제1항제3호에 따른 휴직 기간은 3개월 이내로 한다.
4. 제2항제1호에 따른 휴직 기간은 자녀 1명에 대하여 1년 이내로 한다.
5. 제2항제2호에 따른 휴직 기간은 1년 이내로 하되, 재직 기간 중 총 3년을 넘을 수 없다.

제39조 [휴직의 효력] ① 휴직 중인 직원은 신분은 보유하나 직무에 종사하지 못한다.

② 휴직 기간 중 그 사유가 없어지면 30일 이내에 협회장에게 신고하여야 하며, 협회장은 지체 없이 복직을 명하여야 한다.

③ 휴직 기간이 끝난 직원이 30일 이내에 복귀 신고를 하면 당연히 복직된다.

제40조 [직위해제] ① 협회장은 직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직위를 부여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직무수행 능력이 부족하고 근무성적이 나쁜 때
2. 해고 또는 정직에 해당하는 징계의결이 요구 중인 때
3. 형사 사건으로 기소된 때(약식명령이 청구된 때는 제외한다)
- ② 제1항에 따라 직위를 부여하지 아니한 경우에 그 사유가 소멸되면 협회장은 지체 없이 직위를 부여하여야 한다.
- ③ 협회장은 제1항제1호에 따라 직위해제된 자에게 3개월의 범위에서 대기를 명한다.
- ④ 협회장은 제3항에 따라 대기 명령을 받은 자에게 능력 회복이나 근무성적의 향상을 위한 교육훈련 또는 특별한 연구과제의 부여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41조 [정년] 직원의 정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과장 이상은 만 60세
2. 기타 직원은 만 55세

제42조 [처분사유 설명서의 교부] 직원에 대하여 징계처분을 할 때나 휴직·직위해제 또는 면직처분을 할 때에는 협회장은 처분사유를 적은 설명서를 교부(交付)하여야 한다. 다만, 본인의 원(願)에 따른 휴직 또는 면직처분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 6 장 상 별

제43조 [포상] 협회장은 근무성적이 우수하여 타에 모범이 되거나 이 회에 대하여 공로가 있는 직원을 포상할 수 있다.

제44조 [징계사유] 협회장은 직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징계위원회에 징계의결을 요



구하여야 한다.

1. 이 규칙 및 이 규칙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경우
2. 직무상의 의무를 위반하거나 직무를 태만히 한 때
3. 직무의 내외를 불문하고 그 체면 또는 위신을 손상하는 행위를 한 때

제45조 [재징계의결 등의 요구] ① 협회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법원에서 징계처분의 무효 또는 취소(취소명령 포함)의 결정이나 판결을 받은 경우에는 다시 징계의결을 요구하여야 한다. 다만, 제3호의 사유로 무효 또는 취소(취소명령 포함)의 결정이나 판결을 받은 감봉·견책처분에 대하여는 징계의결을 요구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법령의 적용, 증거 및 사실 조사에 명백한 흠이 있는 경우
2. 징계위원회의 구성 또는 징계의결, 그 밖에 절차상의 흠이 있는 경우
3. 징계양정이 과다(過多)한 경우

② 협회장은 제1항에 따른 징계의결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법원의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징계위원회에 징계의결을 요구하여야 하며, 징계위원회에서는 다른 징계사건에 우선하여 징계의결을 하여야 한다.

제46조 [징계의 종류] 징계는 해고·정직(停職)·감봉·견책(譴責)으로 구분한다.

제47조 [징계의 효력] ① 정직은 1개월 이상 3개월 이하의 기간으로 하고, 정직 처분을 받은 자는 그 기간 중 직원의 신분은 보유하나 직무에 종사하지 못하며 급여의 10분의 1을 감한다.

② 감봉은 1개월 이상 6개월 이하의 기간 동안 급여의 10분의 1을 감한다.

③ 견책(譴責)은 전과(前過)에 대하여 훈계하고 회개하게 한다.

④ 징계처분을 받은 사람은 그 집행이 끝난 날부터 다음 각 호의 기간이 지나지 아니하면 승진되거나 승급할 수 없다. 다만, 징계처분을 받은 후 직무수행의 공적으로 포상 등을 받은 직원에 대하여는 승진이나 승급을 제한하는 기간을 단축하거나 면제할 수 있다.

1. 정직 : 18개월
2. 감봉 : 12개월
3. 견책 : 6개월

제48조 [징계시효] ① 징계의결의 요구는 징계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2년이 지나면 하지 못한다.

② 징계위원회의 구성·징계의결, 그 밖에 절차상의 흠이나 징계양정의 과다(過多) 등을 이유로 법원에서 징계처분의 무효 또는 취소의 결정이나 판결을 한 경우에는 제1항의 기간이 지난 경우에도 그 결정 또는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3개월 이내에는 다시 징계의결을 요구할 수 있다.

제49조 [징계 등 절차] ① 직원의 징계처분은 징계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협회장이 한다.

② 징계의 절차와 집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정으로 정한다.



제 7 장 인사기록

제50조 [인사기록] ① 이 회는 직원의 인사기록을 작성·유지·보관하여야 한다.

② 직원의 신분이 변동되었을 때에는 그 변동사항을 지체 없이 인사기록카드에 기록하여야 한다.

제 8 장 보 칙

제51조 [시행세칙] 이 규칙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규정으로 정한다.

부 칙

① [시행일] 이 규칙은 1983. 6. 1.부터 시행한다.

②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재직 중인 직원은 이 규칙에 의하여 임명된 것으로 본다.

부 칙 (1984. 2. 25.)

이 규칙은 1984. 2. 26.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86. 2. 22.)

이 규칙은 1986. 1. 1.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97. 2. 22.)

이 규칙은 1997. 3. 1.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97. 10. 27.)

이 규칙은 1998. 1. 1.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0. 7. 3.)

- ① 이 규칙은 2000. 7. 29.부터 시행한다.
- ② 이 규칙 시행 전에 계약직으로 채용되어 재직하는 계약직원은 이 규칙에 의하여 채용된 것으로 본다.

부 칙 (2002. 2. 18.)

이 규칙은 2002. 2. 25.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5. 2. 2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20일을 경과함으로써 효력이 발생한다.

부 칙 (2006. 2. 20.)

이 규칙은 공포 후 20일이 경과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6. 2. 29.)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1

직원의 직급 및 직위

직 급	직 위
1급	사 무 국 장
2급	사무부국장
3급	과 장
4급	대 리
5급	주 임
6급	일반직 사원
7급	계약직 사원



직원인사규정

1991. 12. 23.

규정 제39호

개정 1997. 12. 15. 2000. 6. 26.
2002. 2. 4. 2002. 11. 11.
2006. 2. 13. 2011. 2. 14.
2011. 12. 12. 2016. 2. 15.
2016. 12. 30. 2017. 9. 11.
2018. 4. 9.

전부개정 2016. 2. 15.

개정 2016. 12. 30. 2017. 9. 11.
2018. 4. 9. 2019. 7. 8.
2020. 2. 10.

제 1 장 총 칙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직원인사규칙에서 정한 사무국 직원(이하 “직원”이라 한다)의 인사관리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용어의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보직”이란 채용된 직원을 그 자격 및 적성에 따라 근무부서에 배치하여 업무에 종사하게 함을 말한다.
2. “전보(轉補)”란 동일한 직급 내에서의 보직 변경을 말한다.
3. “중징계”란 징계 중 해고 및 정직을 말한다.
4. “경징계”란 징계 중 감봉 및 견책을 말한다.
5. “1주”란 휴일을 포함한 7일을 말한다. (신설 2020. 2. 10.)

제 2 장 직원인사위원회

제3조 [직원인사위원회의 구성] ① 직원인사위원회(이하 “인사위원회”라 한다)는 사무총장, 상임이사 중 협회장이 지명하는 1인, 사무차장 중 협회장이 지명하는 1인, 노동조합이 추천하는 1인, 사무국장 및 총무팀장으로 구성한다. 다만, 협회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위원을 2인까지 추가로 지명할 수 있다. (개정 2020. 2. 10.)



③ 위원의 임기는 협회 집행부 임기가 만료되는 날까지로 한다.

제4조 [인사위원회의 위원장] ① 위원장은 사무총장으로 한다.

②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그 사무를 총괄한다.

③ 위원장은 인사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되며, 의결할 때 표결권을 가진다.

④ 위원장에게 사고 등의 사유로 그 사무를 처리하지 못할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지명하는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5조 [인사위원회의 간사] ① 인사위원회에 간사를 두며, 간사는 총무팀장으로 한다. 다만, 필요 시 팀장급 직원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하여 임명할 수 있다.

②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징계사건에 관한 기록과 그 밖의 서류의 작성 및 보관에 관한 사무를 담당한다.

제 3 장 임 용

제6조 [임용원칙] ① 직원의 임용은 시험성적, 근무성적, 근무연수, 학력, 경력, 그 밖의 능력에 따라 행하여야 한다.

② 직원의 임용기준은 <별표 1>과 같다.

제7조 [채용기준] ① 일반직의 호봉가산기준은 <별표 2>와 같다. (개정 2016. 12. 30.)

② 경력직의 경력환산기준은 <별표 3>과 같다. 다만, 그 사무의 내용과 특성 등을 고려하여 예외적으로 직급, 근무기간, 보수 등 근무조건을 개별 계약으로 정할 수 있다.

제8조 [승진 및 승급] ① 직원의 승진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근무성적이 우수하고 직무능력이 인정되는 자 중에서 정원의 범위에서 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협회장이 한다.

1. 사무국장은 2급 직원으로서 5년 이상 근속한 자
2. 사무부국장은 3급 직원으로서 5년 이상 근속한 자
3. 과장은 4급 직원으로서 4년 이상 근속한 자
4. 대리는 5급 직원으로서 3년 이상 근속한 자
5. 주임은 6급 직원으로서 2년 이상 근속한 자

② 직원의 호봉 승급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승급소요연수를 1년으로 한다.

③ 징계처분·직위해제·휴직 기간은 제1항 및 제2항에 의한 승진 및 승급(이하 “승진등”이라 한다) 소요최저연수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다만, 규칙 제38조제1항제2호 및 제2항제1호에 의한 휴직 기간,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에 따른 업무상 재해로 인한 휴직 기간은 산입한다.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승진등을 할 수 없다.

1. 징계처분 및 직위해제 중인 자
2. 휴직 중인 자(규칙 제38조제1항제2호 및 제2항제1호에 의한 휴직,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에 따른



업무상 재해로 인한 휴직의 경우는 제외한다)

3. 징계처분의 집행이 끝난 날부터 규칙 제47조제4항 각 호의 기간이 지나지 아니한 자

⑤ 협회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직무수행능력이 탁월하여 이 회의 발전에 현저히 공헌한 자에 대하여 특별승진을, 근무성적평정 결과 근무성적이 우수한 자에 대하여 특별승급을 할 수 있다.

⑥ 이 규정에서 정한 것 외에 승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별도의 규정으로 정한다.

제9조 [전보] 협회장은 같은 직위에서의 장기근무로 인한 침체를 방지하고 창의적인 업무수행을 기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직원을 전보(轉補)할 수 있다.

제10조 [정년] 직원은 그 정년에 이른 날이 속하는 월말에 당연히 퇴직한다.

제 4 장 복 무

제11조 [근무시간] ① 1주간의 근무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40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신설 2020. 2. 10.)

② 1일의 근무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8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신설 2020. 2. 10.)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근무시간을 산정함에 있어 업무를 위하여 직원이 협회의 지휘·감독 아래에 있는 대기시간 등은 근로시간으로 본다. (신설 2020. 2. 10.)

④ 직원은 출퇴근 시간을 1시간 범위 내에서 육아 등을 위해 선택근무를 신청할 수 있으며, 협회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를 시행한다. (신설 2020. 2. 10.)

제11조의2 [연장·야간 및 휴일근로] 협회와 해당 직원 간에 합의하면 1주간에 12시간을 한도로 제11조의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0. 2. 10.)

제11조의3 [야간 및 휴일근로의 제한] ① 여성 직원을 오후 10시부터 오전 6시까지 근로하게 하거나 휴일에 근로를 시킬 경우 당해 직원의 동의를 얻어 실시한다.

② 임신부와 18세 미만인 직원에 대하여는 오후 10시부터 오전 6시까지의 시간 및 휴일에 근로를 시키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경우에는 그 시행 여부와 방법 등에 관하여 직원대표와 성실히 협의한 후 고용노동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야간 및 휴일근로를 실시할 수 있다.

1. 18세 미만자의 동의가 있는 경우
2. 산후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여성의 동의가 있는 경우
3. 임신 중의 여성이 명시적으로 청구하는 경우

(본조신설 2020. 2. 10.)

제11조의4 [유급휴일] 직원의 유급휴일은 다음과 같다.



1. 주휴일: 1주일에 2일
2. 법정공휴일
3. 근로자의 날
4. 정부가 지정하는 임시공휴일, 대체공휴일, 공직선거법 제34조에 따른 임기만료에 의한 선거의 선거일
5. 기타 노사협의로 결정한 날

(본조신설 2020. 2. 10.)

제12조 [휴가의 종류] 직원의 휴가는 연차휴가·병가·공가(公暇) 및 특별휴가로 구분한다.

제13조 [연차 일수] 직원의 재직기간별 연차 일수는 근로기준법에 따른다.

제14조 [병가] ① 협회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연 60일 범위에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에 따른 업무상 재해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거나 요양이 필요한 경우에는 연 180일의 범위에서 병가를 허가할 수 있다.

1.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2. 감염병에 걸려 그 직원의 출근이 다른 직원의 건강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을 때
- ② 잔여 연차휴가가 있는 직원의 경우에는 제1항에 의한 병가일수를 연차일수에서 공제한다.
- ③ 병가 일수가 7일 이상일 때에는 의사의 진단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15조 [포상휴가] 협회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직원에게 6일 이내의 포상휴가를 부여할 수 있다.

1. 직원인사규칙 제43조에 의한 포상을 받은 자
2. 상훈법에 의한 훈장(勳章), 포장(褒章)을 받은 자
3. 법무부장관 등 관계기관장의 포상을 받은 자

제16조 [준용규정] 직원의 휴가에 관하여 이 규정에 달리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법원공무원규칙에 따른다.

제 5 장 근무평정

제17조 [근무평정] ① 근무평정은 평정대상기간 동안의 근무성적, 직무수행능력 및 직무수행태도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되, 그 신뢰성과 타당성이 보장되도록 객관적 근거에 의하여 실시하여야 한다.

② 근무평정은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근무평정표에 의한다.

제18조 [평정시기] 직원에 대한 근무평정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매년 6월 말일과 12월 말일을 기준으로 하여 7월 및 1월에 각 실시한다.

제19조 [평정자 및 확인자] ① 근무평정의 평정자 및 확인자는 <별표 4>와 같다.

② 제1항에 의하여 평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협회장이 평정자와 확인자를 따로 지정할 수 있다.



제20조 [평정의 비공개] ① 근무평정의 결과는 공개하지 아니한다.

② 근무평정표는 사무총장이 관리한다.

제21조 [근무평정의 예외] ① 직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근무평정을 하지 아니한다.

1. 신규채용, 복직 그 밖의 사유 등으로 해당 평정단위 기간 중의 소속 팀에서의 근무기간이 2개월 미만인 경우

2. 휴직, 직위해제, 대기명령, 그 밖의 사유 등으로 직무에 종사하지 아니하는 경우

② 직원이 다른 기관에 파견되거나 다른 팀으로 전보된 후 2개월 이내에 근무평정을 실시하게 될 경우에는 전 소속 팀에서 전보일 이전까지의 근무성적을 평정하여야 한다.

제22조 [근무평정 결과의 반영] 근무평정의 결과는 승진임용, 특별승급, 교육훈련, 보직관리 등 각종 인사관리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 6 장 직원징계위원회

제23조 [징계위원회의 구성] ① 직원징계위원회(이하 “징계위원회”라 한다)는 사무총장, 상임이사 중 협회장이 지명하는 3인, 사무차장 중 협회장이 지명하는 1인, 노동조합이 추천하는 1인, 사무국장 및 총무팀장으로 구성한다. 다만, 협회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위원을 2인까지 추가로 지명할 수 있다. (개정 2020. 2. 10.)

② 위원의 임기는 협회 집행부 임기가 만료되는 날까지로 한다.

제24조 [징계위원회의 위원장] ① 위원장은 사무총장으로 한다.

②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그 사무를 총괄한다.

③ 위원장은 징계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되며, 의결할 때 표결권을 가진다.

④ 위원장에게 사고 등의 사유로 그 사무를 처리하지 못할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지명하는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25조 [징계위원회의 간사] ① 징계위원회에 간사를 두며, 간사는 총무팀장으로 한다. 다만, 필요 시 팀장급 직원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하여 임명할 수 있다.

②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징계사건에 관한 기록과 그 밖의 서류의 작성 및 보관에 관한 사무를 담당한다.



제 7 장 징 계

제26조 [징계의결의 요구] ① 규칙 제44조에 의한 징계의결의 요구는 징계사유에 대한 충분한 조사를 한 후 입증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관계서류를 첨부하여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 징계의결요구서를 징계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하고, 중징계 또는 경징계로 구분하여 요구하여야 한다.

1. 인사기록카드 사본
 2. 혐의내용을 입증할 수 있는 문서 등 관계증거자료
 3. 혐의내용에 대한 조사기록 또는 수사기록
 4. 관련자에 대한 조치사항 및 그에 대한 증거자료
 5. 관계법규·지시문서 등의 발췌문
 6. 징계혐의자의 평소의 행실·근무성적·공적·뉘우치는 정도, 그 밖의 정상을 참작할 수 있는 자료
- ② 징계위원회는 징계의결요구서를 받은 날부터 5일 이내에 징계의결요구서의 부분(副本)을 징계의결이 요구된 직원(이하 “피청구인”이라 한다)에게 직접 교부하거나 송부하여야 한다.
- ③ 징계위원회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징계의결요구서의 부분(副本)을 피청구인에게 직접 교부 또는 송부하는 것이 주소불명 기타 사유로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이를 피청구인의 소속팀장 또는 직근 상급자에게 송부하여 교부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에 징계의결요구서의 부분(副本)을 송부받은 소속팀장 또는 직근 상급자는 지체없이 피청구인에게 이를 교부한 후 그 교부상황을 징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 ④ 징계위원회는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방법으로 징계의결요구서의 부분(副本)을 피청구인에게 교부 또는 송부할 수 없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직권으로 결정에 의하여 공시송달을 명한다.
- ⑤ 피청구인의 소속팀장 또는 직근 상급자가 제3항 전단의 규정에 의하여 징계의결요구서의 부분(副本)을 교부하는 경우에 피청구인이 그 수령을 거부하는 때에는 제3항 후단의 규정에 의하여 그 교부상황을 보고할 때에 수령을 거부한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제27조 [징계심의기일의 지정] ① 징계의결의 요구가 있는 때에는 징계위원회는 징계심의기일을 정하여 피청구인의 출석을 요구하여야 한다.

- ② 징계심의기일은 제28조에 의한 출석요구서의 송달 후 5일 이상의 유예기간을 두어야 한다.

제28조 [피청구인에 대한 출석요구] ① 징계위원회가 피청구인에 대하여 징계심의기일의 출석을 요구하는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한 출석요구서를 피청구인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 ② 징계위원회는 피청구인이 해외체재, 형사사건으로 인한 구속, 여행, 그 밖의 사유로 50일 이내에 심의기일에 출석할 수 없을 때에는 피청구인으로 하여금 서면에 의하여 진술하게 하여 징계심의 및 징계결정을 할 수 있다.
- ③ 피청구인이 출석요구서의 수령을 거부한 경우에는 징계위원회에서의 진술권을 포기한 것으로 본다. 다만, 피청구인은 출석요구서의 수령을 거부한 경우에도 징계위원회에 출석하여 진술할 수 있다.
- ④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출석요구서의 송달에 관하여는 제26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29조 [제척 · 기피 · 회피] ① 위원장 및 위원은 자신 또는 그 친족에 대한 징계사건의 심의·결정에 관여하지 못한다.

② 피청구인은 위원장 또는 위원에게 제1항의 사유가 있거나 징계결정의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을 때에는 징계위원회에 그 사실을 서면으로 소명(疏明)하여 기피를 신청할 수 있다.

④ 징계위원회는 제3항의 신청에 대하여 지체 없이 결정하여야 하며, 기피신청이 인용된 경우 기피신청의 대상이 된 위원장 또는 위원은 그 결정에 관여하지 못한다.

⑤ 위원장이나 위원은 제1항 또는 제2항의 사유를 이유로 회피할 수 있다.

제30조 [징계의 심의] ① 징계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위원 과반수가 출석한 경우에 심의를 개시한다.

② 위원장은 심의기일에 출석한 피청구인에게 징계가 청구된 원인사실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심문(審問)하고,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인의 출석을 요구하여 심문할 수 있다.

③ 위원은 위원장에게 알리고 제2항의 심문을 할 수 있다.

④ 징계심의를 공개하지 아니한다.

⑤ 징계위원회의 심의·결정에 참여한 사람은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31조 [피청구인의 불출석] 징계위원회는 피청구인이 적법한 송달을 받고도 심의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진술권을 포기한 경우에는 피청구인의 진술 없이 서면에 의하여 심의할 수 있다.

제32조 [피청구인의 진술권 및 증거제출권] ① 징계위원회는 피청구인에게 충분한 진술을 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여야 한다.

② 피청구인은 서면 또는 구술로 의견을 진술하거나 증거를 제출할 수 있다.

제33조 [변호인 등의 선임] 피청구인은 변호사를 변호인으로 선임하여 징계사건에 대한 보충진술과 증거제출을 하게 할 수 있다. 다만, 징계위원회의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변호사가 아닌 사람을 특별변호인으로 선임할 수 있다.

제34조 [감정 · 증인신문 등] 징계위원회는 직권으로 또는 피청구인·변호인·특별변호인의 신청에 의하여 감정(鑑定)을 명하거나 증인을 신문(訊問)할 수 있으며, 공공기관 등에 사실조회를 하거나 서류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제35조 [최종의견 진술권] 징계위원회는 피청구인과 변호인 또는 특별변호인에게 최종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제36조 [징계절차의 정지] 징계위원회는 징계 사유에 관하여 공소가 제기된 경우에는 그 절차가 완결될 때까지 징계절차를 정지할 수 있다.

제37조 [징계의결요구의 취하] 협회장은 징계의결의 요구를 한 이후 새로운 사실이 발견되는 등 피청구인이 규칙 제44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지 아니한다고 인정할 만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제40조에 따른 징계결정이 있기 전까지 징계의결의 요구를 취하할 수 있다.

제38조 [징계결정기간] ① 징계위원회는 징계의결요구서를 접수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징계에 관한 결정을 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위원회의 의결로 30일에 한하여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② 징계절차가 제36조의 규정에 의하여 정지된 때에는 그 정지된 기간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징계 결정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제39조 [징계위원회의 결정방식] ① 징계위원회가 징계사건에 관하여 결정하려는 경우에는 위원장을 포함한 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위원회가 제1항 본문에 따른 징계결정을 할 때 의견이 나뉘어 출석위원 과반수에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과반수에 이를 때까지 피청구인에게 가장 불리한 의견의 수에 차례로 유리한 의견의 수를 더하여 그 중 가장 유리한 의견에 따른다.

제40조 [징계위원회의 징계결정] 징계위원회는 심의를 종료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결정을 한다.

1. 징계 사유가 있고 이에 대하여 징계처분을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징계 사유의 경중(輕重), 피청구인의 근무성적, 공적(功績), 뉘우치는 정도, 그 밖의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그에 합당한 징계처분을 하는 결정. 다만, 징계처분을 하지 아니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불문(不問)으로 하는 결정을 할 수 있다.

2. 징계 사유가 인정되지 아니하는 경우: 무혐의 결정

제41조 [간사의 참여와 심의기록의 작성] 간사는 사건의 심의에 참여하여 심의기록을 작성하고 위원장과 함께 서명 또는 날인하여야 한다.

제42조 [징계결정서의 작성 및 송달] ① 징계위원회가 제39조에 따른 결정을 하였을 때에는 그 이유를 붙인 <별지 제4호서식>에 의한 징계결정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징계결정서의 이유란에는 징계의 원인이 된 사실, 증거의 요지와 법령의 적용을 명시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의 징계결정서에는 위원장과 심의·결정에 관여한 위원이 서명 또는 날인하고, 위원장이 간인하여야 한다.

④ 제1항의 징계결정서의 정본(正本)은 피청구인 및 협회장에게 각각 송달하여야 한다.

제43조 [징계처분 및 집행] ① 협회장은 징계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징계처분을 하고, 이를 집행한다.

② 제1항의 징계의 집행은 제42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징계결정서의 송달이 완료된 날부터 15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제44조 [직권면직에 대한 동의 등] ① 협회장이 규칙 제37조제2항에 따라 직권면직에 대한 징계위원회의 의견 또는 동의를 받아야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5호서식>에 의한 직권면직 의견·동의 요구서를 징계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징계위원회가 직권면직에 관하여 제시할 의견이나 동의 여부에 대하여 의결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별지 제6호서식>에 의한 직권면직 의견·동의 결정서를 협회장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③ 규칙 제37조제2항에 따라 직권면직에 대하여 징계위원회의 동의를 받는 경우에는 이 규정에 의한 징계절차를 준용한다.



제 8 장 양성평등과 모성보호 <본장신설 2020. 2. 10.>

제45조 [양성평등과 모성보호] ① 협회는 헌법과 근로기준법,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직급변경·승급 등 인사 및 근로조건에 있어서 특정성을 이유로 직·간접적인 불이익한 처우를 하지 않고 남녀의 평등한 기회 및 대우를 보장하고 모성을 보호한다.

② 협회는 양성이 가정과 직장을 조화롭게 양립함으로써 실질적인 평등권과 근로권을 실현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제46조 [임신부의 보호] ① 임신 중의 여성 직원에게는 연장근로를 시키지 아니하며, 그 직원의 요구가 있는 경우 쉬운 종류의 근로로 전환시킨다.

② 협회는 임신 후 12주 이내 또는 36주 이후에 있는 여성 직원이 1일 2시간의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하는 경우 이를 허용하여야 한다. 다만, 1일 근로시간이 8시간 미만인 직원에 대하여는 1일 근로시간이 6시간이 되도록 근로시간 단축을 허용할 수 있다.

③ 협회는 제2항에 따른 근로시간 단축을 이유로 해당 직원의 임금을 삭감하지 아니 한다.

④ 협회는 직원을 신체적·정신적으로 위협한 직종에 근로시키지 아니한다.

제47조 [태아검진 시간의 허용 등] ① 협회는 임신한 여성 직원이 모자보건법 제10조에 따른 임신부 정기건강진단을 받는데 필요한 시간을 청구하는 경우 이를 허용한다.

② 협회는 제1항에 따른 건강진단 시간을 이유로 직원의 임금을 삭감하지 않는다.

제48조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① 협회는 직원인사규칙 제38조제2항제1호에 따라 육아휴직을 신청할 수 있는 남녀 직원이 육아휴직 대신 근로시간의 단축(이하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이라 한다)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이를 허용하여야 한다. 다만, 대체인력 채용이 불가능한 경우, 정상적인 사업 운영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등 남녀고용평등법 시행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협회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허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직원에게 그 사유를 서면으로 통보하고 육아휴직을 사용하게 하거나 그 밖의 조치를 통하여 지원할 수 있는지를 해당 직원과 협의하여야 한다.

③ 협회가 해당 직원에게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허용하는 경우 단축 후 근로시간은 주당 15시간 이상이어야 하고 35시간을 넘어서는 아니 된다.

④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의 기간은 1년 이내로 한다.

제49조 [육아시간] 생후 1년 미만의 유아를 가진 여성 직원이 청구하면 1일 2회 각각 30분 이상의 유급 수유 시간을 부여한다.

제 9 장 교육, 안전 및 보건 <본장신설 2020. 2. 10.>



제50조 [교육시간] 이 규정에서 규정한 교육은 근무시간 중에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교육을 받는 시간은 근로를 제공한 것으로 본다. 다만, 직원과 합의로 근무시간 외에 직무교육을 받도록 할 수 있으며 이 경우의 처우에 관하여는 교육의 장소·일정 등을 고려하여 따로 정한다.

제51조 [직무교육] ① 협회는 직원의 직무능력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직무교육을 시킬 수 있으며 직원은 교육과정에 성실히 임하여야 한다.

② 직원은 자신의 직무능력 향상을 위해 필요한 교육을 협회에 요청할 수 있다.

제52조 [법정교육] 협회는 1년에 1회 이상 성희롱예방교육, 개인정보보호교육, 장애인 인식개선교육, 직장 내 괴롭힘 예방교육을 실시하며, 직원은 교육과정에 성실히 임하여야 한다.

제53조 [산업안전보건 의무 및 활동] 협회는 산업재해의 예방을 위한 적정기준을 준수하고 쾌적한 작업환경을 조성함으로써 직원의 안전과 보건을 증진하도록 노력한다.

제54조 [건강진단] 협회는 근로자의 건강보호·유지를 위하여 산업안전보건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건강진단을 실시한다.

제55조 [재해보상] ① 근로자의 업무상 재해에 대해서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다.

②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 업무상 재해는 근로기준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 10 장 직장 내 괴롭힘의 예방 <본장신설 2020. 2. 10.>

제56조 [직장 내 괴롭힘 행위의 금지] 직장 내 괴롭힘이란 임직원이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직원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말한다.

제57조 [금지되는 직장 내 괴롭힘 행위] 협회에서 금지되는 구체적인 직장 내 괴롭힘 행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신체에 대하여 폭행하거나 협박하는 행위
2. 지속·반복적인 욕설이나 폭언
3. 다른 직원들 앞에서 또는 온라인상에서 모욕감을 주거나 개인사에 대한 소문을 퍼뜨리는 등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
4. 합리적 이유 없이 반복적으로 개인 심부름 등 사적인 용무를 지시하는 행위
5. 합리적 이유 없이 업무능력이나 성과를 인정하지 않거나 조롱하는 행위
6. 집단적으로 따돌리거나, 정당한 이유 없이 업무와 관련된 중요한 정보 또는 의사결정 과정에서 배제하거나 무시하는 행위
7. 정당한 이유 없이 상당기간 동안 근로계약서 등에 명시되어 있는 업무와 무관한 일을 지시하거나 근로계약서 등에 명시되어 있는 업무와 무관한 허드렛일만 시키는 행위



8. 정당한 이유 없이 상당기간 동안 일을 거의 주지 않는 행위
9. 그밖에 업무의 적정범위를 넘어 직원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

제58조 [직장 내 괴롭힘 예방] 직장 내 괴롭힘 예방을 위한 교육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직장 내 괴롭힘 행위의 정의
2. 금지되는 직장 내 괴롭힘 행위
3. 직장 내 괴롭힘 상담절차
4. 직장 내 괴롭힘 사건처리절차
5. 직장 내 괴롭힘 피해자 보호를 위한 조치
6. 직장 내 괴롭힘 행위자에 대한 조치
7. 그밖에 직장 내 괴롭힘 예방을 위한 내용

제59조 [직장 내 괴롭힘 행위 발생 시 조치] ① 누구든지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알게 된 경우 그 사실을 협회에 신고할 수 있다.

② 협회는 전항에 따른 신고를 접수하거나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인지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 확인을 위한 조사를 실시한다.

③ 직장 내 괴롭힘 행위에 관한 조사 및 조치에 관한 구체적인 절차는 별도로 정한다.

부 칙

① [시행일] 이 규정은 1992. 1. 1.부터 시행한다.

② [경과조치] 이 규정 시행 전 임용된 직원의 인사는 이 규정에 의한 것으로 한다.

부 칙 (1997. 12. 15)

이 규정은 1998. 1. 1.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0. 6. 26.)

① [시행일] 이 규정은 2000. 7. 29.부터 시행한다.

② [경과조치] 이 규정 시행 전 임용된 직원의 인사는 이 규정에 의한 것으로 본다.

부 칙 (2002. 11. 11.)

이 규정은 2003. 1. 1.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6. 2. 13.)

이 규정은 공포 후 20일이 경과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1. 2. 14.)

이 규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1. 12. 12.)

이 규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6. 2. 15.)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6. 12. 30.)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7. 9. 11.)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8. 4. 9.)

제1조 [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경과조치] 이 규정 시행 전의 계약 직원의 임용기준은 별표 1의 개정규정에 따른다.



부 칙 (2019. 7. 8.)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20. 2. 10.)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1조의2는 2020. 1. 1.부터 시행한다.



별표 1 (개정 2018. 4. 9.)

직원의 임용기준

직 급	직 위	임 용 기 준
1급	사 무 국 장	2급 직원으로서 5년 이상 근속한 자 기타 동등한 자격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2급	사무부국장	3급 직원으로서 5년 이상 근속한 자 기타 동등한 자격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3급	과 장	4급 직원으로서 4년 이상 근속한 자 기타 동등한 자격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4급	대 리	5급 직원으로서 3년 이상 근속한 자 기타 동등한 자격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5급	주 임	6급 직원으로서 2년 이상 근속한 자 기타 동등한 자격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6급	일반직 사원	7급 직원으로서 6개월 이상 근속한 자 기타 동등한 자격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7급	계약직 사원	고등학교 졸업 이상의 학력소지자 기타 동등한 자격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별표 2 (개정 2016. 12. 30.)

일반직의 호봉가산기준

구 분	호 봉 가 산
2년제 전문대학 졸업자	2호봉
4년제 대학 졸업자	4호봉
석사 이상의 학위소지자	6호봉
대한민국 변호사 자격증 소지자	7호봉
병역필자	복무기간 1년당 1호봉 (단, 복무기간 6개월 이상은 1호봉으로 인정)



별표 3

경력직의 경력환산기준

경 력	환 산 율
해당직무와 동일한 계통의 업무에 종사한 경력	100%
해당직무와 유사한 업무에 종사한 경력	70%

※ 환산경력 1년당 1호봉, 연미만은 절삭



별표 4 (개정 2019. 7. 8.)

근무평정 평정자 및 확인자

평정대상자	평 정 자	확 인 자
사무국장	사무총장, 사무차장, 팀장	협회장, 사무총장
팀장	사무총장, 상임이사, 사무차장, 사무국장, 팀원	협회장, 사무총장
팀원	상임이사, 사무국장, 팀장, 팀원	협회장, 사무총장



별지 제1호 서식

사무국장 근무성적평정표

피평정자	직 위		조정자	직 위	
	성 명			성 명	(인)
	직 위		확인자	직 위	
	성 명			성 명	(인)
	직 위		평정자	직 위	
	성 명			성 명	(인)

평정기준	S : 매우 우수, A : 우수, B : 보통, C : 미흡, D : 매우 미흡

평 가 항 목	평 가 기 준	평 점									
		평 정 자					확 인 자				
		S	A	B	C	D	S	A	B	C	D
능 력 및 자 질	• 사무국의 업무 전반에 대한 명확한 목표와 비전을 제시하고 있는가										
	• 사무국의 업무 전반에 대한 제반 지식과 이해판단력을 갖추고 있는가										
	• 사무국의 목표와 관련하여 탁월한 수준의 성과를 내고 있는가										
	• 사무국장으로서 사무국 직원들에 대한 통솔력이 탁월한가										
	• 사무국 직원들이 잠재력과 창의력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도록 적극 지도하고 있는가										
	• 사무국 직원들의 의견을 존중하고 그 의사를 충분히 수렴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는가										
	• 사무국 직원간의 인화 및 협조를 위하여 충분히 노력하고 있는가										



평 가 항 목	평 가 기 준	평 점									
		평 정 자					확 인 자				
		S	A	B	C	D	S	A	B	C	D
	집행부와 사무국 직원간의 원활한 소통과 신뢰 제고를 위하여 충분히 노력하고 있는가										
인 품	사무국장으로서 필요한 제반 인품을 갖추어 사무국 직원들에 대하여 훌륭한 모범이 되고 있는가										
	업무수행에 있어서 객관적인 기준에 의거하여 공정하게 처리하고 있는가										
	부정과 불의에 야합하지 않고 사리보다 공익을 우선하고 있는가										
합 계											
기 타 의 견 (별자기능)											



팀장 근무성적평정표 (하향식 평가용)

조정자	직 위	
	성 명	(인)
확인자	직 위	
	성 명	(인)
평정자	직 위	
	성 명	(인)

피평정자	직 위	
	성 명	

평정요소	평정기준 및 배점	평 점		총 점	조 정
		평정자	확인자		
근무실적	• S등급 (15점) : 팀 업무에 대한 명확한 비전 및 제반 지식과 이해판단력을 갖추고, 팀의 목표와 관련하여 매우 탁월한 수준의 성과를 보임. • A등급 (13.5점) : 팀 업무에 대한 지식과 이해판단력이 상당하고, 팀의 목표와 관련하여 우수한 수준의 성과를 보임. • B등급 (12점) : 팀 업무에 대한 지식과 이해판단력을 어느 정도 갖추고, 팀의 목표와 관련하여 양호한 수준의 성과를 보임. • C등급 (10.5점) : 팀 업무에 대한 지식과 이해판단력이 다소 부족하고, 업무수행성과의 개선이 다소 요구됨. • D등급 (9점) : 팀 업무에 대한 지식과 이해판단력이 매우 부족하고, 업무수행성과의 개선이 절실히 요구됨.	등 급	등 급		
		점 수	점 수		
근무수행 능력	• S등급 (10점) : 상사를 잘 보좌하고, 팀원에 대하여 탁월한 통솔력을 가지며 매우 효율적이고 훌륭하게 팀의 업무를 수행함. • A등급 (9점) : 상사를 잘 보좌하고, 팀원에 대하여 우수한 통솔력을 가지며 효율적이고 우수하게 팀의 업무를 수행함.	등 급	등 급		



평정요소	평정기준 및 배점	평 점		총 점	조 정
		평정자	확인자		
	• B등급 (8점) : 상사를 대체로 잘 보좌하고, 팀원에 대하여 어느 정도의 통솔력을 가지며 양호하게 팀의 업무를 수행함. • C등급 (7점) : 상사를 잘 보좌하지 못하고, 팀원에 대하여 통솔력이 다소 부족하며 업무수행능력을 다소 신뢰하기 어려움. • D등급 (6점) : 상사를 잘 보좌하지 못하고, 팀원에 대하여 통솔력이 매우 부족하며 업무수행능력을 전혀 신뢰하기 어려움.	점 수	점 수		
근무수행 태도	• S등급 (10점) : 직무수행에 있어서 적극성·성실성·책임감이 매우 뛰어나고, 다른 직원들과의 인화력·협조력이 탁월함. • A등급 (9점) : 직무수행에 있어서 적극성·성실성·책임감이 우수하고, 다른 직원들과의 인화력·협조력이 우수함. • B등급 (8점) : 직무수행에 있어서 적극성·성실성·책임감이 양호하고, 다른 직원들과의 인화력·협조력이 양호함. • C등급 (7점) : 직무수행에 있어서 적극성·성실성·책임감 및 다른 직원들과의 인화력·협조력이 다소 부족함. • D등급 (6점) : 직무수행에 있어서 적극성·성실성·책임감 및 다른 직원들과의 인화력·협조력이 매우 부족함.	등 급	등 급		
		점 수	점 수		
총 점					
기 타 의 견 (별지가능)					



팀장 근무성적평정표 (상향식 평가용)

피평정자	직 위		조정자	직 위	
	성 명			성 명	(인)
			확인자	직 위	
				성 명	(인)
	직 위		평정자	직 위	
	성 명			성 명	(인)

평정요소	평정기준 및 배점	평 점		총 점	조 정
		평정자	확인자		
근무실적	• S등급 (15점) : 팀 업무에 대한 명확한 비전과 목표를 제시하고, 팀의 목표와 관련하여 매우 탁월한 수준의 성과를 보임. • A등급 (13.5점) : 팀 업무에 대한 비전과 목표를 가지고, 팀의 목표와 관련하여 우수한 수준의 성과를 보임. • B등급 (12점) : 팀 업무에 대한 비전을 가지려 노력하고, 팀의 목표와 관련하여 양호한 수준의 성과를 보임. • C등급 (10.5점) : 팀 업무에 대한 비전이 다소 없고, 업무수행 성과의 개선이 다소 요구됨. • D등급 (9점) : 팀 업무에 대한 비전이 전혀 없고, 업무수행 성과의 개선이 절실히 요구됨.	등 급	등 급		
		점 수	점 수		
근무수행 능력	• S등급 (10점) : 팀장으로서 매우 탁월한 통솔력을 가지고 있고, 팀원들이 잠재력과 창의력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도록 적극 지도하며, 새롭고 더 나은 업무수행 방식을 적극 장려함. • A등급 (9점) : 팀장으로서 우수한 통솔력을 가지고 있고, 팀원들이 잠재력과 창의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지도하며, 새롭고 더 나은 업무수행 방식을 장려 함.	등 급	등 급		
		점 수	점 수		



평정요소	평정기준 및 배점	평 점		총 점	조 정
		평정자	확인자		
	• B등급 (8점) : 팀장으로서 어느 정도의 통솔력을 가지고 있고, 팀원들이 잠재력과 창의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노력하는 편임. • C등급 (7점) : 팀장으로서 통솔력 및 팀원들의 능력에 대한 이해력이 다소 부족하며, 팀원의 업무수행을 다소 신뢰하지 않음. • D등급 (6점) : 팀장으로서 통솔력 및 팀원들의 능력에 대한 이해력이 매우 부족하며, 팀원의 업무수행을 전혀 신뢰하지 않음.				
근무수행 태도	• S등급 (10점) : 직무수행에 있어서 적극성·성실성·책임감이 매우 뛰어나고, 다른 직원들과의 인화력·협조력이 탁월함. • A등급 (9점) : 직무수행에 있어서 적극성·성실성·책임감이 우수하고, 다른 직원들과의 인화력·협조력이 우수함. • B등급 (8점) : 직무수행에 있어서 적극성·성실성·책임감이 양호하고, 다른 직원들과의 인화력·협조력이 양호함. • C등급 (7점) : 직무수행에 있어서 적극성·성실성·책임감 및 다른 직원들과의 인화력·협조력이 다소 부족함. • D등급 (6점) : 직무수행에 있어서 적극성·성실성·책임감 및 다른 직원들과의 인화력·협조력이 매우 부족함.	등 급	등 급		
		점 수	점 수		
총 점					
기 타 의 견 (별자기능)					



팀원 근무성적평정표 (하향식 평가용)

피평정자	직 위		조정자	직 위	
	성 명			성 명	(인)
			확인자	직 위	
				성 명	(인)
	직 위		평정자	직 위	
	성 명			성 명	(인)

평정요소	평정기준 및 배점	평 점		총 점	조 정
		평정자	확인자		
근무실적	• S등급 (15점) : 팀 업무에 대한 비전 및 목표를 명확히 이해하고, 팀의 목표와 관련하여 해당 직무 경험으로 달성하기 어려운 매우 탁월한 수준의 성과를 보임. • A등급 (13.5점) : 팀 업무에 대한 비전 및 목표를 인식하고, 팀의 목표와 관련하여 우수한 수준의 성과를 보임. • B등급 (12점) : 팀 업무에 대한 목표를 어느 정도 인식하고, 팀의 목표와 관련하여 양호한 수준의 성과를 보임. • C등급 (10.5점) : 팀 업무에 대한 인식이 다소 부족하고, 업무수행 성과의 개선이 다소 요구됨. • D등급 (9점) : 팀 업무에 대한 인식이 매우 부족하고, 업무수행 성과의 개선이 절실히 요구됨.	등 급	등 급		
		점 수	점 수		
근무수행 능력	• S등급 (10점) : 담당 직무수행에 필요한 지식과 기술을 충분히 갖추고 있고, 이해력·판단력·업무처리능력 등 직무수행능력이 매우 탁월함. • A등급 (9점) : 담당 직무수행에 필요한 지	등 급	등 급		



	식과 기술을 갖추고 있고, 이해력·판단력·업무처리능력 등 직무수행능력이 우수함.	점 수	점 수		
	• B등급 (8점) : 담당 직무수행에 필요한 지식과 기술을 어느 정도 갖추고 있고, 이해력·판단력·업무처리능력 등 직무수행능력이 양호함. • C등급 (7점) : 담당 직무수행에 필요한 지식과 기술이 다소 부족하고, 이해력·판단력·업무처리능력 등 직무수행능력의 개발이 다소 요구됨. • D등급 (6점) : 담당 직무수행에 필요한 지식과 기술이 매우 부족하고, 이해력·판단력·업무처리능력 등 직무수행능력의 개발이 절실히 요구됨.				
근무수행 태도	• S등급 (10점) : 직무수행에 있어서 적극성·성실성·책임감이 매우 뛰어나고, 다른 직원들과의 인화력·협조력이 탁월함. • A등급 (9점) : 직무수행에 있어서 적극성·성실성·책임감이 우수하고, 다른 직원들과의 인화력·협조력이 우수함. • B등급 (8점) : 직무수행에 있어서 적극성·성실성·책임감이 양호하고, 다른 직원들과의 인화력·협조력이 양호함. • C등급 (7점) : 직무수행에 있어서 적극성·성실성·책임감 및 다른 직원들과의 인화력·협조력이 다소 부족함. • D등급 (6점) : 직무수행에 있어서 적극성·성실성·책임감 및 다른 직원들과의 인화력·협조력이 매우 부족함.	등 급	등 급		
		점 수	점 수		
총 점					
기 타 의 견 (별지가능)					

개인별 업무량 및 만족도

작성자	직 위	
	성 명	(인)

* 점수 → 1 : 매우 낮음, 2 : 낮음, 3 : 보통, 4 : 높음, 5 : 매우 높음		
업 무	업 무 량	현재 나의 업무량은?
	업무난이도	나의 능력에 비해 현재 업무의 난이도는?
	능력활용도	담당업무에 비해 나의 능력 활용도는?
	만 족 도	현재 나의 업무에 대한 만족도는?
당 면 고 충	* 복수 선택 가능	
	회 사	① 업무량 과다 ② 창의력 제한 ③ 업무지식 부족 ④ 시설/장비 부족 ⑤ 인원 부족 ⑥ 출·퇴근 시간 ⑦ 교육기회 부족 ⑧ 불편한 인간관계 ⑨ 낮은 대우 ⑩ 회의과다 ⑪ 불공정한 평가 ⑫ 과 변경 희망 ⑬ 비합리적인 관행 ⑭ 상사와의 마찰 ⑮ 기타 ()
	개 인	① 본인건강 ② 가족건강 ③ 가족부양 ④ 가정불화 ⑤ 장래불안 ⑥ 출·퇴근 거리 ⑦ 개인시간 부족 ⑧ 경제적 문제 ⑨ 기타 ()
기 타	본인이 갖추어야 할 역량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는가?	
	회사에 바라는 사항이나 제안하는 제도가 있다면?	
	다른 팀으로의 이동을 희망하는지? 희망한다면 그 이유는?	
	① 희망함 ② 희망 안 함	
	③ 이유	
	장래 인사이동 시 가고 싶은 팀은? 그 이유는?	
① ()팀		
② 이유		
추천하고 싶은 우수사원은? (1명)		



별지 제2호 서식

징 계 의 결 요 구 서

인 적 사 항	성 명	(한글) (한자)			생년월일						
	소 속		직위(직급)		재직기간						
	주 소										
징 계 사 유	별지와 같음										
징계의결 요구권자의 의 견	징계의결 요구의견										
위와 같이 징계의결을 요구합니다. 년 월 일 대한변호사협회 협 회 장 (직 인) 직원징계위원회 위원장 귀중											



별지 제3호 서식

출 석 요 구 서

인 적 사 항	성 명	(한글)	소 속	
		(한자)	직위(직급)	
	주 소			
출석이유				
출석일시		년 월 일 시 분		
출석장소				
기 타		1. 징계의결요구서 부분 첨부		
유 의 사 항				
1. 출석하여 진술하기를 원하지 않을 때에는 첨부된 진술권 포기서를 즉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2. 사정이 있어 서면진술을 원할 때에는 징계위원회 개최일 전날까지 도착하도록 진술서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3. 정당한 사유서를 제출하지 않고 지정된 일시에 출석하지 않거나 서면진술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진술할 의사가 없는 것으로 보아 처리합니다.				
직원인사규칙 제48조제2항 및 직원인사규정 제2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귀하의 출석을 요구합니다. 년 월 일 직원징계위원회 위원장 (서명 또는 인) 귀하				



진술권 포기서

인 적 사 항	성 명	(한글)	소 속	
		(한자)	직위(직급)	
	주 소			
본인은 귀 징계위원회에 출석하여 진술하는 것을 포기합니다. 년 월 일 성명 (서명 또는 인) 직원징계위원회 귀중				



별지 제4호 서식

징 계 결 정 서

징계대상자	소 속	직위(직급)	성 명														
결 정 주 문																	
이 유																	
년 월 일																	
직원징계위원회																	
<table><tbody><tr><td>위 원 장</td><td>(서명 또는 인)</td></tr><tr><td>위 원</td><td>(서명 또는 인)</td></tr><tr><td>위 원</td><td>(서명 또는 인)</td></tr><tr><td>위 원</td><td>(서명 또는 인)</td></tr><tr><td>위 원</td><td>(서명 또는 인)</td></tr><tr><td>위 원</td><td>(서명 또는 인)</td></tr><tr><td>위 원</td><td>(서명 또는 인)</td></tr></tbody></table>				위 원 장	(서명 또는 인)	위 원	(서명 또는 인)	위 원	(서명 또는 인)	위 원	(서명 또는 인)	위 원	(서명 또는 인)	위 원	(서명 또는 인)	위 원	(서명 또는 인)
위 원 장	(서명 또는 인)																
위 원	(서명 또는 인)																
위 원	(서명 또는 인)																
위 원	(서명 또는 인)																
위 원	(서명 또는 인)																
위 원	(서명 또는 인)																
위 원	(서명 또는 인)																



별지 제5호 서식

직권면직 (의견·동의) 요구서

※ ()에는 해당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인 적 사 항	성 명	(한글) (한자)			생년월일						
	소 속		직위(직급)		재직기간						
	주 소										
직권면직 사 유	별지와 같음										
직원인사규칙 제3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직권면직에 대한 (의견·동의)를 요구합니다. 년 월 일 대한변호사협회 협 회 장 (직 인) 직원징계위원회 위원장 귀중											



별지 제6호 서식

직권면직 (의견·동의) 결정서

※ ()에는 해당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인 적 사 항	소 속	직위(직급)	성 명
결 정 주 문			
이 유			
년 월 일 직원징계위원회 위 원 장 (서명 또는 인) 위 원 (서명 또는 인) 위 원 (서명 또는 인) 위 원 (서명 또는 인) 위 원 (서명 또는 인) 위 원 (서명 또는 인) 위 원 (서명 또는 인)			



급여규정

1984. 2. 13.

규정 제6호

전부개정 1991. 2. 11.

개정 1991. 12. 23. 1994. 2. 15.
1995. 5. 13. 1996. 2. 12.
1997. 2. 10. 1997. 3. 17.
1997. 10. 13. 2000. 6. 26.
2002. 2. 4. 2002. 11. 11.
2006. 2. 13. 2017. 3. 22.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직원인사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4장에 정한 사무국 직원(이하 “직원”이라 한다)의 급여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급여의 종류] ① 급여의 종류는 본봉, 수당, 상여금, 퇴직금으로 한다. (신설 2002. 2. 4.)

1. ~ 4. <삭제> (1997. 10. 13.)

② 총책임금제 급여를 수령하는 직원에 관하여는 별도의 규정으로 정한다. (신설 2002. 2. 4.)

제3조 [급여의 결정] ① 급여는 이사회의 승인을 얻어 협회장이 정한다.

② 협회장은 급여를 결정함에 있어서는 적어도 일반표준생계비 등을 고려하여 문화생활을 할 수 있도록 정하여야 한다. (개정 1997. 10. 13.)

③ 급여의 지급시기와 방법 등은 협회장이 정한다. (개정 1997. 10. 13.)

제4조 [급여의 계산] ① 본봉은 월급으로 하고, 매월 1일부터 그 달 말일까지로 계산한다. (개정 1997. 10. 13.)

② <삭제> (2002. 2. 4.)

③ 승급 등으로 본봉의 변동이 있을 때에는 변동일을 기준으로 일할 계산한다. (개정 1997. 10. 13.)

④ 퇴직자의 본봉은 퇴직일까지의 근무일수에 따라 일할 계산하되 2년 이상 근속한 자로서 퇴직 당월 7일 이상 근무하였을 때에는 그 달 본봉의 전액을 지급한다. 다만,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아 퇴직하거나 징계처분으로 면직된 자에 대해서는 발령일을 기준으로 하여 일할 계산한다. (개정 2017. 3. 22.)

⑤ 본봉의 일할 계산은 한 달을 30일로 본다.

제5조 [호봉결정] ① <삭제> (2002. 2. 4.)

② 승진된 자의 호봉은 승진된 직급의 호봉 중에서 승진 전 직급의 호봉보다 바로 상위 금액에 해당하는 호봉으로 한다. (신설 1991. 12. 31.)



제6조 [호봉의 정기승급] ① 직원은 매년 1월 또는 7월에 승급사정을 받아 1호봉씩 정기승급한다.

(개정 2002. 11. 11.)

②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정기승급을 시키지 아니한다.

1. 승급자격기간 중 휴직 또는 정직된 자
2. 승급자격기간 중 징계처분을 받은 자
3. 승급자격기간 중 결근일수가 30일 이상인 자
4. 근속기간이 1년 미만인 자
5. 근무성적이 불량한 자와 승급기간 중 경위서를 2회 이상 제출한 자 (신설 2002. 2. 4.)

제7조 [호봉의 특별승급] ① <삭제> (1997. 10. 13.)

② 협회장은 직무수행능력이 우수하여 협회의 발전에 현저한 공로가 있는 직원에 대하여는 제6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이사회의 승인을 얻어 특별승급시킬 수 있다. (개정 1997. 10. 13.)

제8조 [본봉] ① 협회장은 매년 예산안과 함께 직급·호봉별 본봉표·직책수당표·가족수당표 및 직원별 급여지급표를 작성하여 정기총회에 제출한다. (개정 1997. 10. 13.)

② 전항의 경우 협회장은 전년도, 금년도와의 대비표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1997. 10. 13.)

③ 신규채용직원은 1년간 수습기간으로 하고, 이 기간 중에는 해당 호봉의 90%를 지급한다. (신설 1997. 10. 13.)

제9조 [직책수당] ① 부서책임자, 회계출납 담당자에게 직책수당을 지급한다. (개정 1997. 10. 13.)

② 직책수당은 매월 본봉에 부가 지급한다. (개정 1997. 10. 13.)

제10조 [출납수당] <삭제> (1997. 10. 13.)

제11조 [가족수당] ① 부양가족이 있는 직원에게 가족수당을 지급한다. (개정 1997. 10. 13.)

② 부양가족은 배우자(고정소득이 없는 자), 20세 미만의 2인 이내의 자녀, 65세 이상의 부모(동일주소 에 주민등록을 하고 소득이 없는 경우)로 하고 그 부양가족수는 5인 이내로 한다. (개정 2002. 11. 11.)

제12조 [후생수당] <삭제> (1997. 10. 13.)

제13조 [근속수당] <삭제> (1997. 10. 13.)

제14조 [휴일 및 시간외근무수당] 휴일 및 시간외근무를 한 직원에 대하여 근로기준법에 따라 휴일 및 시간외근무수당을 지급한다. (개정 1997. 10. 13.)

제15조 [연차휴가수당] ① 연차휴가를 실시하지 아니한 직원에 대하여는 연차휴가수당을 지급한다. 다만, 제6조제2항제3호에 해당하는 자는 제외한다. (개정 2006. 2. 13.)

② 연차휴가수당은 사용하지 아니한 잔여휴가일수를 근무일수로 보고 계산한다. (개정 2006. 2. 13.)

③ 연차휴가수당은 근로기준법에 의하여 계산한다. (개정 2006. 2. 13.)

④ 연차휴가수당은 연말에 지급한다. (개정 1997. 10. 13.)

제16조 [장기근속수당] 장기근속한 직원에게 매월 별표(1)과 같은 장기근속수당을 지급한다. (신설 2006. 2. 13.)



제17조 [체력단련수당] <삭제> (1997. 10. 13.)

제18조 [자녀학비보조수당] 만 4세(49개월)부터 고등학교에 취학하고 있는 자녀가 있는 직원에게 매월 자녀 1인당 20,000원의 자녀학비보조수당을 지급한다. (신설 2006. 2. 13.)

제19조 [물가수당] <삭제> (1997. 10. 13.)

제20조 [상여금] ① 근무성적이 우수한 직원에게 연간 본봉의 4배의 범위 내에서 상여금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1997. 10. 13.)

② 상여금은 3월, 6월, 9월, 12월의 각 월 급여 중 본봉의 동 액 이내의 금액으로 지급할 수 있다. 단, 수습기간 중에 있는 직원에게는 상여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0. 6. 26.)

③ 상여금은 입사 후 3개월 이상 근무한 자에게 지급한다.

제21조 [퇴직금] ① 직원이 1년 이상 근속한 후 퇴직하는 경우에는 근속연수 1년에 평균급여월액을 퇴직금으로 지급한다. 다만, 근속연수가 11년 이상 15년 미만일 때에는 해당 근속연수에 2를 가산하고, 근속연수가 15년 이상일 때에는 4를 가산한 수치를 근속연수로 보고 퇴직금을 계산한다. (개정 1997. 10. 13.)

② 평균급여 월액은 퇴직 직전 3개월 간에 지급한 급여 총액을 그 기간의 일수로 나누고 30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③ 근속연수 계산에 있어서 월 미만의 잔여일수가 15일 이상일 때에는 1개월로 계산한다.

④ 휴직기간은 근속연수에 통산하지 아니한다. 다만, 업무상 질병으로 인한 휴직기간은 이를 합산한다.

⑤ 퇴직금은 퇴직 후 본인 또는 근로기준법시행령 제44조에 정한 유족에게 지급한다. (개정 2000. 6. 26.)

제22조 [신용대출] 퇴직금기금의 범위 내에서 직원의 가계보조를 위한 신용대출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신용대출액은 해당직원의 퇴직금산정액을 초과할 수 없으며, 대출방법 등은 협회장이 정한다. (신설 1991. 12. 23.)

부 칙 (1991. 2. 11.)

① 이 규정은 1991. 2. 11.부터 시행한다.

② 1991년도 직원의 급여는 이 규정에 따라 책정할 수 있다.

부 칙 (1991. 12. 23.)

이 규정은 1992. 1. 1.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94. 2. 15.)

이 규정은 1994. 1. 1.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96. 2. 12.)

이 규정은 1996. 1. 1.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97. 2. 10.)

이 규정은 1997. 3. 10.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97. 10. 13)

① 이 규정은 1998. 1. 1.부터 시행한다.

② [경과조치] 이 규정 시행 당시 5년 이상 근속한 자에 대해서는 이 규정 시행 전 근속기간에 대하여 아래 산식에 의한 지급배수를 적용한다.

산식 : $\text{근속연수} \times [150 + (\text{근속연수} - 5\text{년})] \div 100$

부 칙 (2000. 6. 26.)

이 규정은 2000. 7. 29.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02. 2. 4.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03. 1. 1.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6. 2. 13.)

이 규정은 공포 후 20일이 경과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7. 3. 22.)

이 규정은 공포 후 20일이 경과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별표 1

근 속 연 수	5년 이상	10년 이상	15년 이상
월 지 급 액	30,000원	40,000원	50,000원



사무처리규정

1989. 6. 26.

규정 제29호

개정 1998. 5. 25. 2000. 6. 26.
2001. 7. 9. 2005. 4. 18.
2014. 2. 3. 2018. 4. 9.
2018. 11. 19. 2022. 2. 14.

제 1 장 총 칙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회칙 제57조제2항 및 회규관리규칙 제3조제3항에 의하여 본 협회 사무처리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문서화의 원칙] ① 협회의 사무처리는 문서에 의함을 원칙으로 하며, 명확·신속하여야 한다.
② 긴급한 사항에 관하여 구두 또는 전화 등으로 처리한 사항도 그 요지를 문서에 기록하여 두어야 한다.

제3조 [결재] ① 협회의 모든 사무는 사무차장, 사무총장, 소관 상임이사, 부협회장, 협회장의 순으로 결재를 받은 후 이를 집행한다.
② 협회장이 출장, 휴가 그 밖의 사유로 결재가 불가능할 때에는 부협회장이 대결하고 협회장의 후결을 받아야 한다.

제3조의2 [사무의 인계·인수] 직원이 전보 또는 사무분장의 조정 등의 사유로 사무를 인계·인수하는 때에는 담당사무에 관한 진행사항·관계문서·자료 기타 업무와 관련되는 사항을 구체적으로 명확하게 인계·인수하여야 한다. (신설 1998. 5. 25.)

제 2 장 문서의 처리와 보존

제4조 [기안] ① 기안문서는 별지 제1호 서식에 의거 담당자가 기안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성안하여 결재가 끝남으로써 성립한다. (개정 1998. 5. 25.)

② 정기 보고사항 기타 관계적인 사무에 관한 문서는 그 내용을 서식에 기입하는 방법으로 기안할 수 있다. (신설 1998. 5. 25.)

③ 문서의 용지는 도표, 통계표, 증명서 기타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A4용지



(210mm×297mm)를 사용한다.

④ 문서작성에 있어서 그 내용을 항목으로 세분화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1. 첫째 항목 : 1, 2, 3, 4,.....
2. 둘째 항목 : 가, 나, 다, 라,.....
3. 셋째 항목 : (1), (2), (3), (4),.....
4. 넷째 항목 : (가), (나), (다), (라),.....
5. 위 항목 이상으로 구분하고자 할 때에는 작성자의 재량에 의하여 적당히 구분할 수 있다.

⑤ 문서의 내용이 서로 관련성이 있는 문서로서 동일한 기안용지에 일괄하여 기안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제1안·제2안 등으로 구분하여 동일한 기안용지에 기안할 수 있다. (신설 1998. 5. 25.)

⑥, ⑦, ⑧ <삭제> (1998. 5. 25.)

제4조의2 [문서의 통제] ① 협회장 등의 명의로 발신하는 문서는 문서통제자의 심사를 받아야 한다.

② 문서통제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문서를 심사하는 때에는 다음 사항을 검토하여야 하며, 심사결과 미비된 사항이 있는 때에는 그 사항을 처리팀에 통보하여 보완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8. 11. 19.)

1. 제3조에 의한 결재권자의 일치 여부
2. 기안문과 시행문서의 일치 여부
3. 문서번호, 시행문서상의 처리담당자 기재 여부 등 정형화된 기재사항의 정확 및 누락 여부
4. 전결, 대결 구분의 표시 및 착오 여부
5. 첨부물의 첨부 여부 (신설 1998. 5. 25.)

제4조의3 [문서의 간인]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2장 이상으로 이루어지는 문서는 간인하여야 한다.

1. 전후 관계를 명백히 할 필요가 있는 문서
2. 사실 또는 법률관계의 증명에 관계되는 문서
3. 등록·결정서 등에 관계되는 문서 (신설 1998. 5. 25.)

제4조의4 [문서의 발송] ① 발송문서는 별지 제1호 서식에 결재된 기안문을 정서하여 발송자의 직위명, 성명 및 직인을 찍고, 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한 문서발송부에 문서번호와 발송연월일을 각 기입한다. 다만, 협회장으로부터 성명의 기재를 요하지 않는 뜻의 지시가 있는 문서는 변협명, 위원회명 또는 직명만을 쓸 수 있다.

② 제1항의 문서발송부는 필요시 해당팀에서도 따로 작성하여 비치할 수 있다. (개정 2018. 11. 19.)

③ 협회장의 명의로 발신하는 문서 중 내용이 중요한 문서는 인편·등기우편 기타 발송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특수한 방법으로 발송하여야 한다. (신설 1998. 5. 25.)

제4조의5 [문서번호] 제4조의4 제1항에 의한 각 팀별 문서번호는 별표 제1호와 같다. (개정 2018.



11. 19.)

제5조 [문서의 접수, 처리] ① 접수된 문서는 총무팀에서 개봉분류하여 별지 제3호 서식에 의한 문서접수부에 기재하고 문서의 첫면 좌측하단에 접수인을 찍은 후 주무팀에 송부하며 관련부서에 해당문서의 접수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8. 11. 19.)

② 제1항의 문서접수부는 필요시 해당팀에서도 따로 작성하여 비치할 수 있다. (개정 2018. 11. 19.)

③ 제1항에 의하여 송부받은 문서는 결재권자의 선결을 받아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선결을 받을 수 없거나 일상업무에 관한 문서로서 그 내용이 경미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1998. 5. 25.)

④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선결을 하는 결재권자는 문서의 처리기한 및 처리방법을 지시할 수 있다. (신설 1998. 5. 25.)

제6조 [회의록] ① 모든 회의에는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② 회의록에는 회의의 성립내용과 회의의 경과, 결의내용의 요지를 기록하여야 한다.

제7조 [문서의 분류] ① 문서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분류한다. (개정 2018. 4. 9.)

1. 1차 분류 : 각 부서를 기준으로 한다. (개정 2018. 4. 9.)

2. 2차 분류 : 각 부서의 분장업무 및 세부사무별로 한다. (개정 2018. 4. 9.)

3. <삭제> (2018. 4. 9.)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분류된 문서의 분류번호는 별표 제2호와 같다. 다만, 이 규정에서 정하지 아니한 문서는 가장 유사한 기능의 문서번호에 따른다. (개정 1998. 5. 25.)

③~④ <삭제> (1998. 5. 25.)

제7조의2 [문서의 편철] ① 처리가 끝난 문서는 소정의 문서철에 연도별 완결일자 순으로 최근의 문서가 위에 오도록 철하고, 한 개의 문서철에 철하는 문서는 매년 1월 1일부터 당해연도 12월 31일까지의 1년치를 철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문서의 양은 200매 내외로 철하여야 한다.

② 수개의 문자가 내용적으로 관련이 있는 경우에는 그 내용을 최종적으로 종결하는 문서가 처리·완결된 때에는 발생, 경과 및 완결 순으로 최근문서가 위에 오도록 하여 1건 문서로 철하여야 한다.

③ 소정의 문서철에 편철이 곤란한 문서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문서의 규격에 따라 적당한 방법으로 편철할 수 있다.

④ 편철된 문서의 표지는 별표 제3호에 의하여 작성하여야 한다.

(신설 1998. 5. 25.)

제7조의3 [문서색인목록] ① 문서철에는 별지 제4호 서식의 문서색인목록을 작성하여 문서철 표지의 이면에 첨부하여야 한다.

② 문서색인목록은 개별문서단위로 작성한다.

(신설 1998. 5. 25.)

제7조의4 [문서의 보관] ① 문서는 보존기간의 기산일부터 1년간 처리팀에서 이를 보관하여야 한



다. (개정 2018. 11. 19.)

② 문서를 처리하는 처리팀의 문서보관은 자물쇠장치가 되어 있는 서류함에 보관하여야 한다.

(개정 2018. 11. 19.)

③ 문서보관의 편의를 위하여 그 내용을 컴퓨터 디스켓에 수록하여 보관할 수 있다.

(신설 1998. 5. 25.)

제7조의5 [문서의 이관] ① 제7조의3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관기간이 끝난 문서는 총무팀으로 이관하여야 한다. (개정 2018. 11. 19.)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문서를 이관할 때에는 처리팀에서 별지 제5호 서식의 보존문서인계·이관서 2부를 작성하여 1부는 수령자의 서명날인을 받아 자체보관하고, 1부는 인계·이관되는 문서와 함께 총무팀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8. 11. 19.)

제8조 [문서의 보존] ① 이관된 문서는 일정한 문서보존실에 보존하여야 하며, 이 경우 서가 등에 정리·보존할 수 있다.

② 보존된 문서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처리팀, 문서명, 보존기간, 생산연도, 총 매수, 분류번호별로 보존하여야 하며, 보존하고 있는 문서의 현황을 파악하기 위하여 별지 제6호 서식의 보존문서기록대장을 작성·비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8. 11. 19.)

③ 보존문서 및 주무부서의 팀장은 연 1회 이상 보존문서와 보존문서기록대장을 대조하여 보존 상태를 확인하여야 하고, 보존문서의 변질 등에 대한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개정 2018. 11. 19.)

④~⑤ <삭제> (1998. 5. 25.)

제8조의2 [문서의 보존기간] ① 문서의 보존기간은 별표 제2호와 같다. (개정 2018. 4. 9.)

② 이 규정에 규정되지 아니한 문서의 보존기간은 유사문서의 보존기간에 따른다.

③ 문서의 보존기간 기산일은 당해 문서를 처리·완결한 날이 속하는 해의 다음해 1월 1일로 한다.

④ 협회장이 사료 또는 참고자료 기타 특별한 사유로 보존의 필요가 있다고 인정한 기록 또는 서류 등은 보존기간 만료 후에도 이를 보존하여야 한다.

(신설 1998. 5. 25.)

제9조 [문서의 폐기] ① 보존기간이 경과된 문서를 폐기하여야 할 때에는 폐기일시와 방법을 서면으로 작성하여 사무총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1998. 5. 25.)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문서를 폐기할 때에는 별지 제7호 서식의 보존문서폐기대장에 폐기 내용을 기재하여야 한다. 단, 폐기문서의 문서색인목록은 별도로 보관하여야 한다. (개정 1998. 5. 25.)

③ 소각을 요하지 않는다고 인정되는 것은 적당한 방법으로 처분할 수 있다.

④ 문서의 폐기에 대한 실무처리는 총무팀에서 행한다. (개정 2018. 11. 19.)



제 3 장 재무관리 (1998. 5. 25. 본장삭제)

제10조 ~ 제12조 <삭제> (1998. 5. 25.)

제 4 장 비품 및 도서의 관리

제13조 [비품의 관리] ① 비품은 비품대장에 등록하고 일정한 장소에 안전하게 비치·관리한다.

② 훼손된 비품은 이를 수리 재사용하여야 한다.

③ 비품을 폐기하고자 할 때에는 제9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14조 [도서의 관리] ① 도서는 별지 제8호의 도서대장에 등록하고 일정한 장소에 정리·보관한다.

(개정 1998. 5. 25.)

② 열람자가 도서를 훼손한 때에는 이를 변상하게 하여야 한다.

제15조 [간행물 배포등] 잡지 기타 간행물의 간행은 별지 제9호 서식에 의한 간행물대장에, 배포는 별지 제10호 서식에 의거 배포상황을 기입하여야 한다. (개정 1998. 5. 25.)

제 5 장 인장의 관리

제16조 [인장의 종류] ① 협회에서 사용할 인장은 회인, 회장직인, 법률구조사업회장인, 연수원장인, 사무총장인, 분과위원장인, 총회 의장인 기타 협회장이 필요하다고 승인한 인장을 둘 수 있다.

② 각 인장은 한 개씩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필요시에는 협회장 승인하에 용도별로 복수제작, 사용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경우에는 적당한 곳에 일련번호를 붙여 각 인장을 구별하여야 한다.

제17조 [인장의 등록] 총무팀장은 별지 제11호 서식에 의한 인장등록대장을 비치하고 인장을 신조 또는 개조할 때에는 인영을 등록하여야 한다. (개정 2018. 11. 19.)

제18조 [인장의 사용] ① 인장사용부서는 별표 제12호 서식에 의한 인장사용대장을 비치하고 사용하고자 할 때에는 관련부서, 문서명, 날인연월일을 기재한 뒤 날인하여야 한다. (개정 1998. 5. 25.)

② 모든 발송문서는 결제가 끝난 뒤에 날인하여야 한다.

③ 긴급을 요하는 문서는 사무차장이 전화로 승인을 받고 사용을 지시할 수 있다.

④ 인장의 사용범위는 다음과 같다.

1. 회인 : 사령장, 위촉장, 표창장, 단체결연장

2. 회장직인 : 대외발송문서, 제증명, 사무직원신분증, 계약서 등 권리문서
3. 법률구조사업회장인 : 법률구조사업회 관리문서
4. 연수원장인 : 변호사연수원 관리문서
5. 사무총장인 : 사무총장 관리문서
6. 분과위원장인 : 소관 위원회 관리문서
7. 총회 의장인 : 총회 관리문서

제19조 [인장의 제작] ① 인장의 자체는 한글 또는 한문 가로쓰기로 제작한다.

② 사용 중인 인장의 인영이 마멸로 인하여 개인하고자 할 때에는 협회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20조 [인장의 보관] ① 모든 인장은 사무차장이 보관하며 일과후에는 함 또는 금고에 보관하여야 한다.

② 인장을 사무소 밖에서 사용하고자 할 때에는 협회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21조 [인장의 폐기] ① 인장의 파손 기타 사유로 사용불가능할 때에는 협회장의 승인을 받아 폐기한다.

② 폐기승인된 인장은 지정된 장소에 1년간 보관 후 폐기하여야 하며, 사무차장은 인장등록대장에 폐기일, 방법, 입회자, 참고사항을 명기하고 날인하여야 한다.

제22조 [사고발생시의 조치] 인장의 분실 기타의 사고가 발생하였을 때에 이를 발견한 자는 지체 없이 협회장에게 그 사유를 보고하고 그 지시에 따라 조치하여야 한다.

제23조 [시행세칙] 이 규칙을 시행하는데 필요한 사항은 세칙으로 정할 수 있다. (신설 1998. 5. 25.)

부 칙

이 규정은 1989. 7. 1.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93. 5. 10.)

이 규정은 1993. 5. 10.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98. 5. 25.)

이 규정은 1998. 7. 1.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0. 6. 26.)

이 규정은 2000. 7. 29.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5. 4. 18.)

이 규정은 2005. 4. 20.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8. 4. 9.)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문서의 처리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정 시행일 이전에 종전 별표 제2호에 따라 분류된 문서는 개정 별표 제2호에 따라 다시 분류한다. 다만, 개정 별표 제2호에서 정하지 아니한 문서는 가장 유사한 기능의 분류번호 및 보존기간에 따른다.

부 칙 (2018. 11. 19.)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22. 2. 14.)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1호 서식 (개정 2000. 6. 26.)

☎06234 | 주소: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124 18층 (역삼동, 대한변협회관) | ☎ 02-3476-4000 | FAX: 02-3476-4008
 담당팀 : ○○팀, 팀장 : ○○○, 담당 : ○○○, E-mail : @koreanbar.or.kr 홈페이지 : koreanbar.or.kr

문서번호 v○○ 제v○○○v호

시행일자 v○○○○. ○. ○.

수 신 v○○○

참 조 v○○○

제 목 v○○○

기안일	○○○○. ○. ○.	결 재	●	
보 존	○년 (○○○○. ○. ○.까지)		●	
처리팀	○ ○ 팀		●	
팀 장	○○○		●	
담당자	○○○		●	

1.v(본문내용)-----

2.v(본문내용)-----

붙임v:v○○○ 1부.vv<끝>

< 작 성 요 령 >

① v : 띄어쓰기

② 문서번호 및 결재란 : 함초롬돋움, 포인트 12

③ 결재란은 발송문서 작성 시 삭제(내용 및 테두리 모두 삭제 또는 투명처리)

● : 결재할 자의 직명을 기재하고 오른쪽에 서명 또는 날인한다.

④ 제목 : 함초롬돋움, 포인트 12, 진하게

⑤ 본문 : 함초롬바탕, 포인트 12,

줄간격 160, 장평 100, 자간 0(다만, 작성 문서에 따라 일부 변경가능)

본문 첫글자 시작 위치는 기안문 제목과 열을 맞춰 시작

같은 문단 내에서 내용을 나눠 기재할 때에는 두 번째 문단 맨 앞에서 문장 시작

대한변호사협회

협회장 ○ ○ ○

수신처 : v○○○



별지 제2호 서식

문 서 발 송 부

번호	발송 일자	문서 번호	수신	발신	제 목	첨부물		발송방법		원 본 인수인	비 고
						명칭	수량	우편	사송		

별지 제3호 서식

문 서 접 수 부

번호	일자	문서 번호	발신	제 목	첨부물		처리 담당	인계 일자	인수인	비 고
					명칭	수량				

별지 제4호 서식

문서색인목록

색인 번호	연월일	문서번호	제 목	수신	발신	비고

별지 제5호 서식

보존문서인계·이관서

부서명 :

일련번호	보존기간	생산연도	분류번호	문 서 철 명(수량)
받은날			받은사람	



별지 제6호 서식

보존문서기록대장

생산부서 :

생산연도 :

일련 번호	분류번호	보존 기간	문 서 철 명(수량)	이관연월일	폐기연월일

별지 제7호 서식

보존문서폐기대장

분류 번호							
일련 번호	허 가 연월일	생산연도	문 서 철 명(수량)	폐기일	폐기방법	확인	비고

별지 제8호 서식

도 서 대 장

일 자	등록 번호	청구 번호	저 자	서 명	권차	출판사	출판년	수입처	가격	비고

별지 제9호 서식

간행물대장

간행일자	등록번호	간 행 물 명	권차	출판과	부수	확인



별지 제10호 서식

간행물배포대장

1. 간행물

간행일자	등록번호	간행물명	권차	출판사	부수

2. 배포현황

배포처	배포일	부수	비고

별지 제11호 서식

인장등록대장

종류	인형	신조		개조		폐기			
		일자	인재	일자	인재	일자	방법	입회자	확인인

별지 제12호 서식

인장사용대장

연번	일자	관 련 부 서	문 서 번 호	수 신	문 서 명	통수	날인자



별표 제1호 서식 (개정 2022. 2. 14.)

문 서 번 호

부 서 명	문 서 번 호	비 고
총 무 팀	총 무 제 0 0 0 호	
법 제 팀	법 제 제 0 0 0 호	
인 권 팀	인 권 제 0 0 0 호	
회 원 팀	회 원 제 0 0 0 호 등 록 제 0 0 0 호	
공 보 팀	공 보 제 0 0 0 호	
운 리 팀	징 계 제 0 0 0 호 조 사 제 0 0 0 호 청 원 제 0 0 0 호 운 리 제 0 0 0 호	
사 업 팀	사 업 제 0 0 0 호	
국 제 팀	국 제 제 0 0 0 호	
연 수 팀	연 수 제 0 0 0 호	
재 무 팀	재 무 제 0 0 0 호	
기 획 팀	기 획 제 0 0 0 호	
비 서 실	비 서 제 0 0 0 호	
평 가 팀	평 가 제 0 0 0 호	
전 산 팀	전 산 제 0 0 0 호	
입 법 지 원 실	입 법 제 0 0 0 호	
미 디 어 소 통 팀	미디어소통 제000호	
정 책 팀	정 책 제 0 0 0 호	



별표 제2호 (개정 2022. 2. 14.)

문서의 분류번호 및 보존기간

1. 제1차 분류 및 분류번호

부 서 명	분 류 번 호	비 고
총 무 팀	100	
법 제 팀	200	
인 권 팀	300	
회 원 팀	400	
공 보 팀	500	
운 리 팀	600	
사 업 팀	700	
국 제 팀	800	
연 수 팀	900	
재 무 팀	1000	
기 획 팀	1100	
비 서 실	1200	
평 가 팀	1300	
전 산 팀	1400	
입 법 지 원 실	1500	
미 디 어 소 통 팀	1600	
정 책 팀	1700	



2. 제1차 분류 및 제2차 분류

[총무팀]

부 서 명	분류번호		문 서 명	보존연한
	1차	2차		
총 무 팀	100	총무이사		
		1	직원인사발령부	영구
		2	직원인사기록부	영구
		3	인장등록대장	영구
		4	보존문서폐기대장	5년
		5	총회관계서류철	5년
		6	문서접수부	5년
		7	문서발송부	5년
		8	노사관계서류철	5년
		9	직원구비서류철	3년
		10	이사회관계서류철	5년
		11	상임이사회관계서류철	5년
		12	총무위원회철	5년
		13	지방변호사회관계철	5년
		14	제증명원철	3년
		15	감정인 등 추천관계서류철	5년
		16	기타서류철	3년
		17	한국법률문화상 운영위원회철	5년
		18	지방변호사회총회철	3년
		19	협회 법인 등기 관계철	영구
		20	업무협약서철	영구



[총무팀]

부 서 명	분류번호		문 서 명	보존연한
	1차	2차		
총 무 팀	100	21	여성변호사특별위원회관계철	5년
		22	청년변호사특별위원회관계철	5년
		23	사내변호사특별위원회관계철	5년
		24	<삭 제>	
		25	선거관리위원회관계철	5년
		26	자문위원회관계철	5년
		27	직원인사위원회관계철	5년
		28	직원징계위원회관계철	5년
		29	협회장 선거관계철	5년
		30	대의원 선거관계철	5년
		31	감사 선거관계철	5년
		32	전국지방변호사회장 협의회관계철	5년
		33	대한변호사협회장배 전국변호사 축구대회관계철	5년
		34	대한변호사협회장배 전국변호사 바둑대회관계철	5년
		35	각종 계약서철	5년
		36	유관기관 관계서류철	3년
		37	유관기관 등 간담회철	3년



[법제팀]

부 서 명	분류번호		문 서 명	보존연한
	1차	2차		
법 제 팀	200	법제이사		
		1	법제위원회철	5년
		2	<삭 제>	
		3	사법평가위원회철	5년
		4	각법령관계건의·의견서철	5년
		5	변호사법질의서철	5년
		6	일반법률질의서철	5년
		7	대법원간담회철·대검찰청간담회철	5년
		8	법제관계기타서류철	5년
		9	대법원예규등관계철	5년
		10	법제연구원관계철	5년
		11	헌법개정특별위원회철	5년
		12	<삭 제>	
		13	<삭 제>	



[인권팀]

부 서 명	분류번호		문 서 명	보존연한
	1차	2차		
인 권 팀	300	인권이사		
		1	인권위원회서류철	5년
		2	인권관련소위원회철	5년
		3	인권보고서철	5년
		4	일반진정서철	5년
		5	인권관계기타서류철	5년
		6	환경과에너지연구위원회철	5년
		7	북한인권특별위원회철	5년
		8	북한인권특별위원회 소위원회철	5년
		9	국제인권특별위원회철	5년
		10	일제피해자인권특별 위원회철	5년
		11	인권관련특별위원회철	5년
		12	인권관련특별위원회 소위원회철	5년



[회원팀]

부 서 명	분류번호		문 서 명	보존연한
	1차	2차		
회 원 팀	400	회원이사		
		1	변호사명부	영구
		2	법무법인(유한)명부	영구
		3	합동법률사무소명부	영구
		4	변호사등록거부철	영구
		5	변호사등록취소철	영구
		6	법무법인관계서류철	3년
		7	변호사업무정지명령철	영구
		8	법무부보고철	3년
		9	회원등록관계제증명발급대장	5년
		10	회원위원회철	5년
		11	등록심사위원회철	5년
		12	고충처리위원회철	3년
		13	회원관계서류철	3년
		14	법무법인소속회원관계 서류철	3년
		15	확장된단일사무소심사 위원회철	3년
		16	외국법자문사명부철	영구
		17	외국법자문사등록신청서철	영구
		18	외국법자문법률사무소 등록신청서철	영구
		19	외국법자문사등록취소철	영구
		20	외국법자문사자격갱신철	영구



[회원팀]

부 서 명	분류번호		문 서 명	보존연한
	1차	2차		
회 원 팀	400	21	합작법무법인명부	영구
		22	외국법자문사명부변동 신청서철	3년
		23	외국법자문법률사무소 변동신청서철	3년
		24	외국법자문법률사무소 공동사건철	3년
		25	외국법자문사법무부보고철	3년
		26	외국법자문사관계서류철	3년
		27	외국법자문사등록심사 위원회철	5년
		28	합작법무법인관계서류철	3년



[공보팀]

부 서 명	분류번호		문 서 명	보존연한
	1차	2차		
공 보 팀	500	공보이사		
		1	도서대장	3년
		2	보도자료·성명서철	3년
		3	회지발송현황철	3년
		4	회지정기구독철	3년
		5	회지등록관계서류철	3년
		6	회지편집위원회철	3년
		7	신문편집위원회철	3년
		8	신문편집위원회 관계서류철	3년
		9	신문철	3년
		10	원고료등지불관계철	3년
		11	기타 신문관계서류철	3년
		12	공보위원회철	3년



[윤리팀]

부 서 명	분류번호		문 서 명	보존연한
	1차	2차		
윤 리 팀	600	윤리이사		
		1	윤리위원회회의록철	1년
		2	개인별 재청원철	3년
		3	청원이첩 결정철	3년
		4	재청원처리결과통지결정철	3년
		5	경위서제출요청결정철	5년
		6	재청원서처리결과보고철	3년
		7	청원관련잡서류철	3년
		8	윤리위원회결정철	5년
		9	윤리위원회잡서류철	5년
		10	감찰위원관계철	5년
		11	감찰보고서철	5년
		12	조사위원회결정철	5년
		13	조사위원회회의록철	1년
		14	조사위원회잡서류철	3년
		15	조사사건부	3년
		16	개인조사기록철	3년
		17	징계결정서철	영구
		18	징계사건부	영구
		19	개인별징계기록철	5년
		20	징계개시청구철	5년
		21	징계위원회결정문서철	5년
		22	징계위원회의사록철	1년
		23	징계위원회잡서류철	1년
		24	징계결과통보서철	3년
		25	이의신청경유철	3년
		26	이의신청서철	3년
		27	회규 위반 법률플랫폼 가입 회원 조사를 위한 특별조사위원회철	3년



[사업팀]

부 서 명	분류번호		문 서 명	보존연한
	1차	2차		
사 업 팀	700	사업이사		
		1	사업위원회철	5년
		2	공익활동심사위원회철	3년
		3	기타서류철	3년
		4	통일문제연구위원회철	3년
		5	변호사공익대상심사위원회철	3년
		6	<삭 제>	
		7	<삭 제>	
		8	<삭 제>	
		9	<삭 제>	
		10	성년후견법률지원특별 위원회철	3년



[국제팀]

부 서 명	분류번호		문 서 명	보존연한
	1차	2차		
국 제 팀	800	국제이사		
		1	IBA관계서류철	5년
		2	LAWASIA관계서류철	5년
		3	일본변호사연합회	5년
		4	중화전국율사협회	5년
		5	POLA관계서류철	5년
		6	기타국제관계철	5년
		7	법률시장개방관련철	5년
		8	국제위원회철	5년
		9	IPBA관계서류철	5년
		10	IAKL관계서류철	5년
		11	LAZAK관계서류철	5년
		12	IILACE관계서류철	5년
		13	UIA관계서류철	5년
		14	미국변호사협회	5년
		15	영국사무변호사회	5년
		16	영국법정변호사회	5년
		17	홍콩사무변호사회	5년
		18	말레이시아변호사회	5년
		19	러시아연방변호사회	5년
		20	독일변호사회	5년
		21	대만변호사회	5년
		22	기타 국가	2년
		23	일본 영리더프로그램	5년
		24	영국법정변호사회 교환연수	5년
		25	홍콩사무변호사회 교환연수	5년
		26	말레이시아변호사회 교환연수	5년
		27	청년법조인 해외진출 아카데미	5년



[연수팀]

부 서 명	분류번호		문 서 명	보존연한
	1차	2차		
연 수 팀	900	교육이사		
		1	변호사연수원철	5년
		2	변호사연수원운영위원회철	5년
		3	변호사연수회관계서류철	5년
		4	변호사대회관계서류철	5년
		5	변호사대회집행위원회철	5년
		6	특별연수관계철	5년
		7	전문분야아카데미관계철	5년
		8	윤리연수관계철	3년
		9	기타연수관계철	3년
		10	지식재산연수원철	5년
		11	지식재산연수원운영위원회철	5년
		12	온라인변호사연수원철	5년
		13	연수교육심사소위원회철	5년
		14	변호사시험합격자연수 운영위원회철	5년
		15	변호사시험합격자연수 위원·교원·강사 관계철	5년
		16	법무부 관련철	5년
		17	국고보조금 관련철	5년
		18	참가금 관련철	5년
		19	변호사시험합격자연수기금 특별회계 전표철	5년
		20	변호사시험합격자연수 운영 관련철	5년
		21	변호사시험 제도 개선 관련철	5년
		22	변호사수급정상화특별위원회철	5년
		23	대한변호사협회 법학전문대학원 평가 및 발전 특별위원회철	5년
		24	교육위원회관계서류철	5년
		25	교육관계일반서류철	3년
		26	학술위원회철	5년



[재무팀]

부 서 명	분류번호		문 서 명	보존연한
	1차	2차		
재 무 팀	1000	재무이사		
		1	예결산서철	30년
		2	월별결산서철	5년
		3	입·출금전표(증빙서)철	5년
		4	급여지급대장	5년
		5	4대보험관련서철	5년
		6	원천징수신고증빙관련철	5년
		7	직원퇴직금철	영구
		8	영수증원부수급대장	1년
		9	<삭 제>	
		10	시간외근무수당및휴일근무수당 지급대장	3년
		11	분담금납부고지서철	5년
		12	외국법자문사월회비관련서철	5년
		13	직원복지포인트신청서철	3년
		14	재무관계서류철	5년
		15	예산지출신청서철	5년
		16	신문광고비입금대장	3년
		17	세제위원회철	5년
		18	재무위원회철	5년



[기획팀]

부 서 명	분류번호		문 서 명	보존연한
	1차	2차		
기 획 팀	1100	기획이사		
		1	기획위원회철	5년
		2	<삭 제>	
		3	일과가정양립을위한위원회철	3년
		4	<삭 제>	
		5	<삭 제>	
		6	<삭 제>	
		7	<삭 제>	
		8	기타서류철	3년
		9	대한변협 노무변호사회철	5년
		10	대한변협 등기경매변호사회철	5년
		11	대한변협 세무변호사회철	5년
		12	대한변협 채권추심변호사회철	5년
		13	대한특허변호사회철	5년
		14	대한변협 국공선변호사회철	5년
		15	대한변협 도산변호사회철	5년
		16	대한변협 신탁변호사회철	5년
		17	대한변협 이민출입국변호사회철	5년



[평가팀]

부 서 명	분류번호		문 서 명	보존연한
	1차	2차		
평 가 팀	1300	기획이사		
		1	검사평가특별위원회철	5년
		2	검사평가관계서류철	5년
		3	법관평가특별위원회철	5년
		4	법관평가관계서류철	5년
		5	우수변호사선정특별위원회철	3년
		6	우수변호사관계서류철	3년
		7	입법평가특별위원회철	3년
		8	<삭 제>	
		9	<삭 제>	
		10	<삭 제>	
		11	<삭 제>	
		12	<삭 제>	
		13	<삭 제>	
		14	<삭 제>	
		15	<삭 제>	
		16	기타서류철	1년
		17	IT·블록체인특별위원회철	5년
		18	전문분야등록심사위원회철	5년



[전산팀]

부 서 명	분류번호		문 서 명	보존연한
	1차	2차		
전 산 팀	1400	총무이사		
		1	각종 전산관련 계약서철	3년
		2	개인정보이용내역	1년
		3	기타서류철	1년

[입법지원실]

부 서 명	분류번호		문 서 명	보존연한
	1차	2차		
입법지원실	1500	총무이사		
		1	<삭 제>	
		2	변리사관계서류철	5년
		3	세무사관계서류철	5년
		4	노무사관계서류철	5년
		5	공인중개사관계서류철	5년
		6	공인탐정관계서류철	5년
		7	법무사관계서류철	5년
		8	행정사관계서류철	5년
		9	기타 변호사직역관련철	5년
		10	입법특별위원회철	5년
		11	국회관계서류철	5년
		12	입법안관계서류철	5년
		13	기타서류철	5년



[미디어소통팀]

부 서 명	분류번호		문 서 명	보존연한
	1차	2차		
미디어 소통팀	1600	홍보이사		
		1	미디어소통위원회철	3년
		2	유튜브 관련철	3년
		3	Sns 관련철	3년
		4	기타서류철	3년

[정책팀]

부 서 명	분류번호		문 서 명	보존연한
	1차	2차		
정 책 팀	1700	정책이사		
		1	정책위원회철	5년
		2	광고심사위원회철	5년
		3	외국법자문사광고 심사위원회철	3년
		4	법질서위반감독센터 운영위원회철	5년
		5	대한변호사협회 변호사정보센터 운영위원회철	5년
		6	기타서류철	5년



규칙 · 규정 번호

구분	번 호	명 칭	제 정 일
규칙	제 1 호	회규관리규칙	1983. 05. 21.
	제 2 호	총회운영규칙	1983. 05. 21.
	제 3 호	이사회운영규칙	1983. 05. 21.
	제 4 호	상임이사회운영규칙	1983. 05. 21.
	제 5 호	위원회운영규칙	1983. 05. 21.
	제 6 호	사무국직제규칙	1983. 05. 21.
	제 7 호	임원인사규칙	1983. 05. 21.
	제 8 호	직원인사규칙	1983. 05. 21.
	제 9 호	사업계획규칙	1983. 05. 21.
	제 10 호	회지간행규칙	1983. 05. 21.
	제 11 호	변호사 연수규칙	1983. 05. 21.
	제 12 호	한국법률문화상규칙	1983. 05. 21.
	제 13 호	분담금납부규칙	1983. 05. 21.
	제 14 호	예산회계규칙	1983. 05. 21.
	제 15 호	변호사 등록 등에 관한 규칙	1983. 05. 21.
	제 16 호	공증합동법률사무소의설립등에관한규칙	1983. 05. 21.
	제 17 호	법무법인및법무법인(유한)의설립등에관한규칙	1983. 05. 21.
	제 18 호	지방변호사회설립과감독에관한규칙	1983. 05. 21.
	제 19 호	변호사보수기준에관한규칙	1983. 05. 21.
	제 20 호	변호사징계청구규칙	1983. 05. 21.
	제 21 호	변호사 사무직원 규칙	1983. 05. 21.
	제 22 호	법률구조사업회규칙	1985. 06. 22.
	제 23 호	대한변호사협회기및변호사배지등에관한규칙	1986. 02. 22.
	제 24 호	변호사 포상규칙	1986. 02. 22.
	제 25 호	변호사징계규칙	1993. 05. 24.
	제 26 호	사무총장및사무차장복무등기준에관한특례규칙	1997. 02. 22.
	제 27 호	신문 등 간행규칙	2000. 07. 03.
	제 28 호	임원선거규칙	2002. 11. 25.
	제 29 호	변호사신분증규칙	2004. 02. 23.
	제 30 호	법무조합의설립등에관한규칙	2006. 02. 20.
	제 31 호	모의재판경연대회운영위원회규칙	2010. 02. 08.
	제 32 호	대한변호사협회광고에관한규칙	2010. 02. 08.
	제 33 호	중합지간행규칙	2011. 12. 12.
	제 34 호	협회장 및 대의원 선거규칙	2012. 02. 20.
	제 35 호	변호사시험 합격자 연수규칙	2012. 02. 20.
	제 36 호	외국법자문사회비납부규칙	2012. 10. 15.
	제 37 호	외국법자문사신분증규칙	2012. 10. 15.
	제 38 호	법제연구원규칙	2016. 02. 29.



구분	번 호	명 칭	제 정 일
규칙	제 39 호	전국지방변호사회장협의회규칙	2018. 12. 03.
	제 40 호	감사위원회규칙	2018. 12. 03.
	제 41 호	총회 사무국 규칙	2019. 07. 22.
	제 42 호	총회 예산결산심사위원회 규칙	2019. 07. 22.
	제 43 호	총회 운영위원회 규칙	2022. 04. 25.
	제 44 호	합작법무법인 설립 등에 관한 규칙	2024. 01. 08.
	제 45 호	변호사 광고에 관한 규칙	2024. 10. 21.



구분	번 호	명 칭	제 정 일
규정	제 1 호	변호사 등록 등에 관한 규정	1983. 01. 17.
	제 2 호	세제위원회규정	1983. 06. 27.
	제 3 호	공증사무지도위원회규정	1983. 06. 27.
	제 4 호	사할린교포귀환추진위원회규정	1983. 06. 27.
	제 5 호	회계장부및입금전표등작성규정	1984. 02. 13.
	제 6 호	급여규정	1984. 02. 13.
	제 7 호	여비규정	1984. 02. 13.
	제 8 호	사법제도개선심의위원회규정	1985. 03. 18.
	제 9 호	윤리위원회규정	1985. 06. 10.
	제 10 호	통일문제연구위원회규정	1985. 06. 10.
	제 11 호	법률구조사업회규정	1985. 09. 09.
	제 12 호	경조규정	1985. 12. 27.
	제 13 호	변호사등록규칙에의한각종신고서의첨부서류에관한규정	1986. 02. 10.
	제 14 호	헌법개정연구위원회규정	1986. 03. 17.
	제 15 호	법률사무개방연구위원회규정	1986. 06. 10.
	제 16 호	헌법재판연구위원회규정	1987. 03. 09.
	제 17 호	국제위원회규정	1987. 03. 09.
	제 18 호	변호사직역위원회규정	1987. 03. 09.
	제 19 호	고문추방운동본부규정	1987. 06. 01.
	제 20 호	사법제도개선연구위원회규정	1988. 02. 15.
	제 21 호	회지편집위원회규정	1988. 04. 18.
	제 22 호	법령개폐특별위원회규정	1988. 08. 01.
	제 23 호	사법시험제도연구위원회규정	1988. 08. 01.
	제 24 호	행정관계법심의위원회규정	1988. 12. 19.
	제 25 호	노사문제연구위원회규정	1988. 12. 19.
	제 26 호	세제위원회규정	1989. 02. 13.
	제 27 호	공증사무지도위원회규정	1989. 02. 13.
	제 28 호	임원선출제도개선연구위원회규정	1989. 03. 28.
	제 29 호	사무처리규정	1989. 06. 26.



구분	번 호	명 칭	제 정 일
규정	제 30 호	위임전결규정	1989. 06. 26.
	제 31 호	아세아변호사협회회장회의집행위원회규정	1990. 03. 30.
	제 32 호	법의지배를위한변호사대회규정	1991. 02. 11.
	제 33 호	공명선거추진위원회규정	1991. 02. 11.
	제 34 호	사법시험제도개선연구위원회규정	1991. 06. 24.
	제 35 호	환경과에너지연구위원회규정	1991. 06. 24.
	제 36 호	법정위원회규정	1984. 02. 13.
	제 37 호	변호사 권익위원회 규정	1991. 10. 21.
	제 38 호	공명선거추진위원회규정	1991. 10. 21.
	제 39 호	직원인사규정	1991. 12. 23.
	제 40 호	공명선거추진위원회규정	1992. 07. 27.
	제 41 호	회관건립추진위원회규정	1984. 02. 13.
	제 42 호	컴퓨터연구위원회규정	1992. 12. 14.
	제 43 호	일본전후책임문제위원회규정	1993. 03. 23.
	제 44 호	변호사 광고에 관한 규정	1993. 06. 28.
	제 45 호	법조제도개혁연구위원회규정	1995. 02. 13.
	제 46 호	당직변호위원회규정	1995. 09. 11.
	제 47 호	변호사보수제도연구위원회규정	1995. 09. 11.
	제 48 호	특허소송연구위원회규정	1997. 10. 13.
	제 49 호	윤리위원회규정	1997. 12. 15.
	제 50 호	변호사징계처분집행규정	1998. 05. 25.
	제 51 호	회계처리규정	1998. 05. 25.
	제 52 호	사법평가위원회규정	1999. 03. 15.
	제 53 호	21세기변호사위원회규정	1999. 03. 15.
	제 54 호	공익활동등에관한규정	2000. 06. 26.
	제 55 호	변호사수임장부에관한규정	2000. 06. 26.
	제 56 호	변협50년사발간위원회규정	2001. 02. 12.
	제 57 호	공익활동심사위원회규정	2002. 02. 04.
	제 58 호	북한이탈주민법률지원위원회규정	2002. 11. 11.
	제 59 호	임원선거규칙시행규정	2002. 11. 11.
	제 60 호	법조제도연구위원회규정	2003. 02. 10.
	제 61 호	여성아동위원회규정	2003. 02. 10.
	제 62 호	변호사직역확보대책특별위원회규정	2004. 04. 19.
	제 63 호	법학전문대학원발전위원회규정	2005. 04. 18.
	제 64 호	법률서비스선진화특별위원회규정	2005. 04. 18.
	제 65 호	독도특별위원회규정	2005. 10. 10.
	제 66 호	변호사신상정보의수집및활용에관한규정	2005. 10. 10.
	제 67 호	지식재산권위원회규정	2005. 10. 10.
	제 68 호	대한변협종합회관건립추진위원회규정	2006. 07. 14.



구분	번 호	명 칭	제 정 일
규정	제 69 호	노인법률지원위원회규정	2007. 02. 05.
	제 70 호	인권과정의원고작성요령및투고방법에관한규정	2007. 02. 05.
	제 71 호	회지게재논문 심사규정	2007. 02. 05.
	제 72 호	지방변호사회장협의회규정	2007. 04. 16.
	제 73 호	임원인사규정	2007. 04. 16.
	제 74 호	대변인규정	2007. 04. 16.
	제 75 호	변호사윤리장전개정특별위원회규정	2007. 04. 16.
	제 76 호	청년변호사특별위원회규정	2007. 07. 16.
	제 77 호	연수교육심사위원회규정	2007. 07. 16.
	제 78 호	개별연수방법등에관한규정	2007. 07. 16.
	제 79 호	재개발·재건축법률지원위원회규정	2009. 02. 16.
	제 80 호	변호사 전문분야 등록에 관한 규정	2009. 09. 14.
	제 81 호	변호사백서간행특별위원회규정	2009. 09. 14.
	제 82 호	협회제도개선특별위원회규정	2009. 09. 14.
	제 83 호	민사소액사건담당변호사단운영규정	2009. 09. 14.
	제 84 호	외국법자문사제도운영위원회규정	2009. 11. 23.
	제 85 호	외국법자문사등록규정	2009. 11. 23.
	제 86 호	외국법자문사징계규정	2009. 11. 23.
	제 87 호	외국법자문사업무광고규정	2009. 11. 23.
	제 88 호	헌법개정특별위원회규정	2009. 11. 23.
	제 89 호	2020년IBA총회서울유치추진위원회규정	2009. 11. 23.
	제 90 호	법률서비스선진화특별위원회규정	2009. 11. 23.
	제 91 호	범죄피해자지원특별위원회규정	2009. 11. 23.
	제 92 호	사형제도연구특별위원회규정	2010. 01. 25.
	제 93 호	변호사직역대책특별위원회규정	2010. 01. 25.
	제 94 호	간통제도연구특별위원회규정	2010. 01. 25.
	제 95 호	명예변호사위촉에관한규정	2010. 01. 25.
	제 96 호	법조원로특별위원회규정	2010. 01. 25.
	제 97 호	반부패제도연구특별위원회규정	2010. 01. 25.
	제 98 호	변협포럼운영규정	2010. 01. 25.
	제 99 호	사법제도개선특별위원회규정	2010. 04. 05.
	제 100 호	금융소비자보호특별위원회규정	2010. 07. 19.
	제 101 호	국제교류특별위원회규정	2010. 12. 06.
	제 102 호	공익소송특별위원회규정	2010. 12. 06.
	제 103 호	자료보존특별위원회규정	2010. 12. 06.



구분	번 호	명 칭	제 정 일
규정	제 104 호	일제피해자인권특별위원회규정	2011. 02. 14.
	제 105 호	국제인권특별위원회규정	2011. 05. 23.
	제 106 호	IT특별위원회규정	2011. 05. 23.
	제 107 호	사내변호사특별위원회규정	2011. 05. 23.
	제 108 호	회칙개정특별위원회규정	2011. 05. 23.
	제 109 호	종합지편집위원회규정	2011. 05. 23.
	제 110 호	여성변호사특별위원회규정	2011. 05. 23.
	제 111 호	선거관리위원회규정	2012. 04. 23.
	제 112 호	다문화가정법률지원위원회규정	2012. 04. 23.
	제 113 호	통일법제사이버아카데미운영위원회규정	2012. 04. 23.
	제 114 호	정치발전위원회규정	2012. 04. 23.
	제 115 호	협회장 및 대의원 선거규칙 시행규정	2012. 09. 24.
	제 116 호	지자체세금낭비조사특별위원회규정	2012. 11. 21.
	제 117 호	변호사공익대상규정	2012. 12. 28.
	제 118 호	법조일원화위원회규정	2013. 02. 01.
	제 119 호	일과가정양립을위한위원회규정	2013. 05. 13.
	제 120 호	확장된단일사무소심사규정	2013. 05. 13.
	제 121 호	외국법자문법률사무소공동사건처리등을위한규정	2013. 09. 09.
	제 122 호	마을변호사운영위원회규정	2013. 09. 09.
	제 123 호	입법평가위원회규정	2014. 02. 03.
	제 124 호	IT법정책위원회규정	2014. 06. 02.
	제 125 호	입법·행정아카데미운영위원회규정	2014. 06. 02.
	제 126 호	생명존중재난안전특별위원회규정	2014. 06. 02.
	제 127 호	도산제도개선특별위원회규정	2014. 09. 22.
	제 128 호	고용관련분쟁조정위원회규정	2014. 12. 29.
	제 129 호	법률서비스보험특별위원회규정	2014. 12. 29.
	제 130 호	북한인권특별위원회규정	2015. 04. 27.
	제 131 호	법조인양성제도개혁특별위원회규정	2015. 10. 19.
	제 132 호	지식재산연수원규정	2015. 10. 19.
	제 133 호	전국지방변호사회장협의회규정	2015. 10. 19.
	제 134 호	법관평가특별위원회규정	2016. 02. 15.
	제 135 호	검사평가특별위원회규정	2016. 02. 15.
	제 136 호	필수적변호사변론주의특별위원회규정	2017. 03. 22.



구분	번 호	명 칭	제 정 일
규정	제 137 호	형사사건성공보수유효화특별위원회규정	2017. 03. 22.
	제 138 호	법령심의특별위원회규정	2017. 03. 22.
	제 139 호	법조대화합특별위원회규정	2017. 03. 22.
	제 140 호	준법지원인특별위원회규정	2017. 03. 22.
	제 141 호	법무담당관제특별위원회규정	2017. 03. 22.
	제 142 호	변호사 수급 정상화 특별위원회 규정	2017. 03. 22.
	제 143 호	우수변호사선정특별위원회규정	2017. 03. 22.
	제 144 호	변호사중개센터규정	2017. 06. 19.
	제 145 호	청년변호사지원센터규정	2017. 06. 19.
	제 146 호	스타트업규제혁신특별위원회규정	2017. 06. 19.
	제 147 호	정책자문위원회규정	2017. 06. 19.
	제 148 호	회칙등개정특별위원회규정	2017. 06. 19.
	제 149 호	소방관법률지원단운영규정	2017. 06. 19.
	제 150 호	성년후견법률지원특별위원회규정	2017. 09. 11.
	제 151 호	입법특별위원회규정	2017. 09. 11.
	제 152 호	변호사공동사무직원규정	2017. 09. 11.
	제 153 호	채권추심 업무 활성화 특별위원회 규정	2018. 02. 05.
	제 154 호	대한변호사협회 감사규정	2018. 04. 09.
	제 155 호	입법평가 특별위원회 규정	2018. 04. 09.
	제 156 호	대한변협 스타트업 법률지원단 운영 규정	2018. 07. 09.
	제 157 호	손해사정사 대책 특별위원회 규정	2018. 07. 09.
	제 158 호	드루킹 댓글조사 특검후보 추천 특별위원회 규정	2018. 07. 09.
	제 159 호	우수 국회의원 선정 특별위원회 규정	2018. 10. 22.
	제 160 호	IT·블록체인특별위원회 규정	2018. 12. 28.
	제 161 호	미래기획특별위원회규정	2019. 04. 15.
	제 162 호	IBA 서울총회 준비특별위원회 규정	2019. 07. 08.
	제 163 호	북한이탈주민법률지원위원회규정	2019. 07. 08.
	제 164 호	대한변협 개혁위원회 규정	2019. 11. 04.
	제 165 호	특별보좌관 규정	2019. 11. 04.
	제 166 호	대한변협 양성평등센터 규정	2019. 11. 04.
	제 167 호	학술위원회 규정	2019. 11. 04.
	제 168 호	사무국운영규정	2020. 02. 10.
	제 169 호	난민이주외국인특별위원회 규정	2020. 12. 28.



구분	번 호	명 칭	제 정 일
규정	제 170 호	대한변협 프로보노지원센터 규정	2020. 12. 28.
	제 171 호	법학전문대학원 지원 및 평가특별위원회 규정	2020. 12. 28.
	제 172 호	법질서위반 감독센터 규정	2021. 05. 03.
	제 173 호	회규 위반 법률플랫폼 가입 회원 조사를 위한 특별조사위원회 규정	2021.10.05.
	제 174 호	세무 · 회계실무 연수 규정	2021.10.05.
	제 175 호	대한변호사협회 변호사정보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2022.02.14.
	제 176 호	대한변호사협회 법학전문대학원 평가 및 발전 특별위원회 규정	2022.02.14.
	제 177 호	대한변호사협회 변호인조력권침해 신고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2022.04.11.
	제 178 호	대한변협 벤처·스타트업 법률지원센터 규정	2022.04.11.
	제 179 호	ESG 특별위원회 규정	2022.10.11.
	제 180 호	법률사무소 방화 테러사건 대책 특별위원회 규정	2022.10.11.
	제 181 호	변호사 및 법률사무 종사자 안전의 날 제정에 관한 규정	2022.10.11.
	제 182 호	10·29 이태원 참사 대책특별위원회규정	2023.01.02.
	제 183 호	전임지방변호사회장협의회규정	2023.03.20.
	제 184 호	변호사징계양정규정	2024.01.08.
	제 185 호	대한변협 전문변호사회 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2024.01.08.
	제 186 호	모바일 변호사 신분증 규정	2024.09.09.
	제 187 호	사법경찰평가특별위원회 규정	2024.09.09.
	제 188 호	모바일 외국법자문사 신분증 규정	2025.01.07.
	제 189 호	변호사 에이전트 제도화 특별위원회 규정	2025.01.07.
	제 190 호	지방변호사회의 회비에 관한 규정	



폐지된 회규

구분	회규번호	규 칙 · 규 정 명	제 정 일 자	폐 지 일 자
규칙	제 19 호	변호사보수기준에관한규칙	1983.05.21.	2000.01.01.
	제 20 호	변호사징계청구규칙	1983.05.21.	1993.05.24.
	제 22 호	법률구조사업회규칙	1985.06.22.	2009.10.19.
	제 31 호	모의재판경연대회운영위원회회규칙	2010.02.08.	2017.02.27.
	제 33 호	종합지간행규칙	2011.12.12.	2017.02.27.
규정	제 2 호	세제위원회규정	1983.06.27.	1988.06.28.
	제 3 호	공증사무지도위원회규정	1983.06.27.	1988.06.28.
	제 4 호	사할린교포귀환추진위원회규정	1983.06.27.	1987.03.09.
	제 5 호	회계장부및입금전표등작성규정	1984.02.13.	1998.05.25.
	제 8 호	사법제도개선심의위원회규정	1985.03.18.	1989.03.20.
	제 9 호	윤리위원회규정	1985.06.10.	1987.03.09.
	제 11 호	법률구조사업회규정	1985.09.09.	2009.09.14.
	제 13 호	변호사등록규칙에의한각종신고서의첨부서류에관한규정	1986.02.10.	2016.02.15.
	제 14 호	헌법개정연구위원회규정	1986.03.17.	1989.02.13.
	제 15 호	법률사무개방연구위원회규정	1986.06.10.	2009.04.13.
	제 16 호	헌법재판연구위원회규정	1987.03.09.	1991.04.08.
	제 17 호	국제위원회규정	1987.03.09.	1989.03.20.
	제 18 호	변호사지역위원회규정	1987.03.09.	1989.03.20.
	제 19 호	고문추방운동본부규정	1987.06.01.	1989.02.13.
	제 20 호	사법제도개선연구위원회규정	1988.02.15.	1995.02.13.
	제 22 호	법령개폐특별위원회규정	1988.08.01.	1989.02.13.
	제 23 호	사법시험제도연구위원회규정	1988.08.01.	1989.03.28.
	제 24 호	행정관계법심의위원회규정	1988.12.19.	1989.03.28.
	제 25 호	노사문제연구위원회규정	1988.12.19.	1991.04.08.
	제 27 호	공증사무지도위원회규정	1989.02.13.	2003.02.10.
	제 28 호	임원선출제도개선연구위원회규정	1989.03.28.	1991.04.08.
	제 31 호	아세아변호사협회회장회의집행위원회규정	1990.03.30.	1991.05.11.
	제 33 호	공명선거추진위원회규정	1991.02.11.	1992.07.27.
	제 34 호	사법시험제도개선연구위원회규정	1991.06.24.	1995.02.13.
	제 36 호	법정위원회규정	1984.02.13.	1998.05.25.
	제 38 호	공명선거추진위원회규정	1991.10.21.	1992.07.27.
	제 40 호	공명선거추진위원회규정	1992.07.27.	1993.05.10.
	제 41 호	회관건립추진위원회규정	1984.02.13.	1998.05.25.
	제 42 호	컴퓨터연구위원회규정	1992.12.14.	2003.02.10.
	제 43 호	일본전후책임문제위원회규정	1993.03.23.	2003.02.10.
	제 45 호	법조제도개혁연구위원회규정	1995.02.13.	1999.03.14.
	제 46 호	당직변호위원회규정	1995.09.11.	2016.12.30.



구분	회규번호	규 칙 · 규 정 명	제 정 일 자	폐 지 일 자
규정	제 47 호	변호사보수제도연구위원회규정	1995.09.11.	2000.01.01.
	제 48 호	특허소송연구위원회규정	1997.10.13.	2005.10.10.
	제 53 호	21세기변호사위원회규정	1999.03.15.	2003.02.10.
	제 56 호	변협50년사발간위원회규정	2001.02.12.	2003.02.10.
	제 58 호	북한이탈주민법률지원위원회규정	2002.11.11.	2015.04.27.
	제 59 호	임원선거규칙시행규정	2002.11.11.	2012.11.21.
	제 60 호	법조제도연구위원회규정	2003.02.10.	2021.10.05.
	제 61 호	여성아동위원회규정	2003.02.10.	2016.12.30.
	제 62 호	변호사직역확보대책특별위원회규정	2004.04.19.	2009.04.13.
	제 63 호	법학전문대학원발전위원회규정	2005.04.18.	2022.02.14.
	제 64 호	법률서비스선진화특별위원회규정	2005.04.18.	2009.04.13.
	제 65 호	독도특별위원회규정	2005.10.10.	2016.12.30.
	제 67 호	지식재산권위원회규정	2005.10.10.	2016.12.30.
	제 68 호	대한변협종합회관건립추진위원회규정	2006.07.14.	2016.12.30.
	제 69 호	노인법률지원위원회규정	2007.02.05.	2016.12.30.
	제 72 호	지방변호사회장협의회규정	2007.04.16.	2015.10.19.
	제 73 호	임원인사규정	2007.04.16.	2012.09.24.
	제 75 호	변호사윤리장전개정특별위원회규정	2007.04.16.	2021.05.03.
	제 77 호	연수교육심사위원회규정	2007.07.16.	2009.09.14.
	제 79 호	재개발·재건축법률지원위원회규정	2009.02.16.	2011.05.23.
	제 81 호	변호사백서간행특별위원회규정	2009.09.14.	2016.12.30.
	제 82 호	협회제도개선특별위원회규정	2009.09.14.	2016.02.15.
	제 83 호	민사소액사건담당변호사단운영규정	2009.09.14.	2021.10.05.
	제 84 호	외국법자문사제도운영위원회규정	2009.11.23.	2021.05.03.
	제 89 호	2020년IBA총회서울유치추진위원회규정	2009.11.23.	2016.12.30.
	제 90 호	법률서비스선진화특별위원회규정	2009.11.23.	2016.12.30.
	제 91 호	범죄피해지원특별위원회규정	2009.11.23.	2021.05.03.
	제 92 호	사형제도연구특별위원회규정	2010.01.25.	2016.12.30.
	제 93 호	변호사직역대책특별위원회규정	2010.01.25.	2021.05.03.
	제 94 호	간통제도연구특별위원회규정	2010.01.25.	2016.02.15.
	제 97 호	반부패제도연구특별위원회규정	2010.01.25.	2016.12.30.
	제 100 호	금융소비자보호특별위원회규정	2010.07.19.	2016.12.30.
	제 101 호	국제교류특별위원회규정	2010.12.06.	2015.10.19.
	제 102 호	공익소송특별위원회규정	2010.12.06.	2016.12.30.
	제 103 호	자료보존특별위원회규정	2010.12.06.	2016.12.30.
	제 106 호	IT특별위원회규정	2011.05.23.	2021.05.03.
	제 108 호	회칙개정특별위원회규정	2011.05.23.	2016.02.15.
	제 109 호	종합지편집위원회규정	2011.05.23.	2016.12.30.
	제 112 호	다문화가정법률지원위원회규정	2012.04.23.	2021.05.03.



구분	회규번호	규 칙 · 규 정 명	제 정 일 자	폐 지 일 자
규정	제 113 호	통일법제사이버아카데미운영위원회규정	2012.04.23.	2016.12.30.
	제 114 호	정치발전위원회규정	2012.04.23.	2016.12.30.
	제 116 호	지자체세금납비조사특별위원회규정	2012.11.21.	2016.12.30.
	제 118 호	법조일원화위원회규정	2013.02.01.	2021.05.03.
	제 122 호	마을번호사운영위원회규정	2013.09.09.	2021.05.03.
	제 123 호	입법평가위원회규정	2014.02.03.	2016.12.30.
	제 124 호	IT법정책위원회규정	2014.06.02.	2016.12.30.
	제 125 호	입법·행정아카데미운영위원회규정	2014.06.02.	2016.12.30.
	제 127 호	도산제도개선특별위원회규정	2014.09.22.	2016.12.30.
	제 128 호	고용관련분쟁조정위원회규정	2014.12.29.	2021.05.03.
	제 129 호	법률서비스보험특별위원회규정	2014.12.29.	2021.05.03.
	제 131 호	법조인양성제도개혁특별위원회규정	2015.10.19.	2017.03.22.
	제 133 호	전국지방변호사회장협의회규정	2015.10.19.	2019.04.15.
	제 136 호	필수적변호사변론주의특별위원회규정	2017.03.22.	2021.05.03.
	제 137 호	형사사건성공보수유효화특별위원회규정	2017.03.22.	2021.05.03.
	제 138 호	법령심의특별위원회규정	2017.03.22.	2021.10.05.
	제 139 호	법조대화합특별위원회규정	2017.03.22.	2021.05.03.
	제 140 호	준법지원인특별위원회규정	2017.03.22.	2021.05.03.
	제 141 호	법무담당관제특별위원회규정	2017.03.22.	2021.05.03.
	제 144 호	변호사중개센터규정	2017.06.19.	2019.11.04.
	제 145 호	청년변호사지원센터규정	2017.06.19.	2021.05.03.
	제 146 호	스타트업규제혁신특별위원회규정	2017.06.19.	2021.05.03.
	제 147 호	정책자문위원회규정	2017.06.19.	2021.05.03.
	제 148 호	회칙등개정특별위원회규정	2017.06.19.	2021.05.03.
	제 149 호	소방관법률지원단운영규정	2017.06.19.	2021.05.03.
	제 153 호	채권추심 업무 활성화 특별위원회 규정	2018.02.05.	2021.05.03.
	제 156 호	대한변협 스타트업 법률지원단 운영 규정	2018.07.09.	2021.05.03.
	제 157 호	손해사정사 대책 특별위원회 규정	2018.07.09.	2021.05.03.
	제 158 호	드루킹 댓글조사 특검후보 추천 특별위원회 규정	2018.07.09.	2021.10.05.
	제 161 호	미래기획특별위원회규정	2019.04.15.	2021.05.03.
	제 162 호	IBA 서울총회 준비특별위원회 규정	2019.07.08.	2021.05.03.
	제 164 호	대한변협 개혁위원회 규정	2019.11.04.	2021.05.03.
	제 171 호	법학전문대학원 지원 및 평가특별위원회 규정	2020.12.28.	2022.02.14.
	제 167 호	학술위원회 규정	2019.11.04.	2024.02.26.
	제 182 호	10·29 이태원 참사 대책특별위원회규정	2023.01.02.	2025.01.07.

